

발 간 등 록 번 호

52-6260000-000076-10

釜山史料叢書 19

國
譯 典客司別膳錄(Ⅳ)

(1747. 1 ~ 1753. 12)

解題 金東哲

國譯 鄭景柱

監修 李源鈞



釜山廣域市史編纂委員會

2012. 7

일 러 두 기

- 이 책은 典客司의 업무 기록 중 東萊府 소관 대일교섭 업무에 관한 것으로 현존하는 8책(숙종 25년, 1699년 ~ 영조 29년, 1753년) 중 제7책(1747년 1월 ~ 1750년 12월), 제8책(1751년 1월 ~ 1753년 12월)을 국역한 것으로 최종본이다.
- 이 책은 조선후기 대일교섭 실무책임자인 東萊府使의 일상적 업무 전반을 포괄적으로 기록한 공문서를 전각사에서 발췌하여 기록한 것이다.
- 전각사별등록의 국역문은 가능한 한 원문의 취지에 가깝게 직역하되, 외교 및 무역 관례상 관습적으로 굳어진 용어는 가급적 그대로 사용하였다.
- 이 책은 조선후기 공용문서를 발췌한 것이므로 이두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대개 이두의 본 뜻을 살려 국역하였으나, 간혹 문장의 호흡이 너무 길어 문맥을 이해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중간에 끊어 고친 곳이 있다.
- 원문의 어휘 중에 간혹 지금의 관용적 표기와 다른 경우는 재래의 관습을 중시하여 대개 원문대로 살렸다. 다만 필사과정의 실수로 인한 오자가 명백한 경우에는 각주에 그 사실을 밝히고 고쳤다.
- 日本 人名 및 地名에 사용된 한자는 일본 측의 表音が 분명한 경우에는 풀어 표기하였으나, 조선 측의 한자음이 관용되거나 분명하지 않은 경우는 조선 측의 한자음으로 표기하였다.

국역 전객사별등록(IV)

(1747. 1 ~ 1753. 12)

차례

- 일러두기
- 차례
- 국역 전객사별등록 해제 21

국역 전객사별등록

제 7 책

□ 정묘(丁卯, 1747年, 英祖 23年)

- 1월 11일 倭館을 摘奸하여 비가 새고 부서진 곳을 수리, 부수할 것을 申飭함 .. 87
- 1월 17일 漂倭船 問情을 소홀히 한 玉浦倭學 金禹迪를 罷黜하기로 함 87
 - － 代 倭學을 司譯院에서 擇差하게 함
 - － 倭大船 出來事情을 虛僞報告한 知世浦 萬戶 金尙文을 決棍하기로 함
- 2월 9일 倭館을 摘奸하여 東西館宇 破落處를 修補토록 申飭함 90
- 4월 28일 倭飛船이 館守代差倭 등의 私署를 가지고 入歸함 90
 - － 倭別一代官의 從倭 1명이 병으로 사망함
 - － 倭學別差 張麟維가 準朔하고 堂下諫官 李櫟이 당일 도착함
 - － 問慰譯官의 배가 對馬島에 무사히 도착함
- 5월 19일 出來한 倭 飛船의 問情을 소홀히 한 玉浦倭學 李振豪를 決棍하기로 함 .. 91
 - － 倭船 1척이 公作米 齎持하여 동라가기 위해 바람을 기다림
 - － 倭館을 摘奸하여 東西館宇 破落處를 속히 修補토록 申飭함
- 7월 9일 從倭 1명이 병으로 사망함 92
 - － 東西館宇 破落處를 속히 修補토록 申飭함
- 8월 11일 東西館宇 破落處를 속히 修補토록 更加申飭함 92

○ 8월	18일	倭船 問情을 소홀히 한 暇別差를 水營에서 決棍하기로 함	93
○ 8월	24일	小禁徒倭 1명이 병으로 사망함	93
		－ 下代倭 등이 館守裁判倭 私書を 가지고 入歸함	
		－ 館守裁判倭 私書와 銀價 및 生銅을 실은 倭船 2척이 出來	
		－ 倭船의 違格路引을 退却不捧하고 改書 呈納할 것을 館守憲게 責論함	
○ 9월	1일	倭船이 公作米를 실고 入歸함	94
		－ 館倭 倭人의 父祖墳塚 往省에 潛行하지 못하도록 別差 등이 押領하게 함	
		－ 商譯 등의 被執物貨價銀 一萬兩을 別開市에 捧出함	
○ 9월	21일	倭亂 戰死人의 후손 李德重의 禮曹參議 遞職을 허락함	94
○ 9월	27일	萬松院送使倭의 出來을 失嘹한 봉군 등을 처벌하기로 함	95
		－ 바람을 기다리던 倭船 2척은 入歸한 후에 다시 보고하기로 함	
○ 10월	10일	倭船 3척이 出來하여 2척은 右道로 표류하고 1척은 거제도도 향함	96
		－ 倭船 出來狀況을 잘못 보고한 지세포 만호를 결곤하기로 함	
○ 11월	12일	倭館 破墜處를 속히 修補토록 申飭함	97
○ 11월	19일	水門 밖에서 바람을 기다리던 倭船 2척과 飛船 1척이 入歸함	98
		－ 裁判差倭 藤如照 등의 倭船 6척이 公作米 載据次 出來	
		－ 금년 9월 29일 出來한 通信使護行差倭船이 入歸함	
		－ 倭船 出來時 관측에서 놓인 봉군과 監色을 決棍하기로 함	
		－ 當年條 公作米 16,000석의 入給을 마침	
		－ 商譯 등의 被執物貨銀 6,200兩을 開市에 捧出함	
○ 11월	29일	倭船 5척이 規例를 어기고 館所로 直向함	99
		－ 倭船을 막지 못한 호송장 助羅浦 萬戶와 관측에서 놓인 望軍 등을 결곤하기로 함	
○ 12월	13일	倭관을 摘奸하여 東西館宇 破落處를 修補토록 申飭함	101

□ 무진(戊辰, 1748年, 英祖 24年)

○ 1월	5일	倭船 漂風時刻을 애매하게 기록한 加德 色吏를 重棍하기로 함	101
○ 1월	12일	倭館 東西館宇 破落處를 修補토록 申飭함	102
○ 2월	5일	規例外 再渡船의 路引을 不捧하고 속히 還送토록 館守倭에게 責論함	102
		－ 倭船 2척이 問情을 거부하고 離發한 문제를 館守倭에게 責論함	
		－ 倭船 問情을 못한 天城 萬戶를 水營에서 決棍하기로 함	
○ 2월	14일	천성에 漂倒한 倭船 2척이 問情 前에 發船함	105
		－ 倭船 출발을 막지 못한 천성만호 등을 처벌하기로 함	

○		倭船이 公作米 등을 齎持하여 入歸함 － 商譯 등 被執物貨 價銀 650兩을 開市에 捧出함	
○ 3월	1일	倭船 3척 出來時 問情을 잘못된 옥포倭학 등을 처벌하기로 함	107
○ 4월	9일	옥포倭학이 倭船 出來時刻을 착오하고 보고를 지연한 것을 조치하도록 함	108
○ 4월	26일	丁卯條 副特送使와 通信使護行差倭의 進上物目 및 數量	109
○		差備譯官 등이 축낸 禮單蔘을 司國院에서 처리하도록 함	
○ 5월	8일	倭관을 摘奸하여 東西館宇 破落處를 속히 修補토록 申飭함	111
○ 5월	11일	東萊府에 巡營庫를 別設하여 倭관의 東西館宇 破落處를 속히 修補토록 申飭함	111
		－ 倭人 宴享賀用을 賀年 預下 하면 道臣 및 府使를 論罪하기로 함	
○ 6월	2일	書契를 精書하지 않은 寫字官茨知를 囚禁하도록 함	113
○ 6월	10일	東西館宇 破落處를 속히 修補할 것을 申飭함	113
○ 6월	14일	倭大船 2척이 公作米 齎去次 出來	113
		－ 倭船 2척이 公作米를 싣고 入歸함	
		－ 出來 倭船의 違格路引과 人蔘要求呈書를 退却不捧하고 館守倭을 責論함	
○ 7월	10일	東西館宇 破落處를 속히 修補토록 申飭함	115
○		副特送使 書契를 誤記한 任譯 등을 決棍하기로 함	
		－ 書契 誤記를 살피지 못한 동래부사를 推考하기로 함	
○ 7월	20일	水門 밖에서 바람을 기다리던 倭船이 入歸함	116
		－ 倭인 1명이 병으로 사망함	
		－ 倭飛船이 館守倭의 私署를 지니고 館所에서 직접 入歸함	
○ 7월	22일	倭飛船 2척이 通信使의 狀啓書簡을 가지고 出來	116
○		公作米 齎去次 出來한 倭大船 1척이 漂泊함	
		－ 倭船 問情을 소홀히 한 옥포倭학 李昌錫을 決棍하기로 함	
		－ 交代譯官을 各別擇差하여 속히 下送하게 함	
○ 8월	12일	倭船이 倭守裁判大差倭 등의 私書와 公作米를 싣고 入歸함	119
		－ 館倭 등이 父祖墳塚 往省에 橫行하지 않도록 각별히 申飭함	
		－ 倭船 1척이 통신사 일행 중 奴子の 시체를 싣고 出來	
		－ 倭관을 摘奸하여 東西館宇 破落處를 속히 修補토록 申飭함	
○ 9월	16일	東西館宇 破落處를 修補할 것을 申飭함	120
		－ 倭船이 館守裁判大差倭의 私書와 公作米를 싣고 入歸함	
		－ 당년조 公作米 161000석의 入給을 마침	
○ 9월	18일	監董官을 差送하여 館宇 修補를 시작하게 함	121

		－ 被執 人蔘에 대한 呈書를 依例奉行하고 回答하도록 함	
○ 10월	12일	被執 人蔘에 대한 呈書를 依例奉行하게 함	122
		－ 人蔘販賣를 청하는 對馬島主의 書契	
		－ 禁軍을 別定하여 回答書를 下送하도록 함	
		－ 東西館宇 破落處를 속히 修補하라 申飭함	
○ 10월	17일	司譯院에서 東館 수리를 위해 監董官을 差送함	123
		－ 司譯院에서 西館 수리를 위해 監董官을 差送함	
		－ 倭館 수리를 위해 예조에서 監董官 差送을 分付함	
○ 10월	18일	東館 監董官의 倭人 相接時 필요한 賜禮單雜物을 依例上下하게 함	124
		－ 西館 監董官의 倭人 相接時 필요한 賜禮單雜物을 依例上下하게 함	
		－ 東館 監董官에게 필요한 말을 지급할 것	
		－ 東館 監董官에게 필요한 말을 지급할 것	
○ 11월	9일	館守裁判倭 橘如棟이 교대차 出來	124
		－ 商譯 등의 被執物貨價銀 5,000량을 開市에 捧出함	
○		橘如棟을 新館守로 보내는 대마도주의 書契	
○		예조에 보내는 대마도주의 別幅物目	
○		동래· 부산에 보내는 別幅物目	
		－ 예조에서 書契에 대한 회답과 回禮雜物을 下送함	
		－ 回禮別幅物目	
○ 11월	19일	規例外에 再渡하여 漂泊한 倭船 3척의 入送을 申飭함	127
		－ 倭船의 出來形狀을 잘못 보고한 多大鎭 當役烽軍 등을 決棍하기로 함	
○ 11월	25일	倭船이 公作米를 신고 入歸함	129
		－ 賀館守倭 등의 청에 의해 上船宴 대신 乾物을 入給함	
		－ 改書呈納한 대마도주의 書契를 예조에 監封上送함	
○ 12월	2일	癸亥條 副特送使 2호선이 生銅 7,500근을 신고 再渡함	129
		－ 倭 飛船 1척이 館守裁判倭 등의 私書를 가지고 入歸함	
		－ 倭船 1척이 公作米를 신고 入歸함	
		－ 規外路引을 退却不捧하고 즉시 入送할 것을 館守에게 責論함	
		－ 出來 倭船의 舉火에 回應하지 않은 知世浦 萬戶를 論罪하기로 함	
○ 12월	6일	倭 飛船의 漂風形止를 즉시 馳報하지 못한 多大浦 監色을 決棍하기로 함	131
		－ 通信使禮單銀을 己巳條 公木과 計減하기로 手標相約함	
○ 12월	14일	倭船의 舉火에 回應하지 않은 知世浦 萬戶를 罷黜함	132

- － 假將을 差出하여 照望軍을 담당하게 함
- 12월 20일 倭船 出來形止 보고를 잘못된 多大鎭 僉使 등을 決棍하기로 함 …… 133

□ 기사(己巳, 1749年, 英祖 25年)

- 1월 11일 倭船 2척이 公作米와 館守裁判倭의 私書を 가지고 入歸함 …… 134
 - － 商譯 등의 被執物貨價銀을 開市에 捧出함
 - － 倭船 毀傷處 중 大毀時急한 곳을 修補토록 함
- 1월 19일 倭 飛船 2척이 館守倭와 재판倭에게 보내는 私書を 가지고 出來함 · 134
 - － 倭船 漂泊을 즉시 보고하지 않은 기장현 邊情次知 및 監色을 嚴刑하기로 함
- 2월 10일 동래부사 鄭權이 새로 부임하여 前府使 閔台祥과 交印함 …… 135
 - － 倭船 6척이 公作米 賣去次 出來하다가 兵浪을 만나 大船 3척만 도착함
 - － 柱木을 상실한 倭船에 兒松 1 그루를 折給하기로 함
 - － 倭 飛船 3척을 左道로 漂向함
- 2월 14일 倭 飛船 2척이 生銅 2,000 근을 가지고 出來함 …… 137
 - － 戊辰條 부특송사 수목선 등이 公作米를 싣고 入歸함
 - － 倭船 1척이 公作米를 싣기 위해 出來함
 - － 入歸하던 倭船이 바람이 불순하여 바람을 기다린 후 入歸함
 - － 碇巨里 표박 倭 대선 2척이 옥포 강어귀에 止泊함
 - － 倭 飛船 2척 出來時 관측하지 못한 봉군을 決棍함
 - － 東西館宇 破落處를 修補하도록 申飭함
 - － 被執物貨價銀 1,300냥을 開市에 捧出함
 - － 通信使護來 裁判差倭 平成方 등에게 上船宴 대신 乾物을 入給함
- 2월 25일 동래부에서 비변사에 倭館摘奸成冊을 上送함 …… 139
 - － 伐材折價問題는 비변사의 지휘를 받아 처리하기로 함
 - － 所要材木은 倭館 부근의 禁松山의 風落自枯松을 參酌 文給함 하기로 함
 - － 松木濫伐을 금하며 差員 및 監董官을 各別論罪함
 - － 材木運送 소요경비는 道臣이 마련하도록 함
 - － 외관 수리 소요비용은 통신사 回還時 回禮銀子를 公木과 相換給하도록 함
- 3월 2일 倭 飛船 1척이 館守倭 私書を 가지고 入歸함 …… 140
 - － 倭船이 公作米載去 등의 목적으로 出來함
 - － 違格路引을 退却 不捧하고 改書呈納하도록 館守倭에게 責論함
 - － 倭船 出來時 問情 보고를 소홀히 한 다대포 次知官을 결곤함

○ 3월	3일	울산 戰艦을 西生浦에 移屬하는 문제를 논의함	141
○ 3월	10일	동서倭館 破落處를 修補토록 申飭함	142
○ 3월	17일	倭船 2척이 公作米를 나누어 신고 入歸함	142
		－ 書契의 宣廟初諱는 正諱와 다르므로 避諱하지 않고 依例捧上함	
○		對馬島主 平義如의 書契	
		－ 제1선의 正官으로 藤直親을 差送함	
		－ 대마도주 書契의 別幅物目	
		－ 제2선의 정관으로 藤廣長을 차송함	
○		대마도주 평의여의 서계	
		－ 제3천의 정관으로 橘元行을 차송함	
○ 4월	7일	倭館 수리시 當年入送便을 停止함을 도중에 알리도록 館守倭에게 통보함	144
○		世子가 代理庶務하므로 大段更張과 邊方에 관계된 일은 入啓할 것	
		－ 刑政 가운데 死刑에 관계된 일은 入啓하고 나머지는 入避 하게 함	
○ 4월	14일	동서관우 수리 所要物力에 관한 비변사의 甘結	145
		－ 비변사에서 동래부사가 倭館修改處를 직접 摘奸하도록 함	
		－ 동래부사는 倭館수개처를 직접 적간할 수 없다는 경상감사의 회답	
		－ 差使員인 창원부사가 營門補將 및 동래군관과 함께 적간하도록 함	
		－ 倭館 수리 소요비용으로 통신사 換減公木 110桐을 劃給함	
		－ 癸卯年 서관 수리시 所要物力 및 丙午年 동관 수리시 소요물력을 확인 보고함	
○ 5월	10일	倭船 1척이 領送을 거부하고 直渡함	149
		－ 倭船을 막지 못한 옥포만호를 결곤함	
○ 6월	9일	동서관우 破落處를 속히 修補토록 다시 申飭함	150
		－ 館宇 修補時 倭 8送使를 정지하는 서계를 呈納上送하려 함	
○ 7월	4일	신임 동래부사 黃景源이 前府使 鄭權과 交印하고 도임함	151
		－ 倭船 1척이 路引 및 公作米 館守倭 私書 卜物 등을 신고 入歸함	
		－ 再渡 倭船 1척이 公作米 載去次 出來함	
		－ 判堂官倭가 賣買事 때문에 出來함	
		－ 規外 再渡 倭船의 路引을 退却不捧하고 속히 還送시키도록 館守倭에게 책론함	
		－ 商譯의 被執物貨價銀 3,500량을 開市에 捧出함	
○ 7월	25일	百種節日を 맞아 館倭 등의 先祖墳塚 往省을 허락함	152

		- 館守倭 私書 및 卜物을 실은 倭船이 入歸함 - 倭관 수리시 8송사 停止書契를 對馬島에서 改書呈納하니 依例捧納함	
○ 8월	9일	倭房에 출입하며 私買하는 자를 1律로 다스리도록 함	153
		- 동래부의 良丁이 移額되었으나 보충하지 않기로 -함 - 烽臺別將 25인 관리는 편의대로 시행하도록 함	
○ 8월	17일	동서관우 파락처를 속히 속히 수보하도록 申飭함	155
		- 秋社日 관倭 등의 父祖墳塚 往省에 潛行하지 못하도록 함	
○ 9월	13일	倭 飛船 2척이 館守裁判倭 등의 私書 및 卜物을 싣고 入歸함	155
		- 동서관우 파락처를 속히 수보하도록 다시 신칙함 - 상역 등의 被執物貨가은 8,000냥을 開市에 捧出함	
○ 9월	20일	倭船 2척이 公作米 載去次 出來함	156
		- 西館監董次知倭 등이 탄 倭대선이 生銅을 싣고 公作米 載去次 出來함 - 違格路引을 退却不捧하고 館守倭에게 책론함 - 倭관 수리시 8송사 停止書契를 改書呈納하게 함 - 對馬島 平義如의 別幅 - 대마도 평의여가 3特送使船倭에게 부친 禮曹에 보내는 奉書 - 대마도 평의여의 別幅 - 대마도 평의여가 副特送使船倭에게 부친 禮曹에 보내는 봉서 - 대마도 萬松院 誠恐和南이 예조에 보내는 봉서 - 대마도 만송원 성공화남의 別幅	
○ 10월	3일	倭 飛船 1척이 出來함	163
		- 倭 飛船 時 失瞭한 多大浦 烽軍을 治罪하기로 함 - 問情을 소홀히 한 玉浦倭學 金金昌大를 決棍하기로 함	
○ 10월	9일	동서관우가 수리 중이므로 摘奸할 것이 없다고 보고함	164
		- 倭 飛船 時 問情을 소홀히 한 玉浦倭學 金金昌大를 決棍함	
○ 10월	10일	강원도 歲幣厲進價尤甚邑의 弓木의 3/2를 除減함	164
		- 當年度 公作米 16,000석의 入納을 마침 - 倭船 3척이 公作米를 싣고 入歸하다가 역풍을 만나 回泊함	
○ 10월	18일	倭 飛船 1척이 館守裁判倭 에게 보내는 私書を 가지고 出來함	165
		- 違格路引을 改書呈納하도록 責論함 - 기장, 양산 南邑의 軍器什物을 點問함 - 비변사에서 下送한 狀啓紙와 啓本紙의 見樣에 의거하여 狀達함	
○ 10월	27일	別下代倭 1인이 병으로 사망함	166

- 11월 16일 東西館宇 摘奸은 수리 후에 하기로 함 166
- 12월 10일 倭船 3척이 出來하여 問情을 거부하고 左道로 直向함 166
 - － 倭船을 捕執하지 못한 옥포만호와 長木浦別將을 決棍하기로 함
- 12월 21일 倭 大船 2척이 公作米 載去次 出來함 167
 - － 違格路引을 退却不捧하고 속히 入送할 것을 責論함
 - － 출발 시각을 誤告 倭인을 治罪할 것을 館守倭에게 통보함
 - － 倭 小船 2척이 銀貨 10,000냥을 싣고 公作米 載去次 出來함
 - － 違格路引을 退却不捧하고 改書呈納토록 館守倭에게 책론함
 - － 倭船 2척을 발견하였으나 問情하지는 못함
- 12월 29일 監營 兵營 水營의 船稅 濫徵을 엄벌함 171
 - － 해양의 折受를 모두 혁파토록 지시함

□ 경오(庚午 1750年, 英祖 26年)

- 1월 2일 勘定官 등이 탄 倭 大船 3척이 公作米 載去次 出來함 172
 - － 倭船들이 館守裁判倭 등의 私書 및 公作米 등을 齎持하여 入歸함
 - － 賣買振興事로 規外 出來한 倭 勘定官을 入送할 것을 館守倭에게 책론함
 - － 倭船을 失瞭한 다대포 監色과 問情을 소홀히 한 옥포倭학을 治罪하기로 함
 - － 被執物貨가은 9,450냥을 開市에 捧出함
- 1월 6일 출발 시각을 잘못 보고한 한 倭인을 治罪토록 館守倭에게 嚴責함 ... 174
 - － 館守倭는 발선시각을 잘못 보고한 倭인을 대마도에 통보하여 從重論訂하기로 함
 - － 問情을 소홀히 한 부산진 邊情次知 등을 決棍하기로 함
- 2월 30일 春社日에 館噓 등의 父祖墳塚 往省에 潛行하지 못하게 함 176
- 4월 11일 倭인 1명이 병으로 사망함 176
- 5월 1일 倭船들이 공장미 등을 齎持하여 入歸함 176
 - － 從倭 2명이 병으로 사망함
 - － 倭 飛船 3척이 館守裁判倭 에게 보내는 私書와 生銅 500근을 싣고 出來함
 - － 당년조 제1선부터 17선 까지 서계와 별쪽을 가지고 出來함
 - － 商船을 倭船으로 잘못 보고한 봉군을 治罪하기로 함
 - － 書契 중 宜廟의 初諱는 避諱하지 않고 依禮捧上 入送함
- 5월 11일 倭관수리공사가 遲延되어 監董譯官 등을 決棍하기로 함 178
 - － 倭관 수리를 빨리 끝내도록 경상감영과 동래부에 지시함
- 5월 28일 倭인 2명이 병으로 사망함 179

		－ 倭船 2척이 生銅 3,000근을 싣고 公作米 載去次 出來함 － 倭船의 形址 보고를 지연한 機張縣 邊情次知色吏를 徵罪하기로 함 － 倭 飛船 1척이 館守倭에게 보내는 私書を 가지고 出來함	
○		東萊府接倭節目	
○ 6월	18일	倭官 수리 지연 책임을 물어 관련자를 처벌하기로 함	183
○ 6월	19일	倭船 3척이 出來함	184
		－ 倭인 1명이 병으로 사망함	
○ 7월	11일	倭船 2척이 出來함	184
		－ 倭船 2척의 時각을 題論하지 않은 加德鎭 望將 등을 治罪하기로 함	
		－ 倭船 1척이 公作米 載去차 出來함	
		－ 規外路引을 退却불봉함	
○ 7월	19일	예조에서 本曹 郎廳 등을 褒貶함	185
○ 7월	29일	동래부사 趙載敏이 到任함	186
		－ 倭 소선 2척이 각각 은화 3,000냥씩을 싣고 出來함함	
		－ 違格路引을 退却불봉하고 改서정납토록 策論함	
		－ 잘못보고한 烽군을 治罪하기로 함	
○ 9월	8일	倭 소선 1척이 館守倭에게 보내는 私書を 가지고 出來함	187
		－ 公作米 齎持하여 入歸하던 倭船이 풍랑을 만나 돌아옴	
		－ 수호차 나섰던 倭 소선 1척이 파손하여 침몰됨	
		－ 風勢大作時	
		－ 倭船 4척이 바위에 부딪쳐 파손됨	
		－ 館守倭가 파손된 선척의 자취를 조사하도록 부탁함	
		－ 상황보고를 잘못된 通事를 結곤하기로 함	
		－ 倭인 1명이 병으로 사망함	
		－ 秋社日에 館守倭 등이 祖先墳塚에 往省함	
		－ 倭 대선 2척이 公作米를 싣고 다시 入歸함	
		－ 違格路引을 退却불봉하고 改서정납하도록 策論함	
		－ 倭船을 실료한 大대포 차지감색 등을 治罪하기로 함	
○ 9월	8일	掌樂院에서 日守債 탕감을 요청함	190
		－ 掌樂院의 日守債 탕감 요청을 따를 수 없음을 알림	
○		倭官 수리시 재목과 물방을 보급하고 물이 얼기 전에 일을 마치도록 신칙함	
○ 9월	10일	諸官家와 各衙門의 魚鹽船稅 收捧을 금함	192
○ 9월	11일	慶尙左水營의 暴風雨 및 海溢 피해 내역	192

- － 폭풍우가 심하므로 右水營과 甘浦 등의 戰艦 30여척을구호하도록 함
- － 사라진 倭船 2척이 부근에 漂着하였는지 수색하도록 함
- － 파손된 선바재를 수합하여 補船에 쓰도록 지시함
- － 1戰船이 파손된 豆毛浦의 戰船次知監色 都船直 등을 決棍하기로 함
- 9월 23일 新館守倭 平致信 등이 出來함 195
- －倭船 時 실료한 黃령산봉군을 治罪하기로 함
- 9월 25일 新館守로 平致信을 임명하는 對馬島主 平義如의 書契 및 別幅 196
- 對馬島主 平義如가 동래부사와 부산첨사에게 보내는 서계와 별폭
- 新館守 平致信에게 주는 回禮雜物單子
- 11월 20일 漂倭 問情시 실수한 별장 처벌을 번고한 동래부사를 추고함 197
- 12월 6일 倭관 수리시 8송사 停止謝意를 1특송사 回答書契에 添入하도록 함 198
- 12월 12일 倭船들이 別代官倭 卜物 및 公作米 등을신고 入歸함 198
- － 公作米 입급을 신칙한데 대해 對馬島 奉行 等夷對馬島主를 대신하여 呈納함
- － 차후에는 봉행이 도주를 대신하여 정납하지 말 것을 책론함
- 日本 對馬州 奉行 平如敏 등의 感謝呈書
- 12월 15일 대마도 봉행 등의 정서에 대한 回答草稿를 承文院에서 撰出하여 下送하게 함 200
- 12월 17일 倭船 6척이 生銅과 은화를 신고 出來함 200
- － 倭船 時 실료한 諸鎭萬戶 및 烽軍을 결곤하도록 함
- － 直渡 倭船을 捕執하지 못한 舊助羅逋 萬戶를 처벌하기로 함

국역 전객사별등록

제 8 책

□ 신미(辛未, 1751年, 英祖 27年)

- 1월 15일 倭 飛船들이 卜物과 館守倭 私書 등을 가지고 入歸함 드 203
- － 동관 監董次知倭 등의 倭船이 公作米 등을 신고 入歸함
- － 동서倭관 중 동관은 수리가 완료되었고 서관은 수리중임여 漂泊함
- 倭 飛船 1척이 出來하
- 1월 22일 館守倭에게 보내는 私書를 지닌 飛船 1척이 出來함 204
- 2월 10일 倭 飛船 및 소선들이 卜物과 館守倭 私書 등을 가지고 入歸함 204
- － 被執物貨가은 10,000냥을 開市에 捧出함

		- 對馬島主가 교역 증대를 위해 조선측에서 商賈들을 申飭해 주도록 청함 - 대마도주의 세를 退却불봉함 - 倭 飛船 1척이 館守倭 私書を 가지고 入歸함 - 교역 증대를 원한다면 은화를 많이 가지고 오도록 요구함	
○ 3월	5일	漂流 倭船 哨探將과 領護將을 差送하는 규칙을 정함	206
○ 3월	24일	規外 出來한 倭船을 속히 還送할 것을 館守倭에게 책론함	207
		- 倭船을 실료한 봉군과 보고를 누락한 次知監色을 治罪하기로 함 - 問情을 소홀히 한 옥포倭학을 査問함 - 대마도주가 蔘品을 늘어줄 것을 청하는 서계를 올림 - 造蔘을 嚴禁할 것을 각별히 申飭하도록 함	
○ 3월	25일	대마도주의 서계를 許捧하고 造蔘의 弊를 嚴禁할 것을 申飭함	210
○ 4월	2일	倭船 時 풍랑 때문에 西平浦 萬戶가 領護에 실패	211
		- 倭인의 誤報로 飛船 소재 倭인의 명수와 路引이 相左함 - 倭船 領護실패와 問情 소홀의 책임을 물어 多大浦 僉使 등을 결관하기로 함	
○ 4월	5일	倭 飛船 5척이 公作米와 館守倭 私書を 신고 入歸함	212
		- 倭船 問情을 소홀히 한 옥포倭학을 논죄함 - 宜廟初諱는 正諱와 다르므로 이를 범한 서계를 捧上上送함	
○		의묘초취를 犯한 서계를 輕先 上送한 동래부사를 從重推考하기로 함	
○ 4월	7일	동래부사를 추고하지 않기로 함	214
○ 4월	17일	造蔘者와 商譯輩의 和應賣取를 嚴禁하도록 신칙함	214
○		대마주가 조삼을 청하는 서계를 올림	
		- 회답서계를 承文院에서 撰出 上送하도록 함	
○ 5월	8일	倭 飛船 1척이 館守倭에게 보내는 私書와 生銅 1,200근을 신고 出來 함	216
		- 倭船 2척이 公作米를 나누어 신고 入歸함 - 倭船 問情을 소홀히 한 옥포倭학을 治罪하기로 함	
○ 5월	23일	倭인 禮單蔘價가 너무 적어 獄蔘契人들의 造蔘이 불가피함	217
○ 6월	24일	倭船들이 公作米를 신고 入歸하다 풍랑을 만나 蔚山 軍令浦에 漂泊함	218
		- 倭船들이 公作米 載去차 出來함 - 倭船들이 公作米와 館守倭 私書 등을 식고 入歸함 - 울산 군령포에 표박하였던 倭船이 다시 入歸함 - 倭 舊關白 源吉宗이 사망하였음을 알려옴 - 舊關白 사망에 따른 거행절차 문답	

- － 日本國法에 公事は 50일간, 開市는 5일간, 거행하지 않는다 함
- 7월 1일 倭 대선 1척과 飛船 1척이 公作米 載去차 出來함 221
 - － 倭 舊關白 源古宗이 사망하였음을 館守倭가 알림
- 7월 10일 동래부사 南倭嘯가 館守倭 등과 賓主之禮를 갖추수 없다고 遞職을 청함 · 222
 - － 동래부사 남태기의 체직을 허락함
- 7월 15일 倭船 出來 보고를 지연한 訓導 別差를 결곤하기로 함 222
- 8월 1일 倭船들이 公作米를 싣고 入歸함 223
 - － 百種節日 관倭의 祖先墳塚 완성에 縱行하지 못하도록 신칙함
 - － 丙寅條 以酌庵送使선 등이 生銅을 싣고 公作米 載去차 出來함
- 9월 19일 造蔘 防止를 위해 倭人禮單蔘價를 加給하고 江界蔘을 加하도록 함 · 224
- 9월 29일 倭인들이 禮單蔘品을 논함을 막지 못한 別差, 상역배를 벌하도록 함 · 225
- 예단삼 보충을 위한 折蔘貿來輩를 비변사에서 稟處하도록 함
- 11월 10일 倭船이 館守倭 私書를 가지고 入歸함 226
 - － 倭관 동서관우 훼손처를 각별히 살피도록 신칙함
- 12월 9일 賢賓官 喪逝 후卒哭 전에는 接倭時 妓樂을 사용하지 않도록 함 227
- 12월 12일 예조에서 본조 및 소속 衙門의 辛未年 秋冬喪賑等第 시행여부를 보고함 ... 228
- 12월 18일 倭관 동서관우 훼손처를 각별히 살피도록 신칙함 229

□ 임신(壬申, 1752年, 英祖 28年)

- 3월 20일 戶曹判書 金尙星이 禮單蔘 마련을 위해 江蔘 許貿를 건의함 229
- 4월 參弊를 바로잡기 위해 戶曹의 黃帖없는 江階蔘 私賣買를 금함 230
- 4월 8일 倭船 3척이 生銅과 은화를 싣고 公作米 載去차 出來함 232
 - － 王世孫 薨逝 후 接倭節次를 정함
- 3월 倭관 수리비용 마련을 위해 동래부의 公作木과 儲置米를 作錢 貿鹽 하기로 함 234
- 4월 22일 左水營 三浦堂 革罷 후 漂佐 倭船 哨探將 및 護送將 差定月式을 개정 하기로 함 235
- 參弊 變通을 위해 禮單蔘價를 증액하기로 함
- 6월 동래부에서 예조에 倭物進上을 看品하여 上送함 237
- 仁祖의 御押을 바친 역관 李澤基를 施賞하기로 함압을 비친
- 禮單蔘品을 높이기 위해 江蔘節目을 變通하고 潛商을 엄금토록 건의함
 - － 造蔘의 弊를 엄금하도록 傳敎함
- 造蔘을 放置한 前戶判 金尙星을 從重推考하도록 傳敎함

- 造蔘을 首唱한 貢人을 島配할 것을 傳敎함
- 통신사행시 獄參契人의 禮單參을 모두 捧入하도록 傳敎함
- 掌樂院에서 智惡取才를 依例施行토록 함
- 北營의 貿參事를 위해 本營의 劃印軍官 대신 戶曹의 算官을 下送토록 함
- 下參 80근을 新折價 3대로 貿取上送하도록 江界府에 지시함
- 倭官 商譯輩들의 上 蔘 독점 방지를 위해 上삼피집을 엄금하도록 함
 - － 江蔘變通節目에 따라 北蔘收稅問題를 變通하도록 함
 - － 北蔘賣買者는 監營에 1/10稅를 내고 公文을 成給받도록 함
 - － 監營의 公文없는 私買者는 모두 潛商律에 의거하여 押收하도록 함
- 潛商 禁止시키기 위해 要路에 畿察將校를 상주시키도록 함
 - － 畿察將校에게 押收蔘貨 중 一采를 시상하게 함
- 동래부에서 傳敎에 따라 被執蔘 중 江蔘 北蔘을 上送함
 - － 茶蔘은 宴禮 중이므로 盡數上送하지 못한다고 보고함
 - － 禮單을 入給하지 않아 差倭가 過限 후에도 체제학 있음을 아림
- 동래부에서 稅蔘과 商譯輩蔘을 접위관 예단에 우선 充當할 것을 아림
 - － 차후로는 獄蔘契蔘을 예단에 封入하지 말도록 함
- 8월 2일 倭船들이 公作米와 館守裁判倭 私書를 신고 入歸함 248
 - － 倭船 3척이 公作米 載去차 出來함
 - － 동서倭관을 적간하고 훼손처가 없음을 확인함
- 9월 25일 倭船 領曳時 기록을 누락한 長木浦 萬戶를 엄벌하도록 250
 - － 倭船 1척이 公作米를 신고 入歸함
 - － 금년 秋規을 10월 7일에 設行하기로 함
- 10월 22일 倭 대선 2척이 公作米 載去차 出來함 252
 - － 規外 出來한 再渡海船을 속히 입송토록 館守倭에게 責問함
 - － 옥포 留鎖將을 옥포 萬戶라 誤記한 多大鎖 色吏를 治罪하기로 함
 - － 倭 대선 1척이 公作米를 신고 入歸함
- 11월 8일 倭船 1척이 公作米를 신고 入歸함 253
 - － 倭 飛船 2척이 館守裁判倭 등의 私書와 別代官倭의 卜物을 신고 入歸함
 - － 故裁判差倭 平如親의 進上肅拜는 封進倭가 대행하도록 함
 - － 固城 漂民領來差倭의 書契에 寶曆年號를 사용하므로 동래부에 留置함
- 11월 18일 倭船 1척이 公作米를 신고 入歸함 254
 - － 漁商船을 倭船으로 오인 보고한 干飛鳥 봉군을 治罪하기로 함
 - － 金海漂民領來差倭 藤之明 員役을 위한 下船禮를 設行함

- 동서倭관제처를 적간하고 웨손처가 없음을 확인함
- 寶曆 年號를 사용한 路引 서계 별폭 등을 監封上送함
- 서계 중 宜諱의 初諱는 正諱와 다르므로 依例 上送함

□ 계유(癸酉, 1753年, 英祖 29年)

- 1월 9일 交代 館守倭 등이 탄 倭船 4척이 出來함 257
 - 館守倭에게 보내는 私書 倭船 2척이 出來함
 - 栗浦에 止泊한 倭 소선 1척이 問情 전에 移泊한 일을 査問토록 지시함
- 1월 11일 新館守倭 등이 交代次 出來함 261
 - 栗浦에 止泊한 倭 소선 1척이 問情 전에 移泊한 일을 조사토록 함
 - 倭船을 失瞭한 봉군 및 止泊 日時를 거론하지 않은 옥포倭학을 治罪하기로 함
 - 對馬島主承襲告慶大差倭 등이 公作米를 신고 入歸함
 - 進獻物件이 過限되므로 米木을 畢給할 수 없음을 館守倭에게 책문함
 - 館守倭 등이 대마도주 사망으로 生銅鑠鐵 및 進獻物件 마련이 늦어짐을 사과함
 - 公作米는 依例畢給하고 進獻物件 및 公貿銅鐵을 재촉함
- 2월 對馬島主 平義審이 新館守로 平久敬을 임명함을 알리는 서계 266
 - 對馬島主 平義審이 예조에 보내는 별폭
- 對馬島主 平義審이 동래에 보내는 별폭
- 對馬島主 平義審이 부산에 보내는 별폭
- 2월 28일 單蔘을 點退하고 好品으로 換給해 달라는 差倭의 청을 거부함 267
 - 換蔘 요청을 접수한 동래부사 등을 治罪토록 지시함
- 3월 23일 倭인의 單蔘點退로 호조판서 이하 관원과 造蔘人 등을 治罪토록 함 .. 268
 - 商譯이 單蔘을 말하면 弊가 더 커질 것이라 전교함
 - 倭人の 單蔘點退 책임을 물어 호조판서를 파직하기로 함
- 4월 11일 規外 出來한 裁判差倭 橘如棟을 일단 許接하기로 함 270
 - 재판차倭에 대한 回答書契를 成送해 줄 것을 청함
- 4월 14일 約條 外の 別使出送을 금하는 회답서계를 撰出下送케 함 271
 - 회답서계 및 동래 부산의 答書草稿를 承文院에서 撰出下送케 함
 - 差倭에 대한 別幅回禮物目
 - 特敎 후에도 變事를 거행하지 않는 호조판서를 從重推考하기로 함
- 4월 20일 壬申條 送使船의 未出來 연유는 舊島主 사망 때문이라 함 272

- － 壬申條 未送出來使船을 정지하고 明年 送使時 검대케 함
 - － 송사 정지를 임의로 처리한 任譯官을 논죄하기로 함
- 女人 囚禁을 금하도록 다시 신칙함
 - － 新任 島主가 차倭를 보내 圖書를 요청함
 - － 차倭 問情時 소홀히 한 別差를 논죄하기로 함
- 5월 9일 單蓼 入給時 任譯輩와 潛商의 中間 操艇 防止案을 논함 276
 - － 禮單蓼을 여전히 點退하던 訓導 別差 2인을 曉示하기로 함
- 新任 島主의 圖書를 가지고 갈 禮曹書史의 騎馬 1필 題給을 청함
- 5월 7일 別差 橘如棟의 서계에 대한 회답을 承文院에서 撰出케 함 276
 - － 別差患 橘如棟에 대한 回禮之物을 島主還島告知差倭의 예에 따라 마련 下送케 함
 - － 別差倭 橘如棟을 裁判倭의 예에 따라 접대하도록 함
- 差倭 橘如棟에 대한 別幅回禮 및 禮單雜物을 다시 마련 下送케 함
 - － 差倭 橘如棟에 대한 別幅回禮物目
- 壬申條 以酇菴宋使 부터 副特送使 까지 정지하겠다는 대마도 奉行의 서계
 - － 동래 부산의 回答書契를 承文院에서 撰出下送케 함
- 5월 27일 계유조 제1송사선이 단목을 신고 公作米 載去차 出來함 279
 - － 倭 飛船 2척이 生銅과 館守裁判倭 私書를 가지고 出來함
- 6월 11일 차倭에 대한 回書를 裁判倭의 예에 따라 改書下送하기로 함 280
 - 承文院에서 回答書契를 改書下送하도록 함
- 7월 23일 單蓼價來價를 1근당 120냥으로 하기로 함 281
- 8월 15일 倭船 2척이 問情을 거부하고 바로 左道로 향함 283
 - 倭船을 捕執하지 못한 助羅浦 萬戶를 결곤하기로 함
- 9월 6일 倭船들이 館守裁判大差倭 등의 私書 및 公作米 등을 신고 入歸함 ... 283
 - － 부산진 첨사가 제선을 이끌고 추접에 참가함
 - － 倭 飛船들이 館守裁判大差倭에게 보내는 私書와 別대관倭 卜物을 신고 出來함
 - － 秋社日에 館守倭 등이 祖先墳塚에 往省하도록 함
- 11월 21일 裁判倭 橘如棟 駕船 1척이 公作米 載去차 出來함 286
- 12월 13일 黃海監司營에서 漢學能通者를 譯學으로 각별히 差送할 것을 요청함 .. 287
- 12월 16일 倭역과 인삼상인의 삼가조정을 엄금하라고 하교함 287
- 12월 28일 계유조 제3특송사 2호선 등 倭船 4척이 公作米를 신고 入歸함 288

－ 當年조 公作米 16,000석 入給을 마침

□ 影印本 『典客司別謄錄』 第7冊	291
□ 影印本 『典客司別謄錄』 第8冊	435
□ 『국역 전객사별등록』 (IV) 찾아보기	531

국역 전객사별등록 해제

김 동 철
(부산대학교 사학과)

차 례

1. 『전객사별등록』 개관
2. 『국역 전객사별등록』 (1) 개관
3. 『국역 전객사별등록』 (1)의 주요기사 내용 검토
4. 『국역 전객사별등록』 (II) 개관
5. 『국역 전객사별등록』 (II)의 주요기사 내용 검토
6. 『국역 전객사별등록』 (III) 개관
7. 『국역 전객사별등록』 (III)의 주요기사 내용 검토
8. 『국역 전객사별등록』 (IV) 개관
9. 『국역 전객사별등록』 (IV)의 주요기사 내용 검토

[참고문헌]

1. 『전객사별등록』 개관

『전객사별등록』은 예조 전객사에서 편찬한 책으로, 현재 8책만 남아 있다. 현재 전해지는 책의 제1책에는 표지에 「별등록 제2(別騰錄 第二)」라고 표기되어 있다. 따라서 원래 원본은 모두 9책인데, 현재 제1책은 전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원본은 필사본으로 책의 크기는 41×26cm이다.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도서번호 奎 12961)에 소장되어 있다. 왜선(倭船)이 대마도에서 조선으로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상황, 일본과 교역한 각종 공사(公私) 무역의 내용, 일본과의 교섭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 등 1699년(숙종 25, 기묘) 윤7월부터 1753년(영조 29) 12월 사이에 일어난, 17~18세기 한일관계의 제반 업무 및 왕명으로 실시된 다른 부서와의 관련 업무 등을 전객사(典客司)에서 기록한 등록이다.

전객사는 예조에 속한 관청, 즉 속사(屬司)이다. 1405년(태종 5) 육조 속사제가 정립될 때 예조 속사로 설치되었다가,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으로 폐지되었다. 『경국대전』 이전(吏典)에 의하면, 예조에 속한 관청으로는 계제사(稽制司), 전향사(典享司), 전객사(典客司) 세 속사가 있었다. 이 가운데 전객사는 중국·일본·여진 등 사신의 접대와 조공, 외국인에 대한 접대와 이들에 대한 왕의 하사품 등에 관한 일을 맡아 보았다. 즉 조선시대 대외관계 실무를 총체적으로 관장하는 부서였다. 고종 때 편찬된 『대전회통』에도 “야인[여진]에 대한 영접은 지금은 폐지되었다.”는 조항이 붙어 있을 뿐, 나머지는 『경국대전』과 같은 내용이다. 따라서 전객사 기능은 폐지될 때까지 지속되었다.

현재 남아 있는 8책의 『전객사별등록』 수록 시기를, 원본 책별로 나누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1책: 1699년(숙종 25) 윤7월~1718년(숙종 44) 7월

제2책: 1720년(숙종 46) 7월~1736년(영조 12) 11월

제3책: 1737년(영조 13) 3월~1742년(영조 18) 12월

제4책: 1743년(영조 19) 1월~1744년(영조 20) 12월

제5책: 1745년(영조 21) 1월~12월

제6책: 1746년(영조 22) 1월~12월

제7책: 1747년(영조 23) 1월~1750년(영조 26) 12월

제8책: 1751년(영조 27) 1월~1753년(영조 29) 12월

『전객사별등록』에 수록되지 않은 1699년 윤7월 이전과, 1754년(영조 30) 이후의 일본과의 교섭 내용은 『전객사일기』에 수록되어 있다.

『전객사별등록』은 1992년 12월 서울대학교 규장각에서 「규장각자료총서 금호시리즈 대외관계편」이란 이름 아래, 3권으로 영인 출간되었다. 영인본 제1권에는 원본 제1~3책, 제2권에는 원본 제4~6책, 제3권에는 원본 제7~8책이 수록되어 있다. 규장각 영인본에는 원본의 내용을 날짜별로 간단하게 요약한 내용을 목차에 싣고 있어서, 『전객사별등록』 내용의 윤곽을 파악하기에 대단히 편리하다. 그리고 영인본에는 오수창(吳洙彰)의 상세한 해제가 실려 있어서, 책의 구성과 체제, 내용, 사료적 가치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2. 『국역 전객사별등록』 (1) 개관

『국역 전객사별등록』 (1)은 1699년(숙종 25, 기묘) 윤7월에서 1736년(영조 12, 병진) 11월 22일까지의 내용을 번역한 것이다. 현존하는 원본의 제1책과 제2책, 즉 규장각 영인본 『전객사별등록 1』의 1~486쪽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규장각 영인본에는 날짜별로 내용을 요약한 요약문을 목차에 싣고 있다. 그리고 같은 날짜에 수록된 기사라도, 원본에서 문두(文頭)에 ‘一’이라는 글자를 붙여 구분하여 시작되는 기사는 독립된 기사로 처리하여 별도의 목차를 달고 있다.

원본에 있는 날짜별 기사항목을 한 건으로 보고, 연도별 기사항목의 건수(件數)를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단 동일한 날이라도 따로 명기되어 있으면, 규장각 영인본 목차에서 정리한 것처럼 다른 건으로 처리하였다.

<표 1> 『국역 전객사별등록』 (1)의 연도별 기사항목 수

연도	1699	1700	1701	1702	1703	1704	1705	1706	1707	1708
항목수	2	9	12	10	8	4	2	5	0	11
연도	1709	1710	1711	1712	1713	1714	1715	1716	1717	1718
항목수	7	8	7	2	2	1	1	0	10	4
연도	1719	1720	1721	1722	1723	1724	1725	1726	1727	1728
항목수	0	4	6	3	2	3	3	6	4	5
연도	1729	1730	1731	1732	1733	1734	1735	1736		합계
항목수	12	3	5	5	13	15	5	8		207

<표 1>에서 보는 것처럼, 각 연도별 항목의 수는 상당한 편차가 있다. 1699년에서 1736년의 38년 동안, 1707, 1716, 1719년의 3년은 기사항목이 없다. 1건인 해가 2년, 2건인 해가 5년, 3건인 해가 4년이다. 3건 이하인 해가 14년으로 전체의 삼분의 일 이상을 차지한다.

『국역 전객사별등록』(1)의 첫 기록은 기묘(己卯, 숙종 25, 1699) 윤7월 18일 조이다. 기사의 내용은 <동래부사 정호(鄭浩)가 7월 27일에 성첩(成貼)한 장계 내용>과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啓目)에 대한 계하(啓下) 내용>의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 <동래부사 정호가 성첩한 장계 내용>은 ㉠ 일본 살마주(薩摩州)에 표류한 제주도 표류민의 시신과 생존자의 송환 문제, ㉡ 공작미(公作米)와 공목(公木) 가운데 한 가지로 지정하는 문제, ㉢ 웅천(熊川) 표류민을 데려오는 차왜(差倭) 등정중(藤貞重)에게 보낸 회답 서계(書契) 내용의 일부에 대한 수정 요구 등이 내용의 중심이다. 특히 서계의 수정 문제는 조정에 보고하여 분부를 받아 회답하는 것이 도리이므로, 그들이 청하는 대로 보고하는 장계를 올린 것이다.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은 ㉠ 제주도에서 표류한 사람 두 명의 사체(死體)를 찾아가라는 내용의 예조 관문(關文)을 제주목(濟州牧)에 발송, ㉡ 재판차왜를 전례대로 접대하기 위해 접왜관(接倭官)을 차출하여 정하라는 내용을 경상감사에게 알리고, 증정하는 예단(禮單) 잡물은 전례에 따라 마련하여 내려보내고, ㉢ 표류민 원적(原籍)의 관원인 웅천현감은 담당 부서에 명하여 엄중하게 조사하여 징계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내용이다. 그대로 시행하라는 임금의 윤허가 있었다.

이처럼 각 항목별 기사에는 표류민 문제, 공작미 문제 등 당시 양국 사이에서 해결해야 할 다양한 현안 문제가 수록되어 있다. 이 가운데 주목되는 내용을 몇 가지 주제로 나누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 『국역 전객사별등록』(1)의 주요기사 내용 검토

① 새 은화[新銀] 통용 등 은화 문제

『국역 전객사별등록』(1)의 세 번째 기사인 경진년(1700) 1월 20일조 기사는 새 은화[新銀] 통용에 관한 회답 초고의 수정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대마도주가 새 은화 일로 보낸 서계에 대한 회답 서계 가운데, 일본에서는 새 은화를

통용하는 규정에 수량을 더하여 계산하는 일이 없는데, 도주가 조선에서 새 은화 통용을 허락하지 않을까 염려하여 수량을 더하는 일을 임시로 시행하였으나, 서계 끝 부분에 「품질이 낮은 것은 수량을 더한다[劣品加數]」는 데서부터 「끝내 반드시 가짜가 늘어날 것[終必滋僞]」이라는 등 부분은 모두 삭제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조선에서는 이번 서계는 고쳐주지 말고, 앞으로 일의 형편을 보고서 조치를 하도록 하였다.

이 새 은화[新銀] 통용 등 은화와 관련된 문제는 「새 은화의 일로 동래부사와 훈도·별차를 잡아와 심문하고 첩시[撤市]함」(1700.5.2), 「새 은화 일 및 개시 일로 여부를 묘당에 명하여 품의 조처하는 일」(1700.8.11), 「황력은(皇曆銀)을 재촉하는 일」(1701.8.19), 「보자은(寶字銀)을 통용하자는 대마도주의 서계」(1708.3. 4)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1701년 9월 15일, 12월 17일, 1711년 5월 12일, 6월 27일, 7월 2일, 12월 18일, 1731년 12월 12일, 1732년 9월 3일, 1733년 5월 23일, 6월 28일, 12월 22일 기사에도 은화 관련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은(銀) 산출량이 풍부하고 품질이 뛰어난 은 생산에 힘입어 에도(江戸)막부가 처음 주조한 은화인 경장(慶長) 정은(丁銀)은 순도 80%의 고품위 통화였다. 10% 정도는 일본 국내에 유통되고, 90% 정도는 국외로 유출되었다. 일본과 조선과의 교역에서도 이 은이 통용되었다. 에도막부 5대 장군 쓰나요시(綱吉) 때인 1695년에 화폐 개주(改鑄)를 단행하여 순도 64%의 원록은(元祿銀)을 새로 주조하였다. 이 은은 경장과 구별하기 위해 ‘원(元)’자를 찍었다. 그래서 원은(元銀)이라고도 한다. 경장은[古銀]과 원록은[新銀]이 통용되게 되었다.

조선과 일본의 교역에 사용된 은은 순도 80%의 은이었다. 이 경장은(慶長銀)은 1611~1697년에 사용되었다. 순도 64%의 원록은(元祿銀)이 통용되면서 교역에 큰 혼란이 일어났다. 대마도는 잠시 이 사실을 조선에 숨기기로 했다. 그러나 2년이 한계였다. 순도가 높은 경장이 점차 자취를 감추자, 대마도는 악화인 원록은을 교역용으로 인정받도록 하는 수밖에 없었다. 우여곡절 끝에 1700년부터 원록은이 교역은(交易銀)으로서 정식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 순도 64%의 원록은이 1697~1712년에 양국 교역에 통용되었다. 그런데 1706년에 일본 막부는 다시 순도 50% 은화를 만들었다. 1710년, 1711년에 은화의 악주(惡鑄)를 거듭하여 순도가 20%까지 떨어졌다.

순도가 낮은 은이 통용되기 위해서는 그 부족한 순도만큼 은을 더 지급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원록은에 대한 평판이 나빠서 조선상인은 원록은을 받

기를 거부하였다. 이로 인해 교역이 악화되자 이를 타개하기 위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였다. 대마도는 막부와 의 끈질긴 교섭 끝에, 「조선의 인삼을 사오기 위하여 특별히 과거와 같은 품위(80%)로 주조한 은」이라는 뜻의 「인삼대 왕고 은(人蔘代往古銀)」을 주조하게 되었다. 1710년 9월 27일의 일이다. 이 사실은 극히 일부의 막부관료와 은좌(銀座) 담당자만 알고 있었을 뿐, 일반에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오직 조선과의 무역용으로서 대마도에만 전달되었다. 그래서 이 특별히 만들어진 특주은(特鑄銀, 人蔘代往古銀)이 1712~1715년에 사용되었다. 그리고 1716~1738년에는 순도 80%의 정덕은(正德銀), 향보은(享保銀)이 통용되었다.

대마도에서 왜관으로 은을 수송하는데는 은선(銀船)이라는 작은 전용선을 사용하였다. 이 은선의 움직임은 월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대마도에서는 7월과 8월에 조선으로 싣고 가는 은을 황력은(皇曆銀), 10월과 11월에 싣고 가는 은을 동지은(冬至銀)이라 불렀다. 일본에서 수입한 은은 대부분 중국에 수출되었다. 중국에 수출되는 은은 중국에 가는 정기사행이 가지고 갔다. 중국의 역(曆)을 받으러 가는 사행인 역자행(曆咨行)은 8월에 한양을 출발하여 11월에 귀국하였다. 이 역자행이 가지고 가는 은이 황력은이다. 동지행(冬至行)은 11월에 출발하여 신년 하례 등 정례적인 의례를 치른 다음, 이듬해 4월 경에 귀국하였다. 이 동지행이 가지고 가는 은이 동지은이다.

이처럼 은화는 조선과 일본과의 교역뿐만 아니라, 조선의 중개무역으로 일본과 중국을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무역품이었다. 은화 관련 기사는 경장은[舊銀]에서 원록은[新銀]으로의 전환, 신은에서 구은으로의 복귀, 순도 50%의 보자은(寶字銀) 통용문제, 황력은 문제 등 왜관에서 이루어진 은화의 통용과 그를 둘러싼 양국 사이의 마찰 양상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② 일본인 남성과 조선인 여성과의 매매춘(賣買春)

왜관은 일본인 여성의 거주나 조선인 여성의 출입이 금지된 남성만의 공간이었다. 조선인 여성이 왜관에 몰래 들어가서 일본인과 성관계를 갖거나, 일본인 남성이 왜관을 몰래 나와서 조선인 여성과 성관계를 갖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였다. 『숙종실록』(1675년 5월)의 기록에는 “왜관의 일본인이 마을을 몰래 드나들면서 부녀와 간음하니, 동래와 부산 사람 가운데는 왜산[일본인이 낳은 사람]이 많다(館倭 潛行閭里 奸淫婦女 東萊釜山之民 多倭產)”고 할 정도였다.

조선정부는 이러한 매매춘 행위를 잠간(潛奸), 범간(犯奸), 교간(交奸), 화간(和奸), 간음(姦淫) 등이라 불렀다. 매매춘 사실이 발각 되면 당사자는 물론 이

를 주선한 중개인도 사형이라는 극형을 당하였다. 그러나 일본인은 조선인과는 달리 대마도로 소환하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왜인이 우리나라 여인을 범하여 간통한 일을 양국 관원이 자리를 같이하여 조사 심문하는 일」(1708.1.16), 「교간한 시골 여인에게 왜인과 같은 법률을 적용함」(1708.윤3.11), 「우리나라 시골 여자와 간통한 왜인에게 같은 법률을 적용한다는 뜻으로 도중에 서찰을 보냄」(1708.10.5), 「범간왜인을 부산첨사와 관수왜가 같이 조사함. 간통을 범한 왜인 관계 서계를 전하지 못한 문위역관을 정배함」(1709.5.7), 「범간왜인에게 아국인과 동률로 적용하라고 요구하기로 함」(1709.6.5), 「간통을 범한 왜인의 일」(1709.7.24), 「서계에 간범왜인 일과 도서 일을 나누어 조사(措辭)하기로 함」(1709.12.11), 「범왜 축송 후 범간죄인을 처단하기로 함」(1710.6.14), 「왜관에 들어가 간(奸)한 순홍(順弘), 선양(善陽)을 효시하기로 하고 그 지포자를 논상함」(1726.6.27) 등 기사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1708~1710년에 관련 내용이 집중적으로 보인다.

1708년 1월 16일 기사 내용을 보면, 「왜인과 간통한 시골 여인과 동조한 사람 및 죄를 범한 왜인을 같은 법률로 처단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초량왜관의 관수왜(館守倭)는 왜인은 간통을 범한 일이 없는데 조선 사람이 거짓으로 자백했다고 주장한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1707년에 부장(部將) 송중만(宋中萬, 宋仲萬)이 조선인 여인 감옥(甘玉)을 데리고 왜관에 몰래 들어가서 일본인 백수원칠(白水源七)과 매매춘을 한 사건이다. 양자 모두 사형에 처할 것을 요구하는 조선측 주장에 대하여, 왜관의 관수왜는 이를 거부하였다. 이 문제는 1708년 최상집을 당상관으로 하는 문위행(問慰行) 때 해결, 교섭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문위행은 예조 서계를 대마도에 정식으로 제출하지 못하고, 대마도측의 답서도 받지 못한 채 귀국하였다.

동래부사 권이진(1709.1~1711.4)은 5차례나 장계를 올리는 등 강경하게 대응하였다. 『전객사별등록』에 수록된 1709년 5월에서 1710년 6월까지의 5건 기사는 이를 반영한 것이다. 권이진은 양자를 동률로 처단하라는 예조의 서계를 수리하지 않고, 또한 답서도 발송하지 않는 대마도측의 변칙적인 대응에 대해, 외교 의례의 기본을 무시한 무례한 행위라고 비난하면서, 당사자의 심문보다 대마도주의 답서 제출을 일관되게 주장하였다.

결과적으로는 백수원칠(白水源七)은 1709년 9월 대마도로 보내진 후, 「죄상은 불분명하지만 양국에 분쟁을 일으켰다」는 죄명으로 유죄(有罪) 처리되었다. 그

리고 감옥(甘玉)과 송중만은 1710년 7월 왜관의 수문 밖에서 처형되었다.

대마도의 답서 불급과 백수원칠(白水源七)의 처리에 불만을 품은 조선정부는 「매매춘을 할 경우 양자를 동물로 처리한다」는 것을 약조로 규정하는 것을 1711년 통신사(정사 조태역)의 임무로 삼았다. 통신사는 이 문제를 막부장군에게 직접 탄원하겠다고 주장하여, 마침내 1711년에 대마도와 동물로 처벌하는 내용의 범간약조(犯干約條, 交奸約條, 新定約條)를 체결하였다. 조약용은 「대마도 사람이 초량왜관을 빠져나와 여인을 강간한 자는 율문에 따라 사형에 처한다. 조선여인을 유인하여 화간한 자 및 강간 미수자는 영원히 유배에 처한다. 왜관에 잡입한 여성을 조선측에 통보하지 않고 교간한 자는 차를[유배]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1726년 6월 27일 기사는 「초량에 사는 사노(私奴) 순홍(順弘)이라는 남자가 부산에 사는 여인 선양(善陽)과 몰래 왜관으로 들어가서 일본인과 간통하고, 쌀 3말 5되와 은자(銀子) 4전을 받았으므로, 이들은 전례대로 효시(梟示)해야 하며, 순홍의 처 박조시(朴早時)는 남편 말만 듣고 데려오는 심부름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유배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이것은 초량에 사는 추순홍(秋順弘)이 처 박조이(朴召史, 박소사)를 시켜 부산에 사는 창녀(娼女) 김선양(金善陽)을 유인한 후 왜관에 데리고 들어가서, 일본인 무길작(武吉作)과 좌위문(左衛門)와 매매춘한 사건이다. 그 결과 추순홍은 왜관 문밖에서 처형되었다. 김선양은 사형을 감면받고 평안도에, 박조이는 전라도에 유배되었다. 일본인 두 명은 약조에 따라 영원히 귀양갔다.

1707년에 감옥(甘玉)과 백수원칠(白水源七) 사이에 일어난 매매춘 사건 이후 1711년 범간약조(犯干約條, 交奸約條, 新定約條)의 체결까지, 양국 사이에 일어난 매매춘 행위의 내용과 그 처리 과정을 상세하게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③ 초량왜관 건물의 수리와 조성

「왜관 수리 비용에 대한 논의」(1700.1.20), 「왜관 수리 감동관 김수구(金壽九)가 횡령한 금액을 조사하여 최대제(崔岱濟)에게 지급하고, 모자라는 비용은 영문(營門, 경상감영)에서 획급할 것」(1728.7.28), 「왜관 수리 감동인 역관 김수구와 유극신(劉克愼)의 죄를 논하고 빚진 돈을 징수하여 최대제(崔岱濟)에게 지급함」(1729.10.12) 등 기사 내용이다.

1700년 1월 20일조 기사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초량왜관의 서관 삼대청[동대청, 서대청, 중대청]의 동헌(東軒)과 서헌(西軒), 삼대청의 좌우 행랑,

동관의 재판왜가 등 건물이 기와를 비롯하여 손상된 곳이 많아 수리해야 되는 데, 근래 조선의 사정이 계속된 흉년으로 물자를 마련하기가 쉽지 않고, 또 공사를 시작하면 송사왜(送使倭) 등이 거처할 장소가 없으므로, 올해 구송사(九送使)는 보내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동래부사 조태동(趙泰東, 1698.9~1699.4) 재임 때, 관수왜가 왜인 목수를 불러와서 필요한 재목과 물자를 마련한 뒤에, 조선에서 비용을 지급하면 일본인 스스로 맡아 수리하겠다고 하였으나, 그 때 즉시 거행하지 않았다. 그후 관수왜와 대관왜 등이 필요한 물자를 계산해 보니, 은화 7,000여 냥 정도이고, 그밖에 일꾼[役軍], 기와, 산자(撒子), 외목(根木), 대나무, 쥘[藁草], 새끼줄[藁索], 숙마줄[熟麻索], 산마줄[山麻索] 등 잡물은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대한 조선측 입장은 은화 가격이 너무 많은데다, 일꾼, 기와, 잡물 등을 별도로 지급해 달라는 것은 매우 해괴하므로, 조선인이 힘써 수리하는 것이 낫다고 보았다. 그래서 차사원(差使員)과 감동역관(監董譯官)을 정한 후, 동래부의 감색(監色)과 공장(工匠) 등을 데리고 가서 수리할 곳을 살핀 후 필요한 재목과 물자를 마련하여 거행하도록 하였다.

초량왜관의 건물을 수리할 때 드는 비용이나 필요한 물자의 내용, 비용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일본과 조선의 입장 차이 등을 알 수 있는 자료이다.

1728년 7월 28일조 기사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관수왜가(館守倭家) 73칸, 대문 18칸, 중문 2칸, 개시대청(開市大廳) 60칸, 재판차왜가(裁判差倭家) 48칸, 대문 2칸, 중문 1칸 등 합계 204칸을 조선 조정에서 지급하는 저치미(儲置米) 1,550석으로 돈 7,000냥을 만들어 조성하게 하였다. 그런데 감동관(監董官) 김수구(金壽九) 등이 맡아 지으면서, 관수왜가 93칸만 조성하였다. 돈 7,000냥으로 93칸만 조성하였다면, 1칸에 75냥 정도의 비용이 든 셈이다. 이처럼 1칸에 75냥이나 비용이 들었다면, 이것은 김수구가 돈을 횡령한 때문이다. 그뿐 아니라 김수구는 새 집을 지으면서 현 집의 목재와 기와를 많이 사용하여 비용을 남기기도 하였다.

그래서 김수구 대신 최대제(崔岱濟)를 시켜 처음 계획했던 204칸 중 나머지 114칸을 짓게 하였다. 비용은 김수구가 횡령한 돈을 추징하고, 부족한 것은 저치미 5,000석을 마련하여 그 이자로써 충당하게 하였다. 그러나 경상감사가 각 읍에 저치미를 획급했으나, 각 읍에서 즉시 출급(出給)하지 않고, 시가(市價)도 가감이 없어 비용 마련이 용이하지 않았다. 그러자 최대제는 자기 돈으로 먼저 건물을 조성하고 나서 들어간 비용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최대제도 현 집의 목재와 기와를 많이 사용하였다. 조정에서는 최대제에게 조성 비용을 알맞게 지

급하게 하고, 부족한 부분은 경상감영에서 지급하도록 조치를 하였다.

1729년 10월 12일조 기사는 김수구 관련 내용이 보다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갑진일록(甲辰日錄)』 내용을 검토한 결과, 김수구가 저치미 1,550석으로 돈 6,975냥을 마련하였지만, 실제 비용으로 쓴 돈은 4,035냥 1전 4푼이었다. 그리고 왜장인(倭匠人)의 역가(役價)인 은화 363냥, 양식쌀[糧米] 30석은 아직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액수만큼은 김수구에게서 징수하여 최대제(崔岱齊)에게 주어야 했다. 또한 6,975냥 중 쓰고 남은 돈 2,939냥 8전 6푼은 모두 김수구에게서 징수해야 한다. 그런데 그 중 480냥은 역관 유극신(劉克愼)이 처음 대신 감독할 때 비용으로 쓰고 갚지 아니한 것이다. 이 480냥을 제하면 김수구가 실제 빚진 것은 2,459냥 8전 6푼이다. 이것은 마땅히 징수하고, 그 죄상을 엄중하게 처리해야 한다. 또한 한중억(韓重億)은 자신이 당상임역(堂上任譯)이면서 모두 김수구에게 위임하여 손실이 일어났으니, 자리만 차지하면서 잃어버린 죄를 면하기 어렵다.

최대제는 김수구가 일을 망친 후에, 스스로 비용을 마련하여 큰 역사를 완공하였다. 실제 사용한 경비가 3,441냥 1전 1푼인데, 저치미 1,100석으로 돈 3,300냥을 만들어 모두 계산하였다. 부족한 돈 141냥 1전 1푼은 변통하여 지급하는 것이 마땅하다.

김수구와 유극신은 국가를 속이고 재물을 도둑질하고 일을 망친 죄에 따라 엄중하게 처단하고, 한중억은 당상역관으로서 단속하고 감독하지 못한 죄를 추궁하여 엄중하게 처벌하도록 하였다.

초량왜관은 바닷가에 위치해 있어 바다 바람의 영향으로 건물 파손이 심하였다. 동관, 서관의 삼대청에 대한 수리는 25년마다 실시하는 대수리(대감동)와, 적절한 시기에 부분적으로 실시하는 소수리(소감동)이 있었다.

1728, 1729년 기사는 그 전에 이루어진 동관 삼대청(관수왜가, 개시대청, 재관왜가) 204칸의 수리 관련 내용이다. 수리공사의 책임을 맡은 감동역관이 직책을 남용하여, 다양한 형태로 중간에서 횡령하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왜관수리등록』(규장각도서 12923), 대마도 종가문서인 『관수옥개시대청재관옥수리기록』, 『변례집요』 등 관련 자료와 비교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왜관 건물을 짓거나 수리 보수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들었다. 이를 위한 비용의 내용과 부담, 건축 자재의 조달 등 왜관 건물의 물리적 관리 실태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④ 왜관 조시·개시에서의 동전 사용 문제

「왜관의 조시(朝市)에 돈을 사용하는 자가 탄로나면 잠상율(潛商律)로 조처함」(1701.6.12). 「일본으로부터의 철물(鐵物) 수입 방식을 변통함」(1708.5.15) 등 기사 내용이다.

1701년 기사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동래부사 김덕기가 조시(朝市)와 관련된 조목 하나를 비변사에 보고한 것이다. 왜관에는 날마다 조시가 열렸는데, 매매하는 것은 채소 등 잡물에 불과하며, 아침에 열렸다가 곧 파하였다. 돈[常平通寶]을 사용한 이후로는 양국 사람이 항상 돈을 교역의 수단으로 삼는다. 최근 왜인들이 전화(錢貨)를 쉽게 위조하고, 또 구리가 왜관에서 나오므로 금지 조목을 엄격하게 마련하여 폐단을 방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금지하는 법률은 조정에서 의논하여 확정된 다음에야 변방 수령이 의거하여 행할 수 있다. 이제부터 조시에서 돈을 사용하다가 발각되는 자는 잠상율(潛商律)로 논단한다는 내용이다.

1708년 기사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동래부사 한배하가 철물(鐵物)을 변통하는 일로 올린 장계이다. 양국 무역에서 백사(白絲)나 인삼 등 물자를 파는 것은 은화로, 그 밖의 잡화(雜貨) 가격은 철물로 교환하는 것이 전례이기 때문에 철물을 방색(防塞)하는 것이 불편하였다. 우리나라에서 동전[상평통보]을 통용한 이후로, 간사한 백성이 사주(私鑄)하는 폐단이 있으므로 철물을 방색한 것은 이 때문이다. 이 때문에 돈이 통용되는 길이 막혔다. 철물은 돈을 주조하는 원료일 뿐 아니라 온갖 기물(器物)을 만드는데 사용된다. 여러 해 방색하면 공사 간에 모두 절실하다. 근래 동전이 천하여 도구를 만드는 이익보다 못하니, 다시 통용을 허락해도 사주할 염려는 없다고 한다. 우리 상인이 이문을 잃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왜인이 철물을 버리고 은화로만 값을 지급하기는 어려우므로 손해를 면치 못한다. 매번 방색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변통하도록 했다.

조시는 왜관의 수문(守門) 밖에 서는 새벽시장이다. 생선, 과일, 채소, 쌀 등 왜관에 있는 일본인들을 위한 생필품이 주로 거래되었다. 교환수단은 주로 쌀이었다. 그러나 1678년부터 상평통보가 널리 통용되면서 조시 거래에서도 동전이 널리 유통되었다. 특히 왜관을 통해 일본에서 구리가 많이 수입되었으므로, 동전을 위조하는 사주(私鑄)의 폐단이 심하였다.

『신보수교집록』에 보면, 1698년 동래에서 구리[銅鐵]를 매매하거나 사사로

이 돈을 주조하는 것을 엄히 금한다는 숙종의 전교(傳敎)가 있다. 그후에도 사주의 폐단이 단절되지 아니하자, 김덕기의 장계에 따라 1701년에 「조시에서 돈을 사용하는 것을 금하고 이를 어길 경우에는 잡상의 법률로 논한다」고 규정한 것이다. 이 내용은 『증정교린지』(권4, 금조)에도 명시되어 있다. 김덕기는 이러한 금지 내용을 목판에 새겨 왜관 문안에 걸어둘 것을 주장하였다. 그런데 1708년 동래부사 한배하는 동전의 유통 때문에 철물[구리]의 수입을 막았지만, 이제는 동전이 너무 흔해 사주의 염려가 없고, 또 우리측 상인의 이문이 없어지고, 모든 거래에 은화만 사용할 수 없으므로, 철물 수입 금지를 풀어주는 변동책을 주장한 것이다.

왜관의 개시, 조시에서의 상평통보 유통, 사주전의 남발 양상과 이와 연동된 구리 수입의 금지 등 실태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⑤ 왜관 오일개시(五日開市)

「동래왜관의 개시에 잡인의 출입을 엄금함」(1703.11.23), 「오일개시의 혁파를 논의하고 화수(和水)용간(用奸)을 엄칙함」(1708.1.16), 「오일개시의 혁파를 논의하고 화수(和水)용간(用奸)을 엄칙함」(1708.5.15), 「왜관 개시를 아침 전으로 한정하고 수세색리를 혁파함」(1709.1.18) 등 기사 내용이다.

1703년 기사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동래 왜관의 개시는 한 달에 여섯 차례인데, 이것은 조정에서 허락한 것이다. 왜인에게 찬(饌)을 보내는 일로 오일일차개시(五日一次開市)하는 잘못된 규정이 있어서, 상고(商賈) 외에 잡인(雜人)과 동래부 관리가 연속하여 출입함으로써 난잡한 폐단이 많고, 우리나라의 은밀한 일이 왜인에게 몰래 전달되는 일이 없다고 보장하기 어렵다. 조정에서 막으려고 해도 동래부가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폐지하지 아니하니 참으로 한심하다. 지금부터는 이를 엄금해야 한다.

1708년 기사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오일개시(五日開市)의 폐단이 가장 심한데도, 동래부가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그대로 두고 혁파하지 않는 것은 매우 부당하므로, 오일개시는 혁파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다.

오일개시의 개념은 1708년 5월 15일, 11월 3일 기사에 잘 보인다. 오일개시는 미곡 등 긴요한 물자를, 색리(色吏)를 정하여 장부를 두고 세금을 거둔 뒤에 표를 지급하여 왜관에 들어가 매매하는 것이다. 잡류(雜類)가 마음대로 출입하거나, 여러 날 왜관에서 머무는 등 일이 매우 해괴하나, 동래부가 수세하

여 경비를 보충하기 때문에 금단하지 못한다.(5월 15일)

오일개시는 상인들이 한 달에 6차례 왜관 안에 들어가서 매매할 때 혼도·별차 및 동래부의 군관이 함께 들어가 감독하는데, 아침에 들어갔다가 정오에 나오는데 불과하다.(5월 15일) 오일개시는 동래부에서 색리(色吏)를 정하여 매 오일(每五日) 양식과 찬을 왜관에 지급하기 위하여 들여줄 때 물화를 교역하는 사례가 있는데, 색리에게 세금을 지급하면 모두 물화를 통한다고 한다. 색리가 세금을 거두는 것을 혁파하도록 한다.(1708년 11월 3일)

왜관 개시대청에서 열리는 개시는 한 달에 여섯 번 즉 3일, 8일, 13일, 18일, 23일, 28일 열리는 것이 원칙이다. 이 개시를 대개시(大開市), 본개시(本開市), 육개시(六開市), 일삭육차개시(一朔六次開市), 육대개시(六大開市), 대청개시(大廳開市) 등으로 불렀다. 이 개시와는 별도로 왜관에서는 오일개시가 열렸다. 이 개시는 ‘일삭육차개시’와는 달리 ‘오일일차개시’라고 불렀다. 오일개시는 왜관에 양식과 찬을 지급할 때 열리는 개시로서, 동래부에서 색리(色吏)를 정하여 일정한 세금을 징수하였다. 대개시, 대청개시 때는 왜관의 출입을 정식으로 허가받은 상고[수패상고, 도중상고]인 특권상인이 담당하는 것과 달리, 오일개시 때는 ‘잡류, 잡인, 잡상’이라 불리는 비특권적인 영세상인이 거래를 담당하였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그런데 오일개시의 개념이나 성격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개시 날짜이다. 개시 날짜를 뜻하는 「오일일차개시」, 「매오일(每五日)」 등 사료적 표현은 ① 한 달에 1번(첫째 5일), ② 한 달에 3번(5일, 15일, 25일), ③ 한 달에 6번(5일마다)의 세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필자는 ‘일삭육차개시’와 ‘오일일차개시’의 대비되는 표현에 주목하여, 「한 달에 한 번 첫 5일날 열린 것 같다」고 해석한 적이 있다. 그러나 위의 1708년 사료를 검토해 보면, 한 달에 6번, 즉 5일마다 열린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 해석이 가능할 경우 오일개시는 ㉠ 대개시 날과 동일 날짜(3일, 8일), ㉡ 대개시 날과 관계 없이 오일마다 한 번의, 두 가지 개시날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춘관지』(권3, 개시)에서는 「본개시와 같은 날이 되기도 하고, 혹은 앞뒤로 어긋나기도 했다」라고 한 것이다.

이처럼 오일개시 기사 내용은 오일개시의 설치, 날짜, 거래 물품, 세금, 폐단, 혁파 등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사료이다. 앞으로 개시, 오일개시, 조시 등의 비교 검토를 통해 각각의 유형, 개념, 성격 등을 구체적으로 연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⑥ 왜사의 연향 접대

「왜사의 연향 때 여악을 그대로 쓰기로 함」(1715.6.17), 「왕세자 상중의 왜인을 접대하는 복색과 연향절차를 품처하게 함」(1729.2.21), 「왕세자 상중의 왜인 접대를 복이 끝나기 전에는 줄곡전의 복색으로 함」(1729.3.4), 「왕세자 상중의 왜인접대 복색을 마련함」(1729.4.1) 등 내용이다.

1715년 기사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왜사(倭使)의 연향(宴享) 때 여악(女樂)을 폐지하는 조목에 대해 확정된 명이 있었다. 금년조 송사왜(送使倭) 등의 하선연(下船宴)이 6월 4일로 결정되어, 시험삼아 조정의 분부를 왜학역관에게 전하였으나, 왜인들은 백여 년 동안 이미 시행한 예를 갑자기 폐지하니, 이를 대마도주에 통보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러한 일본측의 반발이 심하여 1715년 제1, 2, 3선 송사왜 등의 하선연(下船宴)에 여악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었다.

『증정교린지』를 보면, 구례(舊例)에는 소동(小童)이 춤을 추었으나 1612년에 차왜가 기생들의 춤을 고집한 까닭에 처음으로 시행하였다고 하였다. 동래부에서 여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숙종실록』 숙종 40년(1714) 8월 임신조에 의하면, 경상도 암행어사 이병상(李秉常)은 음탕한 소리와 아름다운 여색(女色)을 뒤섞어 연향하는 자리에 올리고 귀와 눈을 즐겁게 하는 바탕으로 삼으니, 참으로 해괴하다고 하면서, 여악 폐지를 주장하여 왕의 윤허를 받았다. 앞에서 언급한 1715년 기사는 이 『숙종실록』 내용에 바탕을 둔 것이다. 그러나 왜관의 일본인이 이를 거부하여 다시 허용하도록 한 것이다.

1729년 기사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번 왕세자 상중에 왜인을 접할 때의 복색과 연향의 절차는 동래부에 근거로 할 만한 전례가 없어서, 오래된 등록을 살펴보았다. 1645년(을유) 소현세자(昭顯世子) 상사 때는 객인에게 권화(勸花)하고 상화(床花)는 사용하지 않았다. 기생과 악공은 진열하였으나 사용하지 않았다. 첫 번째, 두 번째 연회 때는 음악을 사용하지 않았다. 찬품(饌品)은 세 차례 연회 모두 고기를 사용하였고, 복색은 모두 길복(吉服)으로 한 듯하다. 무술년 빈궁(殯宮) 상사 때는 줄곡 전에는 잔치를 베풀지 않았고 건물(乾物)을 주었고, 줄곡 뒤에는 연향 절차를 평상시 사례대로 거행하였다.

이에 대해 복이 끝나기 전에는 마땅히 줄곡 이전의 사례대로 하도록 하였다.(1729년 3월 4일) 그러나 이전부터 국홀 시에는 줄곡 뒤에는 왜인의 연향 접대 예를 폐지한 사례가 없는데, 신사년 국홀 때 줄곡 이후에는 천담복(淺淡

服)과 오사모(烏紗帽)에다 철을 제거한 흑각대(黑角帶)로 잔치를 베풀었고, 일본쪽에는 고기 상을, 우리쪽에는 소찬 상을, 상제(祥祭) 뒤에는 길복(吉服)에 고기 상을 사용하였다. 경자년과 갑진년에는 국홀의 줄곡 뒤에는 포사모(布紗帽)와 포단령(布團領)으로 하면서, 권화(勸花)는 객인(客人)에게만 배치하고 상화(床花)와 기악(妓樂)은 사용하지 않았다. 줄곡 뒤에도 이전대로 연향을 베풀되, 피차간에 고기, 소찬의 구분, 권화와 상화, 기악 등의 절차를 경자년과 갑진년 등록대로 하되, 복색은 시복(時服)의 백포단령에 오사모와 흑각대의 제도로 하여 구분을 두도록 하였다.

일본에서 온 연례송사나 차왜 등 사신이 오면 왜관의 연향대청(연대청)에서 접대 연향이 이루어졌다. 『증정교린지』 「연향의」에 이러한 연향의 모습이 잘 기록되어 있다. 연향에서 여악 실시를 둘러싼 양국간 생각의 차이, 1714년 여악 폐지 결정이 내려졌지만 실제로는 1715년 왜관 접대 연향에서 여악 사용이 허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국상 때 왜사 접대의 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⑦ 왜관 난출(闖出)

「동래왜관의 왜인이 난출한 일로 인하여 별차 한찬홍을 파출함」(1710.4.9), 「왜인 난출로 인하여 훈도와 별차에게 곤장을 침」(1710.4.14), 「땀감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왜관 왜인이 난출함」(1736.7.28), 「난출 왜인의 처치를 헤아려 첩공(撤供)에 대해 분부함」(1736.9.12) 등 기사 내용이다.

1710년 4월 기사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수문군관(守門軍官), 복병장(伏兵將)의 고목(告目)과 거리통사(巨里通事)의 진고(進告) 내용에 ‘관왜 57명을 삼순(三巡)으로 나누어 생선과 채소를 매입한다고 칭하면서 각기 미승(米升)을 가지고 사질도(莎叱道) 구덕산(九德山) 길로 갔다’는 보고하였다. 그 중 5명이 왜관의 북쪽 담장을 넘어 나갔다. 이를 막기 위해 부산진에서는 장교(將校)를 보냈다. 또한 훈도와 별차 등에게 전령하고 신칙하였다. 이들은 구덕산을 넘어서 목장촌(牧場村)으로 돌아왔다.

왜인의 사정을 탐지하였더니 모두 공작미(公作米)에서 나온 것이다. 두 해 분을 한꺼번에 다 받은 뒤에 그대로 경인조 공작미를 칭하여 가을 사이에 또 받으려고 난출하는 형세를 하여 위협하여, 칭하는 바를 모두 이루려는 계획에서 나온 것이다. 별차 한찬홍(韓纘興)이 병을 칭하고 녀 달이나 직무를 수행하지

않고, 이번 난출 때도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으므로 파직시키도록 하였다. 난출의 목적은 공작미를 원활하게 지급받기 위한 조직적 시위 활동의 성격이 강했다.

난출을 막지 못한 훈도와 별차에 대한 책임 추궁을 둘러싸고 경상좌수사 이상집과 동래부사 권이진의 의견이 서로 달랐다. 1710년 4월 14일 기사를 보면, 이상집은 훈도와 별차들이 농간한 실상이 있다고 죄를 청하였으나, 권이진은 왜인이 훈도와 별차를 쫓아내려고 전례에 따라 난출한 것이라면서 죄를 논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하였다. 특히 권이진은 훈도와 별차를 쫓아내려는 것이 난출 목적의 하나라고 하였다.

1736년 7월 기사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왜인이 난출한 것이 정축년(1697)에는 200명, 경인년(1710)에는 57명이다. 이번에는 인원수의 다과도 차이가 있고, 정축년, 경인년처럼 소란을 일으킴도 없다. 다만 이번 난출의 변고는 날마다 공급하는 땀감을 때맞추어 계속 지급하지 못하면서 비롯하였다. 왜인이 경계 밖으로 난출한 자는 일죄(一罪, 사형)로 처단하는 약조[계해약조, 1683]에 실려 있으니, 관수왜에게 따지고 타일러서 대마도주에 통보하여 법대로 처단한 뒤에 회보(回報)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철공(撤供)은 정축, 경인년의 전례가 있으니 동래부가 청한대로 철공한다고 고하고, 서서히 그들이 하는 바를 보고 조처함이 마땅하다고 하였다.

1736년 9월 12일 기사 내용을 보면, 왜관 관수왜가 난출한 왜인 등을 마땅히 대마도로 잡아보낸다고 하였으니 그 조처 여부를 살펴보고 나서야, 철공(撤供) 문제를 결정하도록 하였다.

이처럼 초랑왜관 왜인의 난출은 공작미의 원활한 조달, 땀감 지급 요청, 훈도별차 등 왜학역관의 파직 등 다양한 이유에 의해 시도되었다. 조선에서는 왜관의 경계 밖으로 난출하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는 약조 내용을 적은 약조제찰비를 1683년 왜관 출입문 안팎에 세웠다. 그러나 이러한 엄중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이유로 난출은 계속되었다. 난출의 다양한 양상과 그에 따른 양국의 대응 양상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이상에서 『국역 전객사별등록 1』에 해당하는 기사를 몇 가지 내용 중심으로 정리하여 보았다. 이 외에도 표류민, 공작미, 유민(遊民), 피집(被執), 개시(開市), 잠상(潛商), 다완(茶碗)·두기(陶器)의 번조, 상선연·하선연, 살인, 절도, 조삼(造蔘), 상세(商稅), 매[鷹連], 수표 위조, 왜관 화재, 초랑객사 수리 등 조선후

기, 특히 18세기 전반 한일교류사, 부산지역사와 관련된 다양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4. 『국역 전객사별등록』(Ⅱ) 개관

『국역 전객사별등록』(Ⅱ)는 1737년(영조 13, 정사) 3월 7일부터 1744년(영조 20, 갑자) 12월 28일까지의 내용을 번역한 것이다. 현존하는 원본의 제3책과 제4책, 즉 규장각 영인본 『전객사별등록』(一)의 489~694쪽과 『전객사별등록』(二)의 3~226쪽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규장각 영인본에는 날짜별로 내용을 요약한 요약문을 목차에 실고 있다. 그리고 같은 날짜에 수록된 기사라도, 원본에서 문두(文頭)에 ‘一’이라는 글자를 붙여 구분하여 시작되는 기사는 독립된 기사로 처리하여 별도의 목차를 달고 있다.

원본에 있는 날짜별 기사항목을 한 건으로 보고, 연도별 기사항목의 건수(件數)를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단 동일한 날이라도 따로 명기되어 있으면, 규장각 영인본 목차에서 정리한 것처럼 다른 건으로 처리하였다.

<표 2> 『국역 전객사별등록』(Ⅱ)의 연도별 기사항목 수

연 도	1737	1738	1739	1740	1741	1742	1743	1744	합계
항목수	14	19	13	23	8	10	55	19	161

<표 2>에서 보는 것처럼, 각 연도별 항목의 수는 상당한 편차가 있다. 특히 1743년은 다른 연도의 2배 이상이며, 전체 항목의 삼분의 일 이상을 차지한다. 1743년의 기사항목 수가 특히 많은 것은 대마도주, 만송원 등과 조선 예조, 동래부사·부산첨사 간에 오간 다양한 서계, 별폭, 별폭회례(물목, 잡물), 증물(내역) 등 항목이 많기 때문이다.

『국역 전객사별등록』(Ⅱ)의 첫 기록은 정사(丁巳, 영조 13, 1737) 3월 7일조이다. 기사의 내용은 <동래부사 오명서(吳命瑞)가 장계한 내용>과 <3월 5일 좌의정 김재로(金在魯)가 계품한 내용>의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 동래부사 오명서의 장계 내용은 ㉠ 흥양(興陽) 표류민을 송환하는 왜선이 표류하여 옥포(玉浦) 경내에 정박함, ㉡ 왜학역관 황재하(黃在河)가 왜선의 표류 내용을 물음, ㉢ 우리 사람이 일본에 표류할 경우, 배와 논가 손상되고 백성에 빠져 죽어야

차왜를 내어보내는 것인 본래 규례(規例)임, ㉔ 황재하가 표류민의 실태 소홀하게 하였으므로 그의 죄상에 대한 조치를 청함 등 내용이 중심이다.

<좌의정 김재로가 계품한 내용>은 표류민의 실태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황재하를 징계하지 않을 수 없으니, 경상좌수영에 명하여 엄중하게 곤장을 치는 것이 좋겠다는 내용이다. 그대로 시행하라는 임금의 윤허가 있었다.

이처럼 각 항목별 기사에는 표류민, 은화, 공작미 문제 등 당시 양국 사이에서 해결해야 할 다양한 현안 문제가 수록되어 있다. 이 가운데 주목되는 내용을 몇 가지 주제로 나누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5. 『국역 전객사별등록』(II)의 주요기사 내용 검토

① 향화왜(向化倭) 후손의 군역 부담

임진왜란 시기의 향왜(降倭)의 수는 최대 1만명에서 최소 1천명에 달하였을 것으로 추정한다. 향왜는 요동(遼東)으로 압송하였다가, 그후 경상도 등지의 내륙에 분치하였다. 다시 함경도, 평안도, 강원도, 충청도 등지의 해안이 인접한 군현이나 섬으로 이송하였다. 신유년(1741) 7월 2일자 기사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함경감사 박문수(朴文秀)는 향화손(向化孫)의 군역 부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였다. 향화왜에 관한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㉑ 함경도 내 각 고을의 향화손은 예조에서 1명마다 베1필을 거둔다.

㉒ 향화손의 외손(外孫)과 외외손(外外孫)도 모두 베를 거둔다.

㉓ 1717년에 마련한 절목 내용에서는, ‘향화한 사람이 공사천(公私賤)에게 장가들면 역노비(驛奴婢)의 사례에 의하여 남녀 각기 부모의 역을 따르고, 향화 여인이 공사천에게 시집간 자는 소생 여자는 오로지 예조에 소속된다’고 하였다.

㉔ 향화의 외손과 외외손의 대수를 한정하지 않고 예조에서 베를 거두는 것은 당초 규정을 정한 본뜻이 아니므로, 지금부터는 향화 외손과 외외손 가운데 양인(良人)인 자는 예조에서 베를 거두지 말고, 양인으로서 역(役)에 응하도록 하였다.

향화왜인의 손, 외손, 외외손 등의 역의 부담에 관한 실태를 알 수 있는 내용이다. 18세기 함경도 지역의 살고 있던 향화왜인 후손의 군역의 부담 실태에 관한 중요한 자료이다.

② 왜관에서 매매춘(賣買春)

왜관은 일본인 여성의 거주나 조선인 여성의 출입이 금지된 남성들만의 공간이었다. 조선인 여성이 왜관에 몰래 들어가서 일본인 남성과 성관계를 갖거나, 일본인 남성이 왜관을 몰래 나와서 조선인 여성과 성관계를 갖는 경우가 자주 일어났다. 조선정부는 이러한 매매춘 행위를 잠간(潛奸), 범간(犯奸), 음간(淫奸), 교간(交奸), 화간(和奸), 간음(姦淫) 등이라 불렀다. 매매춘 사실이 발각되면, 당사자는 물론 이를 주선한 중개인도 사형이라는 극형을 당하였다. 그러나 일본인은 조선인과는 달리 대마도로 소환되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왜관에 잠입하여 교간한 전재(田才)를 효시하고 양녀(兩女)를 엄형 도배(島配)하기로 함」(1738.11.15), 「아국(我國) 여인과 잠간(潛奸)한 죄왜(罪倭)를 도중(島中)으로 감사(減死) 영원(永遠)유찬(流竄)했음을 확인함」(1738.12.13), 「왜관에 잠입(潛入)한 죄인을 포착(捕捉)한 군관 등에게 시상함」(1739.1.24), 「왜인 잠간죄인의 행형시(行刑時) 동래부사가 친관하지 않음을 정식으로 함」(1739.2.13) 등이 관련 내용이다. 내용은 1738년에 발생한 매매춘 사건이다.

이 사건은 1738년 11월, 사비(私婢) 수례(守禮), 양녀(良女) 최애춘(崔愛春)이 전재(田才)의 유인에 의해 담을 넘고 왜관에 들어가 일본인과 매매춘을 한 것이다. 이 사건이 발생하자 우의정 송인명(宋寅明)은 전재와 두 여인을 빨리 왜관 문 밖에서 효수(梟首)하고, 동래부사 정형복(鄭亨復)은 엄중하게 추고(推考)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 사건은 영조와 조정 대신들의 논의 끝에, 전재(田才)는 왜관 문 밖에서 효수하고, 두 여인은 경상도에 명령하여 엄중하게 3차례의 형벌을 가한 뒤에 섬으로 유배하고, 동래부사는 파직하고, 사로 잡은 사람은 포상하도록 결말이 났다.

조선인 여인과 몰래 간통하였던 일본인은 이우위문(利右衛門)과 원오(源五) 두 사람은 대마도로 이송되어 약조에 따라 사형은 면하고 영원히 유배되었다. 그리고 수례와 최애춘 등을 사로잡은 군관 김윤택(金潤澤)과 김희봉(金熙鳳), 전재를 사로잡은 전전(前前) 수서사(首書事) 심시희(沈始禧) 등에게는 모두 가자(加資)하고, 장교 송두성(宋斗星)과 나장철(羅將哲) 등은 동래부에 명하여 쌀과 배를 지급하도록 하였다.

『변례집요(邊例集要)』 [권14, 잡범(雜犯)] 무오(1738) 11월, 기미(1739) 1월조에 같은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변례집요』 등 관련 자료에 대한 비교 검토

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③ 구관(舊館) 성묘(省墓)

구관, 즉 두모포왜관의 뒷산에는 왜관에서 죽은 일본인들의 무덤이 있었다. 『증정교린지』 [권4, 약조(約條)]에 의하면, 1683년 동래부사 소두산(蘇斗山)이 조정에 장계를 올려, 봄·가을의 사일(社日)과 백종절(百種節)에 일본인들이 초량왜관을 나와 두모포왜관 뒷산에 있는 그들 조상의 무덤에 성묘하는 것을 허락하였다. 사일에는 각 7일, 백종에는 4일로 날짜를 정하였다. 일본인들은 춘분과 추분에 가장 가까운 무일(戊日)을 명절로 삼아, 봄에는 토지신에게 그 해의 풍작을 기원하고, 가을에는 추수에 감사하는 제사를 지냈다.

「백종절(百種節)에 관왜(館倭)들이 구관(舊館) 후산(後山)의 부조(父祖) 분충(墳塚)에 왕래하는 것을 허락함」(1740.7.4), 「관왜 등의 부조분(父祖墳) 왕성(往省)을 별차가 영솔(領率)함」(1740.9.25), 「구관 후산에 있는 왜인 부조 분충을 춘사일(春社日)에 왕성하도록 함」(1743.3.16), 「왜인들에게 백종절일에 부조 분충 왕성을 허락하되 횡행(橫行)하지 못하게 함」(1743.7.20), 「관수왜에게 구관 후산의 부조 분충 왕성을 허락하되 횡행하지 못하게 함」(1743.8.21), 「관왜 등에게 부조 분충의 추사일(秋社日) 간망(看望)을 하게 함」(1744.8.28) 등이 관련 내용이다. 1740~1744년에 성묘에 관한 기사가 보인다.

초량왜관에 있는 일본인들 부조(父祖)의 무덤이 구관(舊館) 뒷산에 있어서, 매년 봄과 가을 사일(社日) 및 백종(百種) 명절에 성묘하는 전례가 있었다. 왜인들의 풍속에 백종 명절은 큰 명절이나, 금년(1734)에는 일본쪽과 조선쪽의 역서(曆書)가 각기 달라서, 우리나라의 윤월(閏月)은 곧 6월이지만, 일본의 윤월은 7월이므로, 왜인들이 7월 13일부터 전례대로 왕래한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조선측에서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왕래를 허락하되, 별차와 소통사가 영솔하도록 했다. 그리고 1743년 3월 춘사일(春社日) 때도 전례에 따라 성묘를 가게 하되, 왜인들이 출입할 때는 별차와 소통사가 데리고 내왕하여 함부로 넘는 일이 없도록 하였다. 그리고 7월 백종절 때도, 전례대로 7월 14일부터 17일까지 성묘하되, 왜인들이 왕래할 때 별차와 소통사 등이 영솔하여 왕래하고 횡행해서는 안된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훗날 뒤의 일이지만, 1806년에 소천차랑우위문(小川次郎右衛門)은 특송사(特送使) 정관이 되어, 왜관으로 건너와 가을 피안일(彼岸日)에 고관에 있는 무덤

에 성묘를 갔다. 그는 그때의 정경을 『우진토상(愚塵吐想)』이라는 책에서 글로 남겼다. 이에 의하면 무덤은 고왜관 근처에 24기가 있었으며, 세내(笹內)라는 곳에도 3기가 있었다고 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세내가 어디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④ 왜관 별개시(別開市)

왜관의 개시일은 3과 8일 들어가는 날짜로 월 6회 정하였다. 즉 3일, 8일, 13일, 18일, 23일, 28일 개시가 열렸다. 단 물건이 많이 모아지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임시로 별시(別市)를 인정하였다.

『증정교린지』 [권4, 개시(開市)]에 의하면, 옛날에는 한달에 3번 개시가 열렸는데, 1610년에 추가하여 6번 개시가 되었다고 하면서, “왜인의 요청이 있거나 또는 물화가 쌓여 있을 때는 별도로 개시하였다(若倭人有請 或物貨委積之時 則別開市)”고 하여, 별개시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별개시는 대개 왜인의 요청이나, 물화가 많이 쌓여 있을 때, 또는 곳은 날씨가 그 밖의 여러 사정 등으로 지정 날짜에 정식 개시가 열리지 못할 때 별도로 열린 개시를 말한다. ‘별도로 열리는 시장’이란 뜻으로, 별개시(別開市), 별시(別市)라고 불렀다. 기록에 따라서는 ‘대신 여는 시장’이라는 뜻으로 ‘대시(代市)’라고도 하였다. 1809년 6월 4일의 한 자료에 의하면, “훈도가 왜관에 들어왔으며, 대시(代市)가 있다고 소통사가 알려왔다”라고 하였다.

「상역(商譯) 등의 피집(被執) 삼사가(蔘絲價) 은화를 별개시에 봉출(捧出)함」(1740.9.25), 「상역 등 피집물화의 가은(價銀)을 별개시에 봉출함」(1744.8.28)이 관련 내용이다.

상역들이 왜관에 금년(1740년)조로 피집(被執)한 인삼과 실[생사(生絲)]의 대가인 은자(銀子) 21,100냥을 1740년 9월 15일 별개시(別開市)에 받아내었으며, 1744년에는 상역 등이 피집한 물화 값으로 은화 12,150냥을 8월 27일 별개시에서 받아 내었다고 하였다.

두 별개시의 내용에서는 인삼과 생사 등을 상역들이 미리 일본인에게 지급하였지만, 그 대가를 즉시 받지 못하고, 별개시 때 은화로 받았다는 것이다. 별개시 때 받은 은화가 각각 21100냥, 12150냥이어서 별개시의 규모도 상당히 컸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별개시가 열린 날을 개시일과는 다른 15일, 27일 열

렸다. 별개시의 단면을 엿볼 수 있는 내용이다.

⑤ 생동(生銅)과 동전(銅錢) 주조

17세기에 들어와서 일본 국내의 은(銀) 생산이 줄어들자, 덕천막부(德川幕府)는 장기(長崎)를 통한 은 수출을 제한하였다. 그리고 18세기가 되면 은 대신 구리로 수출의 주력이 바뀌었다. 무역상한제는 장기 뿐만 아니라 대마도(對馬島)에도 적용되었다. 1686년에는 대마도에 의한 조선과의 무역 한도액은 연간 1080관목(貫目)으로 제한되었다.

1684년 일본이 조선에 수출한 사무역[개시무역] 총거래량 가운데 은이 70% 정도 차지하였다. 구리는 황동(荒銅)이 8% 정도, 도동(棹銅)과 연동(延銅)이 1% 정도였다. 일본이 수출하는 구리는 황동과 취동(吹銅)으로 구분되었다. 황동은 채굴한 구리를 광산에서 정련한 것, 취동[도동, 연동 등]은 이 황동을 대판(大坂)의 취옥(吹屋)에서 다시 정련한 것이다. 조선에서는 황동을 생동(生銅), 취동을 숙동(熟銅)이라 불렀다. 대마번은 공무역·사무역[개시무역] 등으로 수출하는 동을, 대판번저(大坂藩邸)를 중심으로 동취옥(銅吹屋)·동문옥(銅問屋) 등에서 매입하였다. 당시 동은 거의 대부분이 대판에 모여 있었다.

「왜 비선(飛船)이 생동(生銅) 재래(齎來)하여 출래함」(1743.윤4월.29), 「송사왜 정관 및 도선주 압물(押物)의 연례 무역 동납철(銅鐵)에 대한 증물(贈物)의 내역」(1743.8.28), 「훈도 현덕윤(玄德潤)이 과만(瓜滿)이나 동철(銅鐵) 구무(求買)가 끝난 후에 교체하기로 함」(1743.9.27) 등이 관련 내용이다.

1743년 윤4월 29일조 내용을 보면, 비선(飛船) 제1선은 생동 13칭(稱), 제2선은 12칭, 제3선은 12칭을 싣고 왔다. 1칭은 100근이다. 이 별무(別買) 생동 5000근(50칭)은 모두 대판에서 나온 것이다.

조선이 일본에서 생동을 수입하는 것과 관련하여, 당시 크게 문제가 된 것은 생동 수입이 지연되는 문제였다. 이로 인해 대마도측은 동래부사로부터 자주 재촉을 받았다. 생동 수입의 지연으로 왜학역관(倭學譯官)들이 처벌받는 일도 발생하였다. 그리고 동래부사는 공작미(公作米) 수출을 보류하겠다는 면서 압박을 가하기도 하였다.

관련 기사 내용을 보면, 일본에서 수입한 생동은 경상감영(慶尙監營)에서 동전을 주조하는데 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생동의 조달은 쉽지 않았다. 그래서

생동을 즉시 무역하여 들이지 않은 일로 부산 훈도 현덕연(玄德淵)이 경상감영에 구속되어 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그리고 그 때문에 현덕연에서 현태익(玄泰翼)으로 훈도가 교체되기도 하였다.

⑥ 별폭(別幅)과 별폭 회례(回禮) 물품

동아시아 국가들 사이에 교환된 외교문서는 각각 통교(通交)관계를 반영하고 있었다. 조선과 일본 사이에는 국서(國書)와 서계(書契)라는 두 가지 종류의 교린(交隣)문서가 교환되었다. 국서는 최고 통치권자인 조선 국왕과 일본 막부장군 사이에 주고받은 문서이다. 서계는 외교 실무부서, 즉 조선의 예조·동래부사·부산첨사와 일본의 대마도주(對馬島主)·만송원(萬松院)·이정암(以酺庵) 등 사이에 교환된 문서이다.

별폭은 국가간에 주고받는 예물의 목록을 적은 것이다. 통교의 내용을 적은 본문, 즉 본서와 대칭되는 개념이다. 별폭은 국서에 딸린 별폭과 서계에 딸린 별폭으로 나눌 수 있다. 흔히 전자를 국서별폭, 후자를 서계별폭이라 부른다.

「표왜인(漂倭人) 입송으로 인한 대마주 태수 습유(拾遺) 평의여(平義如)의 예조 대인에 대한 회사(回謝) 서계·별폭/ 동래부사·부산첨사에 대한 서계·별폭/ 각종 회례 잡물을 예조·경상도·동래부·부산진에 조비(措備)시킴」(1737.11.30), 「신관수왜 등방소(藤方紹)의 예조 대인에 대한 서계 및 별폭/동래부사·부산첨사에 대한 서계 및 별폭/회답서계를 마련하게 함/회례지물 별폭 및 그 조비 관서」(1739.4.11), 「대마도 외양(外洋)에 부류(浮留)한 배를 체포해 달라는 서계의 내용/회답서계를 승문원에서 찬출(撰出) 하송하기로 함」(1742.4.10), 「축전주(筑前州) 표왜인 입송에 대한 대마도주의 회사 서계 등본 및 별폭/회답 서계 및 초고를 승문원에서 찬출하고 회례 잡물을 마련하게 함」(1743.윤4.4), 「예조대인 및 동래부사·부산첨사에 대한 대마도주의 서계와 별폭들/서계 회답 등의 초고를 승문원에서 찬출하고 회례잡물을 마련하게 함/별폭 회례 물목」(1743.윤4.15) 등이 관련 내용이다.

1737년 11월 30일조에 기록된 서계는 다음과 같다.

일본국 대마주(對馬州) 태수 습유(拾遺) 평의여(平義如)가 조선국 예조 대인 합하게 답장을 올립니다. 전번에 보내주신 서찰에서는 귀국의 화평함을 받잡고 기쁨을 감당하지 못하였습니다. 본방(本邦)에서도 잘 있습니다. 본방의 능등주

(能登州) 봉지군(鳳至郡) 윤도(輪島)의 배에 탄 14구(口)가 지난 해 귀국 장기(長鬢) 경내의 조암(鳥巖) 바깥 바다에 표류하다 도착하여, 배는 이미 파선이 되고 2구는 물에 빠져 죽었고, 살아 있는 이들은 다행히도 구제의 혜택을 입어 옷과 식량을 넉넉하게 지급하여, 우리 관으로 부쳐 보내어 저희 고을에 도착하였으며, 2구의 시체 역시 끌어내어 관 속에 넣고 관(館) 뒷산에 매장하였으니, 감사의 감정은 무어라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에 동무(東武)에 아뢰었더니 감탄하심이 얼마나 지극한지. 진실로 이웃나라의 화목한 우의가 오래도록 더욱 돈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겠습니까? 드릴 말씀은 모두 역관의 말에 부쳐두었으며, 별록(別祿)의 보잘 것 없는 예물로 애오라지 정성을 펼치오니, 간절히 바라건대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삼가 갖추지 못합니다. 원문(元文) 2년 정사(1737) 10월 일.

일본국 대마주 태수 습유 평의여(平義如)가 조선국 동래 부산 두 분 영공 합하게 글을 올립니다. 이제 멀리 모든 분들께서 편안하시기를 바라는 생각 어찌 그치겠습니까? 본방(本邦)의 능등주(能登州)의 주민이 14일 지난해 귀국 경내에 표류하여 도착하였다가 배가 홀연 파손되어 2구(口)가 빠져죽고 살아남은 자를 돌려보내주시니, 이웃끼리 우호하는 도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내는 회답 서찰을 귀하께서 남궁(南宮)에 올려 말씀을 올리면서 거친 물품으로 신의를 표합니다. 삼가 즐거움이 많기를 바라오며, 짐짓 이렇게 하고 예를 갖추지 못합니다. 원문(元文) 2년(1737) 정사 10월 일.

이 두 서계는 1737년 10월 대마번주 평의여(平義如)가 각각 조선의 예조 대인과 동래부사·부산첨사에게 보낸 답장 서계이다. 두 서계에는 각각 별폭이 첨부되어 있다. 별폭의 예물 목록을 정리한 것이 <표 3>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조선측의 별폭 회례(回禮)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이를 정리한 것이 <표 4>이다.

<표 3> 대마도주가 예조, 동래부사·부산첨사에게 보낸 서계 별폭(1737년)

	채화대층갑 (彩畫大層匣)	수납대청 (粹鑑大清)	채화오촌렴경 (彩畫五寸簾鏡)	적칠대 (赤漆臺)	적동소약관 (赤銅小藥罐)	채화환향대 (彩畫鬘香臺)	흑칠중층갑 (黑漆中層匣)	적동약관 (赤銅藥罐)
예조대인	1비	40개	2면					
동래부사	1비			1개	10개			
부산첨사						1개	1비	5개

<표 4>조선측의 별폭 회례(1737년)

	인삼	호피	표피	백면주 (白綿紬)	백저포	백목면	황모필 (黃毛筆)	화석 (花席)	사장부유둔 (四張付油氈)	진묵 (眞墨)
예조 대인	1근	1장	1장	5필(匹)	5필	10필	20병(柄)	3장	2부	20홀(笏)
동래부사				3필	3필	5필				
부산첨사				3필	3필	5필				
비고	예조 마련							경상도 마련		

대마도주가 보낸 별폭 예물은 층갑(層匣), 경대(鏡臺), 약관(藥罐) 등이 중심이다. 예물의 비중은 예조 대인, 동래부사, 부산첨사의 순서이다. 조선에서 답례로 보낸 별폭 예물은 인삼, 피물(皮物), 직물(織物), 모필(毛筆), 화문석, 유둔(油氈), 참먹[眞墨] 등이다. 동래부사와 부산첨사가 보낸 예물은 동일하다. 화문석·유둔·참먹은 경상도에서, 나머지는 예조에서 마련하였다.

대마도주가 예조나 동래부사·부산첨사에게 보낸 별폭 내용과, 그에 대한 조선측의 회례 내용을 시기별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5> 예조 대인에 대한 대마도주의 별폭 내용

물 품	1737.10	1739.	1743.2	1743.4	1743.4	1743.7
채화대층갑(彩畵大層匣)	1비(備)		1비			
수랍대청명(粹蠟大清皿)	40개(箇)		10개			
채화오촌렴경(彩畵五寸匳鏡)	2면(面)		2면			
수랍루삼청발(粹蠟累三清鉢)		1부(部)				
흑칠화전갑(黑漆華箋匣)		1개				1개
수랍중청명(粹蠟中淸皿)		10개				10매
혁과수주괘연(革裹垂珠掛硯)		1비				1비
황련(黃蓮)		3근(斤)				
주간연기(朱竿煙器)		20악(握)				
채화용항(彩畵龍桁)				1각(脚)		
채화대원분(彩畵大圓盆)				10매		
적동루삼관반(赤銅累三盥盤)				1부		
수랍중명반(粹蠟中茗盤)				20개		
채화침괘연(彩畵枕掛硯)					1비	
채화반탁(彩畵飯桌)					10매	
적동목장화로(赤銅木粧火爐)					1圍	
수정립서(水精笠緒)						1결(結)
채화육촌렴경(彩畵六寸匳鏡)						1면
채화서가(彩畵書架)						1각

<표 6> 동래부사에 대한 대마도주의 별폭 내용

물 품	1737.10	1739.	1743.2	1743.4	1743.4	1743.7
채화대층갑(彩畵大層匣)	1비		1비			
적칠대(赤漆臺)	1개					
적동소약관(赤銅小藥罐)	10개		10개		5개	
채화서가(彩畵書架)		1각				
황색괘연(黃色掛硯)		1비				1비
황련(黃蓮)		2근				
흑칠중연갑(黑漆中硯匣)		1비				
채화삼촌렴경(彩畵三寸匳鏡)		2면				2면
채화대연갑(彩畵大硯匣)			1개			
수정립서(水精笠緒)				1결		
혁과수주괘연(革裹垂珠掛硯)				1비		
수랍중명반(粹蠟中茗盤)				10개		
채화화사갑(彩畵華篩匣)					1비	
채화중연갑(彩畵中硯匣)					1비	
흑칠누합연갑(黑漆累合硯匣)						1비
채화용항(彩畵龍桁)						1각
적동명로(赤銅茗爐)						1위

<표 7> 부산첨사에 대한 대마도주의 별폭 내용

물 품	1737.10	1739.	1743.2	1743.4	1743.4	1743.7
채화환황대(彩畵鬘黃臺)	1개					
흑칠중층갑(黑漆中層匣)	1비		1비		1비	
적동약관(赤銅藥罐)	5개					
채화중원분(彩畵中圓盆)		10매	10매	10매		10개
적동화로(赤銅火爐)		2위(圍)				
적동중약관(赤銅中藥罐)		10개	5개			
황련(黃蓮)		1근				
흑칠중연갑(黑漆中硯匣)				1비		
수랍대명(粹蠟大皿)				10매		
흑칠중원분(黑漆中圓盆)					10매	
적동소약관(赤銅小藥罐)					3개	
흑칠문갑(黑漆文匣)						1개
적동목장화로(赤銅木粧火爐)						2위
청패간연기(靑貝竿烟器)						20악

층갑, 문갑, 화장 거울, 편지함, 서가, 벼루, 벼루집, 약탕기, 화로, 접시, 쟁반, 담뱃대, 황련, 갓끈 등 다양한 물품이 별폭의 내용이었다. 표에서 보는 것처럼, 별폭의 내용도 시기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대마도주의 별폭에 대하여, 조선측이 지급한 회례 내용을 시기별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8> 예조의 회례 별폭

물 품	1737	1739	1743	1743	1743	1743	비고
인삼(人蔘)	1근	2근	1근		1근	2근	예조 마련
호피(虎皮)	1장(張)	1장	1장	1장	1장	1장	
표피(豹皮)	1장	1장		1장	1장	1장	
백면주(白綿紬)	5필(匹)	5필	5필	5필	5필	5필	
백저포(白苧布)	5필	5필	5필	5필	5필	5필	
백목면(白木綿)	10필	10필	10필	10필	10필	10필	
흑마포(黑麻布)		3필		3필	3필	3필	
황모필(黃毛筆)	20병	30병	20병	20병	30병	30병	경상도 마련
화석(花席)	3장	3장	3장	3장	3장	3장	
사장부유둔(四張付油氈)	2부(部)	2부	2부	2부	2부	2장	
진묵(眞墨)	20홀(笏)	30홀	20홀	20홀	30홀	30홀	

<표 9> 동래부사/부산첨사의 회례 별폭

	1737	1739	1743	1743	1743	1743	
백면주(白綿紬)	3필)	3필	3필	3필	3필	3필	예조 마련
백저포(白苧布)	3필	3필	3필	3필	3필	3필	
백목면(白木綿)	5필	7필	5필	5필	5필	7필	
흑마포(黑麻布)		2필		2필	2필	2필	
황모필(黃毛筆)		20병		10병	20병	20병	
화석(花席)		2장				2장	경상도 마련
사장부유둔(四張付油氈)		2부				2부	
진묵(眞墨)		20홀			20홀	20홀	

조선측의 회례 물품은 인삼, 호피, 표피 등 고가품과 함께 각종 직물, 황모

필, 화문석, 기름종이, 참떡 등이다. 이 가운데 인삼, 호피, 표피 3종류는 예조에서만 지급하고, 동래부사와 부산첨사는 지급하지 않았다. 화석, 사장부유둔, 진목의 세 종류는 본도 제급(題給) 즉 경상도에서 마련하여 지급하였다. 나머지는 본조 조비(措備) 즉 예조에서 마련하여 지급하였다. 대마도주의 별폭은 동래부사와 부산첨사 사이에 약간의 차등이 있었지만, 별폭 회례는 양자가 동일하였다. 회례 별폭의 내용상에서는 시기별로 큰 차이가 없었다.

1743년(영조 19) 8월 28일조에는 1743년 6월 대마도 만송원(萬松院)에서 보낸 서계와 별폭, 그리고 이에 대한 회례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0> 만송원(萬松院)의 별폭(1743년)

호초(胡椒)	단목(丹木)	명반(明礬)	첩금소병풍(貼金小屏風)	적동루삼관반(赤銅累三盥盤)
500근	700근	200근	1쌍(雙)	1부(部)

<표 11> 만송원에 대한 별폭 회례(1743년)

인삼	호피	표피	백면주	백저포	흑마포	백목면	황모필	화석	진목
2근	1장	1장	3필	3필	3필	5필	20병	5장	20홀
예조 마련								경상도 마련	

만송원의 별폭 물품을 앞에서 본 대마도주의 별목 물품과 비교해 보면,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조선측의 회례 내용은 그다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⑦ 1738년 변문절목(邊門節目)

『증정교린지』 [권4, 금조(禁條)]에 의하면, 1738년에 “변금(邊禁)이 해이해져서 간사한 짓을 하고 죄를 범하는 자가 많기 때문에 다시 절목을 마련하였다(以邊禁解弛 多有作奸犯科者 更申節目)”고 하였다.

『변례집요』 (권5, 금조)에는 “1738년 5월 동래부사 구택규(具宅奎) 때 변금이 해이해져서 간사한 짓을 하고 죄를 범하는 자가 많아서, 법 조문을 엄격하게 정립하여 국법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그러므로 전해오는 등록(謄錄) 중에서 시행할 만하나 지금은 폐지된 것과 신절목에 따라 반드시 시행할 것을 사정과 민속을 참고하여 먼저 쉽게 시행할 것을 조례로 만들어서 외

람되게 천충을 번거롭게 하니,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침삭하도록 분부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하였다. 이때 마련한 항목은 총 31개이며, ‘변문절목(邊門節目)’이라는 절목으로 기록되어 있다.

『전객사별등록』 무오(1738) 6월 17일조에도 ‘변문절목’이 수록되어 있다. 항목은 모두 30조이다. 『전객사별등록』, 『변례집요』, 『증정교린지』의 내용을 비교해 보기 위해, 수록된 내용을 정리한 것이 <표 12>이다.

<표 12> 각 문헌에 남아 있는 邊門節目的 내용

변례집요		전 객 사 별 등 록	증정교린지
우동(右同)	1	왜방(倭房) 출입금지, 개시(開市) 장소 재확인, 잡상(雜商)의 개시 참여	좌동(左同)
우동(右同)	2	향소중군(鄉所中軍)의 왜방 출입 감시, 개시군관의 개시 통제	
우동(右同)	3	장교는 잡물 매매 금지, 상한(常漢)만 잡물 거래 허용, 장교의 밀무역에 대한 경계	
우동(右同)	4	직역자들의 수문(守門) 내에서의 사사로운 접촉 통제, 왜방 출입례에 따라 처벌 / 불고지죄 적용(훈도, 별차, 수문군관)	좌동(左同)
우동(右同)	5	설문(設門) 왕래 전면 금지. 다대진(多大鎭), 서평진(西平鎭)에는 공무로 가는 자, 농부 외에는 왕래 금지	좌동(左同)
우동(右同)	6	신구초량촌민(新舊草梁村民)의 설문 내, 왜관 서쪽 담장 주변에서 뺨감 구하기나 나물캐기 금지, 농민범금례(農民犯禁例)에 따라 처벌 / 불고지죄 적용[복병장(伏兵將), 군관]	
우동(右同)	7	한잡인(閑雜人) 왕래 금지, 설문과 서남북병소의 경계 강화, 불고지죄 적용(서남북병소와 설문의 장교)	
우동(右同)	8	군관에서 소통사(小通事)까지 설문~수문 사이에서의 사사로운 접촉 통제 왜방출입례에 따라 처벌, 불고지죄 적용[훈도, 별차, 거리통사(巨里通事), 설문장(設門將), 수문장(守門將)]	좌동(左同)
우동(右同)	9	조시(朝市) 거래 물품 규제, 조시 참여 상인 통제, 조시 때 수문 안에 들어가는 것 통제, 난입변문지률(闖入邊門之律)로 처벌 / 불고지죄 적용(수문장)	좌동(左同)
우동(右同)	10	부산 영선감색(營繕監色)과 시탄운급부지군(柴炭運給負持軍)에 대한 출입 규제 / 왜관 체류 시간 등 보고	좌동(左同)
우동(右同)	11	입직통사(入直通事) 외의 소통사 설문 출입 통제	좌동(左同)
우동(右同)	12	관직(館直)의 수패제(受牌制) 실시	좌동(左同)
우동(右同)	13	첩분(帖文)을 가진 부산진 사환의 왜관 출입 내용을 수문과 설문에서 동래부에 보고	좌동(左同)

우동(右同)	14	입번(入番)하는 통사(通事), 소동, 사영은 입번 5일 안에는 설문 출입 금지	좌동(左同)
우동(右同)	15	연향을 준비하는 잡색인(雜色人)에 대한 서복병장, 동복병장, 북문통사의 출입 보고	
우동(右同)	16	수문과 설문 근무 인력의 인원 축소, 세 곳 복병장의 선임, 인원 충원 때 해당 진(鎭)의 감색(監色) 처벌, 수문통사가 설문 출입 때 수검(搜檢)	
우동(右同)	17	운미감관(運米監官), 운미군(運米軍)의 왜선소(倭船所) 출입 규제, 왜관 체류 시간 등 보고, 왜관 선소에 머문 운미선(運米船) 수검	좌동(左同)
우동(右同)	18	운미감관(運米監官) 임의 왕래 금지/勿禁帖 소지자만 출입 허용, 발각 되면 운미감관과 수문 파수(把守) 처벌	
우동(右同)	19	동래부, 각진(各鎭) 소속들의 연향, 왜관 수리 때 수검	
우동(右同)	20	조시(朝市) 때 수문군관이 거래 현황을 보고	
우동(右同)	21	훈도·별차·출사역관(出使譯官)의 노자(奴子)들의 집에 대한 수검, 수검 방법 강화, 수검을 담당할 군관의 처벌 규정 강화	
우동(右同)	22	일본인의 역관가(譯官家)(훈도, 별차, 출사역관) 왕래에 대한 보고[거리통사((巨里通事)-수문군관-상부 보고]	좌동(左同)
우동(右同)	23	훈도·별차·출사역관의 노비가 부산 조시에 왔다가 다시 설문으로 들어갈 때 특별 수검	좌동(左同)
우동(右同)	24	일본인의 청직가(廳直家) 출입 통제, 일본인과 사사로운 접촉한 청직은 벌역(罰役)으로 처벌	좌동(左同)
우동(右同)	25	연향의 숙동(熟供) 때 북문의 개폐 권한 지정. 개폐 상황을 동복병장, 수문통사, 부산감관이 연명으로 보고, 발각되면 복병장, 담당통사, 운미감관과 수문 파수 처벌	
우동(右同)	26	수문군관, 별기위(別騎衛)에서 차출(6명) 급료 외 목면 지급 / 설문 군관, 해사근신자(解事謹愼者)에서 차출(12명) 급료 외 쌀 지급/목면과 쌀은 입번 때의 찬비(饌費)로 사용케 함 / 타 잡역의 줄임	
『우진토상(愚塵吐想)』 우동(右同)	27	수문군관과 설문군관에 장(醬)을 지급(입번 때 반찬 보조) / 보고에 쓸 붓, 종이, 묵 지급	
우동(右同)	28	수문과 설문에 고목식례(告目式例) 지급(동래부 보고용)	
우동(右同)	29	수문군관과 설문군관의 범죄가 있을 때 관문입직(官門入直) 천별장(千別將)을 보내어 처리	
우동(右同)	30	연향 때 준비하러 가는 역인(役人)의 수는 모두 사후 보고, 출입시간 등 보고	
미진한 것은 추후 마련	31		

<표 12>를 보면, 『전객사별등록』에는 30조, 『변례집요』에는 31조, 『증정교린지』에는 16조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증정교린지』는 변문절목의 내용을 절반 정도 줄인 것임을 알 수 있다. 『전객사별등록』과 『변례집요』는 내용이 동일하다. 마지막 조항인 “미진한 조건은 추후에 마련한다(未盡條件追後 磨鍊爲白齊)”는 조항만 『전객사별등록』에는 없다. 다만 양자는 22조와 23조는 서로 순서가 각각 바뀌어 있다.

비변사에서는 이 절목을 상세히 살펴보니, ㉠ 왜인의 방에서 매매하는 것을 금하는 명령을 거듭 밝히고, ㉡ 예전 규약의 수문(守門)과 설문(設門) 두 문의 방금(防禁)을 별도로 거듭 엄중하게 하였는데, 모두 긴요한 것으로서 실효를 거둘만 하므로 지금부터 한결같이 절목대로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

이상에서 『국역 전객사별등록』(Ⅱ)의 주요기사를 몇 가지 내용 중심으로 정리하여 보았다. 이 외에도 연례송사 예단잡물가(年例送使禮單雜物價), 공작미(公作米), 문위역관(問慰譯官), 왜관 서북병소(西伏兵所), 왜관 토목공사, 표류민, 동래부 세삼(稅蓼), 잠상(潛商), 책문개시(柵門開市) 등 조선후기 교류사, 특히 18세기 전반 한일교류사, 부산지역사와 관련된 다양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6. 『국역 전객사별등록』(Ⅲ) 개관

『국역 전객사별등록』(Ⅲ)은 1745년(영조 21, 을축) 1월 7일부터 1746년(영조 22, 병인) 12월 21일까지의 내용을 번역한 것이다. 현존하는 원본의 제5책과 제6책, 즉 규장각 영인본 『전객사별등록』(二)의 227~584쪽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국역 전객사별등록』(Ⅰ)은 1699~1736년의 38년간(단, 4년간의 기사는 없음), 『국역 전객사별등록』(Ⅱ)는 1737~1744년의 8년간의 기사가 수록된 데 비해서, 『국역 전객사별등록』(Ⅲ)은 1745, 1746년의 2년간의 기사를 수록하고 있다. 1745년과 1746년이 각각 영인본의 제5책, 제6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규장각 영인본에는 날짜별로 내용을 요약한 요약문을 목차에 실고 있다. 그리고 같은 날짜에 수록된 기사라도, 원본에서 문두(文頭)에 ‘一’이라는 글자를 붙여 구분하여 시작되는 기사는 독립된 기사로 처리하여 별도의 목차를 달고 있다.

원본에 있는 날짜별 기사항목을 한 건으로 보고, 연도별 기사항목의 건수(件數)를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단 동일한 날이라도 따로 명기되어 있으면, 규

장각 영인본 목차에서 정리한 것처럼 다른 건으로 처리하였다.

<표 13> 『국역 전객사별등록』(Ⅲ)의 연도별 기사항목 수

연 도	1745	1746	합계
항 목 수	69	89	158

<표 13>에서 보는 것처럼, 1745~1746년 2년간의 전체 항목 건수는 『국역 전객사별등록』(Ⅱ)와 비교할 때, 비슷한 수치를 보인다.

『전객사별등록』은 날짜의 선후에 따라 정리되어 있다. 그런데 서울대학교 규장각에서 발행한 영인본(二)의 목차를 보면, 을축년(1745, 영조 21) 3월 7일조와 3월 3일조, 4월 15일조와 4월 12일조, 1746년 3월 8일조와 3월 4일조가 날짜의 순서가 바뀌어 있다. 이것은 영인본을 발행하는 과정에서 바뀐 것이 아니라 원본 자체가 바뀐 것이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문서가 도착된 날짜가 바뀌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한다.

항목별 순서가 바뀐 것 이외에, 내용상에서 시기가 문제 되는 부분도 있다. 병인년(1746, 영조 22) 4월 25일조 내용을 보면, <동래부사 심악이 4월 17일 성첩한 장계> 다음에, <동래부사 심악이 5월 29일 성첩한 장계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4월 25일조 다음은 6월 11일조다. 따라서 단순히 날짜의 선후만 본다면, <동래부사 심악이 5월 29일 성첩한 장계 내용>이 4월 25일조에 정리되어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6월 18일조를 보면, “신미조 2특송사 2호선이 재차 건너왔다(辛未條二特送使二號舡再渡次)”라는 내용이 있다. 1746년 이전의 신미년은 1691년이다. 1691년조 제2특송사 2호선이 1746년에 재도(再渡)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신미년은 신유년(1741)의 오키일 가능성이 크다.

『국역 전객사별등록』(Ⅲ)의 첫 기록은 을축년(1745, 영조 21) 1월 7일조이다. 기사의 내용은 <경상우수사, 즉 통제사 이의풍(李義豐)이 장계한 내용>과 <이에 의거해서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啓目)에 대한 계하(啓下) 내용>의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 경상우수사 이의풍이 장계한 내용은 ㉠ 옥포왜학 김진혁이 노병으로 기신(起身)할 수 없으므로, 지세포 앞바다에 정박한 왜선의 조사는 소통사 김원정이 대신하도록 함, ㉡ 김원정의 보고에 의하면 이 배는 신유(1741년)조 제6선으로 공작미를 가져가기 위해 왔다가 바람이 불순하여 표류하여 정박한 배임, ㉢ 이 배를 폐단없이 다대포로 보냈음, ㉣ 근래 왜선이 표류하여 정박하는 것이 계속되어, 문정(問情)하는 것을 소홀히해서는 안 되는데,

김진혁이 노병(老病)으로 일에 착오가 많으므로, 김진혁을 먼저 파직했으니 대신할 옥포왜학을 빨리 내려보낼 것 등이다.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에 대한 계하>는 통제사 이의풍이 옥포왜학 김진혁을 먼저 파직시킨 것을 인정하면서, 왜학의 소임은 오래 비워두어서는 안 되니, 각별히 선발하여 재촉하여 보내는 것이 좋겠다는 내용이다. 그대로 시행하라는 영조의 윤허가 있었다.

이처럼 각 항목별 기사에는 연례송사, 표류선, 공작미 문제, 왜관 수리, 조선인 결박사건, 은화 등 당시 양국 사이에서 해결해야 할 다양한 현안 문제가 수록되어 있다. 이 가운데 주목되는 내용을 몇 가지 주제로 나누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7. 『국역 전객사별등록』(Ⅲ)의 주요기사 내용 검토

① 일본 표류선

『국역 전객사별등록』(Ⅲ)에 수록된 기사의 대부분은 부산과 그 주변 일대에 표류한 대마도 표류선 관련 내용이다. 이들 선박은 어로 등 생산활동을 하는 일반 선박은 아니고, 대부분 초량왜관에서 이루어지는 외교나 무역 업무와 관련된 선박이다. 연례송사선(年例送使船), 비선(飛船), 신관수가선(新館守駕船) 등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공작미를 운반하는 선박이 많았다. 이들 선박이 표류한 가장 중요한 원인은 바람 때문이었다. 선박의 표착지역은 부산 인근 일대로서, 거제도 지세포(知世浦)와 옥포(玉浦), 기장의 무지포(武知浦), 가덕도 등지가 대표적이다. 표류선에 대해서는 대개 전례에 따라, 식량, 반찬, 땔감, 물 등을 지급하고, 안전하게 초량왜관에 정박하거나, 대마도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각별한 배려를 하였다.

1745년(을축) 3월 12일조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2월 28일 미시 경에 경상좌도 바다 한 가운데 수상한 작은 배가 한 척이 나타났다. 상세히 바라보았으나 조선배인지 왜선인지 알지 못한다고 구봉봉군(龜峯烽軍)이 부산첨사에게 보고하였다. 보고를 접한 부산첨사는 보고 내용이 분명하지 않으므로 상세하게 관측하라고 지시하고, 이 내용을 당일 동래부사에서 급히 전달하였다.

그런데 이 배는 기장(機張) 경계 안으로 들어갔다. 기장현감은 이 일로 즉시 순영(巡營)으로 달려가고, 기장현 삼공형(三公兄)은 이 사실을 부산첨사에게 보고하였다. 부산첨사는 이를 조사하기 위해 별차 김정태(金鼎台)를 파견하였다.

별차는 소통사 2명과 함께 이 일을 조사하였다. 기장현 삼공형의 보고 내용에 의하면 이 선박은 비선으로 기장현 무지포에 정박해 있는데, 공형이 가서 땔감과 물을 주고 수호하고 있다고 하였다. 부산첨사는 이 사실을 동래부사에게 29일 보고하였다.

그리고 경상좌수영에서는 감포만호(甘浦萬戶) 김만린(金萬麟)을 초탐장으로 보냈다. 그는 기장현 주사대장(舟師代將) 송상옥(宋尙玉)과 함께 이 배를 잘 수호하고 있다는 내용을 부산첨사에게 보고하였다. 부산첨사는 이 사실을 다시 동래부사에게 보고하였다. 이 배는 30일 묘시에 기장 무지포를 출발한 후 신시에 왜관에 도착하였다. 부산첨사는 즉시 훈도 현태익(玄泰翼)과 별차 김정태를 보내어 조사하게 했다. 그들이 보고한 수본(手本) 내용은 김정태가 혼자 조사한 내용과 차이가 없었다. 부산첨사는 이 사실을 동래부사에게 보고하였다. 그리고 동래부사는 이 내용을 3월 2일 장계로 보고하였다.

즉 동래부사 장계 내용에는 부산첨사 홍태두(洪泰斗)가 동래부사에게 보낸, ㉠ 2월 28일, ㉡ 2월 29일 자시(子時), ㉢ 29일 사시, ㉣ 29일 유시, ㉤ 30일 술시에 도착한, 5통의 치통(馳通)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표류선 관련 기사는 대일업무와 관련을 가진 동래부사, 부산진첨사, 경상좌수사 등 동래부의 내부 보고 체계와 상부 보고 체계를 상세하게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이다.

을축년 1월 12일조를 보면 기장현 무지포에 표착한 왜선에 타고 있던 일본인 격왜(格倭) 1명이 병으로 죽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 격왜는 관수왜선에 탄 격왜 40명 중 1명이다. 일본측의 그 시체를 육지에 내려 매장하겠다는 뜻을 소통사 김중화를 통해 부산첨사에게 전하였다. 그러나 부산첨사는 타국인의 시체를 육지에 내려 매장하는 것은 예법에 맞지 않다는 뜻을 다시 전하였다. 일본측은 작은 배에 옮겨 실었다가, 왜관에 돌아가 정박한 뒤에 육지에 내리겠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조선측은 작은 배에 옮겨 싣는 것도 쉽게 할 수 없으므로, 경상좌수사에게 보고한 후 그 회답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뜻을 전하였다. 이처럼 표류선을 둘러싸고 일어난 여러 일들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표류민과 관련해서는 예조 전객사에서 편찬한 『표인영래등록』이라는 책이 있다. 1641년부터 1751년까지의 110년간 조선 표류인을 데리고 온 차왜에 관한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 책에 수록된 내용 가운데 1745, 1746년의 2년간의 기사는 『전객사별등록』의 내용과 관련이 있는 부분이 있다. 양자의 비교 검토가 필요하다.

② 이정암송사

1609년에 체결된 기유약조에 의하면, 대마도주가 파견할 수 있는 사송선(使送船)은 세견선(歲遣船) 17척과 특송선(特送船) 3척이다. 1637년에 겸대제(兼帶制)가 실제로 실시된 이후에는 제1특송선 사절이 제2, 제3특송선의 외교문서를, 세견선 제4선이 제5~제17선의 외교문서를 가지고 왔다. 겸대제 실시로 연례송사(年例送使)는 상당히 정비되었다. 그리고 왜관에 한꺼번에 사절이 물리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사선이 왜관에 입항하는 달을 다르게 하였다. 즉 세견 제1, 2, 3선은 1월, 세견 제4선과 이정암(以酌庵, 以酌菴)송사선은 3월, 만송원송사선은 6월, 부특송사선은 8월에 오도록 정하였다. 연례송사가 연간 8회 파견되어 온다고 하여, 이들을 ‘(연례)팔송사’라고 부른다.

1609년에 기유약조를 맺을 당시 일본측 정관은 겐소(玄蘇), 부관은 야나가와 가게나오(柳川景直)이다. 조선측 선위사 이지완과 일본측 정관 겐소 사이에 기유약조가 체결되었다. 외교승 겐소는 기유약조를 체결시킨 공로가 인정되어, 조선으로부터 새로 만든 도서(圖書)를 발급받았다. 대마도주에 이어 임진왜란 이후 두 번째로 도서를 발급받은 수도서인(受圖書人)이 된 것이다. 겐소의 사송선은 그가 거주한 대마도의 사찰 이름을 따서 ‘이정암송사’라고 불렀다. 이정암은 겐소가 대마도로 가서 지은 선사(禪寺)이며, 산호(山號)는 할려산(瞎驢山)이다. 겐소가 태어난 1537년이 정유(丁酉)년이므로, 사찰 이름을 이정암(以酌庵)이라고 지었다.

이정암송사와 관련해서는 당년조(當年條) 이정암송사선이 표박(漂泊)함(1745.3.29), 이정암송사의 서계와 별폭, 이정암송사에 대한 회답서계와 별폭을 마련하게 함, 이정암송사 정관에 대한 증물(贈物)을 마련하게 함(1745.4.18), 신유조 이정암송사 재도선(再渡船)이 돌아가다 표류함(1746.3.22), 당년조 이정암의 서계와 별폭, 이정암에 대한 회답서계와 별폭 등을 마련함, 이정암송사 정관 등에 대한 증물을 마련함(1746.6.24), 이정암송사에 대한 회답서계를 다시 써서 내려보냄(1746.9.8) 등 기사가 수록되어 있다.

1745년 3월에 대마도를 출발한 이정암 송사선에는 정관 1인, 반종 2명, 종왜 1명, 격왜 40명, 교대차 나온 중금도왜 2인, 소금도왜 1명 등이 타고 있었다. 이들은 예조로 보내는 서계와 별폭을 각 한 통씩 가지고 왔다. 그 서계와 별폭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본국(日本國) 대마주(對馬州) 할려산(晴驢山) 이페이양[以酇菴] 화남(和南)이 조선국 예조대인(禮曹大人) 합하게 받들어 올립니다. 해가 영실(營室)에 있는데, 엮드려 생각컨대 문후(文候)는 개복(介福)하온지 손 모아 비는 마음 보통보다 배로 더합니다. 이제 세선(歲船)을 출발시킴에 정관(正官) 평구룡(平久隆) 및 종인(從人) 1명과 반종(伴從) 2명을 보내오니, 구식을 어기지 말고 환대하여 주시면 다행이겠고, 기록을 갖추어 공경하는 마음을 보냅니다. 진중하여 아끼시기를 바라오며, 숙배하고 이렇게 갖추지 못합니다. 연향(延享) 2년 을축(1745) 2월 일. 별폭 : 후추 200근, 단목(丹木) 300근, 채화7촌염경(彩畵七寸匣鏡) 1면(面). 계(計).

서계별폭의 내용을 보면, 후추 200근, 단목 300근, 채화거울 1개였다. 이에 대해 조선측에서는 연례무역(公 무역) 물품인 구리와 납(鐵)은 호조에 명하여 대조하여 처치하게 하였다. 그리고 별폭에 대한 답례로서 지급되는 별폭회례(別幅回禮)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다.

<표 14> 1745년 이정암송사에 대한 별폭회례

물품	인삼	호피	백면주	백저포	흑마포	백목면	황모필	화문석	四張 付油茱	眞墨
수량	3근	1장	3필	3필	3필	5필	20자루	3장	2부	20개
조달	예조 마련							경상도 지급		
출전: 을축년(1745) 4월 18일조.										

이정암송사선에 온 정관(正官)은 평구룡(平久隆)이다. 정관 1인의 연례무역(公 무역) 물품인 구리와 납(鐵)은 호조에 명하여 대조하여 처치하게 하였다. 그리고 전례에 따라 정관에게는 증물을 지급하였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5> 1745년 이정암송사 정관에 대한 증물

물품	황모필	매	개	우산지	四張付油茱	화문석	백지	참먹	다리미	
수량	5자루	1연	1마리	10장	1부	1장	1권	5개	1개	
마련	예조	경상도 지급								
물품	馬省	꿀	들기름	울무	녹두가루	호두	잣	대추	밤	곶감
수량		3되	3되	3되	3되	1말	1말	1말	1말	1점
조달	경상도 지급									
출전: 을축년(1745) 4월 18일조.										

병인년(1746) 6월 24일조에도 이정암송사의 서계(1746년 2월)와 별폭, 이에 대한 조선측의 별폭회례, 정관 평연현(平連顯)에 대한 증물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1745년 내용과 대동소이하지만, 양자를 비교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사는 이정암송사의 서계, 별폭, 조선측의 별폭회례, 정관에 대한 증물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③ 공작미 포함과 동래접왜절목

1651년에 공목 300동을 1필당 미 12두로 환산하여 12000석을 지급하는 공작미제가 실시되었다. 1660년에는 공작미가 16000석으로 증가하였다. 공작미를 비롯하여 해마다 왜관에 반입해야 할 쌀은 2만 수천석이나 되었다. 공작미 등 왜공미(倭供米)는 규정된 액수대로 왜관에 잘 반입되지 않았다. 하납읍(下納邑)에서 부산진의 부창(釜倉)으로, 부창에서 왜관으로 운송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중간 횡령, 즉 포함(逋欠)이 이루어져서 미납액이 증가하였다. 공작미의 포함은 공작미의 책정에서 반입까지의 전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사람들이 주도하였다. 그 중에서도 운미감관(運米監官)은 대표적인 사람이었다. 운미감관은 부창의 공작미고(公作米庫)에서 왜관까지 공작미를 운반하는 감독 책임자이다.

운미감관이 포함한 대표적인 사례로는 동래부사 정이검(1742.9~1743.6) 때 일어난 운미감관 전우장(田雨章)의 포함사건이다. 이 사건에는 동래부사 정이검의 비장도 연루되어 있었다. 이 사건의 전말은 『영조실록』(20년 8월 을묘), 『승정원일기』(20년 8월 11일), 『변례집요』(권8, 공무역, 갑자 7월) 등에 상

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이 사건의 결과, 주모자인 전우장은 효수(梟首)되었다. 이 포흠에 연루되어 동래부사 정이검은 도(徒)3년의 유배형에 처해졌다. 그리고 이 사건을 경상감사에게 보고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처단한 동래부사 김한철(1743.6-1744.12)도 파직되었다.

『전객사별등록』에 수록된 을축년(1745) 7월 12일자 기사에는 전우장 포흠 사건에 대한 영조의 전교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교린의 도리는 마땅히 미더워야 한다. 유정지공(惟正之供; 바른 조세)을 들로 하여 하납과 상납으로 일컬은 의리는 깊다. 이는 예전 교린의 성덕(聖德)인데, 쌀에 모래를 섞고 숯임에도 오히려 나무라 하니, 이 어찌 교린에 마땅히 미더워야 하는 뜻이겠는가? 듣고보니 나도 모르게 한심하다. 이번에 윤미감관을 효수하여 보인 이후로, 도신(道臣)이 장계로 청한 것은 모두 근거한 바가 있으니, 비국에 명하여 즉시 복주(覆奏)하게 하라. 그 중에 매우 심한 자는 차원(差員)과 첨사(僉使)를 엄중하게 조사하여 범한 사람은 즉시 효수하여 보인 뒤에 장계로 알리라는 뜻의 일체 절목을 계하(啓下)한다. 아아. 나는 비록 덕이 모자라나, 어찌 한 차원, 한 첨사를 아껴서 교린에 모욕을 당하겠는가? 이를 절목에 넣게 하라.”

공작미, 즉 하납미는 교린과 관련된 일이므로, 이런 일로 인해 교린에 모욕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포흠을 하다 적발되면 먼저 처형한 후에 장계를 올려 보고해도 좋다는 내용을 절목으로 마련하라고 하였다.

공작미 포흠 문제는 영조가 직접 전교를 내려 절목을 만들 것을 지시할 정도로, 양국간의 교린 관계에 있어 중요한 문제였다. 공작미 포흠에 대한 영조의 인식을 알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이 내용은 『승정원일기』 영조 21년(1745) 7월 11일조와 『비변사등록』 같은 날과 11월 26일조에도 기록되어 있으므로, 비교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영조가 만들 것을 지시한 절목은 즉시 만들어진 것 같지는 않다. 『승정원일기』(영조 26년 5월 16일조)와 『비변사등록』 같은 날조에 보면, 경상도에서 『동래접왜절목(東萊接倭節目)』의 초본이 최근에 올라왔으므로, 전에 영조가 하교한 것에 따라, 상세하게 첨삭을 한 후에 정서하여 보고한다고 하였다. 이 『동래접왜절목』의 내용은 『비변사등록』(영조 26년 5월 16일조)과 『변례집

요』(권8 공무역 下納諸節條)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동래접왜절목』은 공작미의 징수, 운반, 보관, 왜관 납입의 전 과정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한 가장 상세한 규정으로, 그 공작미 연구에서 사료적 가치가 크다고 생각한다.

④ 초랑왜관 화재와 복병군 임세망 물고문 사건

『전객사별등록』 병인년(1746) 1월 15일조는 왜관에서 일어난 조선인 결박 사건 기사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745년 12월 9일, 왜관 동문의 복병군(伏兵軍) 임세망(林世望)을 왜인이 갑자기 결박하여 왜관 안으로 들어갔다. 일이 극히 놀랍고 참담하여, 훈도와 별차에게 전령하여 엄중한 말로 책망하여 타이르게 하였다. 훈도와 별차가 임세망을 조사한 후 보고한 사건의 전말을 다음과 같다. 부특송사왜가 거주하는 집의 청마루 아래에서 까닭없이 불이 나서 마루판 예닐 곱 장과 방석자리[茵席]가 모두 불탔다. 왜인은 임세망을 의심하여 그의 행동이 수상하다는 핑계로 결박하여 잡아갔다. 임세망을 판자 위에 눕혀 놓고 무수히 협박하며 냉수를 마시게 하여 배가 불러 터지게 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임세망이 끝내 모른다고 답하자, 왜인은 그에게 소주를 먹이면서 달래고 풀어주었다.

다음날 임세망이 수문군관에게 호소하기 위하여 나갔더니, 왜인이 또 결박하여 몰고 들어가서 이전대로 따져 물었다. 극구 사실대로 말하면서 종일토록 서로 다투었다. 훈도와 별차 등이 다시 달려가서 책망하여 타이르자, 다시 풀어주었다. 그간의 사정을 복병장 김두곶이[金厚邑是]에게 물어보기 위해 그를 잡으려고 했더니, 김두곶이는 겁을 먹고 이미 도망하였으므로, 그를 추적하는 중에 있었다.

이 일에 대해서 동래부사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였다. 왜관 안에서 불이 난 것은 7일 야간이므로, 수문(守門)이 이미 닫히고 인적이 모두 끊어져 우리 쪽 사람이 알 수 있는 곳이 아니므로, 우리 쪽 사람을 의심하는 것은 매우 무리하고 절통한 일이다. 단지 왜인의 근거없는 말에 의거하여 임세망의 죄를 단정한다면, 저들의 계략에 적중하여 뒷날의 폐단을 방지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가법계는 파시(罷市)하고 무점계는 철공(撤供)하는 조처를 취할 것을 동래부가 장계로 알려 거행하겠다는 것을 훈도와 별차 등에게 명하여 관수왜에게 책망하여 타이르게 하였다. 그리고 묘당에 명하여 상의하여 지시해 달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비변사에서는 왜인이 제멋대로 우리 쪽 사람을 결박하여 들어간 것은 극히 놀랍고, 후일의 무궁한 폐단에 관계되는므로, 장계로 청한 것은 적절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임세망과 김두곶이는 곤장을 쳐서 죄를 다스리고, 이

대로 엄하게 책망하여 타이르라는 뜻으로 분부하도록 하였다. 영조도 이를 윤택하였다.

이 기사에서 보듯이 왜관의 일본인은 임세망을 잡아 판자 위에 결박한 후, 냉수를 수없이 먹이는 수법으로 물고문을 하여, 방화를 시인할 것을 강요하였다. 이 내용은 『변례집요』(권 11, 館宇) 을축년(1745) 12월조, 『승정원일기』 영조 22년 1월 13일조, 『비변사등록』 동년 1월 15일에도 기록되어 있다. 화재가 난 건물에 대해서 『전객사별등록』, 『승정원일기』, 『비변사등록』에서는 부특송사왜가 거처하는 건물, 『변례집요』에서는 금도왜(禁徒倭)가 거처하는 건물이라고 하여, 양자간에 차이를 보인다.

그런데 임세망은 이날 복병(伏兵)을 대번(代番)하였다. 『전객사별등록』에는 이 사실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동래부에서는 복병을 대번한 죄를 추궁하였다. 그리고 차후에 임세망 사건과 같이 우리 사람을 왜관으로 결박하여 잡아가는 일이 발생하면, 왜관의 개시를 혁파하거나, 왜공을 철폐한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초량왜관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하여, 일본인이 조선인을 결박한 사건을 둘러싸고 일어난 일본인과 조선인의 갈등 관계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만약 방화였다면, 실제 방화를 주범은 누구이며, 왜관의 일본측은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였는지는 사료상의 한계로 잘 알 수 없다. 이 사건과 관련된 일본측 사료의 발굴이 요망된다.

⑤ 공작미 운반선

『전객사별등록』에는 대마도에서 초량왜관으로 건너오는 많은 종류의 선박에 대한 기사가 있다. 그 가운데 주목되는 것은 공작미를 가져가기 위한 목적으로 온 선박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들 선박은 ‘공작미재거차 출래(公作米齎去次 出來)’라고 하여 온 목적을 밝히고 있다. 이 외에 초량왜관에서 대마도로 돌아갈 때 공작미를 싣고 간 배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이들 선박은 대개 ‘재공작미 입귀차載公作米 入歸次’라고 기록되어 있다. 공작미를 싣고 돌아가는 배는 원래 조선에 온 목적이 공작미를 가져가기 위한 배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왔다가 공작미를 싣고 가는 것인지를 구분하기 어렵다. 공작미를 싣고 돌아가는 배의 유형은 매우 복잡하여 정리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그래서 공작미를 싣고 가기 위한 목적으로 온 배에 한정하여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16> 공작미를 운반하기 위해 왜관에 온 대마도의 선박 유형

연조	명칭	도항시기	승선 왜인												소지물	출전		
			격왜	서승왜	별일대관왜	중금도왜	삼대관왜	소금도왜	별대관왜	하대왜	공하대왜	별금도왜	통사왜	중왜			관수왜서기왜	도금도왜
신유	6선	1745.1.5	30			3		1		1			1				노인	1745.1.7
신유	8선	1745.2	30			1		2									노인	3.7
신유	7선	1745.2	30			1											노인, 어유3통	3.7
신유	9선	1745.3.13	30				1	2	1			1		3			노인, 술통	3.22
당년	1선 送使 水木船	1745.3	15	1										2	1		노인, 남초1칭	4.3
신유	10선	1745.4.8	30			1		8		1			2				노인	4.22
신유	11선	상동	20						1	1							노인	4.22
신유	13선	1745.4.23, 24	20			1		1									노인 어유3통 담배1칭	5.8, 18
신유	12선	1745.4.24	20							1			1				노인	5.16
신유	16선	1746.1.5	20			2						2					노인 어유5통 술3통	1746. 1.13
신유	11선	1746.1.12	20					2				2					노인 술3통 어유 2통	1.23
신유	萬松院送 使再渡船	1746.2	40			1		1				1					노인 술3통 어유2통	2.25

신유	1특송 2호선	1746.3.16	30			1	3		1								잡물	3.25
신유	2특송 1호재도 선	1746.3.20	40			2		2									노인	윤3.2
임술	13선		20			1			1								노인 술3통	4.25
당년	1선송 사수목선	1746.6.2	15					1	1								노인 어유	6.11
신미	2특송2호	1746.6.6	30			1		2									노인	6.18
당년	2특송1호	1746.7.6	14			4		4				1					노인	7.24
당년	2특송2호	상동	30			2		1								1	노인	7.24
당년	2특송 수목선	1746.9.2	20			2		2		1							노인	9.17
임술	15선		20		1	1					2		1	7			노인	11.14
비고	연조의 신미는 신유의 오기일 가능성이 크다.																	

표에서 보는 것처럼, 선박의 종류는 망라되어 있다. 세견제1선, 제1특송선, 만송원선과 같은 연례팔송사선보다 오히려 겸대제 실시 이후에 겸대된 세견선 제5~17선이나 제2~3특송선 쪽이 많은 점이 주목된다. 세견선의 경우 제5~17선의 13척의 세견선은 제4선이 겸대하므로, 서계와 별폭은 제4선송사편에 보내고, 노인을 지참하고 도래 시기에 관계없이 출래하여 공작미를 싣고 가는 것이 관례였다. 위의 표는 이러한 양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일본에서 건너온 사신이 왜관에 체류하는 동안 조선정부가 식료의 명목으로 사신 개인에게 ‘오일잡물’이라는 것을 지급하였다. 5일마다 지급되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오일량, 오일량찬, 오일차’라고도 불렀다. 원래는 현물로 지급되었다가, 쌀로 환산하여 지급하였다. 처음에는 사신 개인의 부수입이 되었지만, 1663년 이후 대마번이 수납하는 제도로 바뀌었다. 『증정교린지』에 의하면, 세견 제5~17선과 제2~3특송선에 대해서 요병미(料餅米), 주찬가미(酒饌價米), 육물(陸物, 배에 일상적으로 쓰는 물품)은 그 수량을 헤아려 겸대대관(兼帶代官)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였다. <표 16>의 승선 왜인과 겸대대관과의 관계는 알 수 없다. 여하튼 다양한 유형의 배가 도래 시기에 관계없이 출래할 경우, 이들에게 지급하는 오일잡물의 양 또한 상대적으로 증가하였다고 생각한다. 이것 또한 다양한 유형의 운반선이 도향한 것과 관계된다고 생각한다. 1660년 이후 1년에 지급되는 공작미의 양이 16000석이나 될 정도로 많았기 때

문에 분산하여 운반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공작미 운반에는 다양한 유형의 선박이 동원되었다고 본다.

표에서 신유년(1741)조 명목으로 온 사송선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점도 주목된다. 이들 선박은 신유년 당시 도항해야 할 선박인데 이때에 온 것인지, 아니면 신유년조의 공작미 지급이 4~5년 정도 늦어져서 1745, 1746년에 도항한 것인지, 이 연조의 성격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지금까지의 공작미 연구에서는 공작미가 초량왜관에서 대마도로 건너가는 양상이나, 공작미 운반선에 관해서는 전혀 주목하지 못하였다. 공작미 연구에서 검토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⑥ 대마도주 세건선의 '서계별폭'과 그에 대한 회례별폭 및 증물

동아시아 국가 사이에 교환된 외교문서는 통교 관계를 반영하고 있다. 조선과 일본 사이에는 국서와 서계(書契)라는 두 가지 종류의 교린문서가 교환되었다. 국서는 조선 국왕과 일본 막부장군 사이에 주고받은 문서다. 서계는 외교 실무부서, 즉 조선의 예조·동래부사·부산첨사와 일본의 대마도주·만송원·이정암 등 사이에 교환된 문서다. 국서와 서계에는 각각 별폭이라는 문서가 붙어 있다. 별폭은 예물의 종류와 수량을 적은 물품목록으로, 서계에 딸린 별폭을 흔히 '서계별폭'이라 부른다.

1609년의 기유약조에 의하면, 대마도주가 파견하는 사송선은 세건선 17척과 특송선 3척이다. 그런데 1637년에 겸대제가 실시된 이후에는 제1특송선 사절이 제2, 제3특송선의, 세건선 제4선이 제5~제17선의 외교문서를 가지고 왔다. 따라서 대마도주가 파견하는 사송선은 세건선 제1~4선과 제1특송선의 5척만 외교적인 의례를 가졌다.

병인년(1746, 영조 22) 4월 25일조에는 대마도주 평의여(平義如)가 1746년 1월에 세건선제1~3선편으로 보낸 서계와 별폭이 수록되어 있다. 이 서계와 별폭에 대해 조선에서는 승문원(承文院)에 명하여 회답 서계를 짓게 하였다. 그리고 별폭에 대한 답례인 별폭회례를 예조나 경상도에서 마련하여 지급하도록 하였다. 그 내용은 4월 25일조에 수록되어 있다. 세건선 제1~3선의 서계별폭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17> 병인년(1746) 대마도주가 파견한 세견선의 서계별품

	세견제1선	세견제2선	세견제3선
호초(胡椒)	500근		
단목(丹木)	700근	30근	30근
명반(明礬)	300근		
대화진주(大和眞朱)	2근		
문지(紋紙)	300편		
비고: 『증정교린지』 권1, 연례송사조의 내용과 동일			

별품의 내용은 『증정교린지』(권1, 연례송사)에 수록된 내용과 동일하다. 세견제2선과 3선은 별품이 단목 30근뿐이다. 제2, 3선과 제1선은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별품의 품목과 수량에서 차이를 보인다. 답례로서 조선측이 지급한 별품회례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8> 병인년(1746) 대마도주가 파견한 세견선에 대한 별품회례

	세견제1선	세견제2선	세견제3선
인삼	3근		
호피	2장		
표피	2장		
백면주	4필		
백저포	5필		
흑마포	4필		
백목면	10필		
황모필	30자루		
응자[매]	2연	1연	1연
화석(花席)	5장		
진묵[참먹]	30개		
비고: 『증정교린지』 권1, 연례송사조의 내용과 동일			

별품회례의 내용은 『증정교린지』(권1, 연례송사)에 정리된 것과 동일하다. 세견제2선과 3선은 별품회례가 매 1마리뿐이다. 제2, 3선과 제1선은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별품회례의 품목과 수량에서 차이를 보인다.

『증정교린지』에 근거하여 세견선 송사(送使)의 구성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19> 대마도주가 파견한 세견선의 승사 구성

	정관	도선주	봉진압물	반종	격왜	수목선 격왜
세견제1선	1	1	1	3	40	15
세견제2선	1			1	40	
세견제3선	1			1	40	
세견제4선	1			1	30	
세견제5~10선					30	
세견제11~17선					20	
출전: 『증정교린지』 권1, 연례송사.						

표를 보면, 세견제1선은 정관(正官) 1명, 도선주(都船主) 1명, 봉진압물(封進押物) 1명, 반종(伴從) 3명, 격왜(格倭) 40명, 수목선(水木船) 격왜 15명으로 구성되었다. 세견제1선에만 수목선이 따라왔다. 수목선은 물과 연료를 본선(本船)에 운반하는 작은 배다. 연례송사 가운데 수목선을 허락받은 경우는 세견제1선송사, 제1~3특송사, 만송원송사, 부특송사뿐이다.

표를 보면 세견제2선과 3선은 동일하다. 그리고 제4선은 제2, 3선보다 격왜가 10명 적다. 제5~17선은 제4선에 견대되므로, 격왜밖에 없다. 격왜도 제5~10선과 제11~17선이 차이를 보인다.

정관, 도선주, 압물에게는 증물(贈物)로 다양한 물품이 지급되었다. 내용은 4월 25일조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20> 병인년(1746) 대마도주가 파견한 세견선의 정관 이하 원역(員役)에 대한 증물

물품	세견제1선 정관	도선주	압물	세견제2,3선 정관
인삼	1근	10냥		
황모필	10자루	5	5	5
응자[매]	1연	1	1	
견[개]	1마리	1	1	1
우산지	1권	10장	10장	10
넉장 불인 유둔 [四張付油屯]	1부	1	1	1
화석(花席)	1장	1	1	1
백지(白紙)	3권	2	1	1
진묵[참먹]	10개	5	5	5
다리미[火熨]	1개	1	1	1
마성(馬省)	2개	2	1	2
청밀[꿀]	5되	3	3	3

법유[들기름]	5되	3	3	3
울무씨	5되	3	3	3
녹두말[녹두가루]	5되	3	3	3
호두	1말	1	1	1
잣	1말	1	1	1
대추	1말	1	1	3
황율[밤]	1말	1	1	1
건시[꽃감]	1접	1	1	1
백지		2권		

세견제1선은 정관, 도선주, 압물이 각각 1명인데 비해, 세견제2, 3선은 정관 1명뿐이다. 따라서 제1선은 정관, 도선주, 압물 모두에게 증물이 지급되었지만, 제2, 3선은 정관에게만 지급되었다. 지급된 증물의 품목 가운데 수량을 제외하면, 품목 중에서 가장 차이가 나는 것은 인삼과 매다. 제2, 3선의 정관에게는 인삼과 매가 제외되었다. 제1선의 압물에게도 매는 제외되었다. 증물 가운데서도 이 두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과 상징성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견제 1~3선의 원역에게 지급된 증물의 실태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8. 『국역 전객사별등록』(IV) 개관

『국역 전객사별등록』(IV)는 1747년(영조 23, 정묘) 1월 12일부터 1753년(영조 29, 계유) 12월 28일까지의 내용을 번역한 것이다. 현존하는 원본의 제7책과 제8책, 즉 규장각 영인본 『전객사별등록』(三)의 1~472쪽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제7책과 제8책은 규장각 원본의 표제어에는 각각 「別謄錄 第八」, 「別謄錄 第九」로 되어 있다. 규장각 원본에는 표제어에 「別謄錄 第六」이 없다.

『국역 전객사별등록』(I)은 1699~1736년의 38년간(단, 4년간의 기사는 없음), 『국역 전객사별등록』(II)는 1737~1744년의 8년간, 『국역 전객사별등록』(III)은 1745, 1746년의 2년간, 『국역 전객사별등록』(IV)는 1747~1753년의 7년간의 기사를 수록하고 있다.

규장각 영인본에는 날짜별로 내용을 요약한 요약문을 목차에 실고 있다. 그리고 같은 날짜에 수록된 기사라도, 원본에서 문두(文頭)에 ‘一’이라는 글자를 붙여 구분하여 시작되는 기사는 독립된 기사로 처리하여 별도의 목차를 달고 있다.

원본에 있는 날짜별 기사항목을 한 건으로 보고, 연도별 기사항목의 건수(件數)를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단 동일한 날이라도 따로 명기되어 있으면, 규장각 영인본 목차에서 정리한 것처럼 다른 건으로 처리하였다.

<표 21> 『국역 전객사별등록』(IV)의 연도별 기사항목 수

연도	1747	1748	1749	1750	1751	1752	1753	합계
항목수	19	41	48	29	27	23	29	216

<표 21>에서 보는 것처럼, 1747년의 19건이 가장 적고, 1749년의 48건이 가장 많다. 특히 1749년이 항목 수가 많은 것은 대마도주 소 요시유키(宗義如)가 특송사편으로 보낸 봉서와 별폭이 1건씩으로 처리되어 많았기 때문이다. 1748년에는 홍계희(洪啓禧)를 정사로 하는 통신사가 일본에 파견되었다. 때문에 통신사 호행차왜(護行差倭)의 진상 물목과 수량, 통신사 장계서간을 가지고 온 비선(飛船), 통신사 예단은(禮單銀) 등 통신사와 관련된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다.

전체 체제는 연별, 월별, 일별 순서로 되어 있다. 다만 임신년(1752)의 경우는 3월, 4월, 6월 등 월[달]까지만 적고, 일[날]을 적지 않은 경우가 있다. 그리고 임신년 3월의 <왜관수리비용마련을 위해 동래부의 공작목과 저치미를 작전(作錢) 무염(貿鹽)하기로 함> 항목은 4월 8일 다음에 수록되어 있어 날짜 순서가 바뀌어 있다.

『국역 전객사별등록』(IV)의 첫 기록은 정묘년(1747, 영조 23) 1월 12일조이다. 기사 내용은 <동래부사 홍중일(洪重一)이 1월 5일 장계한 내용>이다. 초량 왜관 건물의 손상 유무를 매달 조사하고, 또 연말에 별도로 조사하도록 하는 것이 절목에 정식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이 규정에 따라 무인년(1746, 영조 22) 12월 28일에 동래부 감색(監色), 부산진 감색, 훈도, 별차가 함께 조사하였다. 조사를 마친 감색 등은 “왜관 건물의 비 새는 곳은 각 진(鎭)으로 하여금 이미 지붕을 덮게 하였다. 그러나 크게 파손된 곳은 전과 다름이 없다.”라고 보고하였다. 이에 따라 빨리 보수하라는 뜻으로 거듭 신칙(申飭)한 연유를 보고한 것이다.

이처럼 『국역 전객사별등록』(IV)의 각 항목별 기사에는 왜관 수리, 표류선, 해일(海溢) 피해, 공작미, 왜관 일본인의 사망, 통신사호행차왜, 예단삼, 일본인 연향비용, 서계, 별폭, 일본인 성묘, 인삼, 구리, 은, 조삼(造蔘)의 폐단, 돈삼계,

동래접왜절목, 신임 관수왜(館守倭)의 부임, 동래부사, 인삼폐단의 변통, 연례송사선 등, 초랑왜관과 동래부, 부산진을 중심으로 양국 사이에 해결해야 할 다양한 현안 문제가 수록되어 있다. 이 가운데 주목되는 내용을 몇 가지 주제로 나누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9. 『국역 전객사별등록』(IV)의 주요기사 내용 검토

① 통신사호행재판차왜, 대차왜와 그 진상품

통신사가 일본에 가기 전에 일본에서 여러 차례 조선에 사절을 파견하였다. 통신사호행차왜는 통신사를 호위해 부산에서부터 모셔가기 위해 파견된 사절이다. 이 차왜는 영접참판사(迎接參判使), 영빙사(迎聘使)라고도 한다. 그리고 통신사가 출발하기 전에 필요한 사전 조율 및 제반 준비를 하기 위해 선도사자(先導使者)로서 재판(裁判)이 임명되었다. 이 선도사자가 곧 통신사호행재판차왜이다.

무진년(1748) 4월 26일조를 보면, 통신사호행재판차왜와 통신사호행대차왜가 진상한 물품이 기록되어 있다. 통신사호행대차왜는 대차왜이므로, 예조참판과 예조참의에게 각각 진상품을 보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 22>와 같다.

<표 22> 1748년(영조 24, 무진) 통신사호행재판차왜, 대차왜의 진상품

	통신사호행재판차왜	통신사호행대차왜	
채화괘연(彩畵掛硯)	1개	1개*	1개*
채화침자(枕子)괘연	1개		
채화칠존경(七寸鏡)	2면(面)		
채화문갑(文匣)	1개		
수랍증명완(粹鑲中茗盞)	10개	20매*	
첩금소병풍(貼金小屏風)		2쌍*	1쌍*
채화대원분(大圓盆)		20매*	
혁과대부갑(革裹大簿匣)		1틀〔備〕*	
채화서가(書架)		1채〔脚〕*	1채*
채화일척염경(一尺匣鏡)		1면*	
청금화로(靑金火爐)		2좌*	
채화유부반반(彩畵有趺飯盤)			20매*
채화중층갑(彩畵中層匣)			2틀*
상아지남침(象牙指南針)			1좌(坐)*
비 고		예조참판에게 보내는 진상	예조참의에게 보내는 진상품

<표 22>에서 보는 것처럼, 통신사호행재판차왜와 통신사호행대차왜가 진헌한 진상품은 종류에서 차이를 보인다. 양자가 일치하는 것은 채화괘연뿐이다. <표 22>에서 통신사호행대차왜가 진상한 내용은 『증정교린지』(권2, 차왜, 통신사호행차왜)에서 예조참판과 예조참의에게 보내는 별폭 내용과 동일하다.

『증정교린지』에서는 재판차왜가 통신사를 호환(護還)할 때에는 동래부사와 부산첨사에게 올리는 별폭(別幅)만 있고 서계(書契)는 없다고 규정하였다. 통신사호환재판차왜에 대해 언급한 것이다. 『전객사별등록』의 기사는 통신사호행 재판차왜와 통신사호행대차왜의 진상품 내용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무진년(1748) 4월 26일조에는 일본 사절에게 지급할 예단(禮單) 인삼 가운데 미지급분에 대한 내용이 <후록(後錄)>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 23>과 같다.

<표 23> 차비역관의 예단 인삼 미지급분 내역

	예조의 회사별폭 중 인삼 수량	미지급분	차비역관
대차왜	인삼 2근(참판) 인삼 1근(참의)	4냥 5전	유극화(劉克和)
재판	인삼 1근(참의)	3냥 8전	김정흥(金鼎興)
이정암	인삼 2근(좌랑)	2냥 7전 5푼	황득린(黃得麟)
만송원	인삼 2근(좌랑)	8냥 2전 4푼	김중우(金重禹)
특송사(특송 1)	인삼 3근(참의)	1근 3냥 4전 2푼	유극화(劉克和)
합계		2근 7냥 7전 1푼	

<후록>에는 미지급분의 총액이 2근 6냥 7전 1푼이다. <표 22>의 합계와는 1냥 차이가 있다. 예조의 회사별폭 내용은 『증정교린지』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차비역관이 일본[대마도] 송사(送使)와 차왜에게 미지급한 인삼은 예조에서 지급하는 회사(回賜) 물품의 일부이다. 일본에서 가져온 예단 물목에 대해 예조에서는 회사 물품을 각 사절마다 지급하였다. 인삼, 피물(皮物), 각종 포목(布木) 등이 그것이다.

대차왜는 통신사호행차왜를 의미한다. 회사하는 인삼은 총 3근(예조참판 2근, 참의 1근)인데, 이 가운데 4냥 5전을 미지급한 것이다. 재판은 재판차왜를 의미한다. 이들에게는 예조참의 이름으로 인삼 1근이 회사되어야 하나, 3냥 8전이 미지급되었다. 이정암(以庭菴) 송사는 예조좌랑 이름으로 인삼 2근이, 만송원

(萬松院) 송사는 예조좌랑 이름으로 인삼 2근이 회사되었다. 특송사는 정묘년(1747)에 온 제1특송사를 의미한다. 이 사절에게는 예조참의 이름으로 인삼 3근이 회사되었다. 그런데 각각 2냥 7전 5푼, 8냥 2전 4푼, 1근 3냥 4전 2푼이 미지급된 상태였다.

이들 사절은 1747년에 입국하여 모두 일본에 돌아가야 할 때이나, 회사 물목을 다 지급받지 못하자 일본 사절들은 훈도와 별차에게 이 상황을 알렸다. 훈도와 별차는 다시 동래부사에게, 동래부사는 예조에 보고하였다. 차비역관들이 어떤 이유로 미지급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정해진 수량과 지급 시기가 분명한 만큼 차비역관이 포함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당시 인삼을 국내에서도 구하기 어려운 상황 때문에 미지급분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다. 역관, 동래부, 예조 모두 정확한 사유를 모르는 상황에게 우선 회사 물목의 담당자인 차비역관에게 이를 규명(糾明)하도록 한 것이다.

② 예단 인삼의 조삼(造蔘) 문제

인삼은 일본에 수출하는 무역품 가운데 가장 중요한 조선산 품목이다. 인삼 생산이 줄어들면서 수출 인삼의 품질이 점차 열악해졌다.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맞추기 위해, 겉은 인삼이지만 속은 잡물인 위조인삼 조삼(造蔘)이 등장하였다. 조삼은 수출 인삼인 피집삼만 아니라 일본 사절에게 지급하는 예단삼에도 등장하였다. 이로 인해 일본인은 예단인삼을 점퇴하는 일이 빈번하였다. 이에 조정에서는 조삼에 대해서 엄금책을 강화하였다.(신미 3월 24일, 25일) 조삼을 만드는 자가 있으면 동래부사가 장계를 올려 일률[사형]에 처하도록 하는 지시가 내려졌다.(신미 3월 25일, 4월 17일)

대마도의 연례송사와 차왜에게 예단으로 지급하는 인삼을 예단삼 또는 단삼(單蔘)이라 하였다. 연례송사에게 해마다 지급하는 예단삼은 『만기요람』(재용편 5, 단삼)에서는 30근 14냥이다. 즉 세견제1선 4근 10냥, 이정암선 2근, 특송선 13근 12냥, 만송원선 3근 10냥, 부특송선 6근 16냥이다. 그러나 서계의 별폭에서는 연례송사에게 지급한 예단삼은 17근이다. 이러한 차이는 접대용과 구청(求請)에 따른 지급분이 서계의 별폭에는 기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단삼은 부정기적으로 오는 차왜에게도 지급되었다.

예단삼으로 지급하는 인삼은 원래 세삼(稅蔘)으로 충당하였다. 사무역[개시무역]에서 거래되던 인삼에 10% 세금을 부과하여, 그것으로 예단삼을 충당하는 것이다. 예단삼 지급량은 연례송사 30근 14냥에 차왜 지급분까지 합하면 70근

정도 되었다. 대체로 18세기 이전까지는 무역세를 받은 인삼량이 많아, 예단삼을 마련하는 데 큰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인삼무역이 쇠퇴하면서 세삼이 부족하여, 세삼으로 예단을 마련하기는 어렵게 되었다. 이에 돈삼계(勳蔘契)라는 공인(貢人)이 예단삼을 조달하도록 하였다. 돈삼계인은 호조로부터 공가를 받아 인삼을 사서 예단삼을 조달하였다.

그렇지만 돈삼계의 예단삼 조달은 쉽지 않았다. 예단삼 1근 값이 겨우 은 70냥 정도였다. 돈삼계는 시가에 훨씬 못미치는 공가로는 인삼을 충분히 조달할 수 없었다. 따라서 돈삼계도 조삼을 조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돈삼계에게 체삼(體蔘)의 조달을 요구하므로 계인들은 지탱하기 어려웠다.(신미 5월 23일)

인삼 1근 값으로 받은 돈삼계의 공가(貢價) 은화 70냥은 시가의 1/4정도 수준이었다. 그러므로 조삼을 엄금하는 조치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았다. 그래서 공가를 가급(加給), 증급(增給)하는 방안이 모색되었다.(신미 9월 19일) 그러나 공가를 가급하는 것은 호조에 큰 재정적 부담이 되었다. 따라서 청국 인삼인 호삼(胡蔘)을 수입하여 예단삼에 조달하고, 국내에도 약용 등 필요한 데 사용하자고 하였다.(신미 9월 29일)

돈삼계 공인의 공가가 시가의 1/4~1/3 정도밖에 되지 않아, 조달이 용이하지 않게 되자,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은 호조가 인삼 값을 인삼의 주공급지인 평안도 강계(江界)에 지급하고, 강계부가 예단삼을 상납하는 방법이다.(임신 3월 20일) 예단삼 조달이 돈삼계에서 강계부로 바뀐 것이다.

예단삼을 비롯한 삼폐(蔘弊)의 폐단을 개선하기 위하여 호조의 황첩(黃帖, 증명서)이 없이는 강계 인삼을 사사로이 매매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그리고 호조가 그 수량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강계 인삼을 사오는 자는 통일된 세금을 바치게 하도록 하였다.(임신 4월). 조정에서는 강계 인삼의 폐단을 개선하기 위해 1752년에 '강삼변통절목(江蔘變通節目)'을 제정하였다.(임신 6월) 이 절목의 원문은 『비변사등록』 임신 6월 10일조에 수록되어 있다.

이러한 예단삼 마련에 대한 대응책에도 불구하고, 조삼의 폐단은 개선되지 않았다. 임신년(1752) 6월에 올린 접위관 이성경(李星慶)의 장계에 잘 드러나 있다. 대마도에서 온 재판차왜 등은 예단 인삼에 조삼(造蔘)을 사용하여, 도주가 에도로부터 문책을 당하여, 장차 대단히 일이 어긋날 지경이라, 도중(島中)의 대소 관원이 밤낮으로 걱정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그래서 이성경은 예단삼 14근 12냥을 동래부 세삼으로 거둔 진삼(眞蔘)이나 상역배가 소

유한 인삼으로 지급하고, 돈삼계의 조삼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다.(임신 6월)

이에 영조는 전교를 내려 이제부터 예단삼에 절대로 조삼을 사용하지 말 것을 강조하였다. 이 문제로 전 호조판서 김상성(金尙星)을 엄중하게 추고하고, 조삼을 만든 사람은 엄중하게 심문한 후 섬에 유배시키도록 하였다.(임신 6월)

예단삼 마련은 1752년 ‘강삼변통절목(江蔘變通節目)’ 제정 이후, 강계부가 상납하는 방법으로 바뀌어 갔다. 『만기요람』(재용편 5, 단삼 부(附) 예무삼 전말)에 의하면, 예단삼의 수요를 연례로 강계에서 무취하는 것을 예무(例貿)라 하고, 그 인삼을 예무삼(例貿蔘)이라 한다고 하였다. 1754년(영조 30)에 호조가 대가를 지급하고 체삼(體蔘) 30근, 미삼(尾蔘) 25근을 강계에서 무취(貿取)하니, 이것이 예무삼의 시초라고 하였다.

예단삼은 개시무역의 세삼에서 돈삼계의 인삼으로, 다시 강계의 예무삼으로 마련 방법이 바뀌어 갔다. 『전객사별등록』의 기사는 이러한 예단삼 마련의 변화 양상과 그 과정에서 발생한 위조인삼인 조삼(造蔘)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

③ 개시, 별개시를 통해 피집(被執, 매매)한 물건 값을 은화로 받음

정묘년(1747) 9월 1일 기사에 “상역(商譯) 등의 피집(被執) 물화(物貨) 값으로 은화 1만 냥을 이달 15일 별개시(別開市)에서 받아내었다는 연유의 일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조선 상인이 매매한 물건값 은화 1만냥을 즉시 받지 못하고, 8월 15일 별개시 때 받았다는 것이다. 이런 피집[매매]한 물건 값을 후불로 받은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 24>와 같다.

<표 24> 상역이 피집(被執)한 물화값을 개시/별개시에서 은화를 받아낸 내역

내역	물화값 은(은화) (냥)	개시 시기	개시 구분	출전 시기
상역 피집 물화	10,000	8월 15일	별개시	정묘(1747) 9월 1일
상동	6,200	11월 3일	개시	정묘(1747) 11월 19일
	650	2월 3일	개시	무진(1748) 2월 14일
	5,000	10월 13일	개시	무진(1748) 11월 9일
	1,600	12월 28일	개시	기사(1749) 1월 11일
	1,300	2월 3일	개시	기사(1749) 2월 14일
	3,500	6월 23일	개시	기사(1749) 7월 4일

	8,000	8월 16일	별개시	기사(1749) 9월 13일
	9,450	12월 13일	개시	경오(1750) 1월 2일
	10,000	1월 18일	개시	신미(1751) 2월 10일

<표 24>를 보면 1년에 1~4차례 정도 개시나 별개시에서 상역(商譯)이 피집한 물화 값을 은화로 개시나 별개시에서 받아낸 사실을 알 수 있다. 값은 적은 경우는 은 650냥이나, 많은 경우는 1만냥이다. 내용이 받아낸 사실만 나열하고 있어서, 피집한 물건의 내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

피집에 대해서는 현재 한일 양국 학계가 의견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본학계에서는 피집을 일본상인이 물품 값을 은으로 먼저 지불한 후 물품을 나중에 받는 선매제(先賣制), 선대제(先貸制)적 거래형태로 파악하면서, 왜관의 사무역[개시무역]이 일본측의 신용거래로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학계에서는 일본학계의 선대제, 선매제에 따른 신용거래를 부정하고 있다. 오히려 조선상인이 무역품을 먼저 지급하고 후에 일본상인이 분할하여 갚는 일종의 외상거래이자 할부신용거래로서, 왜관 개시무역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거래 형태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

<표 24>에서 상역이 피집한 물화가 무엇이고, 또 개시나 별개시를 통해 받아낸 액수가 무역액 전체인지 할부인지 여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조선측이 물품을 먼저 지급하고 대금을 후불로 받은 것은 틀림없다. 일본학계가 주장하는 선매제, 선대제적인 신용거래는 이 표에 한정하여 본다면,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다.

④ 1750년 8월 22일 발생한 해일(海溢) 피해

경오년(1750) 9월 11일 기사에는 경상좌수사 이만유(李萬冏)가 8월 29일 장계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장계에는 8월 22일에 발생한 해일과 그 피해 상황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22일 축시(丑時) 쯤에 사나운 바람과 폭우가 일시에 크게 일어나 종일토록 개이지 않았다. 바닷물과 육지 물이 물거품을 일으키며 갑자기 몰려들었다. 22일 사시(巳時) 쯤에는 비바람이 점차 극심하여, 해일이 부산진성을 넘어섰다. 이로 인해 배가 옥상에 있을 정도였다. 이 상황은 ‘전고소무지변(前古所無之變)’, 즉 종전에는 없던 대변고라고 하였다. 해일이 닥치자 경상좌수사는 선창에 달려가서 군졸들로 하여금 크고 작은 배들을 견고하게 붙들어 매게 하였다.

그리고 수영 관할의 감포(甘浦) 등 네 진의 배도 붙들어 매어, 수영과 네 진의 30여 척 전함(戰艦)을 안전하게 대비시켰다. 이 날 해일로 인한 피해 상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 경상좌수영에서 관할하는 정탐선 1척 파손.
- ㉡ 공작미(公作米)를 싣고 가는 일본 큰 배 1척이 표류하다 겨우 멈춤.
- ㉢ 금도왜(禁徒倭)의 작은 배 1척 파손.
- ㉣ 왜선을 수호하던 작은 배 1척 파손.
- ㉤ 세건선 1척, 비선 1척, 특송사 1호선 1척, 특송사 2호선 1척 등 합계 4척이 파손.
- ㉥ 부산진성의 제남루(濟南樓) 남쪽 모퉁이부터 영가대(永嘉臺)까지의 성가퀴 [성첩(城堞)] 186발[把] 무너짐.
- ㉦ 부산진성의 부창(釜倉) 동문 밖부터 두모포성(豆毛浦城) 아래까지와, 해변에 사는 민가 133집이 파도에 휩쓸려 무너짐.
- ㉧ 부창진(釜倉津)에 사는 장명금(張命金)의 배는 고기잡으러 나갔다가 표류하여 감천(甘川)에 도착. 배는 완전히 부서지고 격군 8명은 겨우 생존.
- ㉨ 해부(海夫) 이작은노미[李自隱老未], 김막돌이(金莫丕伊), 최엇복(崔懿福), 장한이(張汗伊), 황귀산(黃貴山), 김막남(金莫男), 황귀남(黃貴男), 이엇돌이(李懿丕伊), 최순건(崔順建), 이간돌(李良丕), 이태일(李太日), 김석지(金石只), 김남이(金男伊), 황귀상(黃貴尙), 신고음(辛古音), 석오만상(石五萬尙), 이원악(李元岳) 등 17명의 배 파손.
- ㉩ 부산창포(釜山倉浦)에 사는 선주 김명길(金命吉)의 배 파손. 김명길과 격군 최순복(崔順福), 최엇복(崔懿福)은 겨우 생존. 격군인 23세 김담사리(金淡沙里)는 익사.
- ㉪ 다대포진성 밖의 동서 연안 주변에 사는 민가 47집 물에 잠겨 무너짐.
- ㉫ 다대포진 제41통 3호의 해부 이막남(李莫男)의 처인 27세 박조이[朴召史] 익사.
- ㉬ 다대포진 아래에 사는 해부 한귀동(韓貴同)의 배 1척, 김암회(金岩回)의 배 1척, 이개불리(李介不里)의 일공선(日供船) 1척 표류되어 유실됨.
- ㉭ 두모포진 소속의 이사후선(二伺候船) 파손.
- ㉮ 두모포진 소속 병선 1척, 가덕도에서 목재 싣고 오다가 파손. 목재 모두 유실.
- ㉯ 두모포진 포구의 선창 석축이 모두 붕괴.

이처럼 해일로 인해 2명이 사망하고, 부산진성 성가퀴 186파가 무너지고, 민가 180채가 물에 잠기고, 조선과 일본의 배 30여척이 파손되거나 유실되었다. 그리고 주요 포구의 선창이 무너졌다. 해일이 낮에 발생하여 그나마 인명 피해가 적었다. 해일로 인한 피해 상황을 알 수 있는 매우 드문 자료로서, 그 사료적 가치가 크다고 생각한다.

⑤ 왜관 수리 때 소요된 물자와 인력

기사년(1749) 4월 14일조에는 <후록>으로 계묘년(1723) 서관 수리 때의 물자와 인력을 마련한 등록이 수록되어 있다. 서관 3대청 5행랑 941칸의 수리에 들어간 내역이다. 풀품 내역은 물론 각 역군의 역가가 상세하게 수록되어 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 25>와 같다. 비용 10,000냥은 당초 마련하였다. 그후 3,000냥을 추가 지급하고, 다시 3,010냥 7전 2푼 추가 지급하여, 합계 16,010냥 7전 2푼을 지급하였다.

<표 25> 계묘년(1723) 서관 수리 때 소용된 물자와 인력

품 목	수 량	환전(兩)	1일 역가(錢)	기 간	비고
재목	765주 반	1,000			
기와	100눌(訥)	2,800			
신철(薪鐵)	20부리(夫里)	360			1부리=5냥
숯[炭]	60석	100			1석= 6전
짚[藁草]		50			
생췌[生葛]		30			
거적[草蓆]		30			
새끼줄[藁索]		20			
대나무[篁竹]		1,551			
일본인 목수	10명	1,200	6	5개월	
일본인 인거장(引鉅匠, 톱장)	10명	100	5	5개월	
일본인 조역군(助役軍)	20명	450	4	5개월	
조선인 목수	10명	750	3	5개월	
기와장	8명	50	4		
재목 작별꾼[斫伐軍]	400명	900	2	3일	
격군(格軍)	300명	27	1	3일	
야장(冶匠)	3명	36	2	1개월	
역군(役軍)	14,000명	900	2	5개월	

감동차비왜(監董差備倭) 식비		96			
각종 짐값[駄價], 부대 비용					
합계		16010냥 7전 2푼			

<표 25>에서 보는 것처럼, 역가에서 일본인 장인과 조선인 장인 사이에 차이를 볼 수 있다. 목수의 역가가 일본인은 1일에 6전, 조선인은 3전이다. 역가가 2배이다. 조선인 장인의 경우 기와장의 역가가 4전으로 가장 많다. 전체적으로 일본인 장인의 역가가 높다.

수치상에서는 정확하지 않은 면이 있다. 그러나 조선인, 일본인 장인의 역가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기와값이 전체 비용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물품은 기와, 대나무, 재목, 역가는 일본인 목수, 조선인 목수, 조선인 재목 작별군의 역가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병오년(1726)에는 동관의 관수가, 재판가, 개시대청 등 204칸을 수리하였다. 이 때 소용된 물자와 인력을 정리하면 다음 <표 26>과 같다.

<표 26> 병오년(1726) 동관 수리 때 소용된 물자와 인력

품목	수량	환전(兩)	1일 역가(錢)	기간	비고
재목	236주 반	400			
기와	40눌(訥)	2,160			
신철(薪鐵)	10부리(夫里)	1,020			
숯[炭]	40석	120			1석= 6전
짚[藁草]		25			
생침[生葛]		25			
초거적[草氈]		10			
새끼줄[藁索]		10			
대나무[簍竹]		50			
일본인 목수	7명	720	6	6개월	
일본인 인거장(引鉦匠, 톱장)	8명	225	5	6개월	
일본인 조역군(助役軍)	10명	378	4	6개월	

조선인 목수	7명	720	4	6개 월	
기와장	4명	15	4	15일	
재목 작별군(斫伐軍)	250명	240	3	3일	
재목 운반군[曳運軍]	400명	60	2	3일	
재목 선운 격군(格軍)	200명	18	1	3일	
야장(冶匠)	2명	24	3	1개 월	
역군(役軍)	10,800명	150	2	6개 월	
감동차비왜(監董差備倭) 식비		24			
각종 짐값[駄價], 부대 비용					
합계		10,441냥 1전 1푼			

<표 26>에서 보는 것처럼, 물품은 기와와 신철이, 역가는 일본인 목수와 조선인 목수의 역가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5>와 <표 26>을 근거로 1723년과 1726년, 두 해의 역가를 비교해 보면, 조선인 목수의 역가가 3전에서 4전, 작별군 역가가 2전에서 3전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위의 계묘년(1723)과 병오년(1726)의 왜관 수리 기사는 『전객사별등록』의 해당 연도에는 없는 내용이다. 1723년, 1726년의 왜관 수리 실태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⑥ 초량왜관의 수리 공사, 대감동(大監董)

『국역 전객사별등록』(IV)의 기사 항목 가운데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의 하나는 초량왜관 건물 수리와 관련된 내용이다. 왜관 건물에 대해서는 훈도와 별차가 매달 조사하여 보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리고 동래부와 부산진의 감색(監色)도 훈도·별차와 함께 조사하였다. 그리고 연말에는 별도로 조사하도록 하였다. 그래서 비새는 곳이나 건물이 부서진 곳을 조사하여 보고하였다. 비 새는 곳은 각 진포(鎭浦)로 하여금 지붕을 덮게 하였다.

무진년(1748) 9월 18일조에는 동래부사 민백상(閔百祥)의 장계가 수록되어 있다. 무진년 통신사행이 돌아오는 것을 호위하는 재판차왜가, 왜관 건물을 보수하는 일이 조정에서 특별히 허락하여 이미 4년이나 되었음에도, 공사를 시작하지 않아서 장차 무너질 우려를 면치 못하게 되었으니, 감동관(監董官)을 올해 안으로 내려보내어 속히 공사를 시작할 것을 건의했다는 것이다. 『변례집요』

(권11, 관우) 무진년 9월조에도 같은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을축년(1745)에 초량왜관 동서관의 수리공사를 허락했다는 것이다. 이에 조정에서는 즉시 감동관을 선발하여 일을 시행하도록 하였다.

무진년(1748) 10월 17일조에는 사역원의 첩보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즉 감동역관(監董譯官)을 차출한 내용이다. 이를 정리하면 <표 27>과 같다.

<표 27> 초량왜관 동관, 서관의 수리를 맡은 감동역관(1748년)

왜관 위치	직 임	품계, 직책	성명
동관	당 상	가선(嘉善)	박상순(朴尙淳)
	당 하	전 주부(主簿)	최학령(崔鶴齡)
서관	당 상	절충(折衝)	현덕연(玄德淵)
	당 상	절충	신영래(愼榮來)
	당 하	전 주부	황하성(黃夏成)
	당 하	전 주부	현상로(玄尙老)

초량왜관에서는 동관 삼대청과 서관 삼대청 전체를 수리하는 ‘대감동(大監董)’이 25년마다 실시되었다. 화재로 소실된 건물을 다시 짓거나 특정 건물에 한정하여 부정기적으로 보수공사를 하는 것을 ‘소감동(小監董)’이라고 한다. 대감동에는 당상역관 3명[동관 1명, 서관 2명], 당하역관 3명[동관 1명, 서관 2명], 소감동에는 당상역관 1명, 당하역관 1명을 파견하였다.

대감동 공사이므로 <표 27>처럼 당상역관 3명, 당하역관 3명이 차출된 것이다. 그리고 감동 당상역관이 왜관의 일본인을 만날 때는 사예단(私禮單)을 지급하는 전례가 있으므로, 증정할 예단 잡물을 전례에 따라 마련하여 지급하도록 하였다.(무진 10월 18일)

기사년(1749) 2월 25일조에는 수리공사와 관련한 비변사의 감결(甘結)이 수록되어 있다. 동래부 좌수중군(座首中軍)과 차사원(差使員)이 다대포첨사와 감동역관 등과 다시 조사하여 성책(成冊)을 만들어서 비변사에 보고하였다. 재목 별채의 가격은 감동역관이 의논하여 확정하게 하였다. 목재는 왜관 부근에 있는 금송산(禁松山) 소나무 가운데 선재(船材)에 적합하지 않은 것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소나무 작별이나 운반 과정에서 폐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수리비용의 일부는 통신사가 돌아올 때 가져온 회례은(回禮銀)과 서로 바꾼 공목(公木) 가운데 150동을 획급(劃給)하도록 하였다.

왜관 건물이 경사지고 굽은 곳이 매우 많아서 간혹 조정의 정식과 어긋나는 것이 없지 않지만, 이미 조사하여 보고한 정책 내용과 큰 차이가 없으므로 독촉하여 급속히 공사를 마치고, 감영에서 수시로 점검하도록 하였다. 서관은 계묘년(1723), 동관은 병오년(1726) 등록에 근거하여, 물자와 인력을 마련하도록 하였다.(기사(1749) 4월 14일)

『변례집요』에 의하면 이 동관, 서관 수리공사는 1749년 9월 15일 시작되었다. 이 공사를 위해 대마번으로부터 서관에는 서관감동차지와 2명, 중금도왜 2명, 소금도왜 2명, 서기왜 1명, 기계(器械)차지와 1명, 인거왜(引鉅倭) 6명, 역부왜(役夫倭) 2명, 목수왜 15명, 동관에는 동관감동차지와 2명, 중금도왜 3명, 소금도왜 3명, 서기왜 1명, 잡물차지와 1명, 역부왜 2명, 목수왜 6명, 인거왜 2명, 니장왜(泥匠倭) 1명 등이 왜관에 왔다.(기사 9월 20일)

왜관 동관과 서관 공사를 시작한 지 이미 7개월이 되었는데도 공사를 마칠 기약이 없다고 한 것처럼, 공사가 지연되고 있었다. 경상감영에서는 동래부에 명하여 공사를 독려하게 하였다. 감동역관과 훈도·별차 등은 일본인 공장(工匠)들이 공사를 지체하기 때문에 늦어진다고 핑계삼았다. 그래서 신해년(1731)의 사목(事目)에 따라 감동역관과 훈도·별차 등을 처벌하는 방안이 강구되었다.(경오 5월 11일, 6월 18일)

『변례집요』에서는 동관 수리공사는 1750년(병오) 12월 18일에 끝났다고 한다. 『전객사별등록』에도 신미(1751) 1월 15일 기사에 동관 수리는 이미 완공되었고, 서관 수리는 한창이라고 하였다. 『변례집요』에서는 서관 수리공사는 1751년 5월 29일에 끝났다고 하였다. 공사 규모는 『변례집요』에 의하면, 동관은 관수가 73칸, 대문 18칸, 중문 2칸이고, 재판가 48칸, 대문 2칸, 중문 1칸, 개시대청은 60칸이다. 서관은 3대청, 5행랑 합계 941칸이다. 경비는 동관이 총 10,866냥 6전 3푼, 서관이 23,203냥 9전 9푼이다.

『전객사별등록』에서도 동관과 서관을 합하여 1,140칸의 매우 방대한 공사라고 하였다. 공사가 끝난 후에 공사비를 지급하는 방안이 모색되었다. 처음 마련한 것은 공목(公木) 150동밖에 없었고, 나머지 부족분 16,800냥은 빌려 사용하였다. 그래서 동래부의 공작목(公作木) 300동과 저치미(儲置米) 7000석을 작전(作錢)하여 이자로써 갚는데, 그래도 부족하므로 공목과 저치미로 작전한 돈의 일부로 경상도 내 소금 산지에서 소금을 사서, 그것을 요판(料販)하여 갚는 방안을 강구하였다.[임신(1752) 3월]

대감동과 소감동은 모두 일본인 기술자를 썼다. 대감동과 소감동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㉑ 대감동과 소감동의 공사 비용은 조선측이 부담하였다.
- ㉒ 조선 정부의 동의 아래 대마번의 왜관개수 관계자(왜관보청봉행, 토목기술자, 인부)가 수십 명 규모로 수리공사에 참가하였다.
- ㉓ 조선정부가 그들에게 임은(賃銀)과 요미(料米) 명목으로 역가를 지불하는 것이 상례화되었다.

『전객사별등록』의 왜관 수리 기사는 이런 대감동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증정교린지』(권3, 監董)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무진년(1748)에 동관 3대청, 서관 3대청 5행랑의 중수를 허락하였다. 기사년(1749)에 공사를 시작하여 신미년(1751)에 마쳤다. 『전객사별등록』의 기사는 『변례집요』나 『증정교린지』의 내용과 상당부분 일치한다. 1748년에 공사를 허가한 후부터 시작하여, 공사 과정, 공사 후의 비용 마련 방안 등 왜관 수리의 구체적인 실태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⑦ 동래접왜절목(東萊接倭節目)

경오년(1750) 5월 28일조에는 비변사 감결(甘結) 내의 「동래접왜절목」이 수록되어 있다. 동래접왜절목의 초본은 경상감영에서 작성되어 비변사로 보내졌다. 비변사는 영조의 하교에 따라 내용을 검토한 후 수정을 하여, 1750년 5월 영조에게 보고하였다. 절목을 후록한 관문(關文)을 동래부사에게 보내어, 지시에 따라 시행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 관문은 현재 확인되지 않고, 독립된 절목 형식의 문서도 존재하지 않는다. 절목은 『비변사등록』, 『변례집요』를 비롯한 여러 사료에 수록되어 있다. 그러나 내용면에서는 상당한 편차를 보인다. 절목이 사료에 어떤 형태로 수록되어 있는지, 그 내용을 정리하면 <표 28>과 같다.

<표 28> 동래접왜절목의 각 사료별 수록 현황

항목번호	비변사등록	전객사별등록	변례집요			추관지
			㉑	㉒	㉓	
1	1	1	1			
2	2		2			
3	3	3	3			3
4	4	4	4			4
5	5	5	5			5

6	6	6	6			
7	7	7		7		
8	8	8		8		8
9	9	9		9		9
10	10	10			10	10
11	11	11		11		
12	12					
13		2	a			
14			b			
15			c			
항목수	12	11	14			6
출전	영조 26년 5월 16일	경오년 5월 28일	권5, 금조(禁條)	권8, 하납제절(下納諸節)	권10, 시탄(柴炭)	제3편, 고률부(考律部), 정제(定制)

<표 28>은 『비변사등록』의 내용 순서를 기준으로, 『전객사별등록』, 『변례집요』, 『추관지』를 비교한 것이다. 『비변사등록』에는 12 조항이 수록되어 있다. 제12조는 “미진한 조건은 추후에 마련한다”이다. 12조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객사별등록』, 『변례집요』와 동일하다. 다만 『전객사별등록』에는 제2조가 가장 마지막에 있어, 순서의 차이를 보인다. 『추관지』에는 ‘동래접왜사목(東萊接倭事目)’이란 독립된 항목으로 수록되어 있으나, 6조항밖에 없다.

『변례집요』는 내용은 동일하지만, 3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제1~6조는 「권5, 금조」의 경오년(1750) 6월조의 ‘후록’으로 수록되어 있다. 제7~11조는 2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10조는 시탄 관련이므로, 「권10, 시탄」에, 나머지 조항(7, 8, 9, 11조)은 「권8, 하납제절」에 수록되어 있다. 절목이 『변례집요』에서는 3부분으로 나누어 편성되어 있다. 『변례집요』의 항목 제목처럼 「금조(禁條), 하납제절(下納節次), 시탄(柴炭)」 3항목이 절목의 가장 핵심임을 보여준다. 『추관지』에서는 『변례집요』의 3부분 가운데 ㉠에서 3항목, ㉡에서 2항목, ㉢에서 1 항목을 택하여 수록한 것이다. 12 항목 중 6개만 선정된 것은 절목에서 가장 핵심 내용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동래접왜절목」의 내용을 항목별로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공작미, 왜료미(倭料米), 왜료태(倭料太)의 입고(入庫) 및 출고 절차, ② 공작미 요판(料販)에 의한 포함(逋欠) 금지, ③ 운미감관(運米監官) 등의 공작미 화수(和水) 금지, ④ 공작미의 왜관 입급(入給) 절차, ⑤ 공작미 왜관 입급 때 일본인에 대한 뇌물 지급 금지, ⑥ 공작미 왜관 입급 때 일본인의 점퇴(點退) 금지, ⑦ 공작미 왜관 입급 기한 엄수, ⑧ 공작미를 하납(下納)할 때 감색과 선격(船格)의 화수 금지, ⑨ 하납미 부산창(釜山倉) 입고 때 창속(倉屬)의 수탈 금지, ⑩ 왜관에 입급하는 시탄(柴炭)의 보관 및 지급 규정 엄수, ⑪ 공작미 등 입급 규정 이행에 대한 점검 등이다.

「동래접왜절목」은 내용 전체가 공작미와 관련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작미가 경상도 연강·연해에 있는 하납읍에서 부산진의 부창으로 입고되었다가, 다시 출고되어 초량왜관으로 반입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폐단을 막기 위한 규정이다. 특히 운미감관, 감색, 선격, 부창 창속 등의 포함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동래접왜절목」은 공작미 지급과 관련하여 공무역에 대해 전면적으로 규정한 최초의 절목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공무역의 실태와 관련된 내용은 아니고, 공작미 지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포함의 금지와 관련된 내용이다.

한편 전객사의 일상 사무와 그에 따른 각종 문식(文式), 의례 등을 망라한 자료로는 『전객사일기』가 있다. 이 책은 『전객사일기초본』, 『전객사등록』 등으로도 표기되어 있다. 1640년(인조 18)에서 1886년(고종 23)의 약 250년 동안의 전객사에 관한 총 99책의 방대한 분량이다. 이 책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각사등록(各司謄錄)』(92~101, 1999~2006년)으로 활자화하여 간행한 바 있다. 『전객사별등록』의 내용을 『전객사일기』, 『왜인구청등록』, 『변례집요』, 『증정교린지』, 『승정원일기』, 『비변사등록』, 『조선왕조실록』 등 관련 내용과 비교하여 검토하면, 더욱 구체적인 조선후기 한일교류사, 부산지역사의 역사상을 정립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이 해제는 다음 참고문헌의 성과를 참고하면서 상당 부분 인용, 요약하여 작성한 것임을 밝혀둔다.

[참고문헌]

- 김경란, 2009. 「조선후기 동래부의 공작미(公作米) 운영실태와 그 성격」 『역사와 현실』 72, 한국역사연구회.
- 김경미, 2007. 「17~18세기 대일 외교·교역과 매(鷹)」 『역사와 세계』 34, 효원사학회.
- 김동철, 1993. 「17·18세기 대일공무역에서의 공작미 문제」 『항도부산』 10호, 부산시사편찬위원회.
- 김동철, 1998. 「조선 후기 왜관 개시무역과 동래상인」 『민족문화』 21, 민족문화추진회.
- 김동철, 2008. 「국역 왜인가청등록 해제」 『국역 왜인가청등록』 (V),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 김동철, 2009. 「국역 전객사별등록(I) 해제」 『국역 전객사별등록』 (I),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 김동철, 2010. 「국역 전객사별등록(II) 해제」 『국역 전객사별등록』 (II).
- 김동철, 2011. 「국역 전객사별등록(III) 해제」 『국역 전객사별등록』 (III).
- 김동철, 2011. 「18세기 중엽 이후 대일무역의 변화와 절목의 제정」 『동양한문학회연구』 33집, 동양한문학회.
- 김문식, 1995. 「18세기 전반 권이진의 대외인식」 『도산학보』 4, 도산학술원.
- 다시로 가즈이 지음(정성일 옮김), 2005. 『왜관-조선은 왜 일본사람들을 가두었을까?』 논형.
- 박진미, 1996. 「《漂人領來謄錄》의 종합적 고찰」 『경북사학』 19집, 경북사학회.
- 박화진·김병두, 2010. 『에도 공간 속의 통신사』 도서출판 한울.
- 손승철, 2003. 「조선시대 한일관계사료의 소개」 『한일관계사연구』 18집, 한일관계사학회.
- 신명호, 2006. 「조선후기 해양인식과 표류인 정책-『전객사일기』를 중심으로-」 『해양문화학』 2호 한국해양문화학회.
- 심민정, 2008. 「18세기 왜관에서의 왜사 접대음식 준비와 양상」 『역사와 경계』 66, 부산경남사학회.
- 양홍숙, 2000. 「조선후기 대일 접위관의 파견과 역할」 『부대사학』 24집.
- 양홍숙, 2010. 「조선후기 동래 지역민과 왜관 공간의 이용」 『역사와 세계』 37집, 효원사학회.

- 양홍숙, 2009. 『조선후기 동래 지역과 지역민의 동향-왜관 교류를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 오수창, 1992. 『전객사별등록』 해제, 『전객사별등록』 (一), 서울대 규장각.
- 윤유숙, 2003. 「18·19세기 왜관의 개건·수리실태」 『아세아연구』 46권 3호,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 윤유숙, 2005. 「17세기 후반~18세기 초두 왜관통제와 한일교섭」 『통신사·왜관과 한일관계』 (한일관계사연구논집 편찬위원회 편), 경인문화사.
- 尹裕淑, 1997. 「近世癸亥約條の運用實態について-潛商・關出事件を中心に」 『朝鮮學報』 164 부산학회.
- 尹裕淑, 1999. 「近世倭館の造營・修補について」 『歴史評論』 595호.
- 이상규, 1998. 「17~18세기 동래부에 파견된 왜학역관(훈도·별차)의 기능」 『청계사학』 14, 청계사학회.
- 이상규, 2010. 『17세기 왜학역관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승민, 2010. 「조선후기 대마도 구무의 개념과 실태」 『한일관계사연구』 36, 한일관계사학회.
- 이 훈, 2000. 『조선후기 표류민과 한일관계』 국학자료원.
- 이 훈, 1998. 「18세기 중엽 일본 표선에 대한 잡물(오일량) 지급과 조·일 교섭왜곡」 『한일관계사연구』 9, 한일관계사학회.
- 장순순, 2001. 『조선시대 왜관변천사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 田代和生, 2005. 「倭館における朝鮮錢の使用」 「對馬島宗家文書 第Ⅲ期 倭館館守日記・裁判記録 別冊 中」, ゆまに書房.
- 田代和生, 1981. 『近世日朝通交貿易史の研究』, 創文社.
- 정성일, 2000. 『조선후기 대일무역』, 신서원.
- 제임스 루이스, 1996. 「조선후기 부산 왜관의 기록으로 본 조일관계- ‘폐·성가심(迷惑)에서 상호이해로-」 『한일관계사연구』 6.
- 차수정, 1989. 「조선후기 인삼무역의 전개과정」 『북악사론』 1호, 국민대 국사학과.
- 한문중, 1999. 「조선후기 일본에 관한 저술의 조사 연구-대일관계 등록류를 중심으로-」 『국사관논총』 86집, 국사편찬위원회.
- 한문중, 2001. 『조선전기 향화·수직 왜인 연구』, 국학자료원.

국역 전객사별등록(Ⅳ)

國譯 鄭 景 柱(경성대학교 교수)

監修 李 源 鈞(전 부경대학교 교수)

국역 전객사별등록 제7책

정묘(1747) 정월 12일

동래부사 홍중일(洪重一)¹⁾이 정월 초5일에 성첩한 장계 내용. 왜관 여러 곳의 손상 유무를 매달마다 적간(摘奸)하고 연말에 별도로 적간하는 일로 일찍이 정식(定式)으로 만든 절목(節目)이 있기 때문에, 지난달 28일 본부의 감색(監色)과 부산진 감색 및 훈도 별차 등과 더불어 함께 적간하였는데, 감색 등의 회고(回告) 내용에, “왜관 건물의 비가 새는 곳은 각 진(鎭)으로 하여금 비록 이미 지붕을 덮게 하였으나, 대단히 파손된 곳은 전과 다름이 없다”고 하였기로, 속히 보수하라는 뜻으로 다시 더 신칙하였다는 연유의 일임.

정묘(1747) 정월 17일

예조의 계목(啓目)을 첨부하였으니 계하(啓下)하시기를. 이 경상우수사 이언상(李彦祥)의 장계를 보면, “표왜(漂倭 : 표류 왜선)에 대한 문정(問情)이 얼마나 신중한 일인데, 당초에 동 왜인(倭人)들이 소지한 서계(書契)와 별폭(別幅)을 자세히 살피지 아니하고, 바빠서 서두르는 가운데 미처 써 넣지 못했다고 대충 일컫고는 추가로 수본(手本)을 바친 것은 극히 소홀한 일이며, 동 왜인들이 발선(發船)한 시각이 훈도(訓導) 별차(別差) 등의 문정과 이미 이렇게 서로 어긋나고, 또 그 받아들인 수표(手表) 가운데 ‘사(巳)’자를 또 이렇게 의심스럽게 하여 몽롱하게 수본에 써 바친 것은 더욱 극히 놀라우니, 그 혼미하고 잘못되어 직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바가 있으니, 동 왜학 김우적을 먼저 파면하고, 그 죄상을 담당 관청에 명하여 품의 조치하게 하시고, 그 대신할 자를 해당 사역원(司譯院)에 명하여 가려서 차출하여 내려 보내는 일로 해당 관청에 분부하여 달라” 하였는 바, 왜선의 문정이 얼마나 엄중한 일인데, 왜학(倭學) 김우적(金禹迪)이 표왜에게 문정할 때 당초 자세히 살피지 아니하여, 추가로 수본을 바친 것과, 동 왜인들이 발선(發船)한 시각이 이와 같이 서로 어

1) 홍중일(洪重一, 1700-?) : 영조7년(1731)에 문과에 급제하여 영조 22년(1746) 8월에 동래부사로 부임하여 이듬해 8월까지 재직하였고, 뒤에 관직이 대사헌에 이르렀다.

긋났고, 막중한 수표를 흐릿하게 받아내어 수본에 써서 바친 것은 모두 극히 통탄스럽고 놀라우니, 장계에 청한 대로 그 죄를 유사에게 명하여 엄중하게 죄과를 다스리게 하며, 왜학(倭學)을 파직하여 내쫓고, 대신할 자를 또한 해당 사역원에서 급속히 가려 차출하여 재촉하여 내려 보내는 일을 아울러 분부하심이 어떠할지? 건륭(乾隆) 12년(1747) 정월 17일 우승지 신 김상적(金尙迪)²⁾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함.

경상우수사 이언상이 정월 초4일에 성첩한 장계 내용. 지난 12월 15일에 왜인의 큰 배[大船] 1척이 지세포(知世浦)의 구조라포(舊助羅浦) 강 입구에 정박한 형편과, 옥포왜학 김우적(金禹迪)이 문정한 연유 및 동 왜선이 표류하여 지세포 경내에 도착하였을 때 해당 진의 만호(萬戶)가 끝까지 나타나지 않는 곡절에 대하여 관문(關文)을 발송해서 조사하여 물은 연유는 이미 치계(馳啓)하였거니와, 추가로 도부(到付)한 같은 달 16일 성첩한 지세포 만호 김상문의 치보(馳報) 내용에, “이제 이번 본진 경내의 구조라포 강 입구에 정박한 왜인의 큰 배 1척은 당일 출발하여, 만호가 그대로 영술 호송하여 본진 경내의 지삼도 앞 바다로 전진하였더니, 바람과 물이 모두 거슬러 전진할 길이 만무하기에, 당일 술시에 본진 강 입구 앞바다로 옮겨 정박하여 수호하고 있다가, 동 왜선 1척을 폐단없이 다대포로 넘겨 보냈다”고 하였고, 방금 도부한 지세포 만호 김문상(金文尙)의 조사 보고 내용에, “절도사의 관문 내용에, ‘이제 이번 왜선이 표류하여 본진 경내에 도착한 지 이미 여러 날이 되도록 끝내 나타나지 않는 것은, 변방의 정세로 헤아려보건대 극히 해괴한 일이니, 곡절을 성화같이 조사하여 보고하는 일로 관문을 보낸다’고 하였는데, 변방의 정세가 얼마나 중대한 일인데 어찌 감히 소홀히 거행할 이치가 있겠습니까? 같은 달 13일 유시(酉時)에 분간되지 않는 배 1척이 대마도에서 나와 표류하여 울포(栗浦) 경내로 향한다고, 등산(登山) 갈곳[加乙串]과 놀일곳(訥逸串)과 옥산(玉山)의 망군(望軍) 등이 진고(進告)한 데 의거하여 본진과 연로(沿路)의 각 진에 즉시 치보하였으니, 당초에 어찌 본진 경내로 표류한 일이 있었으며, 14일 동 왜선 1척을 울포 경내의 바다 가운데서 서로 만나 영술 예인하다가, 바람과 파도를 만나 그대로 왜선과 한가지로 바다 가운데서 닻을 내리고 바람이 쉬도록 기다리다가, 15일에 예인하여 들일 무렵에 울포 권관(權官)이 비로소 내도하여 함께 예인하여 들였고, 같은 날 본진 경내 구조라포 강 입구 앞바다에 정박하여 있었으니, 만호가

2) 김상적(金尙迪, 1708-1750) : 본관은 강릉, 자는 사순(士順). 영조 3년(1733) 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거쳐 대사간, 예조참판, 형조참판 등을 역임하였다.

어찌 끝내 나타나지 않는 이치가 있겠습니까? 이는 당초 울포 권관이 기만하여 보고한 소치입니다” 라고 조사 보고하였는 바, 이제 이번 동 만호의 조사 보고가 당초 울포 권관의 보고와 크게 서로 어긋난 곡절을, 또 관문을 발송하여 동 포구의 권관에게 조사하여 물으라 하였더니, 추가로 도부한 동 권관 장기서(張琪瑞)의 조사 보고 내용에, “절도사의 관문 내용에 사연이 이러이러하였는데, 변방 정세의 엄중한 일을 어찌 감히 터럭 하나라도 그 사이에 기만하여 보고하겠습니까? 동 왜선이 13일 바다 가운데서 나온다는 본진 망군의 진고에 의거하여, 권관이 동 선박을 탐지하기 위해서, 같은 날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 밤새도록 노를 재촉하여 등산리(登山里) 바깥 바다 200여 리쯤에 도달하였더니, 바람과 파도를 만나 겨우 전진하여 14일에 본진 경내의 망포(網浦) 앞 바다에 도달하였는데, 동 분간되지 않는 배 1척이 지세포 경내의 구조라포 앞 바다에 떠 있었는데, 비록 본진 경내가 아니지만 권관이 이미 배를 타고 바다로 나왔으므로 노를 재촉하여 동 포구의 앞바다로 전진하였더니, 왜인의 큰 배 1척이 과연 닻을 내리고 떠 있거늘, 14일 유시에 서로 만났으나 바람과 물이 모두 거스르고 또 해가 저물어서 영솔하여 예인하지 못하고 그대로 수호하였는데, 동 섬의 담당 지세포 만호가 끝내 나타나지 않으므로, 권관이 혼자 스스로 수호하기가 실로 난감하여, 근처의 변방 장수와 함께 영솔하여 수호한다는 뜻으로, 동 왜선과 바람이 쉬도록 기다렸고, 15일 술시에 권관이 영솔 예인하여 지세포 경내의 구조라포 강 입구에 닻을 내리고 정박하였는데, 동 진의 만호가 또한 염려하여 나와 보지 아니하므로, 이런 뜻을 사실대로 치보하고, 동 진의 담당 감색(監色)을 잡아와서 그 태만한 연유를 책망하여 죄를 다스릴 무렵에 동 만호가 비로소 내도하였으니, 똑 같이 영솔 예인하여 수호하였다는 설은 극히 매우 할 말이 없으며, 영문에서 조사하라는 명이 내려오자, 그 책임을 모면하려고 이렇게 기만하여 보고한 일이 있었다”고 조사 보고한다 하였는 바, 동 왜선이 당초 울포 경내로 표류하다가 돌아서 지세포로 표류하였으며, 15일 술시에 동 진의 구조라포 강 입구에 정박하였을 때, 해당 진의 만호가 진작에 나와보지 않았다고 한 것은 일이 극히 해괴한데, 곡절을 반복하여 물어 조사하였더니, 지세포 만호 김문상은 울포 권관과 함께 예인하여 들었다 하고, 울포 권관 장기서는 지세포 만호가 끝내 나와보지 않다가 그 해당 감색을 잡아다 다스릴 무렵에 동 만호가 비로소 내도하였다고 하였는데, 두 진에서 서로 자신을 변명하는 보고는 비록 믿을 수는 없지만, 당초 왜학의 문정 가운데 울포 권관이 영솔하여 지세포로 배를 영솔 예인하여 정박하였다고고 하였으니, 지세포 만호가 격군만 보내고 당초부터 나와보지 않았음을 또렷이 알 수 있으며, 진작

에 영솔하여 호송하지 않다가 늦게서야 나와 본 것이 이미 극히 해괴할 뿐 아니라, 그 사실을 조사하여 물을 적에 자백하지 아니하고 꾸며서 기만하여 보고한 것은 더욱이 극히 해괴하기로, 동 만호 김문상을 신의 수영으로 잡아다가 엄중하게 곤장을 쳐서 후일을 징계하는 일.

정묘(1747) 2월 초9일

동래부사 홍(洪)이 2월 초1일 성첩한 장계 내용. 이달 초1일 도부한 훈도 별차 등의 수본 내용에, “지난 초하루에 동서 왜관 건물 여러 곳을 부산진 감색과 함께 적간하였는데, 비가 새는 곳은 각 진으로 하여금 비록 이미 지붕을 덮게 하였으나, 그 밖의 파손된 곳은 전과 다름이 없다”는 수본에 의거하여, 속히 보수하라는 뜻으로 다시 더 신칙하였다는 일임.

정묘(1747) 4월 28일

동래부사 홍중일이 4월 20일에 성첩한 장계 내용. 이달 초7일에 도부한 부산첨사 신희(申璿)의 치통 내용에, “올해 3월 초2일에 나온 비선(飛船) 1척에 두 왜(頭倭) 1인, 격왜(格倭) 5명과, 병인년(1746) 정월 12일에 나왔던 통사왜(通事倭) 1인, 병인년 12월 초10일에 나왔던 중금도왜(中禁徒倭) 1인 등이 함께 타고, 관수(館守) 대차왜(大差倭) 등의 사서(私書)를 가지고 당일 진시에 발선하여 돌아 들어갔다는 훈도 신영래(申榮來)³⁾와 별차 장인유(張麟維)⁴⁾ 등의 수본 및 봉군의 진고에 의거하여 치통한다” 하였음. 11일에 도부한 훈도 별차 등의 수본에 의거한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병인년(1746) 10월 23일에 나왔던 별일대관(別一代官)의 종왜 1명이 오늘 병으로 죽었기에 그대로 내다가 왜관 뒷산에 매장하였다”고 하였음. 17일 도부한 부산첨사의 치통 내용에, “왜학 별차 장인유의 임기가 만료되어 대신으로 당하(堂下) 역관(譯官) 이억(李億)⁵⁾이 당일

3) 신영래(愼榮來, 1694-?) : 거창신씨로 자는 달부(達夫)이다. 숙종 43년(1717) 식년시 역과에 왜학으로 합격하여, 품계가 가의대부에 이르렀다.

4) 장인유(張麟維, 1710-?) : 인동장씨로 자는 자의(子儀)이며, 국조방목에는 인유(麟維)로 나타나 있다. 영조 14년(1738) 식년시 역과에 왜학으로 합격하여 교회를 역임하였다.

5) 이억(李億, 1698-?) : 정읍이씨로 자는 문숙(文叔)이며, 경종 3년(1723) 식년시 역과에 왜학으로 합격하여 교회를 역임하였다.

도입하였으며, 신시에 구봉봉군의 진고에 의거하여 분간되지 않는 배 1척이 물마루로 나온다고 하므로, 즉시 훈도 별차 등에게 명하여 문정한 수본에, '도중(島中)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고, 비선(飛船)에 두왜 1인, 격왜 6명, 교대차 나온 중금도왜 1인, 공하대왜(公下代倭) 1명 등이 함께 타고, 노인(路引) 및 관수 대차왜에게 보내는 사서를 가지고 나왔으며, 두왜의 말이, 문위역관(問慰譯官)의 배가 지난달 26일 신시 쪽에 무사히 대마부(對馬府)에 도착하여 정박하였다고 한다'고 하여 치통한다" 하였음. 위의 노인 1통을 감봉하여 해조로 올려 보냄. 병인조 부특송사왜(副特送使倭)의 원역(員役) 등의 상선연(上船宴)을 이달 13일로 정하였는데, 신(臣)은 갑자기 신병(身病)이 있어서 가서 참여하지 못하고 부산첨사가 전례대로 혼자 가서 행하였다는 연유의 일임.

정묘(1747) 5월 19일

경상우수사 이언상이 5월 초7일 성첩한 장계 내용. 추가로 도부한 초3일 성첩한 부산첨사 신흠(申璿)의 치보 내용에, "이제 이번 옥포 강 입구에 표류 정박한 왜인의 비선 1척을 영솔하여 관소에 부친 뒤에, 즉시 훈도 신영래와 별차 이억 등에게 명하여 문정한 수본 내용에, '동 비선 1척에 두왜 1인과 격왜 6명, 중금도왜 2인이 함께 타고 관수 대차왜의 사서를 가지고 지난 30일에 관소에서 발선하여 곧장 대마도로 향하다가 물마루에 미치지 못하여 바람 형세가 불순하여 같은 날 표류하여 옥포에 정박하였는데, 이제 비로소 관소로 돌아와 정박하였다'고 수본하였다 하였는데, 동 왜인의 작은 배[小船] 1척을 폐단없이 다 대포로 넘겨 보냈다고 하였거니와, 이에 훈도 별차 등의 문정을 살펴보면, 동 왜인들이 관수 대차왜의 사서(私書)를 가지고 발선하였다고 하였으나, 당초 옥포왜학의 문정에는 관수 대차왜의 사서를 가지고 간다는 한 조목은 거론하지 않았으니, 매우 소홀한 일인지라, 그 문정을 신중하게 많은 책임을 면하기 어려우니, 동 왜학 박진호(朴震豪)를 신의 수영으로 잡아다가 엄중하게 곤장을 쳐서 후일을 징계한 일임.

정묘(1747) 6월 23일

동래부사 홍중일이 6월 12일에 성첩한 장계 내용. 지난 달 26일에 도부한 부산첨사 신흠의 치통 내용에, "병인년(1746) 5월 초4일에 나왔던 하대왜(下代倭)

1명이 어제 병으로 죽었기로 그대로 왜관 뒷산에 매장하여 두었으며, 올해 5월 21일에 나왔던 임술조 1특송 1호가 재차 건너온 배에 격왜 40명과 올해 2월 초4일 나왔던 중금도왜 2인 등이 함께 타고, 공작미를 실어가지고 돌아 들어가기 위해 당일 수문 밖에서 바람을 기다린다는 훈도 이억과 가별차(假別差) 현태형(玄泰衡)⁶⁾ 등의 수본에 의거하여 호송하기 위해 본진의 2선장 이일성(李日成)을 정하여 보내고 연유를 치통한다” 하였음. 이달 초1일에 도부한 가훈도 별차 등의 수본 내용에, “지난 초하루에 동서 왜관 건물의 여러 곳을 부산진 감색과 같이 적간하였는데 비가 새는 곳은 각 진포로 하여금 비록 이미 지붕을 덮게 하였으나 그 밖의 파손된 곳은 이전과 다름이 없다”고 하였기로, 속히 보수하라는 뜻으로 다시 더 신칙하였다는 연유의 일임.

정묘(1747) 7월 초9일

동래부사 홍(洪)이 7월 초1일에 성첩한 장계 내용. 27일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병인년(1746) 10월 23일 나왔던 별일대관(別一代官)의 종왜(從倭) 1명이 오늘 병으로 죽었기에 그대로 왜관 뒷산에 매장하여 두었다는 임역(任譯) 등의 수본에 의거하여 연유를 치통한다” 하였음. 이달 초1일에 도부한 훈도 별차 등의 수본 내용에, “지난 초하루에 동서 왜관의 건물 여러 곳을 부산진 감색과 함께 적간하였는데, 비가 새는 곳은 각 진포로 하여금 비록 이미 지붕을 덮게 하였고, 그 밖의 파손된 곳은 전과 다름이 없다”고 하였기로, 속히 보수하라는 뜻으로 다시 더 신칙하였다는 연유의 일임.

정묘(1747) 8월 11일

동래부사 홍중일이 8월 초1일에 성첩한 장계 내용. 이달 초1일에 도부한 임역 등의 수본 내용에, “지난 초하루 동서 왜관 건물 여러 곳을 부산진 감색과 함께 적간하였는데 비가 새는 곳은 각 진포로 하여금 지붕을 덮게 하였고, 파손된 곳은 전과 다름이 없다”는 수본에 의거하여 속히 보수하라는 뜻으로 다

6) 현태형(玄泰衡, 1718-?) : 천령현씨로 자는 치구(致久)이다. 영조17년(1741) 식년 역과에 왜학으로 합격하여 교회를 역임하였다.

시 더 신척하였다는 연유의 일임.

정묘(1747) 8월 18일

이번 8월 16일 대신(大臣)과 비변사 당상(堂上)을 인견(引見)하면서 예조참판 홍(洪)이 함께 입시(入侍)하였을 때, 영의정 김(金)이 계품(啓稟)하기를, “이것은 경상좌수사 신만(申漫)의 장계입니다. 왜선의 문정은 변방의 정세를 중시하여 신중하게 하는 도리인데, 가별차 현태형(玄泰衡)이 무지포(武知浦)와 염포(鹽浦) 70리 사이를 혹 9시진⁸⁾이 지나서 도착하기도 하고, 혹 14시진이 지난 뒤에 도착하여 문정하기도 하니 극히 지체한 것이라, 그 죄상을 묘당에 명하여 품의 조처하라 하였는데, 당해 가별차는 수영에 분부하여 잡아다가 곤장을 치게 함이 어떠할지?” 하였더니, 상감께서 “그대로 하라” 하셨습니다.

정묘(1747) 8월 24일

동래부사 홍(洪)이 8월 15일에 성첩한 장계 내용. 이번 3월 22일에 나온 소금도왜(小禁徒倭) 1명이 이번 초3일에 병으로 죽어 그대로 왜관 뒷산에 매장하여 두었다고 훈도 이억과 가별차 현태형이 수본하였으며, 올해 6월 초8일에 나왔던 비선에 두왜 1인, 격왜 6명과, 병인년(1746) 12월 초10일에 나왔던 병인조 부특송 봉진압물 1인, 병인년 10월 11일에 나왔던 중금도왜 1인, 을축년(1745) 4월 초8일에 나왔던 하대왜 1명 등이, 관수 재판왜의 사서를 가지고 당일 발선하여 돌아 들어갔다는 훈도 별차의 수본 및 봉군이 진고하였고, 같은 날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방금 접한 훈도 별차 등의 수본 내용에, ‘어제 밤에 도착하여 정박한 비선 2척에 오늘 아침에 가서 문정하였더니, 도중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고, 제1척 비선에 두왜 1인, 격왜 5명, 교대차 나온 중금도왜 1인, 소금도왜 1명 등이 노인 및 관수 재판왜에게 보내는 사서를 가졌으며, 제2척 비선에 두왜 1인, 격왜 7명, 교대차 나온 중금도왜 1인, 소금도왜 2명 등이

7) 신만(申漫) : 영조 21년(1745) 3월 1일에 경상좌도수군절도사로 부임하여 영조 23년(1747) 8월에 어사의 한광조(韓光肇)의 장계로 인하여 파직되어 김해로 유배되었다.

8) 시진(時辰) : 1일을 12지(支)에 맞추어 12등분한 시간 단위. 1시진은 하루를 24등분하여 구분하는 오늘날 시간 단위의 2시간에 해당한다.

함께 타고 노인 및 은화 5,000냥을 실어가지고 나왔는데, 소지한 노인 2통은 그 전면에 「각도각관방어소(各道各官防禦所)」라 써 넣은 것이 격식에 어긋나므로 물리쳐 받지 아니하고, 고쳐 적어 바치라는 뜻으로 관수왜에게 책망하여 타 일렀다'는 연유"의 일임.

정묘(1747) 9월 초1일

동래부사 홍중일이 8월 21일에 성첩한 장계 내용. 이달 15일에 도부한 부산 첨사 신희의 치통 내용에, "올해 6월 17일에 나왔던 당년조 1특송사 2호선에 격왜 30명, 올해 정월 27일에 나왔던 고환차왜(告還差倭)의 봉진압물 1인, 병인년(1746) 10월 11일에 나왔던 중금도왜 1인 등이 함께 타고, 공작미를 실어가지고 돌아 들어가기 위해 어제 수문 밖에서 바람을 기다린다는 훈도 이억과 별차 현대형 등의 수본에 의거하여 수호장을 정하여 보냈는데, 동 배 1척이 당일 발선하여 돌아 들어갔다고 수호장이 치보하였으며, 올해 6월 17일에 나왔던 비선에 두왜 1인과 격왜 8명, 올해 2월 초4일에 나왔던 중금도왜 1인, 올해 3월 초2일에 나왔던 소금도왜 1명, 병인년(1746) 6월 초1일에 나왔던 병인조 이떼이양[以酤菴] 제4선의 반종(伴從) 1명이 함께 타고, 관수 재판왜의 사서를 가지고 당일 관소(館所)에서 또한 발선하여 돌아 들어갔다는 훈도 별차 등의 수본 및 봉군이 진고하였다"고 하였음. 8월 18일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방금 훈도 별차 등이 바친 수본 내용에, '관왜 등의 부조(父祖)의 무덤이 구관(舊館) 뒷산에 있는데, 이제 추사일(秋社日)⁹⁾을 당하여 예전 사례대로 성묘하려 간다'는 수본에 의거하여, 별차(別差)와 소통사(小通事)가 데리고 영솔 내왕하여 횡행하지 못하게 하라는 뜻으로 각별히 신칙하였다"고 하였음. 상역(商譯) 등의 피집(被執) 물화(物貨) 값으로 은화 1만 냥을 이달 15일의 별개시(別開市)에서 받아내었다는 연유의 일임.

정묘(1747) 9월 21일

예조참의 이덕중(李德重)¹⁰⁾의 상소. "엿드려 생각건대 본조에서는 마침 왜국

9) 추사일(秋社日): 입추(立秋) 뒤 다섯 번째 술일(戌日).

10) 이덕중(李德重, 1702-?): 한산이씨로 자는 자이(子彝) 호는 결재(潔齋)이다. 영조 6

(倭國)의 서계(書契)에 회답하는 일이 있어서 마땅히 신의 이름을 써넣어 보내야 하는데, 신의 사사로운 의리로는 가만히 불안한 점이 있어서 감히 이렇게 진술하여 아뢰입니다. 신의 5대조인 고 충신 경류(慶流)는 임진란을 당하여 순변사(巡邊使)의 종사관으로 상주의 전투에서 순절하였으니, 신의 집안은 왜놈들에게 실로 불공대천의 의리가 있습니다. 신은 일찍이 조정 신하 가운데 남쪽과 북쪽 두 나라에 원수가 있는 자가 만약 사신의 명이나 접대하는 일이 있을 적에 사정을 위에 아뢰면 모두 허락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신의 여러 조부와 백숙부들 역시 일찍이 이 직책 때문에 서계를 왕복할 무렵에 면직하여 주기를 청하였고, 조정에서는 곧장 변통하여 직책을 바꾸도록 허락하였는데, 이제 신의 처신하는 의리 또한 다름이 없습니다. 이에 감히 죽음을 무릅쓰고 주상전하께 번거로이 호소하오니, 엿드려 바라건대 거룩하고 밝은 임금님께서 급히 신의 직책을 바꾸어 다른 사람에게 주는 명령을 내리시어 즉시 거행하게 하시면, 공사간에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비답에 이르기를, “상소를 잘 살펴보았다. 일찍이 허락하는 도리가 있었고 전례도 있으니 교체를 허락한다”고 하셨음.

정묘(1747) 9월 27일

동래부사 김상중(金尙重)¹¹⁾이 9월 17일에 성첩한 장계 내용. 운운하였는데, 위에 나왔던 비선의 노인 1통을 감봉(監封)하여 해조로 올려 보냄. 동 비선이 이달 11일에 우도로 바람에 표류한 형편을 다대포 가장(假將) 성완(成完)이 봉군의 관측 잘못 때문에 즉시 치보하지 않다가 그 다음날에 비로소 치보하였는바, 그날 봉군이 관측을 잘못된 것이 비록 비바람이 번갈아 일어나고 구름과 안개가 바다를 덮은 소치 때문이라고 하나, 변방 정세에 있어서 후일을 징계하는 도리가 없어서는 불가하기로, 봉군은 그 진에서 죄를 다스리게 하고, 변정 담당 감색 등은 본부에서 전례대로 잡아와서 곤장을 칠 것이며, 만쇼잉[萬松院] 송사왜가 이미 나왔는데, 가져온 서계는 뒤에 다례(茶禮)를 베풀면서 받아 올린 뒤에 올려 보낼 계획이거니와, 동 송사왜의 배가 나올 때 황령산봉군이 관측을 잘못함을 면치 못했으니, 전례대로 잡아와서 곤장을 쳐서 후일을 징계

년(1730) 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거쳐 대사간, 이조참의 등을 역임하였다.

- 11) 김상중(金尙重, 1700-?) : 강릉김씨로 영조 8년(1732) 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거쳐 영조 23년(1747) 8월에 동래부사로 부임하였고, 그 뒤에 대사간, 대사성, 도승지, 공조판서 등을 역임하였다.

하며, 옥포왜학 및 훈도 별차 등의 문정에 착오가 생긴 곡절은 부산진에서 이미 물어 조사하였는데, 그쪽의 회통(回通)을 기다려서 장계(狀啓)로 알려 죄를 논할 계획이고, 수문 밖에서 바람을 기다리는 왜선 2척은 돌아 들어간 뒤에 다시 장계로 알릴 계획임.

정묘(1747) 10월 초10일

경상우수사 이언섭(李彦燮)¹²⁾이 9월 27일에 성첩한 장계. 운운하였는데, 동비선 1척은 폐단없이 다대포로 건너 보냈거니와, 당초 동 왜선이 나올 때 부산(釜山)과 다대(多大)와 천성(天城)과 가덕(加德) 등의 진에서는, 3척이 바다 가운데서 일시에 나오다가 큰 배 2척은 표류하여 좌도로 향하였고, 비선 1척은 표류하여 거제도도 향하였다고 망군 등이 진고하여 치보하였으나, 지세포와 옥포, 조라포 등의 진에서는 단지 비선 1척만 관측하였다고 보고하였으며, 부산첨사 신희의 치보 내용에, 동 왜선이 관소로 돌아와 정박한 뒤 훈도 별차 등의 문정 가운데, 비선 1척과 큰 배 2척이 11일 이른 아침에 대마도에서 함께 발선하여 곧바로 관소로 향하다가 물마루에 이르지 못하여 바람 형세가 불순하여 과연 나뉘어 표류하였다고 하였는데, 옥포왜학의 문정에는 원래 큰 배 2척을 거론한 일이 없었으니, 모두 소홀하게 한 일이기로, 척 수가 어긋난 곡절에 대하여 관문을 발송하여 지세포 옥포 조라포 세 진의 변장 및 왜학 등에게 물어 조사하라 하였더니, 지세포 만호 김문상(金文尙)과 옥포 만호 김경석(金景奭)과 조라포 만호 조만옥(趙萬郁) 등의 조사 보고 내용에는, 진고한 해당 망군 등을 잡아와서 그 2척을 관측하여 고하지 아니한 곡절을 조사하여 물었더니, 공초 내용에, ‘저희들이 담당하는 일이 얼마나 중대한 일인데 어찌 감히 범연하게 관측하여 진고할 리가 있겠습니까? 좌우도의 봉대(烽臺)가 비록 하나의 바다를 관측한다고는 하지만, 이전부터 호운도(呼雲島)를 한계로 하여 그 밖으로 표류하여 좌도로 향하는 배는, 저희들의 봉대에서 관측하면 뒤쪽으로 관측되기 때문에 시력이 미치지 못하여 명료하게 관측하지 못하고, 우도로 표류하는 배 1척만 과연 관측하여 진고하십니까’라고 공초를 바쳤기에, 이에 의거하여 조사 보고한다 하였으며, 옥포왜학 박진호의 수본 내용에는, ‘표류한 왜인에 대한 문

12) 이언섭(李彦燮) : 영조 23년(1747) 8월 6일에 경상좌도수군절도사로 부임하여 영조 25년(1749) 5월에 임기가 만료되어 교체되었다. 원본의 ‘경상우수사’는 ‘경상좌수사’를 잘못 표기한 것으로 보인다.

정이 얼마나 지극히 중대한 일인데 어찌 감히 소홀하게 거행할 리가 있겠습니까? 이제 이번 지세포로 표류하여 정박한 왜선에 문정할 때 거듭 거듭 따져 물었더니, 두왜의 말이, 11일에 비선 1척이 나온 외에 원래 다른 배가 나온 일이 없다고 틀림없이 이야기하기로, 한결같이 왜인이 말하는 대로 따라 수표를 받아서 수본하였는데, 동 교활한 왜인들이 관소에 도착한 뒤에 혼도 별차 등이 문정할 때 3척의 배가 같이 출발하였다고 운운한 것은 곧 말을 바꾼 소치가 아닐지?라고 수본한다 하였는바, 부산진의 구봉과 다대진의 응봉과 천성진과 가덕진의 연대와 지세포의 놀일곶과 옥포 조라포의 옥산 등의 봉대에서의 관측이 모두 하나의 바다를 관측하는 곳이라, 관측하는 데 있어서 다툼이 없어야 마땅하니, 다른 각 진에서 관측한 배를 지세포와 옥포와 조라포 세 진에서만 또한 관측하지 못할 리가 없을 터인데, 뒤쪽에서 멀리 관측하여 시력이 미치지 못하여 좌도로 표류한 2척의 배는 관측하여 보고하지 못했다고 운운한 것은, 변방의 정세로 헤아리건대 극히 해괴하며, 동 왜선이 관소로 돌아와 정박한 뒤에 혼도 별차 등이 문정한 가운데, 큰 배 2척과 비선 1척이 같이 발선하였다가 바다 가운데서 나뉘어 표류하였다고 운운하였고, 옥포왜학의 문정에서는 2척의 배가 같이 출발한 여부를 처음부터 거론하지 않았다가, 조사하여 물기에 이르러서야, 이제 교활한 왜인들이 관소에 도착하여 말을 바꾸었다고 하였지만, 교활한 왜인이 말을 바꾼 진위는 지금 조사할 길이 없으며, 부산과 다대와 천성, 가덕 등의 진에서는 모두 3척의 배가 일시에 나온 것으로 관측하여 치보하였으니, 왜학이 당초 상세하게 살펴 문정하지 아니한 것을 알 수 있고, 그 소홀한 책임은 모면하기 어렵기로, 앞의 지세포 만호 김문상과 옥포 만호 김경석과 조라포 만호 조만옥과 옥포왜학 박진호 등을 아울러 신의 수영으로 잡아다가 엄중하게 곤장을 쳐서 후일을 징계하였으며, 위의 어긋난 곡절을 조사하여 묻는다고 왕복하는 사이에 일자가 자연히 지연되었기에 연유를 아울러 치계하는 일.

정묘(1747) 11월 12일

동래부사 김상중(金尙重)이 11월 초2일에 성첩한 장계 내용. 이달 초1일에 도부한 가혼도 별차 등의 수본 내용에, “지난 초하루에 동서 왜관 건물의 여러 곳을 부산진 감색과 함께 적간하였는데, 비가 새는 곳은 각 진포(鎭浦)로 하여금 비록 이미 지붕을 덮게 하였으나, 그 밖의 파손된 곳은 전과 다툼이 없다”

는 수본에 의거하여, 속히 보수하라는 뜻으로 다시 더 신척하였다는 연유의 일임.

정묘(1747) 11월 19일

동래부사 김상중이 11월 초8일에 성첩한 장계 내용. 수문 밖에서 바람을 기다리던 왜선 2척은 그 배가 돌아 들어가기를 기다려 다시 장계로 알린다는 뜻으로 전에 이미 치계하였는데, 이달 초3일에 도부한 부산첨사 신희의 치통 내용에, “지난 달 29일에 돌아 들어가다가 관소로 되돌아와 정박한 비선 1척이 오늘 다시 발선하여 돌아 들어갔다”고 치통하였음. 초4일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당일 5척의 배 및 또 1척의 배가 나온다고 차례차례 전해온 전통에 의거하여 다대포첨사가 치통한 내용에, ‘옥포 강 입구에 정박한 왜인의 큰 배 5척에 왜학 소통사 등이 이달 초5일에 가서 문정하였더니, 『도중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고, 제1척은 당년조 부특송(副特送) 1호선으로 정관왜(正官倭) 1인, 도선주왜(都船主倭) 1인, 시봉(侍奉) 1인, 반종(伴從) 4인, 격왜 40명, 교대차 나온 중금도왜 1인, 소금도왜 2명 등이 함께 타고, 예조로 보내는 서계 1통을 가졌으며, 제2척은 당년조 부특송사 2호선으로 부관(副官) 1인, 이선주(二船主) 1인, 봉진압물(封進押物) 1인, 사복압물(私卜押物) 1인, 시봉 1인, 반종 3명, 격왜 30명, 교대차 나온 중금도왜 2인, 소금도왜 5명 등이 노인을 가지고 함께 타고 있으며, 제3척은 당년조 1특송사 수목선(水木船)인데 격왜 20명과 교대차 나온 중금도왜 11인, 소금도왜 7명 등이 함께 타고, 노인을 가지고 공작미를 실어가기 위해 나왔으며, 제4척은 당년조 3특송 수목선인데 격왜 20명, 교대차 나온 중금도왜 3인, 소금도왜 7명, 하대왜(下代倭) 3명 등이 함께 타고, 노인을 가지고 공작미를 실어가기 위해 나왔으며, 제5척은 재판차왜 등여조(藤如照)가 배를 타고 재차 건너왔는데 격왜 15명과 교대차 나온 중금도왜 1인, 소금도왜 1명 등이 함께 타고, 대차왜에게 보내는 사서를 가지고, 이달 초4일에 큰 배 5척과 비선 1척이 대마도에서 일시에 나와서 곧바로 관소로 향하다가, 겨우 물마루에 이르자 바람 형세가 불순하여 비선은 뒤에 처져 바다 가운데서 그대로 해가 저물어 향한 곳을 모르고, 저희들 큰 배 5척은 근근이 표류하여 이곳에 도착하였다고 운운하기로, 등록(騰錄)을 가져다 살펴보니, 1호선의 원역(員役) 가운데 부관왜 1인과 봉진압물왜 1인, 시봉왜 1인 등이 2호선에 바꾸어 탔고, 2호선의 원역 가운데 유선주왜(留船主倭) 1인은 1호선에 바꾸어 탔기로, 그 곡절을 탐문하였더니, 동 왜인들이 말하기를, 이전에도 예사로 바꾸어 탄 일이

있다고 하였으며, 금도왜의 수가 많이 나온 곡절을 탐문하였더니, 통신사(通信使)의 사행(使行)이 가까이 있어서 각기 봉행할 일이 있으므로 교대하는 일을 겸하여 나왔다고 운운하였는데, 여러 가지로 따져서 탐문하는 사이에 문정하는 시각이 절로 늦어졌으며, 이달 초4일에 뒤쳐져서 분간되지 않는 배 1척을 밤새워 상세히 관측하였더니, 당일 밤중에 표류하여 좌도로 향하였는지 혹은 대마도로 되돌아갔는지 표류하여 도착한 곳이 없다고 지세포 만호가 차례차례 전하여 전통한 내용에 의거하여 치통한다' 하였는데, 무릇 왜선이 나올 때 전례에 따라 노인을 소지하는데, 이제 이번 재판차왜 등여조가 재차 건너오면서 타고 온 배에는 노인을 가지고 온 일이 없기로, 곡절을 물어 조사하여 묻고 연유를 치통한다" 하였음. 같은 날 해시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올해 9월 29일에 나온 통신사 행차를 호위한 대차왜(大差倭)의 견선(撻船)에 격왜 20명과 올해 7월 초4일에 나왔던 문위역관(問慰譯官)의 귀환을 호위한 재판차왜 등여조(藤如照)와 봉진압물 1인, 시봉 1인, 반종 10명, 올해 6월 17일에 나왔던 중금도왜 1인, 올해 정월 19일에 나왔던 통사왜 1인 등이 함께 타고, 그의 그릇과 잡물을 실어가지고 돌아 들어가기 위해 당일 수문 밖에서 바람을 기다린다는 가훈도 별차 등의 수분에 의거하여 치통한다" 하였음. 우도의 옥포 왜선은 그 배가 관소로 되돌아와서 정박한 뒤에 문정하고, 수문 밖에서 바람을 기다리는 왜선은 그 배가 돌아 들어가기를 기다리며, 옥포로 표류한 왜선 가운데 1척의 노인이 없는 곡절을 이미 부산진에서 물어 조사하게 하였으니, 그 회통(回通)을 기다려 아울러 장계로 알릴 계획이거니와, 위의 표류한 왜선 등이 나올 때 뒤쳐져서 향한 곳을 모르는 왜선이 물마루 주변에 도착하여 어른거리는 형편을, 다대포첨사 이해(李海)가 봉군의 관측 실수로 인하여 즉시 치보하지 않고 그 다음날 비로소 치보한 것은, 그 일이 변방 정세에 있어서 후일을 징계하는 도리가 없어서는 불가하겠기로, 봉군(烽軍)은 그 진에서 죄를 다스리게 하였고, 변정 담당 감색 등은 본부에서 전례대로 잡아와서 곤장을 쳤음. 당년 조 공작미 1만 6천 섬은 대관왜에게 지급을 마쳤으며, 상역(商譯) 등이 피집(被執)한 물화(物貨) 값의 은화 6,200 냥은 이달 초3일의 개시(開市)에 받았다는 연유의 일임.

정묘(1747) 11월 29일

경상우수사 장태소(張泰紹)가 11월 19일에 성첩한 장계 내용. 운운하였는데,

동 왜인의 큰 배 5척 중 3척은 곧바로 다대포에 부쳤고, 2척은 두 차례로 나누어 또한 다대포로 건너 보냈거니와, 무릇 우도(右道)로 표류한 왜선을 차례차례 영솔하여 연로(沿路)의 각 진에 교부(交付)하여 다대포에 교부하는 것이 본디 정식인데, 이제 이 3척의 왜선이 순풍을 만나 곧바로 건널 때, 호송장인 조라포만호가 만류하여 잡지 못하고, 그대로 영솔 호송하여 다대포에 교부한 것은 규례에 어긋남이 있거니와, 임자년(1732) 정월 일에 도부한 비변사의 복계(覆啓) 관문(關文) 내용에, ‘표류하여 정박한 왜선을 각 진에 명하여 차례차례 교부하게 한다’는 법령의 의도가 있어서, 비록 사소한 폐단이 있다 하더라도 마땅히 정식대로 하도록 신칙하였는데, 왜선이 만약 순풍을 만나 곧바로 관소로 향하면서 다른 간사한 사정이 없다면, 호송하는 일개 작은 배가 만류하여 잡지 못함은 또한 그럴 형편이지만, 그러나 수신(帥臣)으로서는 그 죄의 경중을 상세히 살펴야 하겠는 바, 동 교활한 왜인들이 바람을 타고 돛을 걸어 곧바로 향할 때, 호송장이 한 척의 배로 갑자기 만류하여 잡을 수 없음은 그 형세가 그럴 듯하고, 또한 다른 간사한 사정이 없었으나, 신칙하여 다잡하는 도리에 있어서 전연 그냥 두어서는 불가할 뿐 아니라, 뒤쳐진 왜선 1척이 먼저 장목포 경내에 도착하여 동 포구의 유진장(留鎭將) 서종백(徐宗伯)과 서로 만났을 때, 조라포에서 영솔하여 부친 일이 없었으므로, 동 왜선이 출발한 일시를 장목포의 이문(移文) 가운데 거론하지 못한 것은, 대개 왜선이 바다 가운데서 나뉘어 달렸으므로 조라포 유진장이 혹 미처 주선해서 영솔하여 부치지 못한 소치이니, 변방의 사정을 헤아리건대 또한 소홀한 일이며, 초4일에 동 왜선이 나올 때 지세포와 옥포, 조라포 세 진에서 일시에 6척을 관측하였으나, 천성과 가덕과 다대포 세 진에서는 먼저 5척을 관측하고 추가로 1척을 관측하여 두 차례로 나누어 치보한 것은, 위의 세 진이 이미 대마도를 관측하는 첫머리에 있어서 그 망군(望軍)이 관측되는 대로 진고한 것을 따라 선후로 나누어 치보한 것이라, 크게 괴이할 것이 없어서 참조하여 용서할 도리가 있었을 듯하나, 변방 정세를 중시하여 신칙하는 도리에 있어서 또한 그냥 둘 수 없으며, 옥포 왜학 박진호는 동 왜선 5척에 당초 문정하는 가운데 응사왜(鷹師倭) 3인을 증금도왜 명목으로 써서 보고하고, 재판차왜의 노인(路引) 역시 거론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소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기로, 이전의 호송장 조라포만호 조만옥과 옥포왜학 박진호 및 천성과 가덕 두 진의 망군을 신의 수영으로 잡아다가 경중을 나누어 곤장을 쳐서 후일을 징계하고, 다대포 망군 등은 잡아다가 곤장을 쳐서 신칙하라는 뜻으로 경상좌수사 이언섭에게 관문을 발송하여 분부하였으며, 바다 가운데 뒤쳐져서 향한 곳을 모르는 배 1척에 대하여는 잇달아 접한

각 읍과 진의 치보에는 끝내 표류하여 정박한 곳이 없으니, 밤중에 필시 대마도로 되돌아 들어간 소치라 하는 바, 이제 여러 날이 되도록 과연 표류하여 도착한 곳이 없으니 대마도로 되돌아 들어갔다고 하는 것이 혹 그러할 듯한데, 아직도 또렷하게 알기 전에는 다시 탐지해야 할 형편이기로, 각별히 상세히 탐지하라는 뜻으로 연해 각 읍과 진에 특별히 더 엄중하게 신칙한 일임.

정묘(1747) 12월 13일

동래부사 민백상(閔百祥)¹³⁾이 12월 초5일에 성첩한 장계 내용. 방금 도부한 가훈도 김태현(金兌賢)¹⁴⁾과 가별차 유극화(劉克和)¹⁵⁾ 등의 수본 내용에, “지난 초하루 동서 왜관 건물 여러 곳을 부산진 감색과 같이 적간하였는데, 비가 새는 곳은 각 진포로 하여금 비록 이미 지붕을 덮게 하였으나, 그 밖에 파손된 곳은 전과 다름이 없다”는 수본에 의거하여, 속히 보수하라는 뜻으로 다시 더 신칙한 일임.

무진(1748) 정월 초5일

동래부사 민백상이 12월 26일에 성첩한 장계 내용. 지난 달 26일에 왜선 6척이 바람에 표류할 적에, 우도의 지세포에서 처음 관측한 시각을 술시로 관측하고는 유시 말에 서로 만났다고 고한 것은 전도되어 어긋남을 면치 못하였기로, 그 조사 답변을 기다려서 장계로 알린다는 뜻은 전에 이미 치계하였는데, 방금 도부한 부산첨사의 치통 내용에, “방금 접한 가덕첨사의 전통(傳通)에 의거한 다대포첨사의 회통(回通) 내용에, ‘당초 문안(文案)을 살펴보았더니 가덕의 색리(色吏)가 전하여 적을 때 술시라고 잘못 적은 소치이므로, 동 색리를 조사해

13) 민백상(閔百祥, 1711-1761) : 여흥민씨로 자는 이지(履之)이다. 영조 16년(1740) 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거쳐 영조 23년(1747) 10월 동래부사로 부임하였다가 동 25년(1749) 정월 경상도관찰사가 되어 갔고, 그 뒤에 대사성, 대사간, 대사헌, 호조판서 등을 거쳐 우의정에 이르렀다.

14) 김태현(金兌賢, 1726-?) : 영덕김씨로 자는 의백(義伯)이다. 영조 20년(1744) 식년 역과에 왜학으로 합격하여 주부를 역임하였다.

15) 유극화(劉克和, 1701-?) : 청주유씨로 자는 예경(禮卿)이다. 영조 3년(1727) 증광시 역과에 왜학으로 합격하였다.

내어서 엄중하게 곤장을 쳐서 징계하였다고 회통한다’는 데 의거하여 치통한다”고 하였다는 일임.

무진(1748) 정월 12일

동래부사 민백상이 정월 초4일에 성첩한 장계 내용. 왜관 여러 곳의 손상 유무를 매달 말에 적간하며, 연말에 별도로 적간하는 일은 일찍이 정식 절목이 있기로, 지난 달 28일 본부 감색을 보내어서 부산 감색 및 훈도 별차 등과 같이 적간하게 하였는데, 감색 등의 회고 내용에, “왜관 건물의 비가 새는 곳은 각 진으로 하여금 비록 이미 지붕을 덮게 하였으며, 대단히 파손된 곳은 전과 다름이 없다”고 하기로, 속히 보수하라는 뜻으로 다시 더 신칙하였다는 연유의 일임.

무진(1748) 2월 초5일

동래부사 민백상이 정월 25일에 성첩한 장계 내용. 이달 22일에 황령산봉군 엄한석(嚴汗石)이 진고하기를, “조선 배인지 왜선인지 분간되지 않는 배 4척이 물마루에서 앞뒤로 나뉘어 나오다가, 2척은 표류하여 우도로 향하고, 2척은 곧바로 관소로 향한다”고 하였으며, 인시에 도부한 구봉봉군의 진고 및 다대포첨사의 치통에 의거한 부산첨사 신희의 치통 사연은 황령산봉군이 고한 것과 한 가지이나, “곧바로 관소로 향한 배 2척은 초탐하기 위하여 두모포만호 정희언(鄭晦言)을 정하여 보냈는데, 동 배 2척은 날이 이미 캄캄하게 어두워졌는데도 등불을 내건 일이 없으므로 초탐하기 어려운 형편이라, 밝기를 기다려서 다시 관측하였더니, 과연 왜선이 조도(朝島) 바깥 바다에 떠서 머물다고 동 초탐장이 치보하였기에, 이에 의거하여 속히 영솔하여 관소에 부치라는 뜻으로 신칙하였다” 하였음. 같은 날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방금 접한 가덕첨사의 전통에 의거한 다대포첨사의 치통 내용에, ‘어제 분간되지 않는 배 4척이 바다 가운데서 나오다가 2척은 좌도로 향하고, 2척은 표류하여 천성 경내로 표류하기에, 천성만호 및 가덕 이선장(二船將) 등에게 성화같이 초탐하라고 신칙하여 운운’ 하였다” 하였음. 같은 날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조도 바깥 바다에 떠서 머물던 왜선 2척을 신시에 영솔하여 관소에 부쳤다는 초탐장

의 치보에 의거하여, 즉시 훈도 이명윤(李命允)¹⁶⁾과 별차 김태현(金兌賢) 등에게 문정하게 한 수본 내용에, ‘도중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으며, 제1척은 계해조 1특송사 1호가 재차 건너온 배인데, 격왜 40명과 교대차 나온 별일대관왜 1인, 종왜 7명, 중금도왜 6인, 통신사 행차를 호위하기 위한 지로사공왜(指路沙工倭) 6인 등이 함께 타고, 노인 및 술 3통을 가지고 있으며, 제2척은 계해조 2특송사 2호가 재차 건너온 배인데, 격왜 30명, 교대차 나온 중금도왜 1인 등이 함께 타고 노인 및 어유(魚油) 3통을 가지고, 각각 공작미를 실어가기 위하여 어제 이른 아침에 대마도에서 비선 2척과 더불어 함께 발선하여, 물마루에 미치지 못하여 바람 형세가 불순하여, 비선 2척은 뒤쳐져서 향한 곳을 모르고, 저희들의 배 2척은 근근히 전진할 즈음에 그대로 해가 저물어 바다 가운데 떠서 머물러 밤을 지낸 뒤 이제 비로소 도착하여 정박하였다고 운운 하였으며, 그 배가 재차 건너온 것은 모두 규정 밖의 일이므로, 노인을 받지 아니하고 속히 들여보내라는 뜻을 관수왜에게 책망하여 타일렀다’고 수본하였으며, 일시에 도부한 가덕첨사의 전통에 의거한 다대포첨사의 치통 내용에, ‘이제 이번 천성경내로 표류하여 온 분간되지 않은 배 2척은 과연 왜인의 작은 배로, 천성만호가 22일 술시에 말곶 앞바다에서 서로 만나, 그대로 영술 예인하여 해시에 마거리 앞바다에 정박하여 수호한다’ 운운” 하였음. 24일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마거리 앞바다에 표류하여 정박한 왜인의 작은 배 2척은, 이번 23일에 출발하여 천성만호가 영술 예인하여 사시에 안골포만호에게 교부하고, 동 만호가 그대로 영술 예인하여 신시에 서평포만호에게 교부하고, 동 만호가 그대로 영술 예인하여 술시에 관소에 도착하여 정박하였다고 차례차례 치보하였기에, 이에 의거하여 즉시 문정하라는 뜻을 임역 등에게 분부하였다” 하였음. 같은 날 사시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보 내용에, “방금 접한 가덕첨사의 전통에 의거한 다대포첨사의 치통 내용에, ‘무릇 왜선은 옥포왜학이 문정한 뒤에 출발하는 것이 본디 규례인데, 이제 이번 왜인들은 관소로 시급한 일이 있어서 출발한다는 뜻을 말하거늘, 그렇지 않은 사유를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여 깨우쳐 기어코 만류하여 잡았더니, 왜인들이 대단히 노하여 불시에 출발하기에, 인력으로 붙들어 잡을 형편이 전혀 아니기로, 두려움을 견디지 못한다’고 차례차례 치통하였으며, 일시에 도부한 훈도 별차 등의 수본 내용에, ‘우도로 표류한 왜인의 작은 배 2척이 어제 밤에 관소로 돌아와 정박하였으나, 관문이 이미 잠겼

16) 이명윤(李命尹, 1711-?) : 금산이씨로 자는 성임(聖任)이다. 영조 14년(1738) 식년 역과에 왜학으로 합격하여 교회를 역임하고 자급이 자헌대부에 이르렀다. 원본의 명운(命允)은 방목에 명윤(命尹)으로 되어 있다.

으므로 오늘 아침에 가서 문정하였더니, 도중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고, 제1척 비선에 두왜 1인과 격왜 7명, 교대차 나온 중금도왜 1인 등이 함께 타고 노인 및 재판대차왜에게 보내는 사서를 가졌으며, 제2척 비선에 두왜 1인, 격왜 8명, 교대차 나온 소금도왜 1명 등이 함께 타고 노인 및 관수왜에게 보내는 사서를 가지고, 이번 22일 이른 아침에 대마도에서 큰 배 2척과 함께 발선하였다가, 물마루에 이르지 못하여 바람 형세가 불순하여, 큰 배 등은 향한 곳을 모르고, 저희들의 배는 표류하여 천성 경내로 향하였다가, 이제 비로소 돌아와 정박하였다고 운운 하므로, 소지한 노인 2통을 받아 올려 보낸다'는 수본에 의거하여, 동 노인을 이전대로 보낸다고 치통한다" 하였음. 위의 규정 외에 나온 왜선 2척은, 다시 임역 등에게 명하여 각별히 관수왜에게 책망하고 타일러 속히 되돌려 보내도록 하였고, 비선 2척의 노인 2통은 감봉하여 해조로 올려 보내 거니와, 무릇 왜선이 우리 경내에 표류하여 정박할 때, 반드시 역학(譯學)의 문정을 기다린 뒤에 출발하는 것이 본디 규례인데, 이제 이번 비선은 시급한 일이 있다고 일컬으며 미처 문정하기 전에 곧장 먼저 출발하였고, 천성만호 김두만(金斗萬)은 전례에 따라 호송한 뒤에 인력으로 붙들어 잡을 형세가 만무하였다고 추가로 다시 보고한 것은, 비록 교활한 왜인이 분노한 데서 나온 소치이나, 변방 정세를 중시하는 도리에 있어서 또한 책망하여 벌하는 도리가 없어서는 불가하기로, 연유를 아울러 치계하는 일임.

이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계목을 첨부하였으니 계하하시기를. 이 동래부사 민(閔)의 장계를 보면, 무릇 왜선이 우리 경내에 표류하여 정박할 때 반드시 역학의 문정을 기다린 뒤에 출발하는 것이 본디 규례인데, 이제 이번 비선은 관소에 시급한 일이 있다고 일컬으며 문정하기 전에 곧장 먼저 출발하였고, 천성만호 김두만은 전례대로 호송하였으나, 그것이 변방 정세를 중사하는 도리에 있어서 책망하여 벌하는 도리가 없어서는 불가하다고 하였는 바, 왜선 등이 관소에 비록 시급한 일이 있더라도, 문정하기 전에 출발하지 못하는 사유를 여러가지로 책망하여 타일러서 기어코 만류하여 잡아서 문정한 뒤에 호송하는 것이 사리에 당연한데, 이제 이번 천성만호는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인력으로 붙들어 잡을 형세가 만무하였다고 핑계하면서 전례대로 호송한 것은 극히 몽롱하여, 변방 정세를 중시하여 신중하게 하는 도리에 있어서 소홀한 책임이 없을 수 없으니, 당해 천성만호 김두만은 본도 수영에서 곤장을 쳐서 후일의 버릇을 징계하게 함이 어떠할지? 건륭 13년(1753) 2월 초8일 도승지 신 한사득(韓師得)¹⁷⁾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함.

17) 한사득(韓師得, 1689-1766) : 청주한씨로 자는 계능(季能)이다. 경종 2년(1722) 문과

무진(1748) 2월 14일

이번 2월 14일에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여 입시할 적에 좌의정 조(趙)가 계품한 바임. “이것은 곧 경상좌수사 이언섭(李彦燮)의 장계입니다. 왜선 2척이 표류하여 천성 경내에 도착하였을 때 옥포왜학 이창석(李昌錫)은 몽롱하게 알지 못하여 문정하지 못하고, 천성만호 김두만은 즉시 왜학에게 서로 통지하지 아니하고 문정하기 전에 임의로 되돌아가도록 놓아준 정상은 모두 소홀한 실책이 있으니, 그 죄상을 묘당에 명하여 품의 조처하라 하였는데, 김두만은 동래부사가 장계하여 수영에서 곤장을 치는 일로 예조에서 이미 복주하였으니 이제 논할 것은 없고, 왜학 이창석은 우수사에게 명하여 잡아다가 곤장을 치게 함이 마땅합니다”라고 하였는데, 상감께서 “그대로 하라” 하셨습니다.

경상우수사 장태소(張泰紹)가 정월 29일에 성첩한 장계. 운운 하였는데, 천성 경내에 정박한 왜인의 작은 배 2척을 다대포로 건너 보냈으며, 좌도로 표류하여 향한 배 2척도 관소에 도착하여 정박하였다고 하였거니와, 이제 이번 천성 경내에 정박한 왜인의 작은 배 2척은 22일 해시에 표류하여 도착해서 23일에 출발하였는바, 왜학이 있는 곳에서 천성진의 왜선이 표류하여 도착한 곳과는 거리가 바다 건너 100여 리 사이이니, 그곳에 정박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즉시 달려가더라도 미처 문정하지 못하는 것은 일의 형세가 그런 듯하며, 다만 왜선이 비록 이미 출발하더라도 왜학이 뒤따라 가서 도착한 곳에서 기어코 문정하고야 마는 것이 그 직분인데,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곧장 임지로 되돌아간 것은 매우 일을 소홀히 한 것이며, 무릇 표류한 왜선에 문정한 뒤에 영솔하여 보내는 것이 본디 규례이거늘, 수호장 천성만호가 미처 문정하기 전에 왜인이 노하여 배를 운행하였다는 핑계를 대며, 전례에 의거하여 만류하여 잡지 못하고 곧장 먼저 영솔하여 호송한 것은 격식과 전례에 어긋남이 있어서, 변방 정세를 헤아리건대 또한 해괴하며, 당초 동 왜선이 나뉘어 표류할 때, 우도 연안의 각 진에서는 22일에 4척의 배가 바다 가운데서 나오다가, 2척은 표류하여 가덕도로 향하고 2척은 좌도로 향한다고 한결같은 말로 관측하여 치보하였는데, 다대포첨사는 같은 날 ‘4척의 배의 모습이 물마루 주변에서 어른거리다가 2척은 우도로 향하고 2척은 그곳에 머무르는데, 구름과 안개가 덮여서 가리고 날씨 또한 어두워서 그 척 수와 향한 곳을 또렷하게 구별하기가 만무하다’고 하였고,

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거쳐 대사간, 형조참판, 도승지를 역임하였다.

부산첨사는 ‘같은 날 유시 쯤에 2척의 배가 물마루에서 나온다’고 치보하였고, ‘2척의 배가 유시 쯤에 또 물마루에서 나올 듯한 형세가 있으나 구름이 어둡고 해가 저문 가운데 그 향하는 곳을 모르겠고, 또한 조선 배인지 왜선인과 척수를 분간하기 어렵다’고 추가로 보고하였는바, 다른 각 진에서는 4척의 왜선이 신시에 나왔다고 한결같이 관측하여 치보하였는데, 부산에서만 또한 그 표류한 왜선을 먼저 관측한 것이 유시에 관측하였다고 하였으며, 또한 두 차례로 나누어 관측 보고한 것은 참으로 매우 영성하여, 평상시 부지런히 참가하여 신척하지 아니한 책임을 또한 면하기 어렵기로, 위의 문정하지 못한 왜선을 곧장 앞서 영술 호위하였던 천성만호 김두만 및 뒤따라 가서 문정하지 아니하였던 옥포왜학 이창석 등을, 신의 수영으로 잡아다가 엄중하게 곤장을 쳐서 후일을 징계하였고, 시각이 어긋나서 두 차례로 나누어 보고한 부산의 변정(邊情) 담담감색 및 당해 봉군 등을 잡아다가 곤장을 쳐서 신척하라는 뜻으로 경상좌수사 이언섭에게 또한 관문을 발송한 일임.

동래부사 민백상이 2월 초4일에 성첩한 장계 내용. 지난 달 27일 오시에 도부한 부산첨사 신희의 치통 내용에, “정묘년(1747) 10월 12일에 나왔던 비선에 두왜 1인, 격왜 7명, 정묘년(1747) 7월 초4일에 나왔던 중금도왜 2인, 소금도왜 1명, 정묘년(1747) 9월 11일에 나왔던 중금도왜 1인 등이 함께 타고, 관수재판대차왜 등의 사서를 가지고, 당일 진시에 발선하여 돌아 들어갔다는 훈도 이명윤과 별차 김태현 등의 수본 및 구봉봉군의 진고에 의거하여 치통한다” 하였음. 이달 초1일에 도부한 훈도 별차 등의 수본 내용에, “지난 초하루 동서 왜관 건물 여러 곳을 부산진 감색과 같이 적간하였는데, 비가 새는 곳은 각 진포로 하여금 비록 지붕을 덮게 하였으나, 그 밖의 파손된 곳은 전과 다름이 없다”고 수본하였기에, 이에 의거하여 속히 보수하라는 뜻으로 다시 더 신척하였음. 초3일 오시에 도부한 부산첨사의 치통 내용에, “정묘년(1747) 11월 초4일에 나왔던 정묘조(1747) 1특송사 수목선 1척에 격왜 20명, 정묘년(1747) 9월 13일에 나왔던 중금도왜 1인, 소금도왜 1명, 정묘년(1747) 9월 11일에 나왔던 별금도왜 1인, 소금도왜 1명 등이 함께 타고, 공작미를 실어가지고 돌아 들어가기 위하여 지난 달 29일 수문 밖에서 바람을 기다린다는 훈도 별차 등의 수본에 의거하여, 본진 이선장(二船將) 이일성(李日成)을 정하여 보내어 수호하였는데, 동 왜선 1척이 오늘 발선하여 돌아 들어갔다고 치보하였으며, 정묘년(1747) 10월 22일에 나왔던 비선에 두왜 1인, 격왜 6명, 정묘년(1747) 9월 29일에 나왔던 중금도왜 2인 등이 함께 타고, 관수재판대차왜 등의 사서를 가지고 오늘 진시에 또한 발선하여 돌아 들어갔다고 훈도 별차 등이 수본하였다” 하였음. 같은

날 술시에 도부한 동 첩사의 치통 내용에, “정묘년(1747) 11월 초4일에 나왔던 정묘조 3특송사 수목선에 격왜 20명과 정묘년(1747) 6월 17일에 나왔던 이폐이양[以酇菴] 송사 정관 굴번행(橋繁幸)과 반종 2명, 종왜 1명, 1특송사 봉진압물 1인, 정묘년(1747) 9월 29일에 나왔던 중금도왜 2인, 소금도왜 4명 등이 함께 타고 공작미를 실어가지고 돌아 들어가기 위해 당일 수문 밖에서 바람을 기다린다는 훈도 별차 등의 수본에 의거하여 수호하기 위하여 두모포만호 정회언(鄭晦言)을 정하여 보낸다”고 하였음. 초4일에 도부한 동 첩사의 치통 내용에, “위의 수문 밖에서 바람을 기다리던 왜선 1척이 오늘 발선하여 돌아 들어갔다는 일로 치통한다” 하였으며, 상역(商譯) 등이 피집한 물화 값으로 은화 650냥을 이달 초3일 개시(開市)에 받아낸 일임.

무진(1748) 3월 초1일

경상우수사 장태소가 2월 19일에 성첩한 장계 내용. 운운하였는데, 다만 훈도 별차 등의 문정 가운데, ‘비선 2척이 이미 큰 배 1척과 함께 발선하여 물마루에 미치지 못하여 나뉘어 표류하였다’고 하였거늘, 옥포왜학은 물마루에 미치지 못하여 나뉘어 표류한 배를, 물마루에 이르러 바람에 표류한 양으로 문정하였고, 2척의 비선은 전혀 거론하지 아니하였는바, 왜학의 문정이 얼마나 신중한 일인데 당초에 상세하게 살피지 아니하고, 이제 와서 조사하여 물은 뒤에 교활한 왜인들이 말을 바꾼다고 핑계하는 것은 이미 극히 소홀한 일이며, 천성과 가덕 두 진에서는 이제 이 3척의 배가 표류하여 올 때, 좌도로 표류한 2척은 관측하여 보고하지 아니하였다가, 조사하여 물을 때에 이르러 비로소 “2척의 비선이 초6일 미시에 곧바로 관소로 향하였고 큰 배 1척은 같은 날 표류하여 가덕도로 향하므로 즉시 관측하여 보고하였고, 좌도로 표류한 2척의 비선은 이전대로 관측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였으며, 지세포와 옥포 조라포 등의 진에서는 “동 왜선 2척이 호운도(呼雲島) 밖의 물마루 주변에서 곧바로 좌도로 향하였으므로 이전대로 거론하지 아니하고, 우도로 표류한 1척의 배만 관측하여 보고하였다”고 하였는바, 무릇 표류한 왜선이 곧바로 관소로 향한 것을, 우도 연안의 봉군이 이에 대하여 진고하지 아니한 것이, 비록 전례이기는 하지만, 좌도와 우도로 나뉘어 표류한 배에 대하여는, 몇 척이 좌도로 표류하고 몇 척이 우도로 표류하였다고 좌우 연안의 봉군들이 일일이 진고하는 것이 변방 정세의 사례이기로, 이번에 표류하여 온 3척의 배도 그것이 좌우도로 나뉘어 표

류할 때를 당하여, 좌도 연안의 봉군은 전례대로 진고하였으나, 우도 연안의 봉군들만 또한 표류한 배를 진고하지 아니하는 것이 전례라고 미루는 것은, 변방의 정세를 헤아리건대 극히 해괴합니다. 이는 전혀 관측을 잘못된 것과는 다름이 있으나, 평상시 부지런히 신척하지 아니한 잘못은 면하기 어렵기로, 앞의 문정이 어긋난 옥포왜학 이창석 및 좌도로 표류한 배 2척을 관측하여 보고하지 않았던 가덕첨사 조상걸(趙尙傑), 천성만호 김두만(金斗萬), 지세포만호 이재무(李再茂), 옥포만호 김정석(金景奭), 조라포만호 조만욱(趙萬郁) 등을 모두 신의 수영으로 잡아다가 엄중하게 곤장을 쳐서 후일을 징계하거니와, 위의 곡절을 오가며 조사하여 묻는 즈음에 일자가 자연히 지연된 일임.

무진(1748) 4월 초9일

동래부사 민백상이 4월 초1일에 성첩한 장계 내용. 방금 바친 훈도 별차 등의 수본 내용에, “지난 초하루 동서 왜관 건물 여러 곳을 부산진 감색과 같이 적간하였는데, 비가 새는 곳은 각 진포로 하여금 이미 지붕을 덮게 하였고 그 밖의 파손된 곳은 이전과 다름이 없다”는 수본에 의거하여 속히 보수하라는 뜻으로 다시 더 신척한 일임.

무진(1748) 4월 16일

경상우수사 장태소가 4월 초6일에 성첩한 장계에 운운 하였는데, 가덕과 옥포로 나뉘어 정박한 왜인의 큰 배 2척은 이미 폐단없이 다대포로 건너보냈거니와, 방금 경상좌수사 이언섭의 등보(騰報)를 접하니, 위의 왜인의 큰 배 2척이 24일에 나올 때, 부산과 다대포 두 진에서는 신시에 관측하였다고 치보하였고, 가덕에서는 유시에 관측하였다고 치보한 것은, 비록 대단히 어긋난 데 이르지 않는으나, 가덕에서 매양 시각이 어긋나는 것은 매우 소홀히 한 것이며, 왜인의 큰 배 1척이 24일 해시에 표류하여 가덕 경내에 정박하였으면, 재빨리 달려가 문정하는 것이 사리에 당연한데, 옥포왜학 이창석은 하루와 두 밤이 지난 뒤 26일 묘시에 비로소 도착하여 문정한 것은 극히 소홀히 한 것이라, 가덕의 변정 담당 감색 및 옥포왜학이 늦어서 소홀히 한 죄를 아울러 조사하여 다스리는 일로 신의 수영에 보고한다는 뜻으로 장계를 올린 뒤에 등보(騰報)하였는

바, 대체로 부산과 다대와 가덕 세 진이 비록 하나의 바다를 관측하는 곳이지만, 간간이 지세(地勢)가 조금 어긋나고 수로(水路)의 멀고 가까움이 있기로, 이전부터 세 진에서 관측하는 사례에 순서가 있어서, 부산과 다대 두 진에서 먼저 관측하고, 가덕에서 다음으로 관측하였는 바, 좌수사가 가덕에서의 관측이 매번 어긋난다고 일컫는 말을 따져본다면, 그 관측에 과연 순서가 있어서 매번 뒤늦게 되는 것을 추리할 수 있습니다. 하물며 간혹 유시 혹은 신시에 관측하여 진고하는 것은, 흥미하고 못한 봉군들이 짐직하여 시각을 고하는 것이니, 또한 어찌 신시라고 고하고 유시라고 고하는 것이, 어느 것이 어긋난 것인지 누가 알겠으며, 옥포왜학 이창석이 하루와 두 밤을 지난 뒤에 문정한 것이 비록 극히 늦었고 소홀한 것이지만, 왜학이 거주하는 곳이 가덕과는 배로 60리를 가고, 육지로 40리를 가서 도합 100여 리인데, 가덕도에서 차례차례 각 진에 전통하여 옥포에 도착한 뒤에 달려가서 문정하니, 왜학이 전통을 본 것이 25일 술시에 있었고, 그 문정한 것은 26일 묘시에 있었다면, 물과 물으로 100여 리를 달려온 것이 밤을 무릅쓰고 6시진 사이에 지나지 않으니, 왜학이 문정한 것을 늦추거나 소홀한 것이 아닌 바, 다만 전례로 따지더라도, 옥포왜학이 가덕에 문정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나, 그것이 늦거나 빠른 것은 오직 그 때 물길의 순조로운 여부에 달려 있으므로, 혹은 사나흘 뒤에 이르러 문정한 것도 많이 있었는 바, 이제 이번 좌수사가 논한 바는 지역이 서로 달라서 우도 연안을 상세히 모른 소치로 운운한 바가 있었으나, 만약 일의 형편을 참조하고 전례로 논한다면 크게 어긋남이 있기로, 이 뜻을 낱낱이 거론하여 논제(論題)하여 좌수사 이언섭에게 분부하실 일임.

무진(1748) 4월 26일

예조단자(單子). 동래부사가 추가로 올려 보냄. 지난 정묘조 부특송사가 바친 왜물(倭物) 및 통신사 호행차왜(護行差倭)가 바친 진상을 전례대로 간품(看品)하여 들이는 바의 일임.

부특송사왜가 바친 진상 : 호추 400근, 단목(丹木) 100근.

통신사 호행 재판차왜가 바친 진상 : 채화괘연(彩畵掛硯) 1개, 채화침자괘연(彩畵枕子掛硯) 1개, 채화칠춘경(彩畵七寸鏡) 2면(面), 채화문갑(彩畵文匣) 1개, 수랍중명완(粹蠟中茗盃) 10개.

통신사 호행대차왜가 가져온 참판에게 보내는 진상 : 첩금소병풍(貼金小屏

風) 2쌍(雙), 채화괘연 1개, 채화대원분(彩畵大圓盆) 20매, 혁과대부갑(革裹大簿匣) 1틀[備], 수랍중명완 20매, 채화서가(彩畵書架) 1채[脚], 채화일척령경(彩畵一尺匱鏡) 1면, 청금화로(靑金火爐) 2좌(座).

동 차왜가 가져온 참의에게 보내는 별폭 침부 진상 : 침금소병풍 1쌍, 채화유부반반(彩畵有趺飯盤) 20매, 채화서가 1채, 채화중층갑(彩畵中層匣) 2틀, 채화괘연 1개, 상아지남침(象牙指南針) 1좌(坐).

동래부사의 첩정 내용. 훈도 별차 등의 수본 내용에, “정묘조 각 송사왜(送使倭) 등의 예단(禮單) 인삼을 들여줄 때, 차비역관(差備譯官) 각 사람들이 납입해야 할 인삼이 많게는 2근 6냥 7전이 감축되었는데, 이제 이미 해가 지나서 구(舊) 대관왜(代官倭)가 마침 돌아 들어가려고 하루에 세번 썩이나 재촉하여 장차 곤란한 일이 생길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만약 이로 인하여 머물면서 가지 아니하면 또한 매우 염려스럽다고 일컫기로, 위의 차비역관 등의 성명 및 감축된 인삼의 수량을 후록(後錄)하여 수본하오니, 해당 관청에 따져서 보고하여, 동 감축 인삼을 기일에 맞추어 징발하여 보내달라”는 일로 수본하였음. 정묘조 예단 인삼이 감축되었다고 일컫는데, 해가 지난 뒤에도 아직까지 마련하여 보내지 않음으로써 저쪽 사람들이 재촉을 하고 훈도 별차 등의 수본하는 사태에까지 이른 것과, 차비역관의 행위는 천만 통탄스럽고 해괴하니, 한결같이 훈도 별차의 수본 후록(後錄)대로 첩보하오니, 다섯 역관 등을 함께 가두어 놓고, 그들 담당하는 줄어든 인삼을 밤낮없이 마련하여 보내어, 대단히 곤란한 폐단이 생기지 않도록 할 일.

후록. 대차왜의 차비역관 유극화(劉克和)의 감축 4냥 5전. 재판 차비역관 김정흥(金鼎興)의 감축 3냥 8전. 이때이양 차비역관 황득린(黃得麟)¹⁸⁾ 2냥 7전 5푼. 만쇼잉 차비역관 김중우(金重禹)¹⁹⁾ 8냥 2전 4푼. 1특송 차비역관 유극화 1근 3냥 4전 2푼. 도합 감축 인삼 2근 6냥 7전 1푼.

수결(手決) 내용 : 일이 비록 놀라우나 이는 본조에서 거두어 내려 보내는 것이 아니니 해당 사역원에 보고하여 조치함이 마땅한 일임.

18) 황득린(黃得麟, 1728-?) : 창원황씨로 자는 군서(君瑞)이다. 영조 26년(1750) 식년 역과에 왜학으로 합격하였다.

19) 김중우(金重禹, 1722-?) : 경주김씨로 자는 상삼(象三)이다. 영조 16년(1740) 증광시 역과에 왜학으로 합격하였다.

무진(1748) 5월 초8일

동래부사 민백상이 5월 초1일에 성첩한 장계 내용. 방금 바친 훈도 별차 등의 수본 내용에, “지난 초하루에 동서 왜관 건물 여러 곳을 부산진 감색과 함께 적간하였는데, 비가 새는 곳은 각 진포로 하여금 비록 이미 지붕을 덮게 하였으나, 그 밖의 파손된 곳은 이전과 다름이 없다”고 수본하였기에, 이에 의거하여 속히 보수하라는 뜻으로 다시 더 신칙하였다는 연유의 일임.

무진(1748) 5월 11일

이번 5월 초10일에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여 입시하였을 때 영의정 김재로(金在魯)²⁰가 계품하기를, “이것은 곧 영남 도신(道臣) 남태량(南泰良)²¹의 장계입니다. ‘본도의 왜공(倭供) 어물(魚物)이 바닷가의 주민에게 끼치는 해가 가장 혹독합니다. 대개 바닷가 주민의 생업은 전부 생사를 넘나들면서 전복을 캐고 물고기를 잡는데 달려 있는데, 서울과 지방에서 여러가지 방법으로 가렴주구하여 징발하여 추렴하는 것이 한정이 없는데다, 왜공에 이르러서는 비록 큰 물고기를 잡더라도 소용이 없고, 반드시 사람마다 돈을 모아서 동래부에 바치는데, 그 값이 여러 배가 됩니다. 그러므로 한 번 분정(分定)을 받으면 파산하여 도망하거나 이사하여 원통하고 괴로운 기운이 위로 하늘의 화평한 기운을 범하기에 족합니다. 순시하며 지날 적에 그들의 오두막집을 보고는 귀신같은 형상에 마음이 놀랍고 눈으로 보기에 참담하여 그 연유를 물었더니, 모두들 말하기를 지난해와 올해에 차왜가 많이 나와서, 원래 정한 수량 외에 별도로 분정한 것이 한이 없어, 달마다 돈을 납부하니 실로 살아갈 가망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신이 이미 목도하였으니 변통할 방법을 생각하지 않으면 이 어찌 성화(聖化)를 받드는 도리이겠습니까? 매년 8차의 송사 외에 별차왜와 표왜(漂倭)가 서로 이어져 끊어지지 않는데, 모두 바닷가의 고을에 책임을 지워, 왜관에 머무는 두왜의 세 차례 명절 예물을 한결같이 현재 머물고 있는 사람에게 지

20) 김재로(金在魯, 1682-1759) : 청풍김씨로 자는 중례(仲禮)이며 호는 청사(淸沙)이다. 숙종 36년(1710) 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거쳐 대사간, 대사성, 병조판서 등을 거쳐 영의정에 이르렀다.

21) 남태량(南泰良, 1695-?) : 의령남씨로 자는 유능(幼能)이다. 영조 3년(1727) 증광 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거쳐서 영조 23년(1747) 정월 도승지에서 경상도관찰사로 부임하여 이듬해 10월까지 재임하고, 그 뒤에 이조참판을 역임하였다.

급하는 수량을 그대로 따라서 증정하여 주니, 한 해를 통틀어 계산하면, 평상시에 정해 놓은 것과 별도로 정하여 마련하는 분정의 수량이 무려 수십 차례이니, 비록 평상시 정해 놓은 물가로 따지더라도 각종 어물 값으로 들어가는 돈이 3,000여 냥에 이르지만, 거기에 지출하도록 책정된 쌀은 300여 섬에 불과하니, 쌀을 돈으로 계산하면 부족한 것이 2,000여 냥입니다. 이것을 시골 포구의 곤궁한 주민들에게 생짜로 징수[白徵]하고, 심지어는 해민(海民)과 육민(陸民)을 통틀어 호구마다 돈을 거두니, 광경이 참혹합니다. 대개 연향(宴享)에 사용하는 물품을 한번 돈으로 대신하여 거둔 뒤로부터는, 오로지 동래부의 감색(監色)이 이문을 속여 취하는 밀천이 되어, 돈은 중간에 사라지고 연향은 보잘 것 없이 마련하니, 부질없이 바닷가 주민들의 한없는 원망만 맺는 데다, 먼 외국사람을 접대하는 예를 그르칩니다.²²⁾ 일공(日供) 어물(魚物)에 있어서는 본디 가격으로 정한 쌀을 들여 주는 것이 전례이지만, 곧바로 연향의 어물과 혼동하여 바닷가 주민에게 분정하고는 왜관에 쌀을 들여 주어, 근거 없는 후한 이익이 부질없이 동래 사람의 주머니로 돌아가니, 더욱 극히 놀랍습니다. 신이 마침 변통할 계획을 세울 무렵에, 부사 민백상이 곧바로 어물 값의 7되 쌀을 항식(恒式)대로 들여 주는 것을 정식(定式)으로 하는 일을 보고하여 왔는데, 이 밖의 연향 예물을 분정하는 것도 반드시 모조리 그만둔 다음에야야 바야흐로 영구히 폐단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바야흐로 동래부에 별도의 금고 하나를 설치하여 순영고(巡營庫)라 이름하고, 저치미(儲置米; 비축미)에서 획급(劃給)하는 1년의 항정(恒定) 예물과 연향의 어물값을 태가(駄價; 운송비)와 함께 모두 부창(釜倉)에 구획하여 놓고, 감영에서 감색(監色)을 정하여 보내어, 1년 전에 받아내어 여러 가지 물건들을 생산되는 시기에 미리 준비하였다가, 저쪽의 차왜가 나오면 상선연 하선연의 연향 비용과 예물을 한결같이 등록에 따라 계산하여 동래부에 지급하고, 별차왜와 표차왜는 그들이 나올 때마다 미리 비축된 물건을 추이(推移)하여 사용하되, 그 값에 해당하는 쌀을 잘라주어서 먼저 사용한 대금에 충당하면, 분정하는 폐단은 절로 영구히 혁파될 것인데, 다만 조정에서 구획한 쌀의 태반이 예비하는 비용보다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여러 방법으로 돈과 재물을 긁어모아서 해당 금고에 내어 주고, 거기에서 편의대로 이식을 취하여 비용을 보충하게 하되, 저치미(儲置米)의 출입은 신의 감영에서 함부로 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무진년 분의 단오(端午)와 백종(百種; 백종) 중의 예물 값과 기사년(1749) 분의 세 명절 예물 값, 기사년 분의 연향 등의 비용에 들어갈 쌀 등 도합 430여 섬과 태가 31섬을, 올해부터 시작하

22) 원본의 ‘夫遠人接待之禮’의 ‘夫’를 ‘失’의 오자로 보고, 고쳐 번역하였다.

여 미리 먼저 구획하여 보내고, 이것으로 영구히 정식을 삼는 일을 묘당에 명하여 품의 조처하기를 청합니다. 바닷가 주민의 이 폐단은 참으로 혹독하여 한번 바로잡지 않아서는 안되는데, 이제 이 계획은 참으로 적절하여 만약 영구히 준수하여 잘 시행할 수 있다면 어찌 다행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여 장계로 청하였으니 시행을 윤택함이 어떠할지?” 하였더니, 상감께서 “그대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좌의정 조현명(趙顯命)²³⁾이 말하기를 “이 일은 매우 편리하니 시행을 윤택함이 마땅하나, 앞으로 만약 매년 지출을 추가하는 폐단이 있으면 엄하게 방지하지 않아서는 불가합니다”라고 하였고, 영상은 “이 뒤로 만약 매년 지출을 추가하는 폐단이 있으면 도신과 부사를 무거운 죄로 다스리는 일로 또한 정식을 함이 어떠할지?” 라고 하니, 상감께서 “그대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무진(1748) 6월 초2일

예조에서 상고할 일. 이웃 나라에 보내는 서계(書契;외교문서)는 본디 중대한데, 정서할 적에 정교하지 않음이 너무 심한 것은 일이 극히 놀라우니, 해당 사자관(寫字官) 담당자의 이름을 물어 잡아 가둔 뒤에, 죄수를 예조로 올려 보내는 일로 해당 관청에 분부하여 시행할 일.

무진(1748) 6월 초10일

동래부사 민백상이 6월 초2일에 성첩한 장계 내용. 방금 바친 훈도 별차 등의 수본에, “지난 초하루 동서 왜관 건물 여러 곳의 손상된 곳을 부산진 감색과 함께 적간하였는데, 비가 새는 곳은 각 진포로 하여금 지붕을 덮게 하였고, 그 밖의 파손된 곳은 전과 다름이 없다”는 수본에 의거하여, 속히 보수하라는 뜻으로 다시 더 신칙한 일.

무진(1748) 6월 14일

23) 조현명(趙顯命, 1690-1752) : 숙종 때 문과(文科)에 급제하여, 영조 6년(1730)에 경상도관찰사가 되고 여러 관직을 거쳐 영의정에 이르렀다.

동래부사 민백상이 6월 초6일에 성첩한 장계 내용. 이달 초2일 미시 뜰에 황령산봉군의 진고 내용에 “조선 배인지 왜선인지 분간되지 않는 배 2척이 물마루에서 나온다”고 하였으며, 추후에 도부한 부산진 가장(假將) 이송로(李松老)의 치보 내용에, “분간되지 않는 배 2척이 나오다가 1척은 관소로 향하고 1척은 표류하여 다대포로 향하기에, 배에 문정하기 위하여 별차 김태현을 정하여 보낸다”고 하였음. 초3일에 도부한 동 가장의 치보 내용에, “왜선 1척이 관소에 도착 정박하였으나 수문이 이미 닫혀 문정하지 못하고 내일을 기다려 문정할 계획이라고 훈도 이명윤(李命允)이 수본하였다”고 하였음. 같은 날 도부한 동 가장의 치보 내용에, “올해 4월 17일 나왔던 갑자조 제6선이 재차 건너온 배에 격왜 30명, 정묘년(1747) 6월 17일 나왔던 정묘조 1특송사 사복압물왜 1인, 정묘년(1747) 9월 12일 나왔던 정묘조 만쇼잉 송사의 봉진압물왜 1인, 올해 정월 초2일 나왔던 소금도왜 1명, 올해 정월 22일에 나왔던 중금도왜 1인과, 올해 4월 17일에 나왔던 갑자조 제7선이 재차 건너온 배에 격왜 30명, 올해 정월 22일에 나왔던 중금도왜 1인, 소금도왜 1명, 올해 2월 초6일에 나왔던 중금도왜 2인, 소금도왜 1명 등이 나누어 타고, 각기 공작미를 싣고서 수문 밖에서 바람을 기다리다가, 오늘 진시에 발선하여 돌아 들어갔다고 치보하였으며, 추가로 도부한 별차의 수본 내용에, ‘전령에 의거하여 초2일 해시에 다대포에 달려갔더니, 왜인의 큰 배 1척이 과연 정박하였거늘 문정하였더니, 도중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고, 당년조 1특송사 수목선에 격왜 20명, 교대차 나온 도두금도왜(都頭禁徒倭) 1인, 소금도왜 1명이 함께 타고, 노인을 가지고 공작미를 실어가기 위하여 이달 초2일 이른 아침에 대마도에서 함께 발선하여, 물마루에 이르러 바람 형세가 불순하여 큰 배 1척은 관소로 향하고, 저희들의 배 1척은 근근히 노를 저어 초2일에 표류하여 이곳에 도착하였는데, 관소로 돌아와 정박한 뒤에 다시 문정할 계획’이라 하였으며, 일시에 도부한 훈도(訓導)의 수본 내용에, ‘어제 도착하여 정박한 왜선 1척에 대하여 오늘 아침에 관소에 가서 문정하였더니, 도중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고, 계해조 1특송사 2호선이 재차 건너왔는데, 격왜 30명, 교대차 나온 중금도왜 2인, 소금도왜 2명, 두왜 1인 등이 함께 타고, 노인 및 대마도의 봉행(奉行) 등이 동래부사에게 바치는 서찰 1통을 가졌는데, 어유(魚油) 3통과 남초(南草; 담배) 1칭(稱)을 싣고 공작미를 실어가기 위하여 어제 이른 아침에 큰 배 2척이 대마도에서 함께 발선하여, 물마루에 이르러 바람 형세가 불순하여 1척은 표류하여 다대포로 향하고, 저희들의 배는 곧바로 관소로 향하였다 하였으며, 사행(使行)의 소식을 탐문하였더니, 잇달아 선편(船便)이 없어서 아직 들은 바가 없다고 하였는바, 대마도 봉행 등이

바친 서찰은 물리쳐서 받지 아니하고, 노인은 그것이 재차 건너온 것이 규정 외에 속하므로 물리쳐 받지 아니하고, 속히 들여보내라는 뜻으로 관수왜에게 책망하여 타일렀다'는 수본에 의거하여 치보한다" 하였음.

초5일 신시에 도부한 동 가장의 치보 내용에, "다대포에 정박한 왜선 1척을 영솔하여 관소에 부쳤다는 호송장의 치보에 의거하여, 즉시 혼도 별차 등에게 명하여 문정하게 한 수본 내용의 사연은, 당초 다대포로 표류하여 정박하였을 때 별차가 문정한 것과 다름이 없고, '어유 3통을 싣고 있었는데, 소지한 노인은 전면에 「각도(各道) 각관(各官) 방어소(防禦所)」라 써 넣은 것이 격식에 어긋나기에 물리쳐 받지 아니하고, 고쳐 바치라는 뜻으로 관수왜에게 책망하여 타일렀다'고 치보한다 하였는데. 위의 규정 밖에 나온 왜선은 속히 되돌려보내고, 격식에 어긋난 노인 또한 즉시 고쳐 바치라는 뜻으로 아울러 임역들에게 명하여 관수왜에게 책망하여 타이르게 하였거니와, 이른바 봉행이 본부에 바치는 서찰 한 통은, 임역의 문정 가운데 단지 물리쳤다고만 칭하고 곡절을 언급하지 않는 것은 일이 매우 몽롱하여, 전령을 내려 물어 조사하게 하였더니, 수본 내용에 '피집한 인삼이 이전에는 천여 근이나 많았는데, 해마다 감축되어 작년과 올해에 와서는 수십 근에 지나지 않으므로, 에도[江戸]에서 66주에 하사하지 못하니, 도주가 장차 대단한 죄책을 면치 못하겠기에, 상역 등에게 엄하게 신칙하라는 뜻으로 바친 바의 서찰이 있었는데, 상역(商譯)들이 물리쳐서 받지 아니하였는바, 피집한 인삼은 상역들이 사사로이 매매하는 일이거늘, 지난 겨울 이래로 관수왜 등이 서계를 바치고 싶다고 말을 놀리며 온갖 방법으로 간절히 구걸하였지만, 엄하게 책망하여 물리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으나, 이제 계교가 궁하여 또 서찰을 내보낸 것은 정상이 참으로 매우 교묘하고 미운데다, 더구나 그 사연 가운데 또한 공갈하는 말로 운운한 것이 있어서 더욱 극히 통탄스럽고, 이는 조정에 번거로이 알릴 것이 아닌지라 단지 임역에게 엄하게 신칙하여 통렬하게 더 책망하고 타일러 즉시 되돌려 들여보내게 하였다'고 한다" 하였음. 방금 도부한 접위관 양산군수 권만(權萬)²⁴⁾의 이첩(移牒) 내용에, "울산의 표류민을 영솔하여 온 차왜 평정신(平正信)의 원역 등의 하선연을 이달 초4일에 전례대로 설행하였다"는 일임.

무진 7월 초10일

24) 권만(權萬; 1688-1749) : 자는 일보(一輔), 호는 강좌(江左), 안동인이다. 영조 1년(1725) 증광문과에 급제하고 병조정랑을 역임하였다.

동래부사 민백상이 7월 초1일에 성첩한 장계 내용. 방금 바친 훈도 별차 등의 수본 내용에, “지난 초하루 동서 왜관 건물 여러 곳을 부산진 감색과 함께 적간하였는데, 비가 새는 곳은 각 진포로 하여금 비록 이미 지붕을 덮게 하였으나, 그 밖의 파손된 곳은 전과 다름이 없다”는 수본에 의거하여, 속히 보수 하라는 일로 다시 더 신칙한 일임.

예조에서 계품하기를, “본조에 내려온, 동래부사가 올려 보낸 당년조의 순서대로 부쳐 나온 1, 2, 3특송(特送)과 부특송(副特送), 만소잉 송사왜의 서계(書契) 별폭(別幅)과 회례(回禮) 예단(禮單)을 전례대로 마련하여 복계(覆啓)하여 들였는데, 각 항목의 서계 별폭의 연월을, 혹은 ‘연향(延享) 5년(1748) 무진(戊辰) 3월 일’이라 하기도 하고, 혹은 ‘6월’이라 써 넣었으며, 그 중에 부특송사의 서계 별폭에 무진 아래에 8월이라 써 넣었으니, 이는 필시 잘못 적은 소치라, 변방 정세를 중시하는 도리에 있어서, 상감께 올리는 문서에 이렇게 글자가 틀리다니, 임역(任譯)들이 상세히 살피지 아니하고 경솔하게 받아 올린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니, 해당 임역 이명윤과 김태현에게, 본도에 명하여 엄중하게 곤장을 치게 하고, 동래부사가 전례에 따라 봉하여 장계한 것 또한 살피지 못한 실책을 면하기 어려우니, 부사 민백상을 추고하여 경책함이 어떠할지?” 하였는데, 전교(傳敎)에 “윤희한다” 하셨음.

무진(1748) 7월 20일

동래부사 민백상이 7월 11일에 성첩한 장계 내용. ‘수문 밖에서 바람을 기다리던 왜선이 이달 초9일에 돌아 들어갔으며, 올해 2월 초6일에 나왔던 3대관의 종왜 1명이 어제 병으로 죽어서, 그대로 왜관 뒷산에 매장하여 두었다’고 훈도 이명윤과 별차 김태현이 수본하였음. 올해 5월 초6일에 나왔던 비선에 두왜 1인, 격왜 5명과 올해 정월 26일에 나왔던 중금도왜 1인 등이 함께 타고, 관수왜의 사서를 가지고 당일 진시에 관소에서 발선하여 돌아 들어간 일임.

무진(1748) 7월 22일

경상우수사 장태소가 7월 11일에 성첩한 장계 내용. 당일 도부한 옥포만호

김경석(金景奭)과 조라포만호 조만옥(趙萬郁) 등의 한결같은 치보 내용에, “이달 초10일에 조선 배인지 왜선인지 분간되지 않는 배 2척이 호운도(呼雲島) 앞 바다에서 나와 표류하여 옥포 강 입구에 정박하여 수호한다”고 치보하였음. 추가로 도부한 옥포왜학 이창석의 수본 내용에, “이달 초10일에 왜인의 비선 2척이 본진의 강 입구에 정박하였거늘, 즉시 달려가 문정하였더니, 제1척에는 두 왜²⁵⁾ 6명 및 교대차 나온 중금도왜 1인, 소금도왜 1명 등이 통신사(通信使)의 장계(狀啓) 서간 및 노인을 가지고 함께 타고 나왔으며, 제2척은 두왜 1인, 격왜 5명 및 교대차 나온 중금도왜 1인, 소금도왜 1명 등이 통신사의 장계 서간 및 노인을 가지고 함께 타고 나왔기로, 그 도중의 사정과 바람에 표류한 연유를 탐문하였더니, 동 왜인들의 말이 ‘도중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고, 저희들 2척의 배는 오늘 이른 아침에 대마도에서 일시에 발선하여 곧바로 관소로 향하다가, 물마루에 이르러 바람 형세가 불순하여 표류하여 이곳에 도착하였다’ 하였으며, 막중한 통신사 사행의 장계의 봉함을, 한갓 교활한 왜인의 말을 취하여 수본에 거론하기가 중대하고 어렵기로, 피봉을 내어보이라는 뜻으로 여러가지로 다투어 따졌더니, 여러 왜인들이 일시에 성을 내어 끝내 내어보지 않아서, 한결같이 그들의 말에 따라 수본하며, 통신사 사행의 소식을 상세히 물었더니, 왜인들의 말이 ‘거의 길의 중간 쯤에 이르렀을 것이나, 지명은 과히 또렷이 모른다’고 하였다”는 일로 치보하였는데, 동 왜인의 비선 2척에는 땔감과 물과 양식과 반찬을 전례대로 지급하라는 뜻으로 지방관인 거제부사 이중택(李重澤)에게 관문을 발송하여 분부하였고, 이제 이번 왜인의 비선 2척은 이미 통산시의 장계를 진봉하여 가져온다고 칭하였으니, 지체하여 머물지 말고 속히 차례차례 영솔하여 보내라고 연로(沿路)에 엄하게 신칙하였고, 다대포로 건너 보내는 사정은 추가로 치계할 일임.

경상우수사 장태소가 7월 12일에 성첩한 장계 내용. 이달 초1일에 왜인의 큰 배 1척이 천성 경내의 마거리(磨巨里) 앞바다로 표류하여 정박한 사정 및 동배에 달려가서 문정하여 수본하라는 뜻으로 옥포왜학 이창석에게 전령을 발송하여 분부한 연유는 이미 치계하였거니와, 추가로 도부한 초3일 옥포왜학 이창석의 수본 내용에, “왜인의 큰 배 1척이 본 보(堡) 경내의 마거리 앞바다에 정박하였다는 치통이 있거늘 즉시 문정하였더니, 재판(裁判) 원여장(源如長)이 탄배가 재차 건너왔는데, 격왜 40명과 교대차 나온 중금도왜 3인, 소금도왜 2명,

25) 원본에 ‘頭倭六名’이라 하였으나, 아마도 ‘頭倭一人格倭六名’을 옮겨 적으면서 중간 4자를 누락한 듯하다.

하대왜 2명 등이 노인을 가지고 함께 타고 나왔거늘, 그 도중의 사정과 바람이 표류한 연유를 탐문하였더니, 동 왜인들의 말이, ‘도중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고, 저희들의 배 1척은 공작미를 실어가기 위하여 지난 달 그믐날 이른 아침에 발선하여 곧바로 관소로 향하다가, 물마루에 이르지 못하여 바람이 시들하고 물살이 거세어 바다 가운데 떠서 머물면서 밤을 지낸 뒤에, 이달 초1일에 근근이 이곳에 도착하였다’고 하기로 문정한 뒤에 정해진 곳으로 돌아가서 수본한다” 하였음. 초4일 왜학이 다시 수본한 내용에, “어제 천성에서 문정하고 수본을 성화같이 다듬어서 사또께 올리고 즉시 정해진 곳으로 되돌아 온 뒤에, 다시 수본 초고를 상세히 살펴보니, 지난 달 그믐날 이른 아침 아래에 ‘대마도에서[自馬島]’ 석 자를 누락하였는데, 대개 천성 가덕에서 문정할 때면 매양 파도가 험난한 곳을 밤새워 출몰하느라, 정신이 모두 손상된 소치로 이렇게 누락하는 실수가 있게 되었으니, 황공하여 죄를 기다리며 연유를 수본한다” 하였음. 추가로 도부한 호송장 청천별장(晴川別將) 이우성(李佑聖)의 치보 내용에, “가덕 경내의 정거리(碇巨里) 앞바다로 돌아와 정박한 왜인의 큰 배 1척은 당일 출발하여 초7일 다대포에 교부한 뒤에 진으로 돌아와서 치보한다” 하였음. 동 왜인의 큰 배 1척은 폐단없이 다대포로 건너 보냈거니와, 이제 이번 옥포왜학 이창석이 수본 가운데, 동 왜선이 지난달 그믐날 이른 아침 발선하였다고 하면서, ‘대마도에서[自馬島]’라는 석자를 거론하지 않았다가 추가로 수본하면서 비로소 누락되었다고 칭한 것은 극히 소홀할 뿐 아니라, 문정하는 일이 중대하여 마땅히 29일에 발선하였다고 적어 넣어야 하거늘, 범범하게 그믐날 발선하였다고 칭한 것 역시 몽롱한 일이기로, 신의 수영에 잡아다가 엄중하게 곤장을 쳐서 경책하였으며, 지난번 동래부사 민백상의 장계로 말미암아 형조(刑曹)에서 복계(覆啓)한 관문 내용에, 옥포 역학 이창석은 그가 올라오기를 기다려 해당 형조(刑曹)에서 추문한 뒤에 법률을 상고하여 죄를 정하겠다고 하였는데, 전에 옥포왜학으로서 죄가 있는 자가 혹 잡혀갈 때는 반드시 교대한 뒤에 올라가는 것이, 변고를 대비하는 엄중한 곳에는 일시라도 비워두어서는 안된다는 뜻이거늘, 동 왜학 이창석을 이미 형조에서 잡아 추문한다면, 그 교대할 사람을 이미 차출했으리라 생각되는데, 아직도 내려온 일이 없으므로, 계하한 분부를 즉시 받들어 시행하지 않고 아직까지 이렇게 지체하는 것은 일의 체면에 있어서 극히 미안하고, 그런데다 엮드려 생각하면 옥포왜학이 문정한 책임은 굳이 부산의 훈도 별차와 피차간에 구별이 없으니, 사람을 가려 보내는 것도 다름이 없어야 마땅함에도, 왜학은 매양 나약하여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는 부류로 구차하게 차출하여 충당하여 보내기 때문에, 표류한 왜인에게 문정할 적에 대개 착

오가 많은지라, 변방의 실정으로 헤아리건데 극히 우려되니, 감히 이렇게 덧붙여 진술하오니, 앞의 왜학 이창석의 대신을 해당 사역원에 명하여 각별히 선발 차출하여 재촉하여 내려 보내라는 일임.

이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계목을 첨부하였으니 계하하시기를. 이 경상우수사 장태소의 장계를 보면, ‘저번에 동래부사 민백상의 장계로 말미암은 형조의 복계 내용에, 옥포왜학 이창석은 그가 올라오기를 기다려 추문한 뒤에 법률을 상고하여 죄를 정한다고 하였는데, 동 왜학 이창석을 이미 형조에서 잡아다 추문한다면, 그 교대할 사람을 이미 차출하였을 것으로 생각되나 아직도 내려오지 않았고, 옥포왜학이 문정하는 책임은 훈도 별차와 군이 다름이 없는데, 매양 연약하여 책임을 감당치 못하는 부류를 구차하게 충당하여 차출하여 보내기 때문에, 문정할 적에 늘 착오가 많으니 각별히 선발 차출하여 재촉하여 내려 보내라’고 하였는바, 옥포왜학 이창석을 이미 해당 형조에서 잡아다 추문한다면, 그 교대할 사람을 즉시 차출하여 보내되, 이렇게 통신사 사행으로 왜선이 이어지는 때를 당하여, 전례대로 구차하게 충당 차출하여 보내서는 안되고, 각별히 선발 차출하여 급속히 내려 보내는 일로 해당 사역원에 명함이 어떠할지? 건륭 13년(1748) 7월 23일 우부승지 신 송창명(宋昌明)²⁶⁾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무진(1748) 8월 12일

동래부사 민백상이 8월 초3일에 성첩한 장계 내용. 지난달 26일에 도부한 부산첨사 이사선(李思先)의 치통 내용에, “올해 7월 초10일에 나왔던 비선에 격왜 6명과 올해 5월 26일에 나왔던 중금도왜 1인 등이 함께 타고, 관수재판대차왜 등의 사서를 가지고 당일 사시에 발선하여 돌아 들어갔다”고 치통하였음. 30일 오시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운운. 올해 윤7월 12일에 나왔던 당년조 2특송사 1호선에 격왜 40명, 정묘년(1747) 8월 초9일에 나왔던 도금도왜 1인, 올해 4월 17일에 나왔던 통사왜 1인, 올해 5월 16일에 나왔던 소금도왜 3명과, 올해 윤7월 17일에 나왔던 대차왜 수목선에 격왜 20명, 올해 4월 18일에 나왔던 통사왜 1인, 올해 5월 초7일에 나왔던 통사왜 1인, 소금도왜 1명

26) 송창명(宋昌明, 1689-?) : 여산송씨로 자는 성숙(盛叔)이다. 영조 12년(1736) 문과에 급제하여 예조판서를 역임하였다.

등이 나누어 타고, 각기 공작미를 신고 돌아 들어가기 위하여 수문 밖에서 바람을 기다리다가, 당일 사시에 발선하여 돌아 들어갔다고 훈도 별차 등이 수복 및 치보하였다. 운운” 하였음. 이달 초1일 유시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방금 바친 훈도 별차 등의 수본 내용에, ‘관왜 등의 조상 분묘가 왜관 뒷산에 있는데, 이제 추사일(秋社日)을 당하여 예전 사례대로 성묘하러 간다’는 수본에 의거하여, 별차와 소통사 등이 데리고 영솔하여 왕래하여 횡행하지 못하게 하라는 뜻으로 각별히 신칙하였음. 추가로 접한 다대포첨사의 치통 내용에, ‘분간되지 않는 배 1척이 표류하여 옥포 강 입구에 정박한 뒤에, 왜학 김대창(金大昌)²⁷⁾과 소통사 김준세(金俊世) 등이 가서 문정하였더니, 도중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고, 비선에는 두왜 1인, 격왜 5명 및 우리나라 사람의 시체를 영솔하여 오는 중금도왜 2인과 소금도왜 1명 등이 함께 타고, 노인 및 관수왜의 사서를 가지고 나왔거늘, 그것이 어떤 사람의 사체인가 물었더니, 왜인들의 말이, 통신사 사행의 노자(奴子) 시체를 실어가지고, 지난달 29일 이른 아침에 대마도에서 발선하여 곧바로 관소로 향하다가 표류하여 이곳에 도착하였다’고 문정한 일 운운 하였음. 방금 바친 훈도 별차 등의 수본 내용에, ‘지난 초하루 동서 왜관 건물 여러 곳을 부산진 감색과 함께 적간하였는데, 비가 새는 곳은 각 진포로 하여금 비록 이미 지붕을 덮게 하였으나, 그 밖의 손상된 곳은 전과 다름이 없다’는 수본에 의거하여, 속히 보수하라는 뜻으로 다시 더 신칙하였으며, 운운한 일로 치통한다” 하였음. 옥포로 표류한 왜인의 작은 배 1척은 그 배가 관소로 돌아와 정박한 뒤에 다시 문정하여 장계로 알릴 계획임.

무진(1748) 9월 16일

동래부사 민백상이 9월 초5일에 성첩한 장계 내용. 이달 초1일에 도부한 훈도 이명윤과 별차 김원현의 수본 내용에, “지난 달 동서 왜관 건물 여러 곳을 부산 감색과 같이 적간하였는데, 비가 새는 곳은 각 진포로 하여금 비록 덮게 하였으나, 그 밖의 손상된 곳은 전과 다름이 없다”는 수본에 의거하여, 속히 보수하라는 뜻으로 다시 더 신칙하였음. 초3일 오시에 도부한 부산첨사 이사선의 치통 내용에, “올해 8월 초8일에 나왔던 당년조 3특송사 1호선에 격왜 40명, 올해 5월 초7일에 나왔던 울산 표류민을 영솔하여 온 차왜 정관 평정신(平

27) 김대창(金大昌, 1721-?) : 영천김씨로 자는 치휘(致輝)이다. 영조 16년(1740) 증광 역과에 왜학으로 합격하여 훈도를 역임하였다.

正信)과 봉진압물 1인, 반중 3명, 올해 윤7월 12일에 나왔던 지로사공왜(指路沙工倭) 3명, 올해 5월 29일에 나왔던 소금도왜 1명, 올해 6월 초2일에 나왔던 소금도왜 2명, 올해 6월 초5일에 나왔던 중금도왜 2인, 소금도왜 4명, 정묘년(1747) 5월 12일에 나왔던 별대관왜 1인 등이 함께 타고, 공작미를 실어가지고 돌아 들어갔다는 일로 수호장이 치보하였으며, 올해 윤7월 12일에 나왔던 비선에 두왜 1인, 격왜 7명, 병인년(1746) 10월 11일에 나왔던 별대관왜 1인, 올해 6월 초2일에 나왔던 소금도왜 1인, 올해 6월 28일에 나왔던 중금도왜 1인 등이 함께 타고, 관수재판대차왜 등의 사서를 가지고 오늘 진시에 곧바로 관소에서 발선하여 돌아 들어갔다는 가훈도와 별차 등의 수본 및 봉군의 진고에 의거하여 치통한다” 하였음. 당년조 공작미 16,000 섬을 대관왜에게 모두 들여준 연유를 치계하는 일임.

무진(1748) 9월 18일

이번 9월 18일에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여 입시하였을 때, **영의정 김재로(金在魯)가 계품한 바**, “이것은 동래부사 민백상의 장계입니다. 이제 이번 통신사 사행이 돌아오는 것을 호위하는 재판차왜가, 왜관 건물을 보수하는 일이 조정에서 특별히 허락하여 이미 4년이나 되었음에도, 공사를 시작하지 않아서 장차 무너질 우려를 면치 못하게 되었으니, 감동관(監董官)을 올해 내로 내려 보내어 속히 공사를 시작하는 일과, 피집한 인삼이 전에는 작아도 6-700 근을 내려가지 않았기에, 에도[江戸]에서 이것으로 66 고을에 나누어 주었는데, 근년의 피집은 수십 근에 불과하여 도주가 죄책을 면하기 어렵기에, 봉행 등이 부득이하여 서계를 바쳤으나 아직도 물리치는 중에 들어있어서, 애타는 고민을 견디지 못한다고 말하는데, 누차 책망하여 타일렸으나 한결같이 고집하며 다투고, 또 말하기를 ‘귀국의 인삼을 구할 길이 과연 이렇다면, 동래부에서 이 서계를 받아서, 상역들이 매매하되, 조정에서 결코 간섭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고, 게다가 근래에 인삼 종자가 극도로 귀하여, 비록 상역들에게 신칙하더라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말하면, 오히려 이것을 가지고 돌아가서 도주에게 보이고, 도주도 또한 장차 에도에 할 말이 있을 것이다’라고 합니다. 왜관 건물을 보수하는 일은 이미 허락한 조정의 명령과 묘당에서 품신하여 분부한 것이 있고, 피집 인삼의 일로 봉행 등이 서찰을 바치는 것은 전례가 없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이 원하는 바는 단지 방색하는 회답 서찰을 받아서 돌아가려고 구걸

하는 가없는 뜻이 있는 듯하며, 오래도록 서로 버티면서 부질없이 접대하는 폐단만 끼치면서 국가의 체면을 손상하기 보다는 차라리 바치는 서찰을 받는 것을 허락하고, 도주에서 회서하여 봉행이 서찰을 바치는 외람됨을 책망하고 뒤에는 이렇게 하지 말라고 신칙하면서, 우리나라 인삼을 조달할 길이 끊어져서 모자라는 사정을 언급하면 적절할 듯하니, 묘당에 명하여 품의하여 분부하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위의 일은 이미 허락한 일이니, 진작 즉시 감동관(監董官)을 차출하여 보내는 것이 적절하고, 아래 조목의 일은 이미 봉행이 서찰을 바쳐 회답한 사례가 있고, 회답하는 말도 또한 이런 내용에 불과하여 별로 방해될 것이 없으니 그대로 시행함이 어떠할지?” 하였더니, 상감께서 “동래부사가 청한 것이 옳으니, 그대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무진(1748) 10월 12일

일본국 대마주 봉행(奉行) 평성일(平誠一)이 올리는 서찰. 조선국 부사공(府使公) 대인(大人) 합하께.

이제 얼어붙는 추위에 멀리 생각건대 동작하시는 일이 단단하고 편안하신지 간절하게 기울이는 정성 쉴 때가 없습니다. 이제 급한 사정이 있어서 감히 이렇게 올리오니, 잠깐만 살펴보고 보살피 주십시오. 인삼 한 건은 관청의 수요 중에 간장 절실하여 병들어 일찍 죽는 자를 구한 것이 그 유래가 오래되었습니다. 어찌된 탓인지 근년에 귀국의 상인들이 가져오는 것이 점차 감축되어 올해에 와서는 극도로 영성해서 못 사람들의 의론이 비등하여 우리에게 허물을 돌리니, 이것보다 한심함이 막심한 게 없습니다. 단지 원하옵건데 이런 실정과 사유를 살피시어 역관 상인에게 신칙하여 넉넉한 수량을 들여 주시어, 국가에서 사용하는 데 결핍되지 않도록 하시어, 교제의 우의를 온전하게 하여 주시면, 천만 다행이겠습니다. 서찰로 말을 다하지 못하고, 우러러 높은 곳에서 밝게 살피시기를 앙망하나이다. 삼가 이만 갖추지 못합니다. 연향(延享) 4년(1747) 정묘 12월 일. 대마주 봉행 평성일(平誠一) 등성구(藤誠久) 평방태(平方泰) 각기 도장을 찍음.

이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계목을 첨부하였으니 계하하시기를. 전에 인삼을 피집하는 일로 봉행이 서찰을 바친 데는 전례가 없지 아니하여, 차라리 바친 서찰을 받도록 허락하여 도주에게 회답하면서 봉행이 서찰을 바친 외람됨을 책

망하고, 이 뒤로는 이렇게 하지 말라고 신칙하고, 인하여 우리 나라에서 인삼을 조달하는 길이 끊겨 모자라는 사정을 언급하는 일로 묘당(廟堂)에서 이미 결정하였는데, 봉행들에게 줄 동래부사의 회답 초고를 승문원(承文院)에 명하여 말을 만들어 지어내어 별도로 금군(禁軍)을 정하여 가지고 내려 보내는 일로 분부함이 어떠할지? 건륭 13년(1748) 10월 14일에 우승지 신 오수채(吳遂采) 28)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동래부사 민백상이 10월 초2일에 성첩한 장계 내용. 방금 바친 훈도 별차 등의 수본 내용에, “지난 달 동서 왜관 건물 여러 곳을 부산진 감색과 함께 적간하였는데, 비가 새는 곳은 각 진포로 하여금 이미 지붕을 덮었고, 그 밖의 파손된 곳은 전과 다름이 없다”는 수본에 의거하여, 속히 보수하라는 뜻으로 다시 더 신칙하였으며, 방금 도부한 본부의 장계로 인한 비변사의 복계 회관(回關) 내용에, 해당 피집 인삼의 일로 대마도 봉행이 바친 서찰을 받도록 허락하는 일로 관문을 보내왔기에, 동 봉행이 바친 서찰 한 통을 받아서 감봉하여 해조로 올려 보내오며, 연유를 치계하는 일임.

무진(1748) 10월 17일

사역원의 첩보 내용. 동관(東館)을 수정(修正)할 때의 감동관(監董官)의 당상(堂上)으로는 가선(嘉善) 박상순(朴尙淳)²⁹⁾, 당하(堂下)로는 전함(前銜)의 최학령(崔鶴齡)³⁰⁾을 차출하는 것으로 입계하기 위하여 도부함.

사역원의 첩정 내용. 서관(西館)을 수정할 때 감동관의 당상으로는 절충(折衝) 현덕연(玄德淵)³¹⁾과 신영래(愼榮來)³²⁾, 당하로는 전함(前銜:전직)의 황하성(黃夏成)³³⁾과 현상로(玄尙老)³⁴⁾를 차출하는 일로 입계하기 위하여 도부함.

28) 오수채(吳遂采, 1692-1759) : 해주오씨로 자는 사수(士受), 호는 체천(楸泉)이다. 영조 11년(1736) 문과에 급제하여 대사간, 대사성, 대사헌 등을 역임하였다.

29) 박상순(朴尙淳, 1700-?) : 밀양박씨로 자는 자순(子淳)이다. 경종 1년(1721) 증광 역과에 왜학으로 합격하여 교회를 역임하고 자품이 승록대부에 이르렀다.

30) 최학령(崔鶴齡, 1710-) : 무주최씨로 자는 군성(君聲)이다. 영조 8년(1732) 식년 역과에 왜학으로 합격하여 교회를 역임하고 자품이 승록대부에 이르렀다.

31) 현덕연(玄德淵, 1694-?) : 천령현씨로 자는 계심(季深)이다. 숙종 40년(1714) 식년 역과에 왜학으로 합격하여 교회를 역임하고 자품이 승록대부에 이르렀다.

32) 신영래(愼榮來, 1694-?) : 거창신씨로 자는 달부(達夫)이다. 숙종 43년(1717) 식년시 역과에 왜학으로 합격하여, 품계가 가의대부에 이르렀다.

예조단자(單子). 방금 바친 사역원의 첩정 내용에, 이제 이번 왜관 수리 때의 동관 감동관의 당상으로 역관 가선 박상순, 당하로는 전 주부(主簿) 최학령, 서관 감동관의 당상으로 역관 절충 현덕연과 절충 신영래, 당하로는 전 주부 황하성과 전 주부 현상로를 아울러 차출하여 정하였는데, 이대로 차출하여 보내는 일로 분부함이 어떠할지? 입계하여 입계한 대로 시행함.

무진(1748) 10월 18일 호조에서 경상감영으로

예조에서 상고할 일. 계하하신 내용에, ‘이제 이번 왜관을 수리할 때 동관의 감동관은 역관 당상 박상순을 차출하여 보내는 일’로 계하였는데, 이전부터 감동 당상 역관이 왜인이 서로 접촉할 때의 전례에 사예단(私禮單)의 규례가 있었는데, 증정할 예단 잡물을 전례를 상고하여 마련하여 지출할 일.

예조에서 상고할 일. 계하하신 내용에, ‘이제 이번 왜관을 수리할 때 서관의 감동관 역관 당상 현덕연과 신영래를 차출하여 보내는 일’로 계하였는데, 이전부터 감동 당상 역관이 왜인과 서로 접촉할 때 전례에 사예단의 규례가 있는데, 두 사람이 증정할 예단 잡물을 전례를 상고하여 마련하여 지출할 일.

예조에서 상고할 일. 계하하신 내용에 ‘이제 이번 왜관을 수리할 때 동관의 감동 당상 역관 박상순에게 타고 갈 말과 짐을 싣는 말 각 한 필 및 당하 역관 최학령에게 타고 갈 말과 짐을 싣는 말을 아울러 한 필을 전례대로 지급할 일.

예조에서 상고할 일. 계하하신 내용에 ‘이제 이번 왜관을 수리할 때 서관의 감동 당상 역관 현덕연과 신영래에게 각각 타고 갈 말과 짐을 싣는 말 각 한 필 및 당하 역관 황하성과 현상로와 최학령에게 각각 타고 갈 말과 짐을 싣는 말을 아울러 한 필을 전례대로 지급할 일.

무진(1748) 11월 초9일

33) 황하성(黃夏成, 1695-?) : 창원황씨로 자는 대이이다. 숙종 46년(1720) 식년 역과에 왜학으로 합격하여 교회를 역임하였다.

34) 현상로(玄尙老, 1694-?) : 천령현씨로 자는 이양(而陽)이다. 숙종 46년(1720) 식년 역과에 왜학으로 합격하여 교회를 역임하였다.

동래부사 민백상이 10월 29일에 성첩한 장계 내용. 이달 26일 유시 쯤에 황령상 봉군 정재환(鄭在還)이 진고한 내용에 “조선 배인지 왜선인지 분간되지 않는 배 2척이 물마루에서 앞뒤로 나뉘어 나온다”고 하였음. 27일에 도부한 부산첨사 이사선의 치통 내용에, “위의 분간되지 않는 배 2척 중 1척은 향하여 간 곳을 모르고, 1척은 등불을 올리고 관소로 전진한다는 구봉봉군의 진고에 의거하여, 초탐하기 위하여 본진의 이선장(二船將) 김윤흥(金潤興)을 정하여 보냈는데, ‘과연 왜인의 작은 배라, 당일 영솔하여 관소에 부쳤다’고 치보하였으며, 동 왜인의 작은 배 1척은 밤이 깊은 뒤에 관소에 도착 정박하였으므로 날이 밝기를 기다려 문정할 계획이라는 훈도 이명윤(李命尹)과 가별차(假別差) 현상로(玄尙老) 등의 수본에 의거하여 치통한다” 하였음. 같은 날 도부한 동첨사의 치통 내용에, “어제 나오다 향하여 간 곳을 모르는 분간되지 않는 배 1척은, 날이 밝기를 기다려 관측하니 과연 왜선으로, 오륙도(五六島) 바깥의 먼 바다에 떠서 머물고 있다는 봉군의 진고에 의거하여, 속히 예인하여 들이라는 뜻으로 엄하게 신척하였으며, 일시에 도부한 훈도 별차 등의 수본 내용에, ‘오늘 자시에 관에 도착한 왜인의 작은 배 1척에 오늘 아침 가서 문정하였더니, 도중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고, 비선에 두왜 1인과 격왜 6명, 교대차 나온 별금도왜 1인, 소금도왜 2명 등이 함께 타고 노인 및 관수 재판왜에게 보내는 사서를 가지고, 어제 이른 아침 큰 배 1척과 같이 대마도에서 발선하여 곧바로 관소로 향하다가, 물마루에 이르러 바람이 없고 물이 거슬러 큰 배는 바다 가운데 뒤쳐지고, 저희들의 비선은 근근이 노를 저어 먼저 관소에 도착하였다고 하기로, 소지한 노인 1통을 받아 올려 보낸다’고 수본하였기에 이에 의거하여 치통한다” 하였음. 같은 날 도부한 동첨사의 치통 내용에, “방금 접한 좌수영에서 차출하여 보낸 초탐장 축산만호(丑山萬戶) 성석구(成錫九)의 치보 내용에, ‘해운대 경내로 표류하여 향한 왜선을 초탐하기 위하여 미시에 달려갔더니, 오시 쯤에 바람을 만나 오륙도로 향하기로, 작은 배를 타고 남천진(南川津)으로 달려갔더니, 유시에 과연 정박하였으므로 그대로 수호하였고, 별차가 소통사 2명을 데리고 유시에 와서 도착하여 문정한 뒤에 되돌아 갔으며, 소통사 1명은 왜선을 영솔하여 가기 위하여 뒤쳐졌고, 문정한 사연은 별차의 수본에 있다’고 하였으며, 가별차의 수본 내용에, ‘전령에 의거하여 유시에 남천 앞바다에 달려갔더니, 왜선 1척이 과연 정박하였거늘 문정하였더니, 도중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고, 새 관수왜의 배에 관수왜 1인, 반중왜 3명, 중왜 8명, 서기왜 1인, 의왜(醫倭) 1인 격왜 40명, 교대차 나온 중금도왜 2인, 통사왜 1인 등이 함께 타고, 예조로 보내는 서계와 별폭 각 1통과 동래 부산으로 보내는 서계 1통과 별폭

2통, 진상물건 및 그의 기구와 잡물을 실어가지고, 어제 이른 아침 비선 1척과 대마도에서 함께 발선하여 곧바로 관소로 향하다가, 겨우 물마루를 지나 바람 형세가 불순하고 날이 이미 캄캄하게 어두워서, 비선은 노를 저어 관소로 전진하고, 저희들의 배는 체구가 크고 질이 둔하여 배를 통제하지 못하고, 바다 가운데 떠서 머물다가 밤을 지낸 뒤에, 오늘 또 바람과 물이 모두 거슬러 전진하지 못하다가, 유시 쯤에 이곳에 정박하였다고 하기로, 관소로 돌아와 정박한 뒤에 다시 문정할 계획이라'고 수분하였다" 하였음. 28일에 도부한 동 침사의 치통 내용에, "남천 앞바다에 정박한 왜선 1척은 폐단없이 밤을 지내고 당일 묘시에 발선하여 오시에 영술하여 관소에 부쳤다는 치보에 의거하여 즉시 훈도 별차 등에게 명하여 문정하게 하였더니, '교대차 새 관수왜 굴여동(橋如棟)이 나왔는데, 그 밖의 사연 및 바람에 표류한 연유는 남천 앞바다에서 문정한 것과 조금도 다름이 없고, 동 왜인이 가져온 서계 등본 1통을 받아 올려 보낸다'고 하였기로, 동 서계 등본을 전례대로 보내는 일로 치통한다" 하였음. 위에 나온 새 관수왜가 가져온 서계 별폭 등은 다례(茶禮)를 행하고 받아올릴 계획이고, 등본 1통 및 비선의 노인 1통은 감봉하여 해조로 올려 보내오며, 상역(商譯) 등이 피집한 물화 값으로 은 5,000 냥을 이달 13일 개시에서 받아내었다는 연유의 일임.

새 관수왜 굴여동이 가져온 서계 별폭의 등본.

일본국 대마주 태수 습유(拾遺) 평의여(平義如)가 올리는 서찰[奉書]. 조선국 예조 대인 함하.

초겨울에 동작하시는데 편안하고 적당하신지, 달려가는 마음 정녕 간절합니다. 이에 관(館)을 담당하는 평룡풍(平隆豐)의 임기가 이미 만료되어, 그대로 굴여동(橋如棟)을 보내어 대신 그 직책을 맡게 하오니, 앞서의 규정을 변치 말고 보살펴 주시면 다행이겠습니다. 보잘 것 없는 물품으로 정성을 표하오니, 아무튼 살펴주시기를. 이에 숙배하고 갖추지 못합니다. 관연(寬延) 원년 무진(1748) 10월 일.

별폭 : 수정갓끈[水晶笠緒] 1묶음[結], 채화서가(彩畵書架) 한 틀[脚], 채화육촌렴경(彩畵六寸匳鏡) 1면(面), 흑칠화전갑(黑漆華箋匣) 1개, 혁과수주괘연(革裹垂珠掛硯) 1비(備), 수랍청명(粹鐵淸皿) 10개, 계(計).

일본국 대마주 태수 습유 평의여가 드리는 서찰[啓書]. 조선국 두 영공(令公)

각하. 추위가 닥치는데 생각건대 두 분 모두 편안하신지, 기우는 마음 평소보다 배로 더합니다. 이제 귤여동(橘如棟)을 보내어 관의 일을 이어서 관장하도록 하오니, 앞서의 조약을 준수하여 접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래의 물품은 미미한 예물이오니 오직 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만 줄이고 갖추지 못합니다. 관연 원년 무진(1748) 10월 일.

동래부사공의 별폭 : 채화삼촌렴경(彩畵三寸匱鏡) 2면, 흑칠중연갑(黑漆中硯匣) 1개, 채화지남침(彩畵指南針) 2좌(座), 채화중원분(彩畵中圓盆) 10매, 적동약관(赤銅藥罐) 4개, 계(計).

부산영공의 별폭 : 흑칠문갑(黑漆文匣) 1개, 채화침자괘연(彩畵枕子掛硯) 1개, 채화지남침 2좌, 주간연기(朱竿烟器) 20줌[握], 계.

이 일로 예조에서 계목을 첨부하였으니 계하하시기를. 이전에 새 관수왜 귤여동이 가져온 회답 서계 및 동래 부산에서 답장할 초고를, 승문원에 명하여 말을 만들어 지어내게 하였는데, 별폭의 회례 잡물을 전례대로 마련하도록 계목에 후록하였으니, 급속히 마련하여 내려 보내는 일로 해조 및 본도에 분부함이 어떠할지.

후록. 별폭 회례 : 인삼 2근, 범가죽 1장, 표범가죽 1장, 흰 명주 5필, 흰 모시베 5필, 검은 삼베 3필, 흰 무명 10필, 황모필 30자루. 이상은 해조에서 마련함. 참먹 30자루, 낙장 붙인 유둔(油屯) 2부, 화석(花席) 3장. 이상 본도에서 지급.

동래 부산 두 곳의 회례 : 각기 흰 명주 3필, 흰 모시베 3필, 검은 삼베 2필, 흰 무명 7필, 황모필 20자루. 이상은 해조에서 마련함. 참먹 20자루, 낙장 붙인 유둔 2부, 화석 2장. 이상 본도에서 지급.

건륭 13년 11월 11일에 우부승지 조명채(曹命采)³⁵⁾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함.

무진(1748) 11월 19일

35) 조명채(曹命采, 1700-1764) : 자는 주경(疇卿), 호는 난곡(蘭谷), 또는 난재(蘭齋)이고 본관은 창녕이다. 영조 12년(1736) 정시 문과에 급제하여 옥당을 거쳐 이조참의를 역임하였다. 영조 24년(1748) 사행에 종사관으로 참여하였다.

경상좌수사 이언섭이 11월 초10일에 성첩한 장계 내용. 운운하였는데, 이제 이번 좌우도 연안으로 나뉘어 정박한 왜선 3척을 모두 영솔하여 관소에 부친 뒤에, 규정 밖에 재차 건너온 배는 속히 들여보내라는 뜻으로 부산첨사 이사선에게 관문을 발송하여 분부하였거니와, 옥포에 정박한 왜인의 큰 배 1척은 10월 29일에 물마루에서 우도로 표류하였는데, 다대진의 당번(當番) 봉군 등이 분명하게 진고하지 않다가, 밤을 지낸 뒤에 이달 초1일 진시에 비로소 치보한 것은, 변방의 정세로 해아리건대 극도로 늦추어 지체한 것이며, 기장 두모포에 정박한 왜인의 큰 배 1척은 초1일 인시에 표류하여 울산 경내의 바다 가운데 머물다가, 당일 미시에 되돌아와서 기장 두모포에 정박하였는데, 서생첨사(西生僉使) 심석(沈瀾)의 치보 내용에는, “왜선 1척이 기장과 울산 두 곳의 경계 앞 바다에 떠 있으므로, 기장의 화살포[火土乙浦]로 예인 정박하였다는 아이포(阿爾浦;古里) 동장(洞長)의 수본에 의거하여 치보한다” 하였는바, 동 왜선이 이미 바다 가운데서 두모포로 되돌아와서 정박하였으면, 아이포 동장이 예인하여 화살포에 정박하였다고 한 것은 혼미하고 치졸한 바닷 상놈[海漢]들이 필시 오인하여 수본한 소치이나, 해당 진에서 살피지 아니하고 치보한 죄는 면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기로, 서생진 변정 담당 감색 및 아이포 동장 등을, 해당 진에서 곤장을 쳐서 신칙하라는 뜻으로 관문을 발송하여 분부하였고, 다대포는 막중한 변방 정보를 늦추어서 치보한 것은 극히 소홀한 일이기로, 해당 변정 담당 감색 등을 신의 수영으로 잡아와서 엄중하게 곤장을 쳤으며, 초탐장 포이포만호 정국태(丁國泰)는, 남천(南川)으로 옮겨 정박한 왜인의 큰 배 1척이 초8일 유시에 발선하여 해시에 영솔하여 관소에 부쳤다고 보고하여 왔는데, 방금 도부한 부산첨사의 치보 내용에는, “구봉봉군 윤청남(尹靑男)의 진고 내용에 어제 유시에 남천에서 관소로 전진하고 있었던 표류한 왜선 1척이 가고 머문 곳을 밤새도록 살펴보았으나, 이미 등불을 내건 일이 없었으므로, 밝기를 기다려 상세히 관측하니 절영도의 흑암(黑巖) 앞바다에 떠서 머물고 있기로, 속히 영솔하여 관소에 부치라는 뜻으로 두모포만호 강덕현(康德絢)을 정하여 보낸다”고 하였으며, 동 만호의 치보 내용에, 절영도 앞바다에 떠서 머물던 왜선 1척을 초9일에 영솔하여 관소에 부쳤다고 하였으며, 임역 등의 문정 가운데, “표류한 왜인들의 말이 어제 해시에 겨우 조도(朝島) 앞바다에 도착하여 배를 예인하는 등으로 스스로 뒤쳐졌는데, 바람과 물이 모두 거슬러 배를 제어하여 전진하지 못하고 절영도 앞바다에 떠서 머물러 밤을 지내다가, 이제 비로소 관소에 도착하여 정박하였다”고 하였는바, 왜선이 가고 머무는 것이 얼마나 중대한 일인

데, 이제 이번 초탐장 포이포만호 정국태는 관소에 곧바로 부치지 아니하고, 바다 반쯤에 이르러 곧장 스스로 뒤쳐진 것을, 해시에 영솔하여 부친 뒤에 진으로 돌아갔다고 기만하여 보고한 것은 극히 해괴한데다, 더구나 이 교활한 왜인이 임의대로 바다 가운데서 밤을 새우고 이튿날까지 머물게 하였다가, 초9일 사시에 비로소 두모포 만호 강덕현의 영솔하에 관소에 부쳤다고 한 것은, 변방 정세로 논하건대 극히 놀라운 일인 바, 동 만호 정국태가 곧장 먼저 진으로 되돌아가서 변방 정세를 그르친 실책은 죄를 따져 논하여야 마땅하니 파직하기를 청하는데, 신은 또 순찰사의 장계로 인하여 마침 마감을 기다리고 있기로 황공하여 감히 거론하지 못하오며, 해당 진의 변정 담당 감색은 먼저 신의 수영으로 잡아와서 곤장을 쳐서 후일을 징계한 연유의 일임.

무진(1748) 11월 25일

동래부사 민백상이 11월 14일에 성첩한 장계 내용. 이달 12일 오시에 도부한 부산첨사 이사선의 치통 내용에, “올해 9월 28일에 나왔던 당년조 부특송사 2호선에 격왜 20명, 올해 5월 16일에 나왔던 제주 표류민을 영솔하여 온 차왜 정관 등번장(藤繁長), 봉진압물 1인, 반종 3명, 올해 윤7월 1일에 나왔던 별금도왜 2인 등이 함께 타고 공작미를 실어가지고 돌아 들어갔다고 하였음. 구 관수왜 평릉풍(平隆豐) 원역(員役) 등이 상선연은 배풀어 행하지 아니하고 건물(乾物)로 받기를 원한다는 임역 등의 수본에 의거하여, 동 상선연에 소용되는 잡물을 이번 12일에 그들이 원하는 대로 수량을 대조하여 들여 주었으며, 통신부사(通信副使)의 배가 화재를 당한 뒤에, 이번 4월에 대마도주가 서계를 보내면서, ‘동래부사공(東萊府使公)’의 ‘공(公)’자를 무단히 빼버린 것은 이미 이전의 규정에 어긋나고 후일의 폐단에 관계되니, 훈도 별차에게 전령하여 엄하게 책망하여 물리치고 고쳐 써서 바치게 하였고, 그 때 이미 사유를 갖추어 장계로 알렸는데, 위의 서계에 ‘공(公)’자를 써넣어 이제 비로소 고쳐 바쳤기로, 감봉하여 해조로 올려 보내며, 아울러 치계하는 일.

무진(1748) 12월 초2일

동래부사 민백상이 11월 22일 성첩한 장계 내용. 이달 14일에 도부한 부산첨

사 이사선의 치통 내용에, “이번 11일에 조선 배인지 왜선인지 분간되지 않는 배 1척이 바다 가운데서 나오다가 표류하여 우도로 향하였는데, 11일 술시 말에 등불을 내걸고 표류하여 지세포로 향하다가 바다 가운데 닻을 내리고 밤을 지낸 뒤에, 12일 오시에 지세포 강 입구에 정박하고, 같은 날 유시에 옥포왜학 김대창(金大昌)과 소통사 김위채(金渭彩) 등이 달려가서 문정하였더니, ‘도중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고, 계해조 부특송사 2호선이 재차 건너온 배에, 격왜 30명, 교대차 나온 하대왜 1명, 소금도왜 2명, 생동(生銅)을 영솔하여 온 금도왜 1인, 소금도왜 2명 등이 함께 타고, 노인 및 관수왜에게 보내는 사서 1통과 생동 7,500 근(斤)을 실어가지고, 이번 11일 이른 아침에 대마도에서 발선하여 곧바로 관소로 향하다가, 겨우 물마루에 이르러 바람 형세가 불순하여, 같은 날 해시 쯤에 표류하여 지세포 경내 지행도(只杏島) 앞바다에 도착하여, 그대로 밤이 깊어서 전진하지 못하고 바다 가운데 닻을 내리고 등불을 내걸었으나 끝내 응답이 없으므로 간신히 밤을 지낸 뒤에, 12일 오시가 되어서야 지세포의 영솔 호송하는 배와 함께 이곳에 정박하였다는 일로 문정하였다’고 치통하였다는바, 이제 문정한 사연을 살펴보면, 왜인들의 말이 ‘11일 해시 쯤에 표류하여 지행도에 이르러 바다 가운데 닻을 내리고 등불을 내걸었으나 끝내 응답이 없으므로, 간신히 밤을 지낸 뒤에 다음 날 오시에 비로소 지세포의 영솔 호송하는 배와 함께 동 포구에 정박하였다’고 운운하였고, 지세포만호의 치보에는, ‘11일 해시에 서로 만나 영솔 예인하였으나, 바람과 물이 모두 거슬러 영솔 호송하는 배도 같은 모양으로 바다 가운데 닻을 내리고 밤을 지냈다’고 운운하였는데, 왜인의 사정과 태도는 비록 알지 못하지만, 과연 문정한 사연대로라면 동 만호가 꾸며내어 보고를 기만한 것은 극히 놀랄 만한 일이기로, 곡절을 성화같이 조사하여 물어서 치보하라는 뜻으로 관문을 발송하여 신칙하였다”고 하였음. 16일에 도부한 동 첩사의 치통 내용에, “올해 9월 26일에 나왔던 비선에 두왜 1인, 격왜 6명, 올해 윤7월 12일에 나왔던 중금도왜 1인, 별금도왜 1인, 소금도왜 1명 등이 함께 타고, 관수 재판왜 등의 사서를 가지고 당일 사시에 곧바로 관소에서 발선하여 돌아 들어갔다는 훈도 이명윤(李命尹)과 가별차 현상로(玄尙老) 등의 수본 및 구봉봉군 등의 진고에 의거하여 치통한다” 하였음. 17일 오시에 도부한 동 첩사의 치통 내용에, “올해 10월 29일에 나왔던 계해조 부특송사 1호가 재차 건너온 배에 격왜 40명, 올해 윤7월 12일에 나왔던 중금도왜 3인, 소금도왜 2명, 통사왜 1인 등이 함께 타고, 공작미를 실어가지고 돌아 들어갔다는 훈도 별차 등의 수본에 의거하여 치통한다” 하였음. 20일에 도부한 동 첩사의 치통 내용에, “지세포 강 입구에 정박한 왜인의 큰 배 1척

은, 이번 13일부터 16일까지 바람 형세가 불순하여 그곳에 그대로 머물다가, 17일 묘시에 출발하여 술시에 가덕 정거리 앞바다로 옮겨 정박하고, 18일 사시에 출발하여 미시에 다대포로 옮겨 정박하고, 19일에 바람 형세가 불순하여 출발하지 못했는데, 오늘 진시에 발선하여 오시에 관소에 부쳤다는 가덕 첨사의 차례차례 전한 전통 및 다대포첨사의 치통과 호송장 서평포만호 김홍규(金弘規)의 치보에 의거하여, 즉시 훈도 별차 등에게 문정하게 한 내용은 당초 지세포에 표류하였을 때 옥포왜학의 문정한 것과 다름이 없고, 소지한 노인은 그것이 재차 건너온 것이 규정 밖이기로 물리쳐서 받지 아니하고, 속히 들여보내라는 뜻으로 관수왜에게 책망하여 타일렀다고 수본하였는 바, 동 왜선이 관소로 돌아와 정박하여 문정한 사연은 옥포의 문정과 조금도 다름이 없고, 지세포만호가 당초 초탐하여 영솔하지 아니하고 꾸며내어 보고를 기만한 것이 분명한데, 이제 다시 물을 단서가 없으며, 전에 이 일로 관문을 발송하여 물어 조사하라 하였으나, 아직 회보가 없으므로 다시 재촉하였다는 일로 치통한다” 하였음. 위의 규정 밖에 나온 왜선은 속히 되돌려 보내라는 뜻으로 다시 임역에게 명하여 관수왜에게 책망하여 타이르게 하였으며, 지세포만호 이재무(李再茂)가 즉시 등불을 들어 호응하지 않은 일은, 해당 진에서의 조사 보고가 아직 내도하지 않아서 어찌된 곡절인지 알지 못하나, 왜인의 문정 가운데 사연의 뜻이 이러하니, 후일을 징계하는 도리에 있어서 그냥 두어서는 불가하니, 통영(統營)에서 사실을 조사하여 죄를 논하지 아니하고, 동 수영에서 논한다는 일임.

무진(1748) 12월 초6일

동래부사 민백상이 11월 28일에 성첩한 장계 내용에 운운하기를, 위의 비선의 노인 2통을 감봉하여 해조로 올려 보내거니와, 동 비선 등이 이번 21일에 바람에 표류한 실정과, 다대포첨사 이해(李海)가 봉군의 관측 잘못으로 즉시 치보하지 않았다가 23일에 비로소 치통하였는 바, 변방 사정에 있어서 후일을 징계하는 도리가 없어서는 불가하겠기로, 당해 감색에게 전례대로 각별히 곤장을 쳤으며, 훈도 별차 등의 수본 내용에 ‘통신사 예단(禮單) 은(銀) 13,600 냥을 수역(首譯) 박상순(朴尙淳) 현덕연(玄德淵) 홍성귀(洪聖龜)³⁶⁾ 등이 담당하여 대마도주에게 이급(移給)하고, 기사년(1747) 분의 공목(公木)을 계감(計減)한다는

36) 홍성귀(洪聖龜, 1698-?) : 남양홍씨로 자는 대년(大年)이다. 경종 1년(1721) 증광 역과에 왜학으로 합격하여 교회를 역임하고 자헌대부의 품계를 받았다.

뜻으로 수표(手標)를 받아 서로 약속하고 왔는데, 대관왜에게 동 기사년 분의 공목 340 동(同)에 대한 수표를 받아내었다'고 하였기로, 명년 조의 공목 원래 수량에서 줄여서 마련하라는 뜻으로 본도 감사에게 보고하였다는 연유의 일임.

무진(1748) 12월 14일

경상우수사 장태소가 12월 초2일에 성첩한 장계 내용에 운운하기를, 동 왜인의 큰 배 1척은 이미 폐단없이 다대포로 건너보냈거니와, 왜학이 문정한 수본 내용에는, “왜선이 11일 해시 쯤에 표류하여 지세포 지행도 앞바다에 도착하여 등불을 내걸고 대응하였으나, 끝내 응하는 회답이 없으므로 간신히 바다 가운데서 밤을 새운 뒤에, 12일 오시가 되어서야 비로소 해당 진에서 배를 예인하여 정박하였다” 하였고, 지세포만호의 조사 보고 내용에는 “11일 술시에 바다로 나가 해시에 왜선과 만났는데, 밤이 깊고 바람에 막혀서 전진하지 못하고, 왜선과 같은 모양으로 바다 가운데서 밤을 지내고, 이튿날 오시에 예인하여 들어서 정박하였는데, 왜인의 말이 ‘등불을 내걸었으나 응하는 회답이 없었다’고 한 것은, 당일 저녁 때 양식 쌀을 받지 아니하여 이렇게 거짓으로 꾸민 이야기가 있었다”고 하는 바, 동 만호가 조사 보고하면서 밝힌 말이 비록 이와 같지만, 문정할 때 표류한 왜인의 말이 저렇게 어긋날 뿐 아니라, 해당 진에서 나와서 응대하고 영술하여 부치는 등의 절차에 과연 미진한 일이 있었으면, 교활한 왜인이 비록 올바르게 변복하더라도 어찌 무단히 소란을 야기할 리가 있겠는가? 하물며 그 문정은 해당 진에서 수호할 때에 있었는데, 표류한 왜인들이 만약 꾸며낸 이야기로 운운한 바가 있었다면, 동 만호가 마땅히 다투어 고집하여 그것이 그렇지 않음을 밝혀야 하거늘, 그 때는 묵묵히 한 마디 말이 없다가, 신의 수영에서 조사하여 물은 뒤에 비로소 밝힌 것은 또한 신용을 받기에 부족하니, 이로써 추리하건대 전후로 보고한 바가 꾸며낸 데서 나왔고, 문정할 때 다투어 변명하지 못한 것 또한 스스로 풀린 데서 말미암은 것이라, 변방 정세를 중시하여 후일을 징계하는 도리에 있어서 그대로 두기는 불가하기로, 앞의 지세포 만호 이재무는 먼저 파직하여 내쫓고, 가장(假將)을 그대로 차출하여 관측하는 등의 일을 짐짓 거행하라는 뜻으로 전령하여 신칙하였으며, 위 항목의 곡절을 조사하여 묻고 왕복하는 사이에 날짜가 자연히 지연된 연유를 치계하는 일임.

무진(1748) 12월 20일

경상우수사 장태소가 12월 초6일에 성첩한 장계 내용. 지난 11월 21일에 나왔던 왜선 2척 중 1척은 지세포 강 입구에 정박하고, 1척은 동 지세포 경내의 구조라포 앞바다에 정박한 사정 및 동 왜선 2척에 속히 달려가서 문정하여 수본하라는 뜻을 옥포왜학 김대창에게 전령을 발하여 분부한 연유는 이미 치계하여 운운하였는데, 위의 왜인의 비선 2척은 이미 다대포로 건너보냈거니와, 무릇 분간되지 않는 배는 관측되는 즉시 보고하는 것이 변방 정세로 당연하거늘, 다대포첨사 이해는 21일에 관측한 사정을 뚜렷하지 않다고 하면서 23일에 비로소 성첩하여 치보한 것은 매우 지연된 일인데, 방금 좌수사(左水使) 이언섭의 등보(騰報)를 접하니, 다대포에서 같은 날 유시에 2척의 배 형상을 관측한 사정을 즉시 치보하지 아니한 것은 극히 소홀한 일이라, 해당 다대진의 봉군과 감색 등을 이미 잡아다가 곤장을 쳤다 하였으며, 동 2척의 배가 표류하여 우도로 향할 때 가덕에서는 같은 날 유시에 관측하였고, 옥포와 조라포에서는 같은 날 신시에 등불을 내걸고 나왔다고 하였으며, 지세포에서는 같은 날 술시에 바다에서 나왔다고 전통이 있었는 바, 가덕의 유시와 지세포의 술시는 혹 그럴 듯하나, 옥포와 조라포 두 진에서 신시에 등불을 내걸고 나왔다고 한 것은 착오를 면치 못하며, 동 왜선이 옥포로 옮겨 정박한 사정 역시 전통에 거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곡절을 전로(前路)에 물어 조사하라 하였는바, 변방의 보고가 얼마나 시급한데, 다대진에서 왜선을 관측한 사정을 3일이 지나서야 비로소 보고한 것은 극히 놀라운 일이라, 후일을 징계하는 도리에 있어서 동 첨사 이해를 잡아다가 곤장을 쳐서 징계하라는 뜻으로 좌수사 이언섭에게 관문을 발송하여 분부하였으며, 옥포 조라포는 신시에 관측한 것이 착오를 면치 못하오나, 다만 각 진에서 신의 감영에 보고하는 것은 오로지 사람을 보내어 치보하고, 우도 연안에서 좌수영에는 차례차례 전통으로 치보하는 것이 본디 전례인 바, 당초 옥포 조라포 두 진에서 신의 수영에 치보한 것은 모두 술시에 관측한 것으로 보고하여 왔으니, 그것이 신시가 아님을 추리하여 알 수 있고, 좌수영으로 돌려서 보고하면서 신시로 적은 것은, 각 진에서 바쁘게 급히 등보(騰報)하는 사이에 아마도 잘못 적은 소치인 듯하나, 신칙하는 도리에 있어서 그냥 두기는 불가하며, 동 왜선이 옥포로 옮겨 정박한 사정을 전통에 거론하지 않은 것 또한 소홀히 한 일이기로, 모두 지금 바야흐로 각 진에 물어 조사하여 징계하여 다스릴 계획임.

기사 정월 11일

동래부사 민백상이 정월 초2일에 성첩한 장계 내용. 지난 달 27일 오시에 도부한 부산첨사 이사선의 치통 내용에, “올해 10월 26일에 나왔던 관수왜의 배에 격왜 40명, 올해 윤7월 17일에 나왔던 중금도왜 4인, 올해 9월 초9일에 나왔던 별금도왜 1인 등이 함께 타고, 공작미를 실어가지고 돌아 들어가기 위해 이번 21일에 수문 밖에서 바람을 기다린다는 훈도 이명윤과 별차 황대중(黃大中)³⁷⁾ 등이 수본하였는데, 22일 진시에 발선하여 돌아 들어갔다고 치보하였으며, 올해 11월 21일에 나왔던 비선에 두왜 1인, 격왜 6명. 올해 9월 초9일에 나왔던 중금도왜 1인, 하대왜 1인 등이 함께 타고 관수 재판왜 등의 사서를 가지고, 오늘 진시에 관소에서 발선하여 돌아 들어갔다는 훈도 별차의 수본 및 봉군의 진고에 의거하여 연유를 치통한다” 하였음. 상역 등이 피집한 물화 값의 은 1,600냥을 지난달 28일 개시에서 받아 내었음. 왜관 여러 곳의 손상 유무를 매달 말에 적간하고 연말에는 별도로 적간하는 일로 일찍이 정식이 있는데, 왜관 건물의 수리하는 곳은 순영(巡營)에서 차원(差員)과 감동역관(監董譯官) 등이 이미 적간하였기로, 대단히 시급한 곳만 속히 보수하라는 뜻으로 부산진에 신칙하였다는 연유의 일임.

기사(1749) 정월 19일

경상감사 남태량(南泰良)이 정월 14일에 성첩한 장계 내용. 기장현감 윤학동(尹學東)의 첩정(牒呈) 내용에, “이달 초8일 술시 쯤에 현의 남산 봉군 허두창(許斗昌)이 진고한 내용에, ‘조선 배인지 왜선인지 분간되지 않는 배 2척이 등불을 걸고 물마루에서 표류하여 현의 경내로 향하는 듯하다’고 진고하였기로, 정박한 곳을 상세히 관측하라는 뜻으로 신칙한 연유를 치보하는 바”라 하였음. 추가로 도부한 동 현감의 첩정 내용에, “왜인의 비선 1척이 현의 경내 무지포에 정박하였고, 1척은 바다 가운데서 머물고 있다고 진고하였기로, 현감이 그 장소로 달려가서 뿔감과 물을 전례대로 들여 주고 수호하는 일로 첩정한다” 하였음. 일시에 도부한 동 현감의 첩정 내용에, “현의 경내 무지포에 정박한

37) 황대중(黃大中, 1715-?): 창원황씨로 자는 정숙(定叔)이다. 영조 11년(1735) 증광 역과에 왜학으로 합격하여 교회를 역임하였다.

왜인의 비선 2척은 폐단없이 밤을 지냈거니와, 당일 유시 쯤에 별차가 문정 통사 김상덕(金尙德) 김세장(金世章) 등을 데리고 달려와서 문정하였더니, 도중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고, 제1척 비선에 두왜 1인, 격왜 6명, 교대차 나온 중금도왜 1인, 하대왜 1명 등이 노인 및 관수왜에게 보내는 사서 1통을 가지고 나왔으며, 제2척 비선에는 두왜 1인, 격왜 6명, 교대차 나온 중금도왜 1인, 하대왜 1명 등이 함께 타고 노인 및 재판왜에게 보내는 사서 1통을 가지고 나왔는데, 동 왜인들의 말이, ‘저희들이 탄 배 2척은 어제 이른 아침에 대마도에서 함께 발선하여 곧바로 관소로 향하다가, 겨우 물마루에 이르러 바람 형세가 불순하여, 어제 해시 쯤에 표류하여 이곳에 도착하였다’고 문정하였기로, 땀감과 물을 전례대로 들여 주었다”고 하였음. 일시에 도부한 동 현감의 첩정 내용에, “동 왜선 2척은 폐단없이 밤을 지냈으나, 바람 형세가 불순하여 출발하지 못하고 같은 곳에 머물고 있기로, 양식과 반찬, 땀감과 물을 전례대로 들여 주었다”고 하였음. 일시에 도부한 동 현감의 첩정 내용에, “운운. 동 왜선 2척은 폐단없이 경내를 지나 동래 경내에서 교체하고 첩정한다”고 하였는데, 대개 왜선이 표류하여 좌도로 향하는 것은 지방관이 신의 수영에 보고하고, 신의 수영에서 장계로 알리는 것이 본디 규례인 바, 이제 이번 무지포에 정박한 왜선이 이미 좌도의 기장 경내에 있으니, 지방관이 된 자는 마땅히 시각에 맞추어 신의 수영에 치보해야 하거늘, 왜선이 좌도 경내로 향하는 듯하다는 보고가 뒤늦게 신의 수영에 도부하였으므로, 기장현감 윤학동은 장계로 알려 땀감과 물을 들여준 사정을 기다려 사유를 갖추어 치계하려고 하였더니, 위의 제2차 보고 장계가 초8일에 성첩되어 13일에 비로소 신의 수영에 도부하였고, 그 사이에 왜선은 이미 영술하여 관소로 예인하여 동래부의 문정 장계가 이미 지나고, 동래부의 등보(騰報)가 이미 도착한 뒤에 본현의 문정과 영술 예인한 보고가 비로소 이어져 도부하였으니, 막중한 변방 정보를 해당 읍에서 이렇게 지체한 것은 지극히 해괴한 일이라, 기장현감 윤학동은 장계로 알려 죄를 논하여야 마땅한데, 이미 특지(特旨)로 견책하여 보임(補任)한 관원의 죄를 청하고 파직을 청하는 일은 전례가 없기로, 장계로 알리는 한 절차는 이제 짐짓 그냥 두고, 당해 변정 담당 감색을 이제 바야흐로 잡아다가 엄하게 형벌을 가할 계획이라는 연유의 일임.

기사(1749) 2월 초10일

동래부사 정권(鄭權)³⁸⁾이 정월 25일에 성첩한 장계 내용. 신은 이달 24일에 전부사 민백상과 객사에서 교인(交印)한 뒤에 그대로 도입하였음. 우도의 옥포 강 입구에 정박한 왜인의 큰 배 1척과 정거리에 정박한 1척 및 거제도도 표류하여 향한 분간되지 않는 배 2척 등은, 모두 그 배가 정박하기를 기다려 문정하여 다시 장계로 알릴 계획이라는 연유는 전 부사가 재임할 때 이미 치계하였는데, 21일 유시에 도부한 부산첨사 이사선의 치통 내용에, “거제도도 표류하여 향한 배 2척은 과연 왜인의 큰 배인데, 19일 술시에 옥포 강 입구에 정박한 뒤, 왜학 김대창과 소통사 김위채 등이 가서 문정하였더니, ‘도중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고, 제1척은 갑자조 제12선에 격왜 20명, 교대차 나온 별금도왜 1인, 제2척은 갑자조 제14선에 격왜 20명, 교대차 나온 소금도왜 1인 등이 나누어 타고, 각기 노인을 가지고 공작미를 실어가기 위하여, 다른 큰 배 1척과 더불어 도합 3척 및 비선 3척이, 이번 19일 이른 아침에 대마도에서 동시에 출발하여 곧바로 관소로 향하다가, 물마루에 이르러 광풍이 크게 일어나고 바다 가운데가 어두워서, 큰 배 1척과 비선 3척은 어느 섬으로 표류하여 갔는지 모르고, 저희들이 탄 배 2척은 근근이 표류하여 이곳에 도착하였다고 하며, 제12선에 탄 왜인들의 말이, 표류하여 올 때 주목(柱木) 1개가 돛의 바람에 부딪쳐 휩쓸려서 잃어버렸다고 마련해 달라고 간청하므로, 수본한다’ 하였기에 옥포진에 통지하여 동 주목 1개를 청하여 낙인을 찍고 별목을 감독하는 사이에 지연됨을 면치 못하겠기로, 조라포 산에 있는 아송(兒松) 한 그루를 찍어다가 마련해 주었고, 정거리 앞바다에 정박한 왜인의 큰 배 1척에 왜학과 소통사 등이 이번 22일 해시에 달려가 문정하였더니, 갑자조 제11선에 격왜 20명, 교대차 나온 별금도왜 1인, 중금도왜 1인 등이 함께 타고, 노인을 가지고 공작미를 실어가기 위해 다른 큰 배 2척과 도합 3척 및 비선 3척이, 이번 19일 이른 아침에 대마도에서 함께 출발하여 곧장 관소로 향하다가, 물마루에 이르러 광풍이 크게 일어나고 바다가 어두운데 잠시 안개가 걷혀 희미한 가운데, 큰 배 2척은 표류하여 거제도도 향하고, 비선 3척은 표류하여 좌도로 향하였고, 저희들의 배 1척은 근근이 표류하여 이곳에 이르렀다고 문정하였고, 옥포 강 입구에 정박한 왜인의 큰 배 1척은, 이번 19일 진시에 출발하여 전진할 무렵에 동풍이 불어서 미시에 옥포로 되돌아 와서 정박하였다가, 20일 사시에 출발하여 해시

38) 정권(鄭權, 1692-1757) : 연일정씨로 자는 도중(道中), 호는 명고(鳴皐)이며, 초명은 권(權)인데 뒤에 이름을 간(幹)으로 바꾸었다. 영조 1년(1725) 문과에 급제한 뒤 여러 관직을 거쳐 영조 기사년(1749) 정월부터 동년 6월까지 동래부사로 재직하였고, 경주 부윤을 역임하였다.

에 정거리 앞바다로 옮겨 정박하였다는 가덕 가장의 전통에 의거하여 다대포 첨사가 치통하였다”고 하였음. 24일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옥포 강 입구에 추가로 정박한 왜인의 큰 배 2척은, 이번 20일부터 21일까지 바람 형세가 불순하여 그대로 그 곳에 머물렀으며, 정거리 앞바다에 정박한 왜인의 큰 배 2척도 출발하지 못하였는데, 22일 사시에 발선하여 바다 반쯤 이르러 동 풍이 크게 일어나, 신시에 같은 곳으로 돌아와 정박하였다고 차례차례 치통하였기로, 바람이 시들하기를 기다려 속히 관소로 호송하라는 뜻으로 엄하게 신 칙하고, 연유를 치통한다” 하였음. 위의 우도 옥포 및 정거리에 정박한 왜인의 큰 배 4척은, 그 배가 관소로 돌아와 정박한 뒤에 다시 문정하여 장계로 알릴 계획임.

기사(1749) 2월 14일

동래부사 정권이 2월 초5일에 성첩한 장계 내용. 우도 옥포 및 정거리에 정박한 왜인의 큰 배 4척은 그 배들이 관소로 돌아와 정박한 뒤에 다시 문정하여 장계로 알린다는 뜻은 전에 이미 치계하였거니와, 이달 초1일 자시에 도부한 부산첨사 이사선의 치통 내용에, “어제 신시 쯤에 조선 배인지 왜선인지 분간되지 않는 배 2척이 바다 가운데서 나온다는 봉군의 진고에 의거하여 초탐장을 정해 보냈는데, 과연 왜인의 작은 배라 유시에 영솔하여 관소에 부쳤는바, 즉시 훈도 이명윤과 별차 황대중(黃大中)에게 명하여 문정한 수본 내용에, ‘도중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고, 비선 2척에 두왜 1인, 격왜 12명, 교대차 나온 중금도왜 2인 등이 나누어 타고, 각기 노인 및 생동(生銅) 1,000 근씩 가지고 나왔으므로, 소지한 노인 2통을 받아 보낸다’고 하였으며, 무진년(1748) 10월 28일에 나왔던 무진조(1748) 부특송사 수목선 1척에 격왜 20명, 무진년(1748) 7월 29일에 나왔던 소금도왜 1명, 하대왜 1명, 무진년(1748) 윤7월 12일에 나왔던 중금도왜 1인 등이 함께 타고, 공작미를 실어가지고 돌아 들어가기 위해 바람을 기다리다가 초3일 유시에 발선하여 돌아 들어갔으며, 정거리에 정박한 왜선 2척은 지난달 23일부터 초5일까지 바람 형세가 불순하여 그대로 그곳에 머물다가, 1척은 오늘 진시에, 1척은 사시에 출발하여 영솔하여 관소에 부쳤는바, 즉시 훈도 별차에게 명하여 문정하게 한 수본 내용에, ‘제1척은 갑자조 제13선인데 격왜 20명, 교대차 나온 중금도왜 2인, 하대왜 1명 등이 함께 타고, 노인 및 술 3통을 실어가지고 공작미를 실어가기 위하여 지난 달 12일 이른

아침에 대마도에서 발선하여 곧바로 관소로 향하다가, 바람 형세가 불순하여 표류하여 옥포에 이르렀는데, 이제 비로소 돌아와 정박하였다고 운운 하였고, 제 2척은 갑자조 11선인데 격왜 20명, 교대차 나온 별금도왜 1인, 중금도왜 1인 등이 함께 타고 노인 및 어유 2통을 실어가지고 공작미를 실어가기 위하여, 지난달 19일 이른 아침에 큰 배 3척과 비선 3척이 대마도에서 함께 발선하여 곧바로 관소로 향하다가, 갑자기 광풍을 만나 큰 배 2척은 표류하여 거제도도로 향하고, 비선 3척은 표류하여 좌도로 향하였고, 저희들의 배 1척은 근근이 표류하여 가덕 경내 정거리에 이르렀는데, 이제 비로소 돌아와 정박하였다고 운운 하였으며, 소지한 노인 2통을 받아 올려 보낸다'는 수본에 의거하여 치통한다" 하였음. "초4일 묘시에 분간되지 않는 배 1척이 물마루에서 나왔던 배는 과연 어제 돌아 들어간 왜선인데, 진시에 되돌아와서 영술하여 관소에 부쳤는 바, 즉시 훈도 별차에게 명하여 문정하게 하였더니, 당초 바람을 기다릴 때의 배의 호와 이름과 인원수와 다름이 없고, 어제 돌아 들어가다가 역풍이 크게 일어나서 전진하지 못하고 되돌아 나왔다고 운운 하였으며, 그대로 바람을 기다리다가 초5일에 발선하여 돌아 들어갔다고 치보하였으며, 옥포 강 입구에 정박한 왜선 2척은 지난달 22일 사시에 출발하였다가 동풍이 갑자기 일어나서 되돌아와서 정박하였고, 바람이 시들하기를 기다려 영술하여 관소에 부치라는 뜻으로 신칙하였다고 치통한다" 하였음. 옥포 강 입구에 정박한 왜인의 배 2척은 그 배들이 관소로 돌아와 정박한 뒤에 다시 장계로 알릴 계획이고, 큰 배 2척과 비선 2척이 소지한 노인 도합 4통은 감봉하여 해조로 올려 보내거니와, 지난달 29일에 비선 2척이 나올 때 황령산봉군이 관측을 농침을 면치 못하였는데, 변방 정보를 중시하는 도리에 있어서 그냥 두고 다스리지 않기가 불가하기에, 곤장 모두 곤장을 쳤는데, 신(臣) 역시 전례대로 관측을 농침 것으로 죄를 다스렸음. 훈도 별차 등의 수본 내용에, "지난 초하루 동서 왜관 건물 여러 곳을 부산진 감색과 더불어 같이 적간하였는데, 비가 새는 곳은 비록 이미 지붕을 덮게 하였으나, 그 밖의 파손된 곳은 전과 다름이 없다"는 수본에 의거하여, 속히 보수하라는 뜻으로 다시 더 신칙하였으며, 피집 물화의 값으로 은 1,300 냥을 이달 초3일 개시에서 받아내었으며, 통신사를 호송하여 온 재판차 왜 평여방(平如方) 원역 등에 대한 상선연은 배풀지 않고 건물(乾物)을 받기를 원한다는 훈도 별차 등의 수본에 의거하여, 동 상선연에 사용될 잡물을 이달 초4일에 그 소원대로 수량을 대조하여 들여 주었다는 연유의 일임.

기사(1749) 2월 25일

비변사의 감결(甘結) 내용. 신목(申目)을 첨부하였으니 달하(達下)하시기를. 이 경상감사 남태량의 장계를 보면, 왜관을 보수하는 일은 동래부사의 장계와 비변사의 복계로 인하여 시행을 허락하였는데, 동래 겸임 기장현감 윤학동(尹學東)³⁹⁾의 첩정(牒呈) 내용에, “관문(關文)에 의거하여 본부의 좌수(座首) 중군(中軍)과 차사원(差使員)이 다대포첨사 및 감동역관(監董譯官) 임역(任譯) 등과 다시 적간하여, 수정하여 성책(成冊)하고 차사원과 같이 명함을 적어 부사께 올렸거니와, 동서 왜관의 크고 작은 건물에 모두 판자가 있는데, 모조리 열어서 그 손상된 곳의 유무를 살펴보고 싶지 않은 것은 아니나, 미처 수리하기 전에 송사왜가 나오는 일이 있으면 거쳐할 곳이기 때문에, 손상된 곳의 다소로 또렷이 알 수 없기로, 적간 성책을 비변사로 올려 보내고, 재목 별채의 가격을 정하는 한 조목은 감동역관이 의논하여 확정하기 위하여 이제 막 올라갔으니, 묘당에서 지휘를 내려 보내기를 기다려서 거행함이 마땅하겠는 바, 동서 왜관의 크고 작은 판자에 비록 손상이 있더라도 지금 당장 살펴보기에는 어려운 형편이 있으나, 앞으로 거행하기에는 실로 방해되는 바가 없는바, 재목은 왜관 부근에 있는 금송산(禁松山)의 바람에 잎이 저서[風落] 절로 마른 소나무 중 선재(船材)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수리에 들어갈 양을 짐작하여 전례대로 취하여 사용하는 일로 통영과 수영에 알렸는데, 이 일을 빙자하여 함부로 찍어내는 것은 반드시 닥칠 형세인지라, 특별히 도신(道臣)에게 신칙하여 착실히 대조하여 관장하게 하고, 만약 범하는 바가 있으면 차원(差員) 및 감동관에게 각별히 죄를 논하며, 차원은 소나무가 있는 관아에서 차출하여 보낸 뒤에라야 소나무를 찍어낼 때 간소한 일을 살펴서 병폐를 줄일 수 있겠으며, 소나무를 찍어내어 육지로 운반하는 것은 전례대로 감동관에게 시키게 하고, 수로로 운반하는 것은 인근에 있는 고을의 배에 양식을 지급하여 운반하면 선가(船價) 비용을 덜 수 있고 운반 또한 편하니, 도신이 그 배 척수의 다소와 사공과 격군(格軍)의 명 수를 헤아려서 저치미(儲置米)로 마련하여 지출한 뒤에 회감(會減)하게 하며, 두 왜관을 수리할 때 물자와 인력은 이전부터 저치미로 획급(劃給)하여 요리하여 남는 이자를 취하여 하게 하였으나, 지금 쌀이 흠처럼 천하여 필시 남는 이자가 없을 것이라, 큰 공사의 낭패가 극도로 우려되니, 이번에

39) 윤학동(尹學東, 1710-?): 해평윤씨로 자는 사행이다. 영조 16년(1740) 증광 문과에 급제하고, 기장현감을 지냈으며 옥당을 거쳐 대사간을 역임하였다.

통신사가 되돌아 올 때의 회례(回禮) 은자와 서로 맞바꾼 공목(公木) 가운데 150동을 잘라 주어서 때에 맞추어 수리하는 것이 일에 매우 편하고 합당하니, 이렇게 도신에게 분부함이 어떠할지? 건륭 14년(1749) 2월 20일 좌승지 신 이(李) 차지로 입달(入達)하여 그대로 인준[準]함.

기사(1749) 3월 초2일

동래부사 정권이 2월 25일에 성첩한 장달(狀達) 내용. 이달 20일 오시에 도부한 부산첨사 이사선의 치통 내용에, “올해 정월 초8일에 나왔던 비선에 두왜 1인, 격왜 6명, 무진년(1748) 9월 초9일에 나왔던 중금도왜 1인, 하대왜 1명이 함께 타고, 관수왜의 사서를 가지고 당일 진시에 발선하여 돌아 들어갔다는 훈도 이명윤과 별차 황대중 등의 수본에 의거하여 치통한다” 하였음.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이번 21일에 분간되지 않는 배 2척이 바다 가운데서 나온 것은 과연 왜인의 작은 배 1척과 큰 배 1척인데, 작은 배는 같은 날 천성 경내의 마거리에 정박하였고, 큰 배는 같은 날 옥포 강 입구에 정박한 뒤에, 왜학 김대창(金大昌)과 소통사 권순택(權舜澤) 등이 옥포 강 입구에 정박한 큰 배에 먼저 가서 문정하였더니, ‘도중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고, 갑자조 제15선에 격왜 20명, 교대차 나온 소금도왜 2명, 판장관왜(判掌官倭) 1인, 종왜 12명 등이 함께 타고, 노인을 가지고 공작미를 실어가기 위하여 비선 1척과 더불어 이번 21일 이른 아침에 대마도에서 출발하여 곧바로 왜관으로 향하다가, 겨우 물마루에 이르러 봄 안개가 바다를 뒤덮어 지척을 분간하지 못한데다 겹쳐서 바람 형세가 불순하여, 비선은 표류하여 향한 곳을 모르고, 저희들의 배는 근근이 표류하여 이곳에 이르렀다는 일로 문정하였다’고 차례차례 전통하였다” 하였음. 같은 날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오늘 나온 분간되지 않는 배 2척은 과연 왜인의 큰 배로 신시에 영솔하여 관소에 부치고, 즉시 훈도 별차 등에게 문정하게 한 수본 내용에, ‘도중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고, 제1척은 당년조 제1선 송사왜의 배에 정관 등직친(藤直親), 도선주 원정전(源定前), 봉진압물 1인, 반종 3명, 격왜 40명, 교대차 나온 중금도왜 1인, 통사왜 1인, 하대왜 1명 등이 함께 타고, 예조로 보내는 서계와 별폭 각 1통 및 진상물건을 실어가졌으며, 제2척은 동 송사의 수목선인데 격왜 15명 및 당년조 제2선 송사 정관 등광장(藤廣長), 반종 1명, 제3선 송사 정관 굴원행(橘元幸), 반종 1명, 교대차 나온 중 소금도왜 각 1명 등이 함께 타고, 노인과 예조로 보내는 서계 2통 별폭 2통과

진상물건을 실어가지고 나왔는데, 가져 온 서계 등은 다례(茶禮)하는 날 전례대로 바칠 계획이며, 수목선의 노인은 그 전면에 「방어소(防禦所)」라 써넣은 것이 격식에 어긋나 물리쳐 받지 아니하고, 고쳐 적어 바치라는 뜻으로 관수왜에게 책망하여 타일렸으며, 제2 제3선의 송사 정관(正官)이 본선에 타지 아니하고 제2선의 수목선에 타고 나온 곡절을 동 정관왜에게 따져 물었더니, 답하기를 수목선에 함께 타고 나온 것은 이번만이 아니고 근년 이래로 혹은 본선을 타고 혹은 수목선을 타고 나오는 것이 이미 규례가 되었다고 하며, 정관왜 등이 멀미에 시달려 한참 있다가 육지에 내렸으므로 문정한 시각이 자연히 지체되었다'는 수본에 의거하여 치통한다" 하였음. 24일 미시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에, "운운. 천성 마거리 앞바다에 정박한 왜인의 작은 배 1척에 옥포왜학과 소통사 등이 달려가서 문정하였더니, '도중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고, 비선에 두왜 1인, 격왜 5명, 교대차 나온 별금도왜 1인, 소금도왜 1명 등이 함께 타고, 노인 및 관수왜에게 보내는 사서를 가지고, 큰 배와 더불어 21일 이른 아침에 대마도에서 발선하여 곧바로 관소로 향하다가, 풍량이 크게 일어나 큰 배 1척은 표류하여 거제도도로 향하고, 저희들의 배는 근근이 표류하여 이곳에 이르렀다고 문정 운운' 하였는데, 당년조 제1선 2선 3선 송사왜 등이 가져온 서계는 추가로 다례를 행하고 받아올릴 계획이고, 격식이 어긋난 노인은 고쳐 바치라는 뜻으로 다시 임역에게 명하여 관수왜에게 책망하게 하였으며, 옥포강 입구 및 마거리 앞바다에 정박한 왜선 2척은, 그 배들이 관소로 돌아와 정박한 뒤에 다시 장계로 알릴 계획이거니와, 동 왜선 등이 이번 21일에 나와서 바람에 표류한 사정을, 다대포첨사 이해가 즉시 치통하지 않았다가 이튿날 비로소 치통한 것은, 변방 정세에 있어서 매우 소홀한 일인지라, 변정 담당 감색을 전례대로 잡아와서 곤장을 쳐서 후일을 징계한 일.

기사(1749) 3월 초3일

비국(備局)에서 승전(承傳)을 받들어 거행하는 조목을 가져와서 등서(謄書)함. 이번 2월 16일에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여 입시하였을 적에 **영의정 김재로(金在魯)**가 **입달(入達)한 바**, "이는 곧 경상감사 남태량이 각 고을의 폐단을 알린 장계입니다. 울산의 전선(戰船)을 고치는 것은 하나의 고질 폐단으로, 선창이 멀리 30리 밖의 개운포에 있는데, 직월(直月)의 요미(料米)가 단지 쌀 6말이고, 사수(射手) 포수(砲手)의 병졸이 모두 겸역(兼役)으로 각 면에 흩어져 있

어서 각 방면의 길을 모르는데다, 스스로 당번 양식을 준비하여 새벽 때를 헤아리지 않고 전함에 가서 지킬 즈음에, 모두들 속히 죽기를 원하며, 그 밖의 수고와 비용이 매우 번다하여, 일찍이 주사(舟師; 水軍)로서 자살한 자가 2인이 나 됩니다. 또 개운포 선창은 곧 내포(內浦)이고 서생포는 외포(外浦)인데, 서생포는 곧 적이 들어오는 길의 요충지라, 이제 이 전선을 만약 서생포로 옮겨 두면, 경계하고 지키는 도리에 매우 적합합니다. 일찍이 전에도 양산의 전함을 다대포로 옮겨 소속시켰고, 경주의 전함을 기장현으로 옮겨 주었으며, 또 각 진의 방군(防軍)이 모두 대신하여 수직하는 군사인지라, 전함을 지키는데 전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서생포로 옮겨 보내자는 의론이 있어서 서생포를 편안하게 여기는 것은, 대개 여기에서 연유하는 것입니다. 서생진에 거주하는 허다한 주민들이 모두 해한(海汗; 어민)인지라, 첩사가 차출하여 보내는 사람도 시골의 일개 대장(代將)과는 견줄 것이 아닙니다. 울산의 이 폐단은 이전부터 말하였는데, 이제 이번에 옮겨 보내자는 논의는 근거가 있는 듯하니, 시행을 허락함이 마땅하지만, 먼 지방의 사정을 상세히 알기에 어려움이 있으니, 주관하는 아문에 그 이해의 편의 여부를 관문으로 알리지 않아서는 안되니, 좌수사에게 명하여 사유를 열거하여 논하여 알리게 한 다음에 품의 조치하고, 그 밖의 각 고을의 폐단도 청하는 바대로 해당 아문에 명하여 품의 조치하게 함이 어떠할지?" 하였는데, 왕세자께서 "그대로 하라" 하셨습니다.

기사(1749) 3월 초10일

동래부사 정권이 3월 초2일에 성첩한 장계 내용. 방금 바친 훈도 별차 등의 수본 내용에, "지난 초하루 동서 왜관 건물 여러 곳을 부산진 감색과 더불어 같이 적간하였는데, 비가 새는 곳은 각 진포로 하여금 이미 지붕을 덮게 하였고, 그 밖의 파손된 곳은 전과 다름이 없다"는 수본에 의거하여, 속히 보수하라는 뜻으로 다시 더 신칙하였다는 연유의 일임.

기사(1749) 3월 17일

동래부사 정권이 3월 초10일에 성첩한 장달(狀達) 내용. 이달 초7일 오시에 도부한 부산첨사 이사선의 치통 내용에, "무진년(1748) 12월 초6일에 나왔던

가덕 표류민이 타고 왔던 왜선에 격왜 30명, 무진년(1748) 정월 초2일에 나왔던 별대관왜 2인, 무진년(1748) 윤7월 12일에 나왔던 통사왜 2인, 무진년(1748) 8월 16일에 나왔던 증금도왜 3인, 무진년(1748) 6월 초2일에 나왔던 봉행이 바친 서찰을 가져온 두왜 1인, 무진년(1748) 8월 16일에 나왔던 소금도왜 3명 등이 나누어 타고, 도합 2척이 각기 공작미를 실어가지고 돌아 들어가기 위해 수문 밖에서 바람을 기다린다고 훈도 이명윤과 별차 황대중 등이 수본하였는데, 초4일 진시에 발선하여 돌아 들어갔다” 하였음. 당년조 제1선 제2선 제3선 송사왜의 원역 등에 대한 다례를 이번 초9일에 전례대로 베풀 뒤에, 동 송사왜 등이 바친 해조로 보내는 서계와 별폭 각 3통을 받아 감봉하여 해조로 올려 보내거니와, 신이 엿드려 살펴보건대, 이번에 나온 제1선 송사왜가 가져온 서계는, 그 가운데 선조(宣祖)의 초휘(初諱)를 범한 곳이 있는 바, 처음에 보고는 놀라움과 분함을 견디지 못하고 등록을 가져다 살펴보니, 초휘는 정휘(正諱)와 달라서 반드시 피휘(避諱)할 필요가 없다고 조정에서 일찍이 이미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허락하였기에, 전후의 왜인의 서계에 이 휘(諱)자를 범하였으나 말없이 받아들인 것이 무려 30여 차례에 이르므로, 신 또한 전례대로 받아 올리는 일임.

일본국 대마주 태수 습유 평의여 봉서(奉書). 조선국 예조대인 합하. 삼양(三陽)이 계절을 열어 두 나라가 고루 경사가 있음에, 멀리 생각건대 군후(鈞候)가 다복하기를 발돋움하여 끝없이 축원드립니다. 이제 세조(歲條) 제1선을 보내면서 정관 등직친(藤直親), 도선주 원정전(源定前), 봉진압물 등의 관원을 차출하였으니, 평소의 사례에 어긋나지 않게 접대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인하여 보잘것 없는 물품으로 멀리 정성을 표하오니 간절히 바라건대 웃고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인사드리며 갖추지 못합니다. 관연(寬延) 2년 기사(1749) 정월 일.

별폭 : 호추 500근. 단목(丹木) 700근. 명반(明礬) 300근. 대화진주(大和眞朱) 2근. 문지(紋紙) 300편(片). 계(計).

일본국 대마주 태수 습유 평의여 봉서. 조선국 예조대인 합하. 이제 세조 제2선을 보내면서 정관 등광장(藤光長)을 차출하였으니, 앞서의 규범을 바꾸지 마시고 정성스레 접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잘구레한 물품을 별록(別錄)하오니 단지 웃으며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인사하고 갖추지 못합니다.

별폭 : 단목 30근.

일본국 대마주 태수 습유 평의여 봉서. 조선국 예조대인 합하. 이제 세조 제 3선을 보내면서 정관 굴원행(橘源幸)을 차출하였으니 앞서의 규범을 바꾸지 마시고 정성스레 접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자잘구레한 물품을 별록하오니 단지 웃으며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인사하고 갖추지 못합니다.

별폭 : 단목 30근.

회례 예단(禮單)의 회계(回啓)를 전례대로 거행하라고 대조(大朝)께서 계하(啓下)하였으므로 회계(回啓)를 또한 입계(入啓)함.

기사(1749) 4월 초7일

동래부사 정권이 3월 27일에 성첩한 장달(狀達) 내용. 왜관 수리의 공사를 시작한 뒤 당년 8송사를 정지하는 것이 본디 전례인데, 공사 시작의 빠르고 늦음을 아직 또렷이 알지 못하여, 뒤에 추가로 조정하여 장계로 알린다는 뜻은 전 부사 신 민백상이 재임할 때 장계로 알렸는데, 수리하는 재목은 본도에서 방금 마련하여 별목을 허락하였고, 들어갈 재목과 인력 또한 조정에서 이미 구획하여 주었기에, 올해 내로 공사를 시작하겠으니, 금년 조의 8송사는 당연히 전례대로 한결같이 정지하되, 제1, 2, 3선 및 이떼이양, 제4선 등 다섯 송사왜 등은 모두 이미 나왔고, 오직 만쇼잉, 1특송, 부특송 등 3차의 송사왜 등은 미처 나오지 아니하였거니와, 금년과 내년을 막론하고 8송사를 통틀어 감하여 제하면 또한 1년의 송사를 한결같이 정지하는 사례이기로, 금년조로 미처 나오지 않은 3차례의 송사와, 내년의 제1, 2, 3선과 이떼이양, 제4선 등 5차의 송사 등을 대마도에 통보하여 내보내지 말게 하는 일을, 미리 논의하여 확정하라는 뜻으로 임역에게 엄하게 신칙하여 관수왜에게 책망하여 타이르게 하였더니, 방금 바친 훈도 이명윤과 별차 황대중 등의 수본 내용에, “금년 조의 제1, 2, 3선 및 이떼이양 차사는 이미 나왔으나, 만쇼잉부터 내년 제4선에 이르기까지는 정지한다는 뜻으로 관수왜와 서로 약속하고 도중에 통보하였는데, 저쪽의 인정과 태도는 헤아리기 어려움이 있으므로, 짐짓 도중(島中)의 회보를 기다려 다시 수본할 계획이라는 일임.

이번 3월 29일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여 입시하였을 때 전교에 이르기

를, “원래 대리(代理)한 뒤로 무릇 입계(入啓)하고 입달(入達)하는 것을, 승정원에서 그 때의 승지의 뜻에 따라 혹은 입계(入啓)하고 혹은 입달(入達)하니, 이는 부질없이 얼룩덜룩할 뿐 아니라 또한 대리하는 뜻도 아니니, 이 뒤로 용정(戎政:軍事)으로 관계가 대단히 고쳐야 할 것이나 변방에 일이 있는 경우 및 형정(刑政)으로는 일률(一律:사형)에 관계되는 것 및 간혹 일률 가운데 품의하여 감형할 것은 함께 입계하고, 그 나머지는 모두 입달하는 것을 정식으로 하여 시행함.

이는 승전(承傳)을 받지 아니하고, 아래에서 뒤에 상고하기 위하여 찾아내어 베낀 것임.

기사(1749) 4월 14일

비변사의 감결(甘結) 내용. 경상감사의 첩보 내용에, 방금 도부한 비변사의 달하(達下) 관문 내용에, “해당 왜관을 수리할 때의 재목은, 부근에 있는 금송산(禁松山)의 바람에 잎이 져서 절로 마른 소나무 중에서, 들어갈 분량을 헤아려 전례대로 가져다 사용하고, 수리할 때의 물자와 인력은 이번 통신사의 회례은자와 서로 맞바꾼 공목(公木) 가운데 150동(同)을 획급하여 시일에 맞추어 수리하되, 동서 왜관의 수리할 곳을 다시 정할 적에 강직하고 밝은 관원이 신임 부사와 더불어 함께 적간하여, 왜관 건물의 칸 수와 수리할 분량과 들어갈 공사비용을 다시 마련하여 보고하여, 한 푼이라도 낭비하는 폐단이 없게 하며, 이전에 동서 왜관을 전수 수리하거나 서너 곳을 보수한 전례를, 기준으로 대조하기 위하여 등보(騰報)하라”는 일로 관문이 있었는데, 소나무는 관문의 사연대로 소나무가 있는 고을에 차원(差員)을 정하여 거행할 계획이며, 공목도 이제 바야흐로 분표(分俵)하여 구획하고 정식대로 돈으로 거두어서 동래부로 보내라는 뜻으로 관문을 발송하여 신칙하였거니와, 다시 적간하는 것 또한 차원을 정하여 거행하되, 동래부사가 함께 적간하는 것은 국가의 체면이나 사리로 헤아리건대 거행할 수 없는 점이 있으니, 대개 동래부가 비록 하읍(下邑)이나 변방 정세를 주관하고 차왜를 응접하여 체면과 의절이 가볍지 아니하고 무거운데다, 무릇 연청(宴廳)에 왕래할 적에 쌍교(雙橋)를 타고 깃발로 에워싸서 왜주(倭酋)로 하여금 존경하게 하여 꺼리고 놀리도록 하게 하였는지라, 예로부터 동래부사가 수문(守門) 안으로 한 치도 출입하지 아니하였던 것은, 부사를 위하여서가 아니라 실로 변방 관문을 엄중하게 하고 조정을 존중하게 함이었고, 왜관 건물을 수리한 것이 전후로 어찌 한정이 있었겠는가마는, 부사가 친히 가

서 적간하는 것은 들어본 적이 없으니, 이제 이번 신임 부사가 함께 적간하라는 명령은 격식과 사례에 어긋남이 있으므로, 단지 강직하고 밝은 관원인 창원 부사 이덕윤(李德潤)과 본 감영의 군관인 전 군수 윤성오(尹聖五)가 동래부 군관과 더불어 함께 왜관 있는 곳으로 가서 감동역관 및 훈도 별차 등과 더불어 같이 적간하게 하였음. 이제 묘당에서 고쳐 적간하게 하는 것은, 그 의도가 대개 절약하고 줄여서 낭비하지 말게 하는 것인즉, 단지 올봄에 적간한 성책을 가지고 곳곳마다 살펴서 오로지 감쇄하여 줄이는 것을 위주로 하고, 더 수록하지 말라는 뜻으로 엄하게 신칙하여 보냈더니, 방금 도부한 차사원 창원부사의 첩정 내용에, “관문대로 이번 13일에 부사와 감영의 비장 및 동래부 군관과 함께 왜관 있는 곳에 달려가서 수리할 곳을 함께 적간하였는데, 전일 적간할 때 성책을 마련하면서 수리할 곳이라고 탈을 잡았던 곳을 기준하여 의견을 참고 하니, 전일에 밝이 손상된 곳이라고 탈을 잡았던 곳이 또한 누락된 곳이 많으니, 이미 추가로 수록하지 말라는 분부가 있었고, 또한 묘당에서 점검하여 신칙하라는 본뜻이 아니기로 거론하지 아니하고, 단지 성책 가운데 과람한 곳을 감쇄하여 깎는 것을 위주로 하여, 그 장단의 길이를 헤아리고 그 온전하고 썩은 부분을 두드려 보고서 계산해 내니, 혹은 마루와 벽의 판자로 치장한 나무 가운데 수량을 더한 것도 있고, 혹은 기둥 나무를 쪼개어 고치는 가운데 조금 긴 것도 있으므로, 감하고 또 감하였는데, 이는 그 썩고 손상된 가운데 그래도 그다지 심하지 않은 것을 제한 것이고, 그 감쇄하여 줄인 수량으로는 기둥과 서까래, 판틀[板機]과 산자[帶櫺]를 아울러 6주(株:그루)이다”라고 첩보하였음. 전일 적간한 성책 가운데 재목과 기와의 다수가, 당초 적간한 것이 정밀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수리한 햇수가 오래되었으므로 손상이 매우 많았고, 또 두 왜관을 아울러 거론하였으므로 재목과 기와가 또한 많았는데, 이제 또 별도로 차원을 정하고 감영의 비장을 가려 보내어 일일이 대조하게 하였더니, 썩고 손상된 재목으로 처음 적간한 데 들어가지 아니한 것이 또한 많이 있지만 이제 짐짓 따지지 아니하고, 그 당초 적간하여 탈을 잡은 것 가운데 칫수와 척도를 되도록 깎아서 줄인 것이 단지 6주이니, 당초 적간할 적에 정밀하게 살폈음을 추리하여 알 수 있겠음. 계묘년(1723)과 병오년(1726) 조의 등록을 상세히 살펴 보니, 서관 941칸을 수리할 때 들어간 철물과 기와 공사의 비용이 16,000 냥에 이르고, 동관 200칸에 들어간 물자와 인력이 7,480 냥인 바, 올봄에 적간할 때 손상된 곳이 이미 두 해보다 더하고, 재목과 기와가 두 해보다 많으니, 들어갈 물자와 인력이 많이 증가해야 하는데, 왜관 건물을 수리함에는 절로 달수의 기한이 있어서, 동관(東館)은 여섯 달이고 서관은 다섯 달로 한정하였으나, 조정

에서 당초에 계산하여 줄 적에는 단지 달수로만 인준하였으나, 등록을 살펴보니 당초 가격을 정한 것이 매양 부족하여 뒤에 수시로 추가하여 지급한 것이 한두 번에 그치지 아니하였고, 이전에는 간혹 저치미와 돈과 베로 넉넉한 수량을 확대(劃貸)하여, 임역 들로 하여금 본전을 두고 이자를 취하여 책응(策應)하게 하였는데, 이번에는 이미 통신사가 교환하여 감한 공목 150동을 획급하였으니, 우선 이것으로 달마다 안배하여 가져다 사용하여 공사를 마치도록 독려함이 일에 적합할 뿐 아니라, 비록 이전의 등록을 참조하여 새로 더 들어갈 수량을 추산하더라도, 재목을 깎는 기일의 빠르고 늦음과 일꾼들의 많고 적음을 이미 미리 헤아릴 수 없으니, 굳이 억측하여 헤아려서 단단하게 고정하는 것은 부당하며, 또한 들어갈 비용의 다소는 오직 공사 감독의 부지런하고 태만함에 따르는 것이니, 역관들이 손에 일임하여 한정 없이 시일을 끌어 재력을 소모하여서는 불가하고, 비록 앞으로 비용이 얼마가 될 지 알수 없지만, 150동의 공목이 이미 적지 아니한데, 이제 다시 더 마련하여 낭비하는 길을 열어둘 필요가 없으니, 짐짓 이것으로 비용을 지탱하게 하고, 동래부에 신칙하여 관장하여 살피고 공사를 독려하게 하여, 혹시라도 시일을 허비하지 않도록 하여, 천천히 앞으로 일의 형세를 살피며 조처한다면, 이것이 절약하여 줄이는 긴요한 방법임. 왜관 건물의 칸수는 왜인의 방옥(房屋)의 제도에는 경사지고 굽은 곳이 매우 많아서 간혹 조정의 정식과 서로 어긋나는 것이 없지 않지만, 건물의 대체는 이미 더 크게 할 일이 없으니, 재목과 기와 또한 더 들어갈 염려가 없고, 적간하여 탈을 잡은 수효가 이미 초봄의 보고한 정책에 기재되어 있으니, 이제 다시 적간한 것이 비록 대여섯 주 감손된 것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재력의 가감에 관계됨이 있기에는 부족하므로 별도로 정책을 만들지 아니함. 동서 왜관 건물을 일시에 함께 거행하는 것은 원래 전례가 없으므로 등록을 만들어 올리지 못하고, 계묘년(1723) 병오년(1726) 두 해의 등록을 덧붙여 적어 뒤에 붙여 올려 보내는 일임.

비변사의 제사(題辭) 내용: 이전에 왜관을 수리하는 물자와 인력을 획급한 수효가 비록 많았으나, 모두 본전을 두고 이식을 취하였던 것인데, 이번에는 한편으로는 150동의 공목을 그냥 지급하니, 이전에 본전을 두고 이식을 취하였던 때에 비하면 여유가 있지 부족함이 없어서 앞으로 결단코 더 지급할 이치가 없으며, 공사를 마치는 것이 이르거나 늦음은 오로지 감독하고 신칙하는 것이 부지런한가 태만한가에 달려 있고, 임역들이 전례가 있다고 하면서 감독하여 신칙하지 아니하고 오직 날짜를 연기하는 것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들어가

는 물자와 인력을 대어주기 어려운 것이 오로지 여기서 말미암는데, 이번에는 이미 비용을 더 얻을 길이 없으니 밤낮으로 엄하게 독촉하여 급속히 공사를 마치라는 뜻으로 임역 등에게 신칙하고, 감영에서 수시로 사람을 보내어 적간하여 점검하고 신칙하도록 함이 마땅한 일임.

후록 : 동래 왜관의 계묘년(1723) 서관 수리 때의 물자와 인력을 마련한 등록. 서관 3대청 5행랑 도합 941칸 수리에 들어간 재목 765주 반. 전 1,000냥. 기와 100눌(訥) 값 2,800냥. 역군 14,000명, 1명에 2전씩 5개월 분배하기 위한 비용 900냥. 왜목수 10명, 1명에 매일 6전씩 5개월 비용 1,200냥. 왜인 조역군(助役軍) 20명, 1명에 매일 4전씩 5개월 비용 450냥. 우리나라 목수 10명, 1명에 매일 3전씩 5개월 비용 750냥. 왜인 인거장(引鉅匠) 10명, 1명에 매일 5전씩 5개월 비용 100냥. 신철(薪鐵) 20부리(夫里)의 가격 1부리에 5냥씩 360냥. 재목을 벌목꾼 400명, 1명에 매일 2전씩 3일 비용 900냥. 격군 300명, 1명에 매일 1전씩 3일 비용 27냥. 야장(冶匠) 3명, 1명에 매일 2전씩 1개월 비용 36냥. 숯 60섬 1섬 6전씩 100냥. 감동차비왜(監董差備倭)의 음식 값 96냥. 기와장 8명, 1명에 매일 4전씩 1달 비용 50냥. 쥬[藁草] 값 50냥. 생첩[生葛] 값 30냥. 거적[草蓆] 값 30냥. 새끼줄[藁索] 값 20냥. 대나무[篁竹] 값 1,551냥. 각종 짐값[駄價]과 부대 비용 값. 이상 10,000냥. 당초 마련함. 또 3,000냥을 추가 지급. 또 3,010냥 7전 2푼 추가 지급. 도합 16,010냥 7전 2푼.

이번 수리의 적간할 때 기와와 철 등의 물건은 일일이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한결같이 계묘년(1723) 등록에 의거하여 마련하였고, 재목에 있어서는 계묘년(1723)에 비하여 184주가 추가되었음. 대저 왜관 건물을 수리할 때 들어가는 재물과 인력은 오직 재목과 기와의 다소와 공사의 많고 적음에 달려 있으니, 재목과 기와와 공사가 많으면 재물과 인력이 따라서 많아지고, 재목과 기와와 공사가 적으면 재물과 인력이 따라서 적어지는데, 계묘년(1723) 수리할 때의 등록으로 그 공사 및 재목과 기와의 수효를 살펴보고, 또 그 지출된 비용을 계산하면 도합 16,010냥 7전 2푼임. 이번에는 예전 재목이 파손 손상된 것이 해가 오래되었으므로 계묘년(1723)보다 많지 않을 수가 없고, 파손 손상된 것이 많으면 재목을 그에 따라 추가하지 않을 수가 없고, 재목이 이미 추가되면 공사 비용의 돈도 또한 따라서 추가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지금으로서는 추가될 것이 계묘년(1723) 등록으로 참조하여 추산하여 마련하면 그 수효가 많아서 결코 일시에 획급하기가 불가하고, 또한 재목을 깎아내는 속도의 빠르고 늦음과 일꾼의 많고 적음을 이미 미리 헤아릴 수가 없으니, 짐짓 억측하여 고

정하여 확정하는 것은 부당한데, 그 마련한 것이 혹 너무 지나치면 새어나갈 우려가 있고, 혹 너무 깎아버리면 또한 공사를 완공할 수가 없으니, 일꾼의 많고 적음은 오직 동역(董役)의 부지런하고 태만함에 따를 것임. 조정에서 이제 이미 재물과 인력을 헤아려 지급하였으니, 먼저 동래부사에게 공사를 관할하고 감독하여 혹시라도 시일을 허비하며 버티지 않도록 신칙하고 천천히 일의 형세를 살펴 조처한다면 이것이 절약하고 줄이는 도리가 될 것임.

병오년(1726) 동관 수리할 때의 재물과 인력을 마련한 등록. 동관 관수재판의 집과 일대관의 개시대청 도합 204칸을 수리할 때 들어간 재목 236주 반. 전 400냥. 기와 40눌 값 2,160냥. 역군 10,800명, 1명에 매일 2전씩 6개월 분배하기 위한 비용 156냥. 왜목수 7명에게 매일 6전씩 6개월 비용 720냥. 왜인 조역군 10명, 1명에 매일 4전씩 6개월 비용 378냥. 우리나라 목수 7명, 1명에 매일 4전씩 6개월 비용 720냥. 왜인 인거장 8명, 1명에 매일 5전씩 6개월 225냥. 재목 별목꾼 250명, 1명에 매일 3전씩 3일 비용 240냥. 재목 운반꾼 400명, 1명에 매일 2전씩 3일 비용 60냥. 재목 선운(船運) 격군 200명, 1명에 매일 1전씩 3일 비용 18냥. 야장 2명, 1명에 매일 3전씩 1개월 비용 24냥. 숯 40섬 1섬 6전씩 120냥. 감동차왜의 음식 비용 24냥. 기와장 4명, 1명에 매일 4전씩 15일 비용 15냥. 짚 값 25냥. 생취 값 25냥. 초거적 값 10냥. 새끼줄 10냥. 대나무 값 50냥. 신철 10부리 값 1,020냥. 각종 짐값과 잡물 부대 비용. 이상 전 7,000냥, 또 3,441냥 1전 1푼. 도합 전 1,441냥 1전 1푼 내에서 2,959냥 8전 6푼은 기유년(1729)에 동래부사의 조사 장계로 말미암아 해조에서 되돌려 징수함. 실제로 들어간 돈 7,481냥 2전 5푼.

이번에 적간할 때 기와와 철 등의 물건은 한결같이 병오년(1726) 등록에 의거하여 마련하였고, 재목에 있어서는 병오년(1726)의 102주에 비교하면 그 공사의 많고 적음은 곧바로 확정하지 못하나 서관과 다름이 없고, 그 가운데 동관의 칸 수가 서관에 비하여 배만 줄어든 정도가 아닌데도, 공사를 달로 배당한 것은 서관에 비하여 1개월이 추가되었는데, 이는 대개 동관이 관수(館守) 등의 여러 왜인이 항상 머무르는 장소인지라, 일을 할 즈음에 그 수리를 십분 정밀하게 하였으므로 자연히 오래 버텼고, 서관은 곧 객관(客館)이므로 정밀하게 하는 것은 동관보다 덜함이 있었기에, 그래서 동관의 칸 수가 비록 서관보다 적지만 달 수의 배당이 서관보다 더하였던 것임.

기사(1749) 5월 초10일

경상우수사 장태소가 4월 29일에 성첩한 장계 내용. 운운하였는데, 동 왜선 1척은 이미 다대포로 건너보냈거니와, 무릇 우도로 표류한 왜선이 반드시 곧바로 건너려고 하면 호송장이 전례에 의거하여 다투어 잡아서 차례차례 영솔하여 부치는 것이 본디 사목(事目)이지만, 다만 왜인의 큰 배가 순풍을 만나 뜻을 올려 곧바로 건너면, 영솔하여 호위하던 작은 배로서는 다투어 잡지 못하는 것은 형세가 혹 그럴 듯하고, 큰 바다의 바람과 파도에 뜻대가 모두 부러져서 노를 저어 전진한다면 일시 뒤쳐지는 것은 또한 이상한 일이 아니로되, 이미 곧바로 건널 적에 다투어 잡지 못하는데다 또 영솔 호송하여 교부하지 못하였으니, 변방 정세를 중시하여 후일을 징계하는 도리에 있어서 그냥 두기가 불가하기로, 동 호송장 옥포만호 김진성(金振聲)을 신의 수영에 잡아와서 엄중하게 곤장을 쳐서 후일을 징계한 일임.

기사(1749) 6월 초9일

동래부사 정권이 6월 초1일에 성첩한 장달 내용. 이달 초1일에 도부한 훈도 이명윤과 별차 황대중 등의 수본 내용에, “지난 초하루 동서 왜관 건물 여러 곳을 부산진 감색과 더불어 같이 적간하였는데, 비가 새는 곳은 각 진포로 하여금 비록 이미 지붕을 덮게 하였으나, 그 밖의 파손된 곳은 이전과 다름이 없다”는 수본에 의거하여, 속히 보수하라는 뜻으로 다시 더 신칙하였음. 왜관을 수리하는 공사를 시작한 뒤로 8송사를 정지하는 것이 본디 전례인데, 올해 안으로 공사를 시작하면 금년조 8송사는 일체 정지하여야 마땅하나, 5송사는 모두 이미 나왔고 오직 3송사가 미처 나오지 않았으니, 금년과 명년을 따지지 않고 8송사를 통틀어 계산하여 감한다면 또한 1년 송사를 일체 정지하는 사례가 되겠기로, 올해 조의 미처 나오지 않은 3송사와 내년조의 제1, 2, 3선과 이때이양, 제4선 등 5송사 등을 내보내지 말라는 일로, 관수왜와 미리 따져 확정하라는 뜻으로 임역에게 엄하게 신칙하였거니와, 관수왜와 서로 약속하여 도중에 통보하고, 회보를 기다려 다시 수본하겠다고 한 것은 전에 이미 치달(馳達)하였는데, 방금 바친 훈도 이명윤과 별차 황대중 등의 수본 내용에, ‘관수왜의 말이 동서 왜관 건물을 수리할 때 전례에 따라 8송사를 정지하는 일이 있으므로 도중에 통보하였더니, 지난번 비선 편에 금년 1특송사에서부터 명년 제4선 송사까지 정지한다고 하였으며, 정지하는 서계는 이 뒤의 선편에 나왔다고 하였다’ 하기로 연유를 수본한다’ 하였는바, 금년 1특송사로부터 명년 제4선 송사까지 도합 8송사를 이미 정지하고, 동 정지 서계(書契)가 오래지 않아 마땅히 나

올 것인데, 그것을 바치기를 기다려 받아서 해조로 올려 보낼 계획이라는 연유의 일임.

기사(1749) 7월 초4일

동래부사 황경원(黃景源)⁴⁰이 6월 26일에 성첩한 장달 내용. 신은 이달 25일에 전 부사 신 정권(鄭權)과 본부 십휴정(十休亭)에서 교인(交印)한 뒤에 그대로 도임하였음. 기장 무지포에 정박한 왜인의 큰 배 1척은, 그 배가 관소로 돌아와 정박한 뒤에 다시 문정하여 신문(申聞)하겠다는 연유는 전 부사가 재임할 때 이미 치달하였는데, 23일 신시에 도부한 부산첨사 이사선의 치통 내용에, “방금 접한 현감의 치통 내용에, 무지포에 정박한 왜인의 큰 배 1척이 오늘 묘시에 출발하여 사시에 영솔하여 관소에 부쳤다는 치보에 의거하여, 즉시 훈도 이명윤과 별차 황대중 등에게 명하여 문정한 수본 내용에, ‘갑자조 제14선에 격왜 20명, 중금도왜 3인, 하대왜 1명 등이 함께 타고, 노인 및 공작미를 실어가졌는데, 돌아 들어가다가 바람에 표류한 연유는 별차의 문정 가운데 이미 치보하였으며, 동 왜선은 관소에서 점검한 뒤에 그대로 출발하여 돌아 들어갔다’고 하였다” 함. 24일 오시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올해 3월 29일에 나왔던 비선에 두왜 1인, 격왜 6명, 올해 2월 14일에 나왔던 중금도왜 1인, 소금도왜 1명 등이 함께 타고, 관수왜의 사서를 가졌으며, 올해 4월 초1일에 나왔던 비선에 두왜 1인, 격왜 6명, 올해 정월 19일에 나왔던 별금도왜 1인, 소금도왜 1명, 올해 3월 29일에 나왔던 하대왜 1인 등이 함께 타고, 별대관왜의 짐을 실어가지고 오늘 진시에 발선하여 돌아 들어갔다”고 하였음. 25일 오시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어제 나왔던 분간되지 않는 배 1척은 과연 왜인의 큰 배로, 오늘 자시에 영솔하여 관소에 부쳤다고 치보하였으며, 방금 접한 훈도 별차의 등의 수본 내용에, ‘어제 밤에 관소에 도착한 왜인의 큰 배는 밤이 깊어 문정하지 못하다가 오늘 아침에 가서 문정하였더니, 도중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고 갑자조 부특송사 2호가 재차 건너온 배인데 격왜 30명, 판장관왜(判掌館倭) 1인, 서기왜 1인, 종왜 12명, 교대차 나온 중금도왜 2인, 소금도왜 2명 등이 함께 타고, 노인 및 어유 3통을 실어가지고 공작미를 실어가기 위하

40) 황경원(黃景源; 1709-1787) : 자는 대경(大卿), 호는 강한(江漢), 장수인(長水人)이다. 영조 16년(1740) 증광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거쳐 영조 25년(1749)에 동래부사로 부임하였으며, 양관 대제학을 지내고 정조 때 중추부판사를 역임하였다.

여 나왔는데, 그 배가 재차 건너온 것은 규정 외이기로, 소지한 노인은 물리쳐 받지 아니하고 속히 들여보내라는 뜻으로 관수왜에게 책망하였다' 하였는바, 이른바 판장판왜가 무슨 일로 나왔는지, 그 곡절을 문정 가운데 거론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훈도 별차에게 물어 조사하라 하였다" 함. 같은 날 신시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방금 접한 훈도 별차 등의 수본 내용에, '위의 판장판왜가 하는 일의 곡절을 따져 물었더니, 동 왜인의 말이 「매매하는 일로 상인들과 상의할 일이 있어서, 저희 대마주 태수의 명을 받들고 나왔다」고 하거늘, 또 물어 말하기를, 「볼 일이 있어서 나왔다면 당초 문정할 때 어찌하여 이야기하지 않았는지 일이 매우 해괴하다」고 하였더니, 답하기를 「멀미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여 진작 말하지 않은 죄를 면하기 어렵다」고 하였는바, 동 왜인이 하는 일의 곡절을 문정할 때 당초에 거론하지 않다가, 이렇게 조사하여 묻는 일이 있게 되어 황공함을 견디지 못한다」고 하였다"고 치통한다 하였음. 위의 규정 밖에 나온 왜선은 속히 되돌려 보내라는 뜻으로 다시 역관들에게 명하여 관수왜에게 책망하여 타이르게 하였거니와, 이른바 판장판왜는 매매하는 일로 올해 2월에 나왔다가 4월에 죽었는데, 이제 또 나온 것임. 상역의 피집 물화 값으로 은 3,500 냡을 이달 23일 개시에 받아내었으며, 당년조 이페이양 송사 및 제4선 송사와 등의 상선연은 행하지 아니하고 건물을 받기를 원한다는 훈도 별차 등의 수본에 의거하여, 이번 24일 동 상선연에 사용될 잡물을 그들이 바라는대로 수량을 대조하여 들여준 일임.

기사(1749) 7월 25일

동래부사 황경원이 7월 18일에 성첩한 장계 내용. 이달 초9일 신시에 도부한 부산첨사 이사선의 치통 내용에, "방금 바친 훈도 이명윤과 가별차 한정석(韓正錫) 등의 수본 내용에, '관왜 등의 조상 분묘가 구관 뒷산에 있는데, 이제 백중절을 당하여 전례대로 가서 살피겠다고 운운하였다'는 수본에 의거하여, 왜인들이 왕래할 때 함부로 뒤섞이지 못하도록 하라는 뜻으로 훈도 별차 등에게 신칙하고 연유를 치통한다" 하였음. 17일 오시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올해 5월 25일에 나왔던 비선에 두왜 1인, 격왜 6명과 올해 3월 23일에 나왔던 중금도왜 1인 등이 함께 타고, 관수 재판왜의 사서를 가졌으며, 올해 5월 25일에 나왔던 비선에 두왜 1인, 격왜 6명, 정묘년(1747) 11월 26일에 나왔던 별대판왜 1인과 올해 4월 초1일에 나왔던 별하대왜 1명 등이 함께 타고, 별

대관왜의 짐을 실어가지고 오늘 진시에 발선하여 돌아 들어갔다는 훈도 별차 등의 수본 및 봉군 등의 진고에 의거하여” 치통하는 일임.

이번 7월 17일에 대신과 비국 당상이 시좌(侍坐)하여 입대(入對)하였을 때, **영의정 김재로가 진달하기를**, “이것은 동래부사 정권의 장달(狀達)입니다. ‘왜관을 수리할 때 8송사를 정지하고, 그들이 서계를 바치기를 기다려 받아서 해조로 올려 보낼 계획이라는 일은 전에 이미 치달하였는데, 이제 대마도 봉행이 대신하여 서계를 바친 것은 매우 외람되고 도를 넘는 일이므로, 등록을 가져다 살펴보니, 경진년(1700)과 계묘년(1723) 두 해에 왜관을 수리할 때, 8송사를 정지하는 일로 봉행 등이 본부에 서찰을 바쳤고, 기해년(1719)과 무진년(1748) 두 해에 통신사가 바다를 건너감으로 인하여 8송사를 정지하였을 때, 봉행 등이 또 본부에 서찰을 바치자, 조정에서 특별히 받도록 허락하여, 본부에서 곧장 대마도주에게 답장을 하였는데, 이번에 봉행 등이 감히 전례로 끌어와서 또 서찰을 바쳤으니, 만약 엄한 말로 물리치면 반드시 다투어 고집하는 우려가 있을 것이고, 계묘년(1723)의 등록에는 봉행 등의 성명 아래에 각각 도장을 찍었으나, 이번 이 서계에는 봉행 3인이 성명을 나열하여 적고는 단지 큰 도장 하나에다 「대마주봉행장(對馬州奉行章)」이라 새긴 것을 세 사람의 성명 위에다 눌러 찍어서 대마도의 서계인양 한 것은, 크게 격식과 전례에 어긋나므로 되돌려 내려 보내어 책망하고 타일러 물리치게 하였더니, 관수왜의 말이 「바쁜 가운데 전례를 알지 못하고 대충 바친 것은 매우 황공하니, 이 뒤의 선편에 들여보내어 고쳐 바치겠다」고 하기에, 그들이 고쳐 바치면 받아들일지의 여부를 묘당에 명하여 품의 조처해 달라’ 하였습니다. 대개 도주의 서계는 피차간에 모두 예물이 있는데, 작은 폐단이 없지 아니하므로 이전부터 이렇게 대신하여 바치는 일이 있었으나, 비록 그렇지만 당초에 만약 도주의 서계로 고쳐 받아 오게 하였으면 좋았을 것이지만, 선편이 들어간 지 이미 오래되어 안될 듯하고, 이제 만약 서계를 고쳐 써 와서 전례대로 한결같이 각기 이름 아래 각기 도장을 찍었으면 경진년(1700)과 계묘년(1723) 등의 사례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무방할 듯하니, 이렇게 해당 동래부에 분부함이 어떠할지?” 하였는데, 왕세자께서 “그대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기사(1749) 8월 초9일

비변사에서 계목을 첨부하기를, “이 동래부의 전 부사 정권의 장계를 보면, ‘감시군관(監市軍官)의 말을 들으면, 잡상(雜商)이 모두 왜방(倭房)에 들어가서 사사로이 서로 매매한다 하였는바, 국가에서 왜방에서 매매하는 것을 일죄(一罪)⁴¹⁾로 논하는 것은 국가의 비밀스런 일을 누설할까 우려하여서이니, 이는 실로 금지 조목 가운데 제일 긴요한 것이므로, 여러 가지로 책망하여 타일러 누차의 개시(開市)에 모두 금령을 준수하여 폐단없이 교역하게 하였는데, 지금 이후로 만약 금령을 범하여 몰래 왜방에 들어가는 자가 있으면, 피차간에 본 법률에 의거하여 시행하며, 훈도와 별차 및 수문장(守門將)과 수통사(首通事) 등은 경중에 따라 분명하게 법률 조문을 정한 뒤에라야 영구히 준행할 수 있겠으니, 묘당에 명하여 품의 확정하여 지휘해 주실 것. 본부의 양역(良役)의 폐단은 더욱 심하여, 양역의 액수(額數)를 양민(良民)의 인구 수효에 비교하면 양민의 인구 수가 3,913명이나 부족하므로, 1인이 항상 두 가지 역이나 심하게는 서너 가지 역을 겸하여, 매번 군포(軍布)를 거둘 적에 이웃과 일족이 침범을 당하여 온 경내 사람들이 고통을 받으니, 특별히 묘당에 명하여 도신에게 분부하여 참작해서 양민 장정에 여유가 있는 고을로 옮겨 정할 것. 본부의 유황군(硫黃軍) 457명에게 세수(歲首)에 군포 1필을 거두어 장사(將士)의 요포(料布)로 지급하고, 여유를 조금 남겨서 그것으로 성첩(城堞)을 수선하는 비용으로 삼아, 그 용도가 매우 긴요하고 관계 또한 중대한데, 엿드려 살펴보니 사정간책(查正刊冊)에는 감하여 깎은 것이 많게는 157명이나 되니, 국방의 요충지에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이 이렇게 소홀해서야 되겠습니까? 줄여놓은 유황군을 이전대로 복설할 것. 본부의 다섯 곳 봉대(烽臺)에 각기 별장(別將)을 두어 5인이 5일을 기한으로 돌아가며 번을 서는 것이 고을에서 전해오는 오래된 규정인데, 간책(刊冊) 가운데는 다섯 봉대에 5인만 남기고 그 나머지 20인을 줄였으니, 이찌 한 봉대에 한 사람만으로 그치겠습니까? 만약 오고 가면서 살피는 것으로 그치게 한다면 막중한 선박 관측과 거화(擧火) 등의 일을 전혀 군졸들에게 맡겨서 무한하게 깊은 고통⁴²⁾이 있게 되고, 번을 서게 하자면 늘 봉대에 있으면서 늙어죽도록 끝내 교체될 날이 없을 것이라 결코 행할 수가 없으니, 봉대 별장 각 5인 도합 25인을 이전대로 그대로 둘 것’이라 하였는바, 왜방에서 매매하는 것은 이미 본디 법률이 있으니, 훈도 이하는 각자 당연히 그 다음을로 시행하여 그 때마다 품의 조처하면 되지 별도로 법률을 정할 필요가 없

41) 일죄(一罪): 제1등급의 중죄로 사형과 같은 중형의 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

42) 원본의 ‘심통(深通)’ 두 글자는 문맥상 의미가 통하지 않아, 여기서는 ‘심통(深痛)’의 오기로 보고 해석하였다.

으며, 군액(軍額)을 옮기는 일 및 유황군 157명을 다시 복설하는 일은, 양총(良摠)을 이미 반포한 뒤에 계속하여 가감하는 것이 부당하니 그냥 둘 것이며, 봉대별장의 일은 당초 사청(查廳)에서 한결같이 우도의 사례대로 감액하였으나, 만약 장애가 생기는 사단이 있으면, 본도 군정(軍丁) 수효에서 약간 착오가 있는 곳은 본도의 순영(巡營)에서 지금 바야흐로 보충하여 바로잡고 있으니, 일체 편의대로 고쳐 바로잡는 일로 도신에게 분부함이 어떠할지?” 하였는데, 건륭 14년(1749) 8월 초8일 좌부승지 신 윤(尹)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함.

기사(1749) 8월 17일

동래부사 황경원이 8월 초10일에 성첩한 장달 내용. 이달 초1일에 도부한 훈도 이명윤과 가별차 한정석 등의 수본 내용에, “지난 초하루 동서 왜관 건물 여러 곳을 부산진 감색과 더불어 같이 적간하였는데, 비가 새는 곳은 각 진포로 하여금 비록 이미 지붕을 덮게 하였으나, 그 밖의 파손된 곳은 이전과 다름이 없다”는 수본에 의거하여, 속히 보수하라는 뜻으로 다시 더 신칙하였음. 초9일 술시에 도부한 부산첨사 이사선의 치통 내용에, “방금 접한 훈도 별차 등의 수본 내용에, ‘관왜 등의 부조(父祖) 분묘가 구관 뒷산에 있는데, 이제 추사일(秋社日)을 당하여 예전 사례대로 성묘하러 간다’는 수본에 의거하여, 별차와 소통사 등이 데리고 영솔하여 내왕하여 함부로 횡행하지 말라는 뜻으로 전령하여 신칙하였다”는 일임.

기사(1749) 9월 13일

동래부사 황경원이 9월 초5일에 성첩한 장달 내용. 이달 초4일 오시에 도부한 부산첨사 이사선의 치통 내용에, “올해 6월 초8일에 나왔던 비선에 두왜 1인, 격왜 6명, 올해 4월 18일에 나왔던 중금도왜 1인 등이 함께 타고, 관수 재판왜 등의 사서를 가졌으며, 올해 6월 26일에 나왔던 비선에 두왜 1인, 격왜 6명, 무진년(1748) 2월 초9일에 나왔던 별대관왜 1인, 올해 4월 초7일에 나왔던 별대관왜 등이 함께 타고, 별대관왜의 짐을 실어가지고, 도합 2척이 당일 진시에 곧바로 관소에서 발선하여 돌아 들어갔다는 훈도 이명윤과 별차 한창주(韓昌周)⁴³⁾ 등의 수본 및 봉군이 진고하였다” 고 하였음. 방금 바친 훈도 별차 등

의 수본 내용에, “지난달 동서 왜관 건물 여러 곳을 부산진 감색과 더불어 함께 적간하였는데, 비가 새는 곳은 각 진포로 하여금 비록 이미 지붕을 덮게 하였으나, 그 밖의 파손된 곳은 이전과 다름이 없다”는 수본에 의거하여, 속히 보수하라는 뜻으로 다시 더 신칙하였으며, 상역 등의 피집 물화 값으로 은 8,000 냥을 지난달 16일 별개시(別開市)에서 받아내었다는 연유의 일임.

기사(1749) 9월 20일

동래부사 황경원이 9월 12일에 성첩한 장달 내용. 이달 초5일 신시 쯤에 조선 배인지 왜선인지 분간되지 않는 배 1척이 물마루에서 나온다고 봉군이 진고하였는데, 추가로 접한 부산첨사 이사선의 치통은 한가지이나, 초탐장을 정하여 보낸다고 하였음. 초6일 자시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어제 나왔던 분간되지 않는 배 1척은, 겨우 오류도 바깥 바다에 이르러 바람이 시들하고 해가 저물어 전진하지 못하고 등불을 들어 머뭇거리는 모습이 있는 듯하였는데, 밤이 깊어지고 불빛이 점차 사라져서 끝내 향한 곳을 모른다는 봉군의 진고에 의거하여, 엄하게 신칙하였다”고 하였음. 같은 날 오시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어제 오류도 바깥 바다에 머물던 분간되지 않는 배 1척은, 밝기를 기다려 상세히 관측하니, 물마루 주변에 떠서 머물다가 바람과 물이 모두 거슬러 좌도로 향한다고 봉군이 진고하였으며, 일시에 도부한 초탐장의 치통 내용에, ‘위의 분간되지 않는 배는 그대로 좌도로 향하기에 초탐하지 못하였다’고 운운하였는데, 동 배가 정박한 곳을 상세히 탐지 문정하여 빨리 보고하라는 뜻으로, 별차 한창주에게 엄하게 신칙하여 정하여 보낸다”고 하였음. 같은 날 유시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진시에 분간되지 않는 배 2척이 물마루 밖에서 표류하여 오는데, 과연 왜인의 큰 배 1척과 비선 1척이 당일 사시에 현 경내의 무지포 앞바다에 정박하였으므로, 현감이 같은 곳에 달려가서 땀감과 물을 전례대로 들여 주고 수호한다는 기장현감의 치통에 의거하여, 연유를 치통한다” 운운 하였음. 초7일 묘시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방금 접한 좌수영에서 차출하여 보낸 초탐장의 치보 내용에, ‘좌도 경내로 표류하여 향한 왜선을 초탐하기 위하여, 이번 초6일 신시 쯤에 기장 무지포로 달려갔더니, 왜인의 큰 배 1척과 비선 1척이 과연 정박하였거늘, 동 현의 현감과

43) 한창주(韓昌周) : 청주한씨로 자는 성재(盛哉)이다. 영조 5년(1729) 식년 역과에 왜학으로 합격하여 봉사(奉事)를 역임하였다.

더불어 같이 수호한다'는 치보에 의거하여 치통한다" 하였음. 같은 날 해시에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기장현감의 치통 내용에, '무지포에 정박한 왜인의 큰 배 1척과 비선 1척에, 별차가 소통사 2명을 데리고 이번 초6일 유시에 도착하여 문정한 뒤, 별차 및 소통사 1명은 되돌아가고 1명은 영술 예인하기 위하여 뒤쳐졌고, 문정한 사연은 별차의 수본에 있으며, 양식과 반찬, 땀감과 물은 전례대로 들여 주고 수호한다' 하였으며, 일시에 도부한 별차의 수본 내용에, '전령에 의거하여 이번 초6일 유시에 기장현 무지포로 달려갔더니, 왜인의 큰 배 1척과 비선 1척이 과연 표류하여 정박하였거늘, 문정하였더니 도중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고, 당년조 3특송사 1호선에 격왜 40명, 교대차 나온 중금도왜 1명, 하대왜 1명 등이 함께 타고 노인을 가지고 공작미를 실어가기 위해 나왔는데, 동 왜인들의 말이, 「저희들이 탄 배 1척은 이번 초5일 이른 아침에 대마도에서 발선하여 곧바로 관소로 향하다가, 겨우 물마루에 이르러 바람이 시들하고 해가 저물어 전진할 수 없어서, 바다 가운데서 밤을 지낸 뒤 초6일 사시 쯤에 표류하여 이곳에 도착하였다」고 운운하였으며, 비선 1척에 두왜 1인, 격왜 5명, 교대차 나온 중금도왜 1인, 하대왜 1명 등이 함께 타고 노인 및 관수 재판왜에게 보내는 사서를 가지고 나왔는데, 동 왜인들의 말이 「이번 초5일 이른 아침에 큰 배 1척이 먼저 발선하고, 저희들의 비선은 같은 날 오시에 대마도에서 발선하여, 곧바로 관소로 향하다가 물마루에 이르지 못하여, 바람이 시들하고 해가 저물어 향할 바를 모르고 바다 가운데서 밤을 지낸 뒤, 그대로 표류하여 초6일 사시 쯤에 이곳에 정박하였다」고 운운하였는데, 관소로 돌아와 정박한 뒤에 다시 문정할 계획이라' 운운 하였다" 함. 초8일 자시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무지포에 정박한 왜선은 초7일 묘시에 출발하여 폐단없이 경내를 지나갔다고 기장현감이 치통하였으며, 동 왜선 등이 오륙도 앞바다에 이르러 바람과 물이 모두 거슬렸으나, 비선은 체구가 작으며 가볍고 민첩하여 먼저 전진하였으므로, 데려 온 병방군관(兵房軍官) 임지엽(林枝葉)을 시켜서 초7일 유시에 영술하여 관소에 부쳤고, 큰 배는 질이 둔하여 뒤쳐졌기로 가장(假將)이 영술하여 관소에 부친다고 치보하였으며, 위의 먼저 도착한 비선에 훈도 별차 등이 관소로 가서 문정한 사연은, 당초 무지포로 표류하였을 때 별차가 혼자 가서 문정한 것과 다름이 없고, 소지한 노인 1통을 받아 올려 이전대로 보내며, 방금 접한 훈도 별차 등의 수본 내용에, '표류한 왜인의 큰 배 1척이 술시에 관소로 되돌아왔으나 수문이 이미 닫혀 내일 문정할 계획이라 하였다'고 치통한다" 하였음. 같은 날 인시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이번 초7일 술시 쯤에 분간되지 않는 배 2척이 물마루 밖에서 표류하여, 1척은 남천

(南川) 앞바다로 향하기에, 문정하기 위하여 출사역관(出使譯官)을 성화같이 정하여 보내라는 뜻으로 훈도에게 전령하였다” 하였으며, 일시에 도부한 동 첨사가 또 치통한 내용에, “어제 밤에 추가로 도착한 표류한 왜선 1척에, 훈도가 오늘 아침 왜관에 가서 문정한 수본의 사연은, 무지포에 표류하여 정박하였을 때 별차가 문정한 내용과 다름이 없는데, ‘술 3통을 실어가졌으며, 소지한 노인 1통은 받아서 올려 보냈기에, 이전대로 보낸다’는 연유로 치통한다” 하였음. 같은 날 미시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방금 접한 훈도의 수본 내용에, ‘전령에 의거하여 남천에 표류한 왜선에 문정하기 위하여 출사역관 한정석을 차출하여 보낸다’고 하였으며, 일시에 도부한 기장현감의 치통 내용에, ‘등불이 저절로 꺼져서 향하는 곳이 분간되지 않는 배 2척을 밤새워 관측하였더니, 1척은 날이 밝은 뒤에 물마루 밖에서 표류하여 모습을 나타내었고, 1척은 시력이 미치는 곳에는 끝내 표류한 형적이 없다’고 하였다” 함. 같은 날 유시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남천에 표류한 왜인의 큰 배 1척에, 별차가 소통사 2명을 데리고 당일 진시에 달려가서 문정한 뒤, 별차 및 소통사 1명은 되돌아가고, 1명은 수호하기 위하여 뒤쳐졌는데, 동 왜선을 영솔하여 관소에 부치기 위하여 오시에 전진한다 하였으며, 일시에 도부한 별차의 수본 내용에, ‘전령에 의거하여 표류한 왜선에 문정하기 위하여 당일 연안 주변부터 수탐하여 당일 진시에 남천에 도착하니, 왜인의 큰 배 1척이 닻을 내리고 30리 밖의 바다에 떠서 머물고 있거늘, 작은 배를 타고 나가서 문정하였더니, 도중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고, 당년조 1특송사 수목선에 격왜 20명, 서관(西館) 감동(監董) 차지왜(次知倭) 2인, 서기왜(書記倭) 1인, 기계(器械) 차지왜 1명, 인거왜(引鉅倭) 6명, 역부왜(役夫倭) 2명, 교대차 나온 중금도왜 2인, 소금도왜 2명, 별하대왜 1명 등이 함께 타고, 노인 및 술 3통을 가지고, 공작미를 실어가기 위하여 큰 배 1척과 더불어 어제 이른 아침에 대마도에서 함께 발선하여 곧바로 관소로 향하다가, 미처 물마루에 이르지 못하여 바람이 시들하고 해가 저물어, 1척은 향하여 간 곳을 모르고, 저희들의 배는 바다 가운데서 밤을 지낸 뒤에, 오늘 이른 아침에 조수물에 끌려서 이곳에 닻을 내렸다고 운운하였으며, 관소로 돌아와 정박한 뒤에 다시 문정할 계획이고, 1척의 배를 수탐하여 문정하기 위하여 좌도로 전진한다’고 수본하였으며, 출사역관의 수본 내용에, ‘전령에 의거하여 남천에 표류한 왜선에 문정하기 위하여 사시에 달려가 동 장소에 도착하니, 별차가 이미 문정한 뒤에 그대로 좌도로 향하였기에, 문정하지 못하고 되돌아왔다’고 수본하였다” 하였으며, 초8일 사시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어제 밤에 도착하여 정박한 표류한 왜선 1척에는 왜관 문이 이미 단

혀 문정하지 못하고, 오늘 아침 훈도가 가서 문정한 수본의 사연은, 당초 남천에 표류하여 정박했을 때 별차의 문정과 다름이 없고, ‘소지한 노인은 그 전면에 「각도 각관 방어소」라 적은 것이 격식에 어긋나서 물리쳐 받지 아니하고, 고쳐 바치라는 뜻으로 관수왜에게 책망하여 타일렀다’는 수본에 의거하여 연유를 치통한다” 하였음. 같은 날 오시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방금 접한 별차의 수본 내용에, ‘초8일 술시에 기장 화살포(火沔浦)로 전진하여 아며(阿爾) 봉군(烽軍)을 불러 물었더니, 분간되지 않는 배 1척이 유시 쪼에 물마루에서 머물러 있다가 해가 저문 뒤에 간 곳을 모르겠다 하기로, 한편으로 초탐하여 되도록 속히 탐지하여 보고하라는 뜻으로 신칙하였다’고 치통한다” 하였음. 초9일 술시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 ‘분간되지 않는 배 1척이 초8일 술시에 기장 울산 두곳의 경계 앞 바다에 모습을 나타내어 머뭇거렸는데, 오늘 날이 밝은 뒤에 기장 화살포 앞바다에 머물러 있다가, 사시에 바람을 타고 돛을 걸어 되돌아갔다’고 서생첨사가 치보하였으며, ‘동 배는 과연 왜인의 큰 배로, 오시쪼에 기장현 경내의 무지포 앞바다에 정박하였으므로, 같은 곳으로 달려가서 뿔감과 물을 전례대로 들여 주고 수호한다’는 기장현감의 치통에 의거하여 연유를 치통한다” 하였음. 분간되지 않는 배 3척이 초9일 술시 쪼에 물마루에서 앞뒤로 나뉘어 등불을 달고 나온다고 봉군이 진고하였으며, 초10일 축시에 도부한 부산첨사의 치통 내의 사연은 한가지인데, “초탐하기 위하여 본진의 2선장을 정하여 보냈는데, 1척은 그대로 등불을 달고 관소로 향하고, 2척은 불빛이 곧장 꺼져서 향한 곳을 모른다는 봉군의 진고에 의거하여, 다시 더 상세히 관측하라는 뜻으로 엄하게 신칙하였다” 하였음. 같은 날 인시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관소로 향하던 배 1척은 과연 왜인의 큰 배인데, 사시에 영술하여 관소에 부쳤다고 초탐장이 치보하였으며, ‘기장 무지포 앞바다에 표류하여 정박한 왜인의 큰 배 1척에, 별차가 소통사 2명을 데리고 초9일 오시 쪼에 와서 도착하여 문정하고, 소통사 1명은 왜선을 영술 예인하기 위하여 뒤처지고, 문정 사연은 별차의 수본 가운데 있으며, 양식과 반찬, 뿔감과 물은 전례대로 들여 주고 수호한다’고 기장현감이 치통하였으며, 방금 접한 별차의 수본 내용에, ‘좌도 경내로 표류한 왜인의 큰 배 1척이, 이번 초9일 오시 쪼에 기장 무지포에 정박하였거늘 문정하였더니, 도중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고, 당년조 2특송사 1호선에 격왜 40명, 하대왜 2명 등이 함께 타고, 노인 및 술 2통을 실어가지고 공작미를 실어가기 위하여 나왔는데, 동 왜인들의 말이, 저희들이 탄 배 1척은 다른 큰 배 1척과 더불어 이번 초7일 이른 아침에 대마도에서 함께 출발하여 곧장 관소로 향하다가, 물마루에 미치지 못하여 바람이 시들

하고 해가 저물어, 1척은 향하여 간 곳을 모르고, 저희들의 배는 조수물에 이끌려 돌아서 좌도 경내로 흘러 물마루에서 머물다가, 초9일 아침에 바람 형세로 인하여 돛을 올리고 관소로 향하였는데, 바다 가운데 이르러 바람이 시들하고 물이 역류하여 전진할 수가 없어, 오시 쯤에 이곳에 정박하였다 하기로, 관소로 돌아와 정박한 뒤에 다시 문정할 계획'이라고 수본하였다" 하였음. 같은 날 사시에 도부한 동 첩사의 치통 내용에, "어제 나왔던 3척의 배 중에서 향한 곳을 모르는 배 2척이 가고 머문 것을 날이 밝기를 기다려 상세히 관측하니, 1척은 절영도 바깥 바다에 떠서 머물고, 1척은 짐짓 모습을 나타낸 일이 없다는 봉군의 진고에 의거하여, 다시 더 상세히 관측하라는 뜻으로 엄하게 신칙하였으며, 떠서 머무는 배는 속히 영솔하여 부치라는 뜻으로 본진의 장수에게 신칙하였다" 하였음. 같은 날 자시에 도부한 동 첩사의 치통 내용에, "어제 뒤쳐졌던 2척 가운데 1척은 절영도 바깥 바다에 떠서 머물고, 1척은 짐짓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 연유는 이미 치통하였거니와, 다시 관측하였더니 1척의 배가 또 바다 가운데 떠서 머문다는 봉군의 진고에 의거하여, 한가지로 초탐하여 영솔하여 부치라는 뜻으로 본진의 장수에게 신칙하였으며, 방금 접한 훈도의 수본 내용에, '오늘 자시에 도부한 관왜의 배 1척에 가서 문정하였더니, 도중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고, 당년조 3특송사 2호선에 격왜 30명, 교대차 나온 별금도왜 1인, 소금도왜 2명 등이 함께 타고, 노인 및 생동 20,000근을 가지고 공작미를 실어가기 위하여 어제 이른 아침에 큰 배 2척과 더불어 대마도에서 나오다가, 겨우 물마루에 이르러 바람 형세가 시들하고 미약하여, 2척의 큰 배는 뒤쳐졌다가 해가 저물어 향한 곳을 모르고, 저희들의 배는 근근이 노를 저어서 밤이 깊은 뒤에 정박하였다 하기로, 소지한 노인 1통을 받아 올려 보낸다'는 수본에 의거하여 동 노인 1통을 전례대로 보내며, 일시에 도부한 울산 삼공형(三公兄)의 문장(文狀) 내용에, '부사가 무과(武科)의 시관(試官)으로 출행하였는데, 이번 초8일 유시에 분간되지 않는 배 1척이 기장과 울산 두 고을 경계의 바다 가운데 떠서 머물다가, 초9일 사시에 바람을 타고 돛을 걸고 되돌아서 기장 경내로 향한다'고 하였다" 하였음. 11일 자시에 도부한 동 첩사의 치통 내용에, "위의 절영도 바깥 바다에 떠서 머물던 분간되지 않는 배 2척은 과연 왜인의 큰 배인데, 초10일 유시에 영솔하여 관소에 부쳤다고 하며, 기장 무지포에 정박한 왜인의 큰 배 1척은 초10일 진시에 출발하여 오시에 경내를 지나갔다고 하였으며, 동 왜선 1척은 유시에 영솔하여 관소에 부쳤다는 치보에 의거하여, 즉시 훈도 별차에게 명하여 문정하게 한 수본 내용에, '도중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고, 제1척은 당년조 2특송사 2호선에 격왜 30명, 교대차 나온 중금도왜 1

인, 동관 감동차지왜 2인, 증금도왜 3인, 소금도왜 3명, 서기왜 1인, 잡물차지왜 1명 및 대마주 봉행왜 등이 고쳐 바치는 8송사를 정지하는 서계를 가져왔고, 별금도왜 1인 등이 함께 타고 노인 및 어유 3통을 실어가지고, 공작미를 실어가기 위해 나왔으며, 제2척은 당년조 2특송사 수목선에 격왜 20명, 동관의 역부왜 2명, 목수왜 6명, 인거왜(引鋸倭) 2명, 이장왜(泥匠倭) 1명, 서관 감동차지 증금도왜 2인, 소금도왜 2명, 당년조 1, 2. 3특송사와 만쇼잉 부특송사와 등이 예조로 보내는 서계와 별폭 각 5통을 가지고 별금도왜 1인 등이 함께 타고, 노인 및 술 3통을 실어가지고 공작미를 실어가기 위하여 나왔는데, 동 왜인들의 말이, 다른 큰 배 1척과 더불어 어제 이른 아침에 대마도에서 함께 출발하여 나오다가, 겨우 물마루에 이르러 바람 형세가 시들하고 미미하여 1척은 먼저 전진하고, 저희들의 배 2척은 바탕이 둔하여 뒤쳐져서 바다 가운데서 밤을 지낸 뒤, 이제 비로소 관소에 도착하여 정박하였다고 운운하였으며, 위의 8송사를 정지하는 일로 봉행이 바친 서계는 올해 6월에 나온 왜선에 문정할 때 받아올렸는데, 동 서계 가운데 봉행 등의 이름 아래 각기 도장을 찍지 아니하고 도장 하나만 찍었다고 본부에서 물리쳐서 내려 보냈으므로, 책망하고 타일러 관수왜에게 들여 주었는데, 이제 선편에 고쳐 써서 나왔으므로, 받아서 올려 보내며, 서계 별폭 각 5통과 노인 2통을 받아 보내며, 제3척은 당년조 2특송사 1호선에 격왜 40명, 서관 감동소 목수왜 15명, 교대차 나온 증금도왜 4인, 하대왜 2명 등이 함께 타고, 술 2통을 실어가지고 공작미를 실어가기 위하여 나왔으며, 당초 좌도 경내로 바람에 표류한 연유는 별차의 문정 가운데 이미 치보하였으므로, 소지한 노인 1통을 받아 올려 보낸다'는 수본에 의거하여, 위의 서계와 별폭 5통, 노인 3통을 전례대로 보내며 연유를 치통한다" 하였음.

위에 나온 왜인의 큰 배 노인 5통과 비선의 노인 1통 및 순부(順付)하여 가져온 1특송 2특송 3특송사와 만쇼잉송사, 부특송사 등의 서계 5통과 별폭 5통 등을 감봉하여 해조로 올려 보내며, 격식에 어긋난 노인은 고쳐 적어 바치라는 뜻으로 다시 임역에게 명하여 관수왜에게 책망하여 타이르게 하였음. 왜관 수리 때 8송사를 전례에 따라 정지하는 일로, 지난 6월에 대마도 봉행 등이 전례대로 본부에 서찰을 보냈는데, 봉행 3인이 그 성명을 나열하여 적고는 단지 한 개의 큰 도장을 세 사람의 성명에 눌러 찍은 것은, 격식과 전례에 크게 어긋나서 되돌려 내려 보내어 책망하여 타일러 물리치게 한 연유는, 전 부사가 재임할 때 신문(申聞)하였는데, 비변사의 달하(達下) 회관(回關) 내용 관련 부분에, '이제 만약 서계를 고쳐 와서 각 이름 아래 각기 도장을 찍어 전례와 꼭 같이 한다면, 경진년(1700)과 계묘년(1723) 등의 사례에 의하여 받아도 무방하다'는

일로 관문이 도부하였는데, 이제 이번 선편에 동 서계를 고쳐 바쳐왔고, 봉행 3인의 이름 아래 각기 도장을 찍었기로, 또한 감봉하여 올려 보내고, 올해 조의 정지하여 나오지 아니한 1특송, 만쇼잉, 부특송사 등의 연회에 사용되는 잡물을 되돌려 수록하는 일과, 명년조 제1선 2선 3선 4선 이떼이양 송사 등의 연회에 사용되는 잡물은 감하여 마련하는 뜻으로 도신에게 보고하였으며, 연유를 치달하는 일.

일본국 대마주 봉행 평여항(平如恒) 등의 봉서(奉書). 조선국 동래 부산 두 분 대인(大人) 합하. 초여름이 점차 더워지는데, 앞드려 생각건대 모든 분들께서 거동이 안정되고 진중하시기를 우러러 추앙하는 마음 어찌 끝이 있겠습니까? 이제 사관(使館)이 썩고 부패함이 이미 커서, 이 때문에 이번에 수선하라고 명하신 일은, 성신(誠信)을 드러낸 것이라 감사의 정을 둘 데 없습니다. 이로 인하여 올해 1특송사로부터 내년의 이떼이양 송사에 이르기까지 정지하고, 장차 처음 오는 1특송사는 평상시의 사례대로 함이 마땅하겠기에, 환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삼가 이만 갖추지 못합니다. 관연 2년 기사(1749) 4월 일. 대마주 봉행 평여항(平如恒) 평방태(平方泰) 등여조(藤如照). 이름을 나열하여 적고 각기 도장을 찍음.

예조에서 신목(申目)을 첨부하였으니 달하(達下)하시기를. 이전에 왜관을 수리할 때 올해의 1특송사부터 다음 해의 이떼이양 송사까지 정지한다고 봉행 등이 바친 서찰을 경진년(1700)과 계묘년(1723) 등의 사례에 의거하여 받으라는 일로 묘당에서 이미 확정하였는데, 동래 부산에서의 답장 초고를 승문원에 명하여 말을 만들어 지어 내어 별도로 금군을 정하여 가지고 내려 보내는 일로 분부함이 어떠할지? 건륭 14년(1749) 9월 23일 우승지 신 김상중(金尙重) 차지로 입달(入達)하여 그대로 인준[準]함.

일본국 대마주 태수 습유 평의여(平義如) 봉서(奉書). 조선국 예조대인 합하. 이에 해마다의 사례를 준수하여 일특송사선(一特送使船)을 평상시의 규정에 어긋나지 않게 지휘하여 주시고, 보잘것없는 예물을 별록에 기록하였으니 다만 웃으며 거두어주시기를. 이에 인사드리며 갖추지 못합니다. 관연(寬延) 2년 기사(1749) 3월 일.

별폭 : 호추 500근. 명반 300근. 단목 700근. 대화진주 2근. 채화대대연갑(彩畫臺大硯匣) 1비(備). 계(計).

운운. 예조대인 합하. 이에 2특송사선을 보내어 세조(歲條)를 따르오니, 예전 법전대로 살펴 시행하시기를 청하오며, 아래에 기록한 보잘것없는 물품은 웃으며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갖추지 못합니다. 운운.

별폭 : 호추 500근. 명반 300근. 단목 700근. 대화진주 2근. 채화중원분(彩畵中圓盆) 10매. 계(計).

운운. 예조대인 합하. 이에 3특송사선을 보내어 세조(歲條)를 따르오니, 예전 법전대로 살펴 시행하시기를 청하오며, 아래에 기록한 보잘것없는 물품은 웃으며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갖추지 못합니다. 운운.

별폭 : 호추 500근. 명반 300근. 단목 700근. 대화진주 2근. 적동명로(赤銅茗爐) 1위(圍). 계(計).

예조대인 합하. 가을이 완연한데, 멀리 생각건대 지내시기가 편안하시기를 받돋움하여 기대하는 마음 바야흐로 깊습니다. 이에 세례(歲例)를 준수하여 부특송사선을 보내오니, 평소의 격식에 어긋나지 않게 지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전(別箋)의 보잘것없는 예물을 웃으시며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계절에 맞추어 진중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에 인사드리고 갖추지 못합니다. 운운.

별폭 : 호추 400근. 단목 1,100근.

일본국 대마주 종벽산(鍾碧山) 만쇼잉 성서화남(誠恕和南) 상복(上覆). 조선국 예조대인 합하. 늦여름의 극심한 더위에 얹드려 생각건대 태후(台候)가 맑고 여유로우신지, 우러러 달려가는 마음 견디지 못합니다. 이에 평상시의 사례를 따라 세선(歲船)을 보내오니, 예전 법전에 어긋나지 않게 지휘해주시고, 인하여 보잘 것 없는 물품을 갖추어 멀리서 정성을 표하오니, 삼가 살펴 거두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금 진중하시기를 비오며, 이렇게 인사하고 갖추지 못합니다. 운운.

별폭 : 호추 500근. 단목 700근. 명반 200근. 첩금소병풍(貼金小屏風) 1쌍(雙). 적동루삼관반(赤銅累三盃盤) 1부(部). 계(計).

기사(1749) 10월 초3일

동래부사 황경원이 9월 24일에 성첩한 장달 내용. 운운한 일로 치계하였는데, 위에 나온 비선의 노인 1통을 감봉하여 해조로 올려 보내거니와, 동 비선

이 이번 17일에 바람이 우도로 표류한 사정을 다대포첨사 이해가 봉군의 관측 실수로 즉시 치통하지 아니하였다가 그 다음날 비로소 치통하였는 바, 그날 봉군이 관측을 잘못된 것이 비록 구름과 안개가 뒤덮어 가린 소치에서 말미암은 것이나, 변방 정세를 중시하는 도리에 있어서 그냥 두기는 불가하기로, 봉군 등은 그 진에서 죄를 다스리게 하였고, 당해 감색 등은 본부에서 전례대로 잡아와서 곤장을 쳐서 후일을 징계하였으며, 동 비선이 표류하여 지세포에 정박한 뒤, 옥포왜학이 문정할 때, 금도왜와 교대 두 글자를 거론하지 아니한 것은 소홀함을 면치 못하여 후일을 징계하는 도리가 없어서는 안되겠기로, 동 왜학 김대창에게 엄중하게 곤장을 치라는 뜻으로 통영에 알렸으며, 연유를 치달하는 일임.

기사(1749) 10월 초9일

동래부사 황경원이 10월 초1일에 성첩한 장달 내용. 방금 바친 훈도 별차 등의 수본 내용에, “지난 초하루 동서 왜관 건물 여러 곳을 부산진 감색과 더불어 같이 적간하였는데, 수리 공사가 바야흐로 펼쳐지고 있으므로, 별도로 적간할 곳이 없다”는 연유의 일임.

경상우수사 정찬술(鄭纘述)이 9월 28일에 성첩한 장달 내용. 운운하였는데, 왜선 1척이 나와서 문정할 때, 중금도왜와 하대왜에 교대(交代) 두 글자를 거론하지 않은 것은, 변방 정세로 해아리건대 극히 소루하여, 옥포왜학 김대창을 신의 수영으로 잡아와서 각별히 엄중하게 곤장을 쳐서 후일을 경계한 일임.

기사(1749) 10월 초10일

비국의 감결 내용. 운운하였는데, 강원감사 심성진(沈星鎭)의 장달 내용에, “세폐(歲幣)의 응련(鷹連) 값, 과수원의 결실이 우심한 고을에서는 반으로 감하고, 그 다음 고을은 3분의 1을 감한다”는 일로 보내온 비변사의 회달(回達) 내용에, 응련 값의 과수원 결실 내에 궁방(弓方 : 弓房)과 훈국(訓局 : 훈련도감)에 납입하는 궁삭목(弓槩木)은 3분의 2를 제감(除減)하는 일.

9월 27일 병조(兵曹)에 계하(啓下)함. 동래부사 황경원이 9월 19일에 성첩한 장달 내용에, 이달 18일 오시에 도부한 부산첨사 이사선의 치통 내용에, “올해 4월 30일에 나왔던 재판차왜의 배에 격왜 40명, 올해 4월 18일에 나왔던 중금도왜 2인, 무진년(1748) 9월 28일에 나왔던 공하대왜 2명과, 올해 9월 초5일에 나왔던 당년조 3특송사와 1호선에 격왜 40명, 올해 4월 초7일에 나왔던 소금도왜 1명, 무진년(1748) 9월 28일에 나왔던 공하대왜 2명, 무진년(1748) 5월 초6일에 나왔던 별일대관 서기왜 1인 등이 나누어 타고, 각기 공작미를 실어가지고 돌아 들어가기 위하여 어제 수문 밖에서 바람을 기다린다는 훈도 이명윤과 별차 한창주(韓昌周)의 수본에 의거하여, 수호하기 위하여 개운포만호 이방욱(李邦郁)을 정하여 보냈는데, 동 왜선 2척이 오늘 진시에 출발하여 돌아 들어간 일로 수호장의 치보 및 봉군이 진고하였으며, 올해 7월 초1일에 나왔던 비선에 두왜 1인, 격왜 6명, 올해 4월 30일에 나왔던 중금도왜 1인 등이 함께 타고, 관수 재판왜 등의 사서를 가지고 오늘 진시에 또한 관소에서 발선하여 돌아 들어갔다는 훈도 별차의 수본 및 봉군이 진고하였다” 하였음. 같은 날 유시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위의 돌아 들어간 왜선 등이 바다 가운데 이르러 역풍을 만나, 큰 배 2척은 되돌아와서 수문 밖의 바람을 기다리는 곳에 정박하였고, 비선 1척은 되돌아와서 관소에 들어갔다는 봉군의 진고에 의거하여, 수호장을 다시 정하여 보냈다”고 치통하였는데, 바람을 기다리던 왜선 및 관소로 되돌아 들어온 비선 등은, 그 배들이 돌아 들어가기를 기다려 다시 장계로 알릴 계획이며, 운운 추조(秋操 : 가을 정기 조련)를 시행할 계획이라는 일임.

기사(1749) 10월 18일

동래부사 황경원이 10월 초7일에 성첩한 장달 내용. 이달 초5일 술시 쯤에 조선 배인지 왜선인지 분간되지 않는 배 1척이 등불을 걸고 나온다는 봉군의 진고에 의거하여, 초탐장을 정하여 보낸다 하였음. 초6일 오시에 도부한 동 첨사 이사선의 치통 내용에, “위의 분간되지 않는 배 1척은 과연 왜인의 작은 배인데, 어제 해시에 영솔하여 관소에 부쳤다고 치보하였으며, 방금 접한 훈도 이명윤과 별차 한창주 등의 수본 내용에, ‘어제 밤에 도착하여 정박한 왜인의 비선 1척은 밤이 깊어서 오늘 아침에 가서 문정하였더니, 도중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고, 두왜 1인, 격왜 6명, 교대차 나온 중금도왜 1인 등이 함께 타고, 노인 및 관수 재판왜에게 보내는 사서를 가지고, 어제 이른 아침에 대마도에서

발선하여 겨우 물마루에 이르러 바람이 시들하고 날이 저물어, 밤이 깊은 뒤에 겨우 도착하여 정박하였다고 운운하였으며, 소지한 노인은 그 전면에 써 넣은 것이 격식에 어긋나서 고쳐 적어 바치라는 뜻으로 책망하여 타일렀다”고 치통한다 하였음. 본진의 추조(秋操)를 시행한 뒤에 기장과 양산 두 고을의 군기(軍器)와 집물(什物)을 들어내어 군관이 점검하였더니, 별로 대단하게 손상된 곳은 없었다고 운운 하였음. 방금 도부한 비변사의 계하 관문 내용에, “장계지(狀啓紙)의 계본지(啓本紙) 견양(見樣)을 내려 보내니 이 계본대로 거행하라”는 일로 본도 관찰사의 관문 및 견양지가 이번 초6일에 함께 도착하였기에, 오늘부터 시작하여 이 계본에 의거하여 장달(狀達)을 진봉하는 일임.

기사(1749) 10월 27일

동래부사 황경원이 10월 17일에 성첩한 장달 내용. 이달 초8일 신시에 도부한 부산첨사 이사선의 치통 내용에, “올해 6월 초3일에 나왔던 별하대왜 1명이 오늘 병으로 죽어서, 그대로 왜관 뒷산에 매장하여 두었다는 훈도 이명윤과 별차 한창주 등의 수본에 의거하여 치통한다”는 일임.

기사(1749) 11월 16일

동래부사 황경원이 11월 초7일에 성첩한 장달 내용. 이달 초1일에 도부한 훈도 이명윤과 별차 한창주 등의 수본 내용에, “지난 초하루 동서 왜관 건물 여러 곳을 부산진 감색과 더불어 함께 적간하였는데, 수리가 바야흐로 한창이므로 별로 적간할 곳이 없다”고 하였는바, 지금 이후로는 그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려 이전대로 달마다 적간하게 하여 치달할 계획이라는 일임.

기사(1749) 12월 초10일

경상우수사 정찬술(鄭贊述)이 11월 28일에 성첩한 장달 내용. 이달 13일에 나왔던 왜인의 작은 배 1척이 지세포 강 입구에 정박하였고, 같은 날 나온 왜

인의 큰 배 1척 및 14일에 나왔던 큰 배 1척은, 앞뒤로 옥포 강 입구에 정박한 뒤에, 큰 배 2척에 동 지세포의 왜학이 문정한 사연은 이미 치달하였거니와, 운운하였는데, 옥포와 지세포로 나뉘어 정박한 왜인의 큰 배 2척과 왜인의 비선 1척은 이미 다대포로 건너보내었거니와, 무릇 표류하여 정박한 왜인의 배가 노를 저어 관소로 돌아올 무렵, 연로(沿路) 각 진에서 차례차례로 순부(順付)하는 것이 본디 정식인데, 이제 이번 왜선은 바깥 바다에 이르자 순풍을 만나 돛을 걸어 곧바로 좌도로 향하니, 호송장의 일개 작은 배의 힘으로는 만류하여 잡지 못한 것은 형세가 혹 그럴 듯하지만, 변방 사정으로 헤아리건대 정해진 규정을 어긴 죄는 면하기 어렵기로, 동 2척의 왜선 호송장 옥포만호 김진성(金振聲)과 장목포별장 오세대(吳世大) 등을 아울러 신의 우수영으로 잡아다가 엄중하게 곤장을 쳐서 후일을 징계한 연유의 일임.

기사(1749) 12월 21일

동래부사 황경원이 12월 12일에 성첩한 장달 내용. 이달 초5일 진시에 도부한 부산첨사 이사선의 치통 내용에, “초4일 유시 쯤에 물마루 주변에 2척의 배의 형체가 있었는데, 그대로 밤이 어두워 그 척수와 향한 곳을 분간하지 못하였다 운운” 하였음. 같은 날 오시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당일 진시 쯤에 조선 배인지 왜선인지 분간되지 않는 배 2척이 바다 가운데서 나왔는데, 1척은 우도로 향하는 듯하고 1척은 구서평포 앞바다에 떠서 머문다는 구봉봉군의 진고에 의거하여, 문정하기 위해 별차 한창주를 정하여 보냈으며, 우도로 향하는 듯한 배 1척은 가고 머문 곳을 탐지하여 보고하라는 뜻으로 전로(前路)에 신칙하였다”고 하였음. 같은 날 유시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어제 유시 쯤에 모습을 나타낸 분간되지 않는 배 2척은 밝기를 기다려 관측하니 당일 진시에 1척은 우도로 향하는 듯하고, 1척은 본진 경내 구 서평포로 향하기로, 초탐하기 위해 서평만호 임시론(任時論)을 차출하여 보낸다는 다대포첨사의 치통에 의거하여, 속히 호송하여 관소로 보내라고 하였으며, 우도로 표류하여 향한 배가 가고 머문 곳을 탐지하여 보고하라는 뜻으로 신칙하였다”고 하였음. 초6일 자시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위의 구 서평포 앞바다에 떠서 머물던 분간되지 않는 배 1척은 과연 왜인의 큰 배인데, 모초(茅草) 앞바다에 떠서 머물기에 그대로 수호하는 일로, 서평만호의 치보에 의거하여 다대포첨사가 치통하였으며, 초4일 신시에 분간되지 않는 배 2척이 바다 가

운에서 나와서 1척은 좌도로 향하고, 1척은 표류하여 거제도로 향한다고 가덕 첨사가 전통에 운운하였기로, 동 거제도로 표류하여 향한 배가 정박한 곳을 속히 탐지하여 보고하라는 뜻으로 신칙하였다” 운운하였음. 같은 날 묘시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모초 앞바다에 떠서 머물던 큰 배 1척은, 파도가 하늘에 닿아서 견디지 못하고 초5일 미시에 출발하여 예인하여 본진 앞바다로 끌어들이다가, 비바람이 점차 장대하여 전진하지 못하고, 같은 날 유시에 두송산(頭松山) 앞바다에 정박하여 수호하며, 동 왜선에 별차가 소통사 1명을 데리고 같은 날 유시에 달려가서 문정하였고, 그 사연은 별차의 수본에 있다는 서평포만호의 치보에 의거하여 다대포첨사가 치통하였으며, 일시에 도부한 별차의 수본 내용에, ‘전령에 의거하여 즉시 구 서평포로 달려갔더니, 왜선 1척이 과연 모초 앞바다에 정박하였는데, 동 왜선 1척이 다대포로 향하여 가기로, 연안 주변을 따라서 전진하다가, 서평만호가 영솔 예인하여 유시에 두송산 앞바다에 정박하거늘, 가서 문정하였더니, 도중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고, 을축조 제1선 송사가 재차 건너온 배에 격왜 40명, 교대차 나온 별금도왜 1인, 소금도왜 1명, 하대왜 2명 등이 함께 타고, 노인 및 술 2통을 실어가지고, 공작미를 실어가기 위하여 큰 배 2척이, 이 달 초4일 미시 쯤에 대마도에서 함께 발선하여 곧바로 관소로 향하다가, 겨우 물마루에 이르러 날이 이미 캄캄하게 어두워, 1척은 간 곳을 모르고 저희들의 배 1척은 바다 가운데 떠서 머물면서 밤을 지낸 뒤, 초5일 비바람에 흘러 모초 앞바다로 표류하여 닻을 내리고 떠 있었는데, 근근이 영솔 예인하여 이곳에 정박하였다고 운운하기로, 관소로 돌아와 정박한 뒤에 다시 문정할 계획이라’는 수본에 의거하여 연유를 치통한다” 하였음. 초7일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두송산 앞바다에 정박한 왜인의 큰 배 1척은 초6일에 바람 형세가 불순하여 그대로 같은 곳에 머문다고 운운”하여, 바람이 시들하기를 기다려 즉시 영솔하여 부치라는 뜻으로 신칙하였음. 같은 날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초4일에 나와서 거제도로 향하여 표류한 배 1척은 과연 왜인의 큰 배로, 초5일에 옥포 강 입구에 정박한 뒤, 동 옥포왜학 김대창과 소통사 백치운(白致雲) 등이 가서 문정하였더니, ‘도중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고, 을축조 제15선에 격왜 20명, 교대차 나온 중금도왜 2인, 소금도왜 3명, 별대관왜 1인, 통사왜 1인 등이 함께 타고, 노인을 가지고 공작미를 실어가기 위하여, 큰 배 2척이 이달 초4일 이른 아침에 대마도에서 동시에 발선하여 곧바로 관소로 향하다가, 겨우 물마루를 지나자 바람 형세가 불순하고 그대로 해가 저물어서, 1척은 표류하여 어느 곳으로 향하였는지 모르고, 저희들의 배 1척은 바람 형세가 갑자기 평온하게 시들하여 전진할 길이 없어서 바다 가운

데서 밤을 지낸 뒤, 초5일에 근근이 표류하여 이곳에 도착하였다'는 일로 치통하였으며, 다대포 앞바다로 옮겨 정박한 왜인의 큰 배 1척에 별차가 문정한 가운데, '큰 배 2척이 이 달 초4일 미시 쯤에 같이 발선하였다'고 하였는데, 옥포 왜학의 문정에는 '이른 아침에 발선하였다'고 운운한 것은 서로 어긋남을 면치 못하였으니, 곡절을 별차 및 옥포왜학에게 물어 조사하여 연유"를 아울러 치통함. 초9일에 도부한 동 첩사의 치통 내용에, "이제 이번에 나오다가 좌우도로 나뉘어 표류한 왜선 2척이 당초 대마도에서 발선한 시각이 서로 어긋난 곡절을 별차 및 옥포왜학에게 물어 조사하였더니, 방금 접한 별차의 수본 내용에, '왜선의 문정이 얼마나 긴요하고 중대한 일인데, 어찌 터럭 하나라도 소홀하게 할 리가 있겠습니까. 동 왜선 1척이 당초 두송산 앞바다에 정박하여 문정할 때, 표왜 등의 말이, 이달 초4일 미시 쯤에 2척의 배가 대마도에서 같이 발선하여 겨우 물마루에 이르자 해가 저물고 구름이 어두운 가운데 각자 표류하여 흩어졌다고 정녕 이야기하기로, 한결같이 표왜 등이 고하는 바에 따라 사실대로 수본하였다' 하며, 옥포 강 입구에 정박한 왜인의 큰 배 1척은 초6일에 그대로 같은 곳에 머물다가, 초7일 사시에 출발하여 조라포 만호와 장목포 별장 등이 차례차례 교부하며 영술 예인하여, 같은 날 해시에 천성 경내의 마거리 앞바다로 옮겨 정박하고 수호한다는 가덕첩사의 전통에 의거하여 다대포첩사가 치통하였으며, 본진 앞바다로 옮겨 정박한 왜인의 큰 배 1척은, 역풍이 잇달아 불어서 출발하지 못한다는 수호장의 치보에 의거하여 동 다대포첩사가 또한 치통하였기로, 아울러 속히 영술하여 관소에 부치라는 뜻으로 신척하였다" 함. 초10일에 도부한 동 첩사의 치통 내용에, "천성 마거리 앞바다로 옮겨 정박한 왜인의 큰 배 1척은, 초8일에 그대로 같은 곳에 머물다가 초9일에 출발하기 위하여 차례차례 영술 예인하여 신시에 본 포구의 앞바다로 옮겨 정박하여, 먼저 정박한 왜선과 더불어 같은 곳에 그대로 머물며 수호하였는데, 역풍이 한결같이 잇달아 불어서 결코 출발하기 어렵다 하여, 두 척의 배를 속히 영술하여 관소에 부치라는 뜻으로 신척하였다" 함. 초10일 오시 쯤에 봉군의 진고 내용에, "조선 배인지 왜선인지 분간되지 않는 배 2척이 물마루에서 모습을 나타내어 머뭇거리는 듯하다"고 하였음. 같은 날 해시에 도부한 동 첩사의 치통 내용에, "다대포로 옮겨 정박한 왜인의 큰 배 2척은, 당일 오시에 출발하여 신시에 영술하여 관소에 부쳤다고 호송장이 치보 운운한 일로, 이에 의거하여 즉시 훈도 이명윤과 별차 한창주 등에게 명하여 문정한 수본 내용에, '제1척은 을축조 제1선 송사가 재차 건너온 배인데, 다대포 경내로 표류하여 정박하였을 때 별차가 혼자 가서 문정한 것과 다름이 없고, 동 왜선이 소지한 노인은 그것

이 재차 건너온 것이 규정 외이기로 물리쳐 받지 아니하고, 속히 들여보내라는 뜻으로 관수왜에게 책망하여 타일렀으며, 제2척은 을축조 제15선인데, 옥포로 표류하여 정박하였을 때 왜학의 문정과 다름이 없으나, 초4일에 대마도에서 발선하였다고 하는 바, 동 왜선이 표류하여 옥포에 정박하였을 때, 이른 아침에 발선한 것으로 문정한 것은 시각이 서로 어긋났으며, 소지한 노인 1통은 받아 올려 보내거니와, 동 왜선 등이 나뉘어 다대와 옥포로 표류할 때 대마도에서 발선한 시각이 서로 어긋난 곡절은, 관수왜와 더불어 한 곳에 불려다가 그 사유를 따져 물었더니, 다대포 경내로 표류한 왜인의 말이, 이렇게 바람이 높은 때를 당하여 순풍이 쉽지 않은데, 이번 초4일에 마침 순풍을 만나 같은 날 미시에 발선하여 겨우 물마루에 이르러 각자 표류하여 흩어졌다 하였으며, 옥포 왜학 등의 말이, 같은 날 미시에 발선한 것이 분명한데, 물마루에 이르러 날의 형세가 이미 저물고 바람 형세가 불순하여 머물면서 밤을 지낸 뒤 표류하여 도착할 즈음에, 멀리로 정녕 혼미하여 거꾸러진 가운데 이른 아침에 발선한 양으로 옥포에서 문정할 때 잘못 말하여 서로 어긋난 바가 있게 되어 황공함을 견디지 못하는 바, 교활한 왜인들이 매양 문정을 당하여 이렇게 서로 어긋난 것은 매우 해괴한 일이라, 이런 왜인은 각별히 죄를 논하여 후일의 폐단을 방지하게 하라는 뜻으로 관수왜에게 엄하게 책망하였더니, 답하기를 무지한 하왜(下倭)들이 막중한 문정을 이렇게 잘못 고한 것이 도리어 부끄럽고 송구한 마음 간절하니, 마땅히 도중에 통보하여 죄를 다스릴 계획이라 운운 하였고, 표류한 왜인들에게 따져 물을 적에 문정하는 시각이 저절로 늦어지게 되었다'는 수본에 의거하여, 위의 노인 1통을 전례대로 보내며, 오늘 나오다가 머뭇거리며 분간되지 않는 배 2척이 바다 가운데서 나온다고 운운하였는데, 과연 왜인의 작은 배라, 인시에 영술하여 관소에 부쳤기에, 즉시 훈도 별차 등에게 문정하게 한 수본 내용에, '비선 2척이 오늘 아침 관소에 도착하였기로 오늘 아침 가서 문정하였더니, 도중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고, 제1척 비선에 두왜 1인, 격왜 6명, 교대차 나온 별금도왜 1인, 금도왜 1명, 하대왜 1명 등이 함께 타고 있으며, 제2척 비선에 두왜 1인, 격왜 6명, 교대차 나온 중금도왜 1인, 소금도왜 등이 함께 타고, 각기 노인 및 은화 5,000 냥씩 실어가지고, 큰 배 2척과 더불어 어제 이른 아침 대마도에서 함께 발선하여, 겨우 물마루에 이르러 바람 형세가 불순하여, 큰 배는 향한 곳을 모르고, 저희들의 비선은 어두운 가운데 근근이 노를 저어 오늘 이른 아침 관소에 도착하여 정박하였다고 하였는데, 제1척 비선의 노인은 그 전면에 각도 각관 방어소라 적어 넣은 것이 격식에 어긋나므로 물리쳐서 받지 아니하고, 고쳐 적어 바치라는 뜻으로 관수왜에게 책망

하여 타일렀으며, 제2척 비선의 노인 1통은 받아 올려 보내고, 어제 바다 가운데 머물던 분간되지 않는 배 2척은 밤새워 관측하였으나 바다 가운데 떠서 머무는 일이 없으니, 필시 밤 사이에 바람을 따라 우도로 표류한 소치라는 봉군의 진고에 의거하여, 동 배의 가고 머문 곳을 급속히 탐지하여 보고하라는 뜻으로 전로에 신칙하였다”고 치통하였음. 위에 나온 규정 밖의 배는 속히 들여보내라는 일로 관수왜에게 책망하여 타이르게 하였으며, 초10일에 나오다가 바다 가운데서 머물던 분간되지 않는 배 2척은, 그 배가 정박하기를 기다려 문정하여 다시 치달할 계획이며, 초4일에 왜인의 큰 배 2척이 대마도에서 발선할 때 시각이 서로 어긋난 곡절을 별차 및 옥포왜학 등에게 물어 조사하였더니, 옥포왜학이 조사한 답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거니와, 옥포로 표류한 왜인들이 고한 내용에, 초4일 미시에 발선한 것이 분명한데 멀미로 혼미하여 거꾸러진 중에 과연 이른 아침이라 잘못 이야기했다고 사죄하여 마지 아니하기로, 관수왜가 이 일의 사정을 도중에 통보하여 죄를 다스릴 계획이라고 운운하였다는 일임.

기사(1749) 12월 29일

승전을 받지 않았음.

이번 12월 29일에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여 입시하였을 때 전교에 이르기를, “해부(海夫 : 어부)의 폐단은 익숙하게 알고 있는데, 이제 대신이 진술한 바를 들으니, 큰 뜻은 옳지만, 그러나 본디 영갑(令甲:법령)이 있어서 다시 조사할 필요가 없다. 첩징(疊徵)과 남징(濫徵)은 이미 『속대전(續大典)』에 실려 있으니, 비록 감영(監營)과 병영(兵營), 수영(水營) 등이라도 징수하는 것이 부당하고, 이를 징수하여 명령을 어긴 자는 마땅히 한 번 어사를 보내어 염탐하여 물어서 엄하게 징계할 것이나, 대저 이 폐단은 서울과 지방의 모리배(牟利輩)들이 어부지리(漁父之利)를 탐내어 각처에 진고(陳告)하여 그런 것이다. 지금부터 시작하여 해양(海洋)의 절수(折受)⁴⁴⁾는 말할 것도 없고, 수세(水稅)와 선세(船稅)를 매기는 것도 모두 통렬히 금하여야 뒷날의 폐단을 없앨 수 있을 것이니, 이 뒤로 이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만약 새로 절수하는 일이 있으면,

44) 절수(折受) : 전답의 결세(結稅)나 어장이나 염전 등에 부과되는 세금을 관아나 특정인에게 떼어주는 일.

수본(手本)의 초기(草記)⁴⁵⁾를 비변사에서 직접 초기하여 허락하지 말고, 당해 진고한 사람은 세 차례 엄하게 형벌을 가한 뒤에 정배(定配)하는 것을 정식으로 시행하라” 하셨음.

경오(1750) 정월 초2일

동래부사 황경원이 12월 22일에 성첩한 장달 내용. 이달 13일에 도부한 부산 첨사 이사선의 치통 내용에, “초10일 신시에 나온 분간되지 않는 배 2척은 과연 왜인의 큰 배로, 해시에 지세포 강 입구에 정박하였고, 뒤미처 나온 배 2척은 바다 가운데 뒤쳐져서 그대로 해가 저물어 상세히 관측하지 못하였다” 하였음. 같은 날 사시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지세포 강 입구에 정박한 왜인의 큰 배 2척에 옥포왜학 김대창(金大昌)과 소통사 백치운(白致雲) 등의 11일 술시에 가서 문정하였더니, ‘도중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고, 제1척은 을축조 제16선에 격왜 20명, 교대차 나온 공일대관왜 1인, 종왜 7명, 서기왜 1인, 중금도왜 2인, 소금도왜 3명, 하대왜 1명, 감정관왜(勘定官倭) 1인, 종왜 3명 등이 함께 타고 노인을 가졌으며, 제2척은 을축조 제14선에 격왜 20명, 교대차 나온 중금도왜 4인, 소금도왜 4명 등이 함께 타고 노인을 가지고, 공작미를 실어가기 위하여 비선 2척이 이달 초10일 이른 아침에 대마도에서 발선하여 곧바로 관소로 향하다가, 겨우 물마루를 지나 바람 형세가 불순하여, 비선 2척은 표류하여 어느 곳으로 향하였는지 모르고, 저희들의 배는 표류하여 이곳에 도착하였다는 일로 문정하였다’ 하였으며, 11일에 나오다가 표류하여 거제도로 향한 분간되지 않는 배 1척은 과연 왜인의 큰 배로, 지세포 경내 구조라포 앞 바다에 정박하였다고 차례차례 전통하였는바, 초10일에 나온 비선 2척은 이미 관소에 도착하여 정박하였거니와, 지세포로 표류한 왜선에 이른바 감정관왜 1인은 무슨 일로 나왔는지, 역학이 문정할 때 따져 묻지 아니하고 범범하게 나열한 것은 매우 소홀하여, 관소로 돌아온 뒤에 다시 문정한 뒤에라야 상세히 알 수 있다”고 하였음. 같은 날 해시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구조라포 앞바다에 정박한 왜인의 큰 배 1척에, 옥포왜학과 소통사가 이번 12일 해시에 달려가서 문정하였더니, ‘도중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고, 을축조 제17선에 격왜 20명, 교대차 나온 중금도왜 2인, 소금도왜 2명 등이 함께 타고, 노인을

45) 초기(草記) : 간단한 보고 문건으로 결재하는 일.

가지고 공작미를 실어가기 위하여 저희들의 배 1척이 이달 11일 이른 아침에 대마도에서 발선하여 곧바로 관소로 향하다가, 겨우 물마루에 이르러 바람 형세가 불순하여, 12일 오시에 근근이 표류하여 이곳에 도착하였다는 일'로 문정하였다고 하며, 지세포 강 입구에 정박한 왜인의 큰 배 2척은 바람 형세가 불순하여 그대로 머물러 수호하고 있다는 가덕 첨사의 차례차례 전한 전통에 의거하여, 속히 관소로 호송하라는 뜻으로 신칙하였다" 함. 16일 미시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올해 9월 초9일에 나왔던 비선에 두왜 1인, 격왜 5명과 올해 6월 초8일에 나왔던 중금도왜 1인 등이 함께 타고, 관수 재판왜 등의 사서를 가지고 당일 사시에 출발하여 돌아 들어갔다고 훈도 별차 등이 수분하였다" 함. 18일 오시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이번 11월 초4일에 나왔던 당년조 부특송사 2호선에 격왜 30명, 올해 6월 12일에 나왔던 소금도왜 3명, 올해 6월 26일에 나왔던 중금도왜 1인 등이 함께 타고, 공작미를 실어가지고 돌아 들어갔다고 훈도 별차 등의 수분하였다" 함. 19일 오시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올해 11월 초4일에 나왔던 당년조 3특송사 수목선에 격왜 20명, 중금도왜 4인, 올해 6월 초6일에 나왔던 소금도왜 2명, 올해 7월 초1일에 나왔던 소금왜 1명, 올해 10월 초5일에 나왔던 중금도왜 1인 등이 함께 타고, 공작미를 실어가지고 돌아 들어갔다"고 함. 같은 날 해시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구조라포에 정박한 왜인의 큰 배 1척은, 이번 13일부터 15일까지 바람 형세가 불순하여 그대로 그곳에 머물다가, 16일 사시에 출발하여 술시에 지세포 강 입구로 옮겨 정박하였고, 지세포에 먼저 정박하였던 왜인의 큰 배 2척도 그대로 그곳에 머물렀는데, 16일 미시에 출발하여 전진하다가 바람과 물이 모두 거슬러 전진할 길이 없어서, 유시에 지세포로 되돌아와서 한결같이 수호하였는데, 1척은 18일 천성경내에 도착하였고, 출발하지 못한 큰 배 2척은 18일에 출발하여 1척은 자질이 둔하여 뒤처지고, 1척은 천성 경내에 도착하여 먼저 도착한 큰 배 1척과 같은 날 가덕 경내 정거리 앞바다로 옮겨 정박하였다가, 오늘 사시에 출발하여 신시에 다대 경내의 앞바다에 도착하였기로, 수호장으로 서평 만호 임시론(任時論)을 차출하여 정하였다고 차례차례 전통하였다" 함. 20일 해시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위의 뒤처진 큰 배 1척은 18일 술시에 옥포 강 입구로 옮겨 정박하고, 19일 사시에 출발하여 같은 날 해시 말에 가덕 경내로 옮겨 정박하였는데, 오늘 진시에 출발하여 신시에 영술하여 관소에 부쳤고, 다대포 경내로 옮겨 정박한 큰 배 2척도 오늘 사시에 또한 출발하여 영술하여 관소에 부쳤다고 가덕첨사가 차례차례 전한 전통 및 치통에 의거하여, 위의 3척의 왜선에 즉시 임역에게 명하게 문정하게

한 수본 내용의 사연은 당초 우도로 표류하여 정박하였을 때 옥포 역학의 문정과 다름이 없는데, 술 5통과 어유 2통을 실어가졌으며, 노인 3통을 받아 올려 보내며, 감정관왜가 나온 곡절을 관수왜에게 따져 묻기를, ‘이른바 감정관왜라는 명목은 전에 나온 바가 없었는데 무슨 볼 일이 있는가?’ 하였더니, 답하기를, ‘감정관은 곧 저희 대마도에서 소임을 감정하는 일을 맡은 사람인데, 근래 매매가 시들하므로 상인들과 상의하기 위하여 나왔다’고 하거늘, 동 왜인이 나온 것이 규정 밖이기로 속히 들여보내라는 뜻으로 책망하여 타일렀다는 수본에 의거하여, 노인 3통을 받아 이전대로 보내는 일로 치통한다” 하였음. 위의 왜선이 소지한 노인 3통은 감봉하여 해조로 올려 보내며, 다대포침사 이해가 봉군이 관측 잘못으로 초10일에 비선 2척이 바다 가운데서 나오는 사정을 즉시 치통하지 아니하였다가 11일에 비로소 치통하였으며, 11일에 큰 배 1척이 표류하여 우도로 향하는 사정 역시 즉시 치통하지 아니하다가 12일에 비로소 치통하였는바, 변방 정세를 중시하는 도리에 있어서 그냥 두어서는 불가하기로, 당해 변정 담당 감색 등을 본부에서 전례대로 잡아와서 죄를 다스렸음. 본부의 변방 정보에 관한 전후의 등록에는 원래 감정관이라는 명목의 왜인이 나온 사실이 없고, 이미 규정 밖이기로 결코 왜관에 머물러서는 안된다고 다시 임역에게 명하여 각별히 관수왜에게 책망하고 타일러 속히 되돌려 보내게 하였으며, 동 왜인이 나온 곡절을 옥포 역학이 문정할 때 따져 묻지 아니하고 범연히 적어 보고한 것은 소홀함을 면치 못하니, 동 역학 김대창은 죄를 다스려 후일을 징계하라는 뜻으로 통영에 보고하였음. 상역 등이 피집한 물화 값으로 은 9,450냥을 이달 13일 개시에서 받아내었다는 연유의 일임.

경오(1750) 정월 초6일

경상우수사 정찬술이 12월 25일에 성첩한 장달 내용. 이달 초4일에 나왔던 왜인의 큰 배 2척 중 1척이 옥포 강 입구에 정박한 뒤에 동 옥포왜학 김대창에 문정한 사연은 이미 치달하였거니와, 운운하였는데, 동 왜선 1척은 폐단없이 다대포로 건너보냈거니와, 초4일에 나왔던 왜인의 큰 배 2척 중 1척은 표류하여 옥포에 정박하고, 1척은 표류하여 다대포에 정박하였으며, 옥포에 표류하여 정박한 배에 동 옥포의 왜학이 문정한 것에는 초4일 이른 아침에 대마도에서 함께 발선하였다고 수본하였고, 별차의 문정에는 같은 날 미시에 발선하였다고 문정하였는데, 동 왜인들이 발선한 시각이 서로 어긋난 곡절을 역학 등에

게 조사하여 묻게 하였더니, 왜학 김대창은 ‘문정할 때 초4일 이른 아침에 발선하여 물마루에 이르러 나뉘어 표류하였다고 정녕 이야기하였으므로, 한결같이 왜인의 말을 따라 수본하였으며, 당초 나올 때 멀리 관측한 각 진에서 이미 초4일 신시에 관측하였으니, 같은 날 미시에 대마도에서 출발한 배가 두 시진 사이에 어찌 300여 리가 되는 물마루에 도착할 수 있겠는가? 미시에 발선하였다고 한 것은 교활한 왜인이 말을 바꾼 소치이다’라고 하였으며, 훈도 이명운과 별차 한창주 등은, ‘왜인들의 말이 초4일 미시 쯤에 2척의 배가 대마도에서 함께 발선하였다고 틀림없이 이야기하였으므로 또한 왜인이 고하는 바대로 수본하였고, 동 왜인들이 발선한 시각이 서로 어긋난 곡절을 관수왜와 더불어 한 곳에 불러다가 따져 물었더니, 마침 순풍을 만나서 그날 미시에 발선한 것이 분명한데, 물마루에 이르러 날의 형세가 이미 저물고 바람이 없어 머뭇거리며 밤을 지낸 뒤 표류하여 도착할 무렵, 멀리로 혼미하여 거꾸러져서 이른 아침에 발선한 냥으로 옥포에서 문정할 때 잘못 말하여 서로 어긋난 바가 있었으니 황공함을 견디지 못한다고 운운하였으므로, 이런 왜인은 각별히 죄를 다스려서 후일의 폐단을 막으라는 뜻으로 관수왜에게 엄하게 책망하였더니, 답하기를 무지한 하왜 등이 막중한 문정을 이렇게 잘못 고하여 도리어 부끄럽고 죄송함이 간절하니, 마땅히 도중에 통보하여 엄중하게 따져 벌하겠다고 하였다’ 하였는바, 왜선이 비록 간혹 재빨라서 망망한 먼 바다를 미시에 발선하여 신시에 물마루에 이르렀다고 한 것은, 필시 이럴 이치가 없는데, 교활한 왜인이 말을 바꾼 것을 별차가 실착한 것은 의심스러운 사단이 없지 아니하지만, 표류한 왜인들이 이미 잘못 고하였다고 자백하였으니 추궁하기에는 부족하고, 접대하는 사이에 조금이라도 불만한 뜻이 있으면 일에 따라 바뀌기 때문에 사단을 만드는 것이 교활한 왜인의 예사 태도이거니와, 부산진에서는 관측하여 경계가 나뉘 뒤로 우도로 표류하는 왜선은 비록 간혹 관측하여 보고하지 않기도 하지만, 좌도와 우도로 나뉘어 표류하는 배는 관측되는 대로 즉시 보고하는 것이 분디 전례인데, 이제 이번 2척이 나뉘어 표류할 즈음에 다른 각 진에서는 모두 초4일 신시와 유시에 관측하였으나, 동 진에서는 경계가 나뉘었다고 하여 이튿날 신시에 비로소 관측하여 치보한 것은 극히 늦추어 소홀한 것이지만, 동 배가 초4일에 우도의 호운도(呼雲島)에 떠서 머무를 때 이미 해가 저물고 바다가 어두웠으니, 먼 봉대에서 즉시 관측하지 못한 것은 크게 괴이할 것이 없을 듯하나, 신칙하는 도리에 있어서는 전연 그냥두어서는 불가하기에, 해당 진의 변정담당 병방감색(兵房監色) 및 망군(望軍) 등을 잡아다가 엄중하게 곤장을 쳐서 후일을 경계하라는 뜻으로 좌수사 이만유(李萬冏)에게 관문을 발송하여 분부하

였으며, 위의 곡절을 조사하여 물으며 왕복하는 사이에 날짜가 자연히 지연되었기에 연유를 아울러 치달하는 일임.

경오(1750) 2월 30일

동래부사 황경원이 2월 20일에 성첩한 장달 내용. 이달 14일 미시에 도부한 부산첨사 이사선의 치통 내용에, “방금 바친 훈도 이명운과 별차 한창주 등의 수본 내용에, ‘관왜 등의 조상 무덤이 구관 뒷산에 있는데, 이제 춘사일(春社日)을 당하여 전례대로 성묘하러 간다’는 수본에 의거하여, 왜인들이 왕래할 때 난잡하게 하지 말라는 뜻으로 훈도 별차 등에게 신칙하였다”는 일임.

경오(1750) 4월 11일

동래부사 황경원이 4월 초2일에 성첩한 장달 내용. 27일 해시에 도부한 동첨사의 치통 내용에, “기사년(1749) 12월 초4일에 나왔던 소금도왜 1명이 오늘 병으로 죽어 그대로 왜관 뒷산에 매장하여 두었다는 일로 훈도 별차 등이 수본하였다”는 일임.

경오(1750) 5월 초1일

동래부사 황경원이 4월 23일에 성첩한 장달 내용. 이달 초10일에 돌아 들어가다가 되돌아와서 정박한 비선 1척은 그 배가 돌아 들어가기로 기다려 다시 신문(申聞)하겠다는 뜻은 전에 이미 치달하였는데, 13일 해시에 도부한 부산첨사 조위진(趙威鎭)의 치통 내용에, “위의 왜인의 비선 1척이 오늘 진시에 출발하여 돌아 들어갔다고 훈도 이명운과 별차 한창주의 수본 및 봉군이 진고하였으며, 기사년(1749) 6월 24일에 나왔던 판장관왜 종왜 1명이 오늘 병으로 죽어서 그대로 왜관 뒷산에 매장하여 두었다고 훈도 별차 등이 수본하였다” 함. 16일 유시에 도부한 동첨사의 치통 내용에, “기사년(1749) 12월 초10일에 나왔던 을축조 제14선에 격왜 20명, 중금도왜 1인 등이 함께 타고, 공작미를 실어가지고 돌아 들어가기 위해 오늘 수문 밖에서 바람을 기다린다는 훈도 별차의

수본에 의거하여, 수호장을 정하여 보냈으며, 기사년(1749) 12월 초10일에 나왔던 공일대관왜의 종왜(從倭) 1명이 오늘 병으로 죽어서 그대로 왜관 뒷산에 매장하여 두었다는 훈도 별차의 수본에 의거하여 치통한다” 하였음. 18일 술시에 도부하기를, “분간되지 되지 않는 배 3척은 과연 왜인의 작은 배인데, 오늘 자시에 영솔하여 관소에 부쳤다고 하였으며, 방금 접한 훈도 별차 등의 수본 내용에, ‘오늘 자시에 왜관에 도착한 비선 3척은 수문이 이미 잠겨 문정하지 못하다가, 오늘 아침에 가서 문정하였더니, 도중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고, 제1척 비선에 두왜 1인, 격왜 6명, 교대차 나온 중금도왜 1인 등이 함께 타고, 노인 및 관수 재판왜에게 보내는 사서를 가졌으며, 제2척 비선에는 두왜 1인, 격왜 6명, 교대차 나온 중금도왜 1인 등이 함께 타고, 노인 및 생동 500근을 실어가졌으며, 제3척 비선에는 두왜 1인, 격왜 6명, 교대차 나온 별금도왜 1인 등이 함께 타고, 노인 및 당년조로 정지되어 있는 제1, 2, 3선과 이페이양, 제4선 송사왜의 서계와 별폭 각 1통 및 제5선에서 제17선까지의 서계와 별폭 각 1통을 겸대(兼帶)하여 가지고 나왔기로, 동 서계와 별폭 각 18통 및 노인 3통을 받아 올려 보낸다’는 수본에 의거하여, 위의 서계와 노인을 이전대로 보내며 연유를 치통한다” 하였음. 22일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수문 밖에서 바람을 기다리던 왜선 1척이 오늘 진시에 출발하여 돌아 들어갔다고 수호장 및 봉군이 진고하였기에 연유를 치통한다” 하였음. 위의 16일에 표류하여 좌도로 향한다고 하였던 분간되지 않는 배 1척은, 지금까지 여러 날이 되도록 끝내 왜선이 정박한 곳이 없으니, 필시 이는 상선이 바다 가운데로 지나간 것이라, 잘못 고한 봉군은 마땅히 좌수영에서 죄를 다스릴 것이며, 비선의 노인 3통 및 순부(順付)하여 나온 당년조 제1선 2선 3선 송사왜와 이페이양 송사, 제4선 송사왜와 제5선에서 17선까지의 바친 서계와 별폭 각 18통 등은 감봉하여 해조로 올려 보내고, 관수왜 굴여동(橋如棟)의 원역 등에 대한 하선연은 이번 21일로 정하였기로, 같은 날 신이 부산첨사와 더불어 함께 초량 객사로 가서, 동 왜인들에게 전례대로 진상 숙배한 뒤에, 그대로 연청으로 가서 하선연을 베풀었거니와, 지금 온 이페이양 송사왜의 서계 가운데 선조(宣祖)의 초휘(初諱)를 범한 곳을 처음으로 보고는, 놀라고 분함을 견디지 못하고 마땅히 물리쳐서 고쳐 바치게 해야 하나, 등록을 가져다 살펴보니 정사년(1737)에 제1선 송사왜의 서계 가운데 잘못하여 어휘(御諱)를 범한 것이 있었는데, 그 때 부사 신 오명서(吳命瑞)가 열거하여 따져서 장계로 알리고 비변사에서 회계한 관문 내용에, ‘초휘는 정휘(正諱)와 다름이 있어서 이전부터 모두 받아 올려 그냥 두었다’고 하였기로, 신 또한 이전대로 받아 올려 보내는 일임.

경오(1750) 5월 11일

비변사의 감결 내용. 동래부사의 첩정 내용에, “왜관 동관과 서관 건물의 공사를 시작하여 이미 7개월이 되었는데도 공사를 마칠 기약이 없어서, 본도 감영에서 본부에 신칙하여 공사를 독려하게 하였는데, 감동역관과 훈도 별차 등이 매양 왜인 공장(工匠)이 공사를 지체한다고 청탁하는바, 본부에서 전례에 따라 공사를 감독하여서는 엄중하게 두려워하며 공사를 마칠 도리가 만무하여, 동래부에 보관하고 있는 신해년(1731)의 장록(狀錄)을 살펴보니, 왜선이 나와서 문정할 때 왜인의 명수를 착오하여 여기거나 물종(物種)을 누락한 임역 등은, 작게는 본부에서 추고하여 다스리고 크게는 장계하여 죄를 벌하도록 한 일로 비변사에서 계하한 관문이 도부하였는바, 위의 감동 역관과 훈도 별차 등이 부지런히 감독하지 아니한 죄는 신해년(1731)의 사목(事目) 조건에 견주어 더욱 무거우나, 일이 변방 정세에 관계되는 것은 한 가지인지라, 동 감동 역관 및 훈도 별차 등을 신해년(1731)의 정식으로 본부에서 죄를 다스려 공사를 독촉함이 어떠할지, 비변사에서 참작하여 분부하여 달라” 하였는데, 그 제사 내용에, “왜관의 공사가 지금까지 지연되는 것은 극히 해괴하여, 감동 역관 및 훈도 별차 등을 엄하게 다스리지 않아서는 불가하니, 신문(申聞)하여 죄를 청하여 곤장을 쳐서 독려하고 신칙하도록 함이 마땅한 일”이라 하였음.

비변사의 감결 내용. 경상감사의 보장(報狀)에 대한 제사 내용에, “근래 역관들이 그들이 하고자 하는 바를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은, 오로지 국가의 기강이 엄중하지 못한 소치로 말미암은 것이라 실로 한심하거니와, 왜관의 공사는 비록 넓고 크다 하지만, 지금까지 몇 달이 되도록 아직까지 공사를 마치지 않고, 누차 재촉하여도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다가, 이제 감히 하기(下記:지출장부)를 장황하게 속이며 물자와 인력이 이미 고갈되었다고 탈을 잡으니, 어찌 이런 버릇이 있겠는가? 이 무리들이 조금이나마 국법을 준엄하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반드시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고, 동래부에서 엄하게 신칙하지 아니하고, 본도 감영에서 날날이 거론하여 전보한 것도 모두 일의 체면이 아니며 매우 미안한 일이고, 역관 등이 이 보장을 가지고 황급하게 올라와서 묘당에 분주하게 다니며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더욱이 매우 절통한 일이다. 당초 공목(公木)을 마련하여 무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이미 조정하였으면, 조정에서 이제 어찌 다시 지급하여 저들의 무한한 욕심을 채워주는 바가 있겠는가? 본도 감영과 동래부에서 담당하여 엄중하게 독촉하여, 즉시 속히 공

사를 마친 뒤에 장계로 알리고, 다시는 이런 것들로 국가의 체면은 손상하고 후일의 폐단을 끼치며 번거롭게 보고하지 말도록 함이 마땅한 일임.

경오(1750) 5월 28일

동래부사 황경원이 5월 19일에 성첩한 장달 내용. 이달 초3일에 도부한 부산 첨사 조위진(趙威振)의 치통 내용에, “무진년(1748) 10월 26일에 나왔던 관수의 종왜 1명과 기사년(1749) 4월 초7일에 나왔던 별일대관의 종왜 1명 등이 오늘 병으로 죽어서, 그대로 왜관 뒷산에 매장하여 두었다는 훈도 이명윤과 별차 한창주 등의 수본에 의거하여 치통한다” 하였음. 17일 해시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오늘 미시 쪼에 조선 배인지 왜선인지 분간되지 않는 배 1척이 물마루에서 나와서 표류하여 좌도로 향한다는 봉군의 진고에 의거한 좌수영의 관문 내용에, ‘동 배가 정박한 곳을 수탐하여 문정하라’는 뜻으로 별차에게 엄하게 신칙하여 정하여 보냈으며, 기장 삼공형(三公兄)의 문장(文狀) 내용에, ‘분간되지 않는 배 1척이 물마루에서 표류하는데, 과연 왜인의 큰 배가 진시 쪼에 기장현의 경내 무지포 앞바다에 정박하였으므로, 향소(鄉所)와 공형(公兄)이 주사대장(舟師代將)과 더불어 달려가서 땔감과 물을 전례대로 들여 주고 수호한다’고 치통하였고, 분간되지 않는 배 1척이 물마루에서 표류하여, 술시에 무지포 앞바다에 정박하여 땔감과 물을 들여 주었고, 18일에 기장 무지포로 달려갔더니 왜인의 큰 배 2척이 과연 정박하였으므로, 문정하였더니, ‘도중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고, 제1척은 을축조 제7선에 격왜 30명, 교대차 나온 별금도왜 2인, 중금도왜 3인, 하대왜 3명 등이 함께 타고, 노인 및 생동 3,000근을 실어가 졌으며, 제2척은 을축조 제8선에 격왜 30명, 교대차 나온 중금도왜 2인, 하대왜 3명 등이 함께 타고, 노인 및 술 2통을 실어가지고 공작미를 실어가기 위하여 큰 배 2척 및 비선 1척이 이번 17일 이른 아침에 대마도에서 동시에 출발하여 곧바로 관소로 향하다가, 비선은 바다의 반에 못미쳐서 돛대가 부러져 손상되어 대마도로 되돌아갔고, 저희들의 배 2척은 곧바로 관소로 향하다가 물마루에 이르지 못하여, 구름과 안개가 사방을 막고 바람의 형세가 불순하여, 1척은 진시 쪼에 표류하여 이곳에 도착하고, 1척은 술시 쪼에 표류하여 이곳에 도착하였으며, 관소로 돌아가 정박한 뒤에 다시 문정할 계획이라’ 하였으며, 일시에 도부한 기장 삼공형의 문장 내용에, ‘무지포에 정박한 왜인의 큰 배 2척은, 오늘 진시에 출발하여 사시에 폐단없이 경내를 지나서 미시에 영솔하여 관소에

부쳤다'고 하였으며, 즉시 훈도 별차에게 명하여 문정한 수본 내의 사연은 표류하여 무지포에 정박하였을 때 별차의 문정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데, '소지한 노인 2통은 받아서 올려 보낸다'고 운운하였음. 변방의 보고가 얼마나 긴요하고 소중한데, 기장에서 본진이 50리 거리에 불과한데도, 오늘 인시에 무지포 왜선에 문정한 수본 및 치보 문서가 7시진을 경과한 뒤에 비로소 가져와서 전한 것은, 하는 일이 매우 극히 해괴하여, 각별히 엄중하게 다스리기 위하여, 먼저 가져온 자를 구류하였고, 동 현의 변정 담당 색리도 마땅히 잡아와서 후일을 징계하여야 하나, 본진에서는 이미 각 읍의 색리(色吏)를 추고하여 논하는 규정이 없으니, 귀 동래부에서 엄중히 더 신칙한 뒤에라야 변방 정보를 늦게 전하는 폐단이 없겠으며, 신시 쯤에 조선 배인지 왜선인지 분간되지 않는 배 1척이 물마루에서 나와서 유시 쯤에 영솔하여 관소에 부쳤다는 초탐장의 치보에 의거하여, 즉시 훈도 별차 등에게 문정하게 한 수본 내용에, '도중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고, 비선에 두왜 1인, 격왜 6명, 교대차 나온 중금도왜 1인, 소금도왜 1명 등이 함께 타고 노인 및 관수왜에게 보내는 사서를 가지고, 어제 이른 아침에 대마도에서 큰 배 2척과 함께 출발하였다가, 바다 반에 못미쳐 바람 형세가 불순하여 큰 배 2척은 향한 곳을 모르고, 저희들의 비선은 돛대가 부러져 손상되어 대마도로 돌아가 정박하였는데, 오늘 이른 아침에 발선하여 나왔다고 운운 하였다' 하기에, 소지한 노인 1통을 받아 올려 보내는 일로 치통한다" 하였음. 나온 왜선이 소지한 노인 3통은 감봉하여 해조로 올려 보내거니와, 큰 배 2척이 표류하여 무지포에 정박하였을 때 문정한 수본과 치보한 문장이 부산으로 늦게 전해져서, 동 진에서 죄를 다스리기 위하여 가져온 자를 구류하였으니, 막중한 변방 보고를 이렇게 늦게 전한 일은 매우 해괴한데, 가져온 자의 죄만 다스리고 말아서서는 불가하여, 기장의 변정 담당 색리를 본부에서 잡아다가 엄하게 다스려 징계한다는 일임.

비변사의 감결 내용. 동래부의 접왜절목(接倭節目).

一. 공미(公米)와 급료 미곡과 콩을 받아올릴 때, 부산첨사와 동래부 군관이 함께 말질[斛量]을 감독하고, 들여줄 때는 훈도 별차가 수본(手本)을 운감(運監)에게 내어주어 그로 하여금 영솔하여 운반하게 하고, 양급(量給) 등의 일은 모두 이전의 정식으로 거행할 것.

一. 운감(運監)이 일을 빙자하여 물을 타는 것을 매양 이수두(二手斗)⁴⁶⁾를 가

46) 이수두(二手斗) : 수두(手斗)는 당시 일본의 계량(計量) 단위로 조선의 2되(升) 5홉[合] 또는 3되에 해당되는 분량이다. 일본에서는 50수두를 1섬(石)으로 계산하였는데,

급(加給)하면서 감축되는 것과, 들여줄 때의 음식과 뇌물을 지급하는 비용 때문이라고 핑계하는데, 이수두의 부족한 수량은 지금부터 시작하여 낙정미(落庭米)⁴⁷⁾ 2되를 운감에게 귀속시키면 넉넉하게 맞출 수가 있겠고, 음식 뇌물 한 조목에 있어서는 오로지 운감들이 미봉책으로 물을 섞는 것을 잘못된 전례로 삼은 소치로 말미암은 것이니, 이제 잘 마르고 정결한 쌀로 양에 맞추어 들여 준다면 절로 이런 폐단이 없을 수 있으니, 이 뒤로 운감이 물을 타는 것을 동래부에서 적발하여 먼저 효시(梟示)한 뒤에 장계로 알리고, 만약 몽롱하게 살피고 발각하지 못하다가 다른 일로 인하여 적발되면, 당해 부사에게 10년 금고의 법률을 시행함.

一. 왜인이 1차에 청하여 받는 수량이 1,000섬이나 혹 2,000섬이니, 전례대로 이 수량을 내어 운감에게 주어 그로 하여금 들여 주게 하되, 운감이 한 번에 운반하는 것이 많아도 300섬에서 400섬 정도에 지나지 않아서, 그 나머지 운반하지 못한 곡물은 사처(私處)에 별도로 두고는, 바람 형세가 불순하다는 핑계로 시일을 허비하며 운송하지 않으면서, 중간에서 농간하는 폐단이 여기에서 연유하는 것이 많으니, 이 뒤로는 훈도 별차가 만약 쌀을 청구하는 수본이 있으면, 동래부에서 대솔군관(帶率軍官)을 시켜 배로 실을 수 있는 것이 몇 섬이며, 바람 형세로 보아 몇 번이나 운반할 수 있는지를 헤아려서, 단지 당일 운반해야 할 수량 만큼만 대조하여 내어주어, 즉시 포장하여 신고 즉시 발선하여 잠시도 지체하지 못하도록 하며, 부산에서 왜관까지 거리가 매우 가까워서 배가 왕래하는 것을 손꼽아 헤아릴 수 있으니, 그대로 군관에게 명하여 대변정(待變亭)에 머물러 있으면서 배가 도착하여 정박하는 사정을 일일이 관측하여, 날마다 분량을 헤아려 지급하고, 날마다 운반을 독촉하여, 그 운송이 다 끝나기를 기다려 본부로 돌아가 보고함으로써 여러가지 간사한 폐단을 방지하는 일로, 별도의 조목을 세워 엄하게 신칙하여 거행하되, 만약 규정을 어기거나 넘어서 삼가하지 못한 일이 있으면, 해당 군관 및 운감을 모두 효수하거나 유배하고, 부사는 5등의 고신(告身)을 박탈하는 법률을 적용할 것.

一. 왜관에 들여 주는 쌀 가운데 공작미는 왜인이 두 차례 간색(看色)하면서, 혹은 크고 작은 대나무 통으로 매 섬의 쌀을 뽑아내거나, 혹은 풀어서 계량할 때 뇌물을 주면 가마니를 차고 줄을 두들겨서 허다하게 감축되는 폐단이 있으

왜관에서 왜인에게 공무역(公貿易)의 대금으로 곡물을 지급할 때, 운반과정에서 감축되는 분량을 감안하여 1섬에 2수두를 더 없어주는 관례가 있었던 듯하다.

47) 낙정미(落庭米) : 미곡으로 세금을 거둘 때 계량을 하는 과정에 흩어지는 분량을 감안하여 더 받아들이는 명목의 미곡. 조선후기에 한 섬에 4되에서 1말까지를 낙정미로 책정한 사례가 있다.

니, 지금 이후로는 1차 간색하는 외에 비록 1되의 쌀이라도 더 징수하지 못하고, 1개의 물건이라도 뇌물로 징수하지 못하게 하는 일로, 훈도 별차에게 명하여 관수 대관에게 책망하고 타일러 약조를 만들어 받아내어 일체 엄격하게 방비하되, 운감으로서 범한 자는 동래부에서 먼저 효시한 뒤에 장계로 알리고, 만약 덮어두고 발각하지 아니하면 당해 부사 또한 종신토록 금고하는 법률을 시행하며, 훈도 별차로서 책망하고 타이르지 못하여 왜인이 뛰쳐나와 소란을 부리면, 또한 동래부에서 즉시 장계로 알리고, 해당 훈도 별차는 먼 변방으로 유배하고, 왜인은 도중(島中)에 통보하여 더 엄하게 죄를 정하게 할 것.

一. 이제 이 정식은 조정에서 먼 곳의 사람을 염려하는 특별한 은혜에서 나온 것인데, 왜인들이 감축(感祝)할 도리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들어줄 때 혹 핑계를 대어 받아들이지 않고 여러 날 동안 수문 안에 놓아두거나, 수표를 작성하여 받아낼 무렵에 이전에 하던 것처럼 조종하며 시일을 끌면, 훈도 별차는 감영에서 엄중하게 곤장을 치고, 왜인은 도중에 통보하여 각별히 엄하게 다스린다는 뜻으로, 또한 약조를 의논하여 정하게 할 것.

一. 각 고을에서의 하납(下納)⁴⁸⁾은 본디 정해진 기한이 있는데, 근래에는 태만하여 소홀함이 심해져서 즉시 수송하여 납입하지 아니하여, 받아서 들여 주는데 매양 기일을 어기게 되니, 지금 이후로는 분참(分站)을 구획한 뒤에, 동래부에서 엄하게 더 독촉하여 받되, 반드시 5월 이내로 납입을 마치고, 각 고을에서 혹 늦추어서 기일에 맞추지 못하는 곳이 있으면, 해당 고을의 감색을 동래부에서 곤장 잡아다가 스스로 판단하여 엄하게 형벌할 것.

一. 강과 바다 연안에서 하납하는 고을의 감색과 배의 격군이, 거짓으로 물에 젖었다고 일컬으며 몰래 물을 타는 폐단이 있는데, 이는 받아 올릴 때 별도로 살펴서, 만약 범한 자가 있으면 동래부에서 더욱 엄하게 조사해 내어서 효시하고 장계로 알리는 것은, 운감이 물을 타는 경우의 법률과 같이 하며, 부동(符同)하여 기만한 동래부의 감색은 물을 탄 자와 같은 법률을 적용하며, 해당 고을의 수령 또한 10년 금고의 율을 적용할 것.

一. 부창(釜倉)에서 받아올릴 때 부창의 하속(下屬)이 간혹 각 고을의 색리 및 선격(船格)에게 빙자하여 뇌물을 징수하거나 거두는 일이 있으면, 부산첨사는 엄중하게 죄를 처단하고, 동래부 군관은 감영으로 잡아다가 엄중하게 곤장을 치고, 본 부창 색리 및 죄를 범한 자는 엄하게 형벌을 하고 먼 곳으로 유배할 것.

48) 하납(下納) : 경상도 각 고을의 조세 중 왜관무역과 관련하여 부창(釜倉)으로 납입하는 세곡(稅穀).

一. 땔감과 숯[柴炭]은 부산첨사에 명하여 이전대로 상정군목(詳定軍木)으로 미리 먼저 마련해 두었다가 기일에 맞추어 들여 주되, 근래에 들여 주는 땔감과 숯은 전혀 보살피지 않아서 모양을 갖추지 못하고, 심지어는 바닷가의 노지에 방치하여 비와 눈에 젖어서 왜인들이 다시 팔려야 비로소 불을 땔 수 있다고 하니, 일이 국가 기강에 관계되어 참으로 극히 한심하다. 이 뒤로는 첨사가 일일이 친히 검사하여, 땔감은 반드시 그 정결하고 좋아서 쓸만한 것을 취하고, 숯은 회목(灰木)이 섞이지 않은 것을 각별히 가려서, 별도로 긴 가건물을 만들어 거적으로 덮고 그 안에 보관하여 혹시라도 이슬에 젖지 않게 하여 들여 주도록 하되, 만약 삼가 거행하지 아니하고 적발되는 일이 있으면, 해당 첨사 또한 종신토록 금고하는 법률을 적용할 것.

一. 조정에서 틈틈이 암행어사를 보내어 염탐하고, 또 비변사에서 해마다 낭청을 보내어, 무릇 모든 거행해야 할 일들을 적간하여 그 부지런하고 태만함을 살펴서, 태만한 자는 엄중하게 따져 처단할 것임.

一. 요리(料理)하여 방환(防換)하는 것을 금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미 정한 법률이 있으니, 이 뒤로 혹 진작 들여 주지 아니하고 중간에서 전환(轉換)하는 폐단이 있으면, 적발되는 대로 범한 것의 다과를 막론하고, 감색은 효시하고, 부사는 장물죄로 논하여 종신토록 금고하는 법률을 시행할 것.

경오(1750) 6월 18일

비변사의 감결 내용. 비변사의 신목(申目)을 첨부하였으니 달하(達下)하시기를. 이 동래부사 황경원의 장달을 보면, “왜관 공사를 시작한 지 이미 여러 달이 되었는데도 공사를 마칠 기약이 없어, 감영에서 본부에 신칙하여 공사를 독촉하게 하였더니, 감동역관과 훈도 별차 등이 매양 왜인 공장(工匠:기술자)의 일을 지체하고 있는 것으로 핑계하는데, 본부에서 전례에 따라 독려하고 신칙하는 것만으로는 엄중하게 두려워하여 완전하게 마칠 도리가 만무하기로, 위의 감동역관과 훈도 별차 등의 죄상을 묘당에 명하여 품의 조치하게 해 달라”고 하였는바, 당초 왜관 수리의 공사할 곳을 이미 적간하여 살펴서, 들어갈 물자와 인력 또한 즉시 마련하여 기일을 정하여 공사를 마치게 하였거늘, 혹은 공사가 넓고 크다고 일컫거나 혹은 물자와 인력이 부족하다고 일컬으며, 공사를 시작한 지 한 해가 지나도록 아직까지도 시일을 끌고 있는 것은, 오로지 이 일을 빙자하여 이익을 도모하려는 계획에서 나온 것이라, 일이 기강에 관계되어

매우 한심하기로, 감동역관 및 훈도 별차 등으로 명을 따르지 않는 자는, 죄의 경중에 따라 정식대로 좌수영으로 이송하여 곤장을 쳐서 징계하여 다스려서, 각별히 공사를 감독하여 즉시 속히 끝내도록 하되, 이렇게 하여도 또 다시 시일을 늦추면, 다시 장계로 알려 죄를 논하여 엄중하게 조치하도록 하며, 부사도 엄하게 신칙하지 못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우니, 무겁게 추고함이 어떠할지? 건륭 15년(1750) 6월 일 우부승지 신 이응협(李應協)⁴⁹⁾ 차지로 입달(入達)하여 그대로 인준[準]함.

경오(1750) 6월 19일

동래부사 황경원이 6월 초9일에 성첩한 장달 내용. 이달 초6일 유시 쯤에 조선 배인지 왜선인지 분간되지 않는 배 3척이 물마루에서 나온다고 봉군이 신고하였으며, 무진년(1748) 1월 26일에 나왔던 관수왜의 종왜 1명이 오늘 병으로 죽어서 그대로 왜관 뒷산에 매장하여 두었다는 훈도 이명윤과 별차 한창석 등이 수본한 일임.

경오(1750) 7월 11일

동래부사 황경원이 7월 초1일에 성첩한 장달 내용. 지난 달 12일에 왜선 2척이 나오다 표류하여, 우도 옥포에 정박하였다가 19일에 되돌아 관소로 향할 때, 가덕진 망군 등이 신고한 시각 및 어느 시각에 지나갔는지 여부를 전혀 거론하지 아니한 곡절은, 그 조사 보고를 기다려 다시 신문(申聞)하겠다는 뜻으로 전에 이미 치달(馳達)하였는데, 22일 부산첨사 조위진의 치통 내용에, “방금 접한 가덕첨사의 전통에 의거한 다대포첨사의 치통 내용에, ‘초본(草本)을 상고하니, 위의 왜선 2척은 이번 19일 미시에 좌도로 지나갔다고 망장(望將)이 신고하였는데, 전통 가운데 동 시각을 바빠 서두르는 사이에 적지 않았으며, 동배를 초탐하기 위해 장목포 가장(假將) 오세대(吳世大)가 배를 타고 본 장목포 경내의 백여(白礮) 앞바다로 전진하였다가, 바다 밖에서 폐단없이 경계를 지나갔다고 차례차례 전해온 전통에 의거하여 치통하였다’ 하였는 바, 옥포에서 19

49) 이응협(李應協, 1709-?) : 성주이씨로 자는 인경(寅卿)이다. 영조 12년(1736) 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거쳐서 도승지, 대사간, 대사헌을 역임하였다.

일 사시에 출발하여 오시에 다대포에 도착하였으니, 오시와 미시 사이가 비록 그다지 멀지 않다고는 하지만, 가덕에서 미시에 지나갔다고 한 것은 착오를 면치 못하고, 무릇 왜선이 표류하여 우리나라 경내에 이르렀다가 되돌아서 관소로 올 적에는, 지나간 사정을 마땅히 즉시 치보해야 하거늘, 동 왜선 2척이 관소로 돌아와 도착한 것이 이미 4일이나 되는데, 이제 비로소 보고가 왔을 뿐 아니라, 지나간 시각 또한 거론하지 않은 것은, 변방 정세로 헤아리건대 극히 놀라운 일이라, 연유를 치통한다” 하였는데, 변방 정보를 엄중하게 하는 도리에 있어서 그냥 두어서는 불가하기로, 가덕진 감색 및 장목포 가장 등의 죄를 다스려 후일을 징계하는 일로 통영에 보고하였음. 같은 날 술시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오늘 신시 쯤에 조선 배인지 왜선인지 분간되지 않는 배 1척이 물마루에서 돌아서 좌도로 향한다고 하였고, 일시에 도부한 별차의 수본 내용에, ‘위의 왜인의 큰 배 1척은, 진시에 예인하여 무지포에 정박하고 즉시 문정하였더니, 도중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고, 을축조 1특송사 2호가 재차 건너온 배에, 격왜 30명, 교대차 나온 도금두왜(都禁頭倭) 1인, 중금도왜 2인, 통사왜 1인, 하대왜 4명 등이 함께 타고 노인을 가지고, 공작미를 실어가기 위해 어제 이른 아침에 대마도에서 출발하여 곧바로 관소로 향하였는데, 겨우 물마루를 지나서 바람 형세가 불순하여 표류하여 바다 가운데 이르러 밤새도록 돌아서 전전하여 이 포구 바깥 바다로 왔다가, 오늘 아침 비로소 영술 예인하여 오늘 진시 쯤에 이곳에 정박하였다고 운운 하였으며, 관소로 돌아와 정박한 뒤에 다시 문정할 계획이라’는 일로 수본하였다”고 하였음. 26일 미시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위의 남천(南川) 앞바다로 옮겨 정박한 왜인의 큰 배 1척은, 오늘 인시에 출발해서 사시에 영술하여 관소에 부쳤기에, 즉시 훈도 이명윤과 별차 한창주 등에게 명하여 문정하게 한 수본 내의 사연은, 당초 표류하여 무지포에 정박하였을 때 별차가 혼자 가서 문정한 것과 다름이 없는데, 술 2통을 실어가졌으며, 소지한 노인은 그것이 재차 건너온 것이 규정 외이기로 물리쳐서 받지 아니하고, 속히 들여보내라는 뜻으로 관수왜에게 책망하여 타일렀다”고 치통하였는데, 위의 규정 외에 나온 배는 되돌려보내는 일로 관수왜에게 책망하여 타이른 일임.

경오(1750) 7월 19일

예조에서 입계하기를, “능(陵)과 전(殿)과 묘(墓)와 본조의 낭청(郎廳)과 사학

(四學)의 동몽교관(童蒙敎官)과 통례원(通禮院)과 봉상시(奉常寺)와 전생서(典牲署)와 도화서(圖畵署) 관원들에 대한 이번 경오년 춘하등(春夏等)의 포폄을 등제(等第:등급)로 매겨 들이며, 종묘(宗廟)와 사직서(社稷署), 홍문관(弘文館), 예문관(藝文館), 춘추관(春秋館), 승문원(承文院), 성균관(成均館), 교서관(校書館), 장악원(掌樂院), 귀후서(歸厚署), 사축서(司畜署), 예빈시(禮賓寺), 동서 활인서(活人署), 동서 빙고(氷庫), 사역원(司譯院), 내의원(內醫院), 전의감(典醫監), 혜민서(惠民署), 관상감(觀象監), 동서 관왕묘(關王廟) 관원 들의 포폄은, 각기 그 관청의 영사(領事)와 제조당상(提調堂上)의 유고(有故)로 일시에 마감하지 못하였다는 뜻을 감히 입계합니다”라고 하니, 전교에 “알았다”고 하셨음.

경오(1750) 7월 29일

동래부사 조재민(趙載敏)⁵⁰⁾이 7월 20일에 성첩한 장달 내용. 신은 이달 15일에 전 부사 신 황경원과 본부 경내의 심휴정에서 교인한 뒤 그대로 도입하였음. 17일 유시 쯤에 조선 배인지 왜선인지 분간되지 않는 배 2척이 물마루에서 나왔음. 18일 오시에 도부한 부산첨사 조위진의 치통 내용에, “어제 물마루에서 나왔던 분간되지 않는 배 2척은 과연 왜인의 작은 배인데, 해시에 영솔하여 관소에 부쳤다고 초담장이 치보하였으며, 방금 접한 훈도 현대익(玄泰翼)⁵¹⁾의 수본 내용에, ‘왜인의 작은 배 2척이 밤이 깊어 관소에 도착 정박하였으므로 오늘 아침에 가서 문정하였더니, 도중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고, 제1척 비선에 두왜 1인, 격왜 6명, 교대차 나온 증금도왜 1인, 소금도왜 1명 등이 함께 탔으며, 제2척 비선에 두왜 1인, 격왜 6명, 교대차 나온 별금도왜 1인이 함께 타고, 각기 노인 및 은화 3,000냥씩 실어가졌는데, 노인은 그 전면에 「각도 각관 방어소」라 써 넣은 것이 격식에 어긋나기로 물리쳐 받지 아니하고, 다시 고쳐 적어 바치라는 뜻으로 관수왜에게 책망하여 타일렸으며, 동 두왜 등의 말이, 「저희들이 탄 배 2척 외에는 바람을 기다리는 배가 없었다」고 하였는바, 관소에 도착한 비선의 문정에는 2척의 비선 외에 이미 바람을 기다려 발선했던 일이 없

50) 조재민(趙載敏, 1706-?) : 풍양조씨로 자는 언신(言愼)이다. 영조 13년(1737) 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거쳐 동래부사와 대사간을 역임하였다.

51) 현대익(玄泰翼, 1701-?) : 본관은 천녕(川寧), 자는 중거(仲擧). 왜학 훈도 현대윤(玄德潤)의 아들로 경종 2년(1722) 증광시 역과에 왜학으로 합격하여 교회(敎誨)를 역임하였다.

었다고 운운하였고, 또한 전로(前路)의 고을과 진에서 관측했다고 보고한 일이 없으니, 아마도 이는 관소에 도착한 비선 2척이 나올 때 조수에 이끌려 전전하며 표류할 적에 간비오 봉군이 관측한 바가 있어서인지 아직 모르겠으나, 별차의 수분을 기다려 상세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치통하였음. 이제 이번에 나온 비선 등이 소지한 노인은 속히 고쳐 적어 바치라는 뜻으로 다시 임역에게 명하여 관수왜에게 책망하여 타이르게 하였거니와, 좌도로 표류하여 향하였다고 하였던 분간되지 않는 배 2척은 이미 정박한 곳이 없기로, 초탐장 및 별차 등이 모두 빈손으로 돌아왔는데, 필시 관소에 도착한 비선이 물마루에서 전전하여 표류할 때 간비오 봉군 등이 잘못하여 좌도로 표류하여 향한 것으로 관측하여 보고한 소치이고, 위의 잘못 고한 봉군은 소속된 곳에서 죄를 다스려 후일을 징계함이 마땅한 일임.

경오(1750) 9월 초8일

동래부사 조재민이 8월 27일에 성첩한 장달 내용. 이달 21일 오시에 도부한 부산첨사 조위진의 치통 내용에, “조선배인지 왜선인지 분간되지 않는 배 1척이 바다에서 나와서 표류하여 거제도도 향한다”고 하였으며, 같은 날 술시에 도부한 동 첨사가 또 치통한 내용에는, “방금 접한 훈도 현대익과 별차 한창주의 수분 내용에, ‘기사년(1749) 12월 11일에 나왔던 을축조 제17선에 격왜 20명, 기사년(1749) 6월 12일에 나왔던 도금도왜 1인, 올해 2월 19일에 나왔던 소금도왜 1명, 올해 6월 12일에 나왔던 을축조 제10선에 격왜 30명, 올해 5월 20일에 나왔던 중금도왜 1인, 올해 3월 27일에 나왔던 소금도왜 1명 등이 나누어 타고, 각기 공작미를 실어가지고 돌아 들어가기 위해 오늘 수문 밖에서 바람을 기다리다가, 22일 큰 비바람에, 왜인의 큰 배 2척 중 1척은 오시 쯤 선창 안으로 들어와 정박하였고, 1척은 파도에 이끌려서 선창 앞바다에 닻을 내리고 떠서 머물렀는데, 관소에서 금도왜의 작은 배 1척에 중금도왜 1인과 격왜 7명 등이 함께 타고 나와서 수호하다가, 파도에 내몰려서 전전하여 남북병막(南伏兵幕) 앞바다에 도착하여, 배는 조각조각 부서지고 탔던 왜인은 근근이 살아나서 오시에 왜관으로 되돌아 들어갔다’ 하였으며, 수문(守門)의 소통사(小通事) 전봉석(全奉石)이 진고한 내용과 한가지이기로, 각별히 수호하라는 뜻으로 엄하게 신칙하였다”고 하였음. 같은 날 술시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선창 앞바다에 떠서 머물던 왜선 1척은, 오늘 신시 쯤에 파도에 내몰려서 전전하

여 절영도 앞바다로 흘러가서 그대로 떠서 머문다는 수호장의 치보에 의거하여, 진(鎭) 아래 마을에 있는 배에 닻과 새끼줄을 많이 지급하여, 기어코 예인하여 관소로 들이라는 뜻으로 각별히 신칙하였다” 함. 23일 술시에 도부한 동첨사의 치통 내용에, “절영도 당(堂) 앞바다에 떠서 머물던 왜인의 큰 배 1척에, 어제 각 진(津)의 해한(海漢)의 배에 닻과 새끼줄을 많이 지급하여, 그들로 하여금 영술 예인하게 하였는데, 밤이 점차 깊어지고 파도가 쉬지 않아 배를 예인하지 못하고, 밤새도록 돌보다가 근근히 무사히 지내고, 사시에 영술 예인하여 바람을 기다리는 곳에 정박하였는데, 실었던 짐물(什物)들을 말리기 위하여 신시에 관소의 선창으로 들어갔기로, 진(鎭)으로 되돌아간다고 수호장이 치보하였으며, 방금 접한 훈도 별차 등의 수본 내용에, ‘위의 왜인의 큰 배 1척이 신시에 관소로 들어와 정박한 뒤에, 물에 젖은 짐물들을 바야흐로 말리고 있고, 관수왜의 말이, 이번의 풍파로 어제 바람을 기다리던 왜선을 돌보기 위하여 바다로 나갔다가 부서진 작은 배 1척은, 곧 올해 7월 17일에 나왔던 비선이며, 또 올해 6월 12일에 나왔던 을축조 제12선 1척과 올해 8월 11일에 나왔던 비선 1척, 당년조 1특송사 1호선 1척, 2호선 1척 등 도합 4척이, 바람에 파도가 크게 일어났을 때 암석에 여러 번 부딪쳐서 목판이 부러져 손상되고 그대로 물을 담아, 바다를 건널 형편이 만무하여 이제 막 뜯어내고 있으며, 동 1호와 2호선의 물을 길어내던 작은 배 2척이 풍랑에 무수히 전복되고 새끼줄이 끊어져서 표류하여 흩어져 간 곳을 모르는데, 혹 표류하여 근처 경내에 도착하였으면 찾아내어 달라고 이야기 하였다’는 수본에 의거하여, 이른바 물을 길어내던 작은 배 2척이 표류하여 도착한 곳이 있으면, 각별히 수탐하여 즉시 보고하라는 뜻으로 진 경내의 포구를 관할하는 곳에다 전령을 보내어 분부하였거니와, 어제 금도왜 등이 타고 갔다가 파선된 작은 배 1척이 이미 올해 7월 17일에 나왔던 비선이라면, 당초 금도왜의 작은 배라 범연하게 수본하였다가, 이제 관수왜의 발설로 인하여 이렇게 수본한 것은 매우 놀랄 만한 일이므로, 배석한 통사 등을 본진에서 잡아와서 곤장을 쳐서 후일을 징계한다” 하였음. 24일 자시에 도부한 동첨사의 치통 내용에, “기사년(1749) 12월 초10일에 나왔던 하대왜 1명이 어제 병으로 죽었기로 왜관 뒷산에 매장하여 두었다고 훈도 별차 등이 수본하였으며, 방금 접한 가덕 첨사의 전통에 의거한 다대포 가장(假將)의 치보 내용에, ‘이번 24일 신시에 바다 가운데서 나와서 표류하여 거제도 방향으로 분간되지 않는 배 1척은 과연 왜인의 작은 배로, 이번 20일 유시 말에 상봉하여 영술 예인하여, 술시에 지세포 강 입구에 정박한 뒤, 옥포왜학 김정도(金鼎都)와 소통사 권순택(權順澤) 등이 21일 축시에 달려가서 문정하였더니,

도중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고, 비선에 두왜 1인, 격왜 5명, 교대차 나온 중급 도왜 2인 등이 함께 타고, 노인 및 관수왜에게 보내는 사서를 가지고, 이번 20일 이른 아침에 대마도에서 발선하여 곧바로 관소로 향하다가, 겨우 물마루에 이르러 바람 형세가 불순하고 표류하여 이곳에 도착하였다는 일로 문정하였다는 차례차례의 전통에 의거하여 치보한다' 하였기로, 동 배를 속히 관소로 호송하라는 뜻으로 신칙하였으며, 관왜 등의 조상 분묘가 구관 뒷산에 있는데, 이제 추사일을 당하여 이번 23일에 전례대로 가서 살피겠다고 하거늘, '이번 18일이 추사일인데 어찌하여 23일이 사일이라 하는가?' 물었더니, 왜인들이 답하기를, '우리 나라에서는 이번 23일이라' 운운하였다는 훈도 별차 등의 수본에 의거하여, 왜인들이 출입할 때 별차가 소통사와 함께 데리고 영솔하여 내왕하여 횡행하지 못하게 하라는 뜻으로 신칙하였다" 함. 26일 자시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지세포 강 입구에 정박한 왜인의 비선 1척은 다대포 앞바다로 옮겨 정박하였는데, 비바람이 번갈아 일어나 출발하지 못한다고 운운하여, 바람이 시들하기를 기다려 즉시 속히 영솔하여 관소에 부치라는 뜻으로 신칙하였다"고 하였음. 같은 날 술시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이번 21일에 바람을 기다리던 왜인의 큰 배 2척이, 이번 풍파에 출몰할 때 젖었던 짐물을 말린 뒤, 오늘 자시에 관소에서 출발하여 돌아 들어갔다고 훈도 별차 등이 수본하였으며, 다대포 앞 바다로 옮겨 정박한 왜인의 비선 1척은, 사시에 출발해서 미시에 영솔하여 관소에 부쳤다는 치보에 의거하여, 즉시 훈도 별차들에게 명하여 문정하게 한 수본의 사연은, 당초 지세포로 표류하여 정박하였을 때 옥포왜학의 문정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데, 소지한 노인은 그 전면에 써넣은 것이 격식이 어긋나므로 물리쳐서 받지 아니하고, 고쳐 적어 바치라는 뜻으로 관수왜에게 책망하여 타일렀다고 하며, 오늘 자시에 돌아 들어간 왜인의 큰 배 2척은, 미시 쪽 바다 반쯤에 이르러 물러나 머무르는 모습이 있는 듯하였으나, 비가 내리고 구름과 안개 가운데 그 향한 곳을 또렷하게 분간할 수 없다는 진고에 의거하여, 동 배가 가고 머문 곳을 다시 더 상세히 관측하라는 뜻으로 신칙하였고, 어제 돌아 들어간 왜인의 큰 배 2척이 가고 머문 것을 밤새워 관측하였으나, 등불을 들어 올리는 모습이 없었고, 밝기를 기다려 다시 관측하니 또한 떠서 머무는 곳이 없으니, 필시 밤 사이에 그대로 대마도로 들어간 소치일 것"이라 하였음. 위에 나온 비선의 격식을 어긴 노인은 고쳐 적어 바치라는 일로 책망하여 타일렀거니와, 동 비선이 당초 바람에 표류한 사정을, 다대포 가장 박필근(朴弼根)이 봉군의 관측 잘못으로 인하여 즉시 치보하지 않고, 그 이튿날 비로소 치보하였는데, 봉군이 관측을 잘못한 것이 비록 바다의

안개에 가려진 소치로 말미암은 것이나, 변방을 엄중하게 하는 도리에 있어서 그냥 두어서는 불가하기로, 봉군은 그 진에서 죄를 다스리게 하였고, 담당 감색 등은 본부에서 전례대로 잡아와서 죄를 다스려 후일을 징계한 일임.

경오(1750) 9월 초8일

장악원에서 제조(提調)의 뜻으로 상고할 일. “이제 이번 장악원 소속의 악공(樂工) 악생(樂生) 등의 감포(減布) 가운데 9동(同) 16필(匹)은 균역청(均役廳)에서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대가를 본 장악원에서 추이(推移)하여 충당 지급하라 하였기로, 본 장악원의 당상(堂上)과 낭청(郎廳)의 구채(丘債)⁵²⁾ 및 원역(員役)의 삭하(朔下)⁵³⁾를 지금 바야흐로 재감(裁減)하여 그 대가를 충당하였으나 실로 부족할 우려가 있는바, 귀조(貴曹)에 납입하는 일수채(日守債)⁵⁴⁾는 무슨 명목으로 어느 때 만들어 내었는지 모르나, 요컨대 긴요하지 않은 잘못된 규정이 흘러 내려온 것이니, 이제 저희 장악원의 제반 수지 명목을 일체 줄여서 생략하는 날을 당하여, 이러한 부담[責應]은 실로 충당하여 보충할 가망이 없으므로, 이렇게 첩보하지 않을 수 없으니, 예조에서 일의 형편을 참작하여 동 일수채를 오는 10월 초하루부터 시작하여 특별히 감면해 주실 일.”

이에 의거하여 수결(手決)한 내용. 이른 바 일수채는 무슨 명목인지 모르겠으나, 본조는 본디 청한(淸寒)한 관청으로, 원역의 삭하(朔下)를 오로지 이런 곳에 의지하고 있으며, 활인서(活人署)와 두 의사(醫司)⁵⁵⁾ 같은 곳에서도 모두 폐단 없이 준행하고 있으니, 본 장악원으로는 감면해 달라고 하면서 이렇게 번거롭게 첩보한 것은 참으로 합당하지 아니하며, 일수채를 보내오는 것이 만약 50년 이후의 새로 만든 규정 가운데 있다면 감면하여도 무방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빼어서 감면하는 것은 불가하니, 이런 뜻으로 제조에게 고하여 시행함이 합당한 일.

비변사의 감결 내용. 비변사의 신목(申目)에 운운하기를, 이 경상감사 민백상

52) 구채(丘債) : 관원들에게 지급되는 구종 등 일정한 수의 하인들을 부리는 비용.

53) 삭하(朔下) : 관원들에게 매달 지출되는 급료.

54) 일수채(日守債) : 각 관청에 소속되어 사령(使令) 등 잡역을 담당하는 관노(官奴)를 부리는 비용.

55) 두 의사(醫司) : 내의원(內醫院)과 전의감(典醫監)을 가리킨다.

의 장달을 보면, 동래부사 조재민의 첩정을 날날이 거론하여 이르기를, “왜관을 수리하는 곳에 부사가 군관을 보내어 상세히 적간하였더니, 그 따져서 열거한 것이 참으로 의견이 있는지라, 재목은 동관(東館)에 90주(株), 서관(西館)에 200여 주쯤을 더 별목하게 하고, 재력은 순영(巡營)과 통영(統營)의 기부전(記付錢)을 곧장 동래부에 대출하여, 주전(鑄錢)이나 염판(鹽販) 중에서 편리한 대로 하되, 일절 역관에게 맡기지 말고, 그 본전의 거래와 나머지를 수입 지출하는 일을 부사로 하여금 주관하여 거행하게 함으로써 소모되는 폐단을 방지하는 것이 적합할 듯하다는 일로 묘당에 명하여 품의 조치하게 해 달라” 하였는바, 왜관의 수리는 문득 역관들의 이굴(利窟)이 되어, 매양 감동(監董)할 때마다 빙자하여 공갈함으로써 조정의 허다한 재물과 인력의 태반이 새어나가기 때문에, 이번에는 들어갈 수량을 넉넉하게 마련하여 전례없이 무상지급[白給]하여 기한을 정해 공사를 마치게 한 것은, 실로 엄하게 폐단을 막자는 뜻에서 나온 것이거늘, 지금에 와서 정해진 기한이 이미 지난 뒤에도, 아직까지 공사가 반이 되지 않아 재력이 크게 모자란다고 일컬으며, 온갖 계교로 미루고 핑계하여 반드시 더 얻어낸 뒤에라야 그만 두려고 하니, 그 정상을 따지자면 매우 가증스럽고, 전후로 엄하게 독촉하여 허락하지 않은 것은 참으로 이 때문인데, 이제 동래부에서 따져서 나열한 것이나, 도신이 장계로 청한 것이 이러한데, 공사는 시작하고 나서 중간에 그만 두는 것은 불가하고, 감동(監董)을 지금 와서 바꾸는 것이 불가하니, 재목은 통영과 수영에서 관할하는 왜관 부근의 바람에 잎이 떨어져 저절로 마른 소나무 중에서 선재(船材)로 합당치 않는 것으로 200주에 한하여 관원을 차출하여 별목하여 지급하되, 각별히 엄하게 신척하여 한 그루라도 함부로 별목하는 폐단이 없게 하며, 재물과 인력은 장계에 청한 대로 감영과 통영의 기부전 각 5,000-6,000천 냥을 짐짓 대출하도록 허락하여, 동래부로 하여금 주관하게 하여 주전(鑄錢)이나 다른 조목을 막론하고 잘 경영하여, 그 남는 이자로 부족한 수량을 보충 지급하여, 반드시 열기 전까지 공사를 마치고, 본전은 내년 내로 본영에 되돌려 납입하도록 하며, 감동역관은 짐짓 우선 과오에 부쳐놓고, 공사를 마친 뒤에 엄중하게 죄를 조사함이 적절하니, 통영과 수영에 아울러 이렇게 분부함이 어떠할지? 건륭 15년(1750) 9월 4일 좌부승지 신 성범석(成範錫)⁵⁶⁾ 차지로 입달(入達)하여 그대로 인준함.

56) 성범석(成範錫, 1698-1751) : 창녕성씨로 자는 공서(公敍)이다. 영조 6년(1730) 문과에 급제하여 옥당을 거쳐 승지를 역임하였다.

경오(1750) 9월 초10일

비변사의 감결 내용. 경기 황해도의 균세사(均稅使)가 상고할 일. 비직(卑職)이 두 도의 어세(漁稅) 염세(鹽稅) 선세(船稅)의 세금을 고르게 하는 일로 이제 바야흐로 사조(辭朝)하여 출발하였거니와, 어제 먼저 경강(京江)을 거쳐오면서 선인(船人)들의 여론을 두루 물어보았더니, 여러 궁가(宮家)와 각 아문 소속의 배에는 올해 세전(稅錢)을 이미 받은 곳이 많다고 하는바, 6월에 전교(傳敎)한 뒤로 여러 궁가와 각 아문을 막론하고 세금을 거두는 한 가지 일은 저절로 정지되어 있는데, 차인(差人)들이 조정의 금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렇게 세금을 거둔 것은 극히 놀라우니, 이미 받은 것은 지금 바야흐로 사실을 조사하고 있고, 납입하지 않은 것은 일절 갖추어 지급하지 말라는 뜻으로 선인들에게 분부하였거니와, 여러 궁가와 각 아문을 막론하고 6월부터 이후로 세금을 거둔 실제 수효를, 본 비변사의 감결을 받은 때로부터 해당 관청과 여러 궁가로 하여금 사실대로 보고하게 하고, 이 뒤로 각처에 소속된 배에는 일절 세금으로 침범하지 말라는 일로 또한 엄한 말로 감결을 받아 분부하는 일임.

비국의 감결 내용. 각 도의 어세와 염세와 선세는 특별한 전교로 인하여 균역청에 소속되었으니, 각 아문과 여러 궁방(宮房)에서 조정 금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곧장 차인을 보내어 세를 거두는 것은 일의 체면에 미안하니, 6월부터 이후로 지금까지 세를 받은 수효를 사실대로 첩보하고, 이 뒤로는 각처의 어세와 염세와 선세를 일절 거두지 말 것이며, 이렇게 분부한 뒤로 혹 이전과 같이 세를 거두는 일이 있으면, 당해 관청의 낭관 및 궁방의 하인은 마땅히 입계하여 책임을 논할 것이니, 보통 일로 여기지 말고 조심스럽게 생각하여 거행할 일.

경오(1750) 9월 11일

경상좌수사 이만유(李萬冏)⁵⁷⁾가 8월 29일에 성첩한 장달 내용. 이달 22일 축시 쯤에 사나운 바람과 폭우가 일시에 크게 일어나 종일토록 개이지 않고, 바닷물과 육지의 물이 물거품을 일으키며 갑자기 물려들거늘, 신이 선창에 달려가서 군졸들을 독촉하여 징발하여 크고 작은 배들을 견고하게 붙들어 매었고,

57) 이만유(李萬冏) : 영조 25년(1749) 5월 15일 경상좌도수군절도사로 부임하여 영조 26년(1750) 9월 5일 병으로 임지에서 죽었다.

수영 아래 감포(甘浦) 등의 네 진의 배도 또한 신척하여, 수영과 네 진의 모두 30여 척의 전함(戰艦)을 여러 가지로 구호하였는데, 신시 쯤에 비바람이 더욱 혹심하고 파도가 산과 같아서 지척을 분간하지 못하는 가운데, 신의 수영에서 관할하는 정탐선 1척이 바람과 파도에 내몰려 큰 배에 짓눌려서, 초(初), 이(二) 삼판(杉板)이 파괴되었기로, 물이 물러난 뒤에 즉시 고쳐 보수할 계획이거니와, 같은 날 유시에 도부한 부산첨사 조위진의 치보 내용에, “방금 도착한 훈도 현 태익과 별차 한창주 등의 수본 내용에, ‘왜인의 큰 배 2척이 각기 공작미를 싣고 돌아 들어가기 위해 어제 관소에서 바람을 기다리느라, 금도왜의 작은 배 1척에 금도왜 1인, 격왜 7명 등이 함께 타고 수호하였는데, 오늘 비바람에 동 왜인의 큰 배 2척 중 1척은 오시 쯤에 표류하여 선창 밖으로 나왔다가 겨우 겨우 닻을 내리고 떠서 머무르고 있고, 금도왜의 작은 배 1척 또한 표류하여 남 북병막 앞바다에 도착하여 조각조각 부서졌으며, 타고 있었던 왜인은 근근이 살아서 왜관 안으로 되돌아 들어갔다’ 하였으며, 왜인의 선창 앞바다로 표류하여 나온 왜인의 큰 배 1척을 수호하기 위하여, 두모포 만호 이천배(李天培)를 정하여 보낸다”고 치보하였음. 술시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보 내용에, “방금 도착한 수호장의 치보 내용에, ‘위의 왜인의 큰 배 1척이, 오늘 신시에 파도에 떠밀려 전전하다가, 절영도 당 앞바다로 표류한다’고 하였다” 함. 23일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보 내용에, “방금 도착한 수호장의 치보 내용에, ‘동 왜인의 큰 배 1척은 예인하는 배를 많이 징발하여, 사시에 영솔하여 바람을 기다리는 곳에 부쳤다’고 하여, 훈도 별차 등의 수본 내용에, ‘바람을 기다리는 곳에 되돌아와서 정박한 왜인의 큰 배 1척은, 신시에 왜관 선창으로 들어와 정박한 뒤에, 물에 젖은 짐물을 바야흐로 말리고 있으며, 관수왜의 말이 이번 풍파는 전에 없던 것으로, 어제 바람을 기다리던 왜선을 수호하던 작은 배 1척은 올해 7월 17일에 부서졌고, 또 올해 6월 12일에 나왔던 을축조 제12선 1척과 올해 8월 11일에 나왔던 비선 1척과 당년조 1특송사 1호선 1척, 2호선 1척 등 도합 4척은, 암석에 부딪쳐서 본판이 부러져 손상되어 바다를 건널 형세가 만무하므로, 지금 바야흐로 뜯어내고 있고, 동 1, 2호의 배에 물을 길어내던 작은 배는 간 곳을 모르니, 만약 혹시라도 표류하여 도착한 곳이 있는지 찾아 달라고 이야기하였다’는 수본에 의거하여, 치보한다” 하였거늘, 동 왜선이 혹시라도 표류하여 닿은 곳이 있는지, 각별히 수탐하라는 뜻으로, 각 진을 관할하는 곳에 엄하게 신척하였음. 추가로 도부한 동 첨사의 첩정 내용에, “22일 사시 쯤에 비바람이 점차 혹심하고 해일이 성을 넘어서 배가 옥상에 있으니, 이는 전고에 없던 변고라, 본진의 제남루(濟南樓) 남쪽 모퉁이에서부터 영가대(永嘉臺) 성가

귀가 무너져 내린 곳이 186발[把]이고, 부창(釜倉)의 동문 밖에서부터 두모포 성 아래까지와, 바닷가에 거주하여 사는 인가 중에 파도에 휩쓸려 전복된 곳이 133집인데, 변고가 밝은 대낮에 생겼으므로 인명은 하나도 빠져죽은 이가 없으며, 부창진(釜倉津)에 거주하는 장명금(張命金)의 배는 고기를 잡기 위해 바다로 나갔다가 표류하여 감천에 도착하여 조각조각 부서지고 격군 8명은 근근이 살아났으며, 해부(海夫) 이작은노미[李自隱老未]와 김막돌이(金莫覓伊), 최엇복(崔唳福), 장한이(張汗伊), 황귀산(黃貴山), 김막남(金莫男), 황귀남(黃貴男), 이엇돌이(李唳覓伊), 최순건(崔順建), 이간돌(李良覓), 이태일(李太日), 김석지(金石只), 김남이(金男伊), 황귀상(黃貴尙), 신고음(辛古音), 석오만상(石五萬尙), 이원악(李元岳) 등 17명의 배는 거주하고 있는 포구에 매어놓았다가 그날 또한 부서졌다”고 첩정하였으며, 서평포만호 임시륜(任時綸)의 첩정 내용에, “부산창포(釜山倉浦)에 거주하는 선주 김명길(金命吉)이 와서 고하기를, ‘제가 소지한 호조의 장부에 부친 배에 격군 최순복(崔順福), 최엇복(崔唳福), 김담사리(金淡沙里) 등 4명이 고기를 잡기 위해 같이 타고 이번 21일에 바다로 나가다가, 22일에 두송산(頭松山) 아래에 도착하여 배는 조각조각 부서지고, 저와 최순복, 최엇복 등 3명은 근근이 살아났으나, 그 가운데 부산성 안에 흘러들어와서 붙어사는 김담사리 나이 23세 자신은 그대로 빠져죽었다”는 첩정에 의거하여, 사람이 빠져죽은 일은 듣기에 극히 놀랍고 참담하니, 동 시체를 기어코 끌어내라는 뜻으로 엄하게 신칙하여 제송(題送)하였음. 방금 도부한 다대포 가장 박필근의 첩정 내용에, “본진 성 밖의 동서 연안 주변에 사는 인가 가운데 침몰된 것이 47집인데, 제41통 3호의 해부 이막남(李莫男), 처 박조이[朴召史] 나이 27세 여인이 빠져 죽어서 시체를 즉시 끌어내었으며, 서평포 앞바다 두송산 아래 빠져죽은 김담사리의 시체도 또한 끌어내어 그의 족속에게 내어주었다고 하였으며, 진 아래에 사는 해부 한귀동(韓貴同)의 호조 소속 배 1척과, 김암회(金岩回)의 호조 소속 배 1척, 이개불리(李介不里)의 순영(巡營) 장부에 부친 일공선(日供船) 1척 등 도합 3척은 표류되어 잃어버렸다”고 첩정하였으며, 추가로 도부한 두모포 만호 이천배의 첩정 내용에, “본 포구의 선창은 큰 바다가 곧바로 맞닿는 곳에 처해 있는데, 이제 이번 비바람은 근고에 없는 대변이라, 빗줄을 많이 들여서 대어 전함을 각별히 붙들어매고 극력으로 구호하였는데, 같은 날 사시 쯤에 광풍이 더욱 혹독하고 폭우가 쏟아붓는 듯하며 바닷물이 범람하여 평지가 강이 되니, 크고 작은 배들이 모조리 바람과 파도 가운데 들어가서, 이사후선(二伺候船)은 조각조각 부서지고, 전선은 선창 가에 걸려있다”고 치보하였으며, 동 만호 이천배가 또 첩정한 내용에, “본 포구의 병선 1척이 왜관 수리 공

사의 목재를 운반하여 오기 위해 이번 19일에 가덕도로 가서 21일에 재목을 실어가지고 되돌아 오다, 가덕의 장항(獐項)에 이르러 비바람이 크게 일어나, 동 배는 바람과 파도에 부딪쳐서 초(初), 이(二) 삼판이 부러져 손상되고, 재목은 표류하여 잃어버렸으며, 인명은 근근이 살아났다”고 치보하였는바, 듣고는 매우 놀라, 신이 이달 24일에 두모포로 달려가서 일일이 살펴보니, 동 포구의 선창 석축이 모조리 무너졌고, 포구의 주민이 있던 곳은 곧장 모래사장에 되었으며, 전선이 과연 선창 가의 모래사장 접안하는 곳에 걸려 있는데, 다행히도 온전한 것이 참으로 다행이나, 체구가 무거운 배가 동티가 없을 수 있을지, 온진의 군졸들이 파내기는 어렵기로, 인근 부산과 개운포 두 진의 군졸들이 힘을 합쳐서 파내어, 진작 아래로 옮겨서 변고를 대기하게 하였고, 파선하였던 2사 후선은 소나무를 지급하여 즉시 속히 개조하라는 뜻으로 엄하게 신칙하여 분부하였으며, 가덕 장항 앞바다에서 파선하였던 배가 있는 장소를 배를 영솔하였던 감직(監直) 등에게 상세히 물었더니, 22일에 비바람이 극도로 흉악하여 동 배는 바람과 파도에 밀려서 전전하여 표류하여 접안하는 곳에 표류하였으므로, 저희들 사람들이 근근이 살아날 수 있었고, 배는 삼판(杉板)이 부러져 손상되었으나, 본판(本板) 및 손상된 삼판을 끌어내어 포구 주변에 두었다고 하였는바, 동 병선 본판 및 삼판을 모두 끌어내어 두고, 속히 운반하여 와서 수리하여 변고에 대비하라는 뜻으로, 또한 동 만호 이천배에게 엄하게 신칙하여 분부하였거니와, 이번 비바람은 극도로 비상하였는데, 다른 각 읍과 진의 전선은 무사하게 구호한 것이 참으로 다행이로되, 두모포의 병선과 사후선이 손상된 것이, 비록 그날 비바람이 혹독하여 인력으로 미칠 바가 아닌데서 말미암은 것이나, 변진(邊鎭)의 전기(戰器)를 엄중하게 하는 도리에 있어서 경계하여 신칙하는 책망이 없어서는 불가하기로, 동 진의 만호 이천배와 전함 담당 감색 및 도선직(都船直) 등을 신의 수영으로 잡아다가 엄중하게 곤장을 쳐서 신칙한 일임.

경오(1750) 9월 23일

동래부사 조재민이 9월 15일에 성첩한 장달 내용. 이달 14일 축시에 도부한 부산첨사 조위진의 치통 내용에, “어제 신시 쯤에 조선 배인지 왜선인지 분간되지 않는 배 1척이 물마루에서 나온다”고 하였음. 같은 날 오시에 도부한 동첨사의 치통 내용에, “방금 접한 다대포 가장 및 수호장의 치보 내용에, ‘본 다

대포 앞바다에 정박한 왜인의 큰 배 1척에 별차와 소통사가 문정하였더니, 도중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고, 새 관수왜의 배에 관수왜 1인, 반종왜 3인, 종왜 8명, 서기왜 1인, 의왜 1인, 격왜 40명, 교대차 나온 중금도왜 3인, 통사왜 1인 등이 함께 타고, 예조로 보내는 서계와 별폭 각 1통과 동래 부산으로 보내는 서계 1통과 별폭 2통 및 진상 물건을 실어가지고, 어제 이른 아침에 대마도에서 출발하여, 물마루에 이르러 바람 형세가 불순하여 배를 제어하지 못하고, 같은 날 해시 켜에 표류하여 이곳에 도착하였다 운운'하였다" 함. 같은 날 유시에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다대포 앞바다에 정박한 왜인의 큰 배 1척이 오늘 진시에 출발하여 미시에 영술하여 관소에 부쳤기에, 즉시 훈도 현태익(玄泰翼)과 별차 황하성(黃夏成) 등에게 명하여 문정하게 하였더니, 교대차 나온 새 관수왜 평치신(平致信)이 나왔는데, 그 밖의 사연 및 바람에 표류한 연유는 다대포의 문정과 다름이 없고, 동 왜인이 가져온 등본 1통을 받아 올려 보냈기로, 동 서계 등본을 이전대로 받아 보낸다" 하였음. 위에 나온 새 관수왜가 가져온 서계와 별폭 등은, 추후에 다례를 행하고 받아 올릴 계획이고, 등본 1통은 우선 감봉하여 해조로 올려 보내며, 동 왜선이 나오다가 다대포 앞바다로 표류하여 정박하였을 때, 황령산봉군이 관측을 농침을 먼치 못하였기에, 전례대로 잡아와서 죄를 다스려 후일을 징계한 일임.

경오(1750) 9월 25일

새 관수왜 평치신이 가져온 서계 등본.

일본국 대마주 태수 습유 평의여(平義如) 봉서(奉書). 조선국 예조대인 합하(閣下). 올려(律呂)로 남려(南呂)의 달에, 공손이 생각건대 지내시는 생활이 적절하신지, 발돋움하여 바라는 마음 매우 깊습니다. 이에 고하옵는 것은 관사(館司) 굴여동(橘如棟)의 직책이 해를 넘겼기에, 이제 평치신(平致信)을 차출하여 그 책임을 대신하오니, 앞서의 조약에 어긋나지 않게 은총으로 접대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보잘 것 없는 물품으로 정성을 부치오니, 밝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줄이고 갖추지 못합니다. 관연(寬延) 3년 경오(1750) 8월 일.

별폭 : 수정갓끈[水精笠緒] 1묶음[結], 채화서가(彩畵書架) 1각(脚), 채화육촌령경(彩畵六寸匳鏡) 1면(面), 흑칠화전갑(黑漆華箋匣) 1개, 혁과수주괘연(革裹垂珠掛硯) 1비(備), 수랍청명(粹蠟淸皿) 10개. 계(計).

일본국 대마주태수 습유 평의여(平義如) 계서(啓書). 조선국 동래 부산 양(兩) 영공(令公) 합하. 계수나무 향기로운 가을에 두 분 모두 지내시기에 편안하신지, 우러러 추앙하는 마음 어찌 끝이 있겠습니까? 이제 평치신(平致信)으로 하여금 관사(館司)를 이어 관장하게 하오니, 청컨대 평상시 정식을 따라 정성껏 맞아주시기를 바라오며, 침부한 사소한 물건은 단지 꾸짖고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대충 쓰느라 예를 갖추지 못합니다. 관연 3년 경오(1750) 8월 일.

동래부사공 별폭 : 채화중원분(彩畵中圓盆) 10매(枚), 채화삼촌렴경(彩畵三寸簾鏡) 2면, 흑칠중연갑(黑漆中硯匣) 1개, 적동중약관(赤銅中藥罐) 4개, 적동방로(赤銅方爐) 2위(圍).

부산영공 별폭 : 채화침자괘연(彩畵枕子掛硯) 1개, 흑칠문갑(黑漆文匣) 1개, 채화지남침(彩畵指南針) 2좌(座), 주간연기(朱竿煙器) 20줌[握]. 계(計).

예조에서 신목(申目)을 첨부하였으니 달하하시기를. 이전에 새 관수왜 평치신이 가져온 서계에 대한 회답 서계 및 동래 부산 두 곳에서의 답장 초고를 승문원에 명하여 말을 만들어 지어내게 하였는데, 별폭의 회례 잡물을 전례대로 마련하여 신목에 후록(後錄)하였으니 급속히 마련하여 내려 보내는 일로 해조 및 본도에 분부함이 어떠할지?

후록 별폭 회례(回禮): 인삼 3근, 범가죽 1장, 표범가죽 1장, 흰 명주 5필, 흰 모시베 5필, 검은 삼베 3필, 흰 무명 10필, 황모필 30자루, 이상 해조에서 마련. 참떡 30홀(笏), 녀장 불인 유둔(油菴) 2부(部), 화석(花席) 3장, 이상 본도에서 지급.

동래 부산 두 곳에서의 회례: 각각. 흰 명주 3필, 흰 모시베 3필, 검은 삼베 2필, 흰 무명 7필, 황모필 20자루, 이상 해조에서 마련. 참떡 20홀, 녀장 불인 유둔 2부, 화석 2장, 이상 본도에서 지급.

건륭 15년(1750) 9월 25일 우승지 신 성범석 차지로 입달하여 그대로 인준함.

경오(1750) 11월 20일

이번 11월 20일에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접(引接)하여 입대(入對)하였을 때 좌의정 김(金)이 입달(入達)하기를, “이것은 곧 동래부사 조재민의 장달입니다. 별차 황하성(黃夏成)이 표류한 왜인에게 문정할 때, 그 궤짝 바깥 면만 보고는 단지 왜인이 말하는 바를 따라 범연히 서계와 별폭을 가져온 양으로 문정하여

수본한 것은, 전례를 알지 못한 소치에 나온 것이라, 경계하여 책망하지 않아서는 불가하니⁵⁸⁾, 이전에 계하한 대로 본부에서 추고하여 다스리라고 관문을 내렸는데, 엇그제 좌수사 권경(權敬)⁵⁹⁾의 장계로 인하여 별차는 이미 본영에 명하여 엄중하게 곤장을 치게 하였고, 임역은 본부에서 작은 것은 곤장 추고하여 다스린다고 이미 신해년(1731)에 계하하여 알린 것이 있으니 이대로 거행함이 마땅함에도, 이제 추고하여 다스리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번거롭게 품의한 것은 일의 체면에 미안하니, 동래부사 조재민을 추고함이 어떠할지?” 하였는데, 명령하기를 “그대로 하라” 하셨음.

경오(1750) 12월 초6일

예조에서 입달(入達)하기를, “방금 동래부사 조재민의 보고를 접하니, 관수왜의 말이 ‘이번 동서 왜관 건물을 수리할 때 8송사를 정지한다는 사례의 뜻을 당년조 1특송사의 답서 가운데 첨가하여 넣어 내려 보내 달라 운운’ 하였으므로, 본부의 등록을 살펴보니, 계묘년(1723) 왜관 건물을 수리하면서 8송사를 정지할 때 동년 제1선의 답서 가운데 ‘폐단을 줄여서 송사(送使)를 중지하여 감사한다는 뜻을 적어 준다 운운’ 한 것이 있으니, 이 일은 이미 계묘년(1723)의 전례가 있어서 이제 방색(防塞)하기는 불가하니, 전례대로 승문원에 명하여, 이제 이 1특송사 회답 서계 가운데, 송사를 정지하여 감사한다는 뜻을 말을 만들어 첨가하여 넣어 지어내라는 뜻으로 분부함이 어떠할지?” 하였더니, 명령하기를 “그대로 하라” 하셨음.

경오(1750) 12월 12일

동래부사 조재민이 12월 초2일에 성첩한 장달 내용. 지난달 29일 오시에 도부한 부산첨사 조위진의 치통 내용에, “올해 10월 18일에 나왔던 비선에 두왜 1인, 격왜 6명, 올해 8월 11일에 나왔던 소금도왜 1명, 올해 8월 20일에 나왔던

58) 원본에 ‘不可警責’이라 하였으나, 전후 문맥으로 보아 ‘不可不警責’에서 ‘不’자 하나가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

59) 권경(權敬) : 영조 경오년(1750) 10월 6일 경상좌도수군절도사로 부임하여 계유년(1753) 1월 20일에 임기 만료로 교체되었다.

중금도왜 2인 등이 함께 타고, 별대관왜의 짐을 실어가지고, 26일 사시에 곧바로 관소에서 발선하여 돌아 들어갔다고 훈도 현태익과 별차 황하성이 수본하였으며, 올해 11월 12일에 나왔던 병인조 제1선 송사가 재차 건너온 배에 격왜 40명, 기사년(1749) 정월 12일에 나왔던 삼대관왜 1인, 종왜 3명, 올해 9월 초6일에 나왔던 중금도왜 4인, 별금도왜 2인, 올해 9월 13일에 나왔던 중금도왜 3인, 올해 9월 18일에 나왔던 중금도왜 2인, 소금도왜 1명, 올해 11월 12일에 나왔던 을축조 3특송사 1호가 재차 건너온 배에 격왜 40명, 올해 9월 18일에 나왔던 중금도왜 4인, 소금도왜 2명, 올해 9월 28일에 나왔던 중금도왜 4인, 소금도왜 1명, 올해 10월 18일에 나왔던 중금도왜 2인, 소금도왜 1명 등의 나누어 타고, 각기 공작미를 싣고 돌아 들어가기 위해 28일에 수문 밖에서 바람을 기다리다가, 오늘 진시에 발선하여 돌아 들어갔다는 훈도 별차 등의 수본 및 호송장이 치통하였다” 하였음. 공작미를 신칙하여 들여 주라는 일로 조정의 큰 은택을 받게 해 주었다고 대마도 봉행 등이 본부에 서찰을 바쳤는데, 봉행이 도주를 대신하여 서찰을 바치는 일은 매우 해괴한 일이오나, 이전에 왜관 건물을 수리하고 삼화(蔘貨)를 신칙하는 등의 일로, 봉행이 곧바로 서찰을 바친 것이 한두 번에 그치지 아니하여, 묘당에 명하여 사례를 상고하여 품의 조처하라는 뜻으로 전에 이미 신문(申聞)하였는데, 방금 도부한 비변사의 달하(達下) 관문 내용에, ‘대마도 봉행이 사례를 어기고 서찰을 바친 것은 본디 받아서는 부당하나, 저쪽 사람들이 한 번 이미 시행한 일이 있으면 전례라고 고집하여 반드시 다투고서야 그만 두니, 비록 잘못된 규정이라도 끝내 방색하기 어려우니, 이번은 참작하여 받기를 허락하되, 앞으로는 단연코 받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명백하게 깨우치고 타이른 뒤에, 원래 서계는 짐짓 받아 올려 보낼 일’이라고 관문을 보냈기에, 삼가 관문 내용의 사연의 뜻을 훈도 별차에게 전령하였는데, 방금 접한 훈도 별차 등의 수본 내용에, ‘봉행 등이 도주를 대신하여 서찰을 바치는 것은, 이것이 잘못된 사례지만 지금은 짐짓 받아 올리나, 뒤로는 전례로 삼지 말라는 뜻으로 관수왜에게 책망하여 타일렸으며, 동 서계는 받아 올린다’고 하였기로, 감봉하여 해조로 올려 보내는 일임.

일본국 대마주 봉행 평여민(平如敏) 등의 봉서(奉書). 조선국 동래부사공 대인 합하. 가벼운 추위가 이미 재촉하는데, 옳드려 생각건대 거처하시기에 편안하신지, 우러러 그리는 마음 매우 간절합니다. 쌀을 사들이는[糴米] 한 건의 일은, 비록 두 나라의 편의로 말미암은 것이나, 실로 귀국의 성신(誠信)에서 나온 것으로, 그 유래가 오래되었습니다. 어찌 되었는지 소서(小胥)와 하리(下吏)가

때때로 간혹 태만하고 소홀하여 구차하게 들여 주었는데, 이제 들으니 귀국 조정에서 감사한 폐단을 통촉하여 특별히 신칙함으로써, 우리 한 고을 영세한 주민들이 모두들 진흥의 은혜를 감사하게 여겼습니다. 성신(誠信)이 독실하지 아니하면 어찌 이렇게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에 감히 감사의 정성으로 이렇게 서찰을 받들어 올리오니, 원컨대 이 뜻을 곡진하게 상달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드리고 갖추지 못합니다. 관연 3년 경오(1750) 10월 일. 대마주 봉행 평여민(平如敏), 등여조(藤如照), 등여향(藤如鄉). 각기 도장을 찍음.

경오(1750) 12월 15일

예조에서 신목을 첨부하였으니 달하하시기를. 이전에 공작미를 신칙하여 들여 준 일로 조정에서 큰 은택을 입었다고 봉행 등이 본부에 서찰을 바쳤는데, 비록 잘못된 사례이나 참작하여 받는 것을 허락한다는 일로 조정에서 이미 확정하였으니, 동래부에서 답장하는 초고를 승문원에 명하여 말을 만들어 지어내게 하여, 별도로 금균을 정하여 가지고 내려 보내는 일로 분부함이 어떠할지? 건륭 15년(1750) 12월 15일에 우승지 신 윤광의(尹光毅)⁶⁰ 차지로 입달하여 그대로 인준함.

경오(1750) 12월 17일

경상우수사 정찬술이 12월 초4일에 성첩한 장달 내용. 지난 11월 12일에 나왔던 왜선 6척 중 왜인의 큰 배 4척이 옥포 강 입구에 정박하였고, 왜인의 비선 2척은 지세포 강 입구에 정박한 뒤, 동 왜선에 문정한 사연 및 지세포와 천성 가덕 등의 진에서 2순(巡)으로 나누어 관측한 곡절을 물어 조사한 연유는 이미 치달하였거니와, 추가로 도부하여 운운하였고, 위의 왜인의 큰 배 4척과 비선 2척이 12일에 나올 때, 옥포와 조라포 두 진에서는 일시에 관측하였고, 지세포와 천성, 가덕, 다대포 등 4진에서는 모두 2순으로 나누어 관측하여 치보하였는데, 대저 6진의 봉대에서 관측하는 것은 네 곳으로 나뉘어 떨어져 있어서, 보이고 가려지는데 혹 같고 혹 다름이 있는 것은 괴이하게 여길 것이 없

60) 윤광의(尹光毅, 1695-?): 파평윤씨로 자는 사홍(士弘)이다. 영조 1년(1725) 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거쳐 형조참판을 역임하였다.

는 듯할 뿐 아니라, 왜선이 물마루에 이르러 나뉘어 표류할 때, 배에 대소가 있고 다니는 데 빠르고 둔함이 있으며, 서로 떨어지고 만날 때 각처의 봉군들이 보는 대로 진고하니, 6진에서 관측하여 보고하는 것이 서로 부합하지 않는 것은 그 형세가 그러하나, 동 배 6척이 이미 대마도에서 같이 발선하여 물마루에 이르러 표류하였다고 문정에 운운하였으니, 4진에서 나뉘어 관측하는 것이 어긋남을 면치 못하였지만, 2순으로 관측하여 보고하는 것이 모두 같은 시각 내에 있으니, 참작하여 용서할 도리가 있으며, 조라포 만호는 왜인의 큰 배 1척이 바람을 따라 곧장 건너갈 때 만류하여 잡지 못하고, 그대로 영솔 호송하여 곧바로 다대포에 부친 것은, 격식과 사례에 어긋남이 있는데, 임자년(1732) 정월 일에 도부한 비변사에서 복제한 관문 내용에, “왜선이 만약 순풍을 만나 곧바로 관소로 건너가고, 다른 간사한 사정이 없으면, 호송하는 일개 작은 배가 만류하여 잡지 못하는 것은 그 형세가 그러하니, 오직 수신(帥臣)이 상세히 살펴 그 죄의 경중을 정하기에 달려 있다”고 하였는바, 이제 이번 교활한 왜인들이 이미 순풍을 얻어 돛을 걸고 곧바로 향하면, 호송장이 일개 작은 배로 갑자기 만류하여 잡지 못하는 것은 일의 형세가 그러한데다, 또한 다른 간사한 사정이 없으나, 그 나머지 사람들을 힘쓰게 하는 도리에 있어서 그냥 두어서는 불가하며, 옥포왜학 김정옥(金鼎郁)은 당초 문정할 때 왜인들이 비록 왁자지껄 떠들며 강요하더라도 반드시 물건의 유무를 상세히 살피고 여러 가지로 따져 물은 다음에 수본을 해야 함에도, 단지 왜인의 명수를 점검하고 그들이 바람에 표류한 연유만 물었고, 생동(生銅)과 은화(銀貨)를 실어가지고 있는 한 조목은 거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른바 만쇼영[萬松院] 석자는 본디 왜선의 전례에 따른 호칭인데도, 단지 노인(路引)에 적힌 것만 보고 또한 상세히 묻지 않고 범연히 수본한 것은 극히 소홀한 일이며, 옥포와 조라포 등의 진에서는, 13일 유시에 성첩하여 치보한 내용에, ‘뒤쳐진 왜인의 큰 배 1척이 같은 날 미시에 옥면포(玉面浦)에 정박하여 조라포 만호가 그대로 수호한다’고 치보하였으므로, 앞서 보낸 신문(申聞)에는 미시라 써 넣었는데, 그 뒤 14일 자시에 성첩한 동 만호 등의 치보 내용에는, 동 배가 ‘13일 유시에 정박하였다’고 범연히 보고하여 왔으니, 막중한 변방 보고의 시각이 전후로 각기 다른 것은 극히 놀라우며, 다대포 이선장(二船將) 송의규(宋義奎)는 먼저 건너온 왜인의 큰 배 2척을 20일 신시에 영솔하여 관소에 부쳤는데, 대선 3척 및 비선 1척을 관소에 부친 모양으로 좌도 수영과 부산진에 치보한 것은, 변방 정세로 헤아리건대 자못 소홀한 일이기로, 이전의 조라포 만호 박서진(朴瑞晉)과 옥포만호 정도원(丁道元), 동 옥포의 왜학 김정옥 및 지세포와 가덕 천성 3진의 봉군 등을 모두

신의 수영으로 잡아와서, 경중을 나누어 곤장을 쳐서 후일을 징계하였으며, 대포 봉군 및 동진의 이선장 송의규는 잡아다가 곤장을 쳐서 후일을 징계하라는 뜻으로 경상좌수사 권경에게 관문을 발송하여 분부하였거니와, 위의 곡절을 물어 조사하며 왕복하는 사이에 날짜가 자연히 지체된 연유의 일임.

국역 전객사별등록 제8책

신미(1751) 정월 15일

동래부사 조재민이 정월 초4일에 성첩한 장달 내용. 지난달 24일에 도부한 부산첨사 조위진의 치통 내용에, “올해 11월 12일에 나왔던 비선에 격왜 5명, 두왜 1인, 소금도왜 1명, 올해 9월 28일에 나왔던 별금도왜 1인 등이 함께 타고 별대관왜 등의 짐을 실어가졌으며, 올해 11월 12일에 나왔던 비선에 두왜 1인, 격왜 5명, 중금도왜 1인이 함께 타고, 관수왜의 사서를 가지고 도합 2척이 오늘 관소에서 발선하여 돌아 들어갔다는 훈도 현대익과 별차 황하성이 수본 운운” 하였음. 이달 초1일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에, “왜인의 비선 1척이 지난달 27일에 바다 가운데서 나오다가 표류하여 천성 경내 마거리 앞바다에 정박한 뒤, 옥포왜학 김정욱과 소통사 권순택 등이 29일에 달려가 문정하였더니, ‘도중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고, 비선에 두왜 1인, 격왜 5명, 교대차 나온 중금도왜 1인이 함께 타고, 노인 및 관수왜에게 보내는 사서를 가지고 27일에 대마도에서 발선하여 곧바로 관소로 향하였는데, 겨우 물마루에 이르러 바람 형세가 불순하여 표류하여 이곳에 도착하였다’는 일로 문정 운운하였으며, 올해 12월 18일에 나왔던 병인조 제5선에 격왜 30명과 기사년(1749) 9월 초9일에 나왔던 동관 감동차지왜 1인, 중금도왜 1인, 소금도왜 1명, 서기왜 1인이 함께 타고, 공작미를 실어가지고 돌아 들어가기 위해 지난달 29일에 수문 밖에서 바람을 기다리다가, 오늘 발선하여 돌아 들어갔다” 하였음. 방금 바친 훈도 별차 등의 수본에, 왜관의 동서 왜관 건물 여러 곳을 부산진 감색과 더불어 같이 적간하였더니, 동관의 수리는 이미 완공되었고, 서관은 수리가 한창이라 별로 적간할 곳이 없다고 하였음. 초3일에 도부한 부산첨사의 치통에, “마거리 앞바다에 정박한 왜인의 비선 1척은, 바람 형세가 불순하여 초3일에 영솔하여 관소에 부치는 일이라는 치보에 의거하여, 즉시 훈도 별차 등에게 명하여 문정하게 한 수본 내의 사연은, 당초 옥포왜학이 문정할 때와 조금도 다름이 없으며, 소지한 노인 1통을 받아 올려 보내는 일” 이었음.

경상우수사 정찬술이 12월 28일에 성첩한 장달. 비선 1척이 표류하여 마거리에 정박하였다는, 위와 같은 일임.

신미(1751) 정월 22일

경상우수사 정찬술이 정월 초8일에 성첩한 장달 내용. 운운. 왜인의 비선 1척에 두왜 1인, 격왜 5명, 교대차 나온 중금도왜 1인 등이 노인 및 관수왜에게 보내는 사서를 가지고 함께 타고 나오다가 표류하여 천성 마거리 앞바다에 정박하였다고 운운한 일임.

신미(1751) 2월 초10일

동래부사 조재민이 정월 27일에 성첩한 장달, 이달 17일에 도부한 부산첨사 조위진의 치통에, “경오년(1750) 12월 18일에 나왔던 비선에 두왜 1인, 격왜 6명, 기사년(1749) 9월 초9일에 나왔던 중금도 1인, 무진년(1748) 12월 초6일에 나왔던 통사왜 1인, 경오년(1750) 12월 18일에 나왔던 비선에 두왜 1인, 격왜 6명, 기사년(1749) 9월 초9일에 나왔던 중금도왜 1인 등이 나누어 타고, 별대관 왜의 짐 및 관수왜의 사서를 가지고, 오늘 곧바로 관소에서 발선하여 돌아 들어갔다는 훈도 현태익과 별차 황하성의 수본 및 봉군의 진고에 의거하여 치통한다” 하였음. 상역(商譯) 등이 피집한 물화 값으로 은 10,000냥을 18일 개시에서 받아내었음. 23일에 조선 배인지 왜선인지 분간되지 않는 배 4척이 물마루에서 나온다고 봉군이 진고 운운. 23일 동 첨사의 치통에, “어제 나오던 분간되지 않는 배 4척은 과연 왜인의 작은 배로, 영솔하여 관소에 부쳤는데, 방금 접한 훈도 별차 등의 수본에, ‘어제 밤에 관소에 도착한 왜인의 작은 배 4척에 오늘 아침에 가서 문정하였더니, 도중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고, 제1척 비선에 두왜 1인, 격왜 6명, 교대차 나온 별일대관왜 1인, 종왜 7명 등이 함께 타고, 노인 및 호추 200근을 실어가졌으며, 제2척 비선에 두왜 1인, 격왜 6명, 교대차 나온 중금도왜 1인이 함께 타고, 노인 및 호추 500근을 실어가졌고, 제3척 비선에 두왜 1인, 격왜 6명, 교대차 나온 별금도왜 1인이 함께 타고, 노인 및 호추 500근을 실어가졌고, 제4척 비선에 두왜 1인, 격왜 6명과 대마도주의 바치는 서계를 가져온 두왜 1인이 함께 타고, 노인 및 호추 500근과 동래로 부내는 서계 1통을 실어가지고, 어제 이른 아침에 대마도에서 저희들의 비선 4척이 같이 발선하여 나왔다고 하였는데, 소지한 노인 4통은 받아서 올려 보내며, 관수왜가 비직(卑⁶¹)職) 등을 만나보기를 요청하여 말하기를, 「이제 이번 비선의 두왜는 도주가 동래에 바치는 서계를 가지고 나왔는데, 저희 섬은 본디 탄환같이

작고 척박한 땅이라, 오로지 두 나라의 호시(互市)에 의지하여 보존되는 곳입니다. 근래에 형편이 점차 예전만 못하여, 성신(誠信)으로 매매하는 것이 조잔(凋殘)하기로는 지금 이 때처럼 심한 경우가 없어서, 거의 폐기하여 끊어졌기에 한심함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동무(東武)에서는 저희 고을의 피폐함을 진념하시어 은화의 대출을 허락하여 판매의 길을 회복하도록 하였는데, 다만 상인들이 전전하며 판매하는 자금이 날로 깎이고 달로 줄어들어서, 인삼과 비단 등의 물건이 한갓 품질이 저열할 뿐 아니라, 또한 들여와서 피집하는 것이 매우 적습니다. 그러므로 도주가 현재 에도[江戶]에 있으면서 친히 동무(東武)의 명령을 받들어 귀국에 간청하여, 상인들에게 신칙하여 무릇 매매하는 물종은 반드시 그 품질을 좋은 것으로, 그 수량을 많게 해 달라는 사정으로 서계를 갖추어 지어서 별사(別使)를 보내려고 하였으나, 폐단이 있을까 우려하여, 이들 군관 중에 지위가 있는 두왜를 시켜서 삼가 서계를 바치게 하였는데, 첨지 등은 이 뜻을 상세히 알고 동래 영감 전에 갖추어 품고(稟告)드려, 조정에 전보(轉報)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누누이 이야기하거늘, 비직 등이 이치에 근거하여 책망하여 타일러 말하기를, 「비록 너희 나라에서 은화를 허락하였는지와 상인들이 어떻게 하였는지는 모르지만, 무릇 서계를 별도로 보내는 것은 규정 외에 관계되니 번거롭게 이야기 하지 말고, 동 두왜를 급속히 되돌려 보내라」는 뜻으로 말하고, 동 서계를 물리쳐서 받지 아니했다'고 수분하였기로, 위의 노인 4통은 전례대로 보내며 연유를 치통한다"고 하였음. 25일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에, “경오년(1750) 12월 18일에 나왔던 비선에 두왜 1인, 격왜 6명, 경오년(1750) 5월 17일에 나왔던 중금도왜 1인이 함께 타고, 관수왜의 사서를 가지고 오늘 곧바로 관소에서 출발하여 돌아 들어갔다는 일로 훈도 별차의 수분 및 봉군이 진고하였다”는 데 의거하여, 위에 나온 비선의 노인 4통을 감봉하여 해조로 올려 보냄. 지난해 조의 1특송왜의 신병이 조금 차도가 있어서, 동 왜인의 원역 등에 대한 하선연을 이번 26일로 정하여, 부산첨사와 함께 초량 객사로 가서 동 왜인들이 전례대로 진상 숙배한 뒤에, 그대로 연청으로 가서 하선연을 베풀었고, 비선의 문정 가운데 이른바 피집하는 인삼과 비단 등의 물품은 상인들이 사사로이 매매하는 일에 관계되는데, 만약 저들 나라에서 은화를 많이 내어오면 상인들의 상품 또한 점차 예전 규모를 회복할 것이나, 대개 들으니 근년에 와서 왜시(倭市)의 물화가 점차 이전만 못하여, 비록 지금의 일로 말하더라도 이제 이번 일특송사왜가 작년에 나와서 시행하여야 할 하선연의 예를 당년에 시행하지 못한 것은, 저들은 비록 신병으로 핑계하지만, 사

61) 원본의 ‘軍職’의 ‘軍’은 ‘卑’의 오기(誤記)로 보인다.

정을 자세히 탐지하면 또한 진상물종이 부족한 데 구애된 것이로되, 이번 선편에 진상 호추가 비로소 나왔고, 작년의 부특송사왜가 이미 해를 넘기도록 아직도 나오지 않는 것 또한 진상물종을 마련하기가 어려운 데서 말미암은 것이라, 그 밖의 연례로 납입해야 할 궁각(弓角)과 생동(生銅) 등속도 모두 기한을 넘기도록 납입하지 않았고, 상인들이 피집한 물화 값의 은화도 기일을 어기고 시일을 연기한 것도, 사실 대마도의 형세가 쇠잔한 데서 말미암은 것이라, 이제 이번 도주가 서계를 바쳐서, 저들 나라에서 은화 대출을 허가하여 판매의 길을 복구하려 하니, 상인들의 상품은 그 품질을 좋게 하고 그 수량을 많게 해 달라고 한 것도, 이는 매매하는 사이의 일에 지나지 않는 바, 규정 밖에 관계되는 일인지라, 감히 조정에 번거롭게 알리지 못할 사정이 있기로, 이런 뜻을 임역에게 엄중하게 신칙하여 각별히 책망하여 타일러 즉시 되돌려 들여보내게 한 일임.

신미(1751) 3월 초5일

경상좌수사 권경(權敬)이 2월 23일에 성첩한 장달. 위와 같은 일로 이전부터 좌도(左道)로 표류한 왜선을 초탐하고 영솔하는 장소는, 매양 신(臣)의 수영 관찰 아래 있는 감포(甘浦) 축산포(丑山浦) 칠포(漆浦) 포이포(包伊浦) 등 4진의 만호(萬戶)가 윤번으로 돌아가며 차출하여 거행하였는데, 감포와 축산포 칠포 등 3진을 이제 이미 혁파하였으니, 마땅히 정식을 고쳐 거행해야 할 형편이나, 이제 이번 두 척의 배가 나뉘어 표류한 왜선을 초탐하는 등의 절도는, 미처 변통하기 전에 발생하여 일의 형편이 급박하므로, 부득이 남천진으로 표류한 왜선을 초탐하기 위하여 먼저 신의 수영 삼선장(三船將) 양익강(梁益濤)을 정하여 보냈거니와, 신의 좌수영 선장(船將)을 차출하여 보내어 초탐하는 것은 전례에 없는 바일 뿐 아니라, 신의 수영이 이미 절도사(節度使)의 관청이니, 신의 수영 선장이 왜선을 초탐하는 것을 저쪽 사람이 듣는다면, 일의 체면이 어떻겠습니까? 한 때 임시로 급하게 거행한 일을 그대로 전례로 삼아서는 불가하겠기로, 지금 이후로는 좌도로 표류한 왜선을 초탐하는 것과 영솔하는 호송장을 차출하여 보내는 한 가지 조목은, 지금 바야흐로 이쪽에서 정식을 마련하여 추후에 치계할 계획이라는 일임.

신미(1751) 3월 24일

동래부사 조재민이 3월 11일에 성첩한 장달 내용. 운운하기를, 위의 규정 밖에 나온 왜선은 속히 되돌려 보내는 일로 다시 임역 등에게 명하여 관수왜에게 각별히 책망하여 타이르게 하였고, 동 왜선이 표류하여 옥포로 향했을 때의 문정 가운데, 지난 달 28일에 나오다가 호운도(呼雲島) 바깥 바다에서 닻을 내리고 밤을 지낸 뒤, 29일에 표류하여 옥포에 도착한 것을, 다대포첨사가 봉군의 관측 잘못으로 즉시 치통하지 아니하고 그 이튿날인 29일에 비로소 치통하였고, 이번 초4일에 돌아 들어가던 비선 3척 가운데 1척이 바람에 우도로 표류한 사정을 초6일에 비로소 치통한 것은, 변방 정세를 엄중하게 함에 있어서 후일을 징계하는 도리가 없어서는 불가하기로, 봉군은 그 진에서 죄를 다스리게 하고, 담당 감색 등은 전례대로 잡아와서 죄를 다스렸음. 정거리로 옮겨 정박한 큰 배 1척은, 초7일에 출발하여 다대포의 송도 바깥 바다에 이르러 사나운 바람이 크게 일어나고 파도가 하늘에 닿아서 배를 제어할 수 없기에, 표류하여 정거리로 돌아와서 정박하고, 서평포만호 임시륜(任時倫)이 호송장으로서 그가 탄 배 또한 풍파에 밀려서 가덕도 정거리로 뒤따라 가서 동 진의 이선장에게 교부하고 진으로 돌아왔는데, 이미 호송장이 되었으면 표류하여 정박한 곳까지 따라서 되돌아가 살피고 교부하는 것이 곧 직분 내의 일이며, 초4일에 비선 3척이 관소에서 출발하여 돌아 들어가다가 1척이 바람이 우도로 표류할 때 옥포왜학의 문정 가운데, 진시에 출발하여 돌아 들어간 것으로 적어 보고하고, 동 배에 탄 중금도왜와 별하대왜를 거론하지 아니하였고, 동 배가 되돌아서 관소에 정박한 뒤 문정할 때, 당초 돌아 들어가던 날 물마루를 건넜는데, 위의 두 배의 왜인들이 살아나려는 계책을 찾아서 다른 배로 옮겨탔음에도, 옥포역학이 그 거취를 따져묻지 아니한 것은 극히 소홀하기로, 이미 부산진에서 물어 조사한다 하였으니, 그 조사의 답을 기다려 다시 치달할 계획이며, 관수왜 평치신(平致信)의 하선 다례를 이번 초7일로 정하였고, 경오조 부특송사왜의 원역에 대한 하선 다례를 이번 초9일로 정하였는데, 두 날에는 부산첨사가 신병으로 가서 참여하지 못하고, 신이 홀로 가서 배폰 뒤에, 관수왜가 바친 해조로 보내는 서계와 별폭 각 1통과, 동래 부산으로 보내는 서계 1통과 별폭 2통, 부특송사왜가 바친 해조로 보내는 서계와 별폭 각 1통 등 도합 서계 3통과 별폭 4통 등을 감봉하여 해조로 올려 보냄.

방금 바친 훈도 현태익과 별차 황하성 등의 수본에, “관수왜 및 서계를 가져온 두왜 등이 비직(卑職) 등을 만나보기를 요청하여 말하기를, ‘저희 대마도가

본디 오로지 귀국의 은혜로운 보살핌에 의지하여 보전하는 것은, 두 나라의 성신(誠信)의 도리입니다. 그러므로 중간에 불평한 일이 있으면 부득이 우러러 요청하는 것은 그 유래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가만히 엎드려 생각건대 귀국에서는 특별히 저희 대마도 생명(生靈)들의 폐단을 염려하시어, 공작미까지도 정(精)한 것을 택하여 지급하시는 것은 그 감사함은 비록 이마에서 발끝까지 닳더라도, 물 한 방울 티끌 하나만큼의 보답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마는, 이는 온 섬에 은혜를 입힌 것입니다. 대개 인삼은 사람을 살리는 좋은 약제로서, 온 나라에 전하여 혜택을 끼치는 것으로 인삼보다 더할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도주가 에도에 들어갈 때, 전례에 따라 인삼 약제로 동무(東武) 및 집정(執政)과 각주의 태수에게 예단(禮單)으로 올렸으나, 과연 근래에 와서 인삼 품질이 잡된 물건을 섞어 거칠고 나쁘게 만들어 각처에서 시비가 크게 일어나고, 말이 관백(關白)에게 알려져서 죄책을 따지는 일까지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두 나라가 성신(誠信)을 통하는 처지에 있어서 무료하고 황공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데, 동무(東武)께서 다시 신칙하여 말하기를, 「앞의 일은 그만 두더라도, 지금 이후로는 매매하는 인삼은 반드시 약용(藥用)으로 쓰기에 반드시 정하고 좋은 것을 골라야 극히 옳을 것이며, 또 생각건대 값으로 쳐주는 은화(銀貨)가 넉넉하지 못한 소치」라고 하면서, 보관하고 있는 은화의 다수를 대출하는 것을 허락하여, 판매하는 길을 넓혀서 약료(藥料)를 교역하게 한 것은, 보살피는 성대한 뜻에서 나온 것이며, 근래에 인삼 품질은 잡된 물건을 풀로 붙여 안에 넣고 얇은 껍질로 인삼 형태를 만들어서 약용에 적합하지 않으니, 이 또한 간절하게 신칙하여 달라고 요청하여야 하겠다고 운운하였으므로, 도주께서 친히 동무의 명을 받들어 사유를 갖추어 서계를 지어 간절하게 귀국에 하소연하면서, 상인들에게 신칙하여 인삼과 비단을 반드시 좋은 품질과 그 수량을 많게 하여 달라는 일로 특별히 두왜를 보냈기로, 달포 전에 첨지 등에게 이 뜻을 동래 영감 전에 상세히 고하여 조정에 보고하게 해 달라는 뜻을 간절하게 이야기하였는데, 이미 석 달이 지나도록 아득하게 소식이 없으니, 이게 무슨 일이나?」라고 이야기하거늘, 비직 등이 말하기를, 「별도의 서계를 바치는 것은 규정 외에 관계될 뿐 아니라, 무릇 매매와 관련된 일은, 은화가 만약 많이 나오면 판매하는 길이 저절로 성하게 될 것인데, 어찌하여 이렇게 번거롭게 서계를 바치는가? 너희들은 비록 옛날에 인삼 상품이 절로 조금 좋았다고 하지만, 근년에 와서는 생산되는 곳이 점차 드물어서 채취하는 것이 매우 귀하므로, 인삼 품질이 이전과는 절로 다른 것을 너희들도 익히 알고 있는 지 오래이다. 이제 너희들의 말로 인하여 능히 변통할 수가 있겠는가? 너희들은 바라서

는 안될 일을 일절 바라지 말라'고 운운하였더니, 직접 동무의 지극한 뜻을 받들었다고 하면서, '무릇 서계를 바치고 답을 받은 것은 전례가 많이 있는데, 이제 만약 바치지 못하면 저희들이 죄를 받는 것은 돌볼 것도 없이, 도주께서 이 일을 잘 주선하지 못한 일로 인하여 동무의 대접을 받지 못하게 되면, 그 일의 체면이 어떻게 되겠는가? 또한 이번에 비선 편이 속히 일을 마치고 동무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재촉하는 명령이 반드시 도착할 것이라, 고민을 견디지 못한다'고 중언부언 하기에, 교활한 왜인의 정상이 극히 통탄스럽고 해괴하므로, 비직 등이 다시 묻기를, '너희들이 천만 부당한 이야기를 다시 물어 입을 연다'고 하면서 이치에 근거하여 책망하여 타일렀고, 이제 이번 도주가 바친 서계의 내용은, '일본국 대마주 태수 습유 평의여 서계(書啓). 조선국 동래부사공 함하. 중구(重九)의 절기를 반갑게 맞이하니 울타리의 누런 국화 빛이 오솔길에 가득합니다.⁶²⁾ 멀리 생각건대 지내시기가 편안하신지요. 그리운 마음 바야흐로 깊습니다. 이에 여쭙건대 두 나라에서 개시(開市)를 설치한 것은 서로 물자를 유통하고 이웃나라의 우호를 돈독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마는, 근년 이래로 귀국에서 생산되는 인삼이 점차 품질이 좋지 않고 수량이 적으며, 연시(燕市)의 비단이 해마다 영성하여, 장사하는 길이 지금 이 때처럼 매우 적막한 경우가 없었습니다. 이 일로 동무께서 특별히 은전을 더하시어, 은화를 편의대로 지급하는 일을 단행하였으니, 관시(關市)가 흥성하게 되는 것을 기대할 수 있겠는데, 혹시라도 뜻대로 아니되어 큰 보살핌을 저버림이 있게 되면, 그 모양이 또한 어떻겠습니까? 감사하는 마음 이미 도타우나 우려되는 심정 적지 않습니다. 간절히 바라건대 이 사이의 사정을 잘 살피시어, 역관 상인들을 신칙하여, 무역하는 사이에 빛이 나게 하시어 두 나라가 교통하는 우의를 온전하게 하신다면, 얼마나 다행이 더하겠습니까? 서찰로 말씀을 다하지 못하오니, 다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짐짓 이렇게 줄이고 예를 갖추지 못합니다'라고 하였기에, 연유를 아울러 수분한다" 하였음.

피집 인삼과 비단은 상인들이 각자 사사로이 매매하는 일이라, 만약 저쪽 나라에서 은화를 많이 낸다면 상인들의 상품이 또한 많아져서 점차 예전 모습을 복구될 것인데, 도주가 서계를 써서 바치는 일은 규정 외에 관계되기에, 임역에게 엄하게 신칙하여 책망하여 타일러 되돌려 보내라는 뜻으로, 전일의 신문(申聞) 가운데 따져서 열거⁶³⁾하였거니와, 대저 화친하여 통상한 이래로 조정에

62) 이 문맥의 원문 '九節喜逢鄉離黃滿經' 9자 중에는 옳게 적는 과정에 오자(誤字) 또는 탈자(脫字)가 있는 듯하다. 신미년 4월 17일자 기록에 동일한 서계가 실려 있는데, 거기에는 '九節喜逢 籬黃滿經' 8자로 적혀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이를 따라 번역하였다.

서 왜시(倭市)의 상인을 설치한 것은, 비록 재화를 교역하는 일이지는 하지만 변방 정세에 관계되는 것이 중대합니다. 근래에 와서 피집하는 것이 영성하고 시들한 것은, 단지 상역들의 죄가 아니라 실로 저쪽 나라의 은화가 넉넉하지 못한 소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제 저들 나라에서 은화의 대출을 허락하여 판매의 길을 복구하고자 하여, 상인들의 상품이 그 품질을 좋게 하고 그 수량을 많게 하는 것은 또한 차례로 이루어질 일이라, 참으로 매우 다행입니다. 또한 전후의 등록을 상고해 보면, 인삼 상품을 신척하는 등의 일로 비록 봉행이 대신하여 서계를 바치더라도, 처음에는 비록 물리쳤지만 끝내는 모두 받도록 허락하였으니, 이제 이번 도주가 직접 바친 서계는 규정 외라 하여 한결같이 물리치는 것은 부당할 듯할 뿐 아니라, 여러 달 서로 버티는 것은 일의 체면에 실로 난처하여, 다시 임역들을 시켜서 각별히 책망하고 타일러 되돌려 보내라고 하였더니, 두왜의 말이, ‘이제 만약 회답 서찰을 받지 못하면, 도주가 장차 예도에서 대단한 죄책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하며 끝내 돌아갈 뜻이 없기로, 삼가 이렇게 치달하오니, 조정에 명하여 품지(稟旨)하여 분부하여 진퇴하시도록 하시며, 근년 이래로 피집 인삼이 실로 거칠고 열악하여, 혹은 외면으로는 인삼을 부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그 가운데는 모두 뒤섞어 만든 것이라, 매양 왜인들이 이것으로 탈을 잡으며, 예단의 인삼까지도 간혹 감히 점검하여 물리치려고 하니, 임역 등이 그 사이에서 책망하고 타일러 얼버무리는 사이에 구차한 어려움이 많고, 부끄럽거나 모욕을 당하는 것이 이보다 심한 일이 없는데, 만약 이렇게 하여 마지 않으면 실로 변방 정세에 일이 생길 우려가 있으니, 이 뒤로부터 각별히 조삼(造蔘)하는 것을 각별히 엄금하고 이에 응하여 사들이는 상역(商譯) 역시 엄중하게 조치한 다음에야 이런 폐단이 없을 것이니, 해조에 명하여 사목대로 다시 더 각별히 엄금하여 주시기를.

신미(1751) 3월 25일

이번 3월 25일에 춘당대에 친히 임하시어, 무신(武臣) 당상관에게 상감께서 시사(試射)하시어 입시하였을 때, **한성부윤 홍봉한(洪鳳漢)⁶⁴**이 입제하기를,

63) 원본의 ‘謙外’ 두 글자는 필사과정에서 ‘論列’을 잘못 옮겨 쓴 오자로 보인다.

64) 홍봉한(洪鳳漢, 1713-1778) : 풍산홍씨로 자는 익여(翼汝)이다. 사도세자(思悼世子)의 장인으로 영조 24년(1744) 문과에 급제하여 어영대장에 발탁되고, 여러 관직을 거쳐 영의정에 이르렀다.

“동래부사가 장계로 알리기를, 왜인이 조삼(造蔘)을 신칙해 달라는 일로 보낸 서계 때문에 전후의 등록을 살펴보니, 이런 서계는 처음에는 비록 물리쳤지만 끝내 반드시 받도록 허락하였으니, 이제 규례라고 하여 한결같이 물리치는 것은 불가하고, 여러 달 서로 버텨서 부질없이 일의 체면만 손상하니, 청컨대 조정에 명하여 품의 분부하게 하고, 인하여 조삼의 폐단을 각별히 엄금해 달라고 하였는데, 대신의 뜻으로는 이런 서계를 받도록 허락한 데는 이미 전례가 있으니 받도록 허락해야 하고, 조삼의 간사한 폐단은 또한 특별히 통렬하게 금지해야 마땅하다고 합니다. 일이 긴급한 데 관계되므로 감히 이렇게 우러러 진달합니다”라고 하였는데, 상감께서 “서계는 받아들이도록 명하라. 이 폐단은 마음에 항상 아프고 놀랍게 여긴다. 비록 우리나라의 일이라도 엄하게 신칙해야 하는데, 하물며 교린에 있어서라! 이 뒤로 만약 다시 범하는 자가 있으면 동래부사가 장계로 알려 일률(一律)을 시행하는 일로 엄하게 신칙함이 옳다”고 하셨음.

신미 4월 초2일

경상우수사 정찬술이 3월 22일에 성첩한 장달. 3척이 나온 사정은 위와 같고 운운. 위의 왜인의 큰 배 1척은 이미 우도에서 근근이 폐단없이 건너 보내어 교부하였더니, 호송장 서평포만호가 영술하여 호위할 즈음에, 바람과 파도에 떠밀려서 왜선은 만호가 탄 배와 더불어 같이 가덕으로 표류한 것은, 비록 일의 형세가 면치 못할 바에 연유하였지만, 근래에 변방 정세가 날로 점차 해이해져서 장차 수습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으니, 이제 이번 건너 보낸 왜선이 도리어 우도로 표류한 것은 없었던 일에⁶⁵⁾ 관계되나, 일의 형세가 굳이 그렇다고 하여 전연 그냥 두어서는 불가하며, 다대포첨사는 시급한 변방 보고를 혹은 관측이 분명하지 않다고 핑계하거나, 혹은 앞이 가로막혀서 관측하기 어려웠다고 청탁하면서, 하루 이틀이 되어 비로소 보고한 것은, 변방의 체면으로 헤아려보건대 극도로 놀라운데, 좌수사가 단지 해당 진의 검색만 다스리고 첨사의 죄를 전연 거론하지 않는 것은 소홀함을 면치 못하니, 변방 정세를 엄중하게 하여 후일을 신칙하는 도리에 있어서 경책하는 도리가 없어서는 불가하며, 옥포왜학은 비선 1척에 문정할 때, 배 안에 있었던 왜인의 명수가 노인과 이미 서로 어긋났으니 그 곡절을 상세히 따져 물은 뒤에 사실대로 수본해야 마땅한

65) 원본의 ‘四十有之事’는 전후 문맥으로 살펴 ‘無有之事’로 번역하였다.

데, 한갓 교활한 왜인의 말만 믿고 범연하게 문정한 것 또한 극히 놀라우니, 동 다대포첨사 진응회(秦應會)와 서평포만호 임시륜을 잡아다가 후일을 경계하라는 뜻으로 좌수사 권경(權敬)에게 관문을 발송하여 분부하고, 옥포왜학 김정옥(金鼎郁)은 신의 수영으로 잡아와서 곤장을 쳐서 징계한 일임.

신미(1751) 4월 초5일

동래부사 조재민이 3월 26일에 성첩한 장달 내용. 이달 초4일에 관소에서 비선 3척이 돌아 들어가다가, 1척이 바람에 우도로 표류할 때, 옥포왜학의 문정 가운데, 출발하여 돌아 들어간다고 적은 보고에 함께 타고 있었던 중금도왜와 별하대왜를 거론하지 않았고, 동 배가 돌아와 관소에 정박한 뒤에 문정할 때는, 당초 돌아 들어가던 날 물마루를 지나면서 위의 두 배의 왜인이 살길을 구하려는 계책으로 다른 비선에 탔다고 하였는데, 그 곡절을 따져 묻지 아니하여, 이미 부산진에서 물어 조사한다 하였으니, 그 조사의 답을 기다려서 다시 신문하겠다는 뜻은 전에 이미 치달하였는데, 16일에 도부한 부산첨사 조위진의 치통 내용에, “방금 접한 옥포왜학이 보고한 바에는, ‘위의 비선 1척이 표류 정박하여 문정할 때 왜인의 말이 과연 초4일에 발선하였다고 이야기하였고, 명수가 잘못된 일은 부산진에서 작성하여 지급한 노문(路文) 가운데, 금도왜 1인과 별하대왜 1명 도합 8명이라 써 넣었으나, 한 앞의 작은 배에 단지 6명의 왜인만 함께 탔기로, 한결같이 타고 있는 실제 인원수로 문정하여 치고하였으며, 근래에 교활한 왜인들이 바꾸는 말을 믿는 것은 불가하므로, 큰 배와 함께 발선하였는지와 시각을 다시 따져 물었더니, 동 왜인들의 말이, 초4일에 비선 3척만 함께 발선하였다고 수표를 적어 주기에, 과연 이렇게 문정하여 치보하였다’고, 가덕첨사의 전통에 의거하여 다대포첨사가 치통하였는데, 본진에서 작성하여 지급한 노문 가운데 이미 8명이라 적었으면, 중금도왜 1명과 별하대왜 1명의 거취를 마땅히 상세히 물어야 함에도, 동 왜인들이 바다 가운데 이르러 옮겨 탄 한 조목은 당초 문정 가운데 전혀 거론하지 않고, 조사하여 물은 뒤에야 감히 한결같이 타고 있는 대로 문정하였다고 한 것은 소홀함을 면치 못하며, 초4일에 관소에서 왜인의 큰 배 1척이 먼저 발선하여 돌아 들어가고, 해가 늦은 뒤에 비선 3척이 또한 발선하였으니, 그날 왜인의 큰 배는 거론하지 아니하고 추후에 출발한 비선 3척이 함께 발선하였다고 수표를 주었다고 한 것은 더욱 극히 해괴하여, 연유를 치통한다” 하였음. 17일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올해 2월 19일에 나왔던 경오조 부특송사 1호선에 격왜 40명, 경오년(1750) 11월 12일에 나왔던 중금도왜 1인, 무진년(1748) 2월 초6일에 나왔던 공대관왜 2인, 정묘년(1747) 11월 26일에 나왔던 별대관 서기왜 1인, 경오년(1750) 5월 17일에 나왔던 하대왜 3명, 올해 2월 19일에 나왔던 경오조 부특송사 2호선에 격왜 30명, 경오년(1750) 11월 12일에 나왔던 중금도왜 1인, 경오년(1750) 8월 11일에 나왔던 하대왜 3명 등이 나누어 타고, 각기 공작미를 실어가지고 돌아 들어가기 위해 이번 13일에 수문 밖에서 바람을 기다린다는 훈도 현태익과 별차 황하성 등의 수본에 의거하여 수호장을 정하여 보냈는데, 동 왜선 2척이 오늘 발선하여 돌아 들어갔고, 이달 초4일에 관소로 돌아 들어가 우도로 표류했다가 되돌아와서 정박한 비선 1척에 두왜 1인, 격왜 5인이 함께 타고 관수왜의 사서를 가지고 오늘 또한 출발하여 돌아 들어갔다고 훈도 별차가 수본 운운” 하였음. 23일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에, “올해 2월 28일에 나왔던 을축조 부특송 2호선이 재차 건너온 배에 격왜 30명, 경오년 9월 18일에 나왔던 전라도 영암의 표류민을 영솔하여 온 차왜 정관 등정칙(藤正則) 반종왜 3명, 경오년 12월 18일에 나왔던 소금도왜 1명, 중금도왜 1인이 함께 타고, 공작미를 실어가지고 돌아 들어가기 위해 이번 19일에 수문 밖에서 바람을 기다리며, 올해 2월 19일에 나왔던 경오조 부특송사 수목선에 격왜 20명, 경오조 11월 12일에 나왔던 중금도왜 2인, 경오년 5월 17일에 나왔던 하대왜 2명이 함께 타고 공작미를 실어가지고 돌아 들어가기 위해 22일에 또한 수문 밖에서 바람을 기다린다는 훈도 별차 등의 수본에 의거하여, 전후로 바람을 기다리는 왜선 2척의 수호장을 정하여 보냈는데, 동 왜선이 오늘 출발하여 돌아 들어간 일 운운” 하였음. 옥포왜학이 표류한 왜선에 문정할 때, 당초 출발한 시각을 착오한 한 조목은 그냥 두고 논하지 않고, 부산진에서 작성하여 준 노문에 이미 그 8명을 적었으면 그 2명의 거취를 따져서 묻지 아니한 것은 매우 소홀한 일이라, 변방정세에 있어서 후일을 징계하는 도리가 없어서는 불가하기로, 위의 왜학 김정옥을 통해서 각별히 죄를 논하라는 뜻으로 동 수영에 보고하였음. 당년조 제1선 2선 3선 송사왜 등의 하선 다례를 이번 25일로 정하여는데, 저는 신병이 갑자기 엄중하여 가서 참여하지 못하고, 부산첨사가 혼자 가서 잔치를 베푼 뒤에 동 송사왜가 바친 서계와 별폭 각 3통을 받아 보내왔고, 제1선 송사왜의 서계 가운데 선조(宣祖)의 초휘(初諱)를 범한 곳이 있어서 처음에는 해괴하고 분함을 견디지 못하고 물리쳐서 고쳐 바치게 하여야 마땅하였으나, 등록을 가져다 살펴보니, 정사년(1737) 왜인의 서계 가운데 어휘를 잘못 범하였는데, 그 때 부사 오명서(吳命瑞)가 장계를 올려 논하여 비변사에서 회계한 관문 내용에, ‘초휘

(初諱)는 정휘(正諱)와 달라서 이전부터 이미 받아들였으니 이전대로 그냥 두라' 하였기로, 신 또한 전례대로 받아서 도합 서계 3통과 별폭 3통 등을 감봉하여 해조로 올려 보내는 일임.

이번 4월 초5일에 승지(承旨)가 공사(公事)를 가지고 입대(入對)하였을 때, **동부승지 신 김양택(金陽澤)⁶⁶이 진달하기를**, “이것은 동래부사 조재민의 장달(狀達)입니다. 대마도 도주의 서계 가운데 선조의 초휘를 범한 것이 있는데, 정사년(1747) 서계 가운데도 이렇게 휘를 범한 일이 있어서, 그 때 부사가 논하여 장계로 알리고, 비변사에서 회계하여 물리치지 말고 받아 올려 보내라 하였으므로, 이제 또한 이 사례대로 올려본다고 운운하였습니다. 전례가 과연 이와 같다면 비록 물리치지는 못하더라도, 그 삼가하고 신중하게 처리하는 도리에 있어서 비변사에 신보(申報)하여 다시 더 상의 확정하여, 그 회관(回關)을 기다린 뒤에 올려 보내는 것이 일의 체면에 당연한데, 가벼이 먼저 올려 보낸 것은 아주 매우 소홀하니, 동래부사 조재민을 엄중하게 추고함이 어떠할지?” 하였더니, 명하기를 “그대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신미(1751) 4월 초7일

전교에 이르기를 “이제 들으니 전례가 있다고 하니, 동래부사를 추고하는 조목은 시행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신미(1751) 4월 17일

동래부사 조재민이 4월 초7일에 성첩한 장달. 운운하였고, 피집한 인삼과 비단 등의 상품을 신칙하는 일로 대마도 도주가 바친 서계를, 묘당에 명하여 품지(稟旨)하여 분부하여 진퇴하도록 하되, 조삼(造蔘)하는 것을 각별히 엄금하고, 부화뇌동하여 사들이는 상인들 또한 엄중하게 조치한 뒤에라야 이런 폐단이 없을 수 있으니, 또한 해조에 명하여 사목대로 다시 더 엄금하라는 뜻으로 전

66) 김양택(金陽澤, 1712-1777) : 광산김씨로 자는 사서(士舒), 호는 건암(健庵)이며, 사계(沙溪) 김장생(金長生)의 5세손으로 숙종의 장인 김만기(金萬基)의 손자이다. 영조 17년(1743) 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거쳐 대제학과 영의정을 역임하였다.

에 이미 신문(申聞)하였는데, 방금 도부한 비변사의 계하 관문 내용에, ‘서계는 받아들이게 하고, 조삼의 폐단은 이 뒤로 만약 다시 범하는 자가 있으면, 동래 부사가 장계로 알려 일률(一律)로 시행하는 일’로 관문이 왔기로, 동 서계 1통을 받아서 감봉하여 해조로 올려 보낸다는 일임.

일본국 대마주 태수 습유 평의여 서계(書啓). 조선국 동래부사공 함하. 중구(重九)의 절기를 반갑게 맞이하니, 울타리의 누런 국화 빛이 오솔길에 가득합니다.⁶⁷⁾ 멀리 생각건대 지내시기가 편안하신지요. 그리운 마음 바야흐로 깊습니다. 이에 여쭙건대 두 나라에서 개시(開市)를 설치한 것은 서로 물자를 유통하고 이웃나라의 우호를 돈독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마는, 근년 이래로 귀국에서 생산되는 인삼이 점차 품질이 좋지 않고 수량이 적으며, 연시(燕市)의 비단이 해마다 영성하여, 장사하는 길이 지금 이 때처럼 매우 적막한 경우가 없었습니다. 이 일로 동무(東武)에서 특별히 은전을 더하시어 은화를 편의대로 지급하는 일을 단행하였으니, 관시(關市)가 흥성하게 되는 것을 기대할 수 있겠는데, 혹시라도 뜻대로 아니되어 큰 보살핌을 저버림이 있게 되면, 그 모양이 또한 어떻겠습니까? 감사하는 마음 이미 도타우나 우려되는 심정 적지 않습니다. 간절히 바라건대 이 사이의 사정을 잘 살피시어, 역관 상인들을 신칙하여 무역하는 사이에 빛이 나게 하시어, 두 나라가 교통하는 우의를 온전하게 하신다면 얼마나 다행이 더하겠습니까? 서찰로 말씀을 다하지 못하오니, 다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짐짓 이렇게 줄이고 예를 갖추지 못합니다. 대마주 태수 습유 평의여. 서계(書契).

이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신목(申目)을 첨부하였으니 달하하시기를. 이전에 인삼과 비단을 신칙하는 일로 대마도 도주의 서계를 받아들이게 명하라는 일로 조정에서 이미 연품(筵稟)하였는데, 동래부사의 회답 초고를 승문원에 명하여 말을 만들어 지어내어 별도로 금군을 차출하여 가지고 내려 보는 일로 분부함이 어떠할지? 건륭 16년(1751) 4월 19일 우승지 신 조운규(趙雲逵)⁶⁸⁾ 차지로 입달(入達)하여 그대로 인준함.

67) 이 문맥의 원문 ‘九節喜逢鄉離黃滿經’ 9자 중에는 옮겨 적는 과정에 誤字 또는 脫字이 있는 듯하다. 신미년 4월 17일자 기록이 동일한 서계가 실려 있는데, 거기에는 ‘九節喜逢 籬黃滿徑’ 8자로 적혀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이를 따라 번역하였다.

68) 조운규(趙雲逵, 1714-1774): 양주조씨로 자는 사형(士亨)이다. 영조 16년(1740) 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거쳐 호조, 병조, 예조, 형조의 판서를 역임하였다.

신미(1751) 5월 초8일

동래부사 조재민이 4월 27일에 성첩한 장달 내용. 우도 천성 마거리 앞바다에 정박한 왜인의 비선 1척은, 그 배가 돌아와 관소에 정박한 뒤에 다시 문정하여 신문하겠다는 뜻은 전에 이미 장달하였는데, 이달 20일에 도부한 부산첨사 조위진의 치통 내용에, “위의 왜인의 비선 1척은, 이번 19일에 출발하여 영솔하여 관소에 부쳤기에, 즉시 훈도 현태익과 별차 황하성에게 명하여 문정한 수본 내용에, ‘도중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고, 비선에 두왜 1인, 격왜 5명 등이 함께 타고 노인 및 관수왜에게 보내는 사서를 가지고, 생동(生銅) 1,200근을 실어가지고, 이번 16일에 비선 1척과 더불어 대마도에서 함께 출발하여, 물마루에 이르러 바람 형세가 불순하여, 1척의 비선은 향한 곳을 모르고, 저희들의 비선은 짐이 무겁고 바탕이 둔하여 그대로 뒤흔쳐져서, 근근이 노를 저어서 같은 날 표류하여 이곳 천성 경내에 이르렀는데, 이제 비로소 돌아와 정박하였다고 운운하였으며, 소지한 노인 1통은 받아서 올려 보내다’고 수본 운운하였는데, 이제 훈도 별차가 문정한 사연을 보면, 동 비선에 생동 1,200근을 실어가지고 온 당초 표류하여 정박하였을 때 옥포왜학의 문정에서는 전혀 거론하지 않았으니, 변방 정세에 있어서 상세하고 신중하게 하지 못한 실수를 면치 못하였으며 운운” 하였으며, 위에 뒤흔쳐진 분간되지 않는 배 1척이 가고 머문 것을 탐문하라 운운하였고, 23일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에, “올해 3월 26일에 나왔던 경오조 3특송사 1호선에 격왜 40명, 경오조 1특송사 도선주왜 굴조순(橋助順)과 무진년(1748) 12월 초6일에 나왔던 통사왜 1인, 경오년(1750) 4월 초10일에 나왔던 소금도왜 2명, 올해 4월 초7일에 나왔던 경오조 3특송사 2호선에 격왜 30명, 경오 8월 11일에 나왔던 경오조 1특송사 선주 굴량구(橋亮久) 봉진압물왜 1인, 사복압물 1인, 반중왜 3명, 올해 정월 22일에 나왔던 중금도왜 1인 등이 나누어 타고, 각기 공작미를 실어가지고 돌아 들어갔다”고 운운하였음. 위에 나온 비선의 노인 1통은 감봉하여 해조로 올려 보내며, 동 비선이 당초 표류하여 천성 마거리에 정박하였을 때, 옥포왜학 김정육이 문정한 가운데 생동을 싣고 있다는 한 조목을 거론하지 않은 것은, 그 살피지 못한 실수를 면하기 어려워서, 통영에서 죄를 다스려 후일을 징계하라는 뜻으로 동 통영에 치보하였고, 이때이양 송사왜 및 제4선 송사왜의 원역 등에 대한 하선 다례를 이번 26일로 정하여, 신과 부산첨사가 함께 가서 전례대로 베푼 뒤에, 송사왜 등이 바친 예조로 보내는 서계와 별폭 각 2통 및 겸대(兼帶)하여 가져온 제5선에서

제17선까지의 서계와 별폭 각 13통 등 도합 서계 15통과 별폭 15통을 받아, 감봉하여 올려 보내는 일.

신미(1751) 5월 23일

이번 5월 23일에 판윤(判尹) 홍상한(洪象漢)⁶⁹과 병조판서 홍계희(洪啓禧)⁷⁰, 호조판서 김상성(金尙星)⁷¹이 함께 입시하였을 때 **호조판서 김(金)이 입계하기를**, “지금 왜인의 예단에 들어가는 인삼 한 조목은 참으로 난처합니다. 저번의 서계로 말미암아 비록 조삼(造蔘)을 엄금하는 명이 있었지만, 비록 돈삼계(墩蔘契)⁷²로 말하더라도 예단 인삼 1근의 값이 겨우 은자 70냥이니, 조삼이 아니라면 계인(契人)들도 또한 어떻게 사들여서 바치겠습니까? 그러나 조정에서 명령한 뒤로, 예단 인삼 가운데 만약 조삼을 사용하면, 저쪽 사람이 교활한 속임수로 탈을 잡을 우려가 없지 아니하므로, 비록 품질이 못하더라도 반드시 체삼(體蔘)⁷³으로 준비하라는 뜻으로 엄하게 계인들에게 신칙하였더니, 계인들이 여러 차례 잇달아 호소하는데, 그 말 또한 근거가 없지 않습니다. 본디 가격을 이미 늘이지도 못하면서 매양 체삼을 내도록 책망하면, 또한 계인들이 지탱하기 어려운 사단이 됩니다. 이전에 본조에서 구입하여 온 강계 인삼이 도합 30근인데, 중간에 노삼(路蔘)이 점차 귀해져서 10근을 감하도록 허락하였으니, 지금의 일의 형편이 이러하니 변통하지 않아서는 안됩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이전대로 30근을 무역하도록 허락하되, 값의 본전은 본도의 공목(貢木)에서 정식대로 보내주고, 구입하여 온 뒤에는 그 중에 조금 나은 것을 가려서 내국(內局) 및 정부(政府)에 진배하여 용도에 따라 지출하도록 하고, 그 나머지 부삼(浮蔘)은 참작하여 계인에게 내어 주어서 예단 인삼을 진배할 때 보충하여 사

69) 홍상한(洪象漢, 1701-1769) : 풍산홍씨로 자는 운장(雲章)이다. 영조 을묘년(1735) 증광 문과에 급제하여 전라감사, 도승지, 대사헌, 예조판서 등을 역임하였다.

70) 홍계희(洪啓禧, 1703-1771) : 자는 순보(純甫), 호는 담와(澹窩), 영조 13년(1737) 문과에 장원급제하고 정언, 수찬 등을 거쳐 공조참의로 있으면서 영조 24년(1748) 통신사의 정사로 일본에 다녀왔다. 그 뒤 경기도관찰사, 판중추부사를 거쳐 봉조하에 이르렀다.

71) 김상성(金尙星, 1703-1755) : 강릉김씨로 자는 사정(士精), 호는 도계(陶溪)이다. 경종 3년(1723) 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거쳐 경상도관찰사와 병조, 예조, 이조의 판서를 역임하였다.

72) 돈삼계(墩蔘契) : 담비가죽과 인삼 공물을 조달하여 공납하는 계.

73) 체삼(體蔘) : 상품 인삼으로, 인삼의 머리와 잔뿌리를 제거하고 몸체만 남긴 인삼.

용하도록 하면, 일이 편하고 적당할 것입니다.” 하였는데, 상감께서 “진달한 대로 하라”고 하였고, 판윤 홍(洪)이 말하기를, “이것이 예단 인삼이니, 또한 한번 묘당의 의논을 거치지 않아서는 안될 것입니다”라고 하였고, 상성(尙星)이 말하기를 “이는 그렇습니다. 묘당에 명하여 품의 조처하게 함이 어떠할지?”라고 하니, 상감께서 “그대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신미(1751) 6월 24일

동래부사 조재민이 6월 16일에 성첩한 장달 내용. 이달 초7일에 도부한 부산 첨사 김종만(金鍾萬)의 치통에, “방금 접한 기장현감의 치통에, ‘오늘 조선 배인지 왜선인지 분간되지 않는 배 1척이 등불을 달고 모습을 드러내어 표류하여 좌도로 향한다’고 하였고, 일시에 도부한 서생⁷⁴⁾첨사의 치통에 ‘오늘 분간되지 않는 배 1척이 물마루에서 나와서, 본진 경내의 군령포(軍令浦) 앞바다에 떠서 머문다’고 하기에, 문정하기 위하여 별차 황하성을 정하여 보낸다”고 운운 하였음. 초8일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에, “위의 군령포 앞바다에 떠서 머물던 분간되지 않은 배 1척은 과연 왜인의 큰 배로, 어제 영솔하여 동 포구에 정박한 뒤에 그대로 수호하고 있다는 서생첨사의 치통에 의거하여 운운” 하였으며, 일시에 도부한 별차의 수본 내용에, “전령에 의거하여 이번 초8일 진시에 울산 군령포로 달려갔더니, 왜선 1척이 과연 표류하여 정박하였거늘 문정하였더니, 장기(長鬐)의 표류민이 빌려 타고 왔던 배에, 격왜 30명 및 전라도 영암(靈巖)의 표류민을 영솔하여 온 지로사공왜(指路沙工倭) 1명, 봉행(奉行)의 서계를 가져왔던 두왜 1인, 통사왜 1인, 소금도왜 2명이 함께 타고, 본진에서 작성하여 지급한 노인 1통을 가지고, 공작미를 싣고, 이달 초4일에 저희들이 탄 배 1척과 큰 배 1척이 관소의 바람을 기다리는 곳에서 함께 발선하여 곧바로 대마도로 향하다가, 물마루에 이르지 못하여 구름과 안개가 사방을 막고 바람이 시들하고 물이 역류하는데다 또 해가 저물어서, 1척은 간 곳을 모르고, 저희들의 배는 배를 제어하지 못하고 조수에 이끌려서 전전하며 흘러 오가다가, 구름과 안개가 어둡고 캄캄한 가운데 연일 바다 가운데 떠 있었는데, 초7일에 다행히도 귀국에서 배를 내어 영솔 예인하여, 같은 날 이곳에 정박하였다고 하였기로, 관소에 돌아와 정박한 뒤에 다시 문정할 계획”이라 하였음. 이제 문정

74) 원본에 ‘西平僉使’라고 하였으나, 뒤의 문맥에 의하면 이는 울산 경내의 ‘西生僉使’를 잘못 옮겨 쓴 것이 분명하므로, 고쳐서 번역하였다.

의 사연을 보면, 이달 초4일에 돌아 들어가던 왜선 2척 중 1척은 지금까지 6일이 되도록 좌우도의 전로(前路)에 표류하여 도착했다는 보고가 없으니, 필시 밤중에 그대로 대마도로 향한 소치일 것임. 같은 날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에, “오늘 나온 분간되지 않은 배 1척은 과연 왜인의 큰 배인데, 신시에 영솔하여 관소에 부치고, 즉시 훈도 별차에게 명하여 문정하게 한 수본에, ‘도중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고, 병인조 제11선에 격왜 20명, 교대차 나온 별금도왜 1인, 중금도왜 1인, 소금도왜 1명이 함께 타고 노인 및 술 3통을 가지고, 공작미를 실어가기 위해 나왔기로, 소지한 노인 1통을 받아 보낸다’는 수본에 의거하여 보낸다” 하였음. 초10일에 도부 운운하기를, “군령포에 표류하여 정박한 왜인의 큰 배 1척을 영솔하여 관소에 부치고, 즉시 훈도 별차 등에게 명하여 문정하게 한 수본의 사연은, 별차가 당초 군령포에 혼자 가서 문정한 것과 다름이 없고, 실은 짐은 모두 물이 새어 젖었으므로, 공작미를 육지에 내려 말린 뒤에 다시 돌아 들어갈 계획이고, 병인조 제8선에 격왜 30명, 올해 2월 20일에 나왔던 중금도왜 1인, 올해 2월 초4일에 나왔던 소금도왜 1명, 하대왜 2명, 올해 6월 초2일에 나왔던 병인조 제9선에 격왜 30명, 올해 5월 13일에 나왔던 별금도왜 1인, 올해 3월 26일에 나왔던 중금도왜 1인, 올해 2월 20일에 나왔던 소금도왜 1명, 하대왜 2명이 나누어 타고, 도합 2척이 공작미를 실어가지고 오늘 수문 밖에서 바람을 기다린다는 수본에 의거하여 수호장을 정하여 보내며 운운” 하였음. 12일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에, “수문 밖에서 바람을 기다리던 배 2척은 오늘 돌아 들어갔다고 치보하였고, 어제 되돌아 와서 정박하였던 장기의 표류민이 빌어타고 왔던 왜선 1척이, 탔던 왜인 및 실었던 짐을 말리고 되돌려 실어가지고, 그대로 함께 타고 오늘 관소에서 다시 출발하여 돌아 들어갔다는 훈도 별차 등의 수본 및 봉군이 진고 운운” 하였음. 방금 도부한 접위관 양산군수 김음(金馨)의 이첩 내용에, “초순(初巡)으로 기장의 표류민을 영솔하여 온 차왜 평영일(平英一) 원역 등에 대한 하선연을 이번 12일에 폐단없이 베풀었다” 하였음. 14일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에, “올해 윤5월 초4일에 나왔던 비선에 두왜 1인, 격왜 6명, 올해 3월 26일에 나왔던 중금도왜 1인, 올해 2월 28일에 나왔던 소금도왜 1명이 함께 타고 관수왜의 사서를 가지고, 오늘 곧바로 관소에서 출발하여 돌아 들어갔다고 훈도 별차의 수본에 운운” 하였음. 같은 날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에, “과연 왜인의 큰 배 1척을 영솔하여 관소에 부쳤다고 하여, 즉시 훈도 별차 등에게 명하여 문정하게 한 수본에, ‘제1척은 당년 조 2특송사 1호선인데 격왜 40명 및 교대차 나온 별금도왜 1인이 함께 타고, 노인 및 술 3통을 실어가지고 공작미를 실어가기 위하여 나왔고, 제2척 비선에

는 두왜 1인, 격왜 6명 및 교대차 나온 별금도왜 1인 등이 함께 타고, 노인⁷⁵⁾ 가졌으며, 관수왜의 말이 저희 나라의 구 관백(關白) 원길종(源吉宗)이 늙어서 병을 얻어 올해 윤5월 20일에 죽었다고 하였으며, 위의 노인 2통을 받아 올려 보낸다'고 수본하였기에, 이에 의거하여 동 노인 2통을 전례대로 보낸다"고 하였음. 방금 접한 가덕침사의 치통에 운운한 데 의거한 동 침사의 치통에, "13일에 나와서 표류하여 거제도⁷⁶⁾로 향한 분간되지 않은 배 1척은 과연 왜인의 큰 배로, 같은 날 서로 만나 영술 예인하여 옥포 강 입구에 정박한 뒤에, 동 포구의 왜학 김정옥과 소통사 등이 가서 문정하였더니, '신미조 1특송사 수목선에 격왜 20명, 교대차 나온 중금도왜 4인, 하대왜 2명이 함께 타고, 노인을 가지고 공작미를 실어가기 위해 이번 13일에 대마도에서 발선하여 곧바로 관소로 향하다가, 겨우 물마루를 지나 바람 형세가 불순하여 표류하여 이곳에 이르렀다'는 일로 문정하였다고 차례차례 치보에 의거하여 운운" 하였음. 위의 옥포 강 입구의 왜인의 큰 배 1척은 그 배가 돌아와 관소에 정박한 뒤에 다시 문정하여 알릴 계획이고, 왜인의 크고 작은 배 아울러 3척의 노인 3통을 감봉하여 해조로 올려 보내거니와, 물러나서 쉬고 있었던 구 관백 원길종이 올해 윤5월 20일에 죽었다고, 지금 온 선편에 관수왜에게 부고를 전하였는데, 당초 물러나서 쉬거나 경사를 알린다고 와서 고하였다면, 이제 죽은 뒤에 마땅히 부고를 알리는 일이 있어야 하는데, 이제 이번 문정 가운데 단지 죽었다는 사실만 있고 다른 일을 고하지 않은 것은 일이 매우 괴이하니, 왜인과 관련하여 근거될 만한 사례를 상세히 탐지하여 수본하라는 일로 훈도 별차 등에게 전령하였더니, 훈도 별차 등의 수본 내용에, "전령에 의거하여 비직 등이 왜관에 가서 관수왜에게 묻기를, '물러나 쉬었던 구 관백(關白) 태대군(太대君)이 죽었다고 하였는 바, 동 태대군이 이제 이미 죽었으면, 너희 대마도 및 왜관에서 거행하는 일은 혹 근거할 만한 전례가 있는지, 상세히 상고하여 회답해 달라'고 하였더니, 동 왜인의 말이, '대마도에 혹 상고할 만한 문적이 있는지는 아직 뚜렷이 모르겠고, 부고를 통지한 두왜는 대마주(對馬州)의 중론이 이미 물러나 선다는 사실을 귀국에 고하였으니, 귀국에 부고를 고하는 절차도 봉행해야 할 일인 듯하나, 한결같이 에도의 분부를 따라 장차 거행할 것이로되, 아직 뚜렷이 알지 못한다고 하며, 태대군이 윤5월 20일에 죽어서, 이달 초6일에 에도에서 부고 통지가 대마도에 내도하였으므로, 그 날 밤중에 그대로 비선을 발송하여, 어제 왜관에 내도하였으므로, 과연 다급하여 아직 왜관에서 거행하는 절목

75) 문맥으로 보아 이 사이에 '館守倭了私書〔관수왜에게 보내는 사서〕' 6자가 있어야 마땅하나,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

을 가져온 일이 없으며, 일본국의 법례(法例)로는 관백이 죽은 날로부터 계산하여 50일까지는 공사(公事)를 하지 아니하므로, 이번 구 관백이 죽은 뒤 7월 초10일까지 한정하여, 연향(宴享) 등의 절차를 거행하지 아니하고, 개시는 이번 14일에 부고를 들은 뒤로부터 5일을 한정하여 행하지 아니하며, 이달 18일 이후에는 전례대로 하겠다'고 이야기하였기로, 연유를 수분한다" 하였음. 운운 가져다 살펴보니, 승정(崇禎) 임신년(1633) 부사 신 홍립(洪瑩)의 장계 등록을 보면, '구 관백 원수충(源秀忠)이 죽어서 부고를 전하는 서계를 가져온 차왜 굴성공(橋成供)이 나왔다'고 하였으니, 이번에도 마땅히 이 사례에 의거하여 부고를 고하는 일이 있을 것이나, 그 때는 관백이 죽은 뒤 50일 동안 공사를 하지 않고 연향을 하지 않는다는 일은 없었는데, 이번에 비로소 있으니, 이는 아마도 저쪽 나라의 의문(儀文:의식 관련 조문)이 이전보다 조금 나아진 소치로 말미암은 것이겠거니와, 부고를 고하는 차왜가 나오기를 기다려 즉시 신문할 계획이며, 연유를 먼저 치달하는 일임.

신미(1751) 7월 초1일

7월 초1일에 계하하였던, 경상좌수사 권경이 6월 17일에 성첩한 장달(狀達)이 이달 14일에 도부하였는데, 부산첨사 김종만(金鍾萬)의 치보 내용에, "즉각 구봉봉군 김금안(金今安)이 진고하기를, 당일 조선배인지 왜선인지 분간되지 않는 배 2척이 물마루에서 나온다고 하여, 초탐하기 위하여 개운포 만호 김두징(金斗徵)을 정하여 보냈는데, 방금 도부한 개운포 만호 김두징의 치보에, '위의 분간되지 않은 배 2척은 과연 왜인의 큰 배 1척과 비선 1척으로 영솔하여 관소에 부쳤다'고 치보하였기에, 이에 의거하여 즉시 훈도 현태익과 별차 황하성 등에게 명하여 문정하게 한 수분 내용에, '도중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고, 제1척은 당년조 2특송사 1호선에 격왜 40명, 교대차 나온 별금도왜 1인이 함께 타고 노인 및 술 3통을 실어가지고 공작미를 실어가기 위해 나왔으며, [누락]76) 별금도왜 1인이 함께 타고 노인 및 관수왜에게 보내는 사서를 가지고, 오늘 2척의 배가 대마도에서 함께 발선하여 나왔다고 운운하였으며, 관수왜의 말이, 「저희 나라 구 관백 원길종(源吉宗)이 나이가 늙고 병을 얻어 올해 윤5월 20일에 죽었다」고 하였고, 위의 두 배가 소지한 노인 2통을 받아 올려 보

76) 이 부분에 비선 1척에 대한 기록이 있어야 하는데 원본에 누락되어 보이지 않는다.

낸다’는 수본에 의거하여 동 노인 2통을 전례대로 동래부로 보낸다”고 치료하였다는 일임.

신미(1751) 7월 초10일

이번 7월 초9일에 약방(藥房)에서 입진(入診)하여 영상(領相)과 예조에서 함께 입시하였을 때 **영의정 김이 계품(啓稟)**하기를, “새로 임명된 동래부사 남태기(南泰耆)⁷⁷⁾가 정장(呈狀)하기를, ‘지난 해 통신부사(通信副使)로서 일본에 갈 때, 재판과 봉행 등은 겨우 기둥 밖에서 절을 드릴 수 있었고, 관수왜 및 세선(歲船)의 차왜는 재판이나 봉행 보다 더욱 낮아서, 도리어 마당 아래에서 천한 일을 하며 분주하였던 자인데, 이제 장차 그들과 더불어 맞서서 빈주(賓主)의 예를 행하는 것은, 저 자신 한 사람의 수치는 논하지 않더라도, 국가의 체면에 손상이 될 듯하여, 이를 무릅쓰고 부임하기에는 운운’ 하였는데, 여러 사람의 논의가 그 말이 참으로 그렇다고 하고, 신의 생각으로는 통신사 사행 때는, 제가 사신의 책임을 받들고 간 사람이므로 저쪽에서 존대하였고, 동래부사가 되었을 때는, 저쪽이 비록 비천하더라도 사신의 명을 받들고 온 사람이고, 저는 지방관으로서 접대하기 때문에 빈주(賓主)의 예로 대하여, 처한 곳에 따라서 달리하는 것이지, 그것이 꼭 부임하지 못할 의리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한 번 품의하여 성상의 뜻에 따라 조처하지 않아서는 안되겠으므로 감히 진달합니다”라고 하였는데, 상감께서 “조정의 체면이 가벼운 듯하니 남태기를 교체함이 마땅하다” 하셨음.

신미(1751) 7월 15일

이번 7월 15일에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접(引接)하여 입대(入對)하였을 때, **영의정 김(金)이 진달하기를**, “경상좌수사 권경이 왜인이 오고 간 사실로 장달하였는데, 장기현의 표류민을 영술하여 온 차왜의 배가 도착하여 정박하였을 때, 훈도 현태익과 별차 황하성 등이 문정한 뒤에 치료를 지체한 것은, 그 죄

77) 남태기(南泰耆, 1699-1763) : 의령남씨로 자는 낙수(洛叟)이고 호는 죽리(竹裏)이다. 영조 8년(1732) 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거쳐 통신부사로 일본에 다녀왔으며, 예조판서를 역임하였다.

상을 조정에 명하여 품의 조처하게 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무릇 변방 정보가 얼마나 엄중한데, 수영에서 왜관까지의 거리가 지척임에도, 초5일에 차왜가 관소에 도착하였는데 이튿날 비로소 치보하였으니, 그는 비록 별폭과 서계를 베껴 쓰는 사이에 저절로 늦어졌다고 하나, 변방 정보를 늦춘 책임은 면하기 어려우니, 훈도 현대익과 별차 황하성 등을 수영에 잡아다가 곤장을 치는 일로 분부함이 어떠할지?” 하였더니, “그대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신미(1751) 8월 초1일

동래부사 조재민이 7월 20일에 성첩한 장달 내용. 이 달 초8일에 조선 배인지 왜선인지 분간되지 않는 배 2척이 물마루에서 나온다는 봉군 등의 진고에 의거하여, 같은 날 부산첨사 김종만(金鍾萬)의 치통 내용에, “운운. 올해 6월 초3일에 나왔던 소금도왜 1명, 올해 6월 초4일에 나왔던 하대왜 1명이 나누어 타고, 각기 공작미를 싣고 도합 2척이 출발하여 돌아 들어갔다”고 하였으며, 훈도 별차 등의 수본 내용에, “왜관 왜인들의 선조 분묘가 구관 뒷산에 있는데, 이제 백중절을 당하여 전례대로 가서 살펴보겠다고 운운”하였기에, 함부로 횡행하지 못하게 하라는 뜻으로 별차에게 신칙하였음. 13일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이번 11일에 표류하여 거제도도 향한 분간되지 않는 배 1척이 옥포 강 입구에 정박하였기에, 동 포구의 왜학 김정육이 분주하여, 소통사 권순택이 달려가서 문정하였더니, ‘도중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고, 병인조 이때 이양 송사가 재차 건너왔는데, 격왜 30명 및 교대차 나온 중금도왜 3인과 소금도왜 2명, 하대왜 1명 등이 함께 타고, 노인 및 생동 7,000칭(稱)을 실어가지고, 공작미를 실어가기 위해 이번 11일에 대마도에서 발선하여 곧바로 관소로 향하다가, 겨우 물마루를 지나 바람 형세가 불순해서 표류하여 이곳에 이르렀다는 일로 문정하였다고 운운’하였는데, 무릇 이때이양 송사왜의 배에 격왜 40명이 나오는 것이 본디 전례인데, 이제 이번 문정 가운데 30명이라고 보고하여 온 것은 전례에 어긋남이 있어서, 돌아와 관소에 정박한 뒤에 다시 문정한 뒤에라야 상세히 알 수 있겠다” 운운하였음. 17일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우도로 표류한 왜선을 영솔 호송하기 위하여, 관소에 머물던 왜인의 비선 1척에 중금도왜 1인과 소금도왜 1명, 격왜 7명이 함께 타고 이전대로 나갔는데, 방금 접한 별차의 수본 내용에, ‘당일에 기장 무지포로 달려갔더니, 왜인의 큰 배 1척이 과연 표류하여 정박하였으므로 문정하였더니, 도중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고, 병인조 제15선에 격왜 20명 및 교대차 나온 중금도왜 2인, 하대왜 2명이 함께 타고, 노인 및 어유 3통을 실어가지고 공작미를 실어가기 위하여, 어제 저희들이 탄 배 1척만 대마도에서 출발하여 곧바로 관소로 향하였는데, 겨우 물마루에 이르러 바람 형세가 불순하여 같은 날 표류하여 이곳에 이르렀다고 운운' 하였으며, 즉시 훈도 별차 등에게 명하여 문정한 사연은 당초 무지포에 표류하여 정박하였을 때 별차가 혼자 가서 문정한 것과 조금도 다름이 없고, 소지한 노인 1통을 받아 올려 보낸다" 운운하였음. 위에 나온 왜선의 노인 3통은 감봉하여 해조로 올려 보내고. 우도 천성 경내의 마거리 장항(獐項) 앞바다로 옮겨 정박한 큰 배 1척 및 다대포 앞바다에 정박한 관소에 머물렀던 비선 1척은, 그 배가 관소로 돌아와 정박하기를 기다려 다시 문정하여 장계로 알릴 계획이며, 경오조 부특송사와 및 신미조 이때이양 송사와 제4선 송사와 등의 상선연은 배풀지 아니하고 건물(乾物)로 받기를 원한다는 훈도 별차 등의 수본에 의거하여, 부특송사와의 연회에 소용될 잡물을 이번 11일에 수량을 대조하여 들여 주었고, 이때이양 제4선 송사와 등의 연회에 소용될 잡물은 이번 12일에 또한 들여 주었다는 일임.

신미(1751) 9월 19일

이번 9월 17일에 영상(領相)과 균역당상(均役堂上)이 입시하였을 때 영의정 김재로(金在魯)가 계품(啓稟)하기를, “왜인의 예단 인삼 값이 1근에 70냥인데, 옛날에 은화가 귀하고 인삼 값 또한 그다지 높지 않았으므로 그래도 크게 부족한 지경에 이르지 않은 것이 당연하나, 근래에는 은화가 천하고 인삼값이 높아 여러 배가 될 정도만이 아닌지라, 그러므로 70냥의 은화는 1근의 인삼 값에 비하여 겨우 4분의 1이 되어, 조삼(造蔘)이 어느 때 시작되었는지 모르지만 아마도 부득이한 소치인 듯하나, 요즈음에는 조삼이 더욱 형편없어서, 전혀 잡물을 풀로 붙여 채우고 감싸서 만들기 때문에, 왜인이 서계를 보내어 신척하기를 청하는 일까지 있었고, 위에서 또 조삼을 엄금하는 명이 있었습니다. 비록 그렇지만 만약 간략하게 변통하지 않고 한갓 엄한 법으로써 금지하려고만 생각한다면 시행되지 못할 우려가 있을 듯하고, 지금 현재 예단의 인삼을 왜인이 모두 받지 아니하고 보류하여 두고 있다고 하니, 장래에 국가에 욕이 될 우려가 없지 아니합니다. 호조판서가 저번에 강계 인삼 10근을 더 사 오자는 뜻으로 진달하여 아직 복계(覆啓)하지 않고 있는데, 신의 생각으로는 경비가 비록

모자라나 마땅히 선혜청에서 가급(加給)하는 사례에 따라 대략 무거운 값을 더 주어서, 강계 인삼을 더 사들여서 보충하여 지급한 뒤에라야 이전보다 나아질 효험이 있을 듯하니, 호조판서로 하여금 속히 입시하여 품의 확정하게 함이 어떠할지?” 하였는데, 상감께서 “그대로 하라” 하셨습니다.

신미(1751) 9월 29일

이번 9월 29일에 병조판서 홍계희(洪啓禧)와 예조참판 홍(洪), 동지정사(冬至正使) 낙창군(洛昌君), 호조판서 김상성(金尙星)이 함께 입시하였을 때, **호조판서 김(金)이 계품하기를**, “신은 예단 인삼 한 조목으로 얼마 전에 진달하였는데, 올해 예단 인삼을 본조에서 전후로 내려 보낸 것이 8근 남짓이나, 전 동래부사의 보고 장계를 보았더니, 왜인이 지금까지도 받지 아니하므로, 임역에게 엄하게 신칙하였다고 운운합니다. 이 또한 일의 체면에 참으로 한심한 것입니다. 이미 예단이라고 했으니, 인삼의 품질이 혹 미진하더라도 왜인들이 어찌 감히 점퇴(點退)하는 버릇을 행한답니까? 이는 훈도 별차들이 이치에 의거하여 책망하고 타이르지 못한 소치에 지나지 않는지라, 후일의 폐단에 관계되니, 동래부사를 결코 그냥 두어서는 안됩니다.”라고 하니, 상감께서 “그대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같은 날 입시하였을 때 **호조판서 김(金)이 계품하기를**, “신이 일전에 병으로 입시하지 못했는데, 대신이 왜인의 예단 인삼 한 조목으로 진달한 바가 있어서, 신에게 명하여 속히 품의 확정하게 하라고 하였으나, 가격을 정하는 것으로 말하자면 크게 서로 맞지 아니하나, 인삼 값은 결코 증가하는 것이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체삼(體蔘)으로 진배하도록 책망한다면 마땅히 그 가격에 준하여 지급해야 하지만, 이는 본조의 일이나 재력이 감당할 수가 없고, 만약 약간의 가격을 추가 지급하더라도 인삼 품질을 전과 같이 진배한다면, 설혹 이전보다 조금 낮다 하더라도 동일한 조삼이니, 또 어찌 꼭 그 값을 더 지급해야 하겠습니까? 예단은 비록 그 값에 맞추어 지급한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인삼이 나오는 길이 매우 희귀한데, 매년 진배하여야 할 예단 인삼이 이미 30여 근에 이르고, 별차왜에게 들어가는 것은 그 가운데 들어 있지 아니하니, 계인(契人)이 비록 값에 맞추어 구입하기를 요구하여도 결코 이 수량을 채울 리가 없습니다. 강삼(江蔘)이나 북삼(北蔘)을 막론하고 우리나라에서 토지에서 생산되

는 것은 해마다 점차 소진되어, 나라 안에서 약으로 사용할 인삼도 오히려 얻기 어려워 걱정이니, 매년 예단 인삼 3-40근을 장차 어떻게 내도록 하겠습니까? 신의 생각으로는 지금 당장 폐단을 구제할 방도로는, 그 인삼이 나올 길을 넓히는 것만 못하며, 호삼(胡蔘)을 무역하도록 허락하는 것은 조금도 방해될 것이 없어서, 별도로 자문(咨文)을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저쪽의 서책 가운데 금지 물품이 된 것이 많지마는 사행(使行) 때 무역하여 오지 않는 것이 없으니, 유독 인삼이 나오는 길을 어찌 꼭 우리나라에서 가혹하게 금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만약 본도 및 만부(灣府:義州府)에 명하여 금지하지 않게 한다면, 지금 연시(燕市)의 물종 가운데 대단히 이익이 되는 것이 별로 없고, 인삼은 짐을 꾸리기에 가벼우니, 역관들이 반드시 많이 무역하여 올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왜인의 예단 인삼의 폐단을 구할 뿐만 아니라, 또한 나라 안에 통용되는 상품이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하였으며, 병조판서 홍(洪)이 말하기를, “구입하여 오는 당화(唐貨:중국상품)는 긴요하지 않으나, 이것은 약용으로 가장 긴요한 것인데, 만약 호삼(胡蔘)을 무역하여 오는 길을 열어 놓는다면, 대마도 예단에 사용하는 것을 해결하는데 유익할 뿐 아니라, 나라 안의 사람들도 인삼을 얻어 사용할 수 있으니, 어찌 다행이 아니겠습니까?”라고 하였고, 예조판서 홍(洪)이 말하기를, “이전에 인삼을 무역하는 일로 자문을 보냈다가 방색(防塞)을 당했으니, 이제 또 자문을 보내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만약 자문을 내는 일이 없이 순순하여 무역하여 올 방도가 있다면, 이는 채단(綵緞)이나 기묘한 상품 등속과는 다름이 있어서, 이미 예단에 필요한 양이 모자라지 않고, 또 국내에서 사용하는 데에도 크게 보탬이 될 것이니, 무역을 허락하지 않아서는 안될 일인 듯합니다.”라고 하였더니, 상감께서 “나라 안에서 인삼이 나올 길이 만약 끊어져서 모자란다면, 비록 저쪽의 인삼이라도 나라 안의 약물에 사용하기에 족하겠는가?”라고 하였고, 김상성(金尙星)이 말하기를, “인삼 품질이 만약 이것보다 나은 것이 있다면 꼭 매입하기를 원할 것은 아니지만, 혹 매우 귀한 시기가 된다면 비록 인삼이라도 어찌 무역하여 사용하지 않겠습니까?”라고 하자, 상감께서는 “이는 보탬이 되지 않는 비단과는 같이 견주어서는 안되니, 여러 사람이 진달한 것이 참으로 그렇다. 이번 사행 이전에 비변사에 명하여 즉시 품의 조처하게 함이 좋겠다”고 하셨음.

신미(1751) 11월 초10일

동래부사 신위(申暉)⁷⁸가 11월 초1일에 성첩한 장달 내용. 지난달 25일에 도부한 부산첨사 박태정(朴台炡)의 치통 내용에, “올해 9월 21일에 나왔던 비선에 두왜 1인, 격왜 6명, 올해 7월 초4일에 나왔던 중금도왜 1인, 올해 8월 11일에 나왔던 하대왜 1명이 함께 타고, 관수왜의 사서를 가지고 당일에 곧장 관소에서 출발하여 돌아 들어갔다고 훈도 현태익과 별차 황하성 등의 수본에 운운” 하였으며, 방금 바친 훈도 별차 등의 수본에, “지난 초하루 왜관 동서 건물 여러 곳을 부산진 감색과 더불어 같이 적간하였더니, 아직 손상된 곳은 없다”는 수본에 의거하여, 각별히 살펴 점검하라는 뜻으로 다시 더 신칙한 일임.

신미(1751) 12월 초9일

동래부사 신위가 11월 28일에 성첩한 장달 내용. 이제 이번 현빈궁(賢嬪宮)이 돌아가신 뒤로 왜인을 접대하는 연향(宴享)의 절도를 감히 거행하지 못함이 있는데, 동래부에 보관한 장계등록을 가져다 살펴보니, 무술년(1718) 단의왕후(端懿王后)가 빈저(嬪邸)에 있으면서 홍서(薨逝)하였을 때, 졸곡 이전에는 비록 향례(享禮)를 행하더라도 관과 의복은 길소(吉素)로 하였으나 문적이 상세하지 않고, 단지 기연(妓宴)은 베풀지 않고 모두 건물(乾物) 또는 배상(排床)으로 들여준다고 운운하였는데, 졸곡 뒤에는 연향(宴享)의 절차를 한결같이 평상시대로 한다고 하였으니, 지금 현재 졸곡 뒤의 연향을 줄여서 거행하는 절도를 이에 의거하여 행함이 마땅한데, 방금 도부한 본도 관찰사의 감결 내용에 의거한 예조의 계하 관문에, 해당 각 도의 대소 사신 및 지방 관리들은 천담복(淺淡服)으로 거애(擧哀) 운운 하였으나, 성복(成服)과 공제(公除)의 기한이 없습니다. 이번의 예제(禮制)는 무술년(1718)과 다름이 있고, 평상시에는 길복을 입는다는 명령까지 있어서, 왜인을 접할 때 전후로 다른 구별이 있는 듯한데, 국가의 제도에 예가 엄중하고 먼 외국 사람들에게 보이는 일이 체면이 중대하니, 그것을 시행하고 폐하는 사이에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바가 있어서 이렇게 치달하니, 졸곡 전에 왜인을 접대할 때의 복색과 기악(妓樂) 등의 절도를 어떻게 하여야 할지, 현재 만쇼잉 부특송사왜의 연향 등의 절차를 마땅히 차례로 거행해야 하니, 해조에 명하여 속히 품지(稟旨) 분부하여 때맞춰 거행할 수 있도록 해 달

78) 신위(申暉, 1707-?) : 평산신씨로 자는 계명(季明)이다. 영조 15년(1739) 문과에 급제하여 영조 27년(1751) 9월 동래부사로 부임하여 영조 29년(1753) 4월까지 재임하였고, 그 뒤 여러 관직을 거쳐 대사헌을 역임하였다.

라는 일임.

이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계목을 첨부하였으니 계하하시기를. 이 동래부사 신위(申緯)의 장계를 보면, 현빈궁(賢嬪宮)의 상이 난 이후로 왜인에 대한 연향의 절차를 감히 전례에 따라 행할 수 없음이 있는데, 동래부에 보관한 무술년(1718) 등록을 가져다 상고하니, ‘줄곡 전에는 비록 향례(享禮)를 행하더라도 관복(冠服)은 길소(吉素)로 하되 문적(文跡)이 상세하지 않아서, 단지 기연(妓宴)을 베풀지 아니하고 모두 건물(乾物)이나 또는 배상(排床)으로 들여준다’고 운운하였는데, 줄곡 뒤의 연향 절차를 한결같이 평상시의 사례대로 해야 할지, 해조에 명하여 속히 품지하여 분부하여 달라고 하였는바, 이제 이번 현빈궁의 상에 조신(朝臣)들의 관복(冠服)은 비록 평상복을 사용하지만, 줄곡 전에 왜인을 접대할 때 그대로 기악(妓樂)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합당하지 못할 뿐 아니라, 무술년(1718)에 이미 기악을 사용하지 않은 전례가 있으니, 지금 또한 이에 의거하여 거행하는 뜻으로 분부함이 어떠할지? 건륭 16년(1751) 12월 11일 좌부승지 신 남태기(南泰耆)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함.

신미(1751) 12월 12일

예조에서 입계하기를, “각 능(陵)·전(殿)·묘(廟)와 본조의 낭관(郎官), 사학(四學)의 동몽교관(童蒙敎官), 통례원(通禮院), 도화서(圖畫署) 관원들의 신미년 추동등(秋冬等) 포폄을 등급을 매겨 들이되, 종묘서(宗廟署), 사직서(社稷署), 홍문관(弘文館), 예문원(藝文院), 춘추관(春秋館), 승문원(承文院), 성균관(成均館), 교서관(校書館), 봉상시(奉常寺), 장악원(掌樂院), 귀후서(歸厚署), 전생서(典牲署), 사축서(司畜署), 예빈시(禮賓寺), 동·서(東西) 활인서(活人署), 동·서 빙고(氷庫), 사역원(司譯院), 내의원(內醫院), 혜민서(惠民署), 관상감(觀象監), 동·남 관왕묘(關王廟) 관원 등의 포폄은 각각 그 관청의 영사(領事)와 제조당상(提調堂上)이 사고가 있어서 일시에 마련하지 못하고, 본조 및 소속 각 관청 관원 등의 이번 신미년 춘하등(春夏等) 이상의 포폄이 마감되지 못한 것이 많은데, 그 때의 관원이 모두 이미 교체되어 근거로 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니, 등급을 매기는 것을 모두 전례대로 논하지 않는 것이 어떠할지?” 하였는데, 전교에 “윤허한다” 하셨음.

신미(1751) 12월 18일

동래부사 신위가 12월 초9일에 성첩한 장달(狀達) 내용. 방금 바친 훈도 현태익과 별차 황대일(黃大逸) 등의 수본 내용에, “지난 초하루 동서 왜관 건물 여러 곳을 부산진 감색과 더불어 같이 적간하였더니 아직 손상된 곳은 없다”는 수본에 의거하여, 각별히 살펴 점검하라는 뜻으로 다시 더 신칙하였다는 연유의 일임.

임신(1752) 3월 20일

이번 3월 19일에 호조판서가 입시하였을 때, 호조판서 김상성(金尙星)이 입달(入達)하기를, “지금 현재 접위관이 불일간에 내려가야 하는데, 예단 인삼 한 조목을 한 번 품의하여 확정하지 않아서는 불가하므로 감히 입달합니다. 근래에 국가 기강이 점차 해이해지고 변방 금령이 준엄하지 아니하여, 동래 왜관에 잠상(潛商)의 무리들이 임의로 매매하는데도 끝내 기찰하여 체포하지 못하므로, 점차 두려워하거나 거리낌이 없어져, 심지어 피잡하는 인삼이 거의 단절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연고로 세삼(稅蔘)이 점차 고갈되어, 무릇 예단이 있으면 그 형편이 돈삼계(勳蔘契)에 책임지워 내게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1근의 인삼 가격이 70냥의 은화에 불과하여, 책정된 값이 이미 이러하므로 매양 조삼(造蔘)의 거칠고 잡된 폐단이 있습니다. 이 일은 참으로 매우 난처하여 달리 변통할 좋은 계책이 없습니다. 이전에 이 때문에 입시한 자리에서 아뢴 바가 있으나, 잠상(潛商)을 기찰하여 체포하는 한 조목을 준엄하게 신칙하지 않아서는 안되겠는데, 조정에서 70냥의 은화로 돈삼계의 계인(契人)에게 체삼(體蔘)을 내라고 책망하면, 지금 현재 강삼(江蔘)은 굳이 논할 것도 없고, 비록 북삼(北蔘) 중에 지극히 저열한 것이라도 또한 사들일 수가 없어서, 계인들의 병폐가 우려됩니다. 만약 가격을 올리면 경비가 장차 감당할 수 없을 터이니, 이 어찌 매우 걱정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신의 생각으로는 이전에 거행한 조목에 의거하여, 강계부에서 삼을 사들이는 한 조목을 한결같이 예전 사례대로 하여 매년 30근으로 정한다면, 내국(內局)의 인삼 9근, 정부(政府)의 인삼 2근을 계산하여 제한 뒤에, 그 남는 것으로 칙사(勅使)와 예단(禮單) 인삼의 값으로 지급하는 비용에 추이(推移)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제 예단 인삼으로 진배(進排)해야 할 것은, 이제 바야흐로 특별히 거행하도록 신칙하였는데, 역관이 가지고 가는 것은, 이전에 마련할 즈음에 또한 추후에 내려 보낸 사례가 있었

으니, 지금 이에 의거하여 거행함이 어떠할지?” 하였더니. 상감께서 “그대로 하라” 하셨음.

임신(1752) 4월 일

이번 4월 초2일에 묘소도감(墓所都監)의 도청(都廳)인 호조판서가 입시하고, 지사(知事) 홍계희가 추후에 같이 입시하였을 때, **호조판서 김상성이 입계하기를**, “예단 인삼 한 조목은 전에 입시한 자리에서 아된 것이 있는데, 이 일은 참으로 매우 난처합니다. 이는 한 관청의 근심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전에는 인삼이 나오는 길이 매우 천하였습시다. 그러므로 강산(江山)⁷⁹⁾의 품질이 극히 좋은 것도 매 전(錢: 돈-3.75 g)에 2냥의 값에 지나지 않았으나, 지금은 인삼 값이 날로 치솟아 거의 품질되어 희귀한 지경에 이르러, 나라 안의 사서인(士庶人)들은 그냥 두고 논하지 않더라도, 비록 재력이 있는 자가 무거운 값으로 사려고 구하여도 또한 얻지 못합니다. 이는 예단 인삼을 계속하기 어려운 폐단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도리로는 그 길을 조금 넓히지 않아서는 안되는데, 근래에 법의 기강이 날로 해이해지고 간사한 폐단이 날로 심하여, 무역하러 강계에 들어가는 상역(商譯)들이, 당초부터 신의 예조에 사유를 알리지 아니하고, 각자 동래 왜관에서 매매하는 것은, 오로지 관세(官稅)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후한 이익을 독점하기 때문입니다. 잠상(潛商)의 법률이 속대전(續大典)에 실려 있고, 국가에서 일체 막아서 금지하는 것은, 법의 뜻이 지나치게 엄중합니다. 들으니 근일에 좌포청(左捕廳)에서 충주 지방에서 잠상을 기찰하여 체포하였는데, 인삼의 수량이 거의 3-40근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는 포청에서 죄상을 끝까지 살핀 뒤에 조정에서 반드시 조처가 있을 것이나, 대저 거기에 잠상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피잡하는데 납세하는 일이 없는 것이고, 거기에 세금을 납입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무릇 왜인에게 예단 인삼을 보낼 일이 있으면, 본조에서 값을 지급하여 피폐하고 쇠잔한 돈삼계 사람들에게 마련해 내도록 책임지우는 것입니다. 비록 이번의 일로 말하더라도, 구 관백 및 도주가 죽은 뒤에 예단 인삼으로 봉납해야 할 것이 100여 근이 되고, 접위관이 내려갈 때의 예단 인삼 20근의 수량 또한 본조에서 값을 지급하였습시다. 그러므로 값을 지급한 전례를 가져다 상고하니, 매 근의 인삼 값이 70냥의

79) 원본의 ‘강산(江山)’ 두 글자는 강계 인삼을 가리키는 ‘강삼(江蔘)’을 잘못 적은 듯하나, 분명치 않으므로 원본 그대로 둔다.

은화에 불과하였습니다. 이렇게 적은 값으로는 결코 인삼 요구에 부응할 만큼 마련해낼 형편이 되지 않습니다. 신의 예조에서 북삼(北蔘) 8근을 사들여서 계인(契人)에게 내어주고 인삼 품질을 전과 같이 구차하게 충당하지 말도록 엄하게 신칙하였는데, 진배한 뒤에 신이 가져다 살펴보니, 이른바 인삼 품질이 참으로 극히 한심하여, 비록 전에 비하여 조금 낫다고는 하나, 참으로 거칠고 열악하여 풀이 아니라 하겠는지라, 대신이 이렇게 말을 해왔으므로 이제 바야흐로 고쳐 마련하여 내려 보낼 계획이나, 이 일은 국가의 이해에 관계됨이 있습니다. 만약 가격을 더하려고 한다면, 비록 북삼 1근의 값이라도 장차 200여 냥의 은화보다 더할 것이니, 앞으로의 경비를 지탱하기 어려움은 참으로 작은 일입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이제 폐단을 구하는 방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만약 인삼 상품의 권한이 본조에 있다면 그래도 한 푼이나마 폐단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 강계에 엄하게 신칙하여, 매년 인삼을 채취하는 실제 수량을 하나도 누락되는 것이 없게 하여, 본조의 황첩(黃帖)⁸⁰⁾이 아니면 감히 사사로이 각자 매매하지 못하게 하여, 본조에서 그 인삼 채취의 실제 수량을 안 다음에, 강삼(江蔘)을 사러 오는 자가 곧바로 하나로 통일된 세금을 바치고, 비록 동래 왜관에서 피집하는 자라도 공문을 받아가는데 지나지 않고 다시 세금을 납부하는 일이 없으면, 서울에서의 매매는 물론이고 왜관에서 피집하는 것도 한결같이 강계에서 나가게 한 연후에 임의로 각자 매매하게 하며, 잠상(潛商)에 있어서는 동래부에 명하여 각별히 살펴서 거기에 국법이 있음을 알게 한 연후에라야, 인삼이 유통되는 길이 넓히기를 기약하지 않아도 절로 넓게 될 것이고, 법의 기강 또한 시행되기를 기약하지 않아도 저절로 시행될 것입니다. 만약 인삼 값이 치솟아 오르는 것은, 이전에 조정에서 또한 참작하여 가격을 정한 일이 있었으니, 이는 조정에서 의논하여 잘 조처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감히 이렇게 우러러 진달(陳達)합니다.”라고 하였음. 상감께서 “상주한 것이 참으로 옳다. 그대로 하라. 대저 동래의 잠상(潛商)을 법으로 단속하는 것은 말단이고, 강계의 잠삼(潛蔘)을 엄금하는 것은 근본이다. 만약 그 근본을 엄하게 신칙하면, 비록 인삼 상인이라도 어찌 감히 법을 범하겠는가? 또한 먼저 근본을 신칙하고 뒤에 법으로 단속하는 것은, ‘백성이 모면하려고 하여 부끄러움이 없게 된다’는 말씀에는 부족한 점이 있지만, 그래도 법으로 다스리는 것을 첫 일로 삼는 것보다는 낫다. 이것은 왕정(王政)에서 우선해야 마땅한 것이다. 만약 황첩(黃帖)이 없이 사사로이 각자 매매하는 일이 있으면, 당해 부사는 금고의 법률로 시행하게 하고, 비변사에 명하여 절목을 만들어 계하하도록 분

80) 황첩(黃帖) : 조선후기 강계 인삼을 거래하던 인삼상인에게 발급하던 호조의 허가 증서.

부하되, 이는 한갓 교린(交隣)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나라 안의 효자(孝子)와 순손(順孫)을 위해서이다. 이 뒤로부터 서울에서는 탁지(度支) 신(臣)이, 지방에서는 도신(道臣)이 혹시라도 사정에 구애되어 알리지 아니하다가, 어사가 염탐할 때 잡히면 마땅히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니, 일체로 엄하게 신칙하라”고 하셨음.

임신(1752) 4월 초8일

동래부사 신위가 3월 30일에 성첩한 장달 내용. 이달 23일 축시(丑時)에 조선 배인지 왜선인지 분간되지 않는 배 2척이 물마루에서 등불을 달고 나온다고 황령산봉군 오정구(吳正九)가 진고하였고, 추가로 접한 부산첨사 박태정(朴泰烜)의 치통 사연은 한가지인데, 초탐하기 위해 개운포 만호 김두징(金斗徵)을 정하여 보낸다고 운운하였음. 같은 날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에, “방금 접한 초탐장의 치보에, ‘위의 분간되지 않은 배 2척은 과연 왜인의 작은 배로, 영솔하여 관소에 부쳤다’고 치보하였기에 이에 의거하여 즉시 훈도 현태익과 별차 황대일 등에게 명하여 문정하게 한 수본에, ‘도중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고, 제 1선 비선에 두왜 1인, 격왜 6명, 교대차 나온 별대관 1인, 하대왜 1인이 함께 타고 노인 및 은화 2,000냥을 실어가졌으며, 제2척 비선에 두왜 1인, 격왜 6명, 교대차 나온 소금도왜 1명이 함께 타고 노인 및 대차왜와 재판 관수왜 등의 사서를 가지고, 어제 저희들 비선 2척 및 큰 배 1척이 대마도에서 함께 발선하여, 바다 반에 이르지 못하여 바람이 시들하고 해가 저물어, 큰 배는 홀연 뒤 처쳐서 향한 곳을 모르고, 저희들 비선 2척은 밤을 새워 노를 저어 오늘 아침 근근이 도착 정박하였다고 운운하였으며, 1척이 소지한 노인은 그 전면에 「각도 각관 방어소」라 써 넣은 것은 격식에 어긋나므로 물리쳐 받지 아니하고, 고쳐 적어 바치라는 뜻으로 관수왜에게 책망하여 타일렀고, 1척의 비선 노인 1통만 받아서 올려 보낸다’고 수본하였기에, 이에 의거하여 동 노인 1통을 이전대로 보내며, 연유를 치통한다” 운운하였음. 같은 날 조선 배인지 왜선인지 분간되지 않는 배 1척이 물마루에서 나온다고 황령산봉군 오정구(吳烜九)가 진고하였고, 추가로 접한 부산첨사의 치통 내용의 사연은 한가지인데, “초탐하기 위하여 본진의 이선장 김윤흥(金潤興)을 정하여 보낸다”고 하였음. 24일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에, “방금 초탐장의 치보를 접하니, ‘분간되지 않은 배 1척은 과연 왜인의 큰 배로, 어제 근근이 영솔하여 관소에 부쳤다’고 하기에, 즉시 훈도 별차 등에게 명하여 문정하게 한 수본에, ‘왜인의 큰 배 1척이 어제 관소

에 도착 정박하였으나, 수문이 이미 닫혀서 문정하지 못하고, 오늘 아침에 가서 문정하였더니, 도중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고, 정묘조 제1선 송사의 수목선이 재차 건너왔는데, 격왜 15명, 교대차 나온 중금도왜 2인, 하대왜 3명이 함께 타고, 노인 및 생동 10,000근을 실어가지고 공작미를 실어가기 위해, 이달 22일 아침에 저희들의 배 1척과 비선 2척이 대마도에서 함께 발선하여, 바다의 반에 못미쳐서 비선 2척은 그대로 앞을 향해 나가고, 저희들의 배는 해가 저물고 바람이 시들한 가운데 돛줄이 끊어져 떨어져서 대마도로 되돌아가서 정박하였다가, 어제 아침 또 발선하여 근근이 도착 정박하였다 운운하였으며, 소지한 노인은 그 배가 재차 건너온 것이 규정 외이므로 물리쳐서 받지 아니하고, 속히 들여보내라는 뜻으로 관수왜에게 책망하여 타일렀다'는 수본에 의거하여 연유를 치통한다" 하였음. 위에 나온 배의 격식이 어긋난 노인은 속히 고쳐 적어 바치고, 규정 외의 배는 속히 들여보내는 일로 다시 임역에게 명하여 관수왜에게 책망하여 타이르게 하였고, 노인 1통은 감봉하여 해조로 올려 보냄. 이제 이번 왕세손(王世孫)이 홍서(薨逝)한 뒤로, 왜인에 대한 연향 절차는 본부에 이미 상고할 만한 전례가 없고, 지난 무신년(1728) 효장세자(孝章世子)의 상 때 졸곡 이전에 마침 관수왜의 다례가 해당되어 시사복(視事服)으로 읍(揖)만 행하고 서계를 받았으며, 다공(茶供)은 건물로 들여 주었고, 또 무술년(1718) 단의왕후(端懿王后)께서 빈저(嬪邸)에 계시면서 홍서하였을 때, 졸곡 전에 왜인이 진상(進上)을 바칠 무렵에 단지 숙배(肅拜)만 받고 기연(妓宴)은 베풀지 않았으며, 연공(宴供)은 모두 건물(乾物)로 들여 주었습니다. 지금 상제(喪制)에는 두 해의 사례를 참조하여 이미 높이고 줄이는 구별이 있고, 또한 대소 사신은 평상시 길복(吉服)을 입는다는 명령이 있사오나, 졸곡 이전에는 기악(妓樂)과 육상(肉床)의 예를 베풀지 아니하는 데 있어서는 다름이 없어야 마땅할 뿐 아니라, 저쪽 사람으로서 왜관 안에 머물러 있는 자 중에는 혹 이미 기한이 되었거나, 혹은 방금 나왔거나 각기 피차간의 사정에 구애되어 연향(宴享)과 다례(茶禮)를 모두 치르지 아니하여 먼 외국 사람이 지체하게 하는 한탄이 있으니, 무신년(1728)과 무술년(1718)에 이미 시행한 사례를 참작하여, 진상은 단지 숙배만 받고, 잔치 음식은 건물(乾物) 혹은 배상(排床)으로 들여 주고, 다례(茶禮)는 또한 서계(書契)만 받고 다공(茶供)은 건물로 들여줄 계획인데, 이와 같이 이미 시행한 사례에 의거하면 별로 곤장 품신할 일은 없으나, 일이 평상시의 사례와 다르기에, 거행하는 형편을 한편으로는 예조에 치보하고, 한편으로는 임역들에게 분부하여, 관수 재판왜 및 송사왜 등에게 알려 깨우치게 하였음. 방금 도부한 접위관(接慰官) 울산부사 남학종(南鶴宗)의 이문(移文) 내용에, "구 관백이 죽어

조위역관(弔慰譯官)을 호송하는 재판차왜 평여친(平如親)의 하선 다례를 이달 21일로 정하였으므로, 같은 날 연청(宴廳)으로 달려가서, 동 왜인이 바친 해조로 보내는 서계와 별폭 각 1통과 동래 부산으로 보내는 서계 1통과 별폭 2통을 전례대로 받아 보낸다” 하였으며, 다공(茶供)은 배상(排床)으로 들여 주었고, 동 서계는 감봉하여 해조로 바침. 신미년(1751) 만쇼잉 송사왜의 하선연은 이번 25일로 정하였고, 부특송사왜의 하선연은 이번 29일로 정하여, 신과 부산첨사 박대정(朴台正)이 함께 초량 객사로 가서, 동 송사왜 등에게서 전례대로 진상을 받고 숙배한 뒤에, 그대로 연청에 가서 읍(揖)만 행하고 잠시 접견하고 파하였고, 연공(宴供)은 배상으로 들여 주고 연유를 치달(馳達)하는 일.

임신(1752) 3월 일

비변사의 신목(申目)을 첨부하였으니 달하(達下)하시기를. 이 경상감사 조재호(趙載浩)⁸¹⁾의 장달(狀達)을 보면, 왜관을 수리하는 공사는 조정에서 그 물자와 인력이 부족하다고 감영과 통영의 기부전(記付錢)의 대출을 허락하고, 그것을 되돌려 갚는 방도로는 그것을 요리하여 이자를 취하게 하였는데, 이제 공전(公錢)을 받지 않아서는 불가하여 오직 임역에게 더 독촉하지만, 변통하는 도리가 없어서는 혹 저쪽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끼칠까 염려되기로, 임역들의 수분으로 인하여 동래부에서 전보(轉報)하기를, ‘공목으로 돈을 만들고, 풍송(風松)과 소금 굽는 일로 비변사에 품의하였는데, 이렇게 열거하여 따져서 장계로 알리라는 제사(題辭)가 있었으므로, 이에 의거하여 낱낱이 열거하여 치달(馳達)하였으니, 그 원하는 바대로 시행하는 일로 조정에 명하여 품의 명령하여 분부하여 달라고 하였는바, 동서 두 왜관을 수리하는 공사는 도합 1,140칸의 극히 방대한 공사이나, 물자와 지급한 것은 단지 공목(公木) 150동 뿐이고, 그 나머지 부족한 수량으로 공사(公私) 간에 대출하여 쓴 돈이 16,800냥인 바, 조정에서 이미 대출하여 사용하도록 허락하였고, 또 돈을 주조하게 하였으니, 다른 조건과는 달리 잘 경영하여 되갚으라는 뜻으로 복달(覆達)하여 분부하였는데, 지금에 이르러 무사히 공사를 마친 뒤에 또한 한결같이 그들에게 징수를 독촉하는 것은 불가하여, 변통할 방법을 생각하지 않아서는 안되며, 도신(道臣)이

81) 조재호(趙載浩, 1702-1762) : 풍양조씨로 자는 경대(景大), 호는 손재(損齋)이다. 영조 20년(1744) 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거쳐 경상도관찰사를 역임하고 이조판서와 우의정에 이르렀다.

청한 바 내용 가운데 공작목(公作木) 300동을 돈으로 만들어 이자를 취하는 일은 장계에 청한 대로 시행을 허락하고, 풍락목(風樂木)에 대하여는 봉산(封山)과 관련하여 정한 법이 매우 준엄하여 결코 이 때문에 길을 열어 폐단을 끼쳐서는 안되니 그냥 두고, 전후의 왜관 수리할 때의 전례를 가져다 상고하니, 저치미(儲置米)의 대출을 허락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닌데, 이번에도 전례대로 7,000석을 한정하여 잘라 주어서 본전을 세우고 남는 이자를 취하여, 본디 미곡은 가을을 기다려 되돌려 충당하되, 이 또한 대출한 수량을 모두 갚기에 부족하니, 위의 공목(公木)의 저치(儲置) 가운데 남는 돈을 한결같이 사축(私畜)의 사례대로 하여, 그것으로 도내의 소금이 생산되는 곳에서 소금을 사들이게 하며, 편의한 대로 요리하여 판매하게 하여, 그 값을 수량 만큼만 채우고 중지하게 하되, 이는 본도에서 관장하여 점점 신칙하여 잘 마무리하게 함이 마땅하니, 이렇게 해당 관청에 아울러 분부함이 어떠할지? 건륭 17년(1752) 3월 26일 좌부승지 이(李) 차지로 입달(入達)하여 그대로 인준함.

임신(1752) 4월 22일

동래부사 신위가 4월 14일에 장달한 내용. 이달 11일에 도부한 부산첨사 박태정의 치통 내용에, “방금 수영의 관문을 접하니, 수영 관할 하의 3포(浦)를 혁파한 뒤로, 좌도로 표류한 왜선이 관소로 돌아와 정박할 때, 초탐장과 수호장을 차출하여 정하는 한 조목은 지금 진작 정식을 고치지 않아서는 안되겠는데, 울산 이상의 좌도 연안은 서생첨사가 담당하고, 기장 경내는 동 현의 주사대장(舟師代將)이 담당하여 영솔 예인하고, 해운대에서부터 오륙도에 이르기까지는 포이포만호가 담당하며, 오륙도에서 관소까지는 본진의 이선장(二船將)과 두모포만호 등이 담당하여 윤번으로 돌아가며 영솔하여 부치되, 각기 그 경계에서 차례차례 교체하며, 교부하기 전에 포이포만호가 만약 사고가 있으면, 수영 관할 아래의 3선장과 4선장을 윤번으로 돌아가며 정하여 보내어 거행하는 일로 하여, 지금부터 시작하여 관문대로 거행하는 일”이라는 연유임.

이번 5월 23일에 호조와 예조의 판서, 관상감 제조가 상지관(相地官)을 데리고 와서 입시하였을 때, 호조판서 김상성이 입계하기를, “동래부의 예단 인삼한 조목은 참으로 앞으로 무궁한 폐단이 있을 것입니다. 신이 전후로 모신 자리에서 아뢴 것은 일개 호조의 일을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그러나 국가에서 먼

외국 사람을 접대하는 도리가 사소한 경비를 비교하여 계산하여서는 불가한데, 이번 접위관의 걸음에 예단 인삼으로 가져가야 할 수량이 또한 많습니다. 대신은 인삼 품질은 조금 고치지 않아서는 불가하다고 하여 문서가 오간 것이 있는데, 전례를 가져다 상고하니, 본조의 예단 인삼의 원래 정한 값은 매 1근에 은화 70냥인데, 이렇게 인삼이 나올 길이 끊어져 희귀한 때를 당하여 70냥의 은자로 어떻게 체삼(體蔘)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른바 물삼(物蔘)⁸²⁾은 곧 종전에 예단에 진배하던 것인데, 값이 이와 같아서는 그 형편이 공인들에게만 오로지 책임을 지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1근의 인삼 값을 100냥의 은화로 정하면, 본디 가격에 있어서 매 1근⁸³⁾마다 인삼 값이 증가되는 것이 30냥인데, 이 또한 경비에 크게 관계되는 것이나, 한편으로는 교린(交隣)의 의리를 중대하게 여기고, 한편으로는 공인(貢人)의 폐단을 우려한 것입니다. 어제 접위관의 장계 등본을 보니, 이번 예단 인삼은 필시 받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는데, 저쪽 사람들이 반드시 인삼 품질을 고쳐 정하고자 하는 것은, 대개 큰 이해 관계가 달려 있기 때문이나,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지척(支勅)⁸⁴⁾과 교린(交隣)에는 또한 경중이 있어서, 위로 지척에 부응하는 예단 인삼의 값은 60냥의 은화에 불과한데, 왜인에 대한 예단 인삼을 100냥으로 하는 것은, 그 또한 얼룩덜룩 일정하지 않음이 있으며, 이것도 오히려 부족하여 또 점퇴(點退)하려고 하는 것은 일의 체면에 있어서 천만 미안할 일이고, 즉시 나라 안의 인삼이 통용되는 길이 거의 끊어지는 지경이 될 것이니, 어떻게 그들의 소망에 부응하겠습니까? 이전에 예단 인삼이 거칠고 열악한 것은, 방금 가져가게 한 것과는 동일하게 비교할 수 없거니와, 이전에는 받다가 지금은 받지 않는 것은, 그 버릇이 더욱이 통탄스럽습니다. 이는 관계가 적지 아니하므로 감히 진달합니다.”라고 하였더니, 상감께서 “막중한 국가 공물의 경중을 따지는 것은 불가함에도 대신이 말한 바를 따라 허락한 것은, 그 또한 교린(交隣)과 공인(貢人)을 믿는 의도에서 나온 것인데, 또 이전대로 한다면 이는 공인들의 바람이 아니고, 또 높은 값을 이전에 보낸 바대로 한다면, 이는 또한 임역(任譯)들이 중간에서 농간을 부린 결과가 되니, 이 뒤로 또 만약 이렇게 하면 당해 공인과 임역들을 엄중하게 법으로 묶어 결단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엄하게 신칙함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82) 물삼(物蔘) : 체삼(體蔘)보다 등급이 낮은 중품의 인삼으로 인삼의 머리에 인삼의 잔뿌리인 미삼(尾蔘)을 모아 꽂아 넣은 것.

83) 원본에 ‘每行’이라 하였으나, 문맥으로 살펴보면 ‘行’은 ‘斤’의 오기(誤記)로 보인다.

84) 지척(支勅) : 중국에서 오는 사절인 칙사(勅使)를 지공(支供: 접대)하는 일.

임신(1752) 6월 일

예조단자. 동래부사가 추후로 올려 보낸 왜물(倭物) 진상(進上)을 전례대로 품질을 살펴서 안으로 들이는 일. 작년조 부특송사의 진상 호추 400근, 단목(丹木) 1,100근.

예조에서 입달(入達)하기를, “이 상언(上言)을 보면, 작년 6월분으로 열성조(列聖朝)의 어압(御押)을 구하여 모아서 드리는 일로 예조 당상에게 하교하셨고, 해당 예조에서는 또한 구하여 바치는 자에게 상을 준다는 뜻으로 서울과 지방에 포고하였기로, 그의 아버지인 당상역관 신 시대(始大)가 마음과 힘을 다 기울여서 인조대왕(仁祖大王)의 어압 한 본을 간신히 입수하여 예조에 봉납(封納)하여 을람(乙覽)을 하고는, 곧장 예조에 계하(啓下)하여 그것을 모사하게 하였는데, 그 뒤 역관 신 이택기(李澤基)가 또 효종(孝宗)의 어압을 바쳐 방금 본원에 명하여 상을 베풀라는 승전(承傳)을 받았으나, 그의 아버지는 아직까지 한결같이 보시는 은택을 입지 못했으니, 어찌 푸대접 받았다는 한탄이 없겠습니까? 그의 아버지 신 시대(始大)가 어압을 바친 공에 대하여 전례를 상고하여 상을 베풀어 특별히 성은을 입게 해 달라고 이렇게 호소하였는바, 시대가 마음과 힘을 다 기울여서 인조의 어압을 구입하여 바쳤고, 그 뒤에 이택기가 본원에 명하여 상을 베풀라는 승전의 혜택을 받았으니, 시대는 같은 공을 똑 같이 세운 사람인데 홀로 혜택을 입지 못했다고 억울하다 일컫는데, 을축년에 대신의 진달로 인하여, 무릇 역관의 상언은 한결같이 본원에 내려 처리하는 것으로 정식을 만들어 시행하니, 이제 와서 본조에서 마음대로 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니, 본원에 명하여 품의 조처하게 함이 어떠할지? 건륭 17년 초9일 동부승지신 임집(任璣) 차지로 입달하여 그대로 인준함.

6월 11일에 영상(領相)과 전 도승지(都承旨) 수정청(修正廳) 낭청(郎廳) 두 사람이 함께 입시하였을 때 영의정 김(金)이 계품하기를, “이것은 곧 접위관 이성경(李星慶)의 장계입니다. 재판차왜 등이 혼도 별차 등에게 말하기를. ‘귀국의 예단 인삼에 조삼(造蓼)을 사용하여, 도주가 에도에 문책을 당하여, 장차 대단히 일이 어긋날 지경이라, 도중(島中)의 대소 관원이 밤낮으로 걱정하고 두려워하는데, 조정에서 만약 어여빠여겨 보살피신 뒤에, 이전의 물품으로 증정해 주지 않는다면 죽음이 있을 따름이라, 실로 돌아가 보고할 길이 없습니다. 서울에서 파견된 접위관은 도에서 파견된 접위관과 체면이 절로 달라서, 필시

잡된 것을 섞어 만든 물품을 증정하지 않을 것이므로, 저희들이 밤낮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은 오직 여기에 있다'고 운운하였는데, 예단을 증정하는 것은 일의 체면이 얼마나 중대한 일인데, 차왜들이 감히 연향을 베풀기 전에 먼저 인삼 품질의 진위 여부를 묻고서는 결단코 받아가기 어렵다고 말하기에 이른 것은 천만 절통하므로, 신이 다시 혼도 별차를 보내어, '너희들이 만약 받으려는 생각이 없이 이렇게 패악하고 거만하게 한다면, 비록 여러 달을 머물더라도 결코 연향을 베풀어 서로 접대하기가 어렵다'는 뜻으로 잇달아 책망하고 신칙하였습니다마는, 다만 생각건대 이제 이번 3차례에 걸쳐 들여줄 인삼이 도합 14근 12냥인데, 6근은 해조에서 조품(造品:위조품)으로 포장하였고, 8근 12냥은 해조에서 동래부에 관문을 발송하여 동래부의 세삼(稅蔘) 및 상역(商譯) 등에게 있는 인삼을 융통하여 지급에 충당하게 하였는데, 근래 동래부의 세삼은 모두 진품으로 받고, 상역 등에게 있는 인삼 역시 진품이나, 왜인의 한정없는 욕심은 오로지 진품에 두고 있어서, 전후로 8송사의 예단을 물리쳤으니, 해조에서 포장한 것이 이미 풀로 붙여서 만든 물품이라, 이것을 들여 주면 점퇴당하여서 나라를 욕되게 할 우려가 없지 아니하고, 진품으로 들여 주는 것 역시 후일의 폐단에 관계됩니다. 저쪽 사람들이 한 번 점퇴한 이후로 인삼 품질을 변통하는 한 조목은 여러 번 연품(筵稟)을 거쳤기에 아직 미안하지만, 청컨대 조정에 명하여 변통할 방도를 상의 확정하여 한 가지로 처분해 주시되, 이전에는 동래부의 1년 세삼(稅蔘)으로 예단의 수량을 감당하기에 충분하였으므로, 일찍이 서로 다투는 폐단이 없었는데, 근래에 와서는 동래부의 세삼이 지극히 적어서, 그러므로 부족한 수량을 돈삼계에서 가져다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인삼 가격이 폭등하여 돈삼계에서 받는 바 가격이 3분의 1이 되기에다 부족하므로, 오로지 가루를 풀로 붙여서 인삼 형태로 만들지만, 조금만 오래 되면 껍질과 속이 모두 검은 색을 띠니, 결코 인삼이 가까운 것이 아닙니다. 조삼(造蔘)은 곧 우리나라에서는 일률(一律:사형)에 해당하는데, 다른 나라에 대하여 도리어 이를 사용하려 하나, 저쪽 사람들이 인삼에 두는 관심의 무게는 우리나라에 비할 바가 아니어서, 받아 갈 리가 만무하니, 만약 조삼은 선악을 헤아리지 아니하고 모두 받아가야 한다고 말한다면, 우리가 스스로 성신(誠信)을 잃는 것이라, 어찌 오로지 저쪽 사람들의 패악하고 거만함을 책망할 수 있겠습니까? 접위관이 내려갈 때 이것 때문에 깊이 근심하여 여러 차례 신을 만나 말하였고, 신은 평소 조품(造品)이 이렇게 형편 없는 것을 심하게 여겼으므로, 호판(戶判)에게 말하기를, '서울에서 파견되는 접위관의 예단은 역관이 가져가는 예단 인삼과 다르니, 이번에는 반드시 모름지기 미리 마련하여 거칠고 열악함을

따지지 말고 반드시 진삼(眞蔘)을 보내라'고 하였더니, 호판이 별도로 이런 인삼 몇 근을 구입하여 왔는데, 비록 매우 거칠고 열악하나 인삼은 진삼(眞蔘)이라, 진삼을 주는 길을 열어서는 불가하여 그 인삼을 돈삼계에 내어 주고 이전 보다 각별히 잘 만들라고 하고는, 신이 임시로 가져다 보았더니 조금도 나은 바가 없어서, 이미 틀림없이 이렇게 나라를 욕되게 하는 우려가 있을 줄 알았습니다. 올해에는 강삼절목(江蔘節目)을 변통하는 계하(啓下)가 내려 잡상의 길을 엄하게 방지하였고, 인삼 가격 또한 정식을 거듭 밝혔기에, 하삼(下蔘)의 매근 값이 은화 120냥에 지나지 않는데, 지금 이후로 만약 바다 건너 가는 사행이 없다면, 비록 동래부의 세삼만 사용하고, 간혹 지부(地部:호조)에서 특별히 구입하더라도 족히 충당하여 보낼 수 있으니, 돈삼계의 조삼은 다시 가져다 사용하지 않는 것이 합당하며, 접위관이 품신하여 청한 바로는, 예단의 원래 수량 14근 12냥 가운데 반이 넘는 수량을 동래부에서 세금으로 거둔 진삼으로 지급하였고, 반이 되지 않는 수량을 조삼으로 들여 주는 것은 사리에 얼룩덜룩하여, 고운 것과 추한 것이 그대로 분간될 터라 결코 성립될 수 없으니, 해조의 관문 대로 동래부의 세삼 및 상역 들에게 있는 것으로 모두 수량을 채워 들여 주는 일로 분부함이 어떠할지?" 하였는데, 상감께서 "그대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번 6월 12일에 어영대장(御營大將)과 예조 당상, 편집청(編輯廳) 당상과 낭청이 입시하였을 때 **전교에 이르기를**, "어제 대신의 상주(上奏)를 들으니 그 의도가 '예로부터 비록 조삼(造蔘)이 있어서 간혹 미삼(尾蔘:인삼의 잔뿌리)을 붙여 넣은 것은 있었으나, 납을 넣은 것은 곧 일률(一律)로 금하였는데, 어찌 이와 같이 심한지' 라고 하였고, 또한 지난번에 호조판서가 상주한 것과 더불어 의아함이 없지 아니하므로, 돈삼계(獫蔘契)의 공인(貢人)이 진배한 인삼을 가져다 살펴보니, 하나하나 잡물로 채워 넣어서 하나도 순수한 것이 없다. 이는 한갓 가짜로만 만든 것이 아니라, 비록 눈먼 사람이라도 속이기가 어렵다. 한심하기가 이처럼 심한 것이 없다. 그 중에 더욱 형편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 이런 형편없는 인삼을 예단에 진배하여 사용하여 교린(交隣)의 신의가 이로 인하여 쓸어버린 듯 없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이다. 인삼 값을 더 지출해 달라는 것이 공인들의 뜻인데, 이렇게 형편없는 인삼으로 방자하게 진배하니, 예사일이야 적당한 방법으로 속일 수 있더라도, 이와 같은 인삼으로 어떻게 속이겠는가? 이는 눈에 법이 보이지 않는 것이요, 기강을 돌아보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두 번째이다. 국법을 무시하는 것에 대하여는 예사로 조치하여서

는 안된다. 이것은 납을 끼워 넣어 채우는 것과 다르지만, 일률(一律)을 시행하여도 아마 지나치지 않을 것인데, 이런 사람은 해조에 명하여 준엄하게 1차 심문을 시행하고, 햇수를 한정하지 않고 섬에 유배하며, 값을 더 지출하는 명령은 시행하지 말며, 이 뒤로 또 다시 만약 이렇게 방자하면 일률을 시행함이 마땅하니, 이렇게 준엄하게 특별히 해조에 신칙하고, 이 뒤로 이렇게 형편없는 삼은 일절 예단 인삼으로 보내지 말라”고 하셨음.

이번 6월 13일에 균역청(均役廳) 낭청이 입시하였을 때 전교에 이르기를, “오늘 또 함삼(咸蔘)을 살펴보니, 그 가운데도 또한 조삼이 있는데, 미삼(尾蔘)을 붙여 넣었으니, 이는 그래도 조삼이라 할 만하다. 이 인삼으로 보면 돈삼계의 조삼은 더욱 형편없다. 세신(細辛)으로 자루[櫛]를 만들어, 인삼 살점이라고는 하나도 없는데다 인삼 껍데기를 붙였으니 납을 넣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더구나 세신은 사재(瀉材: 기운을 내리는 약재)인데 보(補:기운을 보충함)하는 인삼을 조작하다니! 옛날에 양호(羊祜)는 일개 장수였는데도 정성이 적국의 신임을 받았다. 그러므로 ‘어찌 양숙자(羊叔子)가 사람의 약에 독을 넣을 리가 있겠는가?’라고 육항(陸抗)이 말하였다.⁸⁵⁾ 당당한 국가로서 저쪽 사람들과 교린하는데, 조그마한 공인(貢人)들이 이렇게 허튼 일을 만들어 교린에 있어서 미덥지 못하게 하였다. 옛날 송(宋)나라 태조는 사나운 병졸들을 징계하려고 그들에게 군률(軍律)을 함께 시행하였는데, 이 일이 어찌 일시의 사나운 병졸들과 견주겠는가? 이것은 모양은 비록 인삼이라도 실은 풀을 묶어 인삼 형태로 만든 것인데, 또 높은 값을 받으려고 조정을 모욕하고 국가를 엄중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교린에 형편없는 짓을 하였으니, 한 계의 인원에게 모두 일률을 시행하여, 간사한 백성으로 하여금 못된 생각을 징계하게 하고, 이웃 나라로 하여금 나라의 법령이 있음을 알게 하여야 마땅하며, 이번 처분이 또한 십분 참작한 것인데도, 해조에서 아직도 거행하지 않는 것은 한심한 일이라, 해조의 당상을 엄중하게 추고하여, 재계하는 날짜에 구애되지 말고 아침을 기다려 즉시 거행하고, 대개 경중을 막론하고 조삼은 곧 금령인데도, 해조의 당상이 비록 ‘예로부터 수용한 인삼이라 이것을 버린 뒤에 어떤 것을 사용하겠느냐’고 한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조삼이란 명분은 연석(筵席)에 올린 것이 아니었다.

85) 진(晉)나라의 장수 양호(羊祜)와 오(吳)나라의 장수 육항(陸抗)은 국경에서 서로 대치하였는데, 육항이 술을 보내자 양호가 의심하지 않고 마셨고, 육항이 병이 들어 양호에게 약을 구하자, 양호가 보내온 약을 육항이 의심하지 않고 달여 마시며, 위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있다.

당초 생각으로는 허다한 인삼을 진품으로 하기 어려워서, 간혹 근 수를 채우는 데 보태는 미삼을 조삼이라 일컫는 줄로 여겼으나, 이번에 보니 형편없기가 막심한 것을 지금 처음 보겠고, 이런 인삼을 탁지(度支:호조) 대신이 이미 높은 값으로 엄하게 신척하기를 청하지 아니하고, 감히 사용하도록 허락할 것을 청하였으니, 그것은 잘못에 관계된다. 전 호조판서 김상성(金尙星)을 엄중하게 추고하며, 만든 것이 비록 형편없어서 그것이 조작한 것임을 엄폐하기 어려우나, 그 만든 것이 매우 교묘하니 이는 결코 공인들이 만든 것이 아니고, 필시 제조한 사람이 있을 것이니, 본디 공인들에게 물어서 처음으로 제조한 사람을 행수공인(行首貢人)의 사례에 의거하여 엄중하게 심문하고 섬으로 유배하는 일로 해조에 분부하라.” 하셨습니다.

전교에 이르기를, “피집한 호삼 두세 근을 들이라” 하였습니다. 전교에 이르기를, “비변사에 분부하여 돈삼계 계인의 인삼을 모조리 봉인하여 들이게 하고, 피집인삼을 보려고 하니, 두세 냇을 동래부사와 접위관에게 명하여 표로 봉인하여 올려 보내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전교에 이르기를, “통신사 사행 때 수역과 훈도를 불러와서 대령하라. 어영대장 또한 와서 기다리게 하라. 어제 예단 인삼을 들이되, 만약 대신이 상주한 것과 다름이 있거나, 원래 인삼을 다 들인 뒤에 만약 어제 들인 것과 같지 않으면, 공인 또한 죄를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번 6월 21일에 예조판서와 편집청 당상과 낭청이 입시하였을 때, 이번 묘향(廟享)의 의식을 연습할 때, 악작(樂作) 및 본원의 습악(習樂)의 취재(取材)를 전례대로 하는 일로 탐전(榻前:왕좌)에서 하교하셨습니다.

이번 7월 18일에 약방(藥房)에서 입진(入診)하여 우상(右相)과 호판(戶判)이 함께 입시하였을 때, **호조판서 조영국(趙榮國)⁸⁶⁾이 입계하기를,** “북영(北營)에 이미 삼세를 관장하도록 명령하였는데, 이제 또 인삼을 무역하는 일이 있으니, 반드시 본조의 산원이 있는 다음에라야 담당하여 거행할 수 있으니, 본영의 화사군관(畫師軍官)을 짐짓 보내지 말고 대신으로 산원을 차출함이 어떠할지?” 하였는데, 상감께서 “그대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86) 조영국(趙榮國, 1698-1760) : 양주조씨로 자는 군경(君慶) 호는 월호(月湖)이다. 영조 6년(1730) 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거쳐 도승지와 호조, 형조, 이조의 판서를 역임하였다.

같은 날 입시하였을 때, **호조판서 조영국이 입계(入啓)하기를**, “앞으로 왜관의 예단에 사용될 인삼이 거의 150근에 이르러, 때맞추어 마련하지 않아서는 안되는데, 지금 현재 일의 형편이 돈삼계 사람들에게 책망하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장차 본조에서 가을의 채취 시기를 기다려서 강삼(江蔘)을 사가지고 와야 할 형편인데, 인삼 무역 한 가지 일을 만약 본관(本官)에서 때맞춰 하지 않으면, 실로 기일에 맞추어 수량대로 사들일 수가 없어서, 새로 반포한 절목에 이미 장차 채취할 인삼의 수효를 사실대로 본부에 수분하게 하면 한 경내에 통틀어 채취할 실제 수량을 본부에서 앓아서 알 수 있다 하였으니, 그 가운데서 참작하여 사들이는 것은 또한 어려운 일이 아니고, 값의 본전은 신의 호조에서 구획하여 들여 주되, 한결같이 정묘년(1747) 통신사의 예단 인삼을 사들인 사례에 의거하여 본부에서 주관하게 하여, 인삼 80근을 새로 정한 가격대로 사들여서 올려 보내고, 도신이 특별히 점검 신칙하라는 뜻으로 관서의 도신 및 강계부사에게 분부함이 어떠할지?” 하였는데, 상감께서 “진달한 것이 옳으니 그대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번 7월 18일에 약방에서 입진하여 우상과 호판이 함께 입시하였을 때, **호조판서 조영국이 입계하기를**, “목전에 상인들이 왜관에 피집한 인삼은 물삼이나 북삼 중에 하급의 저열한 것으로써 들여 주는데 불과한데, 십수 년 전에 어떤 한 상역(商譯)이 그 값의 은화를 끌어내기 위하여, 만약 10근을 피집하면 반드시 상삼(上蔘) 1근을 채워서 지급하였는데, 상역들이 전에 없는 사례를 만들어낸 것은 참으로 이미 매우 통탄스럽지만, 상삼을 들여 주는 길이 오히려 낭자한 지경에 이르지 않는었으나, 통신사의 예단 인삼을 가려서 보낸 이후로 저쪽 사람들의 안목이 점차 높아져서, 근년에 와서는 각 군문(軍門)에서 구리[銅]를 사들일 즈음에, 강계 인삼이 모두 피집하는 가운데 들어가서, 저쪽 사람들은 앓아서 백 배의 이익을 받고, 우리나라로서는 약용의 인삼마저도 거의 종자가 끊어지게 되었으니, 어찌 한심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저쪽 사람들은 이미 상삼이 이문이 매우 두터운 줄 알고는, 반드시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것을 모조리 싸담아서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여, 그러므로 요즈음 조종하여 점퇴(點退)하는 폐단은 오로지 여기에서 말미암는 것입니다. 만약 엄격하게 막지 아니하면 뒷날의 무궁한 폐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 이후로 상삼을 피집하는 한 조목을 금지하는 일로 엄격하게 정식을 밝히고, 비록 한 조각이라도 만약 혹시 들여 주는 가운데 들어갔다가 적발되는 일이 있으면, 범한 자는 엄중한 법률로 처벌하고, 훈도 별차 또한 일체로 엄격하게 조처함이

어떠할지”라고 하였고, 이천보(李天輔)⁸⁷⁾는 말하기를, “신칙한 뒤로 만약 금령을 범하는 자가 있으면 일률(一律)을 사용함이 마땅합니다.”라고 하였는데, 상감께서 “상삼을 피집하는 것은 매우 참으로 놀랍다. 진달한 바가 참으로 옳다. 범한 자는 일률을 시행하고, 훈도 별차는 섬으로 정배(定配)하며, 동래부사가 만약 금지하여 풀지 아니하면 정배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같은 날 입시하였을 때 **호조판서 조영국이 입계하기를**, “지난 번 조정에서 강삼(江蔘)을 변통한 절목 가운데 강계의 사상(私商)에게 이미 곧바로 본부에 세를 납부하게 하였으니, 동래에서 세를 거두는 규정은 저절로 혁파되는 것으로 귀결되었는데, 북삼의 세금을 거두는 한 조목은 이미 거론하는 가운데 들어가지 않았으니, 이 또한 변통하여 구분 조처하는 도리가 있어야 마땅하며, 또한 강계의 하삼(下蔘)은 지금 비록 사온다 하더라도, 아마 예단 인삼을 들여주는 수량에 충당하기에는 부족할 듯하니, 마땅히 연전 통신사의 예단 인삼의 사례에 의거하여 북삼을 겸하여 사용하되, 북도에는 이전부터 비록 인삼을 금지하는 명령이 있었으나, 북도의 주민들이 경계를 넘어 채취하는 것은 모두 원주(原州) 한쪽 지방이고, 조정에서는 이미 사군(四郡)의 인삼 채취를 금하지 아니하니, 삼수(三水)와 갑산(甲山)에만 금령을 시행할 필요가 없고, 비록 근래의 사례로 말하더라도, 통신사의 예단 인삼은 조정에서 이미 북삼을 사들이는 것을 허락하였고, 왜관에서 피집하는 것 또한 금지하는 바가 없으니, 이것으로 구애되는 것은 부당할 듯합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함경 감영은 삼수 갑산의 중요한 길목에 위치하고 있어서, 인삼 상인이 가고 오는 것을 만약 관장하여 검찰한다면 필시 소홀하여 놓칠 염려가 없으니, 이 뒤로는 채상(採商)이나 송상(松商) 및 본도의 사상(私商)의 무리를 막론하고, 무릇 북삼을 사들이는 것과 관계되는 사람으로서 함흥 방면의 길을 지나가는 자는, 한결같이 강계의 사례와 같이 먼저 10분의 1의 세를 본도 감영에 납입한 뒤에 공문을 작성 지급하여 그 왕래를 허락하고, 만약 본영을 경과하지 아니하고 몰래 사들여서 가는 자는, 한결같이 잠상(潛商)의 법률에 의거하여 전량을 속공(屬公:몰수)한 뒤에 법대로 송치한다면, 북삼(北蔘)의 유통 경로 또한 구별하여 조처할 도리가 있고, 일도 매우 편하고 좋습니다. 신은 성상(聖上)의 전교(傳敎)에 의거하여 영상(領相)에게 가서 의논하였더니, 영상의 의도는 인삼을 금지하는 명령을 지금 와서 융통성 없이 지킬 필요는 없고, 이대로 하더라도 무방할 것 같다고 운운

87) 이천보(李天輔, 1698-1761) : 연안이씨로 자는 의숙(宜叔) 호는 진암(晉庵)이다. 영조 15년(1739) 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거쳐 영의정에 이르렀다.

하였으며, 우상(右相)은 지금 막 입시하였으니 아래에 두루 물어 조처함이 어떠할지?”라고 하였음. 이천보(李天輔)가 말하기를, “북관은 본디 인삼을 금지하는 곳인데, 이제 와서 세를 거두는 것은 금령을 설치한 본디 뜻이 아니고, 국경을 범하여 넘는 폐단을 더욱이 금단할 수가 없으니, 신의 뜻으로는 당초에 자못 어렵겠지만, 조정에서 이미 북삼을 금지하지 못한다면 공사(公私)의 용도를 모두 한결같이 허락하되, 유독 세를 거두는 한 절도에 있어서 예전 법을 융통성 없이 지키는 것은 또한 의리가 없으니, 호판이 진달한 바가 방해될 것이 없을 듯하다”고 하였는데, 상감께서 “대신과 중신이 진달한 바가 옳다. 그대로 하라”고 하셨음.

같은 날 입시하였을 때, **호조판서 조영국이 입제한 계목(啓目)에**, “이제 인삼 값이 이렇게 귀하게 치솟은 것은 오로지 동래 왜관에서의 잠상에 쫓겨버린 듯이 금령에 해이된 데 말미암은 것이니, 예전에 잠상들은 그래도 법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서 혹시라도 사람들이 알까 두려워하였는데, 근년에 와서는 사람 사람마다 잠상을 하지 않는 이가 없어서 낭자하게 매매하여 되돌아보며 꺼리는 바가 없으니, 어찌 한심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만약 온 나라의 삼정(蔘政)을 변통하려면, 동래부의 잠상을 엄중하게 금하는 것보다 앞설 것은 없는데, 다만 동래부에서 기찰(讞察:염탐)하는 정사가 극히 허술하여, 포교 한 사람과 병졸 한 사람이 십수정(十樹亭)과 구억실(九億室) 두 곳에서 살피서 지키는 데 불과하다고 하니, 만약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그 간사함과 허위를 방지하여 금하겠습니까? 들으니 왜관 근처의 동쪽 부산 두모포에서 서쪽으로 목장이 있는데, 이 한 줄기 한로(旱路:육로)는 실로 각처의 통행이 몰려드는 중요한 도로로서, 잠상이 왕래함에는 이 길을 거치지 아니하면 달리 갈 곳이 없다고 합니다. 이에 만약 본부에서 영리한 장교(將校) 대여섯 사람에게 그 금료를 후하게 하여, 밤낮으로 지키면서 사정을 기찰하게 하여, 만약 잡히는 바가 있으면 한결같이 속대전의 잠상집착률(潛商執捉律)에 의거하여 그 인삼 상품을 일미(一米)에 한하여 상급으로 준다면, 저들이 필시 마음을 다하여 방금(防禁)할 것이고, 또한 상인들이 피집하는 물건 및 왜인이 내어주는 은화에는 이미 정해진 수량이 있어서, 본부의 문서에 뚜렷하게 기재되어 있으니, 본부에서 출입하는 수량을 상세히 대조하여, 장부에 기록한 이외의 명분 없이 몰래 각자 거래하는 은화가 없게 하고, 기찰하여 범하는 자를 잡아 바치는 사람에게 인삼 상품과 똑같이 일미의 상급으로 주게 하되, 장교들이 혹시라도 동정 방종하였다가 다른 일로 인하여 적발되면 한결같이 잠상률에 의거하여 죄를 규정한다는 일로 정

식을 만들어 거둬 밝히면, 인삼 상인이 몰래 교통하는 길을 거의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였고, 이천보는 말하기를, “호관의 진달한 바가 옳습니다. 인삼 상인을 통렬하게 금지하는 것은 곧 인삼 행정 제일의 시급한 업무입니다. 황산역(黃山驛)도 잠상이 오가는 요로인데, 본 역의 찰방(察訪)이 북관 고산의 사례에 의거하여, 시종 가운데 풍력(風力:추진력)이 있는 사람을 가려서 보내고, 그에게 직접 장계를 올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그로 하여금 더욱 엄하게 금지하게 하되, 만약 전과 같이 잠상의 폐단이 있으면 찰방 또한 엄중하게 죄를 정하도록 함이 어떠할지?”라고 하였는데, 조영국은 말하기를, “황산찰방을 만약 이전에 시종을 역임한 사람으로 가려서 보내고, 대간(臺諫)의 권한을 겸하게 하여, 김해와 양산 등 사이 길의 잠상의 무리를 더욱 엄하게 기찰하게 한다면, 필시 보탬이 되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대신이 진달한 바가 참으로 옳습니다.”라고 하였음. 상감께서는 “진달한 바가 옳다. 그대로 하라. 동래부사가 만약 금지하지 못하면 정배(定配)의 법률을 시행하라.”고 하셨음.

접위관과 동래부사가 연명으로 보고한 일로, 방금 도부한 비변사의 관문 내용에 계하의 전교에 이르기를, “비변사에 분부하여 돈삼계 사람의 인삼을 모조리 감봉(監封)하여 들이고, 피집한 인삼을 보려고 하니, 두세 냇을 동래부사와 접위관에게 명하여 봉함하여 들여서 올려 보내라”는 일로 전교하시어, 전교의 사연을 받들어 살펴서 시행하라는 관문이 있었기에, 본부에 있는 상역(商譯)들의 피집 인삼 가운데, 강삼(江蔘) 2냥과 북삼(北蔘) 2냥을 관문 사연에 의거하여 올려 보내는데, 두 상품의 안쪽 포장은 각기 감봉하고 바깥 포장은 도봉(都封:함쳐 함께 봉인함)하여 도장을 찍고, 본부 장교 출신 강익주(姜翊周)에게 봉수(逢授)하여 마패(馬牌)를 지급하고, 그로 하여금 밤낮 없이 본사(本司:비변사)에 바쳐서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게 하였으며, 전교 가운데 비변사에 분부하여 돈삼계의 인삼을 모조리 감봉하여 들이라는 전교는, 문세(文勢)로 살펴보건대 아마도 돈삼계의 서울에 있는 인삼을 가리킨 것이지, 접위관의 행중(行中)에 가지고 내려온 인삼을 가리킨 것이 아닌 듯한데, 접위관의 행중에 가져온 것 역시 돈삼계의 인삼이나, 이번에 별조(別造)한 것은 혹 이것을 가리켜 하교하신 것인지, 문자 지식이 천박하고 짧아서 봉행하는데 헛갈리며, 이미 다례(茶禮)에 사용할 인삼인지 또렷이 알지 못하나, 이제 연례(宴禮)가 박두한 때를 당하여 모든 수량을 올려 보내기에는 또한 어려움이 있고, 전연 보내지 않아도 또한 뜻밖에 들이라는 명이 있을까 염려되어, 접위관이 가져온 인삼 가운데 1근을 또한 감봉하여 올려 보내는데, 전교의 사연 의도가 만약 이것을 가리키

는 것이 아니라면, 이 인삼은 함께 상감께 올리지 말도록 함이 아마도 합당할 것이며, 돈삼계 사람들이 혹 죄를 입을까 염려하여, 돈삼계 가운데 지금 남은 저축이 없다고 일컫더라도, 세전(歲前)에 본부에서 되돌려 올려 보낸 8근의 삼을 이미 차비역관 유도홍(劉道弘)에게 봉수하여, 그로 하여금 해당 돈삼계에 되돌려보내도록 하였으니, 이것을 감봉하여 들이면 무방할 듯한데, 비변사에서 아울러 헤아려서 살펴 조처하시며, 대차왜가 왜관에 머무는 날짜 기한이 7월 초순 사이에 만료되어, 날짜 기한이 이미 만료된 뒤로는 각자 배를 타고 돌아 들어가야 하나, 이 일을 처분하기 전에는 예단을 들여 주기 어려운 형편이고, 예단을 지급하기 전에는 차왜가 또한 이 일로 지체할 것인 바, 기한이 넘도록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전례에 없을 뿐 아니라, 차왜는 이러한 곡절을 모르고 지금 바야흐로 날마다 재촉하며 빨리 떠나기를 간절히 요구하고 있으니, 하나 같이 지연하면 곤란한 일이 생길 우려가 없지 아니하며, 만약 대단하게 촉박하여 재촉하는 지경이 되면 실로 늦도록 회달(回達)을 기다릴 형편이 아닌지라, 장차 편의대로 미봉하여 연례를 치르는 것을 면치 못할 것이니, 지금 당장 일의 형편으로는 매우 시급하므로, 이와 같이 매보(枚報)하오니, 비변사에서 구획하여 즉시 품의하여 지휘하시어 때맞추어 거행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였음.

비변사의 제사 내용: 올려 보낸 강삼과 북삼 각 2냥은 감봉한 포장 그대로 승정원에 보내어 이미 대궐에 들어갔고, 돈삼계의 삼은 곧 서울에서 감봉하여 들이라는 전교이므로, 위에서 그것을 하람(下覽)하여 처분이 극도로 엄중하였으니, 이제 다시 입람(入覽)할 일이 없으므로 되돌려 내려 보내거니와, 전일에 접위관의 장계를 복주(覆奏)하여 관문을 보낸 사연은, 이미 동래부의 보고 장계의 제사(題辭) 가운데 자세히 말하였으니, 함께 보면 될 것이기에, 이제 첩상을 하지 아니하는 일임.

경상도 동래부사가 첩보하는 일. 방금 도부한 비변사의 관문에 의거하여 두 가지 인삼을 올려 보내는 연유는 이미 연명의 장계에 상세히 말하였거니와, 이에 앞서 호조에서 관문을 내려 지휘하기를, 본부에 남아 있는 세삼 및 상역 등에게 있는 삼을 우선 접위관의 예단의 부족한 수량에 충당하여 지급하는 것은, 참으로 임시 급하여 추이(推移)하는 의도이로되, 천박한 소견으로 헤아려 보건대 이는 목전의 비록 고식적인 계책이나, 장래에 이르러서는 필시 계속 이어가기가 어려운 폐단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저 근래에 상인들이 피집하는 것은 당초에 물삼(物蔘)이 아니라 모두 강삼이나 북삼의 좋은 진품이라, 예단 인삼과 비교하여 진짜와 가짜가 현격하게 구별되는데, 이제 교활한 왜인들

이 가짜를 물리치고 진품을 요구하는 날을 당하여, 어찌 이것으로 쉽사리 형적을 드러내어서야 되겠습니까? 혹 접위관의 예단이 점퇴되어 체면을 손상하는 것이 우려된다 하더라도, 뒤의 우환을 생각하지 하고 뒤섞어 충당하여 들어 주면, 설혹 접위관의 행사는 폐단없이 일을 마치더라도, 각 송사의 차비로 전후에 걸쳐 내려올 인삼을 일체 물리치게 되면, 장차 어떻게 조처하겠습니까? 모두 국가의 일이로되 이 뒤로 일이 막히면 일의 체면이 뒤죽박죽이 될 뿐 아니라, 일이 어그러지고 손상되는 것은 같고 다름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형편이 더욱 어렵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서 접위관에 장계로 품신한 일 또한 의견이 마침 부합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이번 피집 인삼을 감봉하여 올리라는 비변사의 관문은 이미 전교 내의 사연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성상의 의도가 계신 곳을 비록 감히 알지 못하지만, 혹 이로 인하여 변통하여 처분하는 단서가 있다면, 전말을 모조리 진술하여 조정에서 임시로 품의 재정하기를 기대하지 않아서는 불가함이 있으니, 바라건대 본사(本事)가 탈이 나고 곤란한 일이 생겨서 조처하기 어렵게 되면, 그것을 감당하는 것은 참으로 접위관 일행에서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재판이 왜관에 머물러 일의 두서가 괴로운데, 오늘 변고에 응하여 조처하는 도리로는 한 가지 대책에 지나지 않습니다. 만약 조삼(造蓼)이 폐단을 만들어 다른 나라 사람이 억울하다 일컫는다면, 외국 사람을 회유하는 의리에 있어서 그들과 더불어 서로 시비를 따지는 것이 불가하니, 진료(眞料:진짜 약재)를 아울러 지급하여 그들로 하여금 감사함을 알게 하는 것이 마땅하고, 만약 그들이 비록 억울하다 일컫더라도 국가의 힘이 지탱하기 어렵고, 후일을 염려하는 도리에 있어서 그들의 소원에 곡진하게 부응하는 것이 불가하다면, 또한 짐짓 서로 버티면서 그들의 동정을 기다리는 것이 합당할 따름입니다. 이제 이에 하나로 귀결된 대책을 강구하지 아니하고, 혹은 진품으로 혹은 가짜로 때에 따라 품질을 달리한다면, 저들의 끝없는 욕심만 날뛰게 하기에 족하고, 그들이 취사하며 조종하는 버릇을 더욱 길러주게 될 것이니, 이 어찌 깊이 근심하고 길이 염려할 부분이 아니겠으며, 만약 접위관의 체면이 중대하여 어떤 인삼이든지 헤아리지 아니하고 짐짓 미봉하면 된다고 한다면, 이 또한 크게 우려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야흐로 도주가 죽었으므로 전례에 따라 특별히 증정해야 할 인삼이 있고, 경사를 알리기 위해 도서(圖書)를 가진 두 대차왜가 또 장차 차례로 나오면, 모두 접위관이 접대할 것인데, 거기에 지급해야 할 인삼이 도합 거의 100여 근이나 됩니다. 이 또한 진품으로 그 수량을 모조리 갖추어 지급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일의 형편을 살펴보면 처음과 끝을 헤아리고 지금의 일과 뒷일을 되돌아보아서, 좋은 계책을 구획한 다음에라야

비로소 진품과 가품을 바꿀지 그대로 할지를 의논할 수 있습니다. 미혹된 저의 생각으로는, 아무 송사의 아무 예단의 인삼이든지 모두 고친다면 그만이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혹 피차를 나누어 진품과 가품의 두 갈래로 만든다면, 싸우는 사단을 끝내는 데 조금도 도움이 없을 것이고, 끝내 시행할 수 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외람되이 변방의 책임을 맡고 있으면서 비록 일에 임하여 잘 조치하지 못하였으니, 이미 자신이 날마다 왜인의 실정에 접하면서 뒷날의 계획을 깊이 우려하여 이렇게 첩보하오니, 심분 참작하여 종을 대로 품의 조치하여, 외국과의 일이 무사히 미봉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변사의 제사 내용 : 이달 11일에 연중(筵中)에서 접위관의 장계를 복주(覆奏)하면서, 조삼을 사용하지 말고 해조의 관문에 의거하여 동래부의 세삼 및 상역들에게 있는 것을 모조리 수량에 채워서 들여 주라는 뜻으로 이미 확정하여 관문을 발송하여 분부하였는데, 이제 이번 보고 장계는 아마도 계하 관문을 보기 전에 발송한 것인 듯 하거니와, 상감께서 돈삼계 사람들의 조삼을 보신 뒤로 성상의 전교가 지엄하여, 동 계의 사람을 엄하게 형벌하여 섬으로 유배하고, 또 탁지(度支:호조)를 추고하라는 명이 있었고, 이 뒤로 이런 형편없는 삼은 일절 예단 인삼으로 보내지 말라는 일로 또한 하교가 있었으니, 이는 비록 관문을 보내어 분부하지는 않았으나 본부에서 혹 들었을 것이다. 이 뒤로는 돈삼계의 조삼은 결단코 다시는 예단에 감봉하여 넣지 않는 것은, 앞의 관문에 의거하여 즉시 거행함이 마땅한 일임.

임신(1752) 8월 초2일

동래부사 신위가 8월 초10일에 성첩한 장달 내용. 지난달 27일에 도부한 부산첨사 박태정의 치통에, “올해 2월 초9일에 나왔던 정묘조 제11선에 격왜 20명, 올해 2월 28일에 나왔던 중금도왜 1인, 올해 2월 초3일에 나왔던 소금도왜 1명, 올해 6월 초10일에 나왔던 정묘조 제12선에 격왜 20명, 올해 2월 28일에 나왔던 중금도왜 1인, 올해 2월 초9일에 나왔던 소금도왜 1명, 올해 3월 23일에 나왔던 하대왜 2명 등이 나누어 타고, 각기 공작미를 실어가지고, 도합 2척이 돌아 들어가기 위해 수문 밖에서 바람을 기다린다는 훈도 현태익과 별차 황대일 등의 수본에 의거하여, 수호하기 위해 두모포 만호 안세택(安世宅)을 정하여 보내고 연유를 치통한다” 하였음. 28일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에 “어

제 수문 밖에서 바람을 기다리던 왜선 2척이 오늘 출발하여 돌아 들어갔다는 수호장의 치보 및 구봉봉군의 진고에 의거하여 연유를 치통한다” 하였음. 이달 초일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에, “올해 6월 28일에 나왔던 비선에 두왜 1인, 격왜 7명, 올해 2월 28일에 나왔던 중금도왜 1인 등이 함께 타고, 관수 재판왜 등의 사서를 가지고 오늘 곧바로 관소에서 발선하여 돌아 들어갔다는 훈도 별차 등의 수본 및 봉군의 진고에 의거하여 연유를 치통” 운운하였음. 초8일에 조선배인지 왜선인지 분간되지 않는 배 1척이 물마루에서 모습을 드러내어 머무는 모습이 있었는데, 머물던 곳에서부터 등불을 매달고 관소로 전진하였으며, 조선 배인지 왜선인지 분간되지 않는 배 2척이 또 물마루에서 또한 등불을 매달고 관소로 향한다고 황령산봉군 윤거작지(尹巨作只)가 진고하였으며, 추후에 도부한 부산첨사의 치통의 사연은 한가지인데, “초탐하기 위해 본진의 이선장 김윤흥(金潤興)을 정하여 보내고 연유를 치통한다” 하였음. 초9일 동 첨사의 치통에, “방금 초탐장의 치보를 접하니, 위의 분간되지 않은 배 3척은 과연 왜인의 큰 배 1척과 작은 배 2척인데, 오늘 차례로 영솔하여 관소에 부쳤다고 하였고, 일시에 도부한 훈도 별차 등의 수본에, ‘동 왜선 3척은 밤이 깊은 뒤에 관소에 도착 정박하여 수문이 이미 닫혀 문정하지 못하고, 오늘 아침 가서 문정하였더니, 도중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고, 제1척은 정묘조 제17선에 격왜 20명, 교대차 나온 별금도왜 2인, 중금도왜 1명이 함께 타고, 노인 및 어유 2통을 가지고 공작미를 실어가기 위해 나왔고, 제2선 비선에 두왜 1인, 격왜 6명, 교대차 나온 별대관왜 1인, 하대왜 1명이 함께 타고 노인 및 별대관왜의 짐을 가졌으며, 제3선 비선에 두왜 1인, 격왜 6명, 교대차 나온 중금도왜 1인이 함께 타고, 노인 및 관수 재판왜 등의 사서를 가지고 나왔는데, 동 왜인들의 말이, 저희들 큰 배는 어제 대마도에서 발선하여 겨우 물마루에 이르러 바람 형세가 시들하고 미약한데다가 또한 해가 저물어, 바다 가운데서 머물다가 밤이 깊은 뒤에 겨우 도착 정박하였다고 하였으며, 비선 2척은 어제 발선하여 밤이 깊은 뒤에 큰 배 1척과 더불어 차례로 도착 정박하였다 운운하였으며, 3척의 배가 소지한 노인 3통은 받아서 올려보낸다’는 수본에 의거하여, 동 노인 3통을 전례대로 보내며 연유를 치통한다” 하였음. 위에 나온 왜선 3척이 소지한 노인에는 ‘보력(普曆) 원년(元年)’이라 적었기로, 전례대로 장계로 품신하고 본부에 짐짓 놓아 두었다가 본부를 기다려 조처하겠으며, 방금 바친 훈도 별차 등의 수본 내용에, “지난 초하루에 동서 왜관 여러 곳을 부산진 검색과 더불어 같이 적간하였더니, 짐짓 손상된 곳은 없다”는 수본에 의거하여, 각별히 점검하여 살피라는 뜻으로 특별히 더 신칙하여 연유를 치달하는 일임.

임신(1752) 9월 25일

동래부사 신위가 9월 15일에 성첩한 장달 내용. 지난달 초9일에 왜인의 큰 배 1척이 나와서 우도의 지세포 경내로 표류하여, 각 포의 변장(邊將) 등이 차례차례로 영솔하여 관소로 돌아올 때, 지세포 만호가 영솔 예인하지 않은 곡절을 다대포에서 전로(前路)에 물어 조사한 것은, 그쪽의 통지를 기다려 다시 치통할 계획이라는 연유는 전에 이미 알렸는데, 이달 초8일에 도부한 부산첨사 박태정의 치통에, “방금 가덕첨사의 전통에 의거한 다대포첨사의 치통을 접하니, ‘지세포에 표류하여 정박한 왜인의 큰 배 1척이 그곳에서 출발할 때, 동 포구의 만호가 영솔 예인하지 않은 곡절을 전로에 물어 조사하였는데, 방금 도부한 장목포 별장의 조사 보고에, 동 왜선이 당초 출발할 때 지세포만호가 과연 영솔 예인하였는데, 본 포구의 변정 담당 색리가 교부장(交付狀)의 등본을 만듦에 즈음에 지세포 만호가 영솔 예인한 한 조목을 누락하여 쓰지 아니한 소치라, 동 색리를 각별히 엄중하에 다스려 후일을 징계하고, 조사 보고하는 일로 전통’하였기에, 이에 의거하여 연유를 치통한다” 하였음. 12일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올해 8월 초9일에 나왔던 재판차왜가 탄 배가 재차 건넌 배에 격왜 40명, 올해 2월 28일에 나왔던 중금도왜 3인, 올해 3월 초7일에 나왔던 중금도왜 1인, 소금도왜 1명, 올해 3월 22일에 나왔던 소금도왜 1인 등이 함께 타고, 공작미를 실어가지고 오늘 출발하여 돌아 들어간다고 하여 개운포 만호 김두징(金斗徵)을 정하여 보냈더니, 동 왜선 1척이 오늘 출발하여 돌아 들어갔다는 동 수호장의 치보 및 구봉봉군의 진고에 의거하여 연유를 치통한다” 하였음. 지세포만호가 왜선을 영솔 예인한 한 조목을 누락하여 적지 아니하였던 장목포 변정 담당 색리는 가덕진에서 각별히 징계하여 다스리라는 뜻으로 관문을 보내어 신칙하였음. 각 도의 이번 추조(秋操:가을 조련)는 전례대로 거행한다는 뜻으로 이미 계하하였기로, 본부의 추조도 지난 해의 전례에 의거하여 기일에 앞서 택일하여 다음 달 초7일에 시행할 계획이며, 올해 정월 16일에 나왔던 재판차왜 평여친(平如親)은, 본디 나이가 늙은 사람으로 병을 얻어 신음하다가 오늘 죽었다는 훈도 별차 등의 수본에 의거하여, 연유를 치통하였는데, 등록을 가져다가 살펴보니 갑진년(1724) 8월 공작미의 기한이 다하여 물리자고 청한 재판차왜 등창방(藤昌方)이 죽자, 다음날 쌀과 콩과 잡물을 모두 감하여 제하고, 죽기 전에 이미 서계를 바쳤기에, 진상 숙매는 순치 계사년(1653)에 차왜 굴성정(橋成正)이 죽었을 때의 사례에 의거하여 그 봉진(封進)이 대행한 뒤에, 물건은 임역에게 명하여 수량을 대조해서 받아내고, 연수(宴需)는

건물로 들어 주었으며, 해조에서의 증정하는 물건 역시 들어 주었고, 부의(賻儀) 물품은 도신(道臣)에게 명하여 짐작하여 마련하되, 사군목(射軍木) 15필과 왜료(倭料)의 남은 쌀 7섬, 장지(壯紙) 10권, 유둔(油屯) 2번(番) 등의 물건을 들어 주었는데, 이제 이번 재판차왜가 죽은 뒤에 진상숙배 등의 절차는 비록 전례에 의거하여 그 봉진이 대행하게 하였으나, 도해역관(渡海譯官)의 호행(護行) 차왜 등에 대한 절도에 있어서는 이미 인용할 만한 전례가 없기로, 이 한 조목을 관수왜에게 상세히 정탐하여 수본하라는 뜻으로 훈도 별차 등에게 전령하여 분부하였더니, 방금 바친 훈도 별차 등의 수본에, “엎드려 전령을 받들고는 즉시 가서 관수왜를 보고 말하기를, ‘재판이 이미 죽었으니 진상숙배는 봉진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는 것은 이미 여러 차례 전례가 있으니 이제 이에 의거함이 마땅하나, 도해역관의 호행 차왜에 대하여는 이미 근거로 삼을 만한 전례가 없으니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였더니, 동 왜인이 답하기를 ‘도해역관의 호행 재판이 죽은 것은 전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바가 아니어서, 급히 비선을 보내어 도중에 통보하였는데, 그 회답을 기다린 뒤에 호행에 대한 한 조목을 또렷하게 상세히 고할 수 있겠다’고 하였으니, 저들의 말이 이미 이러하니, 짐짓 그들의 비선에 오고가기를 기다렸다가 추가로 수본할 계획이라” 하였기에, 그 회보를 기다려서 정탐한 수본을 다시 신문(申聞)할 계획이며, 재판차왜에 대한 부의 물품을 지급하는 한 조목은, 해조에 명하여 사례를 상고하여 품의 조처할 일.

예조의 신목(申目)을 첨부하였으니 달하(達下)하시기를. 이 동래부사 신위의 장달을 보면, 재판차왜 평여친이 병으로 죽어서 부의 물품을 지급하는 한 조목을 해조에 명하여 전례를 상고하여 품의 조처해 달라 하였는데, 등록을 가져다 상고하니 계사년(1713)과 갑진년(1724) 재판차왜의 죽었을 때 부의 물품은, 무명배와 쌀과 장지와 유둔 등의 물건을 본도에 명하여 짐작하여 마련하여 지급한 사례가 있는데, 이제 이번 차왜의 죽음에 부의 물품은 도신에게 명하여 사례를 상고하여 마련해서 지급하게 함이 마땅하니, 이렇게 분부함이 어떠할지? 건륭 17년(1752) 9월 27일 우부승지 신 이이장(李彝章)⁸⁸⁾ 차지로 입달하여 그대로 인준함.

88) 이이장(李彝章, 1708-1764) : 한산이씨로 자는 군칙(君則)이며 호는 수남(水南)이다. 영조 11년(1735) 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거쳐 승지를 역임하고, 영조 29년(1753) 4월 동래부사로 부임하였다가 그 해 10월 경상도관찰사로 옮겨갔다.

임신(1752) 10월 22일

동래부사 신위가 10월 11일에 성첩한 장달 내용. 우도 가덕 정내의 정거리 앞바다로 옮겨 정박한 왜인의 큰 배 2척은, 그 배가 관소로 돌아와 정박한 뒤에 옥포의 유진장(留鎭將)을 만호(萬戶)로 적은 곡절은, 그 조사 답변을 기다려 추가로 신문할 계획이라는 연유는 이미 치달(馳達)하였는데, 이달 초1일에 도부한 부산첨사 박태정의 치통에, “이제 이번 정거리 앞바다로 옮겨 정박한 왜인의 큰 배 2척이 당초 옥포로 표류하여 정박하였을 때, 이번 초3일에 그대로 같은 곳에 머문다는 일로 치통 가운데, 옥포 유진장을 만호로 써 넣어 보고한 곡절을 전로(前路)에 물어 조사하였더니, 방금 접한 다대포첨사의 치통에, ‘동왜선 2척이 그대로 같은 곳에 머문다는 일의 전통 초본을 상고하니, 각 영의 치보(馳報) 가운데 모두 옥포 유진장이라 등보(騰報)하였으나, 귀 진으로 보낸 치통 가운데 만호라고 잘못 적어 보낸 것은 오서(誤書)인지라, 본진의 색리를 치죄하여 후일을 징계하였고, 올해 9월 25일에 나왔던 정묘조 2특송사 1호가 재차 건너온 배에 격왜 40명, 경오년(1750) 3월 18일에 나왔던 공대관왜 2인, 올해 4월 22일에 나왔던 중금도왜 1인, 올해 5월 초5일에 나왔던 중금도왜 1인, 올해 5월 20일에 나왔던 하대왜 2명 등이 함께 타고, 공작미를 싣고서 돌아 들어가기 위하여 당일 수문 밖에서 바람을 기다린다는 훈도 현태익과 별차 황대일 등의 수본에 의거하여, 수호하기 위하여 두모포만호 안세택을 정하여 보내고 연유를 치통한다” 하였음. 초9일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방금 다대포첨사의 치통을 접하니, 정거리 앞바다로 옮겨 정박한 왜인의 큰 배 2척은 초6일에서 초7일까지 바람 형세가 불순하여 그대로 같은 곳에 머물다가, 초1일에 출발하여 가덕진 이선장 박만웅(朴萬雄)이 영솔하여 와서 본진 앞바다에 예인 정박하였으므로, 호송장으로 본진 이선장 송의규(宋義奎)를 정하여 동왜선 2척을 폐단없이 밤을 지낸 뒤, 오늘 영솔하여 관소에 부쳤다는 치보에 의하여, 즉시 훈도 별차 등에게 명하여 문정하게 한 수본 내용에, ‘도중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고, 제1척은 정묘조 3특송사 2호가 재차 건너온 배에 격왜 30명, 중금도왜 3인, 소금도왜 7명, 공하대왜 2명 등이 함께 타고 노인 및 술 2통을 가졌으며, 제2척은 정묘조 3특송사 1호가 재차 건너온 배에 격왜 40명, 교대차 나온 중금도왜 2인, 소금도왜 1명, 통사왜 1인, 별하대왜 2명 등이 함께 타고, 노인 및 술 2통을 싣고 모두 공작미를 실어가기 위해 지난 달 30일 아침에 대마도에서 발선하여, 물마루에 이르러 바람 형세가 불순하여 같은 날 표류하여 옥포에 도착하였다가, 이제 비로소 돌아와 정박하였다고 운운하였으며, 소지한

노인은 그 배가 재차 건너온 것이 규정 외이므로 물리쳐 받지 아니하고, 속히 들여보내라는 뜻으로 관수왜에게 책망하여 타일렀고, 수문 밖에서 바람을 기다리던 왜인의 큰 배 1척은 당일에 출발하여 돌아 들어갔다는 수호장 두모포만호의 치보 및 구봉봉군의 진고에 의거하여 연유를 치통한다” 하였음. 위에 나왔던 규정 외의 배는 속히 들여보내는 일로 다시 임역에게 명하여 관수왜에게 책망하여 타이르게 하였고, 옥포 유진당을 만호로 잘못 적어 보고한 다대포의 변정 색리는 해당 포구에서 이미 죄를 다스렸으나, 변방 정보를 중시하는 도리에 있어서 그냥 두어서는 불가하기로, 본부에서 다시 더 엄하게 다스려 후일을 징계하고 연유를 아울러 치달하는 일임.

임신(1752) 11월 초8일

동래부사 신위가 10월 26일에 성첩한 장달. 이달 23일에 도부한 부산첨사 박태정의 치통에, “올해 10월 초1일에 나왔던 정묘조 2특송사 2호선이 재차 건너온 배에 격왜 30명, 올해 4월 초3일에 나왔던 소금도왜 7명, 올해 5월 20일에 나왔던 중금도왜 1인, 올해 5월 23일에 나왔던 중금도왜 2인, 올해 6월 초7일에 나왔던 별금도왜 1인, 올해 6월 초10일에 나왔던 소금도왜 1명 등이 함께 타고, 공작미를 실어가지고 돌아 들어가기 위해 오늘 수문 밖에서 바람을 기다린다는 훈도 현상로(玄尙老)와 별차 황대일 등의 수본에 의거하여, 수호하기 위해 본진 이선장 백시위(白時偉)를 정하여 보내고 연유를 치통 운운” 하였음. 24일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에, “수문 밖에서 바람을 기다리던 왜인의 큰 배 1척이 당일에 출발하여 돌아 들어갔다는 수호장의 치보 및 구봉봉군이 진고하였으며, 올해 9월 26일에 나왔던 비선에 두왜 1인, 격왜 6명, 올해 5월 20일에 나왔던 중금도왜 1인 등이 함께 타고 관수 재판차왜 등의 사서를 가지고, 올해 10월 17일에 나왔던 비선에 두왜 1인, 격왜 6명, 올해 6월 초1일에 나왔던 중금도왜 1인이 함께 타고 별대관왜의 짐을 가지고, 도합 2척이 오늘 곧바로 관소에서 출발하여 돌아 들어갔다는 훈도 별차 등의 수본 및 봉군의 진고에 의거하여 연유를 치통한다” 하였음. 재판차왜 평여친(平如親)의 진상 숙배를 계사년(1713)과 갑진년(1734)의 전례에 의거하여 그 봉진왜(封進倭)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다는 뜻은 전에 이미 치달하였거니와, 접위관 울산부사에게 이문(移文)하여 청해 와서 그로 하여금 행사를 치르게 하였는데, 방금 도부한 동 접위관 남학종(南鶴宗)이 이문하기를, “고(故) 재판차왜(裁判差倭)의 진상 숙배를 이

달 21일에 그 봉진왜로 하여금 대항하게 한 뒤에, 연청으로 가서 잠시 서로 접촉하고는 파하였고, 연수(宴需)는 그쪽의 원대로 건물로 들어 주었다"고 하였음. 고성(固城)의 표류민을 영솔하여 온 차왜 등직청(藤直淸)의 접위관 양산군수 김음(金霽)의 이첩 내용에, "동 차왜 원역 등에 대한 하선 다례를 이달 24일에 베풀기로 조정되었으므로, 같은 날 연청에 가서 전례대로 행사를 베풀 뒤에 바친 예조로 보내는 서계와 별폭 각 1통과 동래 부산으로 보내는 서계와 별폭 2통, 도합 서계 2통과 별폭 3통을 올려 보내며 이첩한다"고 하였음. 위의 고성 표류민을 영솔하여 온 차왜가 바친 서계에 연호를 보력(寶曆)으로 적었으므로, 앞의 장계대로 짐짓 본부에 머물러 두고 처분을 기다린다는 연유의 일임.

임신(1752) 11월 18일

동래부사 신위가 11월 초4일에 성첩한 장달 내용. 지난 달 30일에 도부한 부산첨사 박태정의 치통에, "올해 9월 30일에 나왔던 정묘조 3특송사 2호가 재차 건너온 배에 격왜 30명, 올해 6월 초9일에 나왔던 중금도왜 1인, 올해 6월 초 10일에 나왔던 중금도왜 1인, 올해 6월 28일에 나왔던 소금도왜 1명 등이 함께 타고, 공작미를 실어가지고 돌아 들어가기 위해 어제 수문 밖에서 바람을 기다린다는 훈도 현상로와 별차 황대일 등의 수본에 의거하여, 수호하기 위하여 개운포만호 김두징을 정하여 보냈는데, 동 왜인의 큰 배 1척이 오늘 발선하여 돌아 들어갔다는 수호장의 치보 및 구봉봉군의 진고에 의거하여 연유를 치통한다" 하였음. 이달 초1일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에 "방금 접한 간비오 봉군의 진고에 의거한 좌수영의 관문 내용에, '어제 조선 배인지 왜선인지 분간되지 않는 배 2척이 물마루에서 표류하여 좌도로 향하는 듯하다'고 하였기에, 문정하기 위해 별차 황대일을 정하여 보냈고, 추가로 기장현감의 치통 및 좌수영에서 차출하여 보낸 초탐장 포이포만호 조홍벽(趙弘璧)의 치보를 접하니, '지난달 30일에 나왔던 분간되지 않는 배 2척이 가고 머문 것을 밤새워 관측하였더니, 당일 1척은 기장현 경내 두모포 앞바다에서 물마루로 향하는데 안력(眼力)이 미치는 곳에 머물고 있기로, 주사대장 신익(辛翼)을 시켜서 초탐장과 함께 작은 배를 많이 배정하여 예인하여 들이기 위해서 바다로 나갔고, 1척은 짐짓 관측되지 않았다'고 하였으며, 일시에 도부한 별차의 수본 내용에, '당일 기장 무지포로 달려갔더니 원래 왜선이 표류하여 정박한 사실이 없으므로, 짐짓 머무

른다'고 수본하였기에, 이에 의거하여 연유를 치통 운운" 하였음. 초2일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에, "방금 기장현감의 치통을 접하니, '물마루 주변에 머물던 배 1척은, 초1일 그곳에서 바람을 타고 돛을 올려 좌도로 향하여 기장현의 경계를 지나서 울산 경계로 향하므로, 영술 예인하기 위해 바다로 나갔던 작은 배들이 뒤쫓아 나가지 못하였고, 관측되지 않았던 1척은 끝내 모습을 나타낸 일이 없다'는 일이었으며, 일시에 도부한 서생첨사 상대창(尙大昌)의 치보 내용에, '기장과 울산 두 곳의 경계 사이에 분간되지 않는 배 2척이 머물고 있으므로, 상세히 탐지하기 위하여 초1일에 아이포(阿爾浦)로 달려갔더니, 동 분간되지 않는 배가 돛을 걸고 나살리(羅芝里) 앞바다에 머물고 있기로, 작은 배를 많이 징발하여 예인하여 들이니 과연 왜인의 큰 배인데, 같은 날 본진 경내의 군령포(軍令浦) 앞바다에 정박하여 수호한다'고 하였기에 연유를 치통한다" 하였음. 같은 날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에, "방금 초탐장 포이포만호의 치보를 접하니, '물마루에 머물던 배를 초탐하고 예인하여 들이기 위해 바다로 나갔더니, 초1일에 과연 왜인의 큰 배와 상봉하여 영술 예인하여, 같은 날 군령포의 왜선이 정박한 곳으로 뒤따라 가서 그대로 수호하고, 별차가 소통사 2명을 데리고 와서 문정한 뒤에 돌아가고, 소통사 1명은 왜선을 영술하여 가기 위해 뒤처졌으며, 문정한 사연은 별차의 수본에 있다'고 하였으며, 방금 도부한 별차의 수본에, '초1일에 울산의 군령포로 달려갔더니, 왜인의 큰 배 1척이 표류하여 정박하였기에 문정하였더니, 정묘조 3특송사 2호가 재차 건너온 배에 격왜 30명, 중금도왜 2인, 소금도왜 1명 등이 함께 타고, 공작미를 실어가지고 지난달 30일 아침에 관소에서 발선하여 곧바로 대마도로 향하다가, 물마루를 지나 바람 형세가 모두 거슬러 바다 가운데서 머물며 밤을 지낸 뒤에, 초1일에 표류하여 이곳에 도착하였다고 운운하므로, 2척의 배가 일시에 머문 곡절을 상세히 탐문하였더니, 동 왜인들의 말이, 저희들 1척만 관소에서 출발하여 이틀 낮과 하룻밤을 머무르는 사이에 우리나라 배를 보지 못했다고 하였고, 관소로 돌아와 정박한 뒤에 다시 문정할 계획이며, 그대로 임소(任所)로 돌아간다'고 하였고, 일시에 도부한 서생첨사의 치보 내용에, '향한 곳을 모르는 배를 초탐하기 위하여 좌도 경내로 달려갔다'고 하였기에 연유를 치통한다" 하였음. 초3일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에, "방금 울산부 삼공형(三公兄)의 문장(文狀)을 접하니, '본부의 부사는 표류민을 영술하여 온 왜인의 접위관으로 동래까지 출행하였고, 본부의 주사대장 박봉우(朴鳳羽)와 향소(鄉所) 서달형(徐達亨) 등이 군령포로 달려가서 정박하고 있는 왜인의 큰 배를 함께 보살핀다'고 하였고, 서생진 유진장 정여백(鄭汝百)의 치보에는 '동 포구에 정박한 왜인의 큰 배는, 초2일에

출발하여 초탐장 포이포만호 및 소통사 등이 함께 영술 예인하여, 같은 날 기장 주사대장에게 교부하였다'고 하였고, 뒤따라 도부한 서생첨사의 치보에, '좌도로 표류하여 향한 분간되지 않는 배 1척을 초탐하기 위하여 초2일에 울산항도(項島)로 달려가서 관할 각 진 사람들을 불러 물었더니, 원래 표류하여 지나간 어떤 배도 없었다고 하기로, 다시 탐지하기 위해 전진한다'고 치보하였으며, 별차가 문정한 사연을 본다면 표류한 왜인들의 말에 이미 다른 왜선이 함께 표류한 사실이 없다고 하였으니, 한결같이 초탐하는 것은 그 폐단이 없지 아니하므로 아울러 돌아오라는 뜻으로 수영에 보고하였고, 일시에 도부한 초탐장 포이포만호의 치보 및 기장현감의 치통에는, '울산 군령포에 정박한 왜인의 큰 배 1척이 초2일에 기장현 경내에 도착하였으므로, 주사대장을 시켜 영술 예인하다가 바람이 거슬르고 해가 저물어 같은 날 항곶포(項串浦) 앞바다로 옮겨 정박한 뒤에, 현감이 같은 곳으로 달려가서 양식과 반찬과 땔감과 물을 전례대로 들여 주고 수호하고 있다'고 하였기에 연유를 치통한다" 하였음. 초4일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에, "항곶포에 정박한 왜인의 큰 배 1척은 폐단없이 밤을 지낸 뒤, 어제 출발하여 초탐장 및 주사대장 등이 함께 영술 예인하다가, 바람과 물이 모두 거슬러 무지포로 옮겨 정박하였다는 기장현감의 치통 및 초탐장 포이포만호가 치통하였기에, 연유를 치통한다" 하였음. 방금 도부한 접위관 울산부사 남학종의 이문에, "김해 표류민을 영술하여 온 차왜 등지명(藤之明) 원역 등의 하선 다례를 이달 초2일로 정하여, 저희 울산부에서 연청(宴廳)으로 달려가서 전례대로 행사를 베푼 뒤에, 동 표류 차왜가 바친 예조로 보내는 서계와 별폭 각 1통과 동래 부산으로 보내는 서계 1통과 별폭 2통을 받아 보낸다"다고 하였음. 기장 무지포에 정박한 왜인의 큰 배 1척은, 그 배가 관소로 돌아와 정박하기를 기다려 문정하여 다시 신문할 계획이며, 좌도로 표류하여 향한 분간되지 않는 배 1척은, 지금까지 5일이 되도록 끝내 우리나라 경내에 정박한 보고가 없으니, 그날 간비오 봉군 등이 지나가는 어선이나 상선을 오인하여 진고한 소치라, 동 봉군 등은 소속된 곳에서 죄를 다스려 후일을 징계함이 마땅함. 방금 바친 훈도 별차 등의 수본 내용에, "지난 초하루 동서 왜관 여러 곳을 부산진 감색과 더불어 같이 적간하였더니 짐짓 손상된 곳은 없다"는 수본에 의거하여, 각별히 점검하여 살피라는 뜻으로 다시 더 신칙하였음. 왜선이 소지하여 온 앞뒤의 서계와 노인 가운데 보력(寶曆) 연호를 적은 것은 전례에 의하여 받아들이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한결같이 머물러 두고 조정에서 다시 분부하기를 기다린다는 뜻으로 전에 이미 장달하였는데, 방금 도부한 비변사의 회하(回下) 관문 내용에, '이는 자기가 돌려 바치는 문서가 아

니어서 물리쳐 받지 않을 필요가 없으니 전례대로 올려 보내라'는 일로 관문이 있었기로 전후에 받아서 머물러 둔 왜선의 노인 6통과 비선의 노인 7통, 표류민이 타고 온 배의 노인 2통 도합 15통 및 고성과 김해의 표류민 등을 영솔하여 온 차왜가 바친 예조로 보내는 서계와 별폭 각 2통, 동래 부산으로 보낸 서계 2통과 별폭 4통, 대마도 도주의 지위를 계승하여 이어받은 경사를 고하는 차왜가 가져 온 예조 및 동래 부산으로 보내는 사서의 등본 1통, 재판차왜가 가져온 예조 및 동래 부산으로 보내는 서계 등본 1통 등을 감봉하여 해조로 올려 보내며, 재판차왜가 가져온 서계 등본 가운데 선조(宣祖)의 초휘(初諱)를 범한 곳이 있는데, 정휘(正諱)와 달라서 피휘할 필요가 없다고 조정에서 일찍이 받도록 허락하였으므로, 동 서계 등본을 이제 전례대로 올려 보내며, 동 차왜가 도해역관(渡海譯官)의 호행(護行)이 매우 시급하여 돌아갈 기일을 재촉하는데, 회답 서계를 받기 전에는 돌아 들어갈 수 없다고 운운하였다고 임역 등이 와서 고하니, 해조에서의 회답 서계 및 동래 부산의 회답 서계의 초고를 아울러 밤낮 없이 내려 보내는 일로 해조에 분부하실 일.

계유(1753) 정월 초9일

통제사 구선행(具善行)이 지난 임신년(1752) 12월 23일에 성첩한 장달 내용. 당일 도부한 이달 20일에 성첩한 지세포만호 김세형(金世珩)의 치보에, “당일 본 포구의 놀일곶(訥逸串) 망군(望軍) 정병(正兵) 박중삼(朴仲三)이 진고하기를, ‘오늘 조선 배인지 왜선인지 분간되지 않는 배 3척이 호운도(呼雲島) 앞바다에서 나오다가, 2척은 바다 가운데 뒤퍼지고 1척은 표류하여 본 포구 경내의 지삼도(只森島)로 향한다’고 하기에, 탐지하기 위하여 만호가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다”고 하였고, 추가로 도부한 21일에 성첩한 동 만호의 치보에, “조선 배인지 왜선인지 분간되지 않는 배 3척이 나온다는 연유 및 본 포구로 표류하여 향한 배를 탐지하기 위해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간다는 연유를 방금 이미 치보하여 진고하였는데, 뒤퍼진 배 1척은 당일 울포(栗浦) 경내의 망포(網浦) 앞바다에 정박하였고, 본 포구 경내로 표류하여 향하던 배를 탐지하기 위하여 만호가 노를 재촉하여 지삼도 바깥 바다로 진진하였더니, 왜인의 작은 배 1척이 과연 표류하여 오기에, 상봉하여 영솔 예인하여 당일 본진 구조라포 강 입구 앞바다에 정박하여 수호하고 있다”고 치보하였음. 추가로 도부한 22일에 성첩한 가배량(加背梁) 만호 조세창(趙世昌)의 치보에, “당일 본진의 등산(登山) 망군

사노(寺奴) 강복재(姜福才)가 진고하기를, ‘조선 배인지 왜선인지 분간되지 않는 배 3척이 바다 가운데서 나오는데, 멀리 바라보기에 파도 가운데 혹은 가라앉았다가 혹은 나왔다가 상세히 관측하지 못할 즈음에 그대로 해가 저물어서 관측하지 못하였다’고 하였기에, 날이 밝기를 기다려 상세히 관측하여 보고하라는 뜻으로 망군 등에게 엄하게 신칙하였다” 하였음. 추가로 도부한 20일에 성첩한 울포 권관(權官) 안읍(安楫)의 치보에 “오늘 본 포구의 가라산(加羅山) 망군 정병 이늦쇠(李菴金)와 가곶(柯串) 망군 사노(私奴) 이정축(李丁丑) 등이 일시에 진고하기를, ‘조선 배인지 왜선인지 분간되지 않는 배 1척이 표류하여 본진 경내 망포(網浦) 바깥 바다로 향한다’고 하기에, 동 배를 탐지하기 위하여 권관이 배를 타고 바다로 내려가서, 본진으로 표류하여 향하는 배 1척을 탐지하기 위하여 노를 재촉하여 망포 앞바다로 전진하였더니, 왜인의 작은 배가 과연 표류하여 왔기에 어제 상봉하여 영솔 예인하여 당일 본진 경내의 나구미(螺仇味) 앞바다에 정박하였다”고 하였음. 추가로 도부한 가배량 만호 조세창의 치보에, “22일에 망군 강복재가 진고하기를, ‘오늘 상세히 관측하니, 어제 바다 가운데 뒤흔진 배 1척이 본진 경내의 등산리(登山里) 바깥 바다로 향하여 표류한다’는 진고에 의거하여, 동 배를 탐지하기 위하여”라고 하였으며, 만호 김세열(金世列)이 치보하기를 “울포(栗浦) 경내 망포에 정박한 왜인의 작은 배 1척은, 동 포구의 권관이 영솔 예인하여 당일 본 포구 경내의 구조라포 앞바다로 옮겨 정박하여 수호한다”고 치보하였음. 당일 가배량만호 조세창의 치보에, “본진 등산리로 향하여 표류하던 배 1척을 탐지하기 위하여 노를 재촉하여 전진하였더니, 왜인의 작은 배 1척이 과연 표류하여 오기에 당일 상봉하여 그대로 영솔 예인하여 본진 경내의 근구미(芹仇味) 강 입구에 정박하여 수호한다”고 하였음. 성첩한⁸⁹⁾ 옥포 만호 손명혁(孫命奕)과 조라포만호 서정준(徐廷浚) 등의 같은 내용의 치보에, “옥포 옥산(玉山) 망군 사노(私奴) 설재창(薛再昌)과 조라포 수군 김명필(金命必) 등이 일시에 진고하기를, ‘오늘 조선 배인지 왜선인지 분간되지 않는 배 4척이 호운도 앞바다로 나오다가, 한 척은 표류하여 가덕도로 향하고, 3척은 옥포 경내 양주암(楊州巖)으로 표류하여 향한다’고 하여, 동 배를 탐지하기 위하여 만호 등이 배를 타고 바다로 내려간다”고 하였음. 22일에 동 만호 등이 다시 치보하기를, “조선 배인지 왜선인지 분간되지 않는 배 3척이 과연 표류하여 오기에, 어제 상봉하여 영솔 예인하여 옥포 강 입구에 정박하여 수호하고 있다”고 치보하였음. 22일 울포 권관 안읍(安楫)의 치보에, “본진 경내 망포 나구미 앞바다에 정박한 왜인의 작은 배 1척은, 파도가 험악

89) 원본에 성첩한 날짜가 누락되었음.

하여 편안하게 정박할 형세가 아니어서 21일에 출발하기로, 권관이 영솔 예인 하여 지세포 경내의 구조라포 강 입구로 옮겨 정박하여 수호하다가, 22일에 왜학(倭學)이 문정한 뒤에 동 왜인의 비선 1척을 지세포 만호에게 교부하였다” 하였음. 22일 자시에 옥포왜학 유극화(劉克和)의 수본에, “21일에 왜인의 큰 배 3척이 본진의 강 입구 앞바다에 정박하였기에 즉시 가서 문정하였더니, 제1척은 동래 부산으로 보내는 관수(館守)의 교대를 고하는 배에 관수왜 1인, 반종왜(伴從倭) 3명, 종왜 8명, 격왜 40명, 서기왜(書記倭) 1인, 의왜(醫倭) 1인 및 교대차 나온 중금도왜 5인, 소금도왜 5명 등이 예조로 보내는 서계와 별폭 각 1통과 동래 부산으로 보내는 서계 1통과 별폭 2통을 가지고 함께 타고 나왔고, 제2척은 동래 부산으로 간사(幹事) 재판(裁判)의 교대를 알리는 배에 재판왜 1인, 봉진압물왜 1인, 시봉왜 1인, 반종 10명, 격왜 40명 및 교대차 나온 통사왜 1인, 중금도왜 3인, 소금도왜 2명 등이 예조로 보내는 서계 1통과 별폭 1통, 동래 부산으로 보내는 서계 1통과 별폭 2통을 가지고 함께 탔으며, 제3척은 당년 조 제1선에 정관왜 1인과 도선주 1인, 봉진압물왜 1인, 반종왜 3명, 격왜 40명 및 교대차 나온 중금도왜 3인, 소금도왜 2명, 하대왜 1명 등이 예조로 보내는 서계와 별폭 각 1통을 가지고 함께 타고 나왔기로, 그 도중의 사정 및 바람에 표류한 연유를 탐문하였더니, ‘도중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고, 큰 배 4척이 오늘 이른 아침에 대마도에서 함께 발선하여 곧바로 관소로 향하다가, 겨우 물마루에 이르러 바람 형세가 불순하여 1척은 향한 곳을 모르고 저희들이 탄 배 3척은 표류하여 이곳에 이르렀다’고 하였으며, 동 왜인들의 말이, ‘저희들의 배를 조사할 때 비선 3척이 어제 먼저 발선하여 나왔다’고 운운하였으며, 허다하게 많은 왜인들에게 조목을 묻는 사이에 시각이 저절로 지체되었기에 황공하여 죄를 기다리며 연유를 수본함”이라고 수본하였음. 22일 인시에 동 왜학의 수본 내용에, “지세포 만호의 치통 내용에, ‘21일 인시에 왜인의 작은 배 1척이 본진 경내 구조라포 강 입구 앞바다에 도착 정박하였다’는 치통이 도부하였기로, 문정하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달려가서, 이달 22일 인시 쯤에 지세포 경내의 구조라포 강 입구에 도착하니, 왜인의 비선 1척이 과연 정박하였거늘, 즉시 문정하였더니, 비선을 이끌어 온 두왜 1인과 격왜 7명, 교대차 나온 중금도왜 1인, 소금도왜 1명 등이 함께 타고 관수왜에게 보내는 사서 및 노인 1통을 가지고 나왔기로, 그 도중의 사정 및 바람에 표류한 연유를 탐문하였더니, ‘비선 3척이 이달 20일에 대마도에서 발선하여 곧바로 관소로 향하다가 날이 저물고 바람 형세가 불순하여 2척은 향한 곳을 모르고, 저희들이 탄 배는 이곳에 정박하였다’고 하였으며, 울포진 경내의 망포에 정박하였다는 울포의 치통

내용에 '왜선 1척을 울포 권관이 영솔 예인하여 21일 오시에 지세포 구조라포로 옮겨 정박하였다'고 하였기로 문정하였더니, 비선을 이끌어온 격왜 6명, 교대차 나온 공삼대관왜 1인, 중금도왜 1인, 하대왜 1명 등이 노인을 가지고 함께 타고 나왔거늘, 그 도중의 사정 및 바람에 표류한 연유를 탐문하였더니, 동왜인의 말이 '도중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고, 비선 3척이 이달 20일에 대마도에서 발선하여 곧바로 관소로 향하다가 겨우 물마루에 이르러 바람 형세가 불순하여 2척은 향한 곳을 모르고, 저희들이 탄 배는 이달 20일 쯤 바다 가운데서 울포권관을 만나 영솔 예인하여, 21일에 동진 경내의 망포 나구미 앞바다에 정박하였다가, 바람과 파도가 크게 일어나 머물러 정박하여 안정할 형세가 만무하여, 사시에 출발하여 동진의 권관이 그대로 영솔 예인하여 오시에 지세포 구조라포 강 입구 앞바다로 옮겨 정박하였더니, 같이 발선하였던 배 1척이 이미 이곳에 정박하였고, 1척은 끝내 향한 곳을 모른다'고 하였으며, 울포 경내로 표류한 왜인의 작은 배가 소인이 문정하기 전에 다른 진 경내로 옮겨 정박한 것은 일이 매우 소홀한데, 동 왜인들이 고한 바가 이러하기로, 사실대로 문정한 뒤에 신지(信地)로 되돌아와서 연유를 아울러 수본함"이라고 수본하였음. 22일 해시 동 왜학의 수본 내용에, "가배량 만호가 치통한 내용에, '21일 유시에 왜인의 작은 배 1척이 본진 경내의 근구미 앞바다에 도착 정박하였다'는 치통에 의거하여, 같은 날 밤낮 없이 달려갔더니 왜인의 비선이 정박하였기에 즉시 문정하였더니, 비선을 이끌어온 두왜 1인, 격왜 5명, 교대차 나온 중금도왜 1인, 소금도왜 1명 등이 은자 5,000냥을 실어가지고 노인을 가지고 함께 타고 나왔기에, 그 도중의 사정 및 바람에 표류한 연유를 탐문하였더니, 동 왜인들의 말이 '도중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고, 이달 20일 아침에 비선 3척이 대마도에서 함께 발선하여 곧바로 관소로 향하다가, 겨우 물마루에 이르러 날이 이미 저물고 바람 형세가 불순하여, 비선 2척은 향한 곳을 모르고, 저희들이 탄 배는 바다 가운데서 머물다가 고생하며 밤을 지낸 뒤, 21일에 표류하여 이곳에 도착하였다'고 하기에 문정한 뒤 신지로 되돌아와서 수본" 및 치보하였음. 옥포 강 입구에 정박한 왜인의 큰 배 3척과 지세포 강 입구에 앞뒤로 정박한 왜인의 작은 배 2척과 가배량 강 입구의 왜인의 작은 배 1척, 도합 6척에 땀감과 물과 양식과 반찬을 전례대로 찾아 지급하라는 뜻으로 지방관 거제부사 최암(崔嶽)에게 관문을 발송하여 분부하였으며, 21일에 나온 왜인의 큰 배 4척 중 바다 가운데 뒤쳐져서 향한 곳을 모르는 1척의 배가 표류하여 정박한 곳을 상세히 탐지하여 급히 알리라는 뜻으로 연로의 수군 진영에 엄하게 신칙하여 제송(題送)하였고, 당초 왜인의 작은 배 1척이 이미 울포 경내에 정박하였는데,

해당 진장(鎭將)이 마땅히 영솔 예인하여 수호해야 함에도 파도가 험악하다고 일컬으며 문정하기 전에 가벼이 먼저 지세포 경내로 옮겨 정박한 것은 격식과 전례에 어긋남이 있기로, 지금 바야흐로 물어 조사한 뒤에 치달(馳達)할 계획이며, 연유를 아울러 먼저 치달하는 일임.

계유(1753) 정월 11일

동래부사 신위가 지난 12월 29일에 성첩한 장달 내용. 이달 22일에 도부한 부산첨사 박태정의 치통에, “방금 다대포첨사의 치통을 접하니, 어제 조선배인지 왜선인지 분간되지 않는 배 4척이 나와서 표류하여 거제도도로 향하였다”고 하였음. 22일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에, “방금 다대포첨사의 치통을 접하니, 이제 이번 20일에 3척의 배의 모습이 물마루에서 잠깐 보였다가, 해가 저물고 바다가 어두워 또렷이 구별할 길이 없다고 봉군이 진고하였는데, 극히 매우 분명치 않으므로, 동 배가 혹 왜선으로 우도로 표류하였는지 즉시 전로에 탐문하였더니, 가덕첨사의 전통에, ‘이번 20일에 분간되지 않는 배 3척이 바다 가운데서 나오다가, 2척은 바다 가운데 뒤편지고, 1척은 거제도도로 향한다’는 전통에 의거하여 치통한다 운운” 하였음. 23일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에, “방금 가덕첨사의 전통에 의거한 다대포첨사의 치통을 접하니, 21일 거제도도로 향하여 표류한 분간되지 않는 배 4척 가운데 3척은 그대로 표류하여 거제도도로 표류하여 오므로, 동 진의 첨사가 이선장 박만웅(朴萬雄)과 더불어 탐지하였더니, 왜인의 큰 배 1척이 천성 경내로 향하여 표류하기에 예인하여 들이라는 뜻으로 천성만호에게 신척하였고, 22일에 본보(本堡)의 마거리 앞바다에 정박하여 수호하는 일로 차례차례 전통에 의거하여, 20일에 나오다가 바다 가운데 뒤편진 분간되지 않는 배 2척과, 거제도도로 향하여 표류한 배 2척 및 21일에 나와서 거제도도로 향하여 표류한 배 3척 등이 향하여 간 곳을 아울러 탐문하여 보고하라는 일로 신척하였다는 연유를 치통한다 운운” 하였음. 24일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에, “방금 가덕첨사의 전통에 의거한 다대포첨사의 치통을 접하니, 이달 20일에 나왔던 분간되지 않는 배 3척은 모두 왜인의 작은 배로, 1척은 21일에 울포 경내의 망포 앞바다에 정박하여, 동 포구의 권관이 영솔 예인하여 같은 날 구조라포 강 입구로 옮겨 정박하고, 같은 날 동 포구의 강 입구에 먼저 정박한 배 1척은, 같은 날 가배량 경내 근구미 앞바다에 정박하였으며, 21일에 나온 분간되지 않는 배 4척 중 1척은 천성 마거리 앞바다에 이미 정박하였고,

3척은 표류하여 옥포 경내의 양주암으로 향하기로, 같은 모양으로 탐지하여 수호하기 위하여 옥포와 조라포 지세포 만호 등이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다고 차례차례 전통에 의거하여 치통한다” 하였음. 25일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에, “방금 다대포첨사의 치통을 접하니, 옥포 경내 양주암으로 향하여 표류한 배 3척은 과연 왜인의 큰 배인데, 이번 21일에 옥포 강 입구에 정박한 뒤, 동포구의 왜학 유극화(劉克和)와 소통사 권순택(權順澤) 등이 가사 문정하였더니, ‘도중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고, 제1척은 구관수왜와 교대하기 위한 신 관수왜의 배에 관수왜 1인, 반중 3명, 종왜 8명, 서기왜 1인, 의왜 1인, 격왜 40명, 교대차 나온 중금도왜 5인, 소금도왜 5명이 함께 타고, 예조로 보내는 서계와 별폭 각 1통, 동래 부산으로 보내는 서계 1통과 별폭 2통을 가졌으며, 제2척은 고간(告幹) 재판의 교대하기 위한 배로 재판왜 1인, 봉진압물왜 1인, 시봉 1인, 종왜 10명, 격왜 40명 및 교대차 나온 통사왜 1인, 중금도왜 3명, 소금도왜 2명, 하대왜 2명 등이 함께 타고 예조로 보내는 서계와 별폭 각 1통, 동래 부산으로 보내는 서계 1통과 별폭 2통을 가졌고, 제3척은 당년조 제1선에 정관왜 1인, 도선주왜 1인, 봉진압물왜 1인, 반중왜 3명, 격왜 40명 및 교대차 나온 중금도왜 3인, 소금도왜 2명, 하대왜 1명이 함께 타고 예조로 보내는 서계와 별폭 각 1통을 가졌으며, 이달 21일 아침 4척이 대마도에서 함께 발선하여 곧바로 관소로 향하다가, 겨우 물마루를 지나 해가 저물고 바람이 거슬러, 큰 배 1척은 향한 곳을 모르고, 저희들이 탄 배 3척은 근근이 노를 저어 표류하여 이곳에 이르렀고, 저희들의 배를 점검할 때 비선 3척이 먼저 발선하여 나왔다고 운운하였으며, 여러 왜인들에게 문정하는 사이에 시각이 절로 지체되었다’고 하였고, 옥포만호가 차례차례 전한 전통에, 구조라포 강 입구에 정박한 왜인의 작은 배를 수호하기 위해 지세포 군관 주도연(朱道淵)을 정하여 보내는 일로 동포구의 만호가 치통하였기에, 연유를 치통한다” 하였음. 26일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 내에, “방금 다대포첨사의 치통을 접하니, 이번 20일에 나와서 21일에 지세포 경내의 구조라포 강 입구에 선후로 나누어 정박한 왜인의 작은 배 2척에 옥포왜학과 소통사 등이 22일에 달려가서 문정하였더니, ‘도중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고, 제1척 비선에 두왜 1인, 격왜 7명, 교대차 나온 중금도왜 1인, 소금도왜 1명 등이 함께 타고 노인 및 관수왜에게 보내는 사서를 가졌으며, 이달 20일 아침에 비선 3척이 대마도에서 함께 발선하여 곧바로 관소로 향하다가 겨우 물마루에 이르러 해가 저물고 바람이 거슬러, 2척은 향한 곳을 모르고, 저희들의 배는 근근이 노를 저어 표류하여 이곳에 정박하였고, 제2척 비선에 두왜 1인, 격왜 6명, 교대차 나온 공삼대관왜 1인, 중금도왜 1인, 하대왜

1명 등이 함께 타고 노인을 가지고 이달 20일 아침에 대마도에서 비선 3척과 함께 발선하여 곧바로 관소로 향하다가, 겨우 물마루에 이르러 해가 저물고 바람이 거슬러, 2척은 향한 곳을 모르고, 저희들의 배는 이번 20일에 오포 권관을 만나 영술 예인하여, 21일에 동 포구 경내의 망포 나구미 앞바다에 정박하였다가, 출발하여 동 포구의 권관이 그대로 영술 예인하여, 같은 날 구조라포 강 입구로 옮겨 정박하였더니, 같이 발선하였던 비선이 먼저 와서 정박하였고, 1척은 향한 곳을 모른다고 문정'한 일로 가배량 만호와 소비포(所非浦) 권관의 전통에 의거하여 치통하였으며, 지세포 경내의 구조라포에 먼저 정박한 비선 1척은 이달 21일에 정박하였다고 이미 보고하여 왔는데, 이제 이번 왜학의 문정 가운데 동 비선이 정박한 일시를 거론하지 아니한 것은, 변방 정세로 헤아리건대 극히 소홀한 일이기로 연유를 아울러 치통한다” 하였음. 27일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에, “가배량 경내 근구미 앞바다에 정박한 비선 1척에 옥포왜학과 소통사 등이 이달 22일에 달려가서 문정하였더니, ‘동 비선에 두왜 1인, 격왜 5명, 교대차 나온 중금도왜 1인, 소금도왜 1명이 함께 타고, 노인 및 은자 5,000냥을 가지고 이달 20일 아침에 비선 3척이 함께 발선하여 곧바로 관소로 향하다가, 겨우 물마루에 이르러 해가 저물고 바람이 거슬러, 비선 2척은 향한 곳을 모르고, 저희들의 배는 바다 가운데서 머물다가 고생하며 밤을 지낸 뒤, 이달 21일에 표류하여 이곳에 도착했다는 일로 문정'하였다고, 가배량 만호와 소비포 권관 등이 차례차례 전통하였고, 천성 마거리 앞바다에 정박한 왜인의 큰 배 1척에 옥포왜학과 소통사 등이 이달 24일에 달려가서 문정하였더니, ‘당년 조 제2선 제3선 정관왜 각 1인, 반중왜 각 1인, 격왜 40명 및 교대차 나온 중금도왜 5인, 소금도왜 3명, 하대왜 1명 등이 함께 타고 예조로 보내는 서계와 별폭 각 1통을 가지고, 이달 21일 아침에 큰 배 4척이 대마도에서 함께 발선하여 곧바로 관소로 향하다가, 겨우 물마루에 이르러 해가 저물고 바람이 거슬러 향한 곳을 모르고, 저희들의 배는 천성 경내 밖의 앞바다에서 밤을 지낸 뒤 22일에 표류하여 이곳에 도착하였고, 정관 반중왜 등이 함께 배 한 척에 탄 것 운운한 일로 문정하였다’ 하였고, 천성만호 김세형에게 교부하여 영술 예인하여 전진하다가, 바람이 거스르고 해가 저물어 같은 날 지세포 강 입구로 옮겨 정박한 뒤, 본 포구의 강 입구에 먼저 정박한 비선 2척과 한가지로 같은 모양으로 수호하는 일로 지세포만호가 차례차례 전통하였으며, 옥포 강 입구에 정박한 왜인의 큰 배 3척은, 이달 24일에서 25일까지 바람 형세가 불순하여 출발하지 못하고, 지세포 강 입구에 앞뒤로 나누어 정박한 왜인의 비선 3척은 이달 24일에 바람 형세가 불순하여 출발하지 못하였으며, 천성 마거리 앞바다에 정

박한 왜인의 큰 배 1척은 25일에서 26일까지 바람 형세가 불순하여 출발하지 못하였다고, 지세포와 옥포, 천성 만호 등이 차례차례 전통하였기에, 이에 의거하여 치통하며, 연례송사왜가 탄 배는 각기 그 선박의 호칭이 있는데, 이제 이번 마거리 앞바다에 정박한 왜인의 큰 배 1척은 왜학이 문정한 가우데 상세히 보고한 일이 없이 제2선 제3선이라고 범연하게 칭한 것은 아주 매우 몽롱한데, 그 배가 관소로 돌아와 정박하기를 기다려 문정하여야 상세히 알 수 있겠고, 올해 10월 17일에 나왔던 도주의 승습(承襲) 경사를 고하는 대차왜의 수목선에 격왜 20명과 올해 7월 20일에 나왔던 소금도왜 2명, 올해 7월 초8일에 나왔던 중금도왜 1인, 올해 8월 초8일에 나왔던 중금도왜 2인 등이 함께 타고, 공작미를 실어가지고 돌아 들어가기 위해 어제 수문 밖에서 바람을 기다린다는 훈도 황하성(黃夏成)과 별차 황대일(黃大逸) 등의 수본에 의거하여, 수호하기 위해 본진 이선장 백시위(白時偉)를 정하여 보냈는데, 동 왜인의 큰 배 1척이 오늘 돌아 들어갔다는 수호장의 치보 및 구봉봉군의 진고에 의거하여 아울러 치통한다” 하였음. 방금 도부한 접위관 자인현감 이윤항(李胤沆)의 이첩 내용에, “김해 표류민을 영솔하여 온 차왜 등지명(藤之明) 원역 등에 대한 하선연을 이달 20일로 정하였으므로, 초량 객관으로 달려가서 전례대로 진상숙배를 받은 뒤에, 그대로 연청으로 가서 폐단없이 연회를 베풀었다”고 이첩 및 치통하였음. 우도로 표류한 왜선 7척은, 그 배들이 관소로 돌아와 정박한 뒤에 문정하여 다시 신문(申聞)할 계획이고, 이번 20일에 왜인의 작은 배 3척이 나와서 바람에 우도로 표류할 때, 다대포첨사 구정환(具鼎煥)이 봉군의 관측 실수로 인하여 즉시 치통하지 아니하고 2일이 지난 뒤 22일에 비로소 치통하였으니, 변방 정보를 중시하는 도리에 있어서 그냥 두어서는 불가하기로, 해당 다대포 변정 담당 감색 등을 신의 동래부로 잡아와서 죄를 다스려 후일을 징계하였고, 봉군 등은 본 다대포로 하여금 엄하게 다스리게 하였으며, 가덕첨사도 동 왜인의 작은 배 3척이 나올 때 또한 봉군의 관측 실수로 인하여 즉시 치통하지 않은 것은 극히 매우 소홀하여, 동 가덕진의 변정 담당 감색 등을 같이 잡아와서 징계하여 다스려야 마땅하나, 먼 곳에서 많은 사람을 잡아오는 것은 폐단이 있어서, 동 감색과 봉군 등을 본진에서 엄하게 다스려 후일을 징계하라는 뜻으로 관문을 보내어 신칙하였으며, 옥포왜학 유극화는 이번 20일에 나온 왜인의 비선 1척이 21일에 지세포 경내 구조라포에 정박하여 문정한 가운데, 동 비선이 정박한 일시를 거론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소홀한 죄는 통영에서 죄를 다스려 후일을 징계함이 마땅하며, 각 송사가 바친 물건이 기한을 넘긴 곡절은 전에 이미 대강 거론하여 치달하였으나, 대개 저쪽 사람이 연례로 바치는 것과 우리

나라의 쌀과 포목을 들여 주는 것이 본디 교린의 약조이므로, 공무역의 구리와 납의 간품(看品)은 반드시 4월에 맞추고, 각 송사의 진현 물건은 당년을 넘기지 아니하는 것이 곧 바뀌지 않는 전례인데, 올해에는 한결같이 연기하여 아직도 받아내지 못하였기로, 저쪽 사람들에게 지급할 쌀과 포목 역시 이로 인하여 즉시 지출하지 아니하고, 훈도 별차에게 전령하여 그들로 하여금 사례를 들어 책망하고 타이르게 하여 그들이 기일을 어긴 연유를 탐문하게 한 뒤에 사실에 의거하여 수분하게 하였는데, 방금 바친 훈도 별차 등의 수분 내용에, “삼가 전령을 받들고 소인 등이 관수왜 및 담당 대관왜 등에게 가서 전령 내의 사연으로 일일이 책망하여 타일렀더니, 동 왜인들이 머리를 숙이고 대답하기를 ‘관사 등이 말하는 바가 당연하지 않음이 없으나, 동 공무역의 생동(生銅)과 납철(鐵鐵)은 이미 4월 내로 간품하는 것이고, 각 송사의 진현 물건은 당년 내로 바치는데, 올해에는 구 도주가 불행히 죽고 새 도주가 에도로부터 와서, 초상의 위세에 정신이 흔들려서 새로 도입한 뒤로 모든 일들이 저절로 허둥거리는 일이 많아 손쓰지 못하였기로, 간품하여 무역하는 물건과 송사의 진현하는 의식의 기일을 어기어 이런 지경에 이른 것이 그 지연된 첫째 이유입니다. 또한 저희 대마도의 구 도주의 장례를 치르는 절차와 새 도주를 맞이하여 오는 즈음에, 거기에 사용된 비용이 평소의 해보다 백 배나 되기 때문에, 잡물을 갖추어 오는 것이나 송사를 보내는 차비를 실로 전과 같이 기일에 맞추기가 어렵기에, 자연히 날짜를 보내고 달을 넘겼으니, 이것이 지연된 두 번째 이유입니다. 형편이 어려워서 그렇게 된 것이지만 의리로는 실로 부끄러움이 많으나, 저희 대마도에서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각종 물건을 모두 마련하고 배에 실어서 바람을 기다리는 곳에 배를 대기시켜 놓았는데, 만사가 다 갖추어졌으나 단지 동풍이 없어서 지금까지 여러 달 동안 아직도 나오지 못하고 있으니, 이것이 지연된 세 번째 이유입니다. 만약 바람이 순조로워 잘 건너온다면 전후로 적체된 물건을 감히 모두 바치지 않겠습니까마는, 오늘 당장 오지 않았으니 짐짓 오늘 잘 거행하지 못한 죄가 있기에, 저희들이 어찌 감히 허물이 없다고 하겠습니까? 다만 저희 대마도의 생령(生靈)들은 오로지 귀국에서 내려주는 쌀의 은택을 우리러 양식을 대어 살아가는 밑천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전부터 공작미는 당년 안에 모두 지급하였는데 올해에는 아직 다 받지 못한 것은, 모두가 저희들이 먼저 그 도리를 잃은 것이라 이제 또 얻기를 청하는 것은 극히 황송하고 부끄러우나, 동 공작미를 세전에 특별히 다 지급해주지 않으면 저희 대마도의 생령들이 장차 죽어갈 염려를 면하지 못합니다. 이전에는 비록 간혹 간품 물종과 진현 물건이 기한에 대지 못한 때가 있더라도, 특별히 대

조정(大朝廷)의 포용하고 살리기를 좋아하는 은덕을 입어서 매양 허물을 용서하고 굶주림을 보살피는 은전이 있었으니, 옆드려 바라건대 판사 등은 이런 뜻을 동래 영감 전에 잘 고하여 큰 은택을 입을 수 있게 해 달라'고 하며 온갖 말로 간절하게 애걸하기로 연유를 수본으로 하는 일"이라고 수본하였는데, 관수와 대관왜 등이 스스로 그들의 잘못을 알고 부끄러워 하는 뜻이 없지 아니할 뿐 아니라, 도중에서 미처 서둘지 못하였다고 칭하는 것도 그 형세가 그럴 듯하고, 바람 형편이 불순하다는 이야기 또한 꾸며낸 것이 아니며, 매년 공작미를 세전에 모두 들여준 것이 이미 조정에서 먼 외국사람에게 박하게 가져오고 후하게 보내는 은덕을 보여주는⁹⁰⁾ 의도인데다가, 이전에 저쪽 사람들이 간혹 세전에 거행하는 절차를 기한에 맞추지 못하더라도, 일찍이 이것 때문에 공작미를 모두 지출하는 규정을 폐하지 않고 끝까지 인색함이 없게⁹¹⁾ 하였는데, 수량을 비교 계산하여 주고 받는 것은 성신(誠信)에 흠이 있기로, 공작미 16,000섬을 금년 조로 대관왜에게 전례에 의거하여 계속하여 끝까지 들여 주고, 저쪽 사람들이 진현하는 물건 및 공무역의 동철은 성화같이 재촉하라는 뜻으로 훈도 별차 등에게 다시 더 엄하게 신칙하였으며, 연유를 아울러 치달하는 일임.

계유(1753) 2월 일

일본국 대마주 태수 습유 평의번(平義蕃) 봉계서(奉啓書). 조선국 예조대인 함하. 초한(初寒)에 생각건대 거처하시기에 편안하신지 우러러 그리운 생각 배로 간절합니다. 이에 고하는 것은 관사(館司) 평치신(平致信)의 임기가 만료되었기에 이에 평구경(平久敬)을 차출하여 그 직책을 대신하여 맡기오니, 평소의 규정에 어긋나지 않게 은총으로 대접하여 주시기를 비오며, 보잘 것 없는 의식으로 정성을 표하오니 천만 살피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줄이고 갖추지 못합니다. 보력(寶曆) 2년 임신(1752) 10월 일. 대마주 태수 습유 평의번.

별폭 : 수정갓끈[水精笠緒] 1결(結). 채화서가(彩畵書架) 1각(脚). 흑칠화전갑(黑漆華箋匣) 1개. 혁과수주괘연(革褰垂珠掛硯) 1비(備). 수랍중청명(粹蠟中淸皿) 10개. 계(計).

90) 원본의 '免是朝家不遠人薄來厚往之意'의 '免'과 '不' 두 글자는 전후 문맥으로 보아 각각 '死'와 '示'를 잘못 기록한 것으로 보이므로, 고쳐 번역하였다.

91) 원본의 '今'은 '승'의 오기로 보인다.

동래 부산 양 영공 합하. 초겨울에 아득히 생각건대 각기 지내시기가 편안하시리라 여기며 위안되는 마음 한량 없습니다. 이에 평구경(平久敬)을 보내어 관(館)의 일을 이어서 관장하게 하오니, 앞서의 규정에 따라 정성껏 대접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보잘것 없는 물건을 덧붙였으니 오직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줄이고 갖추지 못합니다. 보력 2년 임신(1752) 10월 일.

동래 별폭 : 채화중원분(彩畵中圓盆) 10매. 채화삼촌렴경(彩畵三寸函鏡) 2면(面). 흑칠중연갑(黑漆中硯匣) 1개. 채화지남침(彩畵指南針) 2좌(座). 적동중약관(赤銅中藥罐) 4개. 계.

부산 별폭 : 채화침자괘연(彩畵枕子掛硯) 1개. 채화지남침 2좌. 흑칠문갑(黑漆文匣) 1개. 주간연기(朱竿烟器) 20 줍[握]. 계.

이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신목을 첨부하였으니 달하하시기를. 이전에 새 관수 왜 평구경이 가져온 서계에 대한 회답 및 동래 부산에서의 답장 초고를 승문원에 명하여 말을 만들어 지어내게 하였는데, 별폭의 회례 잡물을 전례대로 마련하여 신목에 후록하였으니 급속히 마련하여 내려본내는 일로 해조 및 본도에 분부함이 어떠할지.

후록. 별폭 회례: 인삼 2근. 범가죽 1장. 표범가죽 1장. 흰 명주 5필. 흰 모시베 5필. 검은 삼베 3필. 흰 무명 10필. 황모필 30자루. 이상 해조에서 마련. 참먹 30홀(笏). 낙장불인 유둔(油菴) 2부(部). 화석(花席) 2장. 이상 본도에서 지급.

동래 부산 두 곳의 회례 : 각기 흰 명주 3필. 흰 모시베 3필. 검은 삼베 2필. 흰 무명 7필. 황모필 20자루. 이상 해조에서 마련. 참먹 20홀. 낙장불인 유둔 2부. 화석 2장. 이상 본도에서 지급.

계유(1753) 2월 28일

이번 2월 21일에 약방에서 입진(入診)하여 좌우상(左右相)과 예조판서 홍(洪)이 입시하였을 때 좌의정 이(李)가 입계하기를, “이것은 동래부사의 장계 등본입니다. 차왜가 예단 인삼의 일로 나와서, 신미년(1751) 이후로 지급할 것을 모조리 점퇴(點退)하고 좋은 상품으로 바꾸어 지급할 것을 청한다고 운운 하였습니다. 작년에 지급한 좋은 상품은 한 때의 특별한 은전에서 나온 것이니, 어찌 이것을 전례로 삼아 이미 지급한 인삼을 바꾸어 지급하겠습니까? 일이 뒷날의

폐단에 관계되니, 엄하게 신칙하여 방색함이 좋을 듯합니다.”라고 하였는데, 상감께서 “일에는 명령을 내리기 전과 내린 뒤가 있는 법인데, 이것을 어찌 바꾸어 줄 수 있겠는가? 이 또한 기강에 관계되니, 이런 일을 훈도 별차가 어찌 감히 수분하며, 동래부사 또한 어찌 장계로 알리는가? 동래부사를 엄중하게 추고 하고, 훈도 별차는 본부에 명하여 곤장을 치게 함이 옳겠다”고 하셨습니다.

계유(1753) 3월 23일

이번 3월 22일에 좌의정 이천보(李天輔)가 입시하였을 때 전교에 이르시기를, “지난번 예단 인삼을 신칙한 것은 곧 교린의 도리를 중시하여서인데, 기강이 마침내 해이해져서 요만큼 작은 일에도 신칙하여 시행되지 않고 오히려 농간을 부리는 일이 있고, 저쪽 사람들로 하여금 이것으로 인하여 빙자하여 명령을 내리기 전의 인삼까지 모두 받지 않게 한 것은 이미 잘못이다. 또한 이 신칙은 나라 안에서 시행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데, 그 명령이 저절로 날아서 왜관 안에까지 들어갔겠는가? 임역 등이 여러가지 거행하는 조목을 베껴서 저들에게 보여주었기에 이렇게 빙자하는 소치이니, 이는 모두 임역들이 행한 것이다. 하물며 지난번에 곤장을 친 뒤로 만약 한푼이라도 조정을 엄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저쪽 사람들을 중용하고 동래부사를 기만하여 막중한 예단을 조정의 명령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임의로 올려 보내게 하였겠는가? 만약 이렇게 하여 마지 않는다면 조정의 명령이 장차 조그마한 상역(商譯)들에게 시행되지 않을 것이다. 일의 한심함이 이보다 심할 것이 없다. 당해 훈도 별차는 통제사에게 명하여 군령(軍令)의 위엄을 펼쳐서 세 바퀴를 돌려 보인 뒤에 곤장 50대를 쳐서 해도(海島)로 정배(定配)하고, 당해 내백(萊伯 : 동래부사)은 아아, 내백의 백(伯) 자가 어찌 우연이겠느냐? 직접 장계로 알리는 한 부(府)의 백(伯:어른)으로서 이렇게 조그마한 일도 주선하지 못하고, 앞서의 예단 인삼을 받아들이게 하지 못한 것이 이미 놀라운 일인데. 이치에 근거하여 다투어 고집하지 못하고 감히 장계로 알렸다. 이번의 인삼은 비록 서로 섞여 있지만 지난번보다 나은데도, 조정의 명령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굽혀서 따라주어 막중한 조정에서 내려 보낸 인삼을 곧바로 먼저 올려 보내고, 1봉(封)은 또한 뜯지도 아니하였으니, 이는 한갓 이번 부사만이 아니라 전 부사 또한 신칙함이 없어서는 불가하다. 조재민(趙載敏)을 해미현(海美縣)에 3년 동안 도형(徒刑)에 처하도록 하라. 이번 인삼이 비록 지난날 보다 낫지만, 그래도 형편없어 도라지를 채

위 넣은 것은 일의 근거가 없음은 이처럼 심한 것이 없으니, 당해 조삼(造蔘)을 만든 사람을 한 차례 엄하게 형벌을 가한 뒤에 멀리 유배하라. 그것을 들이도록 명한 것이 과연 순수한 인삼이었다면 잘못은 부사에게 있고, 만약 혹시 형편없는 것이었다면 잘못은 탁지(度支)에 있는데, 이미 그 가운데 있는 것이 형편없는 것인 줄 알았다면 탁지 대신 또한 신척함이 없어서는 불가하니, 의금부에 내려 추고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번 3월 25일에 대신 및 의금부 당상이 입시하였을 때 **전교에 이르시기를**, “이번 예단 인삼은 절목(節目) 사이의 한 가지 일에 불과한데, 그것을 엄격하게 조처한 것은 그 의도가 오로지 하교(下敎) 가운데 있고, ‘교왜(敎倭)’ 두 글자는 의도가 깊다. 비변사에서 만약 내 뜻을 모른다면 필시 간사한 계교에 맞아떨어질 것이니, 타이르지 않을 수 없다. 인삼이 만약 귀하지 아니하다면 계인(契人)이나 상역(象譯)에게 어찌 얻기 어려운 점이 있을 것이며, 해조에 있어서도 어찌 장만하기 어려움이 있겠으며, 인삼이 지극히 귀하여 근래에 문서를 가진 계인(契人)이 장만하기 어려운 인삼을 상역들이 어떻게 수를 채울 수 있겠는가마는, 저번에 대신이 상주한 바를 들으니, 저들이 담당하면 잘 진배할 것이라 하였으니, 이는 두 가지에 지나지 않는다. 하나는 인삼이 지극히 귀한 것은 오로지 인삼이 새어나가는데 있는데, 만약 저들이 전담한다면 강삼이나 북삼이 아마 장차 모조리 동래부로 내려가서 나라 안에는 아마 장차 인삼이 없어지고야 말 것이다. 하나는 저쪽 사람을 교묘하게 유인하여 저쪽 사람이 온갖 계교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빙자하여, 마지막에는 반드시 저들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고 난 뒤에야 그칠 것이다. 이와 같으면 나라는 나라 그대로 있고 강계는 강계 그대로 있음이니, 타이르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번 3월 25일에 대신 및 의금부 당상이 함께 입시하였을 때 **우의정 김상로(金尙魯)**가 계품하기를, “이번 예단 가운데 당초 봉함을 뜯어서 삼가⁹²⁾ 가져온 것은 국가의 체면에 있어서 참으로 극히 놀라운 일이라, 당초 차비역관 또한 직책을 잘못된 죄를 면하기 어려운데, 뒷날의 폐단에 관계되어 그냥 두어서는 불가하니, 아울러 잡아다가 조처함이 어떠할지?” 하였는데, 상감께서 “진달한 것이 옳다. 그대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또 계품하기를 “호조판서를 의금부에 내려 추고하라는 명은 참으로 성상의 뜻하는 바가 있음을 알겠으나, 다만 예단 인삼

92) 원본의 ‘惟謹’을 그대로 번역하였으나, 이 구절은 아마도 ‘惟不謹’의 ‘不’ 한 글자가 빠진 듯하다.

가운데 도라지를 끼워넣은 것이 이미 적발되었는데, 이것으로 하교하신 바가 있게 된 것은 그 죄가 비록 계인에게 있지만, 살펴서 신칙하지 못한 실책은 해조 또한 면하기 어렵습니다. 국가의 체면에 관계되니 금지하여 추고하는데 그쳐서는 불가하니, 호조판서 조영국(趙榮國)을 파직함이 어떠할지?” 라고 하였는데, 상감께서 “진달한 바가 참으로 옳다. 그대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계유(1753) 4월 11일

동래부사 신위가 비변사에 보고한 첩정(牒呈) 내용. 본사의 관문을 살펴보니 “이번 재판왜가 나와서 장달한 일로 책망하여 타이른 바가 있는데, 엄하게 물리치지 아니하고 조정에 알린 것은 또한 잘못된 바가 있으니, 본부에서 임역들을 신칙하고 책망하여 그들로 하여금 각별히 책망하여 타이르게 하여 즉시 들여보내고, 단지 들여보낸 형편만 장계로 알리라”고까지 하였는데, 대개 당초 장계로 품의한 본디 뜻은, 일이 변방 정세에 관계되어 때맞추어 치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단 인삼 한 가지 일이 아직도 완료하지 못한 사안인데다가, 재판이 계속하여 나옴에도 머리를 움추리고 있는 것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조정의 지휘를 빙자하여 접촉을 삼가하는 의도를 보이려는 것일 뿐, 끝까지 접촉을 허락하지 않으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전부터 간혹 이렇게 접촉하는 것이 불가한 차왜가 있으면, 조정에서 조처했던 바로는, 서계는 받도록 허락되되 사실에 의거하여 잘못을 책망하고, 그대로 변신으로 하여금 공궤(供饋)를 철거하여 돌아가도록 독촉하는 것이었는데, 이제 이번 관문 내의 사연은 마치 곧바로 본부에서 임의로 물리쳐 쫓아낸 것이 있는 듯하니, 아마도 변방 정세의 일의 형편을 오히려 다 살피지 못한 듯합니다. 전례로는 재판의 걸음이 주관하는 일이 무슨 일이든지 막론하고, 접대를 허락하는 한 조목을 또한 모두 무마하여 시행한 것은, 대개 재판이 다른 차사와 다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만약 시비를 묻지 아니하고 우리 국경에 머물며 접대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곧 협박하여 내쫓게 하는 것과 같아지니, 결코 순종할 리가 없으며, 이미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사이에 곤란한 일이 생겨나 어떤 지경에 이를지 모르니, 어찌 변방 관문에서 매우 난처한 사단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비변사의 관문이 이러하니, 즉시 지시한대로 거행해야 마땅하나, 동 차왜가 바다를 건넌지가 이미 두 달이나 되었고, 즉시 서계를 받고 접대하지 않은 것으로 이미 방자하고 교활함이 지극히 독한데다가, 고하는 것을 허락하고 접대하는 여부는 비록 조정

의 처분이 어떠한가에 달려 있다 하더라도, 당초 서계를 받지 아니한 것은 화친을 하고 왜관을 둔 이래로 없었던 일인지라, 현재 괴로운 형편은 한두 가지가 아니며, 장차 놀라운 일이 생겨날 수 있으니, 특별히 엄한 전교를 내리신 터에 즉시 들여보내지 아니한 일로 누누이 번거롭게 보고하는 것도 매우 미안한 일이로되, 차왜가 나온 것은 무슨 일이든지 막론하고 짐짓 접대를 허락하는 것이 전례이니, 이번에도 전례대로 하여 엄한 말로 책망하여 타이르고, 즉시 되돌아가지 아니하면 공궤를 철거하여 들여보내는 것이 사리에 당연합니다. 대개 이 분쟁의 사단은 훈도 별차들이 잘 주선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중간에서 조종한 소치이나, 특별히 더 신칙하여 엄중한 죄를 면할 수 있게 하며, 서계는 이미 접대를 허락하였으면 이번에는 전례대로 거행함이 마땅하니, 별도로 분부할 필요가 없는 일임.

동래부사 신위가 비변사에 보고한 첩정 내용. 전에 본부의 보고로 인한 비변사의 회송(回送) 내용에, “해당 차왜가 나오면 무슨 일이든지 막론하고 짐짓 접대를 허락하는 것이 전례이니 이번에도 전례대로 하되, 엄한 말로 책망하여 타이르고 즉시 돌아가지 아니하면 공궤를 철거하고 들여보내는 것이 사리에 당연하다” 운운하였으며, “서계는 이미 접대를 허락하였으면 당연히 전례대로 거행하지 별도로 분부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기에, 이달 27일에 동 재판차왜의 하선 다례를 향접위관(鄉接慰官) 양산군수가 전례대로 베풀어 행하였고, 그 서계 가운데 ‘허끝으로 말하는데 붙여 놓았다’ 운운한 것은 당초 문정한 수본에 의거한 장계 등본에 이미 자세하여 다시 제기하여 보고할 것이 없으며, 훈도 별차에게 엄하게 신칙하여 책망하고 타일러 돌아 들어가게 하는 데는 조금도 늦추는 것이 용납되지 않으나, 해조의 회답 서계가 내려온 뒤에 비로소 그들이 돌아가도록 독촉하여 책망할 수 있고, 만약 진작 돌아가지 않으면 또한 공궤를 철거해야 하는지라, 비변사에서 사정을 참작하여 동 회답서계를 즉시 만들어 보내라는 뜻으로 해조에 알리고, 이에 의거하여 속히 회답서계를 하라는 뜻으로 감결(甘結)을 받은 일임.

계유(1753) 4월 14일

비변사의 신목(申目). 전 동래부사 신위의 이 장달(狀達)을 보면, “이제 이번 차왜는 비변사의 회송(回送)으로 인하여 전례에 따라 짐짓 접대하지만, 해조의

회답서계가 내려오기를 기다려서 재촉할 수 있겠는 바, 차왜가 예단 인삼을 바꾸려고 규정 외로 나온 것은 그 정상이 매우 미우나, 회답서계를 내려 보낸 뒤에라야 엄하게 신칙하여 돌아 들어가도록 독촉할 수 있겠다”고 하였으니, 해조에 명하여 즉시 거행하게 하시며, 답서 가운데는 ‘이 뒤로는 약조 외에 별사를 보내지 말라’는 뜻으로 엄한 말로 지어냄이 합당하니, 이렇게 분부함이 어떠할지?

차왜 굴여동(橘如棟)이 가져온 서계 별쪽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신목을 첨부하였으니 달하(達下)하시기를. 이전에 별차 굴여동이 가져온 서계에 대한 회답서계 및 동래 부산에서의 답장 초고를 승문원에 명하여 확정한 대로 말을 만들어 지어내라 하였는데, 별쪽의 회례 물건은 한결같이 도주가 대마도로 돌아온 것을 고하는 차왜의 별쪽 회례의 사례에 의거하여 마련하여 신목에 후록하였으니 급히 마련하여 별도로 차비역관을 정하여 내려 보내는 일로 해조 및 본도에 분부함이 어떠할지?

후록. 별쪽 회례 : 범가죽 1장. 표범가죽 1장. 흰 명주 5필, 흰 모시베 5필. 검은 삼베 3필. 흰 무명 10필. 황모필 20자루. 이상은 해조에서 마련함. 화석 3장. 녁장불인 유둔 2부. 참떡 20홀. 이상 본도에서 지급.

동래 부산 두 곳의 회례 : 각각 흰 명주 3필. 흰 모시베 3필. 검은 삼베 2필. 흰 무명 5필. 황모필 10자루. 이상 해조에서 마련.

비변사에서 입계하기를, “동래부의 왜관에 머무는 차왜가 많게는 100여 명에 이르러 예단 인삼을 갖추어 보내는 것이 하루가 시급한데, 호조판서 조영국이 바야흐로 서울 근교에 있으면서 지난 번 특별한 전교로 신칙하였음에도 아직까지 올라오지 않고 있으니, 그 일의 체면에 있어서 참으로 극히 미안하며, 변방의 일을 진작 거행하지 아니하여 또한 매우 걱정됩니다. 호조판서 조를 엄중하게 추고하여, 속히 올라 와서 업무를 살피게 함이 어떠할지?”라고 하였는데, 전교에 “윤허한다” 하셨습니다.

계유(1753) 4월 20일

동래부사 신위의 장달을 비변사에 내린 내용. 작년 임신조 송사선이 같은 해 11월까지 끝내 나오지 아니하여 진상 물건을 기한을 넘긴 연유는 전에 이미 치달하였으며, 같은 해 12월 일에 새해의 송사 제1, 2, 3호선이 막 이미 나온

일을 또한 장달하였거니와, 방금 바친 구 훈도 현태익과 현 훈도 황하성과 별차 황대일 등의 수본 내용에, “각 연도 송사는 전례에 따라 당년 초봄에 차례로 나오는 것이 본디 평소의 규정인데, 임신조 세견선이 10월에 이르도록 하나도 나오지 아니하였으므로, 전 훈도 현태익과 소인 등이 그 이유를 관수왜에게 탐문하였더니, 답하기를 ‘올해 정월에 구 도주가 죽고 새 도주가 같은 해 6월에 에도에서 나왔는데, 큰 일을 당한 나머지 매사를 처음 당하는지라 진상물건 역시 다 마련하지 못하여 자연히 지연되었다’고 합니다. 소인 등의 소견으로는 이렇게 별차왜가 계속 이어지는 때를 당하여, 임신년(1732)과 계유년(1753) 두 해의 송사가 한 해 사이에 답지하면, 그 접대에 사용되는 잡비가 너무 번다하여 지탱하기 어려운데, 이전부터 이와 같은 때에는 혹 그것을 겸대(兼帶)하여 오도록 권하고 중첩하여 오지 말게 하여, 한푼이라도 폐를 더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관수왜에게 말하기를, ‘임신조 송사는 한결같이 통신사와 감동(監董) 때의 사례대로 짐짓 정지하고, 같은 건에 대하여는 이듬해의 송사가 겸대하면 일이 매우 편하고 좋으니, 능히 주선하겠는가?’ 라고 하였더니, 동 왜인이 답하기를, ‘침지 등이 말하는 바가 편하고 합당할 듯하니 이 뜻을 먼저 도중에 통보하여 극력으로 주선하여 알려줄 계획이라 운운’ 하였습니다. 이제 배편에 임신조의 나오지 않았던 송사 중에 이때이양에서부터 부특송까지의 5송사를 정지하는 일로 봉행 등의 서계가 나왔다고 동 서계를 보여주었습니다. 봉행 등이 송사를 정지하는 서계를 대신 바치는 것은 비록 전례가 있기는 하지만, 외람스럽고 분수를 넘는 듯하므로 감히 받아내지 아니하고, 동 서계 등본을 우선 먼저 올려 보내며, 정지하는 한 조목은 이미 정해년(1707)과 병진년(1736) 아래에서 조정한 사례가 있으므로, 이제 또한 이대로 거행하는 연유를 수본하는 일”이라고 수본하였는데, 이는 비록 마땅히 정지해야 할 일이나, 품의한 뒤에 의논함이 마땅하지 임관(任官)이 혼자 스스로 시행한다고 한 것은 일이 매우 놀랍기에, 전례를 가져다 살펴보니 순치 5년 무자년(1708) 7월 일 그 때 부사 신 민응협(閔應協)의 장계 등록 가운데, 정해조 세견선이 많이 나오지 않았으므로 역관 홍희남(洪喜男)이 다례의 폐단을 덜려고, 전해에 나오지 않았던 각 송사선이 만약 올해 송사 걸음에 겸대하여 보낸다면 일이 매우 편하겠다고 여러 가지로 타이르고는, 그쪽 왜인이 번복이 많아서 혹시라도 약속을 어길까 우려하여 감히 곧장 먼저 치계하지 못하고, 겸대하여 나오기를 기다린 연후에 치계할 계획이라 하였다가, 겸대가 완전히 확정된 뒤에 비로소 장계로 알렸고, 1선과 2선은 당년에 이미 나와서 겸대하여 오지 않았고, 강희 15년 병진년(1736) 12월 일에 그 때 부사 신 이복(李馥)의 장계등록에는, 당시 왜관

을 옮기는 공사를 당하여 역관 김근행(金謹行)이 왜인과 사서(私書)를 주고받으면서, ‘새 왜관의 공사를 굳이 폐할 수가 없으나, 송사가 연례로 나오는데 다른 불일이 없으면 새 왜관이 조성되는 사이에 짐짓 내어 보내지 아니함으로써 한 푼의 폐단이나마 덜어주면 매우 다행이라 운운’ 하였고, 장계 등본 말단에 ‘명년의 여러 송사는 내어보내지 않는다’고 한 일이 있으니, 과연 김근행이 부지런히 부탁한 힘으로 말미암아 조정하는 것을 허락하였다고 하였고, 그 뒤로 1년 9송사의 연향 다례와 주봉배(晝奉杯)⁹³⁾ 등의 항목에 들어가야 할 물건을 시가로 환산하여 계신하니 꼭 530섬이라, 장계 가운데 ‘그 잡비의 폐단을 제하여 감한 것이 적지 아니할 뿐 아니라, 본부의 포진(鋪陳) 등의 물자와 부산의 시탄(柴炭) 등의 물건도 모두 감하여 줄인 가운데 들어가서 실로 다행이며, 수역(首譯) 김근행이 국사를 위하여 마음을 다하여 주선함으로써 큰 폐단을 제거한 실상이 또한 극히 가상하다. 운운’한 내용이 있으며, 그 때 비변사의 복계 사연에도 그대로 정지를 허락한다 하였고, 그 뒤 통신사와 왜관 수리 때도 모두 정해년(1707)과 병진년(1736)의 사례로 말미암아 세견선을 정지한 것이 많아서 전후의 사례가 비록 모두 명백합니다. 그러나 신의 생각으로는 세견선 8송사가 이미 약조인지라 수를 채우는 것을 늘 한결같이 해 왔는데, 저쪽에서 비록 사고가 있을 때라도 수시로 시행하거나 폐하는 것은 부당한 듯하며, 오직 앓는 것이 설혹 우리에게 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연례로 오는 송사는 체면에 관계됨이 있어서 또한 우리 쪽에서 중지하기를 청하는 것은 부당하거늘, 예전에 홍희남 김근행의 무리가 본부를 거쳐 조정에서 품신하지 아니하고 먼저 아래에서 주선하여 사서를 주고받았음에도, 전후의 변신(邊臣)이 그 잘못을 책망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다행한 일로 여긴 것은, 왜관 접대를 염려하고 국가를 위하여 경비를 줄이려는 계책이었고, 그 때 조정에서도 해가 되지 않는다고 복계하여 시행을 허락한 것 역시 도이(島夷)를 괴로워하여 그들이 드물게 오기를 바라는 뜻에서 나온 것입니다. 오늘 임역 들이 한갓 폐단을 제거하는 예전의 사례만 알았지, 품신하지 아니하고 곧장 먼저 5송사를 정지하는 서계가 나오도록 한 것은 생각지 아니하였으니, 이번의 5송사를 이전 대로 줄인다면 경비로 얻는 것이 매우 적지 아니하여, 비록 힘을 썼다고 일컫는 것은 불가하지는 않지만, 다만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그들이 멋대로 한 것을 먼저 용납하는 것은 끝내 일을 중시하는 도리가 아니며, 전례가 있다고 해서 신중하지 못하게 제멋대로 행한 죄를 신척하지 않아서는 불가하니, 조정에 명하여 죄를 따져 조정하

93) 주봉배(晝奉杯) : 대마도에서 송사선이 들어왔을 때 왜관을 담당하는 훈도(訓導)와 별차(別差)가 일본측의 정관(正官)과 술잔을 주고 받는 의식.

여 주시고, 봉행(奉行)의 서계에 있어서는, 이미 나온 뒤에 봉행이 대신 바친 것이라 하여 끝내 물리쳐 받지 않지는 않았던 것은 그 사례가 또렷하니, 또한 조정에 명하여 품의하여 분부해 주실 일.

이에 의거하여 **비변사에서 신목을 첨부하였으니 달하하시기를**. 전 동래부사 신위의 이 장달을 보면, 구 훈도 현태익과 현 훈도 황하성과 별차 황대일 등이 임신조로 아직 나오지 않은 5송사를 정지하는 일을, 품신을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스스로 사사로이 주선하여 이렇게 정지하는 서계가 나오게 된 것은, 비록 힘을 썼다고는 하나 제멋대로 행한 죄를 조정에 명하여 따져서 제정해 주시고, 서계가 나온 뒤에는 전례에 끝까지 물리쳐 받지 아니하는 것은 불가하니, 또한 조정에 명하여 품의하여 분부해달라고 하였는바, 이제 이 5송사의 정지는 공과 과실이 평평하고 또한 전례가 있어서 참작하여 용서하는 도리가 없어서는 불가하니, 임역 등의 죄를 논하는 한 조목은 이제 짐짓 그냥 두고, 봉행이 바친 것을 처음에 물리쳤다가 끝에 받은 것은 또한 그 전례가 많으니, 한결같이 물리쳐서 왜인들이 따지며 다투도록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니, 받도록 허락하게 함이 마땅한데, 이렇게 분부함이 어떠할지? 건륭 18년(1753) 4월 20일 우부승지 신 이지억(李之億)⁹⁴⁾ 차지로 입달하여 그대로 인준함.

이번 4월 30일에 대신과 비변사 당상을 인접하여 입대(入對)하였을 때, 우의정 김상로가 진달하기를, “여인을 가두어 두는 것은 큰 폐단이 있으므로 일찍이 대조(大朝)의 금령이 있었는데, 근래에 와서 분분하게 또 이전과 같다고 하니, 이 또한 금지하는 법령이 시행되지 않는 한 단서입이다. 다시 신척함이 어떠할지?”라고 하였는데, 영(令)에 이르기를 “그대로 하라”고 하셨음. 또 진달하기를 “이것은 경상도 좌수사 이사선(李思先)의 장달입니다. 대마도 도주가 새로 서면 전례로는 차왜를 보내어 도서(圖書)를 받아 가기를 청하는데, 이제 이번 차왜의 문정 때 ‘청(請)’ 자가 누락되었으니 소홀한 책임을 면치 못합니다. 당해 별차 황대일의 죄상을 묘당에 명하여 품의 조처하기를 청합니다. 문정의 일이 중대함에도 당초 상세하게 살피지 않아서 이렇게 소루함이 있었으니 매우 놀라운 일이나, 황대일은 예단 인삼의 일로 대조의 처분을 받아 마침 도배(島配:섬으로 유배함)를 하였기에, 이만한 죄를 징계하는 것은 이제 논할 것이

94) 이지억(李之億, 1693-1770) : 연안이씨로 자는 덕수(德叟), 호는 성현(醒軒)이다. 영조 27년(1751) 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거쳐 도승지, 공조 형조 병조의 판서를 역임하였다.

없으니, 장달 내의 사연은 그냥 둬야 어떠할지?” 하였는데, 영에 “그대로 하라” 하셨음.

계유(1753) 5월 초9일

이번 5월 초9일에 약방에서 입진하여 좌우상과 예조판서와 어제(御製)를 편찬하는 사람과 호조와 병조판서가 함께 입시하였을 때 **호조판서 이창의(李昌誼)⁹⁵⁾**가 **입계하기를**, “인삼의 일로 돌고 돌아 이런 지경에 이르러, 조정의 근심을 번거롭게 하게 되었는데, 이는 모두 국가 기강이 해이해지고 간사한 허위가 날로 불어나서, 임역(任譯)들이 잠상(潛商)과 더불어 부동(符同)하여 조종하는 소치입니다. 비록 전 동래부사의 장계 가운데 왜역 등이 스스로 담당하기를 원한다는 이야기나, 지난 겨울 현태익이 미삼(尾蔘)을 가지고 들어가기를 청한 것으로 보더라도, 저들의 정상을 환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인삼을 보낸 뒤로 만약 또 중간에서 조종하여 전처럼 점퇴(點退)하는 일이 있다면, 훈도 별차 두 사람은 결단코 용서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왜관 앞에 효시하라고 분부함이 어떠할지?” 하였는데, 상감께서 “진달한 바가 매우 옳다. 그대로 하라”고 하셨음.

예조단자. 이제 이번 새 도주 평의번(平義蕃)이 사용할 도서(圖書)를 이미 주조하여 만들었으니 전례대로 본조의 서리(書吏)가 지니고 동래부로 가되, 타는 말 1필을 병조에 명하여 지급하게 함이 어떠할지? 입달하여 입달한 바대로 시행함.

계유(1753) 5월 7일

동래부사 **이이장(李彝章)**이 **비변사에 보고한 첩정(牒呈) 내용**. 방금 도부한 예조에 달하(達下)한 관문 내용에, “이전에 별차왜 굴여동이 가져온 서계의 회답 및 동래 부산에서의 답장 초고를 승문원에 명하여 확정하여 말을 만들어 지어내게 하였는데, ‘별폭의 회례 물건은 한결같이 도주가 대마도로 돌아온 것

95) 이창의(李昌誼, 1704-1772) : 전주이씨로 자는 성방(聖方)이다. 영조 11년(1735) 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거쳐 우의정에 이르렀다.

을 알리는 차왜의 별폭 회례의 사례대로 마련하여 내려 보내는 일로 분부함이 어떠할지?’ 라고 입달하여 그대로 인준한 일이 있었기로, 달하 내용의 뜻을 봉심하여 시행하라”는 일로 관문이 있었는데, 전례를 가져다 살펴보니, 재판차왜와 고지차왜의 접대와 회례는 후하고 박하기가 현격하게 달라서, 접대로 말하자면 재판은 3차례 연회를 베풀고 섬으로 돌아갈 적에는 2차의 연회를 베풀며, 회례로 말하자면 고환차왜는 재판차왜에 비하여 감하는 것이 인삼 2근, 흰 명주, 흰 모시베 등 각 33필과 흰 무명 50필이며, 다른 나머지 물종 역시 모두 번갈아 감하는데, 이제 이번 재판은 바라지 말아야 할 것을 바라며 억지로 떠들고 번거롭게 청하니 그 정상이 참으로 매우 가증스러운데, 저쪽에서 이미 재판이라고 이름하였기에 조정에서 또한 재판으로 접대하기를 허락하였는데, 이제 갑자기 강등하여 줄여서 고환차왜의 사례로 베푸다면, 교활한 왜인이 필시 순순하게 받을 리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로서도 답하는 말이 또한 말하기가 어려운데, 조정에서 그 번거롭게 떠드는 것을 통절하게 미워하여 이렇게 억제하라고 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설혹 이렇게 하더라도 이번에 특별히 감하여 줄이라는 지휘가 있었음을 밝힌 뒤에라야 변방 신하가 이에 의거하여 따라서 봉행할 수 있겠으며, 인하여 생각건대 이전부터 재판이 바라서는 안될 것을 억지로 청하지 않음이 없어서 정상이 통탄스러워서, 청하는 바를 비록 엄하게 물리치지만, 접대와 회례를 한결같이 차왜의 호칭대로 하여 감하여 줄인 적이 없으니, 이제 만약 강등하여 고환차왜의 사례를 따른다면 물리치는 바의 본디 일에 보탬이 없고 한갓 분쟁의 사단만 야기시켜서 참으로 우려되기에 연유를 첩보하오니, 비변사에서 일의 형세를 참작하시어 분명하게 지휘를 내려줄 일.

이에 의거한 **제사 내용**. 이번 차왜의 차출은 비록 규정외이기는 하지만 이미 재판이라 명칭을 칭하였고, 조정에서 단지 접대를 허락하였는데, 고환차왜의 사례대로 물건을 감하여 깎는 것은 먼 외국 사람을 회유하는 도리가 아니니, 재판의 사례대로 시행함이 마땅한 일임.

예조의 신목. 동래부사가 이번 규정 밖에 나온 차왜를 재판의 사례에 의거하여 접대한다는 뜻으로 비변사에 논보하였고, 비변사에서도 또한 재판의 사례로 시행하라는 일로 본조에 감결을 받았으나, 차왜 굴여동이 가져온 서계의 회답 및 별폭의 회례를 도주가 대마도로 돌아온 것을 알리는 별폭의 사례대로 마련하라고 달하하여 이미 내려 보냈는데, 이제 재판차왜로 이미 접대한다면 별폭의 회례 및 차왜 등의 연례에 사용될 예단 잡물을 마땅히 바꾸어 마련해야 하

기로, 동 물목 아래에 전에 이미 내려 보낸 물건에는 주를 달아 신목에 후록하였으니, 그 나머지 잡물을 급속히 마련하여 별도로 차비역관을 정하여 지니고 내려 보내는 일로, 해조 및 본도에 분부하시되, 별폭은 승문원에 명하여 고쳐 적어 내려 보내게 하고, 전에 내려 보낸 별폭은 되돌려 올려 보내라는 뜻으로 아울러 알림이 어떠할지?

후록. 별폭 회례 : 인삼 1근. 해조에서 갖추어 보냄. 흰 무명 1필. 이상 이미 갖추어 보냄. 황모필 30자루 중 20자루는 전에 이미 내려 보냈고 10자루를 갖추어 보냄. 녁장 붙인 유둔 2부. 화석 3장. 이상은 전에 이미 갖추어 보냄. 참떡 30홀. 20홀은 전에 이미 갖추어 보냈고 10홀을 갖추어 보냄.

동래 부산 두 곳의 회례: 각각. 흰 명주 3필. 흰 모시베 3필. 검은 삼베 2필. 흰 무명 5필. 이상은 전에 이미 갖추어 보냄. 황모필 20자루 중 10자루는 전에 이미 갖추어 보냈고 10자루를 갖추어 보냄. 녁장 붙인 유둔 1부. 화석 2장. 참떡 20홀. 이상 본도에서 지급.

차왜의 하선연, 상선연과 왜관에 머물 때의 별연(別宴) 도합 3차의 연회에 증정할 것. 각각. 인삼 1근. 흰 명주 5필. 흰 모시베 5필. 검은 삼베 3필. 흰 무명 5필. 황모필 30자루. 이상 해조에서 마련함. 녁장 붙인 유둔 2부. 화석 3장. 참떡 30홀. 이상 본도에서 지급.

압물 1인, 시봉 1인: 각각 3차 연회에 증정할 것. 각각 흰 명주 1필. 흰 모시베 1필. 흰 무명 2필. 이상 해조에서 마련함.

반중 10명 각각 3차 연회에서 증정할 것. 각각 흰 명주 1필, 흰 모시베 1필. 흰 무명 2필. 이상 해조에서 마련함. 입달함.

일본국 대마주 봉행(奉行) 평성태(平誠泰) 등 봉서(奉書). 조선국 동래 부산 두 대인 합하. 중춘에 생각건대 평소대로 진중하고 적당하시리라 생각하며 우려러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이에 고하오니 임신조 송사는 사고가 있어서 기일을 늦추었는데, 이제 관(館)의 보고를 접하니, 임역 등이 고하기를 임신년(1752)과 계해년(1743) 두 해 조의 송사가 함께 한 해 내에 나오면 귀국에서 수용하는데 폐단이 있으므로, 통신사와 감동(監董) 때의 사례에 의거하여, 임신년(1752) 이때이양 송사에서부터 같은 해의 부특송사에 이르기까지 모두 정지하고, 후일에 이런 때가 있으면 전례로 인용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세사(歲使)가 나가는데는 원래 정해진 약조가 있어서 함부로 정지하는 것은 옳지 않으나, 그렇지만 일이 평상시와 다른지라 보내온 뜻에 꼭진히 부응하겠지만, 결코 후일의 사례로 삼아서는 안되며, 올해 조의 송사에 있어서는 마땅히 평상시의

규정을 준수하여 계속하여 차출하여 보냄이 마땅하니, 아무튼 양지하시기 바라며 삼가 이만 갖추지 못합니다. 보령 3년 계유(1753) 2월 일. 대마주 봉행 평성태(平誠泰). 등여향(藤如鄉). 평여방(平如房). 모두 도장을 찍음.

이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신목을 첨부하였으니 달하하시기를. 이전에 봉행 등이 임신조 이떼이양, 제4선, 1특송, 만쇼잉, 부특송사를 정지하는 일로 동래 부산으로 서찰을 바쳤는데 회답은 정묘년(1747)의 사례에 의거하여 곧바로 도주에게 보내는 것으로 확정하고, 서계는 승문원에 명하여 말을 만들어 지어내게 하여 별도로 금군을 정하여 지니고 내려 보내는 일로 분부함이 어떠할지? 건륭 18년(1753) 5월 17일 동부승지 신 조명정(趙明鼎)⁹⁶ 차지로 입달하여 그대로 인준함.

계유(1753) 5월 27일

동래부사 이이장이 이달 16일에 성첩한 장달. 이달 초에 도부한 부산첨사 박태정의 치통에, “방금 다대포첨사의 치통을 접하니, ‘당일 조선 배인지 왜선인지 분간되지 않는 배 1척이 바다 가운데서 나오다가 표류하여 본진 경내로 향하는데, 비가 내리고 구름과 안개 가운데 그 배의 수를 분간하지 못한다는 봉군의 진고에 의거하여, 초탐하기 위하여 본진 이선장 방수업(房守業)을 차출하여 보냈는데, 동 분간되지 않은 배는 과연 왜인의 큰 배로, 당일 두송산 앞바다에 도착해서 상봉하여, 영술 예인하여 본진 앞바다에 정박하였다’고 하기에, 이에 의거하여 그대로 수호하라는 일로 신칙하고 연유를 치통하며, 문정하는 일로 별차 박종대(朴宗大)⁹⁷에게 엄하게 신칙하여 정하여 보낸다” 운운 하였음. 초6일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에, “방금 다대포첨사의 치통을 접하니, ‘본진에 정박한 왜인의 큰 배 1척에 문정한 사연은 별차의 수본에 있다는 호송장의 치보에 의거하여’라고 하였고, 일시에 도부한 별차의 수본 내용에, ‘다대포 앞바다에 표류하여 정박한 왜선에 문정하였더니, 도중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

96) 조명정(趙明鼎, 1709-1779) : 임진조씨로 자는 화숙(和淑), 호는 노포(老圃)이다. 영조 16년(1740) 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거쳐 대사헌, 이조판서, 우참찬을 역임하였다.

97) 박종대(朴宗大, 1700-?) : 밀양박씨로 자는 군석(君碩)이다. 영조 1년(1725) 역과에 왜학으로 합격하여 교희(敎誨)를 역임하였다.

고, 당년조 제1선 송사의 수목선에 격왜 15명, 교대차 나온 소금도왜 2명, 하대 왜 1명 등이 함께 타고 노인과 단목(丹木) 1,000근, 백반(白礬) 2,000근을 실어 가지고, 공작미를 실어가기 위해 저희들의 배 1척이 어제 이른 아침에 대마도에서 발선하여 곧바로 관소로 향하다가, 물마루에 이르러 구름과 안개가 내린 가운데 바람 형세가 불순하여, 같은 날 유시 쫓에 표류하여 이곳에 이르렀다고 운운하였다'는 수본에 의거하여 치통한다" 하였음. 같은 날⁹⁸⁾ 이 시각에 도부한 부산첨사의 치통에, "다대포 앞바다에 정박한 왜인의 큰 배 1척은 초7일 진시에 출발하여 사시에 영술하여 관소에 부쳤다는 호송장의 치보에 의거하여, 즉시 훈도 박상순(朴尙淳)과 별차 박종대(朴宗大) 등에게 문정하게 한 사연은 동 왜선이 다대포로 표류하여 정박하였을 때 별차가 혼자 가서 문정한 것과 다름이 없고, 소지한 노인은 그 전면에 '각 도 각관 방어소'라 써 넣은 것이 격식에 어긋나기로 물리쳐 받지 아니하고, 고쳐 적어 바치라는 뜻으로 관수왜에게 책망하여 타일렀다는 수본에 의거하여 치통한다" 하였음. 15일에 조선 배인지 왜선인지 분간되지 않는 배 2척이 물마루에서 나온다고 봉군이 진고하였고, 뒤따라 부산첨사의 치통을 접하니 사연은 한가지인데, "초탐하기 위하여 개운포 만호 김두징(金斗徵)을 정하여 보냈는데, 위의 분간되지 않은 배2척은 과연 왜인의 작은 배라 영술하여 관소에 부쳤다는 초탐장의 치보에 의거하여 즉시 훈도 별차 등에게 명하여 문정하게 한 수본 내용에, '도중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고, 제1척 비선에 두왜 1인, 격왜 6명, 교대차 나온 별금도왜 1인, 소금도왜 1명 등이 함께 타고, 노인 및 생동 12칭(稱)을 실어가졌으며, 제2척 비선에 두왜 1인, 격왜 6명, 교대차 나온 중금도왜 1인 등이 함께 타고 노인 및 관수 대차왜 등에게 보내는 사서를 가지고, 2척이 당일 대마도에서 함께 발선하여 나왔다 운운' 하였으며, 소지한 노인 2통은 이전대로 보낸다"고 치통하였는데, 위에 나온 왜인의 큰 배의 노인은 고쳐 적어 바치라는 뜻으로 다시 임역에게 명하여 관수에게 책망하여 타이르게 하였음. 관수왜 평구경(平久敬) 원역 등의 하선 다례를 이달 15일에 베풀어 행하였고, 바친 예조로 보내는 서계와 별폭 각 1통과 동래 부산으로 보내는 서계 1통과 별폭 2통 및 비선의 노인 2통을 감봉하여 해조로 올려 보내며 연유를 치달하는 일임.

계유(1753) 6월 11일

98) 문맥으로 보아 이 뒤의 내용은 앞의 내용과 날짜가 달라야 한다. 그러므로 이 앞에 상당한 문장이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

비변사에서 입달(入達)하기를, “방금 동래부사 이이장이 본 비변사에 보고한 첩보 내용을 접하니, ‘이번 차왜(差倭)는 비록 규정 이외이지만 이미 재판(裁判)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는데, 조정에서 한편으로 접대를 허락하였다면, 예조에서 회서(回書)는 전례에 따라 말을 하는 외에, 「두 나라의 약조가 금석과 같은 정도가 아닌데 이제 이렇게 특별한 사절을 보내는 것은 규정 밖의 일이니, 이 뒤로는 모름지기 별차(別差) 사개(使价)는 한결같이 약조를 준수하라」는 등의 말이 있습니다. 종전에는 규정 밖에 차왜가 나와 번거로이 청을 하면 조정에서 엄한 말로 물리쳐 보내고, 그 회서(回書)에는 전례에 따라 말을 하면서 다른 사연은 없었는데, 이번에는 차왜의 명칭이 특별한 별사(別使)가 아닌데도 회서 가운데 별사(別使) 별차(別差) 운운한 것은, 필시 분노하게 될 사단이 될 터이니, 서찰이나 혹은 중간에 그다지 관계가 없는 일로 저들로 하여금 말꼬리를 잡게 하는 것은 좋은 계책이 아닌지라, 전례에 따라 회서를 고쳐 지어 내려 보내 달라’고 하였습니다. 변방 신하의 보고 사연은 참으로 좋은 의견이니, 청한 바대로 해당 승문원과 해당 예조에 분부하여 쓸데없는 말을 달지 말고 전례에 따라 고쳐 지어 즉시 내려 보내고, 앞서 간 회서(回書)는 해조로 되돌려 올려 보내게 함이 어떠할지?” 하였는데, 영(令)에 이르기를 “그대로 하라” 하셨습니다.

예조에서 입달하기를, “비변사에서 입달한 내용으로 말미암아 이번 차왜는 비록 규정 밖에 나온 것이나 이미 재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니 조정에서 접대는 허락하였으니, 예조의 회서(回書)를 전례에 따라 고쳐 지어 내려 보내는 일로 그대로 달하(達下)하였는데, 달하한 사연에 의거하여 회답 서계(書契)는 승문원에 명하여 재판(裁判)의 사례에 의거하여 고쳐 지어 내려 보낼 일이나, 동래부산에서 보내는 초고(草稿)는 달리 하는 말이 없어서 고쳐 지을 필요가 없으니 전에 내려 보낸 초고를 그대로 적어서 주며, 본조의 서계는 되돌려 올려 보내라는 뜻으로 동래에 아울러 분부함이 어떠할지?” 하였는데, 영(令)에 이르기를 “그대로 하라” 하셨습니다.

계유(1753) 7월 23일

이번 7월 23일에 대신과 이정청 당상을 함께 인견하여 입시하였을 때, **호조 판서 이창의가 계품하기를**, “예단 인삼의 일은 실로 국가의 회계와 변방 정세에 매우 긴요하고 중대합니다. 그러므로 신은 지난번에 판서의 세미(稅米)

4,000섬을 얻어 도신과 누차 문서를 오가면서 상의하고 인하여 또 산원(算員)을 보내어 시가대로 발매(發賣)하였는데, 방금 그 보고를 접하니 각 읍에서 영문(營門)에 갚을 것이 도합 전 12,200냥이라고 하니, 이제 만약 그것을 모조리 돈으로 만들어 일제히 강계로 보낸다면, 인삼 철이 이미 늦어 실로 낭패의 우려가 많은데, 일의 형세가 매우 급하여 변통하는 도리가 있어야 합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기영(箕營:평양 감영)의 모양(某樣) 기부전(記付錢)을 은(銀)이든 전(錢)이든 막론하여 짐짓 먼저 이 수량대로 추이(推移:전용)하여 즉시 편의대로 본부에 들여보내게 하고, 그 본래 쌀값을 다 팔기를 기다려 수량에 맞추어 되돌려 채우도록 한다면, 일이 둘 다 매우 편할 것입니다. 신이 함문(閤門) 밖에 있으면서 대신들과 상의했더니, 또한 그것이 편하고 좋다 하니, 즉시 이대로 거행하도록 명하고, 한결같이 작년의 사례대로 강계부에서 착실하게 관리하여 특별히 가려서 사들여 보내는 일로 아울러 엄하게 신척하게 함이 어떠할지?” 하였는데, 상감께서 “진달한 바가 참으로 그렇다. 예단 인삼 값을 지금 상주한 바대로 특별히 엄하게 신척하여 즉시 거행하게 하라”고 하셨음. 또 계품하기를 “작년 강삼(江蓼)은 실로 변방 주민을 염려하시는 뜻에서 나온 것인데, 이제 관서백(關西伯:평안감사)이 강계부의 보고로 말미암아 비변사에 전보(轉報)한 것을 보면, 인삼 품질을 구별하여 값의 고하를 정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대개 예단 인삼을 포장할 때는 전례에 따라 상품과 중품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당초 본조에서 사들이기를 청한 것은 단지 하품 인삼에 있는데, 이제 와서 인삼 품질을 구별하는 것은 원래 논할 것이 없고, 가격에 대하여는 전전 호조판서 김상성이 하삼(下蓼) 때 1근을 은 120냥으로 환산하여 정한 뒤로 절목을 계하하였다가, 곧장 전 호조판서 조영국이 진달하여 그 중 20냥의 수를 감하게 하였으나, 1근에 100냥의 값 또한 적지 않지만, 이것은 교린과 관계된 중대한 물자이고, 또한 장차 해마다 사들여야 하니, 참작하여 덜고 더하는 도리가 없어서는 불가합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그 원가 및 줄인 가격의 가운데를 절충하여 작정함으로써 영구히 준행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니, 대신들에게 두루 물어보고 조처함이 어떠할지?” 하였는데, 좌의정 이천보(李天輔)가 말하기를 “예단 인삼의 일은 곧 백성들과 매매하는 것이니, 그 값을 되도록 후하게 지급하는 것은, 아래에 더해 주는 정치에 해롭지 않은데, 전 호조판서가 이미 그 중 20냥을 감하였으니, 신의 생각으로는 110냥으로 작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하였고, 상감께서는 “호조판서의 뜻은 아마 그 중간으로 절충하려고 하는 듯한데, 아래 사람에게 더해 주는 도리에 있어서 어찌 10냥을 아끼겠느냐? 김상성이 상주한 대로 시행하라”고 하셨음.

계유(1753) 8월 15일

통제사 조동점이 이달 초4일에 성첩한 장달 내용. 왜선 2척이 나온 연유는 위와 같은데, 왜선 2척이 바람을 타고 돛을 걸고 곧바로 좌도를 향할 때, 영솔 호송하는 장수 조라포 만호가 1척의 배로는 갑자기 다투어 잡지 못한 것은 형세가 그러한 듯하고 또한 간사한 사정은 없으나, 신척하는 도리에 있어서는 전연 그냥 두어서는 불가하니, 조라포만호 서정복(徐廷復)을 신의 통영으로 잡아다가 엄중하게 곤장을 쳐서 후일을 징계하고 연유를 치달하는 일임.

계유(1753) 9월 초6일

동래부사 이이장이 지난 8월 30일에 성첩한 장달 내용. 이달 초7일에 도부한 부산첨사 이명운(李命運)의 치통 내용에, “올해 7월 23일에 나왔던 비선에 두 왜 1인, 격왜 6명, 올해 3월 17일에 나왔던 중금도왜 2인 등이 함께 타고 관수재판대차왜 등의 사서를 가지고 당일 곧바로 관소에서 발선하여 돌아 들어갔다는 훈도 박상순과 별차 박종대 등의 수본 및 구봉봉군의 진고에 의거하여 연유를 치통한다” 하였음. 초9일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에, “올해 4월 26일에 나왔던 진해 창원의 표류민을 영솔해 온 차왜의 배에 격왜 40명, 임신년(1752) 9월 30일에 나왔던 소금도왜 3명, 올해 3월 17일에 나왔던 중금도왜 1명 등이 함께 타고, 공작미를 실어가지고 돌아 들어가기 위해 당일 수문 밖에서 바람을 기다린다는 훈도 별차 등의 수본에 의거하여, 수호하기 위해 개운포만호 김두징을 정하여 보내고 연유를 치통한다” 하였음. 11일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수문 밖에서 바람을 기다리던 왜인의 큰 배 1척이 당일 발선하여 돌아 들어갔다는 수호장의 치보 및 봉군의 진고에 의거하여 치통한다” 하였음. 12일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에, “저희 진에서는 이번 가을 조련에 참여하러 나가기 위하여 여러 선박들을 거느리고 당일 발선하였고, 올해 7월 26일에 나왔던 임신조 1특송 수목선에 격왜 20명, 올해 2월 21일에 나왔던 소금도왜 1명, 올해 3월 17일에 나왔던 별금도왜 1인, 소금도왜 1명 등이 함께 타고 공작미를 실어가지고, 올해 8월 초5일에 나왔던 비선에 두왜 1인, 격왜 6명, 신미년(1751) 10월 21일에 나왔던 별대관왜 1인, 임신년(1752) 12월 21일에 나왔던 하대왜 1명이 함께 타고 관수재판대차왜 등의 사서를 가지고 도합 2척이 당일 곧바로 관소에서 발선하여 돌아 들어갔다는 훈도 별차 등의 수본 및

봉군의 진고에 의거하여 연유를 치통한다” 하였음. 방금 바친 훈도 별차 등의 수본 내용에, “재판차와 굴여동 원역 등의 상선연은 행하지 아니하고 건물을 받기를 원한다”는 수본에 의거하여 동 연회에 사용될 잡물을 그 소원대로 이번 16일에 수량을 대조하여 들여 주었음. 22일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에, “올해 5월 18일에 나왔던 무진조 제5선에 격왜 30명, 임신년(1752) 12월 21일에 나왔던 임신조 제1선 송사와 평성징(平盛澄), 도선주 등상효(藤尙孝), 봉진압물왜 1인, 반종왜 3명, 임신년 10월 초1일에 나왔던 중금도왜 1명, 올해 정월 19일에 나왔던 중금도왜 1인, 올해 3월 17일에 나왔던 소금도왜 2명, 올해 5월 19일에 나왔던 무진조 제6선에 격왜 30명, 임신년(1752) 10월 21일에 나왔던 임신조 제2선 정관왜 굴상춘(橘常春), 반종왜 1명, 제3선 정관왜 등구청(藤久淸), 반종왜 1명, 올해 2월 21일에 나왔던 대마도주가 대마도로 돌아온 것을 알린 차왜 정관 평영행(平榮行), 봉진압물왜 1인, 반종왜 5명, 하대왜 1명, 올해 2월 26일에 나왔던 중금도왜 1인, 중금도왜 1인 등이 나누어 타고 각기 공작미를 싣고 돌아 들어가기 위하여 어제 수문 밖에서 기다린다는 훈도 별차 등의 수본에 의거하여, 개운포 만호는 이번 가을 조련에 참여하러 가고 동 포구의 유진장 유지봉(兪枝鳳)을 수호장으로 정하여 보냈는데, 동 왜인의 큰 배 2척이 오늘 발선하여 돌아 들어갔다는 유진장의 치보 및 봉군의 진고에 의거하여, 본진의 유진장 방응채(房應彩)가 치보하였기에 연유를 치통한다” 운운 하였음. 같은 날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에, “올해 3월 17일에 나왔던 도서(圖書)를 고쳐 주기를 청하는 대차왜의 견선(撿船)에 격왜 20명, 중금도왜 1인, 올해 5월 15일에 나왔던 별금도왜 2인 등이 함께 타고, 관수재판대차왜 등의 사서 및 대관왜의 짐을 실어가지고, 당일 곧바로 관소에서 발선하여 돌아 들어갔다는 훈도 별차 등의 수본 및 봉군의 진고에 의거하여 본진 유진장이 치보하였기에 연유를 치통한다” 하였음. 23일에 조선 배인지 왜선인지 분간되지 않는 배 3척이 물마루에서 등불을 달고 나온다고 황령산봉군 이백수(李白秀)가 진고하였는데, 추후에 접한 부산첨사의 치통 내용에, “첨사는 조련에 참여하기 위하여 수영으로 갔다가 오늘 진으로 되돌아 왔으며, 당일 조선 배인지 왜선인지 분간되지 않는 배 3척이 물마루에서 등불을 달고 나온다는 봉군의 진고에 의거하여 초탐하기 위하여 본진의 군관 신만흥(辛萬興)을 정하여 보낸다”고 하였음. 24일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에, “어제 나오던 분간되지 않는 배 3척은 과연 왜인의 작은 배로 당일 영솔하여 관소에 부쳤다고 초탐장이 치보하였으며, 일시에 도부한 훈도 별차 등의 수본 내용에, ‘왜인의 비선 3척이 관소에 도착 정박하였으나 수문이 이미 닫혀 문정하지 못하고, 밝기를 기다려 문정할 계획이라’

는 하였기에 연유를 치통한다” 하였음. 같은 날 동 첨사가 치통하기를 “방금 접한 훈도 별차 등의 수본에, ‘오늘 관소에 도착한 비선 3척에 오늘 아침에 가서 문정하였더니, 도중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고, 제1척 비선에 두왜 1인, 격왜 6명, 교대차 나온 중금도왜 1인 등이 함께 타고 노인 및 관수재판대차왜 등에게 보내는 사서를 가졌으며, 제2척 비선에 두왜 1인, 격왜 6명, 교대차 나온 별금도왜 1인, 소금도왜 1명 등이 함께 타고, 노인 및 별대관왜의 짐을 실어 가졌으며, 제3척 비선에 두왜 1인, 격왜 6명, 교대차 나온 중금도왜 1인이 함께 타고 노인 및 별대관의 짐을 실어가지고 나왔는데, 동 왜인의 말이, 저희들 비선 3척은 어제 아침 대마도에서 함께 발선하여 밤이 깊은 뒤에 근근이 노를 저여 도착 정박하였다 운운 하였으며, 소지한 노인 3통을 받아 올려 보낸다’는 수본에 의거하여, 동 노인 3통을 이전대로 보내며 연유를 치통하며, ‘관수왜 등의 조상 분묘가 구관 뒷산에 있는데, 이제 추사일(秋社日)을 당하여 이번 27일에 전례대로 가서 살피겠다고 운운하기에, 이번 26일이 추사일인데 어찌하여 27일을 사일(社日)이라 하는가 하였더니, 왜인들이 답하기를, 저희 나라 헌서(憲書)에는 27일을 추사일이라 운운하였다’는⁹⁹⁾ 훈도 별차 등의 수본에 의거하여, 왜인들이 출입할 때 별차가 소통사와 더불어 데리고 왕래하여 함부로 횡행하지 못하게 하라는 뜻을 신칙하고 연유를 치통한다” 하였음. 같은 날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에, “올해 6월 15일에 나왔던 임신조 1특송 2호선에 격왜 30명, 임신년 12월 21일에 나왔던 재판차왜 굴여동, 봉진압물 1인, 반중왜 10명, 통사왜 1인, 임신년 정월 24일에 나왔던 도금도왜 1인, 올해 3월 17일에 나왔던 중금도왜 2인, 올해 3월 24일에 나왔던 문위역관 호환(護還) 별금도왜 1인 등이 함께 타고 공작미 및 그의 기용 잡물을 실어가지고 돌아 들어가기 위해 당일 수문 밖에서 바람을 기다리다가, 재판차왜의 시봉왜는 신병으로 뒤쳐졌다는 훈도 별차 등의 수본에 의거하여, 수호하기 위하여 두모포 유진장 김중구(金重九)를 정하여 보내고 연유를 치통한다” 하였음. 29일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에, “수문 밖에서 바람을 기다리던 왜인의 큰 배 1척이 오늘 발선하여 돌아 들어갔다는 수호장의 치보 및 봉군의 진고에 의거하여 치통한다” 하였음. 위에 나온 비선 3척의 노인 3통을 감봉하여 해조로 올려 보내고, 금년조 제1선 제2선 제3선 송사왜 등의 하선연을 이달 29일로 정하였는데, 신은 신병이 갑자기 엄중하여 가서 참여하지 못하고, 부산첨사 이명운이 혼자 초량객사로 가서 동 송사왜 등에게서 진상을 받은 뒤에, 그대로 연청으로 가서 하선연을 전례대로

99) 원본에 ‘日云爾則倭人等答以爲弊邦憲書則以二十七日爲秋社’ 23자가 중복되어 있으므로, 중복된 부분은 번역하지 않았다.

배풀었다는 일로 연유를 치달하는 일임.

계유(1753) 11월 21일

경상좌수사 이사선이 이달 초9일에 성첩한 장달 내용. 당일 도부한 이달 초7일에 성첩한 옥포만호 손명혁(孫命奕)과 조라포만호 서정복(徐廷復), 지세포만호 김세형(金世珩) 등의 한결같은 치보 내용에, “당일 옥포의 옥산(玉山) 망군 양인(良人) 이시필(李時必)과 조라포 토병(土兵) 사노(私奴) 설재창(薛再昌), 지세포 눌일곶(訥逸串) 망군 정병(正兵) 박중삼(朴重三) 등이 일시에 진고하기를, ‘조선 배인지 왜선인지 분간되지 않는 배 3척이 호운도 앞바다에서 나와 바다가운데 떠 있으면서 갈 듯 말 듯 하다가, 그대로 밤이 되고 어두워서 척 수와 향하여 간 곳을 아직 또렷이 모른다’고 하기에, 밝기를 기다려 상세히 관측하여 다시 고하라는 뜻으로 엄하게 신칙하고 치보한다” 하였음. 추가로 도부한 초8일에 성첩한 동 만호 등의 다시 보낸 치보에, “당일 망군 등이 진고한 내용에 ‘밝기를 기다려 상세히 관측하니, 어제 분간되지 않는 배 3척 가운데 2척은 밤 사이에 향하여 간 곳을 모르고, 1척은 표류하여 옥포 경내 양주암으로 향한다’고 하기에, 탐지하기 위해 만호 등이 배를 타고 바다로 내려가 노를 재촉하여 옥포의 능포(凌浦) 앞바다로 전진하였더니, 왜인의 큰 배 1척이 과연 표류하여 왔기에 상봉하여 영술 예인하여 옥포 강 입구에 정박하여 수호한다”고 치보하였음. 일시에 도부한 옥포왜학 유극화의 수본 내용에, “이달 초8일에 왜인의 큰 배 1척이 표류하여 정박하였기에 달려가서 문정하였더니, 재판 끌어동이 탄 배가 재차 건너왔는데, 배를 모는 격왜 40명, 교대차 나온 중금도왜 2인, 소금도왜 2명 등이 공작미를 실어가기 위하여 흑각(黑角) 300통(桶) 및 관수왜에게 보내는 사서 1통과 노인을 함께 가지고 함께 타고 나왔기로, 그 도중의 사정 및 바람에 표류한 연유를 탐문하였더니, 동 왜인들의 말이 ‘도중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고, 큰 배 2척과 비선 1척이 어제 아침에 대마도에서 일시에 발선하여 곧바로 관소로 향하다가, 이미 물마루를 지나 바람 형세가 불순하고 그대로 밤이 어두워서 큰 배 1척과 비선 1척은 향한 곳을 모르고, 저희들이 탄 배는 가덕도 바깥 바다에 닻을 내리고 밤을 지낸 뒤 근근이 전진하다가, 오늘 표류하여 오늘 이곳에 도착하였다’고 하였으며, 노인의 피봉 가운데 재판이 배를 탄 연조(年條)를 적어 넣지 않았기에 동 왜인들에게 물었더니, 답하기를 ‘동 연조는 또한 모른다’고 하였기에 연유를 아울러 치보한다” 하였음. 동 왜선 1

척에 땀감 나무와 양식과 반찬을 전례대로 찾아 지급하라는 뜻으로 지방관 거제부사 최암에게 관문을 발송하여 분부하고, 향한 곳을 모르는 배 2척은 탐문하여 치보하라는 뜻으로 연해 각 진에 신칙한 일임.

계유(1753) 12월 13일

황해감사의 이문(移文) 내용. 본 감영은 수륙의 요충지에 처해 있어서 칙사(勅使)가 왕래할 때나 당선(唐船:중국 배)이 와서 정박할 때나 문정하는 등의 절도는 오로지 역학에게 책임을 지우는데, 하물며 지금은 서쪽 바다에 때 아닌 당선이 와서 정박하면 본영의 역학을 시켜 가서 그 사실을 묻게 하고 그 동정을 살피는 것이 한두 번에 그치지 아니하니, 그 책임이 참으로 가볍지 않고 무겁습니다. 본영의 역학 이명직(李命稷)의 임기가 이미 박두하여 오래잖아 마땅히 바뀌어야 하거니와, 근래에 역학은 매양 연소하고 배우지 않아서 한학(漢學: 중국어)을 잘 알지 못하는 무리를 구차하게 채워 차출하여 보내기 때문에, 만약 다른 나라의 사정을 묻는 일을 당하면 찢찢매며 어쩔 줄을 모르니, 단지 보기에 해괴할 뿐 아니라 정녕 일을 만들고 반드시 일을 그르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이문을 보내어 논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본영의 임기가 찬 역관의 대신으로 당상관과 당하관에 구애되지 말고 반드시 누차 연행(燕行)을 경험하여 한학을 익숙하게 아는 자를 각별히 선발하여 차출하여 내려 보내시기를.

이에 의거한 제사 내용: 관문 내용의 사연에 의거하여 각별히 선발하여 보내라는 뜻으로 해당 사역원에 분부할 일. 사역원의 감결을 받음.

계유(1753) 12월 16일

전교에 이르기를, “대저 국가를 위하여 가장 염려되는 것은 기강이다. 기강이 나라에 있는 것이지 어찌 사람에게 있겠는가마는, 기강 가운데 가장 한심한 것이 왜관의 인삼 폐단이 가장 으뜸이다. 지난번의 일을 지금 와서 생각하면 아직도 오히려 분하고 한탄스런 일이다. 또한 동래부사를 영백(嶺伯: 경상감사)으로 삼았을 때 하교한 것이 있는데, 연신(筵臣)이 상주한 바를 들으니, 이이장이 동래부사로 교체된 뒤에 인삼 값이 곧장 높아졌다 하니, 이로써 추정한다면 앞으로의 폐단을 알 수 없다. 이제 이번 일은 오로지 인삼 상인에게 달려있고,

인삼 상인이 만약 이렇게 한다면 왜역(倭譯)도 알 만하다. 조그마한 인삼 상인이 기강을 무시하고 일개 동래부사의 교체와 차임(差任)을 스스로 조종하니 일의 해괴함이 이보다 심할 수가 없다. 하나를 징계하여 백 가지를 다듬는 도리에 있어서 엄중하게 조사하여야 마땅한 일이다. 모조리 압송하여 동래부사는 경계에서 법대로 처형하여 저쪽 사람들로 하여금 국가에 기강이 있음을 뚜렷이 알게 할 것이로되, 대사(大赦)가 앞에 당도하였으므로 지금은 비록 십분 참작하지만, 이 뒤로 만약 다시 이전 버릇을 계속한다면 어찌 꼭 인삼 상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조사하겠느냐? 왜관의 임역에게 당장 일률(一律:사형)을 시행하여 단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니, 이렇게 미리 분부하여 범을 범하지 말도록 하고, 또한 도신과 동래부사에게 명하여 엄중하게 살펴 알리도록 하라.”고 하셨음.

계유(1753) 12월 28일

동래부사 이이장이 이달 17일에 성첩한 장달 내용. 이달 11일 오시에 도부한 부산첨사 이명운(李明運)의 치통 내용에, “올해 11월 12일에 나왔던 당년조 3 특송사 2호선에 격왜 30명, 올해 5월 초5일에 나왔던 소금도왜 1명, 올해 11월 12일에 나왔던 무진조 제8선에 격왜 30명, 올해 5월 초5일에 나왔던 소금도왜 1명 등이 나누어 타고, 도합 2척이 공작미를 실어가지고 돌아 들어가기 위해 어제 수문 밖에서 바람을 기다린다는 훈도 박상순과 가별차 최수인(崔壽仁)¹⁰⁰ 등의 수분에 의거하여 수호하기 위해 두모포만호 선정협(宣景協)을 정하여 보냈는데, 동 왜선 2척이 오늘 진시에 발선하여 돌아 들어갔다는 수호장의 치보 및 구봉봉군의 진고에 의거하여 치통 운운” 하였음. 16일 오시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올해 11월 25일에 나왔던 무진조 제9선에 격왜 30명, 올해 5월 15일에 나왔던 소금도왜 1명, 올해 11월 25일에 나왔던 당년조 부특송사 2호선에 격왜 30명, 임신 정월 초7일에 나왔던 공일대관왜 1인, 서기왜 1인, 종왜 6명, 올해 5월 18일에 나왔던 소금도왜 1명 등이 나누어 타고, 각기 공작미를 실어가지고 도합 2척이 돌아 들어가기 위해 14일에 수문 밖에서 바람을 기다린다는 훈도 별차 등의 수분에 의거하여, 수호하기 위하여 본진의 이선장 오시위(午時偉)를 정하여 보냈는데, 동 왜선 2척이 오늘 진시에 발선하여 돌아

100) 최수인(崔壽仁, 1709-?) : 청주한씨로 자는 대래(大來)이다. 영조 11년(1735) 식년 역과에 왜학으로 합격하여 교회를 역임하였다.

들어갔다는 수호장의 치보 및 봉군의 진고에 의거하여 치통 운운” 하였음. 당
년조 이폐이양 송사왜 및 제4호 송사왜 원역 등에 대한 상선연을 이달 14일로
정하였는데, 신은 병으로 가서 참여하지 못하고, 부산첨사 이명운이 혼자 가서
전례대로 베풀어 행하였으며, 당년조 공작미 16,000섬을 대관왜에게 계속하여
모조리 들여 주었기에 연유를 치달하는 일임.

● 집필위원

자료해제 : 김동철(부산대 교수)
자료국역 : 정경주(경성대 교수)
감 수 : 이원균(전 부경대 교수)

● 편집위원

위원장 : 강대민(경성대학교 교수)
위 원 : 김종철(부산대학교 교수)
" : 박은경(동아대학교 교수)
" : 감강식(동서대학교 교수)
" : 황경숙(부경대학교 교수)
" : 홍연진(부산광역시 시사편찬실)

釜山史料叢書¹⁹

國譯 典客司別膽錄(IV)

발 행 인	강 창 석
편 저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편집·교열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상임위원 홍연진
발 행 일	2012년 7월 31일
인 쇄	대원에드컴
발간등록번호	52 - 6260000 - 00076 - 10
ISBN	978-89-964675-7-1
	978-89-964675-0-2(세트)

〈非賣品〉

【연락처】

611-73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부산광역시청)
TEL. 051)888-3468, FAX. 051)888-3469

자료검색(www.busan.go.kr)

부산시 홈페이지>해양수도부산>부산의 역사>향토사도서관>부산사료총서